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편 역 자

김 화 수　송 태 호

이 영 근　윤 옥 경

경기대학교

빈 면

서 문

한 국가의 각종 법령과 제도는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교정관계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정관계법은 수용자의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정관계법의 규정과 시행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만이 교정의 이념과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하에 이번 법무부 교정국의 요청을 받아 외국 교정관계법을 편역하는데 있어서도 이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하였습니다.

특히, 동·서양의 법률적 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교정관계법의 영역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법령의 체계적 분류와 용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편역자들의 지혜를 모으고 관련 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각 국의 특유한 역사와 문화를 참작하여, 그 나라 교정관계법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서가 교정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작은 결실이 우리나라 교정행정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1일

편역자 일동

빈 면

✦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

■ 목 차 (Contents) ■

▶외국 교정관계법령 번역문

Ⅰ.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9
Ⅱ. 독일 행형법 ····· 29
Ⅲ. 독일 형집행령 ····· 79
Ⅳ. 영국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91
Ⅴ. 미국 연방 교정관계법령 ····· 107
Ⅵ. 호주 South Australia 주의 교정서비스법 ····· 155
Ⅶ. 中華人民共和國 監獄法 ····· 203
Ⅷ. 싱가포르 구금법 ····· 217
Ⅸ. 日本 監獄法 ····· 247
Ⅹ. 日本 監獄法施行規則 ····· 261

▶외국 교정관계법령 원문

Ⅰ.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295
Ⅱ. Strafvollzugsgesetz(StvollzG) ····· 319
Ⅲ. Strafvollstreckungsordnung(StvollstrO) ····· 387
Ⅳ. Prisons (Scotland) Act 1989 (c. 45) ····· 403
Ⅴ. PART Ⅲ. PRISON AND PRISONERS ····· 431
Ⅵ.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509
Ⅶ. 中华 人民共和国监狱法 ····· 583
Ⅷ. SINGAPORE PRISONS ACT ····· 595
Ⅸ. 日本 監獄法 ····· 639
Ⅹ. 日本 監獄法施行規則 ····· 653

▶부 록

Ⅰ. 대한민국 행형법 ····· 685
Ⅱ. 대한민국 행형법시행령 ····· 705

빈 면

✦ 외국 교정관계법령 번역문 ✦

Ⅰ.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9

Ⅱ. 독일 행형법 / 29

Ⅲ. 독일 형집행령 / 79

Ⅳ. 영국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91

Ⅴ. 미국 연방 교정관계법령 / 107

Ⅵ. 호주 South Australia 주의 교정서비스법 / 155

Ⅶ. 中華人民共和國 監獄法 / 203

Ⅷ. 싱가포르 구금법 / 217

Ⅸ. 日本 監獄法 / 247

Ⅹ. 日本 監獄法施行規則 / 261

빈 면

Ⅰ.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55년 8월 30일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95조가 새로 추가됨)

서 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제2조 세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규칙들이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그것들이 전체로서 UN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주지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제3조 한편, 이 규칙들이 다루는 영역에서 행형사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놓인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criminal)이든 민사범(civil)이든, 미결수용자(untried)이든 기결수형자(convicted)이든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에 대하

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들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들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① 이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Borstal institutions)이나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의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피구금자(young prisoners)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들에게 구금형(imprisonment)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제1부 통 칙

기본원칙

제6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한편,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록

제7조 ①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a.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b.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c. 수용 및 석방 일시

②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b.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거주설비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

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운동 및 경기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교, 교육 도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각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b. 부과할 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c. 징벌권을 갖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
② 위 항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계구

제33조 수갑,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밖의 계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 호송 중 도피의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행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보 및 불복신청

제35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 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같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41조 ①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규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44조 ① 피구금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정신병 치료시설로 이송되었을 때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혼인 피구금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든지 피구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근친자의 사망 또는 중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근친자가 위독한 경우 피구금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호하에 또는 단독으로 문병갈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제45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설직원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

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 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② 소장은 자기의 전 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헌신하여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③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한 사람 소장 관할하에 있는 경우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피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의무관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피구금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감독

제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2 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특칙

A. 수형자

지도원리

제56조 이하의 지도원리는 행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상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57조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

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제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가능한 한 구금기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지키고 자활하는 삶을 희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기타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위점들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②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저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63조 ① 이러한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분리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 시설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요건을 제공한다.

③ 폐쇄 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한편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다.

제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①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배려, 교육, 직업 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방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② 소장은 상당한 기간의 형기를 가진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와 그 밖의 관계문서는 개별적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b.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상당한 기간의 형기를 가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전

제70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무관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③ 통상의 작업일에 수형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양이 주어져야 한다.

④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와 특히 소년수형자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⑥ 수형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의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② 그러나 수형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가능한 한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수형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 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가 양자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하여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 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제82조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하여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④ 행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석방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미결수용자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인 채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이에 합당하게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서 또는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수용자 복장을 입는 경우 그 수용자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오락기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92조 미결피구금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사건관계 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시설직원의 감시하에 둘 수는 있지만, 대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

E.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9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의 관련규정도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해져서는 안된다.

빈 면

II. 독일 행형법

1976년 3월 16일 발효(BGBI. I S. 581, ber. S. 2088, 2977 I S. 436) (BGBI. Ⅲ 312-9-1), 1998년 8월 26일 최종 개정(BGBI. S. 2461, ber. BGBI. I 1999 S. 1096)

[목 차]

제 1 장 적용범위(제1조)

제 2 장 자유형의 집행
제1절 기본원칙(제2조~제4조)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제5조~제16조)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제17조~제22조)
제4절 접견, 문서교환 및 특별한 원인에 의한 휴가, 외출과 동반외출 (제23조~제36조)
제5절 작업·교육 및 평생교육(제37조~제52조)
제6절 종교행사(제53조~제55조)
제7절 위생보호(제56조~제66조)
제8절 자유시간(제67조~제70조)
제9절 사회적 부조(제71조~제75조)
제10절 여자수형자의 형집행을 위한 특칙(제76조~제80조)
제11절 안정 및 질서(제81조~제93조)
제12절 직접강제(제94조~제101조)
제13절 징벌조치(제102조~제107조)
제14절 법적구제(제108조~제121조)
제15절 형집행 및 미결구금(제122조~제128조)

제 3 장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보안구금(제129조~제135조)
제2절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제136조~제138조)

제 4 장 집행관청

제1절 교도소의 종류 및 시설(제139조~제150조)

제2절 교도소감독(제151조~제153조)

제3절 교도소의 내부구성(제154조~제161조)

제4절 교도소고문회(제162조~165조)

제5절 행형에서의 범죄학 연구(제166조)

제 5 장 기타 교도소에서의 자유박탈처분, 정보보호, 사회보장 및 취업보장, 종결규정

제1절 교도소에서 형구금의 집행(제167조~제170조)

제2절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및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
(제171조~제175조)

제3절 소년교도소 및 미결구금집행에 있어서의 노임(제176조~제177조)

제4절 교도소에서의 직접강제(제178조)

제5절 정보보호(제179조~제187조)

제6절 연방법의 조화(제188조~제189조)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제190조~제195조)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시행(제196조~제202조)

제 1 장 적용범위

제1조 이 법은 교도소에서의 자유형 및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자유형의 집행

제 1 절 기본원칙

제2조 〔집행의 준수사항〕 자유형은 수형자가 장래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3조 〔집행의 상태〕 ① 수형중의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형태와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유박탈로 인한 유해한 결과는 방지되어야 한다.

③ 집행은 수형자가 자유로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4조 〔수형자의 지위〕 ① 수형자는 처우의 진행과 집행목적의 달성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서 그의 각오를 환기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그의 자유제한에 복종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도소의 안전유지 또는 중대한 질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한만을 수형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제 2 절 집행계획의 수립

제5조 〔입소절차〕 ① 입소절차에는 다른 수형자가 참여할 수 없다.

② 수형자는 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지를 받는다.

③ 입소 후에 수형자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고 교도소장 또는 수용부서의 장을 면접한다.

제6조 〔처우조사, 수형자의 참여〕 ① 입소절차후에 수형자의 인성과 생활상태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예정된 처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석방 후에 사회복귀를 위하여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까지 적용된다.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혹은 제182조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가 선고된 수형자는 특별히 사회치료시설에 입소할 것인지가 심사되어야 한다.

③ 처우계획은 수형자와 상의한다.

제7조 〔집행계획〕 ① 처우조사를 근거로 하여(제6조) 집행계획이 수립된다.

② 집행계획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처우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폐쇄 또는 개방시설에의 수용
2.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3. 생활집단과 처우집단의 지정
4. 노동력 배치 및 직업교육,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의 조치
5. 평생교육과정의 참여
6. 특별지원조치 및 처우조치
7. 집행의 완화
8. 석방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집행계획은 수형자의 개선 및 인성조사에 대한 그 밖의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계획에는 상당한 기간이 예정되어야 한다.

④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혹은 제182조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6개월 마다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해야 하는 가에 대해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이송, 인도〕 ① 수형자는 집행계획과는 달리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다른 해당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1. 수형자의 처우 또는 석방 후에 그의 사회복귀가 이송에 의해 증대되는 경우
2. 이송이 집행기관의 사유 또는 다른 중요한 사유들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② 수형자는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교도소로 인도될 수 있다.

제9조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①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혹은 제182조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제6조 제2항 제2문 혹은 제7조 제4항의 사회치료시설이 제시되었다면 수형자는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해야 한다. 수형자 개인의 사유

에 의해 치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를 이전의 교도소에 수용한다.
② 특별한 치료수단과 사회부조가 수형자의 재사회회를 위해 적시된 경우에는 그의 동의에 의하여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치료시설의 장이 동의해야 한다.

제10조 〔개방 및 폐쇄집행시설〕 ① 수형자가 개방집행의 특별요건을 충족하고 특히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개방집행의 가능성이 범죄에 대해 남용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수형자는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 개방교도소 또는 개방집행분과에 수용되어야 한다.
② 그밖에는 수형자는 폐쇄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처우에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는 폐쇄집행시설에 수용되거나 그곳으로 재 이송될 수 있다.

제11조 〔집행의 완화〕 ① 집행의 완화로써 특히 다음을 명할 수 있다.

1. 수형자는 교도소 밖에서 규칙적으로 교도관의 감독하에(외부노역) 또는 감독 없이(자유노역) 노역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형자가 하루 중 어느 특정시각에 교도관의 감독하에(동반외출) 또는 감독 없이(외출) 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완화는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집행의 완화가 범죄행위에 대해 남용될 염려가 없는 경우 수형자의 동의하에 명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동반외출〕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수형자는 그의 동의 없이도 동반외출이 허용될 수 있다.

제13조 〔구금중의 휴가〕 ① 수형자는 1년 중 21일의 한도 내에서 구금중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휴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최소한 6개월 이상 형집행 중에 있었던 경우에 허가되어야 한다.
③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선행된 미결구금 또는 그 이외의 자유박탈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형집행 중에 있었던 경우에 혹은 개방집행시설에 이송된 경우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개방집행이 적합한 수형자가 특별한 이유로 폐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방집행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⑤ 휴가에 의하여 형집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집행의 완화와 휴가의 지시 · 취소〕 ① 교도소장은 수형자에게 집행의 완화 및 휴가를 명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완화와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도소장이 추후에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그러한 조치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조치를 남용한 경우
3. 수형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도소장은 완화 및 휴가의 허가를 위한 조건이 없었던 경우에는 장래에 대한 효과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석방준비〕 ① 석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완화되어야 한다(제11조).

② 석방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수형자는 개방교도소 또는 개방집행분과(제10조)으로 이송될 수 있다.

③ 석방전 3월내에 석방준비를 위하여 1주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가 허가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자유노역자(제11조 제1항 1호)는 석방 전 9월내에 월 6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가 준용된다.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석방시기〕 ① 수형자는 그의 형기의 종료일에 가능한 한 어느 경우이든 오전에 석방되어야 한다.

② 형기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공휴일, 부활절 또는 오순절 이후의 첫째 평일 또는 12월 22일부터 1월 2일의 기간에 만료된다면 그것이 형기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고려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휴일 또는 이 기간 이전의 평일에 석방될 수 있다.

③ 석방시기는 수형자가 그의 사회복귀를 위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의 한도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제 3 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

제17조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수용〕 ① 수형자들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이는 직업교육, 직업상의 후행교육, 재교육 및 직업시간 중의 근로치료적인 작업 및 기타 작업에도 적용된다. 작업시간 중에 근로치료적인 그리고 기타의 노역과 아울러 직업교육, 직업상의 평생교육, 재교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자유시간 중에 수형자는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공동집회에 참가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교도소의 공간적, 인적 그리고 조직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혼거수용은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1. 다른 수형자에 대하여 해로운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제6조에 의하여 2개월 이내의 조사를 받는 경우
3.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에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18조 〔휴식시간 중의 수용〕 ① 수형자는 휴식시간 중에는 그의 거실에 홀로 수용된다. 수형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서 혼거수용이 허용된다.

② 개방집행에서는 수형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휴식시간 중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혼거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폐쇄집행에서는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휴식시간 동안의 혼거수용이 허용된다.

제19조 〔수형자 및 그의 개인소유물에 의한 거실의 장식〕 ① 수형자는 자신의 물건으로 상당한 정도로 그의 거실을 장식할 수 있어야 한다. 친밀한 사람들의 사진 및 개인적으로 가치있는 기념물은 그가 간직한다.

② 거실의 시찰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가리게 및 물건은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 〔복장〕 ① 수형자는 교도소 제복을 착용한다. 자유시간을 위하여 수형자는 특별한 의복을 받는다.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반외출시에 자신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허가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규칙적인 갈아입기를 자변으로 행하는 한 이를 또한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교도소의 급식〕 교도소 급식의 내용 및 영양가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 특별급식이 제공된다. 수형자는 그의 종교집단의 식사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 〔구입〕 ① 수형자는 그의 부양가족급부금(제47조) 또는 그의 용돈(제46조)으로 교도소의 주선으로 식료품과 기호품 및 보건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공급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물건은 구입허가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식료품 및 기호품의 구입이 진정으로 그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병원과 의무실에서는 개별적인 식료품 및 기호품의 구입이 의사의 지시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자신의 과실없이 부양가족급부금 또는 용돈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자변으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 4 절 접견, 문서교환 및 특별한 원인에 의한 휴가, 외출과 동반외출

제23조 〔원칙〕 수형자는 이 법의 규정 내에서 교도소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교통권을 가진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과의 교통은 조장되어야 한다.

제24조 〔접견권〕 ① 수형자는 정기적으로 접견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접견시간은 최소한 한 달에 1시간으로 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도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접견은 그것이 수형자의 처우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수형자가 서면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제3자에 의해 인지될 수 없거나 혹은 수형자의 석방시까지 연기될 수 없는 개인적, 법적 또는 영업적 사무를 위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초과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③ 안전상의 이유에서 접견자가 검색을 받고 접견이 행해질 수 있다.

제25조 〔접견금지〕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1.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2. 접견이 수형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 형법상 수형자의 친족이 아닌 접견자인 경우

제26조 〔변호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접견〕 수형자와 관계있는 법률사건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의 접견 및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은 허용되어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이에 준용한다. 변호인이 지참한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에 대한 검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항 2호 및 3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27조 〔접견의 감시〕 ① 접견은 교도소의 처우, 안전 또는 질서를 이유로 감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만 그 대화가 감시된다.

② 접견은 접견자 또는 수형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중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 중지요청은 그 접견을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인의 접견은 감시받지 아니한다.

④ 물건은 접견시 허가에 의하여만 수수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의 접견시 수수한 서류와 기타 증빙서류 및 수형자와 관련된 법률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시 수수한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증인의 접견시에는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를 이유로 허가에 의해서만 서류를 수수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 2문 및 3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28조 〔문서수발권〕 ① 수형자는 제한 없이 문서를 수발할 권리가 있다.

②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 특정인과의 문서수발을 금지할 수 있다.

1.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2. 그 서신이 수형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그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 형법상 수형자의 친족이 아닌 자의 경우

제29조 〔문서수발의 검열〕 ①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문서수발은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29a조에 의한 범죄행위가 자유형집행의 기초가 된다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제148a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수형자가 개방집행시설에 있거나 제11조 제1항 1문 또는 2문 후단에 의거하여 수형자에게 집행의 완화가 허용되거나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도소장에게 집행의 완화 및 휴가의 취소 또는 철회의 권한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항 2문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a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유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연방과 주의 의회 및 그 의회의원에 대한 그 밖의 수형자의 서신은 그 서신이 이러한 의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신된 것이고 발신인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유럽의회와 그 구성원, 인권을 위한 유럽법원, 인권을 위한 유럽위원회, 고문과 인권침해적인 행위 혹은 형벌을 제지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에 대한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문과 제2문에 제시된 직무와 관련하여 수형자에게 전달된 문서는 발신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검열되지 않는다.

③ 기타 서신의 수발은 처우 또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검열받을 수 있다.

제30조 〔서신의 송부 · 영치〕 ① 수형자는 다른 허가가 없는 한 교도소를 통해 서신을 수발하여야 한다.

② 수발하는 서신은 지체없이 송부되어야 한다.

③ 수형자는 다른 허가가 없는 한 수령한 서신을 개봉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형자는 그 서신을 봉인하여 그의 소유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서신의 압류〕 ① 교도소장은 다음의 경우 서신을 압류할 수 있다.

1. 집행목적 또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2. 서신송부가 내용의 인지로 형벌구성요건 또는 벌금형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경우
3. 서신이 교도소의 제반사정에 관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대단히 왜곡하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4. 서신이 명백한 모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5. 서신이 다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6. 서신이 암호로, 읽기 어렵게, 이해할 수 없게 혹은 강제적인 이유 없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② 부당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발송서신은 수형자가 발송을 주장하는 경우 첨부서류가 동봉될 수 있다.

③ 서신이 압류된 경우 이를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압류된 서신은 발신인에게 반송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에 보관한다.

④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열이 종결된 서신은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 〔장거리 통화 및 전보〕 수형자에게 장거리 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기타 접견에 관한 규정이 장거리 통화에 준용되며 문서수발에 관한 규정은 전보에 준용된다. 전화통화의 감시가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인 감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혹은 수형자가 이를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 수형자는 전화통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의도적인 감시와 제3문에 의한 통고의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 〔소포〕 ① 수형자는 적절한 간격으로 연 3회 식료품 및 기호품의 소포를 수령할 수

있다. 교도소는 발송과 개별품목의 최고한도량을 규정할 수 있다. 기타의 소포 또는 다른 내용물이 있는 소포의 수신은 교도소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외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이 준용된다.

② 소포는 수형자의 면전에서 개봉되어야 한다. 제외된 물건은 수형자의 소유물에 귀속시키거나 발신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발송 또는 보관시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건은 폐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수형자에게 통지된다.

③ 소포의 수령은 이것이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수형자에게 소포의 발송은 허용된다. 집행기관은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하여 그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제35조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반외출〕 ①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수형자에게 외출을 허가하거나 7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질병 혹은 친족의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는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는 정기휴가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하여 외출 또는 휴가가 허가될 수 없는 경우에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동반 외출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처우 또는 사회복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수용될 수 없다.

제36조 〔법원의 소환〕 ①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소환을 준수하고 도주 또는 남용의 위험(제11조 2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환에 참석하도록 수형자에게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수형자가 법원의 기일에 소환되었고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 받지 못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도주 또는 남용의 위험(제11조 제2항)을 이유로 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형자에게 그의 동의에 의하여 동반외출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교도소장은 구인영장이 있는 경우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법원에 추후 발생한 상황을 보고한다.

제 5 절 작업 · 교육 및 평생교육

제37조 〔지정〕 ① 작업, 작업치료법적인 노역, 교육 및 평생교육은 특히 석방 후에 취업을 위한 능력을 주선, 유지 또는 증진할 목적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교도소는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작업을 지정해 주며 동시에 이 경우에는 수형자의 능력, 숙련도 및 소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능력 있는 수형자는 직업교육, 직업적인 보습교육, 재교육 기타 교육 또는 평생교육 조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④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작업 또는 제3항에 의한 참여 및 조치가 지정될 수 없다면 수형자에게 상당한 노역이 지정된다.

⑤ 수형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작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작업요법에 전념해야 한다.

제38조 〔수업〕 ① 중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능력 있는 수형자를 위하여 중등학교 졸업을 위한 과목의 수업 또는 특수학교에 준하는 수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또는 재교육의 경우에는 직업교육수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처분의 내용이 요구하는 경우에 직업상의 보충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수업은 작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9조 〔임의적 작업조건, 자발적 작업〕 ① 집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석방 이후의 취업을 위한 능력을 주선,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목적에 부합하며 집행의 중대한 이유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작업조건 위에 교도소 외부에서 작업, 직업교육, 직업상의 평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수형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14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수형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보수를 수형자의 계좌에 이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졸업증서〕 교육 또는 평생교육조치에 관한 졸업증서에는 참가자의 구금상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 〔작업의무〕 ① 수형자는 신체의 상태를 감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기에게 지정된 그리고 자기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작업, 작업요법 또는 기타의 노역을 수행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수형자는 연 3월의 한도 내에서 교도소에서 보조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의 동의하에 그 이상의 기간도 보조작업을 할 수 있다. 동항 1문 및 2문은 65세 이상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취업 중인 모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노역금지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중인 부녀 및 수유중인 부녀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② 제37조 제3항에 의한 조치의 참여는 수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동의는 적절한 시기에 철회될 수 있다.

③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업(제149조 제4항)에서의 작업은 수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의 철회는 작업장소가 다른 수형자에 의하여 대신할 수 있는 경우 늦어도 6주간 후에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 〔노역의무의 면제〕 ① 수형자가 1년동안 제37조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작업 또는 제41조 제2항에 의한 보조작업을 수행한 경우, 수형자는 18일의 근로일을 노역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수형자가 질병의 결과 그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있었던 시간은 연6주의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에 산입된다.

② 휴가가 작업시간에 들어있고 생명에 위험을 주는 질병 또는 친족의 사망을 사유로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 중의 휴가(제13조, 제35조)는 면제기간에 산입된다.

③ 수형자는 면제기간 동안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급료를 계속하여 받는다.

④ 형사집행 이외의 노역에 대한 휴가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43조 〔노임〕 ① 수형자가 제41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작업, 기타의 노역 또는 보조작업을 이행하는 경우 수형자는 노임을 받는다. 임금의 산정에는 사회법 제4권 제18조에 의한 수입에 대한 제200조에 규정된 비율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수형자표준노임). 일당금액은 수형자 표준노임의 250분의 1로 한다. 그러나 노임은 시간비율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② 노임은 수형자의 작업성과 및 작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형자의 작업성과가 최저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형자 표준노임의 75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지정받은 작업요법적인 노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의 노역의 종류 및 작업성과에 상응하는 한 그는 노임을 받는다.

④ 노임은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4조 〔직업교육조성비〕 ① 수형자가 직업교육, 재교육, 직업상의 평생교육 또는 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및 수형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작업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형자는 그러한 사유로 자유인이 받게 되는 생계비를 위한 급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는 직업교육조성비를 받는다. 연방사회부조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사회부조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직업교육조성비의 산정에는 이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③ 수형자가 작업시간 중에 수업 또는 제37조 제3항에 의거한 기타 지정받은 조치에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참가하는 경우 수형자는 이에 의해서 그가 상실하게 되는 노임의 정도에 따라 직업교육조성비를 받는다.

제45조 〔결손보상금〕 ①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에게 수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작업 또는 노역이 1주일 이상 할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② 수형자가 작업 또는 노역이 개시된 이후 그의 귀책사유 없이 질병의 결과 1주일 이상 그의 작업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수형자는 역시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제44조에 의한 직업교육조성비 또는 전조 제1항에 의한 결손보상금을 받은 수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제37조의 작업 또는 노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임신 중인 부녀는 분만 전 최종 6주간 및 분만 후 8주간의 경과시까지, 조산 및 다생아출산시에는 12주까지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④ 결손보상금은 수형자가 실직 또는 질병 전에 제43조 제2항의 최저보수에 미달한 경우에만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수형자 표준노임의 60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⑤ 결손보상금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산하여 최고 연 6주간까지 허용된다. 기타 결손보상금은 수형자가 새로 최소한 1년 동안 노임 또는 직업교육조성비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⑥ 수형자가 제국보험법 제5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결손보상금에 대한 청구가 중단된다.

제46조 〔용돈〕 수형자가 연령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형자에게 결손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정한 용돈을 받는다. 제37조 제5항에 의한 노역에 대하여 아무런 노임을 받지 못하는 수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7조 〔수형자의 부양가족급부금〕 ①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수입으로부터 최소 월 30

마르크(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및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기타의 용도를 위한 용돈(제46조)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의 최저액은 300마르크를 초과하는 월수입에 대하여 그때마다 100분의 10을 인상한다. 교도소는 갱생보조금의 액수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③ 임의적 노역조건에 있거나 (제39조 제1항) 또는 자발적 노역을 할 수 있도록 (제39조 제2항) 허용된 수형자에게 그의 수입에서 적정한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이 정해진다.

제48조 〔조례〕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 노동사회부장관과 협의 및 연방참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제43조 내지 제45조의 시행을 위한 보수등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제49조 〔생활부조금〕 ① 수형자의 신청으로 법적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의 수입에서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생활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소득이 구금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및 생활부조금의 공제 후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부조금은 민사소송법 제850c조에 의거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지급된다. 1문에 의한 표준적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부양권리가 있는 자의 수는 1인이 감소한다.

제50조 〔구금비용〕 ① 이 법에 규정된 수입 및 임의적 노역관계에 있는(제39조 제1항) 수형자의 수입으로부터는 제국보험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한 현물급여의 평가를 평균한 금액의 한도에서 구금비용을 보유할 수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전년도 10월 1일에 적용하고있는 현물급여 평가기준에 의한 매년도 평균노임을 확정하여 이를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구금비용은 또한 압류할 수 없는 급료의 일부에서 그러나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또는 생활부조금의 부담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구금비용을 매월 사전에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자발적 작업(제39조 제2항)이 행해질 수 있다.

제51조 〔갱생보조금〕 ① 이 법에 규정된 보수 및 임의적 노역관계에 있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발적인 노역이(제39조 제2항) 허용된 수형자의 급료로부터 수형자의 석방 후 처음 4주 동안 수형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생활부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갱생보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조금은 석방시에 수형자에게 지급된다. 교도소는 그 갱생보조금이 석방 후 처음

4주간 이내에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보호관찰관 또는 보석과 관련있는 직책에 있는 자에게 그 갱생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보호관찰자 및 보석과 관련있는 직책에 있는 자는 갱생보조금을 그의 재산에서 구분해 유지할 의무가 있다.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갱생보조금은 또한 피부양권리자에게 이체될 수 있다.

③ 교도소장은 그 갱생보조금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위하여 청구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갱생보조금의 지급청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갱생보조금이 제1항에 규정된 액수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액수에서 사적인 자금에 대한 지급 청구도 압류하지 못한다. 1문 및 2문에 의거하여 압류할 수 없는 청구를 이유로 금전을 지급받고 석방된 수형자의 현금은 그것이 4주가 경과할 때까지 압류시기를 위한 청구의 일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석방 이후 4주 동안에는 압류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850d조 제1항 1호에 제시된 부양청구에 의한 압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석방된 수형자에게는 그의 석방후 4주간의 경과시까지 압류시기를 위하여 그의 필수적인 생계 및 기타 그의 법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

제52조 〔개인자금〕 사적인 자금,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구금비용, 생활부조금 또는 갱생보조금으로서 청구되지 아니하는 수형자의 급료는 수형자에게 사적인 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제 6 절 종교행사

제53조 〔사제직〕 ① 수형자에게는 그의 종교단체의 사제를 통한 종교적인 보호가 거부되지 아니한다. 수형자의 희망에 의하여 그의 종교단체의 사제와 면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수형자는 기본적인 종교서적을 소유할 수 있다. 종교서적은 중대한 남용의 경우에만 수형자에게서 박탈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종교적 용도의 물품이 허여되어야 한다.

제54조 〔종교행사〕 ① 수형자는 예배 및 그의 신앙에 따른 다른 종교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수형자에게는 종교단체의 사제가 동의하는 경우 예배 또는 다른 종교단체의 행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③ 수형자는 안전 또는 질서상의 중대한 이유에서 금지된 경우 예배 또는 기타의 종교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제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55조 〔세계관단체〕 세계관적인 종파의 소속원에게 제53조 및 제54조가 준용된다.

제 7 절 위생보호

제56조 〔총칙〕 ①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01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지원받아야 한다.

제57조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① 35세된 수형자는 2년에 한번 암, 뇌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수형자는 일년에 한번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자는 빠르면 20세부터 남자는 45세부터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진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경우
2. 진단에 의해 이러한 질병의 사전 혹은 초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3. 질병이 의학적-기술적으로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4. 의심스러운 질병으로 제시된 사례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충분한 의사와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 등이다.

④ 여자 수형자는 교도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의 자녀에 대해서 16세 때까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발달에 사소하지 않은 정도로 위협되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수형자는 치아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치석의 발견, 질병원인 그리고 그의 제거 등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의약품, 붕대, 치료수단 및 보조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의학적인 치료와 보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충족되어야 한다.

1. 질병을 예견할 수 있는 기간에 건강의 약화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2. 자녀의 건강발달에 위협이 되는 사항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3. 보호필요성이 제거되어야 하는 경우

제58조 〔치료행위〕 수형자는 질병을 인식하고, 치료하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해야 하거나 혹은 질병의 고통을 약화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치료행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치료행위는 특별히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의사의 행위
2. 의치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치과의사의 행위
3. 의약품, 붕대, 치료수단 및 보조수단으로 행하는 보호
4. 교도소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한 작업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학적 그리고 보완적 행위

제59조 〔보조수단에 의한 보호〕 수형자는 시력, 청력의 보조수단, 인공기관, 정형외과 및 다른 보조수단 등과 같이 질병치료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혹은 장애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에 의한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 〔휴가 중 질병의 보호〕 휴가 또는 외출 중에는 수형자는 교도소에 대하여 자기에 대해 권한 있는 교도소에서의 의사의 치료 및 보호청구권만을 갖는다.

제61조 〔급부의 종류 및 범위〕 건강검진 및 의학적인 보호조치의 종류 및 이러한 급부 및 보조수단을 포함하는 질병치료를 위한 급부의 범위에는 사회법과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는 규칙이 적용된다.

제62조 〔의치 및 치관을 위한 보조금〕 주 법무부는 일반행정규정에 의하여 의치 및 치관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정한다. 주 법무부는 전체비용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62a조 〔청구권의 중단〕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은 수형자가 자신의 업무관계에 기인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단된다.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사의 치료〕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교도소는 사회복귀를 증진시키는 의사의 치료, 소위 수술 또는 인공보조장구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그의 경제상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치료의 목적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영외체류〕 수형자가 영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날씨가 적절하다면 수형자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의 영외체류가 허용될 수 있다.

제65조 〔이송〕 ① 질병이 있는 수형자는 교도소 의무실 또는 그의 질병치료를 위해 적절한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질병이 교도소 또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발견 또는 치료될 수 없거나 그 수형자를 적시에 교도소 의무실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도소 외부의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수형자가 병원에 체류하는 동안 형집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법적 의료보험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필요한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① 수형자가 중병인 경우 가족, 그 수형자의 신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희망에 부응해야 한다.

제 8 절 자유시간

제67조 〔총칙〕 수형자에게는 자유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형자에게는 스포츠를 포함하는 강의, 통신강의, 교과과정과 기타 계속교육, 자유시간을 위한 모임, 집단대화 및 운동경기 등에 참여하고 서적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68조 〔신문 및 잡지〕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교도소의 주선으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② 배포에 대해 형벌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신문 및 잡지는 제외된다. 단독의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해 그 일부가 형집행의 목적 또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게 배포되지 않을 수 있다.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① 수형자는 교도소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공동의 텔레비전 시청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은 국민의 정보, 교양과 오락에 대한 희망과 필요성을 알맞게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라디오수신 및 텔레비전 시청은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개별적인 수형자에게 금지할 수 있다.

② 개인 소유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제70조의 조건하에 허용된다.

제70조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물건의 소유〕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보습교육 또는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도서 및 기타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② 그 물건의 소유, 양도 또는 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벌 또는 벌금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집행의 목적,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③ 허가는 제2항의 조건하에 취소할 수 있다.

제 9절 사회적 부조

제71조 〔원칙〕 수형자는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사회적 부조를 청구할 수 있다. 부조는 수형자가 스스로 정리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72조 〔수용시의 부조〕 ① 수용시에는 수형자는 부조를 요하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도소 외부의 그의 재산이 안전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② 수형자는 사회보험의 유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3조 〔집행 중의 부조〕 수형자는 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 특히 그의 선거권의 행사 및 피부양자의 보호 및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해의 조정을 위해서 최대한 부조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석방을 위한 부조〕 석방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형자는 그의 개인적,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정리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은 사회보장비를 관할하는 기관에까지 관여한다. 수형자는 석방 후를 위하여 직업, 숙소 및 개인적인 후원자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75조 〔석방보조금〕 ① 수형자는 그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한 교도소로부터 귀향여비를 위한 보조금과 아울러 갱생보조금 및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의복을 받는다.

② 갱생보조금의 산정시에는 자유박탈의 기간, 수형자의 개인적 작업배치 및 형기동안 사적인 자금 및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에 대한 그의 처분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1조 2항 제2문 및 제3문은 이에 준용되다. 갱생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양권리자에게 이체할 수 있다.

③ 귀향여비를 위한 보조금청구권 및 지급된 귀향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다. 갱생보조금 청구권과 수형자에 대한 갱생보조금 지급 이후의 현금에 대해서는 제51조 제4항 1문 및 3문, 제5항이 준용된다.

제 10 절 여자수형자의 형집행을 위한 특칙

제76조 〔임부와 모에 대한 급부〕 ① 최근에 출산한 임산부 또는 여자수형자에 대하여는 그녀의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상황에서의 근로능력 있는 부녀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어야 한다.

② 여자수형자는 임신중 및 출산중 및 출산후에 교도소에서 의사의 보호조치 및 조산원의 조력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임신중의 보호조치에는 특히 임신확인검진 및 작업상의 의료검진을 포함한 출산준비검진이 포함된다.

③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는 교도소 외부병원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출산은 산부인과가 있는 교도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출산시에는 조산원의 조력 및 필요한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는다.

제77조 〔약품 · 붕대 및 치료제〕 임신중의 고통 및 출산과 관련하여 약품 · 붕대 및 치료제가 공급된다.

제78조 〔임산부와 모에 대한 급부의 종류, 범위 및 중단〕 제60조, 제61조, 제62a조 및 제65조가 제76조와 제77조에 규정한 급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79조 〔출생신고〕 출생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출생신고에 있어서 교도소를 그 자녀의 출생장소로, 신고인과 교도소와의 관계 및 모의 수형상태를 표시하지 아니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① 여자수형자의 자녀가 아직 의무교육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의 복지에 적합한 때는 체류결정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그의 모가 있는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 수용 전에 소년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수용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비용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모와 자녀의 혼거수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도소의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배제될 수 있다.

제 11 절 안전 및 질서

제81조 〔원칙〕 ① 교도소에서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수형자의 책임의식을 고양 · 증진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형자에 부과되는 의무 및 제한은 그것이 그 목적에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수형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82조 〔행동규칙〕 ① 수형자는 교도소의 일과시간표(근로시간, 자유시간, 휴식시간)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그의 행동에 의해서 교도관, 동료수형자 및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수형자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형자는 허가 없이 그에게 지시된 범위를 이탈할 수 없다.

③ 수형자는 그의 거실 및 교도소에서 그에게 부여한 물건을 정돈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④ 수형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나타내는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 〔사적인 보관, 사적인 자금〕 ① 수형자는 교도소에 의해 혹은 교도소의 동의하에 수여 받은 물건만을 보관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수형자는 동의 없이 다른 수형자로부터 저가의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교도소는 그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러한 물건들을 수령 및 보관을 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보관할 수 없는 반입된 물건들은 방법 및 범위에 의해 가능하다면 보관되어져야 한다. 금전은 사적인 자금으로서 수형자의 계정에 기입된다. 수형자에게는 이것이 갱생보조금으로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 한 집행중 그리고 석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발송하거나 그의 사적인 자금을 처분할 기회가 주어진다.

③ 수형자가 그 방법 및 범위에 의해 그것의 보관이 불가능한, 반입된 물건을 교도소에서 반송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는 이 목적물을 수형자의 비용으로 교도소에서 폐기할 권한이 있다.

④ 교도소의 안전예방대책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는 문서 및 기타의 물건은 교도소가 폐기하거나 무용화시킬 수 있다.

제84조 〔수색〕 ① 수형자의 물건과 거실은 수색될 수 있다. 남자수형자의 수색은 남자만이 여자수형자의 수색은 여자만이 행한다. 수치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수색을 지체하면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교도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옷을 벗은 채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남자 수형자에 대해서는 남자만이 여

자수형자에 대해서는 여자만이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져야 하며, 다른 수용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교도소장은 제2항에 의한 입소시 및 수형자가 교도소 외부에 있다가 귀소한 후에는 검진받도록 할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85조 〔안전수용〕 수형자는 고도로 도주위험이 있거나 기타 그의 행동 또는 그의 상태가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에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안전수용에 적절한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제86조 〔감식처분〕 ① 집행의 안전을 위하여 감식처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지문 및 손금의 체취
2. 사진촬영
3. 외모특징의 확인
4. 체위측정

② 획득된 감식서류는 수형자신분대장에 첨부된다. 그것은 또한 수사경찰서의 기록집에 보관될 수 있다. 제1항에의 정보는 제1항, 제87조 제2항 및 제180조 제2항 제4호에 제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근거하여 감식처분을 자는 집행시설에서 석방된 후에 그 집행에 기초가 되었던 법관의 판결의 집행이 종결된 즉시 그 획득된 감식서류를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형자는 석방시에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제87조 〔체포권〕 ① 도주했거나 허가 없이 교도소 밖에 체류하고 있는 수형자는 교도소에 의하여 또는 교도소의 지시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다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6조 제1항과 제179조에 규정된 그리고 동일성 확인과 체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형집행기관과 소추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교도소 외부에 체류하는 수형자의 발견과 체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특별안전조치〕 ①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의 행동에 의하여 혹은 그의 정신상태에 근거하여 고도의 도주위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특별안전조치가 지시될 수 있다.

② 특별안전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목적물의 박탈 또는 유치

2. 야간관찰
3. 다른 수형자와의 격리
4. 개방수용의 박탈 또는 제한
5. 위험물이 없는 특별안전장치된 구금실에의 수용
6. 포박조치

③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조치는 자유시간의 위험 또는 교도소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회피할 수 없거나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동반외출, 구인 또는 이송시에 제1항의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해 고도의 도주위험이 있는 때에도 포박조치가 허용된다.

⑤ 특별안전조치는 그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제89조 〔독거수용〕 ① 계속적인 수형자의 격리는 수형자 개인에게 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1년에 총합 3개월 이상의 독거구금은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기간은 수형자가 예배 또는 자유시간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90조 〔포박조치〕 포박은 원칙적으로 손 또는 발에만 행해진다. 수형자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다른 포박조치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포박조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된다.

제91조 〔특별안전조치의 지시〕 ① 특별안전조치는 교도소장이 지시한다. 지체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의 다른 교도관들도 이러한 조치를 임시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도소장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② 수형자가 의사의 치료 또는 검진을 받거나 그의 정신상태가 그러한 조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체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을 지체없이 얻도록 한다.

제92조 〔의사의 순시〕 ① 수형자가 특별한 안전장치가 된 거실에 수용되어 있거나 포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 제2항 5호 및 6호) 교도소 의사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매일 그 수형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반외출, 구인 또는 호송 중의 포박조치(제88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 야외에서의 일상의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규칙적으로 이를 통지받아야 한다.

제93조 〔비용의 배상〕 ① 수형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해 또는 다른 수형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교도소에 배상한 의무가 있다. 기타 법규정으로부터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러한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형가족부양급부금(제47조)의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또한 청구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열거된 청구에 대하여 정상적 소송수단이 주어져 있다.

④ 이로 인하여 수형자의 처우 또는 그의 사회복귀가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청구를 사유로 하는 배상 또는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 12 절 직접강제

제94조 〔일반요건〕 ① 교도소의 교도관은 집행조치와 안전조치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접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이외의 자가 수형자의 석방을 위하여 또는 불법적으로 교도소내에 침입하려고 기도하거나 권한 없이 교도소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직접강제가 사용될 수 있다.

③ 다른 규정에 근거하는 직접강제를 위한 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5조 〔개념정의〕 ① 직접강제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에 의하여 작용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신체적인 힘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직접의 신체적 작용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③ 신체적인 힘의 보조수단이라 함은 소위 수갑을 말한다.

④ 무기라 함은 직무상 허용된 도검류, 총포류 및 자극물질을 말한다.

제96조 〔비례성원칙〕 ① 직접강제의 여러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중에서 개별성과 일반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그에 의해 예견되는 침해가 실행된 결과와의 비례를 일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제97조 〔지시에 의한 행위〕 ① 직접강제가 상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지시된 경우 교도관은 그 지시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무상의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시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② 지시로 인하여 범죄행위가 행해진다면 이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지시를 따르는 경우 지시로 인해 범죄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그에게 알려진 상황에 의해 명백한 경우에만 그에게 책임이 있다.

③ 지시의 합법성에 대하여 교도관은 지시자에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관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 고지에 관하여 일반공무원의 상이한 규정(공무원대강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예고〕 직접강제는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즉시 직접강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 〔총포류 사용에 대한 일반규정〕 ① 총포류는 직접강제의 다른 조치로는 효력이 없거나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총포의 사용은 물건에 대한 무기의 효력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총포류는 특정된 교도관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공격 또는 도주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총포류의 사용은 제3자가 이의 사용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 인식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③ 총포류의 사용은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 경고발사 또한 예고로서 유효하다. 총포류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예고없이 사용될 수 있다.

제100조 〔총포류 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①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총포류의 사용이 허용된다.

1. 반복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를 버리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형자가 폭동(형법 제121조)을 기도하는 경우
3. 수형자의 도주를 좌절시키거나 수형자를 다시 체포기 위한 경우, 단 개방집행시설로부터의 도주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총포류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기타의 자가 수형자를 폭력으로 석방시키려고 하든가 폭력으로 교도소에 침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타의 자에 대하여 총포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1조 〔보건영역에 대한 강제조치〕 ① 의학적인 검진, 치료 및 영양공급은 생명의 위험시, 수형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시 또는 기타의 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시에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사자를 위하여 타당하고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교도소는 그러한 조치의 실행에 대해 의무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강제적 신체검사는 신체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강보호 및 위생을 위하여 허용된다.

③ 그 조치는 의사가 적시에 도착할 수 없으며 그것을 연기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의 응급조치와는 별도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의 지휘하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제 13 절 징벌조치

제102조 〔요건〕 ① 수형자가 이 법에 의하여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수형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그에 대하여 징벌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수형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배제된다.

③ 징벌조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형사절차 또는 벌금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제103조 〔징벌조치의 종류〕 ① 허용되는 징벌조치에는 다음과 같다.

1. 징계
2.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처분권 및 3개월이내의 구입권의 제한 또는 박탈
3. 2주 이내의 독서물의 제한 또는 박탈 및 3개월 이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의 제한 또는 박탈
4. 3개월 이내의 자유시간의 향유를 위한 물건 또는 공동행사에 대한 참가의 제한 또는 박탈
5. 4주 이내의 자유시간 동안의 격리수용
6. 삭제
7. 이 법에 규정된 급료의 중단하에 4주 이내의 지정된 작업 또는 노역의 박탈
8. 긴급한 경우 교도소 외부인과의 3개월 이내의 교통권의 제한
9. 4주 이내의 구류

② 구금은 중한 또는 수회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징벌조치는 서로 병합될 수 있다.

④ 제1항 3호 내지 8호에 의한 조치는 가능한 한 그 위반이 제한될 수 있거나 박탈될 수 있

는 권한과 관계 있는 경우에만 지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류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없다.

제104조 〔징벌조치의 집행, 보호관찰을 위한 중단〕 ① 징벌조치는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된다.

② 징벌조치는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③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은 갱생보조금에 가산되어야 한다.

④ 교도소 외부인과 수형자간에 교통이 제한되는 경우 수형자에게는 그가 문서수발을 하고 있거나 그를 접견하던 자에게 이를 통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수신인, 연방공화국의 법원과 사법기관 및 수형자가 관계되어 있는 법률사건의 변호사 및 공증인과의 문서수발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⑤ 구금은 독거구금으로 집행된다. 수형자는 주간 및 야간의 체류를 위하여 규정된 구금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구금실에 수용될 수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형자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5조 〔징벌권한〕 ① 징벌조치는 교도소장이 지시한다. 이송의 목적으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도중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목적지교도소의 소장이 관할한다.

② 수형자의 위반행위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감독관이 이를 결정한다.

③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는 미결구금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지시된 징계조치는 의뢰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04조 제2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6조 〔절차〕 ① 사실관계는 소명해야 한다. 수형자는 진술한다. 소의 제기는 조서에서 확정된다. 수형자의 응소는 기재된다.

② 중대한 위반시에는 교도소장은 회의에서의 결정에 앞서 수형자의 처우에 협력하는 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임산부나 수유중인 부녀에 대해서는 징벌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교도소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구두로 통지하며, 간단한 근거를 제시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107조 〔의사의 협력〕 ① 구금이 집행되기 전에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금중에는 수형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② 수형자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구금의 집행을 중지 또는 면제한다.

제 14 절 법적 구제

제108조 〔항고권〕 ① 수형자는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희망사항, 제안사항 및 이의사항을 가지고 교도소장에게 청원할 기회를 갖는다. 정기적인 면담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② 감독관청의 대표가 교도소를 순시하는 경우에는 수형자가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그 대표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직무감독에 대한 항고의 가능성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 〔사법판결신청〕 ① 형집행에 대한 사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사법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신청과 함께 각하 또는 중단된 조치의 발동의무도 또한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판결에 대한 신청은 신청인이 그 조치 또는 조치의 각하 내지 중단에 의하여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주법률은 사전적 행정전치절차 이후에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0조 〔관할〕 신청에 관해서는 관련 교도소가 소재하고 있는 구역의 형사집행부가 결정한다. 제109조 제3항에 의거한 행정전치절차에서의 결정에 의해 형사집행부의 관할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당사자〕 ① 사법절차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2. 취소조치를 지시하거나 신청을 각하 내지 중단한 교도소

② 고등법원 또는 연방법원에서의 절차에 있어서 제1항 2호에 의거한 당사자는 관할감독관청이다.

제112조 〔신청기간, 원상회복〕 ① 신청은 그 조치의 송달, 서면통고 또는 그 조치의 각하 후 2주간 이내에 서면으로 또는 법원직원의 조서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행정전치절차(제109조 제3항)가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송달 또는 이의결정에 대한 서면통고로 기간이 개시된다.

② 신청인이 책임 없이 기한의 준수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원상회복은 방해의 중지 후 2주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유에 대한 요건은 신청제기시 또는 그 신청에 관한 절차 중에 확정되어야 한다. 신청기간 이내에는 지체된 법률행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된 경우에 원상회복 역시 신청 없이 허용될 수 있다.

④ 지체기간의 종결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상회복신청은 그 신청이 1년 기간의 경과 전에 더 큰 강제력의 결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조치의 착수신청〕 ① 신청인이 조치의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법판결신청은 법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 소환을 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의 착수신청 이후 3개월의 경과 전에는 제기되어 질 수 있다.

② 신청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의 경과시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된 조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소송이 중지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제기가 1년기간의 경과 전에 더 큰 강제력의 결과 불가능하거나 개별적인 경우 특별한 조건하에서 중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치의 착수신청 제기 후 1년의 경과시까지만 허용된다.

제114조 〔조치의 중지〕 ① 사법판결신청은 연기의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실현이 좌절되거나 중대하게 방해받고 있으며 즉각적인 집행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취소조치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잠정적인 지시를 발할 수 있다. 행정법원법 제123조 제1항은 이에 준용된다. 결정은 취소될 수 없다. 단,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항상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판결신청은 사법판결신청제기전에 허용된다.

제115조 〔사법판결〕 ① 법원은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② 그 조치가 위법하고 신청인이 이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조치를 취소하고 행정전치절차가 선행되어진 경우 이의결정을 취소한다. 그 조치가 이미 집행된 경우 법원은 그 사안의 심리종결 후 교도소가 그 집행을 철회할 것과 그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③ 그 조치가 사전에 철회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인이 이러한 확인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신청에 의하여 선언할 수 있다.

④ 그 조치의 각하 또는 중지가 위법하고 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안의 심리종결 후 신청 받은 직무행위를 착수해야 하는 교도소의 의무를 선언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법원의 법률적 소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선언한다.

⑤ 교도소가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조치, 조치의 각하 또는 중지가 재량의 법적 한계를 일탈했거나 또는 재량에 의하여 권한의 목적에 상응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법한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제116조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① 법원의 형사집행부의 사법판결에 대하여 권리의 보충 또는 일관성 있는 판결의 보장을 위한 재검토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허용된다.

②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만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다. 법률은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③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연기의 효력이 없다. 제114조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④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를 위해서는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의 관할〕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법원의 형집행부가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법원의 형사부가 판결한다.

제118조 〔형식, 기한, 이유〕 ①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그 판결을 취소한 법원에 대하여 사법판결의 송달 후 1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그 판결의 취소 및 무효가 신청되는 범위에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② 판결이 절차에 관한 법규위반 또는 기타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의 여부는 근거에 기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흠결을 포함하는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③ 항고인으로서의 신청인은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 또는 법원직원의 조서에 의해서만 항고할 수 있다.

제119조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에 관한 판결〕 ① 형사부는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② 항고의 심사는 단지 항고신청만이 기초가 될 수 있고, 절차의 흠결이 항고의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의 근거로 적시된 사실만이 그 기초가 된다.

③ 항고의 각하결정은 형사부가 그 항고를 만장일치로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든가 또는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취소된 판결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형사부는 그 사안이 심리종결된 경우 형집행부를 대신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 사안이 새로이 판결되도록 형집행부로 환송되어야 한다.

⑤ 형사부의 판결은 종국판결이 된다.

제120조 〔기타 규정의 준용〕 ① 이 법에 달리 규정 없는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원조에 대한 승인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 〔소송비용〕 ① 결심공판에서 누가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를 부담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확정판결절차에서 패소하거나 자기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그 조치가 신청의 철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1항의 결정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를 합리적인 평판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 2문은 제1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밖에는 형사소송법 제464조 내지 제473조가 준용된다.

⑤ 제109조 이하의 소송비용을 위해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제47조)의 초과부분인 30마르크를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의 초과부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절 형집행 및 미결구금

제122조 ① 미결구금이 형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중단되거나 기결수에 대하여 다른 사안으로 미결구금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제4조 제2항과는 달리 미결구금의 목적에 필요한 수형자의 자유가 제한된다. 필요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의거한 권한 있는 법관이 지시한다.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6항 2호 및 3호가 준용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제148a조를 준용해야 한다.

제16절 사회치료시설

제123조 〔사회치료시설 및 부서〕 ① 제9조에 의한 집행을 위하여 여타의 교도소와는 별도로 사회치료시설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교도소 내에 사회치료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서에 대하여는 사회치료시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① 사회치료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석방준비를 위하여 6개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5항은 이에 준용된다.

② 휴가자에 대하여는 휴가명령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휴가자는 사회치료시설이 지정한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을 것과 일시적으로 사회치료시설에 귀소할 것을 특별하게 지시 받을 수 있다.

③ 제14조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휴가는 이것이 수형자의 처우상 불가피한 경우 철회된다.

제125조 〔자의적 원칙에 의한 수용〕 ① 원래의 수형자는 그의 신청으로 그의 처우목적에 위협이 되고 사회치료시설에서의 체류가 이러한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이 수용은 언제나 취소될 수 있다.

② 수용자에 대하여는 집행조치가 직접강제에 의하여 실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는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제126조 〔후속의 보호〕 사회치료시설을 위한 전문가의 수는 수형자가 다른 방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한 수형자의 후속하는 보호가 보장되는 정도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127조 삭제

제128조 삭제

제 3 장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제 1 절 보안구금

제129조 〔수용목적〕 보안구금자는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수용된다. 이는 보

안구금자가 자유로운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130조 〔기타 규정의 적용〕 보안구금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3조 내지 제126조, 제179조 내지 187조)을 적용한다.

제131조 〔설비〕 보안구금시설 특히 구금실의 설비 및 개선과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는 수용자에게 시설에서 그의 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고 오랜 자유박탈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보안구금자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고려되어야 한다.

제132조 〔복장〕 수용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자변으로 세탁·수선 및 정기적인 갈아입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복장, 세면도구 및 침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3조 〔자발적 노역, 용돈〕 ① 수용자에게는 석방 후에 취업을 위한 능력을 주선, 유지 또는 증진할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고 자발적인 노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② 용돈(제46조)은 월 30마르크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4조 〔석방준비〕 석방을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집행을 완화하여 1개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사회치료시설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124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5조 〔여자교도소에의 보안구금〕 여자의 보안구금은 이 시설이 보안구금을 위해 설치된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된 여자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제 2 절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제136조 〔정신병원수용〕 정신병원 수용자의 처우는 의사의 견해에 따른다. 수용자는 가능한 한 치료되어야 하거나 더 이상 위험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까지 그의 상태가 호전되어야 한다.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보호 및 간호가 허용된다.

제137조 〔금단치료시설 수용〕 금단치료시설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목적은 그의 상습성을 치료하고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제거함에 있다.

제138조 〔기타 규정의 적용〕 ① 정신병원 또는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법에 따른다.

② 수용에는 제51조 제4항 및 제5항, 제75조 제3항 및 제109조 내지 제121조가 준용된다.

제 4 장 집행관청

제 1 절 교도소의 종류 및 시설

제139조 〔교도소〕 자유형 및 보안구금에의 수용은 주 사법행정시설(교도소)에서 집행되어진다.

제140조 〔집행의 격리〕 ① 보안구금에 있어서의 수용은 분리된 교도소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된 교도소의 분리된 부서에서 집행되어진다.

② 여자는 남자와 분리되어 특별한 여자교도소에 수용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자교도소 내에 여자를 위하여 분리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다른 교도소 또는 다른 부서에서의 처우조치에 대한 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분리수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 〔차별〕 ①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수형자의 상이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처우가 보장되는 별개의 교도소 또는 부서에 구금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폐쇄교도소는 안전한 수용을 규정하고 개방교도소는 도주방지책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의 대비책만을 규정한다.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여자교도소에는 자녀가 있는 부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3조 〔교도소의 규모와 형태〕 ① 교도소는 개개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도소는 수형자가 개선가능 보호집단 및 처우집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③ 사회치료시설 및 여자를 위한 사법집행시설로서 마련된 수용시설은 200석 규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44조 〔실내의 크기와 형태〕 ① 휴가와 자유시간에 체류하기 위한 실 및 공동거실과 접견실은 생활이 가능해야 하거나 혹은 그 밖의 목적에 상응할 정도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실내는 충분한 통풍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충분한 난방시설, 통풍시설, 밑바닥 및 창문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연방참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통풍에 관한 세부시행령을 통하여 통풍시설, 밑바닥면적, 창문면적 및 실내의 난방시설과 설치물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5조 〔수용능력의 확정〕 감독관청은 휴식시간(제18조)도안 적정한 수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도소의 수용능력을 확정한다. 이 경우 작업,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충분한 수의 장소와 아울러 기도, 자유시간, 운동, 치료조치 및 접견을 위한 시설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6조 〔과밀수용의 금지〕 ① 거실에는 허용된 숫자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이에 대한 예외는 단지 일시적으로 관할관청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석방준비를 위하여 폐쇄교도소를 개방시설에 편입하거나 특별개방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8조 〔근로의 진흥, 직업교육을 위한 기회〕 ① 교도소는 근로 및 경제단체 및 부서의 협력하에 모든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가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수형자가 직업상의 지원, 자문 및 알선 받도록 기여해야 한다.

② 교도소는 적절한 조직상의 조치에 의하여 연방노동부가 직업상담, 근로상담 및 근로알선과 같은 그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49조 〔작업의 운영,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① 교도소는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영업장 및 직업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설(제37조 제3항)과 작업요법적인 노역(제37조 제5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영업장 및 기타의 시설은 교도소 외부의 조건과 똑같이 한다. 근로보호규정 및 산재방지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③ 직업교육 및 작업요법적인 노역은 또한 사기업의 적절한 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④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영업장 및 기타 시설에서의 기술지도 및 전문지도는 그 기업의 종업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0조 〔교도소연합회〕 각 주는 제139조 내지 제149조에 의거하여 교도소를 위하여 교도소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절 교도소 감독

제151조 〔감독관청〕 ① 주 법무부는 교도소에 관하여 감독한다. 주 교정국에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근로사항에 대한 감독 및 수형자의 사회적 지원, 재교육, 위생보호와 기타 전문적인 처우에 대한 감독은 각각의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이 독자적인 전문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52조 〔집행계획서〕 ① 주 법무부는 집행계획서에 교도소 장소적, 물적 관할을 규정한다.

② 집행계획서는 어느 수형자를 지정교도소 또는 지정교정부서로 지정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기타의 집행을 위한 이송에 관해서는 처우 및 수용의 사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③ 기타 관할권에 대하여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3조 〔이송을 위한 관할〕 주 법무부은 이송을 위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이를 중앙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절 교도소의 내부구성

제154조 〔공동작업〕 ① 모든 수형자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며 집행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② 석방부조를 위한 관청 및 부서, 보호관찰, 행상감시를 위한 감독부서, 노동관서,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의 담당자, 기타 관청의 구휼시설 및 복지사업단체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수용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5조 〔교도관〕 ① 교도소의 업무는 교도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는 교도소의 기타 교도관 및 겸직하고 있거나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각의 교도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따라 상이한 직무집단의 공무원 수, 다시 말해서 일반교도관, 행정담당관 및 작업담당관 및 목사,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및 사회복지담당관의 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56조 〔교도소의 감독〕 ① 각각의 교도소에는 직무 감독을 위한 상급직책 공무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는 상위직책의 공무원에 의하여 지휘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대외적으로 교도소를 대표한다. 교도소장은 다른 교도관의 특정한 책임직무영역이 아니거나 다른 교도관의 공동책임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한 전체의 집행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제82조 제2항에 의한 교도관의 지시, 제88조에 의한 특별한 안전조치 및 제103조에 의한 징벌조치를 지시하는 권한은 감독관청의 동의에 의해서만 위임할 수 있다.

제157조 〔사제직〕 ① 사제는 그때그때 종교공동체와의 협의로 중앙부서 안에 임명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② 종교공동체 소속원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사제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장의 동의에 의하여 교도소사제는 임의의 보조사제를 둘 수 있으며 예배 및 기타 종교행사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사제를 초빙할 수 있다.

제158조 〔의료부조〕 ① 의료부조는 전임의사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부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겸임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의무가 있는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자의 간호는 질병간호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제1문상의 자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의 질병간호 기타의 교육경력이 있는 일반교도관 중에서도 또한 임명될 수 있다.

제159조 〔회의〕 집행계획서의 수립 및 조사 그리고 중요한 집행상의 결정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처우에 결정권이 있는 당사자와의 회의를 개최한다.

제160조 〔수형자공동책임〕 수형자 및 수용자가 그의 개성과 교도소의 직무에 비추어 협력에 적합한 공동리익업무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1조 〔교도소 규칙〕 ① 교도소장은 교도소 규칙을 제정한다. 이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요한다.

② 교도소 규칙에는 특히 다음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견시간, 접견의 회수 및 기간

2. 작업시간,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
3. 신상, 신청 및 이의의 제출 또는 감독관청의 장에 대한 청원

③ 교도소 규칙의 인쇄물은 모든 거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 4 절 교도소 고문회

제162조 〔고문회의 설치〕 ① 교도소에는 고문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도관은 고문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세부사항은 각 주가 정한다.

제163조 〔고문회의 임무〕 고문회의 구성원은 집행의 형태 및 수형자의 보호에 협력한다. 고문회의 구성원은 격려와 개선의 조언으로 교도소장을 후원하며 석방 후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

제164조 〔고문회의 권한〕 ① 고문회의 구성원은 특히 소원사항, 격려사항 및 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문회의 구성원은 수용, 노역, 직업교육, 급양, 의료보호 및 처우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교도소 및 그 시설을 검열할 수 있다.

② 고문회의 구성원은 수형자 및 수용자를 그들의 구금실에서 접견할 수 있다. 의견개진과 문서수발은 감시 받지 아니한다.

제165조 〔비밀유지의 의무〕 고문회의 구성원은 그 성질상 비밀로 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 특히 수형자 및 수용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그의 직무 밖에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 절 행형에서의 범죄학 연구

제166조 ① 범죄학의 연구부는 연구조직들과 협조하여 집행, 특히 처우방법을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으며 형사재판의 목적을 위하여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제1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기타 교도소에서의 자유박탈처분, 정보보호, 사회보장 및 취업보장, 종결규정

제 1 절 교도소에서 형구금의 집행

제167조 〔원칙〕 교도소에서 형구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이하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유형의 집행(제2조 내지 제122조, 제179조 내지 187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 〔수용, 접견 및 문서수발〕 ①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제17조 및 제18조) 중의 공동수용은 수형자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허용된다. 형사구금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호처분의 집행의 중단 중에 유치가 집행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는 매주 1회의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접견 및 문서수발은 교도소의 안전 또는 질서의 이유상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지될 수 있거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제169조 〔의류, 세탁물 및 침구〕 수형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형자가 자변으로 세탁, 수선 및 규칙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류, 세탁물 및 자신의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0조 〔구입〕 수형자는 식료품, 기호품 및 상당한 정도의 건강식품을 교도소의 주선을 통하여 자변취득할 수 있다.

제 2 절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및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

제171조 〔원칙〕 법원이 명령한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에 대하여는 구금의 본질 및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이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자유형의 집행(제3조 내지 제12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2조 〔수용〕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제17조 및 제18조)중의 공동수용은 수형자의 사전동의에 의하여만 허용된다. 금고형의 중단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 중에 질서구금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3조 〔의류, 세탁물 및 침구〕 수형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형자가 자신

의 비용으로 세탁과 수선을 한다면 자기만의 의류, 세탁물 및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4조 〔구입〕 수형자는 식료품 및 기호품과 아울러 건강식품을 상당한 범위에서 자변으로 교도소의 주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75조 〔작업〕 수형자는 작업, 노역 또는 보조업무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3 절 소년교도소 및 미결구금집행에 있어서의 노임

제176조 〔소년교도소〕 ① 소년교도소에 있는 수형자가 그에게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도급작업 및 단순반복작업에 관한 소년노동보호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 제43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상당한 임금을 받는다. 수형자가 기타 그에게 지정된 노역 또는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형자는 이것이 그의 노역 및 작업의 종류에 부합하는 한 제1문에 의한 임금을 받는다.

② 그 자신에 있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지정받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 그에게 제45조 제2항의 요건이 있는 병자인 수형자 및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임신 중의 모는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결손보상금의 가액 및 기간은 이 법 제45조 제3항 내지 6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③ 불구를 이유로 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에게 결손보상금 또는 그 이상 어느 것도 받지 수형자는 필요한 경우 상당한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 본조 1항 2문에 의한 노역 및 보조업무에 대하여 노임을 받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④ 기타 이 법 제44조 및 제49조 내지 제52조가 준용된다.

제177조 〔미결구금〕 미결수형자가 그에게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는 제43조에 상당한 노임을 받는다.

제 4 절 교도소에서의 직접강제

제178조 ① 직접강제에 관한 본법 제94조 내지 제101조는 다음 항에 의하여 행형법(제1조)의 적용범위 이외에 교도관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② 미결구금의 집행 및 형사소송법 제126a조에 의한 일반적인 수용의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5항 및 제6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년구금, 형벌구금 및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에 있어

서는 도주의 방지 또는 재체포(제100조 제1항 3호)를 위하여 총포가 사용될 수 없다. 미결구금, 형사구금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수용의 중단에 있어서 형벌구금 또는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이 집행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주법은 특히 소년형사범의 집행에 있어서 총포사용권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 절 정보보호

제179조 〔정보조사〕 ① 집행관청은 동 법에 의해 부과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적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적 정보는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당사자의 협력 없이 행해진 조사,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지위에 대한 조사 및 지시의무와 해명의무에 대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된다.

③ 수형자가 아닌 자에 대한 정보는 수형자의 처우, 교도소의 안전 혹은 자유형 집행의 보장을 위해 불가결하고 조사방법이 당사자의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관청의 외부에 있는 자 혹은 지위에 대해 그들의 협력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언급된 목적이 위태롭지 않다면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인적 정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통고 받는다. 다른 자와 지위에 대한 정보가 조사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통고되지 않을 수 있다.

1. 법규정에 의한 정보 혹은 본질적인 정보, 특히 제3자에 대해 우월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인한 본질적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혹은
2. 통고비용은 보호목적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우월하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180조 〔소비와 사용〕 ① 집행관청은 동 법에 의해 부과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 정보를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집행관청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에게 증명사진의 지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인적 정보는 다음의 경우가 요구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소비와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1. 다른 권한을 위한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비밀을 유지하는 업무를 방어하는 경우 혹은 동 법의 유효영역에 속하는 권력의 사용에 근거하는 계획을 방어하거나 혹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준비행위를 위한 계획을 방어하는 경우
   a) 자유민주주의 기본규정, 연방 혹은 주의 존립 혹은 안전을 위하는 것,
   b) 연방 혹은 주 혹은 그의 구성원의 기본조직의 공무수행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목적을 가지는 경우 혹은

c) 독일에 대한 외국의 이익이 위태로운 경우,

2. 공공복지를 위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
4. 범죄행위의 제지 혹은 소추 및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질서위반에 대한 제지 및 소추를 위한 경우
5. 형집행 조치 혹은 형집행법률의 결정을 위한 경우

③ 사법적 권리보호가 연방정보보호법 제109조 내지 제121조 혹은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의미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해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목적을 초과하여 권한 있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인적 정보를 다음의 경우를 위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1. 법원보조, 소년법원보조, 보호관찰 혹은 집행감독의 조치
2. 사면사안에서의 결정
3. 사법원조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통계
4. 교도소에의 수용으로 박탈된 혹은 감소된 급부에 대한 결정
5. 수형자의 가족을 위한 보조조치에 대한 결정
6. 군인의 수용 및 퇴출과 관련된 군대의 업무상 조치
7. 외국인법에 의한 조치.

다른 목적을 위한 전달은 다른 법적 규정이 이러한 것을 예견하고 동시에 명문으로 수형자 인적 정보와 관계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⑤ 공직자 및 비공직자는 집행관청에게 개인을 교도소에 머물게 할 것이지 혹은 일년 이내에 그를 석방할 것인지 언제 석방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통고할 수 있다.

1. 공직자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통고가 필요한 경우 혹은
2. 비공직자가 이러한 통고의 정당한 이익을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한 경우와 수형자에게 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호가치의 이익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⑥ 인적 정보기록은 업무감독 혹은 전문감독 혹은 업무에 의한 지시에 대해 권한을 갖는 다른 집행관청, 형집행상의 그리고 형법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법원 및 형집행관청에 대해서만 넘겨 줄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류를 허용하는데 인정할 수 없는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혹은 서류열람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위가 이러한 업무수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넘겨줄 수 있다. 이는 집행관청이 평가서와 함께 위임한 직위에 서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⑦ 제1항, 제2항 혹은 제4항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인적 정보는 당사자 혹은 제3자에 대한 기타의 인적 정보를 서류철에 첨부하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양도는 비밀유지에 대한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명백하게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수취인에 의한 이러한 정보의 소비와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⑧ 방문에 대한 혹은 문서수발에 대한 검열 및 소포의 내용에 대한 검열에 있어서 알게된 인적 정보는 제2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제109조 내지 제121조에 의한 사법절차를 위해, 교도소의 안전 혹은 질서의 유지 혹은 수형자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처우의 목적을 위해서만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⑨ 제179조 제3항에 의한 수형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적 정보가 조사되고, 조사된 정보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목적 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범죄의 소추 혹은 방지의 목적실현을 위해서만 소비되고 사용될 수 있다.

⑩ 제182조 제2항, 제184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제한 혹은 특별한 법적 사용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인적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⑪ 전달허용에 대해서는 집행관청이 책임을 진다.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달되었다면 그 기관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관청은 전달신청이 수취인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8항 내지 제10항이 전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한다.

제181조 〔목적의 부합〕 집행관청이 전달한 인적 정보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전달된 경우에만 소비되고 사용될 수 있다. 수취인은 정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달될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비공공기관에 대해 전달함에 있어서 전달한 집행관청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집행관청은 비공공기관의 수취인에게 제1문의 목적에 부합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2조 〔특별한 정보의 보호〕 ① 수형자의 종교관 혹은 세계관 및 의사의 검진에 의한 인적 정보는 교도소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수형자에 대한 다른 인적 정보는 교도소 내에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알려질 수 있다. 제18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에게 수형자가 털어 놓은 비밀인 인적 정보 혹은 수형자에 대해 기타 알게 된 인적 정보에 대해 집행관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는 집행관청의 임무수행을 위해 혹은 수형자 혹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알릴 수 있다. 의사는 일반적인 건강보호의 범위 내

에서 인지하게 된 비밀을 집행관청의 임무수행을 위해 불가결하거나 혹은 수형자 혹은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알릴 수 있다. 기타의 공시권한은 고려되지 않는다. 수형자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인정된 공시권한이 시행되기 이전에 통고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알려진 정보는 공시된 혹은 공시가 허용된 경우에만 그리고 형법 제2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가 권한을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소비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④ 수형자에 대한 검진과 치료에 교도소 외부의 의사 혹은 심리학자가 위임된 경우에 제2항은 위임된 의사 혹은 심리학자가 교도소의사 혹은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치료하는 신리학자에게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 준용된다.

제183조 〔기록과 파일에 있는 정보의 보호〕 ① 각각의 교도관은 인적 정보를 그에게 부과된 임무수행을 위해 혹은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지할 수 있다.

② 인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기록과 파일은 필요한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처분에 의해서만 권한 없는 사용에 대해 보호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기록과 질병기록은 다른 서류와 분류하여야 하며 특별히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기타의 사항은 연방정보보호법 제9조의 보호예방수단의 방법과 범위에 준용된다.

제184조 〔수정, 삭제와 폐쇄〕 ① 파일에 저장된 인적 정보는 수형자가 석방되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늦어도 2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수형자의 인적서류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형자의 인적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의 만료시까지 성, 이름, 탄생이름, 생일, 탄쟁지, 교도소 입소일과 출소일에 대한 기록은 삭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록상의 인적 정보는 수형자가 석방되고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달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1. 범죄소추를 위한 경우
2. 제186조에 의해 학문적인 연구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3. 긴급히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된 권리요구를 확정, 실행 혹은 거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용제한은 수형자에게 새롭게 자유형이 집행되거나 혹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③ 제2항의 의해 폐쇄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에 다음의 기간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형자의 인적 서류, 건강서류 및 질병서류는 20년,

수형명부는 30년.

이는 제2항 제1문이 규정한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보관이 필요하다는 특정한 사안에 근거하여 수용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보존기간은 기록상 옮겨진 해에 이어지는 역년과 함께 시작된다.

④ 부정한 정보가 전달되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에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취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고해야 한다.

⑤ 기타의 사항은 연방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7호의 인적 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와 폐쇄가 준용된다.

제185조 〔당사자에 대한 통지, 서류열람〕 당사자는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의 조치에 의해 통고를 받으며, 통고가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위해 열람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열람한다.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정보보호를 위해 연방위임의 직은 정보보호를 위한 주위임자가 대신할 수 있으며 최고 연방관청의 직에는 부합하는 주관청이 대신한다.

제186조 〔학문적 목적을 위한 통지와 기록열람〕 ①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 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고등학교, 학문적인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전달될 수 있다.

1. 특정한 학문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익명의 정보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의 공적 이익이 전달하지 않은 당사자의 보호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

② 정보의 전달은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이를 허용하는 것이 비례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통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른 경우에는 기록열람도 허용될 수 있다. 기록은 열람을 위해 송달될 수 있다.

③ 인적 정보는 공무원 혹은 공적업무를 위해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자 혹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의무법 제1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호는 비밀유지를 위한 의무에 대해 준용한다.

④ 인적 정보는 전달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연구를 위한 사용 혹은 순차적인 전달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행하며 정보전달을 지시하는 지위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⑤ 제3자가 권한 없이 인지한 것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학문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인적 정보가 장소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러한 해당 업무 혹은 사무목적의 수행과 분리되어서 사용되어야 함을 배려해야 한다.

⑥ 연구목적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적 정보는 익명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혹은 확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인적 혹은 물적 관계에 대한 개개의 표시가 분류될 수 있는 특징을 특별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연구목적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익명화된 정보를 개개의 표시와 결합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인적 정보를 보관하는 자는 이러한 정보를 행장의 기록사실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공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에 있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⑧ 수취인이 비공공 기관이라면 정보보호의 규정을 침해하기 위한 충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수취인이 인적 정보를 자료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기관이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의 실현을 감독하는 비율에 의해 연방정보보호법 제38조가 적용된다.

제18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공공기관 혹은 비공공기관(제2조), 기타의 개념정의(제3조),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청구 및 형식(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정보비밀(제5조), 당사자의 필수적인 권리(제6조 제1항), 및 정보보호의 실행(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방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주 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 형벌규정, 벌금형규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주 위임자를 통한 조정에 대한 규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제 6 절 연방법의 조화

제188조 삭제

제189조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비용에 대한 규정〕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비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조

제 7 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제190조 〔제국보험법〕 제국보험법 제163a조, 제165c조 참조

제191조 〔근로자보험법〕 근로자보험법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32조, 제82조 제112조, 제205조 참조

제192조 〔제국광부조합법〕 제국광부조합법 제18조 참조

제193조 〔농부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 농부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제30조, 제42조, 제49a조 참조

제194조 삭제

제195조 〔기여금의 유보〕 집행관청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연방노동시설을 위하여 기여금을 출연해야 하는 한 집행관청은 수형자가 고용인으로서 노임, 직업양성기간 중의 특별부양수당 또는 결손보상금 보수를 받은 경우는 기여금에 대한 수형자의 출자분에 상당하는 기여금을 이들 보수에서 유보할 수 있다.

제 8 절 기본권의 제한, 시행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기본법 제2조 제2항 1호 및 2호(사람의 신체의 불가침 및 자유) 및 제10조 제1항(서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그 적용이 제한된다.

제197조 삭제

제198조 〔시행〕 ① 동법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제199조 및 제201조와 관계없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음의 규정은 198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 작업지정

제39조 제1항 : 임의적 작업조건

제41조 제2항 : 재교육 조치시에 있어서의 동의 필요성

제149조 제1항 : 작업의 운영,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제162조 제1항 : 고문회

③ 다음의 규정은 특별연방법에 의하여 시행되어진다.

제41조 제3항 : 기업체에서의 작업시 동의 필요성

제45조 : 결손보상금

제46조 : 용돈

제47조 :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제49조 : 생활비

제50조 : 구금비용

제65조 : 제2항1호 병원체류시의 의료보험급부

제93조 : 제2항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의 징발

제176조 : 제2항 및 제3항 소년형집행에 있어서의 결손보상금 및 용돈

제189조 : 비용에 관한 명령

제190조 : 1호 내지 10호, 및 13호 내지 18호, 제191조 내지 제193조 사회보험

④ 제41조 제3항 (기업체에서의 작업시 동의필요성)의 시행에 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제1항 수용절차상의 격리시행 및 제201조1호-개방집행에 있어서의 수용의 계속 적용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다.

제199조 〔경과조치〕 특별연방법의 시행시까지는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제46조 용돈에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한다.

"수형자가 그의 고의·과실 없이 근로 및 직업양성기간 중의 특별부양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게 상당한 용돈이 주어진다."

2. 제47조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에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한다.

"① 수형자는 매월 이 법에 규정된 보수의 3분의 2(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및 용돈(제46조)을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의적 노역조건에 있거나(제39조 1항) 자발적 노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제39조 2항) 수형자에게는 그의 보수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이 정해진다."

3. 제50조 구금비용에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은 수형자로부터 구금비용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② 임의적 노역조건에 있는(제39조제1항) 수형자로부터는 사회법 제4권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현물급여의 평가를 평균하여 확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금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연방법무장관은 전년도 10월1일에 적용하는 현물급여평가기준에 의한 매년도 평균노임을 확정하여 이를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구금비용은 보수 중에 압류할 수 없는 부분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또는 생활부조금의 부담분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자발적 노역(제39조 2항)은 본 조 2항에 열거된 법문의 범위내에서 수형자가 구금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4. 제93조 제2항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의 징발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한다.

"② 이러한 요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제47조)을 초과하는 부분에

서 30독일마르크가 또한 청구될 수 있다."

5. 제176조 제3항 소년형사집행에서의 용돈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한다.

"③ 수형자가 그의 고의·과실 없이 노임 및 직업교육조성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필요하는 경우 그에게 상당한 정도의 용돈이 주어진다."

6. (삭제)

제200조 〔노임의 범위〕 ① 제43조에 의한 노임의 산정은 다음연도의 피교육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및 피고용자의 전체 연금보험피보험자의 평균노임에 대하여 5퍼센트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제시된 노임의 지분의 증액에 대하여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제201조 〔기존교도소를 위한 경과규정〕 이 법의 효력발생 전에 그 설립이 개시된 교도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공간적, 인적 및 조직적인 교도소의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한 제10조와는 별도로 수형자는 폐쇄교도소에만 수용될 수 있다.
2. 공간적, 인적 및 조직적인 교도소의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7조와는 별도로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에 공동수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시간 중의 공동수용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만 제한될 수 있다.
3. 교도소의 공간적인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8조와는 별도로 수형자는 휴식시간 중에도 공동으로 수용될 수 있다. 공동수용은 1985년 12월31일까지만 허용된다.
4.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교도소는 개별적으로 시정된 처우의 필요성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형자가 전망 있는 보호집단 및 처우집단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5. 제145조와는 별도로 교도소의 수용능력은 본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제202조 〔독일자유민주국가의 자유형 및 소년형〕 ① 소년과 청년에 대한 독일자유민주국가의 형법에 의해 인지된 자유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년형의 집행을 위한 규정, 소년교도소의 집행을 위한 규정, 소년구금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독일자유민주국가의 형법에 의해서 법률효력이 부여된 자유형과 구금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대한 행형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Ⅲ. 독일 형집행령

1956년 2월 15일 제정, 2001년 3월 1일 이후 유효규정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제21조)
제2장 자유형의 집행(제22조~제33조)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① 형집행령은 판결 및 형벌과 부대결과 혹은 보안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부수형벌에 대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의 집행에 적용된다.
② 형집행령은 제87조 내지 제88조가 확정하는 범위에서 질서위반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 및 형벌사안과 벌금사안에 있어서의 질서구금과 강제구금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③ 형집행령은 소년법원법, 소년교도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포함하는 소년법원법의 지침, 군교도소령 및 질서위반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 대한 결정의 집행에 적용된다.

제2조 〔엄격한 집행〕 ① 효과적인 형사법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사법결정은 엄격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② 집행은 원칙적으로 사면요청 및 다른 청원과 진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임무〕 ① 집행기관은 집행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한다. 집행기관은 사법결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② 교도소의 특별의무영역이 집행기관의 책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a)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검찰이다.

b) 고등법원이 제1심에서 판결을 하고 제3호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장이다(헌법 제96조 제5항, 법원기본법 제120조, 제142a조).

c) 제1심에서 연방의 재판관할권의 시행에 대한 판결사안에서는 연방법원의 연방검사장이다.

제5조 삭제

제6조 〔긴급한 집행명령을 위한 사물관할〕 집행기관의 사물관할이 즉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을 대신하여 검사장이 긴급한 형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집행기관의 장소관할〕 ① 집행기관의 장소관할은 제1심 법원에 따른다(법원기본법 제143조 제1항 참조).

② 상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2항, 제354a조와 제355조의 경우에 사안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판결을 취소하고 다른 법원으로 환송하였다면 집행기관의 관할은 동 법원이 결정한다.

재수용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법원조직법 제140a조 제1항, 제3항 제2문에서의 집행기관의 관할은 이러한 결정을 행한 법원에 따른다.

③ 집행기관의 장소 관할이 즉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긴급집행명령은 장소관할권이 없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143조 제2항과 동일).

④ 추가로 부과된 병합형의 집행을 위한 관할은 그것을 부과한 법원에 따른다.

제8조 〔병합형의 집행〕 병합형의 집행을 관할하는 집행기관은 병합형의 형성과 집행의 인수를 지체없이 모든 해당 절차에 통고한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통고시에 법률 효력의 시행시기를 알 수 있게 하는 병합형의 결정에 대한 인식부분의 공증서를 첨가한다.

제9조 〔집행원조〕 ① 집행기관의 주소가 있는 주 외부에서의 집행명령이 주관청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위한 장소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주의 검찰은 집행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형벌집행과 1999년 6월 8일의 형벌 및 벌금사건에 있어서 다른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의 집행의 간이화와 신속성을 위한 독일연방 州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은 자유형의 집행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기본법 제162조, 제163조에 의해

결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 특히 형법 제63조, 제64조 혹은 제66조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 이러한 결정이 적절하게 준용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
다른 주의 처분집행시설 형법 제63조 혹은 64조에 의한 구금의 집행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다면 이 주의 장소관할을 갖는 검찰은 처분집행시설에의 수용을 위한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제48조 내지 제5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② 검사장은 그가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법관리에 의한 형집행〕 형집행의 업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사법관리법 제31조와 형벌 및 벌금형 사안을 집행하는 사법관리의 업무한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집행에 대한 문서자료〕 ① 집행은 결정에 대한 확정력을 전제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49조).
② 집행의 문서자료 결정 혹은 결정의 인지부분에 대한 원본 혹은 공증서이다. 문서자료에 의해 집행이 언제 개시되는가에 대한 확정력이 증명되고 부여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③ 확정력은 서면에 의한 판단근거가 제시되기 이전에도 증명될 수 있다. 형이 확정된 자가 구속중이라면 확정력이 증명되는 장소에서는 확정력이 개시된 이후 3일 이내에 집행의 문서자료를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④ 확정력은 제1심 법원에 근무하는 기록계원이 증명한다. 항소판결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근무하는 기록계원이 증명한다.
⑤ 판결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집행을 위해 필요한 판결에 대한 인지부분의 공증사본을 보관한다. 상고법원에 근무하는 기록계원은 상고판결의 인지부분에 대한 공증사본을 지체없이 집행기관에 송달한다.
다만, 이러한 것은 이의가 제기된 판결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 혹은 스스로 집행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상고가 결정을 통해 기각된 경우와 서류를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4조 〔집행에 대한 기타 문서자료〕 ① 집행에 대한 기타 문서자료는 결정 혹은 결정의 인

지부분에 대한 원본 혹은 공증사본이며, 이러한 문서자료를 통해

1. 조건부 형벌(형법 제59b조)을 위한 판결이 제시되며,
2.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자유형 및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의 집행순서에 대해 명령하며,
3. 형정지, 잔여형벌 정지 혹은 구금정지(형법 제56f조, 제1항, 제57조 제3항, 제57a조 제3항, 제67g조 제1항 내지 제3항) 혹은 형면제(형법 제56g조 제2항)이 취소되며,
4. 자유형집행이 지시되고(형법 제67조 제5항 제2문 두번째 문장),
5. 자유를 박탈하는 다른 처분의 집행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지시되고(형법 제67a조 제1항 내지 제3항),
6. 형법 제67c조 제2항에 의해 구금집행이 지시되고,
7. 형법 제67d조 제5항에 의해 자유박탈시설에의 구금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8. 자유를 박탈하는 다음 처분의 집행이 지시된다(형법 제72조 제3항).

② 제13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제15조 〔집행장〕 ① 형집행 개시를 위한 서류들이 필요한 집행명령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들을 집행기관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 상소절차의 실행은 지연될 수 없다.

② 동시에 서류들이 집행동안에 다른 용도에 의해 필요하게 되거나 혹은 더 큰 범위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집행장에 근거해야 한다. 여러 명이 선고를 받은 형사사건의 경우에 선고를 받은 각각의 자는 특별한 집행장을 필요로 한다.

제16조 〔집행장의 내용〕 ① 집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된다.

1. 확정력을 증명하는 결정의 공증사본과 형사소송법 제418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고소, 형집행명령 혹은 형집행명령의 청구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는 문서 혹은 결정의 공증사본 및 사후에 병합형이 형성되는 경우의 결정에 대한 공증사본,
2. 확정력을 증명하는 다음의 결정들에 대한 공증사본,
   a) 잔여형벌 혹은 보호관찰을 위한 구금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
   b) 제14조 제1항에서 명시된 결정
3. 결정에 대한 공증사본, 이 사본을 통해서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상소에 대해 결정한다. 형집행에 관계되는 기타의 결정에 대한 공증사본,
4. 형기 계산을 위한 표준서,
5. 형집행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규정, 신청서, 청원서 및 기타 서류

② 필요경비의 청산에 대해 관할하는 지불창구의 비용계산서, 지불공고 및 정보는 집행장의 첫째 장 앞의 겉 표지로 철하거나 혹은 이렇게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낱표지로 보관한다.

제17조 〔범인의 인도와 추방시의 집행의 포기〕 ① 선고된 자가 다른 행위로 인하여 외국 정부로 인도되어야 하는 경우 혹은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의해서 추방되어야 하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제정된 주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유형, 대체자유형 혹은 보안처분의 집행을 포기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포기한다면 집행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외무관청에 통고하고 연방중앙기록소에 수사메모를 기록해둔다.

② 집행기관은 집행의 포기와 동시에 인도된 혹은 추방된 자가 돌아오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사항을 지시하고, 구속명령 혹은 구금명령을 공포하며 필요한 수배조치, 특히 체포를 위해 공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고된 자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지는 사항은 서류로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집행시설에 전달될 수 있다.

제18조 〔외국과의 사법공조〕 외국과의 사법공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의 국제법상의 협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외국과의 교류를 위한 원칙 등이 적용된다.

제19조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확정력〕 여러 명의 피고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57조가 나머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집행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상고법원이 집행되어야 하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집행이 중단될 수 있다.

제20조 〔소멸시효의 연장〕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인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상급 사법기관에 통고한 이후에 소멸시효의 연장(형법 제79b조)을 신청한다.

제21조 〔항고〕 ① 결정 혹은 집행기관의 다른 규칙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의 기관이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459h조, 소년법원법 제83조 제1항).

1. 검찰, 경우에 따라서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소년부판사가 이의가 제기된 결정 혹은 규칙에 관여된 경우에는 검사장이 결정한다.
2. 검사장이 이의가 제기된 결정 혹은 규칙에 관여된 경우에는 상급 州사법행정기관이 결정한다.
3. 연방대법원의 연방재판소장이 이의가 제기된 결정 혹은 규칙에 관여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근거하여 집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2 장 자유형의 집행

제22조 〔집행계획〕 ① 집행계획(행형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각각의 재판관할구역에 소년구금, 자유형과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물적·장소적으로 관할권이 있는 집행시설을 설립한다.

② 집행계획은 연방의 재판관할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서 부과된 소년구금, 자유형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위한 물적 관할에 대해 규정한다.

③ 군대가 영장(군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집행하거나 혹은 집행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 미만의 자유형 혹은 소년구금을 (군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집행하는 경우에 사령관은 방위범위 내에서 관할권이 있는 군대의 집행시설에 대해 군대의 법률자문가를 통해 지시한다. 집행에 대한 청원은(군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무시된다.

1. 군인이 개인사유에 의해 혹은 판결이 근거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군대에서의 집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6개월의 합일형보다 더 높은 형이 기대되는 경우
3. 군인이 군대에서의 의무로 인하여 예견되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우
4. 다른 사건에서 군인에 대하여 미결구금, 형사소송법 제453c조에 의한 보안구금 혹은 형사소송법 제126a조에 의한 일시적 구금이 지시되어진 경우.

제2문 제4호의 경우에는 군대집행시설에서 이미 시작된 형집행은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제23조 〔집행의 사물관할〕 ① 집행계획이 교도소의 사물관할을 집행기간에 의해 결정하게 한다면 유죄 선고된 자가 관할권이 있는 집행시설에 수용되는 날로부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사후에 형성된 합일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또한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된 형벌의 집행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혹은 종결된 경우에 합일형의 집행시에 남아있는 잔여형이 표준이 된다. 남아 있는 잔여형이 집행시설의 사물관할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는다. 여러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집행의 사물관할에는 제43조 제6항이 준용된다.

② 집행시설의 사물관할이 유죄 선고된 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면 관할권이 있는 집행시설에 수용된 날이 표준이 된다.

③ 집행기관은 수용시에 계산되는 집행기간 혹은 나이가 집행계획과 2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 〔집행의 장소관할〕 ① 집행시설의 장소관할은 유죄 선고된 자의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관청의 보호에 의해 최후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재판관할에 의해 결정한다.

군인의 경우에는 현재위치에 있는 재판관할에 의해 결정한다. 유죄 선고된 자가 관청의 보호를 받는다면 6개월 미만의 집행기간에 있어서의 관할권은 보호장소에 의해 결정된다.

주소지란 유죄 선고된 자가 그의 생활의 주요시기를 보내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리고 규칙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정에 따라 자의로 머물렀던 장소를 말한다. 거주지란 관청이 보호하지 않는 유죄 선고된 자가 짧은 기간 실제적으로 머물렀던 장소를 말한다.

② 6개월 이상의 집행기간이 부과된 형벌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교도소에서 집행되는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수용에 대한 심리(형집행업무규칙 제16호) 이후 2주 이내에 신청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도소로 이감해야 한다. 그러한 형벌이 미결구금을 첨가 혹은 중단하여 집행된다면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업무규칙 제32호 제5항에 의한 통고 이후 2주 이내에 교도소에 신청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도소에 이감해야 한다.

교도소는 그에게 수용심리시 혹은 형집행업무규칙 제32호 제5항에 의한 통고시에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이감되어야 하는 다른 주의 교도소는 교도소의 장소관할을 결정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통고한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제1항의 장소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교도소의 장소관할은 제1심 법원에서 인지된 법원의 소재지에 의해 결정한다.

6개월 이하의 집행기간의 경우에 기결수는 최소한의 이송비용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교도소의 사물관할에서 지시될 수 있다. 남은 집행기간이 이러한 교도소의 사물관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송된 교도소에서 잔여형벌이 집행된다. 그러나 기결수에게 잔여형벌을 이미 다

른 물적 장소적으로 관할권이 있는 혹은 제26조에 의해 특정된 교도소에서 집행하고 있다면 잔여형기 및 잔여형벌은 이 교도소에서 집행된다.

다만 집행하는 교도소가 전체적인 잔여집행기간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기결수가 제2항 제1문과 제2문에 의해 사후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경우에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그밖에 잔여형벌의 집행을 위한 장소관할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결정한다. 기결수가 개방교도소 혹은 대체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계속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폐쇄교도소 혹은 규정된 교도소가 표준이 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4항, 제455a조에서 제시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연방검찰총장은 조건부로 주사법행정기관과 특별하게 합의하여 기결수의 최후 주소지 혹은 주거지가 있는 주의 관할권이 있는 교도소를 지시한다.

제25조 〔청년 기결수에 대한 형집행〕 24세 미만의 기결수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에는 소년법원법 제114조를 위한 규칙이 적용된다.

제26조 〔집행계획의 상이성〕 ① 직무상 혹은 행형법 제7조 제4항, 제8조, 제65조, 제85조, 제152조 제2항 제2문에 근거하는 장소적 혹은 물적 관할권과 관련한 신청에 의해 집행계획과 다를 수 있다. 형법 제63조, 제64조, 소년법원법 제7조에 의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집행에 대해 주법률이 다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한 제1문이 적용된다.

② 상이성은 제1항에서 지적된 경우에 집행의 개시 이전에는 지정에 의해 그리고 집행의 개시 이후에는 이감에 의해 발생하며 상급 집행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정 혹은 이감되어야 하는 교도소가 주의 다른 상급 행정관청의 지휘를 받는다면 이러한 사항 역시 합의되어야 한다. 다른 주의 교도소에 지정되거나 이감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 주의 최고 상급 행정관청이 합의해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형법 제63조, 제64조, 소년법원법 제7조에 의한 보안처분을 집행하고 기결수가 집행계획과 다르게 다른 주의 집행시설에 지정되어야 한다면 최고 사법관청의 심급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주의 관할권이 있는 관청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제27조 〔형벌개시를 위한 소환〕 ① 기결수가 불구속 상태인 경우 집행기관은 기결수를 형벌개시를 위해 직접 소환한다. 이는 형벌이 다른 주의 교도소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형벌의 집행과 형벌 및 벌금형사안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다른 처분에 대한 집행의 간이화와 신속성을 위하여 주들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소환하는 경우에 기결수에게 원칙적으로 그가 지정된 교도소에 도착해야 하는 기간이 결정된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최소한 1주일이 지정된다. 즉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형벌개시를 위해 소환될 수 있다.
소환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는 강제처분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다만 이는 기간에 적정하지 않게 혹은 적절치 않은 시기에 행해진 경우에 한한다.
③ 기결수는 간단한 서면으로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개시를 위해 기결수를 즉각적으로 소환하는 경우, 소환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익이 강조되어야 하는 경우, 무형식의 소환이 개개의 상황에 따라 결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소용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에 형식적인 서류송달이 요구된다.
④ 형벌개시를 위해 군인을 소환하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가장 가까운 징계위원회장에게 동시에 소환장을 송부한다.
⑤ 기결수가 그의 주소지 혹은 거주지로부터 관할권이 있는 교도소로 소환하는 수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까이 소재하는 교도소에 소환될 수 있다. 그곳으로부터 그는 관할권이 있는 교도소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28조 〔이송요청〕 ① 기결수가 구속 상태인 경우 집행기관은 필요하다면 관할권이 있는 교도소로의 이송할 수 있다. 기결수가 다른 사안으로 미결구금 상태인 경우에 형벌은 가능한 한 미결구금을 중지하고 집행해야 한다. 미결의 조사가 경감되거나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종류의 사례들에 있어서는 집행계획과 다를 수 있다.
연방군관청에 의한 집행이 요청될 수 있는(제22조 제3항) 사례들에서 조사구금은 교도소의 집행이 행해지는 경우에만 중지될 수 있다.
② 제27조 제5항의 경우에 기결수에 대한 소환과 동시에 그를 소환하는 교도소에 이송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29조 〔수용요청에 의한 지정〕 ① 집행기관은 수용요청에 근거하여 기결수를 관할권이 있는 교도소에 지정한다. 수용요청서는 교도소에 2부씩 송달한다. 수용요청서는 기결수가 입소하기 이전에 교도소에 도착해야 한다.
② 동시에 여러 명의 기결수가 지정된 경우에 각각의 기결수를 위해 특별한 수용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결수에게 형벌, 잔여형기, 구금, 형면제의 취소 혹은 형법 제67c조 제2항에 규정된 구금의 집행에 대한 결정이 공개적으로 송달되었다면 기결수를 인도하기 위한 수용요청에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결정의 정본 혹은 공증사본 그리고
2. 사후청취(형사소송법 제33a조) 혹은 이전의 상황으로의 복귀를 요청하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항고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53조 제2항 제3문) 가능성에 대한 고지서.

제30조 〔수용요청서의 내용〕 ① 수용요청서에는 기결수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되는 결정에 대한 정확한 표기(법원, 결정날짜 및 기록표시에 대한 지시)
2. 행위표시
3. 집행되는 형벌의 종류와 기간
4. 형기에서 계산해야 하는 시기
5. 산정된 미결구금 혹은 그 밖의 자유박탈의 기간
6. 이미 마친 형기
7. 기결수가 형벌을 개시할 수 있는 기간(제27조 제2항) 혹은 기결수를 관청의 위탁에 의하여 금고형에 이송한다는 지시
8. 기결수의 국적
9. 집행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교도소의 관할에 대한 근거
10. 군인의 경우에 가장 근접한 징벌위원회의 장과 그의 주소
11. 형의 2분의 1이 공무상 면제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형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참조

② 그밖에 집행기관은 집행을 위해 특히 중요한 기타의 지시를 수용요청에 있어서의 사안 기록의 내용으로부터 수용한다. 이는 특히 자살, 도주혐의, 공무원 혹은 동료 수용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위험 혹은 기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중요한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결수가 형사절차에서 혹은 형벌개시 이전에 그의 신체 혹은 정신상태를 조사받아야 하는 경우에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수용요청서는 조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제31조 〔수용요청에 첨부되는 물건〕 ① 수용요청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1.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결정에 대한 온전한 사본; 완전한 결정에 대한 사본이 수용 요청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전송해야 한다.

2. 연방중앙기록으로부터의 발췌, 다만 기록은 가능한 한 6개월을 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형기록 혹은 집행장이 기결수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진단서가 집행을 위해 중요하다면 집행기관은 진단서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구인명령과 구속명령〕 ① 집행기관은 기결수가 발부된 소환에 대해 충분한 사죄 없이

1. 그에게 부여된 기간 내에(제27조 제2항 제1문) 혹은
2. 즉각적인 형벌개시를 위한 소환의 경우에 늦어도 형벌개시를 위한 소환이 송달된 그날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인명령 혹은 구속명령(형사소송법 제457조 제2항 제1문 참조)을 발한다.

② 이는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기결수가 형벌집행에서 도주하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결수가 구두의 통지 이후에 즉각적으로 형벌개시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3. 기결수가 형집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집행을 기피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57조 제2항)

③ 신속한 형집행을 위해 기결수가 적절한 기간에 혹은 적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소환시에 이미 구인명령 혹은 구속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구인명령 혹은 구속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비로소 집행될 수 있다.

1. 소환과정이 증명되었고 집행기관이 교도소에 문의하여 기결수가 소환에 표기된 기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인된 경우
2. 소환을 실행할 수 없고 기결수가 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심이 있는 경우

④ 구인명령 혹은 구속명령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결수에 대한 정확한 표기
2. 집행되는 결정에 대한 사항
3. 집행되는 형벌의 종류와 기간
4. 구인 혹은 구금의 이유
5. 구인 혹은 구금의 신청
6. 기결수가 인도되어야 할 교도소에 대한 사항
7. 대체형벌의 경우 금전에 대한 사항, 이러한 금전을 확정적으로 지불하면 구인과 구속에 중지된다.

빈 면

Ⅳ. 영국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목 차]

제 1 장 중앙행정 (1조~9조)
제 2 장 수용자 구금과 처우 (10조~15조)
제 3 장 석방 (16조~18조)
제 4 장 소년범죄자의 구금 및 이송 (19조~21조)
제 5 장 허가증에 의한 석방 등 (22조~29조)
제 6 장 석방후 감독 (30조~32조)
제 7 장 기타 (33조~44조)

제 1 장 중앙행정

제1조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 통제〕 1877년의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시행 이전에 다른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었던 교도소와 수용자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내무상이 행사한다.

제2조 〔교도소관리와 고용인의 임명〕 ① 내무상은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재무성의 인가에 따라 결정한 수의 관리와 고용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조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와 고용인에게는 내무상이 재무성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봉급을 의회가 설치한 비용에서 지급된다.

제3조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 ① 내무상은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며 교도소장과 교도소관리, 그리고 의료법에 의해 등록된 의사를 의료담당 관리로 임명해야 한다.

② 내무상은 교도소마다 목사나 교회가 인정한 유자격자를 교회사로 임명해야 한다.

③ 내무상은 교도소의 유지와 수용자의 급양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④ 내무상은 일반적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무성의 동의하에 사무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 의무〕 ①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내무상의 관리는 모든 교도소를 방문하여 건물의 상태, 관리행위, 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작용 그리고 교도소의 관리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내무상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의해 모든 교도소와 수용자에 대한 권한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교도소의 연례보고서〕 ① 내무상은 각 교도소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보고서에는 각 교도소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생산과정과, 생산물품의 종류와 수량, 교도소 노동의 상품적 가치, 작업한 수용자의 수와 내무상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징벌에 대한 연차보고〕 내무상은 매년 각 교도소에서 일어난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스코틀랜드 교도소총감독관의 임명과 직무〕 ① 여왕은 교도소 총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도소를 점검하고 그것을 내무상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감독관의 의무이다.

③ 총감독관은 내무상에게 수용자의 처우와 교도소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④ 내무상은 특정 교도소나 특정 수용자를 지목하여 총감독관에게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총감독관은 매년 내무상이 지시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무상은 복사본 1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총감독관은 내무상이 재무성의 동의하에 결정한 월급을 받는다.

⑦ 이 조에서 교도소라 함은 제14조 1항의 경찰서 교도소도 포함한다.

제8조 〔순회위원회〕 ① 이 법 제39조에 의하여 지역위원회는 각 교도소마다 법률이 정한 시간에,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기간동안, 순회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② 이 법 제39조는 순회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며 특히 위원들에게 교도소에의 빈번한 순회방문과 수용자들의 불만청취 및 그들이 급박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내무상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순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언제라도 교도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교도소의 모든 시설 및 수용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

③ 내무상은

(a) 순회위원회 위원들이 규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즉 차비나 일을 못함으로써 손실된 임금, 식사비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b) 재무성의 동의하에 순회위원회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급이나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도소 사제의 임명〕 ① 내무상은 교도소내에서 영국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수용자들의 수가 그 종파의 사제를 임명해야 할 정도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교도소에 그 종파의 사제를 임명할 수 있다.

② 내무상은 임명된 사제에게 제8조에 의거해 합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내무상은 사제가 임명되지 않은 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그 종파의 사제가 교도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수용자 누구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제의 방문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교회가 아닌 다른 종파를 믿는 수용자를 위해 교도소 내에서 예배를 하게 하거나 사제의 방문을 받는 것은 허가해야 한다.

⑤ 교도소장은 각 수용자의 종교를 파악하기 위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명단을 교도소 방문이 허가된 사제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외의 수용자를 만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제 2 장 수용자 구금과 처우

제10조 〔수용자 입소〕 수용자는 이 법이 정한대로 교도소에 입소되며, 수형자들은 형기동안 교도소 이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법적 목적 등을 위한 수용자의 출옥〕 ① 이 법의 제39조에 따라 고등법원이나 판사는 수용자를 그가 있던 교도소로부터 법원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나오도록 훈령할 수 있다.

② 내무상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병원진료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기타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인치된 수용자는 내무상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교도소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장소에 구금되는 것이다.

④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관리는 재판을 위해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하는 고등법원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⑤ 내무상은 영장의 발부방식과 영장집행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제12조 〔수용자의 사진촬영과 신체검사〕 내무상은 수용자의 사진촬영과 신체검사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내규에는 수용자가 신체검사를 받거나 사진촬영을 할 시기와 회수, 방법, 복장 그리고 각 수용자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할 신체검사표와 사진의 매수 및 그것이 우송되어야 할 사람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 〔수용자의 법적 구금〕 수용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법적 구금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수용자가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거나 교도소로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 중인 동안

② 작업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교도소 밖에서 교도관리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동안

③ 이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가받은 장소로의 이송 중

④ 이 법에 의한 요구나 허가를 구하기 위해 구금되는 동안

제14조 〔공인된 경찰서 교도소〕 ① 내무상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이 법에 따라 경찰서나 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재판 전이나 재판 중, 그리고 재판 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를 구금할 수 있는 유치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교도소로 공시할 수 있다.

② 특정지역이나 특정 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지역의 교도소에 구금될 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공인된 경찰서 교도소에 합법적으로 구금될 수 있다.

③ 경찰서 교도소에 구금된 수용자는 이 법에 따라 교도소에 구금된 수용자로 간주한다. 경찰은 경찰서 교도소의 사용과 경찰관리에 의한 제공되는 구금된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④ 경찰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도소에 대한 제한없는 우선권을 갖는다.

⑤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서 경찰서 교도소를 가지고 있는 경찰과 그 직원은 이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⑥ 내무상은 오크니(Orkney)나 셔틀랜드(Shetland)섬의 경찰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할 의무가 있다.

⑦ 이 규정에서 "경찰"이란 경찰법 1967에 따라 효력을 가진 연합경찰위원회를 제외한 지역이나 섬의 위원회를 말한다.

⑧ 제39조 제8항을 위해 인가된 경찰서 교도소는 교도소에 준한다.

제15조 〔판사의 교도소방문권〕 ① 주지사나 치안판사는 언제라도 그의 관할지역 에서 범하여진 범죄로 인하여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으며, 그 교도소와 수용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교도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방명록에 교도소의 상태에 관한 의견이나 폐해를 기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치안판사는 교도소에서의 처우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용자와 대화를 하거나 사형선고를 받은 어떠한 수용자를 방문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각 교도소장은 방명록에 기록된 사항을 순회위원회의 차기 방문시 그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석 방

제16조 〔수용자 석방〕 ① 수용자의 석방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되면 그 전 금요일에 석방해야 한다.

② 범행이 일어나 유죄판결을 받은 지역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내무상이 이송비용을 지불하여 범행과 선고가 이루어진 원래의 지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제17조 〔석방수용자를 위한 지불〕 ① 내무상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자에게 교통비를 지불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귀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② 내무상은 석방되거나 석방되려고 하는 자를 위해 재무성의 동의를 얻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 〔가석방위원회와 지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석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내무상이 임명한 1인의 위원장과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가석방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내무상에게 건의를 할 의무를 가진다.

1.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가석방과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내무상에 의해 위원회에 위임된 자의 석방

2. 가석방의 조건과 가석방 조건의 변경 및 취소
3. 제31조, 제3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환과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석방 및 소환

③ 위원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내무상이 제출한 문서와 위원회가 요구한 문서, 그리고 구두로, 또는 문서의 형태로 입수된 모든 정보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
2.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해 인을 직접 심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자를 심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내무상은 특별한 심사를 위해서는 정해진 수의 위원이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위원회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④ 내무상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되는 문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당해 인이 작성한 문서
2.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에 소환된 경우에는 그 규정들에 따라 작성된 문서

⑤ 내무상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대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가석방자격을 얻은 자에 대해 지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
2. 지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당해 인을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것

제 4 장 소년범죄자의 구금 및 이송

제19조 〔소년구치소, 소년교도소〕 ① 내무상은 다음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소년구치소, 즉 심리나 유죄판결을 위해 구금되어 있거나 재유치된 14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의 구금을 위한 장소와
2. 소년교화원, 즉 교화원 구금을 선고받은 소년범들을 수용하는 장소

② 내무상은 소년구치소에 구금된 소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관한 의학적 보고서가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최적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찰과 검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무상은 각 소년구치소와 각 소년교화원마다 순회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위원 중 2인 이상은 치안판사로 임명해야 하며 2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다음의 규정들, 즉

1.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2조와 제38조

2.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3조에서 제17조, 제24조, 제33조에서 제37조까지, 그리고 제41조는 소년구치소와 소년교화원과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자, 그리고 위의 3항에 의한 순회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제8조 1항에 따른 교도소, 수용자, 순회위원회의 임명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1) 제11조 제4항과 5항은 소년교화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제24조는 소년구치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규정의 규정은 (1)과 (2)를 제외하고는 내무상에 의한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포함된다.

제20조 〔소년구치소나 소년교화원 입소를 위한 일시적 구금〕 소년구치소나 소년교화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는 자는 그 이송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구금될 수 있다.

제21조 〔21세 이상 소년의 교도소 이송 및 소년교화원 구금의 제한연령〕 ① 이 규정에 의해서 소년교화원에 수용된 소년의 연령이 21세에 이른 때에는 내무상은 해당자를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연령이 23세에 이른 후에는 소년교화원에 구금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23세 생일 하루 전까지 교도소로 이송되어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교도소로 이송된 자는 잔여형기 동안 처우를 받아야 하며 가석방이 된 경우는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장 허가증에 의한 석방 등

제22조 〔유기징역 수용자의 가석방〕 ① 내무상은 유기징역 수용자나 영국과 웨일즈의 경우 소년교화원에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형기의 1/3의 기간, 또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 중 더 장기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석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가석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내무상의 훈령에 의해 결정되는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③ 전 항의 내무상의 훈령에 대해서는 보충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④ 가석방의 효력은 형기가 단축되어 석방되는 날짜로서 허가증에 적힌 날까지이다.

제23조 〔가석방위원회의 권고가 없는 가석방〕 내무상이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2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가석방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내무상이 가석방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권고없이도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선행에 의한 형기단축〕 이 법 제39조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규칙이 정한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을 복역하고 있는 자는 그의 근면함과 선행을 근거로 형의 일부를 단축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형기단축에 의해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선고의 효력이 당연 상실된다.

제25조 〔유죄판결을 받은 어린이의 허가증에 의한 가석방〕 ① 제2항에 따라 내무상은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6조에 따라 구금된 자를 허가증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가석방할 수 있다.

②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6조에 따라 18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내무상은

1. 가석방위원회의 권고가 없이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없다.
2. 허가증에 적시되거나 적시될 조건의 변경, 추가, 삭제에 대해서는 가석방위원회와 의논해야 한다. 그러나 내무상이 가석방에 대한 일반적 의견이나 구체적 조건에 대해 위원회와의 논의한 내용에 조건의 변경, 추가, 삭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다음 제4항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제1항에 의해 부여된 허가증은 다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6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적시된 구금기간 또는
2. 허가증에 적시된 석방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기 중 더 장기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④ 내무상은

1. 가석방위원회의 권고를 받거나
2. 가석방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의해 부여된 허가증을 취소하고 석방되었던 자를 지정한 장소에 구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는 자신의 형기동안 복역을 해야 하며 도주한 경우에는 불법도주로 간주한다.

⑤ 내무상은 전 항에 의해 소환된 자에게 소환의 이유를 고지하여 그 자가 가석방위원회에서 자신의 소환에 대해 문서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내무

상에게 허가증에 의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해 구금된 자는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야 한다.

1. 형사절차법 제206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적시된 구금기간 또는
2. 제4항에 의해 구금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후 중 더 장기인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 내무상은 1.의 구금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증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26조 〔무기수의 허가증에 의한 가석방〕 ① 내무상은 가석방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때 무기징역, 영국과 웨일즈에서 부과된 무기징역, 그리고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5조에 따라 구금된 21세 미만의 살인범에 대해 허가증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석방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제22조 제6항과 제7항은 이 조에 의한 허가증에도 적용된다.

제27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내무상의 일시적 석방 권한〕 ① 내무상이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교도소에서의 구금이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건강상태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교도소에서의 수용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석방은 단지 일시적으로 그리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내무상은 그 경우의 모든 상황을 존중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훈령에 의해 당해 훈령에 적시된 기간동안의 일시적 석방을 허가하고 적시된 조건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② 일시적 석방훈령이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용자에게 내려진 때에는 그 훈령은 당해 수용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후속절차에의 그의 출석을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 의해 석방된 수용자는 일시적 석방훈령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당해 훈령에 적시된 기간의 종료 후에는 교도소에 복귀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복귀하지 아니하면 영장없이 체포하거나 수용될 수 있다.

④ 유죄판결을 받은 수용자가 일시적 석방훈령에 따라 석방된 경우 당해 유죄판결의 효력은 그 훈령에 따라 그가 교도소에 석방된 날로부터 교도소로 복귀한 날까지 정지되며 그 경우에 석방된 날은 유죄판결 기간에 산입되나 복귀한 날은 이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내무상이 이 규정에 의한 석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의료관리의 의무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허가증의 취소〕 ① 이 법의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허가증이 발부된 자에 대해 가석방위원회가 그 취소를 권고할 때에는 내무상은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해당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 내무상은 공익을 위해 가석방자를 소환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의 협의없이 해당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로 소환이 된 해당자는 그의 소환에 대해 문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당자에게 소환이유와 소명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④ 내무상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소환되어 소명을 한 자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해 소환된 자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회부된 자에 대해 즉각적인 석방을 권고하면 내무상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자를 석방해야 할 때에는 내무상은 그 항에 의해 요구된 위원회와의 협의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⑥ 형사사법에 관한 법 1967의 제60조와 제61조와 이 법의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허가증을 받은 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이나 주 장관에 의해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원은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이 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는 복역하여야 하며 도주한 경우에는 불법도주로 간주한다.

⑧ 형사사법에 관한 법 1967의 제60조와 제61조, 그리고 이 법의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허가증을 받은 자에 대해 순회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주 장관이 허가증을 취소한 때에 내무상은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의 1/3 중 더 장기인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해당자를 석방할 수 없다.

⑨ 전항에서 "일정기간"은 제22조 제2항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⑩ 이 조는 18세 미만의 살인범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5조 제2항에 의해 소년교화원에 구금된 자와 영국과 웨일즈에서 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자에게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⑪ 이 조는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5조 제3항, 제207조, 제415조의 규정에 따라 구금된 소년범에게도 효력을 갖는다.

제29조 〔연령의 결정〕 이 법의 제43조 제7항에 관계없이 허가증이나 허가증을 가진 자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하는 규정에서 선고 당시의 연령은 그 당시 내무상에게 보고된 연령으로 한다.

제 6 장 석방 후 감독

제30조 〔석방후 감독〕 ① 내무상이 수용자 중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자를 알게되면 아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가 석방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해당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아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1.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복역중인 자
2.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아 복역중인 26세 미만의 자(무기수형자는 제외)

③ 이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석방을 하기 전에 내무상은 해당자에게 감독관의 이름과 주소 및 준수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고지의 내용에는 해당자가 이 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④ 이 규정의 규정과 형사절차법 1975의 제214조와 제4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조가 적용된 사람은 석방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1. 감독관과의 지속적인 접촉
2. 준수사항 준수
3. 감독고지서에 적시된 조건 준수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내무상은 문서로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다음을 고지할 수 있다.

1. 감독의 해제
2. 감독관의 교체. 이 때에는 새로운 감독관의 성명과 주소가 그 문서에 적시되어야 한다.
3. 감독고지서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내무상은 훈령에 의해서 감독의 최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소년수형자에 대한 석방 후 감독〕 ①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증에 의한 석방이 아니라 구금기간의 만료로 석방된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도 내무상은 고지에 의해 감독 하에 둘 수 있으며 감독기간동안에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아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 후 감독은 석방 후 12개월이 지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내무상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감독의 기간은 해당 소년의 연령이 23세에 이를 때까지이다.

⑤ 감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내무상이 해당자가 감독기간이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1.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나
2. 위원회와의 논의 없이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무상은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해당자를 구금할 수 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자는 불법도주로 간주한다.

⑥ 내무상은 위의 제5항에 의해 소환된 자에게 위원회에 문서로 소명할 수 있도록 소환의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소명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내무상에게 해당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내무상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자를 언제라도 석방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상에게 부여된 권한은 해당자가 감독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나 행사될 수 있다.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해당자가 감독종료일에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종료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소년수형자"는 형사절차법 1975의 제462조 제1항에서의 의미와 같다.

제32조 〔소년교화원으로부터 석방된 자에 대한 감독〕 ① 이 조는 형사절차법 1975의 제207조와 제415조(소년범죄자의 구금)의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② 형사절차법 1975의 제212조와 제421조(재범소년에 대한 소환)와 아래의 제4항, 제6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이 조가 적용되어 석방되는 자에게 내무상은 고지서에 의해 해당자를 감독할 감독관을 지정하고 감독기간동안 준수해야 할 요건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독은

1. 형사사법에 관한 법 1967의 제60조 제1항과 제61조, 그리고 이 법의 제22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증에 의한 석방이 된 자는 석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또는 허가증이 만료되는 날 중 더 장기인 기간까지 계속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ⅰ) 18월 미만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ⅱ) 18월 이상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③ 내무상이 제2항의 1에 따라 명시한 석방의 요건과 조건은 허가증에 명시된 다른 조건에 부가되어야 한다.

④ 제7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감독의 기간은 해당자가 23세에 달하게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내무상은 제2항의 규정을 훈령에 의해 3월이상 6월 미만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이 조에 해당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⑥ 내무상은 해당자에게 문서로 제2항에 따라 적시된 요구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 아래의 제9항과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상은 감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고지한 감독의 요건이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가석방위원회가 권고하거나
2. 내무상이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당해인을 소년교화원으로 소환할 수 있다. 해당자는 3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구금되어야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도주로 간주한다.

⑧ 내무상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환된 자에게 소환의 이유를 고지하여 해당자가 가석방위원회에 그의 소환에 대해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명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는 내무상에게 해당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은 감독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장 기 타

제33조 〔교도소장의 의무〕 교도소의 장은

1.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교도소 전역을 순회하고 수용자 전원을 방문해야 하며, 만약 이 일과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록부에 그 내용과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2. 수용자의 신체나 정신상태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판단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훈련과 처우를 변경해야 한다.
3. 수용자에게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의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의 명부를 의사에게 매일 전달해야 한다.
4. 교회사와 의사에게도 수용자 명단을 전달해야 한다.
5. 수용자의 교도소 입소 및 출소에 대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교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주 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34조 〔수용자 사망에 대한 고지〕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교도소장은 교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지방검사와 순회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수용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5조 〔징역 집행보고서〕 수용영장이 부과되거나 법원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원서기는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무상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6조 〔교도소 재산〕 각 교도소 및 교도소에 속한 모든 부동산과 동산은 내무상의 소유에 속하며, 재무성의 동의를 얻어 내무상이 결정한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다.

제37조 〔교도소의 폐쇄〕 ① 내무상은 교도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폐쇄된 교도소는 매각되거나 재무상의 동의를 얻어 내무상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교도소를 구치소나 소년교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도소가 점유되는 경우에는 교도소의 폐쇄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8조 〔교도소 토지의 매입〕 ① 내무상은 교도소의 변경 · 증축 또는 개축이나 교도소의 신설을 위하여 또는 교도소의 관리(교도소에 고용된 관리 기타 고용인을 위한 시설의 설비를 포함하여)와 관련된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거나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② 1947년의 토지취득법 제1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 가운데 토지의 강제 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조에 의거하여 내무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의 강제매입에도 동 법이 적용된다.

③ 이 조에 따른 동의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 한) 1965년의 강제매입법 제120조부터 제12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제39조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한 규칙〕 ① 내무상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화원의 운영을 위한 규칙과 수용자의 분류, 처우, 고용, 훈련 및 감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는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는 수용자 교육에 대한 규정과 그것을 위한 수용자의 합법적인 교도소 이송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④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는 구치소나 특수교도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구치소나 특수교도소는

1. 재판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금되는 장소
2. 특성화된 수용자를 구금하는 장소
3. 민사사건관련 수용자를 구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는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자는

1. 항소나 상고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항소인
2.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하는 것이 아니면서 구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는 복역 중 일시 석방된 경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40조 〔수용자의 도주〕 ① 교도소, 소년교화원,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경찰이나 교도관은 영장없이 체포하여 구금할 수 있다.

②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합법적인 이유없이 또는 내무상의 지시가 없이 교도소나 소년교화원을 이탈한 경우 그 기간은 복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41조 〔담배 등의 소내반입〕 ① 이 법의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 편지, 담배, 술 등을 들여오거나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자는 위반행위를 범한 자로 보아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에 처하거나 30일 이내의 징역에 처한다.

② 물품이 수용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도소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교도소 내로 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게 한 자도 교도소내로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교도소내로 불법적인 물품을 반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정직원이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제42조 〔규칙제정 권한의 실행〕 ① 이 법에 의하여 규칙이나 내규를 제정할 내무상의 권한과 제22조 제2항, 제30조 제6항과 제7항, 제32조 제5항이나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훈령을 발할 내무상의 권한은 문서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제12조에 의하여 제정된 내규나 제37조 제1항이나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훈령을 담고 있는 문서는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이 법 제18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규칙과 제30조 제6항과 제7항, 제32조 제2항에 따른 훈령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 실효될 수 있다.
④ 이 법의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훈령은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43조 〔해석〕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975법"은 형사절차법 1975를 의미한다; "법원"에는 군사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수용자"는 형사절차법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를 말하며 "민사수용자"는 그 외의 수용자를 말한다; "지역심사위원회"는 제18조 제5항에서의 의미와 같다.; "가석방위원회"는 스코틀랜드의 가석방위원회를 말한다.; "교도소"는 육군, 해군, 공군의 교도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교도소를 말한다.; "수용자"는 재판대기중이거나 구속되거나 복역중인 자를 말한다.; "징역의 선고"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환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하나의 선고형이 계속되거나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일 형기로 간주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던간에 전과라는 말은 영국의 모든 지역의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을 다 포함하며 그 법원에 의해 선고된 선고형을 의미한다.
④ 이 법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반이란 연령에 따른 징역집행의 금지와 제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징역은 제30조를 제외하고는 유죄판결에 의한 것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이 법에서 수용자의 수용경비는 음식과 의복의 조달을 위한 경비 뿐 아니라 교도소 입소와 이송에서 사망이나 석방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⑦ 법원의 권한을 규제하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당해 인의 연령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기록에 제시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간주한다.

제44조 〔경비〕 교도소 관리와 수용자의 수용을 위한 경비 그리고 이 법에 의해 내무상이 지출하는 기타 경비는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으로부터 지출된다.

V. 미국 연방 교정관계법령

이 법령은 「미연방법률주석」(UNITED STATES CODE ANNOTATED) 중 「제18권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발췌한 것임.

[목 차]

제 3 편 교도소와 수용자
제301장 총칙 (제4001조~제4014조)
제303장 교정국 (제4041장~제4048조)
제305장 구금과 이송 (제4081조~제4086조)
제306장 외국으로의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 (제4100조~제4115조)
제307장 고용 (제4121조~제4129조)
제313장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을 지닌 범죄인 (제4241조~제4247조)
제317장 여성수용자를 위한 시설 (제4321조)
제319장 연방교정연구소 (제4351조~4353조)

제 4 편 소년범죄인의 교정
제401장 총칙 (제5001조~제5003조)
제403장 소년범죄 (제5031조~제5042조)

제 3 편 교도소와 수용자

제 301 장 총 칙

제4001조 〔구금상의 한계, 교도소의 통제〕 ① 모든 시민은 연방의회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미합중국에 의해 수용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1. 연방 교정시설의 통제와 관리는 육· 해군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법무장관이 행한다. 법무장관은 이의 관리를 위해 명령을 발하고 공무원법과 수정된 분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거하여 모든 필요한 직원과 고용인을 임명한다.

2. 법무장관은 공장, 농장 기타 다른 사업을 설립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수용자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규율, 처우, 보호, 사회복귀와 교정을 행한다.

제4002조 〔주 시설내의 연방수용자, 고용〕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모든 자의 계호·보호·생계를 위하여 적당한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법무장관은 주, 보호령 또는 그것의 하위행정구역의 관계기관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들의 구금·보호·생계 및 적절한 고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 연방수용자는 그들이 수용된 주 또는 하위행정구역을 위한 물품의 제조, 일용품의 생산, 토목공사, 그들이 수용된 주 또는 하위행정구역의 시설관리와 보호에 한하여 고용된다. 상기 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사용료는 숙소설비의 성격, 위생상태 및 생계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용료는 관리기관이 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상당하고 위생적인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숙소와 생계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고무할 수 있는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

제4003조 〔적당한 설비가 없는 주의 연방시설〕 주, 보호령 또는 그것의 하위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교도소, 소년원, 교정시설 기타 적당한 시설을 통제하는 기관이 미합중국 수용자의 구금·보호·생계 또는 적절한 고용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혹은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무장관은 당해 주, 보호령 또는 관련 사법관할 내에 혹은 가까운 곳에 부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연방의회의 법률 하에 구금된 자와 기타 법무장관의 의견으로 그러한 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적절한 자의 구금을 위해 사용될 구치소, 소년원, 교도소, 교도소내

공장시설, 수용소 기타 구금장소를 설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04조 〔선서와 승인〕 연방교정시설의 장과 감독관, 부소장과 부감독관, 사무장, 기록원은 당해 시설의 직원, 고용인, 수용자에게 선서시키고 그들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4005조 〔의료구호, 비용〕 ① 법무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방보안국장은 자살원조제한법 1997(Assisted Suicide Funding Restriction Act 1997)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방 교정시설에 의학적 정신병리적 기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공중보건소의 정규·예비로 임명된 직원, 약제사, 임시의 보조의사와 기타 공중보건소의 고용인을 법무성에 파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파견된 직원의 보수·수당과 비용은 공중보건소의 직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소의 적정예산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 이 때 그 지출금은 법무성의 적정예산에서 충당된다.

법무장관은 공중보건소의 직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의거하여 파견된 직원의 보수, 수당과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유용하고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공중보건소에 기금을 할당하고 계정을 이전시킬 수 있다.

제4006조 〔수용자에 대한 생계〕 ①일반적 비용: 법무장관은 미합중국의 모든 집행관의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의 생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용만을 허가하고 지급한다. 법무장관은 집행관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관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② 의료서비스 비용

1. 미국 군대, 미국연방수사국, 이민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사회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의료보험 프로그램(Medicare program)
   (2) 사회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구제 프로그램(Medicaid program)
2.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된 의료비용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지불로 간주한다.

제4007조 〔수용자의 비용〕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의 수용 및 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의 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4008조 〔호송비용〕 수용자는 법무장관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지명하는 담당관이 호송한다.

호송, 필요한 생계 그리고 호송인과 담당관의 고용과 호송의 합리적인 비용은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법무성예산에서 지급한다.

영사법원이나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수용자는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국무성 또는 육·해·공군의 담당관에 의해 법원에서 구금장소로 호송되며, 비용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고에서 지급된다.

제4009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지출금〕 법무장관은 이 편 제4003조에 따른 부지의 임차 또는 매입, 계획의 준비와 필요한 건물의 설립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미지출잔고에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의 사용을 매 경우에 $1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상기 한도내에서 적정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건물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현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선택권을 확보하고 기초조사나 개략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미지출잔고에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의 사용을 매 경우에 $1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적정부지의 선택에 대하여 법무장관은 그 매입비용과 그 위의 필요한 건물의 개축·신축 및 설비의 비용에 대한 견적을 연방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4010조 〔추가토지의 취득〕 법무장관은 연방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때에는 시설에 근접한 또는 시설 부근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011조 〔식사, 세탁 등에 대하여 징수된 현금의 처분〕 식사, 세탁, 이발, 제복 기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연방교정시설의 관리와 활동을 위한 예산에서 지급한다. 단, 현금이 징수된 때에는 징수현금은 그러한 항목에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국고의 계정의 대변에 예치할 수 있다.

제4012조 〔밀반입품의 즉시압수와 몰수〕 교정국의 직원 또는 고용인은 교정국장이 발한 규칙 또는 명령에 위반하여 연방교정시설내로 반입된 물건 또는 수용자가 소지한 물건은 교정국장의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 즉시 압수할 수 있으며 그 물건은 미합중국에 몰수된다.

제4013조 〔연방시설외의 시설에 구금된 수용자에 대한 지원〕 ① 법무장관은 연방시설이 아닌 장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를 위해서 적절한 기금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불을 할 권한을 가진다.

1. 의복
2. 의료비와 교도관의 고용
3. 주정부나 지방정부와의 합의 또는 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연방법에 의해 연방재판소의 구금하에 있는 자에 대한 숙소와 안전에 관련된 비용
4. 법무장관이 제정한 규칙과 제4006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연방수용자의 구금을 위해 교도소 공간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주나 지방정부 관할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구금환경과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신축, 개축, 기자재 매입 등에 대해 당해 주, 보호령과 계약이나 협약을 맺은 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1)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비용은 연방교도소의 신축에 대한 수용자 1인당 평균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연방정부의 비용원조에 따라 제공된 시설은 연방수용자를 구금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3) 연방수용자를 위해 지불되는 일일 비용은 계약이나 협약에 적시된 비용과 조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1. 연방재판소는 제1항의 3.에 따라 사적 구금시설에 대한 부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다음에 기초해 선정할 수 있다
   (1) 그 지역의 연방수용자수
   (2) 연방교도소, 주 교도소, 지방정부 교도소의 이용가능성

2. 제1항의 3.의 규정 하에 연방법과 연방예산에 따라 연방재판소의 구금하에 있는 자의 구금과 안전을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기업은
   (1) 연방재판소에 의해 연방구금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2) 미국교정협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 해당 주와 지방정부의 법과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4) 소방, 안전, 비상탈출, 시위진압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연방재판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3. 연방재판소는 제1항의 3.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연방시설외의 시설에 구금된 연방수용자들에 대한 의료비

1. 일반적 사항; 제1항의 3.에 의해 지불된 금액과는 별도로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연방수용자의 의료비에 대해 신탁자금 구좌로부터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1) 주정부나 지방정부와의 협약에 따라서 연방시설 외의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
   (2) 비용은
      (ⅰ) 주 법에 따른다.
      (ⅱ) 주수용자나 지방수용자의 의료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의료서비스는
      (ⅰ) 주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획득한 자에 의해 그 면허의 범위내에서 시설내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다.
      (ⅱ) 진료를 위한 시설방문을 포함한다.
      (ⅲ) 예방적 치료, 응급치료, 산전진료, 만성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정신과 치료나 약물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금전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수용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1) 수용자의 구좌가 파산상태이거나
   (2) 기타 수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
3. 수용자에게 법률에 대한 고지-수용자는 문서와 구두로 이 조항이 있음과 수용자가 이 조항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다른 하위조항과는 별도로 이 조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 교도소 수용자가 이 조항에 대해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2)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한 비용
4.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집행에 대해 수용자에게 고지-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이 조항의 집행이나 집행의 수정은 수용자가 이러한 실행에 대해 문서와 구두로 집행이나 집행의 수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 기간 이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해서는 수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5. 청문회 고지 기간-이 조항에 따른 집행이 공개적 의견수렴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의 내용을 문서와 구두로 연방수용자 지원단체와 그 집행을 받을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6. 포괄적 HIV/AIDS 서비스의 요구-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방수용자에게 광범위한 HIV와 AIDS 관련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청구는 할 수 없다.

제4014조 〔HIV 검사〕 ① 법무장관은 6월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방범죄자가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연방교정국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면 복역을 시작한 후 HIV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 있는 연방범죄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HIV를 공무원이나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일반인에게 전염시켰을 경우에 법무장관은

1.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것 같은 자를 즉시 검사받게 하고 그 결과를 검사받은 당해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전염병관리와 관련해서 연방교정국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필요할 경우, 당해 인의 의사와 비밀이 보장된 논의를 할 수 있다) 전염의 가능성과 예방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바이러스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법무장관은 당해 인에게 상담과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연방 또는 주의 형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당해 인에 대한 반대증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⑤ 이 조항의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장관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들을 제정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며,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연방교정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정시설 인사과에 알려야 한다. 또한 그 규칙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303 장 교정국

제4041조 〔교정국, 국장과 고용인〕 교정국은 연봉 $10,000로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법무장관에 직속된 국장이 관리한다.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과 고용인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4042조 〔교정국의 의무〕 ① 교정국은 법무장관의 감독하에 -

1. 모든 연방교정시설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한다.
2.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와 증인 등으로 소

환된 모든 자의 계호·보호와 생계를 마련하고 적당한 숙소를 제공한다.

3.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의 보호·교육과 규율을 마련한다.
4. 주와 지방정부에 그들의 교정체계의 향상을 위해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자의 석방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② 수용자 석방에 대한 고지-

1. 수용자가 감독석방으로 석방되는 날로부터 5일전, 그리고 감독석방중에 있는 자의 주소지가 새로운 관할지역으로 변경되는 날로부터 5일전에는 석방이나 주소지 변경에 대해 주소지 관할 주와 지방의 사법집행관리에게 문서로 고지되어야 한다. 석방전의 고지는 연방교정국의 국장에 의해 이루어 진다. 감독석방된 자의 주소지 변경에 대한 고지는 당해 인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나 연방법원행정국장에 의해 적시된 방법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고지의무는 제224조에 의해 보호되는 수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전 1.의 고지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수용자의 성명
   (2)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유형을 포함한 범죄기록
   (3) 법에 따라, 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또 연방교정국이나 기타 연방관청에 의해 석방과 함께 수용자에게 부과된 행위제한과 조건들
3. 여기서 말하는 수용자는 다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1) 마약거래(제924조의 제3항 2.의 규정)
   (2) 폭력범죄(제924조의 제3항 3.의 규정)

③ 성범죄자의 석방에 대한 고지

1. 아래 제4항에서 규정된 자가 석방되거나 보호관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1) 당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사법집행관리
   (2) 당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 또는 지방관청

이 조항에 따른 고지의무는 제22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석방고지에는 당해 인의 거주지, 당해 인이 등록된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방교정국 하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자의 석방 후 거주지를 연방 교정국이 알고 있다면 석방 5일전까지 연방교정국의 국장은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책임

지고 있는 보호관찰관이나 법원행정국장에 의해 적시된 방법으로 즉시 고지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이나 감독석방 또는 가석방 동안에 성범죄자가 그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나 법원행정국장에 의해 적시된 방법으로 관할지역의 사법집행관리와 성범죄자 등록업무를 하는 지방관청에 고지해야 한다.

3. 연방교정국장은 아래 4.에 규정된 자에게 그가 석방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가 거주하고 취업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주에 성범죄자로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한 보호관찰관이나 법원행정국장에 의해 적시된 방법으로 아래 4. 에 규정 된 자 중에서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성범죄자는 다음의 범죄를 범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제1201조 중에서 아동피해자가 있는 범죄
   (2) 제109A장에 규정된 범죄
   (3) 제110장에 규정된 범죄
   (4) 제117장에 규정된 범죄
   (5) 범부장관에 의해 성범죄로 선정된 기타 범죄
5. 미국정부, 기관, 관리나 고용인이 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행한 선의의 행동은 면책된다.
6. 이 조항은 미 육군이나 해군 교정시설이나 그곳에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043조 〔연방교도소의 대표기금에 대한 증여와 유증의 인수〕 법무장관은 "연방교도소 대표기금"에의 현금의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증여와 유증은 1986년의 내국세법 (26. U.S.C 1 .ET seq.)에 따라 미합중국의 사용을 위한 증여와 유증이 된다.

제4044조 〔연방교정국에 기부〕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연방교정국이나 연방교정산업을 위해 사용될 기금이나 재산의 기부를 법무부의 이름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4045조 〔검시의 권한〕 연방교정시설의 장은 연방교정국장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수용자가 살인이나 자살, 질병, 사고, 또는 원인미상으로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에 대한 검시가 범죄를 밝혀내고 소내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교정하고 국가와 공무원을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망자에 대한 검시와 관련 과학적,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검시와 구체적인 과학적, 의학적 검사의 필요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시와 관련하여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의 조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제4046조 〔충격구금〕 ① 교정국은 12월이상 30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가 동의하면 당해 인을 충격구금 프로그램에 배치할 수 있다.

② 6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의 초반부에 충격구금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용자는 다음을 요구받는다.

1. 엄격한 훈련과 질서, 육체적 단련, 중노동과 군대식 훈련을 제공하는 매우 조직적으로 짜여진 일과표를 엄수해야 한다.
2.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문맹퇴치프로그램 포함), 약물, 음주 등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③ 교정국장이 충격구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고 평가한 수용자는 잔여형기를 넘지 않는 범위 법이 정한 기간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제4047조 〔교도소 영향 평가〕 ① 사법부나 입법부가 연방교정시설의 적정수감인원의 증감에 대한 법안제출을 위해서는 교도소 영향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② 법무장관은 양형위원회와 법원행정처와 논의하여 제3항에 따라 그리고 연방형사절차를 거쳐가는 피고인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중인 법안에 필요한 교도소 영향평가는 요청이 있은 지 21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교도소 영향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도소인구 , 보호관찰 대상자인구 및 석방후 감독대상 인구에 대한 동향
2. 1.의 인구변화가 연방정부의 지출에 주는 재정적 영향
3.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에 대한 분석
4. 영향 평가를 준비하는 데 채용되었던 방법론과 가정에 대한 기술

③ 법무장관은 매년 3월 1일까지 그 전 해에 일어난 모든 법률개정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한 교도소 영향 평가서를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048조 〔수용자를 위한 의료비용〕 ① 정의- 이 조에서

1. "구좌"는 수용자의 신탁기금구좌를 의미한다.
2. "국장"은 교정국 국장을 말한다.
3.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1) 국장에 의해 의료서비스제공을 허가받은 자
   (2) 그 허가범위내에서 수술을 하는 자
4. "진료방문"은
   (1) 국장의 결정으로 수용자가 제도적, 비제도적 진료를 제공하는 자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용자에 의해 요청된 방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i) 교도소 관리에 의한 위탁이나
      (ii) 만성질병의 사후치료를 위해 관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수용자"는
   (1) 교정국 관할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
   (2) 그 외 미국에 반하는 범죄를 범하여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② 의료서비스 비용

1. 일반적 사항- 국장은 이 조의 규정과 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수용자에 의해 요청된 진료방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정하여 지불하게 할 수 있다.
2. 예외- 국장은 예방적 치료, 응급치료, 산전진료, 만성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정신과 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비용은 이 조에 따라 비용을 정하거나 지불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 이 조항에 의해 평가된 비용은 국장에 의해 다음의 구좌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1.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진료방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용자
2.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진료방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해를 가한 수용자

④ 금액-이 조항에 의해 평가되고 징수된 비용은 1불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 조항에 따라 수용자의 구좌에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수용자에게 비용의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당해 수용자가 이 조항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⑥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거부 불가-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1. 수용자의 구좌가 지불불능이라는 이유
2. 기타 수용자의 비용지불 불능

⑦ 금액의 사용

1. 피해자보상-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명령을 받은 수용자로부터 국장에 의해 징수된 돈은 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2. 다른 금액의 할당-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로부터 국장에 의해 징수된 돈 중에서 배상명령에 속하지 않은 금액은
   (1) 75%는 범죄피해자법 1984(42 U.S.C. 10601)의 제14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범죄피해자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 25%는 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행정비용을 위해 법무장관이 사용한다.

⑧ 수용자에게 법률에 대한 고지-수용자가 되거나 된 자는 문서와 구두로 이 조항에 대해 고지받아야 하며 이 조항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평가되거나 징수되지 않는다.

1. 수용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될 때까지
2.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된 진료서비스

⑨ 수용자에게 규칙에 대한 고지-제2항의 1의 규정에 따라 국장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그 규칙의 개정은 그것이 교도소의 수용자에게 문서와 구두로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을 산정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⑩ 여론수렴기간 전에 고지-이 조항에 따라 제안된 규칙이 여론수렴의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은 당해 수용자와 연방수용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문서와 구두로 규칙의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⑪ 의회보고-연방수용자 의료비용 공동지불법 2000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는 매년 국장은 의회에 다음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조항에 따라 지난 12개월동안 징수된 금액
2. 이 조항의 집행효과, 그리고 수용자에 의한 진료방문의 특징과 빈도
3.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항목별 정리
4. 시행 전년과 비교해서 현재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요인별 기술
5. 법 시행전 12개월 동안과 법 시행후 12개월 동안의 수용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비교

6. 광범위한 HIV/AIDS 검사- 교정국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정국의 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각 연방수용자에게 HIV와 AIDS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교정국은 이 검사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제 305 장 구금과 이송

제4081조 〔수용자의 분류와 처우〕 연방교정시설은 범죄의 성질, 수용자의 성격과 정신상태 그리고 시설내에 구금된 자에 대한 개별적인 규율 보호와 처우체계를 제공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다른 요소에 따라 연방수용자를 적절히 분류하고 개별처우할 수 있는 통일적 체계를 용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고 규모가 제한되어야 한다.

제4082조 〔법무장관하의 구금, 사회내 처우시설, 구금의 이탈, 일시취업〕 ① 구금되어 있어야 할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구금상태를 이탈하거나 법무장관에 의해 지정된 시설이나 기관에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않은 경우 법무장관 하의 구금에서 도주한 것으로 본다.

② 1. 법무장관은 중범죄를 저질러 주 정부나 지방정부 관할지역의 사회내처우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그 주나 지역의 사법집행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교정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신속하게 당해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1) 수용자의 성명
(2) 수용자가 거주하는 사회내처우시설의 주소
(3) 수용자의 생년월일
(4) 수용자에게 부여된 연방수사국 번호
(5) 수용자의 사진 및 지문
(6) 범죄의 특성 및 범죄상황

2. 이 조항에 따라 위의 정보를 접수한 사법집행기관은 이 정보를 기관외부에 퍼뜨려서는 안된다.

③ 이 조항에서 사용된대로 "시설"은 사회내처우시설을 포함한다.;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자녀(의붓자녀, 양자 혹은 수형자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지위에서 생활해 온 자녀를 포함한다.), 부모(친부모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지위에서 생활해 온 자를 포함한다.),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

제4083조 〔교도소 징역; 동의〕 미국에 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미국의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다.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이는 교도소에 구금해서는 안된다.

제4086조 〔연방범죄자에 대한 일시적 계호〕 미합중국 집행관은 연방의회의 제정법률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구금된 자를 시설에 인치할 때까지 계호하여야 한다.

제 306 장 외국으로의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

제4100조 〔이 장의 범위와 한계〕 ①수용자의 인도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효력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조약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또는 외국으로의 범죄자의 인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범죄자가 외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후에 조약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경우에 그 선고된 형은 그 범죄자 인도의 근거가 된 조약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미합중국에서 전부 집행한다.

② 범죄자는 이 장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자의 시민권 또는 국적국가에 한해서만 인도될 수 있다. 미합중국의 시민이거나 국민인 범죄자만이 미합중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 범죄자는 자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범죄자가 선고를 받은 범죄가 이 장에 규정된 이중범죄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합중국으로 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범죄자의 동의가 증명관에 의해 일단 증명되면 그 동의는 취소할 수 없다. 인도시에 범죄자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선고국가의 당해 법원의 인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인도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유죄판결이나 선고에 대한 상소 또는 부대적 소송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범죄자는 미합중국으로 또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인도되지 아니한다.

④ 범죄자가 특별사면, 감형 또는 일반사면을 받았다는 통지 또는 선고의 개량적 변경이나 취소가 있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형을 선고한 국가로부터 받은 경우에 미합중국은 선고국가가 취한 결정의 이익을 범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10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

① "이중범죄성"이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시에 그가 선고를 받은 범죄가 인도국가에서 범죄이고 인도받는 국가에서도 범죄임을 의미한다. 연방정부형태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행위가 연방법률이나 주 혹은 주의 지방법률하에서 범죄가 된다면 그 행위는 그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한다.

② "자유형"이라 함은 개인을 시설에 구금시키는 법원이 부과하는 형을 의미한다.

③ "소년"이라 함은

1. 18세 이하의 자 또는
2. 소년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편 제403장에 의한 절차와 처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④ "소년범죄"라 함은

1. 소년이 행한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성인이 행했더라면 범죄였을 행위 또는
2.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주 또는 관련된 외국의 소년관계기관에 의한 감시나 처우가 부과된 소년에 의한 비범죄행위를 의미한다.

⑤ "범인" 이라 함은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소년범죄행위를 행했다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⑥ "가석방"이라 함은 석방당국이 부과하는 조건과 그의 감시에 의거하여 범죄인을 그의 형기만료 이전에 석방당국이 구금으로부터 사회에로 석방하는 제형태를 의미한다.

⑦ "보호관찰"이라 함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제형태의 자유형의 선고를 의미하며, 범죄인은 감시하에 그리고 조건에 따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며, 조건의 위반시에는 유예되었던 자유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⑧ "선고" 라 함은 형사사건에서 부과된 형과 유죄의 판결이나 동 소송에서의 무죄의 판결 또는 소년범죄소송에서의 유죄판결 또는 동 소송상의 범죄주장의 각하를 의미한다.

⑨ "주"라 함은 미합중국의 각주,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연방과 미합중국의 모든 영토와 속령을 의미한다.

⑩ "인도"라 함은 한 국가에서 타국의 법원이 과한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⑪ "조약"이라 함은 일국의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범죄인이 선고의 집행을 받기 위하여 그의 시민권 또는 국적국가로 인도될 수 있는 조약을 의미한다.

제4102조 〔법무장관의 권한〕 법무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조약상 관계당국으로서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행위한다.
2. 미합중국의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지유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이며, 외국으로부터 인도된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인수하고, 그를 적절하게 교정시설에 구금하거나 감시를 위하여 가석방당국 또는 보호관찰당국에 인계한다.
3.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을 그의 시민권 있는 국가나 국적국가로 인도한다.
4. 이 장에 의거하여 그러한 조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5. 조약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와 보고서를 외국에 교부하고 외국으로부터 접수한다.
6. 주의 구금하에 있는 외국시민이거나 국민인 범죄인을 그의 시민권 있는 국가나 국

적국가로 인도하고,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을 적절하게 주의 시설에 구금하기 위하여 협약에 따라 제주와 협의한다.

7.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선고의 집행을 위해 제3의 국가로 이송중인 범죄인의 미합중국 영토통과 이송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이송통과의 비용은 이송을 요구하는 국가가 지급한다.
8.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소년의 인도와 처우에 대하여 외국의 관할당국과 협력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그 비용은 소년의 시민권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적국가가 지급한다.
9. 범죄로 인하여 기소되었으나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자의 인도와 처우에 대하여 보건·교육·복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규칙을 제정한다. 비용은 그의 시민권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적국가가 지불한다.
10. 외국의 법원이 과한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으로 인도 중인 미합중국의 시민이나 국민을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외국으로부터 인수하고, 그를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직원을 지명한다. 상기의 직원은 범죄인과 동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몇 구역에서는 그 범죄인의 이송과 계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미합중국 집행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외국의 영토내에서 상기의 직원은 외국의 당국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진다.
11. 이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법무성의 직원에게 위임한다.

제4103조 〔미합중국 법률의 적용가능성〕 수형자, 보호관찰 중인 자, 가석방자와 소년범에 관한 미합중국의 모든 법률은 조약이나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에 인도된 범죄인에게 적용한다.

제4104조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의 인도〕 ① 법무장관은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을 미합중국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하기에 앞서, 미합중국의 관할 지방법원이 그 범죄인에 대한 감시를 담당할 의사가 있음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당국으로부터 보호관찰관 중인 범죄인을 인계받은 때에 법무장관은 그 범죄인을 그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그 범죄인을 법원의 보호관찰관의 감시하에 둔다. 그 범죄인은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하에서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는다.

④ 보호관찰관은 이 편의 제3653조와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32조(f)에 의거하여 취소될 수

있다. 보호관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고법원이 부과한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⑤ 보호관찰의 취소에 따라 이 편의 제4105조와 제41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법무장관은 보호관찰 중인 범죄인의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기에 앞서, 그 자에 대한 관할권을 수행하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105조 〔자유형의 선고를 복역하는 범죄인의 인도〕 ①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인도되어 법무장관하에 구금된 범죄인은 선고법원이 명한 기간동안 법무장관에 의하여 구금된다.

② 인도된 범죄인은 형집행개시일전에 범죄행위 또는 형이 선고된 행위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일수를 형집행에서 공제받는다.

③ 1. 인도된 범죄인은 선시와 노동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도시에 이미 집행된 기간에 대하여 인도국가가 행한 선고집행에서 공제받을 권리가 있다. 인도후에 그 범죄인은 또한 외국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고 증명된 전 선고기간의 집행에 대하여 이 편 제4161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인도시에 미집행된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된 선시공제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공제는 이 편 제4164조에 의한 범죄인의 석방일을 산정하는데 포함한다.

2. 범죄인을 인도한 국가가 선시공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편 제4161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선고법원이 부과하고 인도시 집행이 증명된 선고를 감형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3.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시로부터 이 편 제362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밖의 선시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인도된 범죄인이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동안에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받은 선고는 그 외국의 선고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로 미합중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의 선고에 합산한다.

제4107조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인도에 대한 범죄인의 동의의 증명〕 ①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하기에 앞서,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동의가 자발적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이 미합중국법령집 제28편 제4151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미합중국 치안판사나 법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② 증명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범죄인이 이해하고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범죄인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의 관할법원만이 유죄판결 혹은 선고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러한 결정을 요청하는 모든 소송절차는 그 법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선고는 그가 인도될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률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된다.
3. 그가 인도될 국가의 법원이 범죄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에서 조약이나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의 인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미합중국이 그의 귀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으로 귀환될 수 있다.
4. 인도에 대한 그의 동의는 증명담당관이 일단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행하여졌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범죄인에게 그의 변호인접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 동의에 앞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가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소송은 계속될 것임을 범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어떤 약속·협박 기타 부적절한 기망의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인이 제2항에서 열거한 조건에 의한 인도를 승낙한다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동의와 승낙은 법무장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⑤ 소송은 판결기록원이 기록하거나 적당한 음향녹음장치로 녹음한다. 법무장관이 기록을 보관한다.

제4108조 〔미합중국으로의 인도에 대한 범죄인의 동의의 증명〕 ① 미합중국이 범죄인을 인수하기에 앞서,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동의가 자발적이고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행해졌다는 사실이 선고가 행해진 국가에서 미합중국 치안판사에 의하여 또는 미합중국법령집 제28편 제45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 법관이 특별히 선정한 시민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성이나 기관의 고용인 또는 직원인 시민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 증명담당관은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인도된다는 사실을 범죄인이 이해하고 동의하는가 여부를 그 범죄인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1. 그에게 유죄판결과 선고를 행한 국가만이 그 유죄판결이나 선고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요구하는 모든 소송절차는 당해 국가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2. 선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률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된다.

3. 미합중국 법원이 그 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에서 조약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그의 인도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선고를 한 국가가 그의 귀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선고를 집행할 목적으로 당해 국가로 귀환될 수 있다. ;

4. 인도에 대한 그의 동의는 증명담당관이 일단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행해졌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호인접견권을 범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인이 동의에 앞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가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소송은 계속될 것임을 범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증명담당관은 범죄인의 동의가 어떤 약속·협박 기타 부적절한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인이 제2항에서 열거한 조건에 의한 인도를 한다는 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동의와 승낙은 법무장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⑤ 소송은 판결기록원이 기록하거나 적당한 음향녹음장치로 녹음한다. 법무장관이 기록을 보관한다.

제4109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선정〕 ① 인도에 대한 범죄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절차에 있어 범죄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인이 재정적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

1. 제4107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소송절차를 위한 변호인은 제3006A조에 의하여 선정한다. 그러한 선정은 위의 법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범죄사건에서의 선정으로 간주한다.

2. 제4108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소송절차를 위한 변호인은 미합중국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증명담당관이 선정한다. 국무장관은 선정된 변호인의 보수와 비용을 증명담당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제3006A조에 따라 이 경범죄 사건의 소송대리에 대하여 인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확대된 또는 복합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증명담당관이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초과지급액이 필요하다고 증명하고, 미합중국 순회항소법원의 법원장이 지급이 적정범위라고 승인한 경우에는 인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정부산하의 타기관으로부터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여행과 호송의 비용을 변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그의 고용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편 제3324조 제1,2항에 관계없이 국무장관은 이 항에 따라 선정된 변호인에게 여행과 호송의 비용을 선불할 수 있다.

제4110조 〔소년의 인도〕 미합중국이나 미합중국의 각 주에서 행해졌더라면 소년범죄가 되었을 범죄인은 관계조약이나 그 조약에 의하여 법무장관과 외국의 관계기관간에 체결된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편의 제403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4111조 〔외국의 판결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추〕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은 그를 소추하려는 관할법원이 인도근거가 된 선고를 행하였더라면 소추가 금지되었을 범죄로 인하여 미합중국 각주에 의하여 구금·소추·재판 또는 선고되지 아니한다. 또한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인도의 근거가 된 선고를 행하였더면 그 인도된 범죄인을 소추하려는 관할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기소가 금지되었을 경우도 같다.

제4112조 〔권리의 상실, 자격상실〕 외국법원이 내린 선고를 집행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 인도된 범죄인은 미합중국의 법률 또는 주의 법률에 의할 때 외국에서의 판결사실로부터 연유하는 내용과 다른 어떠한 시민권, 정치적 권리, 송민권의 상실이나 자격상실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113조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범죄인의 지위〕 ①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될 자로서 미합중국법령집 제8편 제1252조(b) 또는 제1254조(e) 에 의거하여 임의출국이 허가된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미합중국법령집 제8편 제1252조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이 장에 따라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미합중국법령집 제8편 제1226조에 의해 미합중국으로부터 배척과 추방명령을 받고 이 장에 의해 외국으로 인도된 외국인은 모든 경우에 입국허가가 배척되고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14조 〔인도된 범인의 귀환〕 ① 미합중국 법원이 범죄인이 미합중국 인수가 조약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했다는 최종결정을 내리고 그 범죄인에게 미합중국에서의 형선고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 그 범죄인은 선고를 내린 국가가 그의 귀환을 요구할 때에는 선고의 집행을 위해 인도한 국가로 귀환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범죄인의 석방을 명한 미합중국 법원의 최종 결정을 선고를 내린 국가의 관할 당국에 1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선고국가가 범죄인의 귀환을 요청해야 할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② 석방이 명해진 범죄인을 선고의 집행을 위하여 소환한다는 요청을 선고국가로부터 접수한 경우에 법무장관은 그 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미합중국의 판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치안판사에게 당해 범죄인의 소환에 대한 신립을 제기할 수 있다. 신립은 선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범죄인이 소환을 요구한 국가의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점 그 범죄인은 형의 집행을 위하여 미합중국에 인도되었다는 점 ; 그 범죄인은 그의 인도가 조약이나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이 종료하기 전에 미합중국 법원에 의해 석방이 명해졌다는 점 ; 그리고 선고를 한 국가가 선고의 집행을 위해 그의 소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신립에는 선고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범죄인의 석방을 명한 법원의 결정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범죄인에게 발부당국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소환장이나 영장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발부한다. 법관이나 치안판사는 출석한 자가 신립에 명기된 범죄인이며 신립에 주장된 사실이 진정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인도가 있을 때까지 법무장관하에 구금한다. 선고국가의 관할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의 신병인도를 위한 귀환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관앞에서 행한 모든 증언의 등본과 그에게 제출된 모든 기록의 등본과 판결문이 국무장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신립은 범죄인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하여 소환된 범죄인은 모든 경우에 그를 소환한 국가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⑤ 범죄인의 소환은 미합중국의 구금이나 감시하에 있었던 기간을 선고의 집행에서 공제한다는 조건에 의한다.

⑥ 이 편의 제3186조, 제3188조내지 3191조와 제3195조는 이 조에 의한 범죄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단, 이 조에 의하여 소환된 범죄인은 어느 경우에도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에 의거하여 소환되는 범죄인은 각 소송단계에서 자신의 보증금으로 보석이나 석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115조 〔반환이나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선고의 집행〕 미합중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한 국가의 형사소송에서 받은 선고에서 범죄의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지불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형벌 또는 손해배상은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이 행한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다. 지급이 명해진 금액의 징수절차는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에서 법무장관이 수행한다. 그 절차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분배를 위

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인도한 국가의 조약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307 장 고 용

제4121조 〔연방교도작업, 관리자위원회〕 콜롬비아 특별구 정부법인인 "연방교도작업"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근무하도록 대통령이 보수없이 임명하는 6인의 관리자위원회가 관리한다.

관리자는 ①산업계 ②노동계 ③ 농업 ④ 소매상인과 소비자 ⑤ 국방장관 ⑥ 법무장관 각각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제4122조 〔연방교도작업의 관리〕 ① 연방교도작업은 연방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비 또는 미합중국의 각성과 산하기관에의 판매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방교정시설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산업적 운영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단, 사기업과 경쟁하여 국민에 대한 판매는 할 수 없다.

② 1.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는 미합중국의 교정시설내의 육체적 능력이 있는 모든 수용자를 고용하고, 실용적인 한도에서 교도작업의 운영을 다양하게 하며, 어떤 사기업도 교도소공장의 생산품으로 인하여 부당한 경쟁의 부담을 감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사기업이나 자유노동자와의 경쟁을 극소화 하도록 교도작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연방교도작업은 경제적인 이득을 산출할 수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방교도작업은 많은 수의 수용자들의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산품을 단지 연방정부에만 조달해야 한다.

3. 연방교도작업은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하여 그 판매범위를 연방전역으로 넓게 해야 한다.

4. 연방교도작업이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생산품의 물량을 높이려는 결정은 관리자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관리자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에 교도작업회사는 다음을 해야 한다.

(1) 당해 기업은 새로운 생산품이나 증대된 물량이 교도작업과 자유노동에 미칠 가능한 영향력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 보고서에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고 고려해야 한다.

(ⅰ) 현재 연방정부의 생산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인의 수

(ⅱ) 당해 생산품에 대한 영세기업, 소수자에 의한 영세기업, 잉여노동이 많은 지역에서의 기업과 비교한 연방정부의 점유비율

(iii) 당해 생산품에 대한 연방정부시장과 연방 외의 시장의 규모
(iv) 당해 생산품에 대한 연방정부의 성장목표
(v) 연방교도작업과 사기업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연방정부 시장의 예측된 능력

(2) 연방교도작업은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된 출판물을 이용해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자들에게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이나 기존 생산품의 물량 증대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3) 연방교도작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역단체에 자신들이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 또는 기존 생산품의 생산양의 증대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직접 알려야 하며 사기업들에게 그러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연방교도작업회사는 관리자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i) (1)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이나 기 생산품의 생산량 증대 계획에 대한 분석
(ii) 계획에 대해 회사에 제출된 의견
(iii)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회사의 권고
덧붙여서 관리자위원회는 계획에 대한 최종결정전에 교역단체나 다른 이해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집단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들로 하여금 계획에 대한 의견을 관리자위원회에 직접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5. 연방교도작업회사는 새로운 생산품의 생산이나 기 생산품의 생산량 증대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해 출판해야 한다.

6. 연방교도작업회사는 매 6개월마다 그 기간동안 회사매출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③ 연방교도작업회사의 관리자위원회는 자격있는 수용자에게 그들의 작업상 또는 기타 할당업무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④ 1. 이 장의 규정은 국방장관, 법무장관과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가 합의한 범위와 기간, 조건에 의거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각성 또는 국방성 산하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의 작업취업과 훈련에 대하여 준용한다.

2. 각 성과 국방성 산하기관은 이 항의 1.문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설비를 재원의 교환없이 연방교도작업에 이전시킬 수 있다.

⑤ 1. 이 장의 규정은 콜롬비아특별구의 장관, 법무장관,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가 합의한 범위와 기간, 조건에 의거하여 콜롬비아 특별구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교정

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의 작업취업과 훈련에 준용한다.

2. 콜롬비아 특별구장관은 이 조의 제5항 1문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설비를 재원의 교환없이 연방교도작업에 이전시킬 수 있다.
3. 이 장의 규정은 "콜롬비아 특별구정부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교정작업기금을 국고에 적립하기 위한 법률"이라 명명된 1964년 10월 3일 승인된 법률의 규정에 해석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23조 〔신종작업〕 이 장에 의거하여 신설된 작업은 기존의 병기공장, 해군공창 또는 기타 정부공장의 생산을 삭감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석방 후의 생계마련의 수단을 제공할 직업상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연방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업시설은 교정시설의 구내 또는 임대차, 매입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세울 수 있다.

제4124조 〔연방정부기관의 교도작업생산품의 구입〕 ① 일부의 연방성과 정부기관 및 기타 모든 정부시설은 이 장에 의하여 허가된 작업제품으로서 그들의 수요에 충당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산품을 현재의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② 생산품의 가격·품질·성질 또는 적합성에 관한 분쟁은 감사원장, 일반조달청장과 대통령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중재한다. 그들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③ 각 연방정부의 국, 청, 그리고 기관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교도작업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해 다른 구입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연방조달청에 보고해야 한다. 연방조달청에 의해 발생되는 보고서에는 연방 국, 청, 기관에 의해 보고된 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법하에서 연방교도작업회사의 매출은 정부내 이동으로 본다. 연방교도작업회사의 매출에 대한 보고는 보고기간동안 연방정부에 의해 구입된 물품에 대한 초괄적인 개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④ 이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연방교도작업회사는 판매물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출판해야 한다. 이러한 카탈로그는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만큼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4125조 〔공공노역, 수형자캠프〕 ① 법무장관은 각 성과 장관의 상호 합의한 기간·조

건·보수에 의거하여 도로건설과 보수, 공공토지의 청소와 관리, 재조림, 제방건축 기타 공공도로의 건설과 보수, 그리고 전부 혹은 대부분이 연방의회가 책정한 재원으로 충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각 성의 장관에게 미합중국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무장관은 인디언 보호거주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한 부지에 캠프를 신축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리할 수 있고, 그 캠프를 미합중국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의 캠프에서의 수용자의 이송과 관리비용 그리고 캠프관리비용은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 예산에서 지급되며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④ 캠프의 관리 비용의 일부로서 법무장관은 그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전수입을 그가 제정한 규칙과 명령에 의하여 수용자나 그의 부양자에 대한 지급에 공할 수 있다.

⑤ 수용자의 구금·이송·통제·규율·도주·석방에 관한 미합중국의 기타 모든 법률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합중국의 기타 모든 법률은 캠프에 이송된 수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126조 〔교도작업기금, 회계의 이용과 결산〕 ① 연방교도작업의 통제에 의한 모든 금전 또는 그 작업의 생산품과 부산물의 판매수입금 또는 연방수용자의 노무제공으로 받은 수입금은 미합중국 국고의 교도작업기금 계정에 예치하거나 납부하며, 일반회계사무소가 발행한 처분장이나 처분증명서에 의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② 위의 기금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유효한 청구권과 책무는 법인이 인수한다.

③ 정부부처와 시설의 지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회사는 기금과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수입금을 다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 이 장에 의해 부여된 의무의 수행 ;
2. 교도작업용 건물과 설비의 보수·대체·건설·관리 ;
3. 수용자의 작업상 또는 기타 할당작업에 관계없이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
4. 작업에 취업된 수용자와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봉사를 행한 수용자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발한 명령과 규칙에 의한 보상기금 또는 구금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활동 또는 작업중 입은 재해에 대한 수용자나 그 부양자에게의 보상지급 등에 운영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지급금은 제5편의 제81장에 규정된 것보다 커서는 안된다.

④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감사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산과 정산을 위하여 일반회계사무소에 제출한다. 회계는 지출된 금액, 자본, 타 출처로부터의 수입금을 포함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포함해야 한다.

⑤ 회계에는 충당된 현금과 자본 그리고 영수증까지 법인의 모든 재정거래를 포함해야 한다.
⑥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시설의 매입, 보수, 개조 등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사업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교도소나 제4125장에 따른 캠프 등 교정시설을 건설하고 매입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4127조 〔연방의회에 대한 교도작업보고〕 연방교도작업의 관리자위원회는 당해 법인의 사업실적과 법인기금의 상황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제4128조 〔법무장관에 의한 의무수행〕 연방교도작업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무장관은 법률이 그에게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129조 〔대출과 투자의 권한〕 ① 1. 관리자위원회에서 승인된 대로 연방교도작업은 재무상에게 채권을 발생할 권한이 있다. 재무상은 재량에 따라 연방교도작업의 채권총액이 법인의 순가치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에 동의할 수 있다. 채권의 매입을 위해서 재무상은 31권의 제31장하에 발행된 증권의 판매를 공공부채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재무상의 채권구입은 미국의 일반 시장에서의 채권에 대한 현행 이자율을 고려해서 재무상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배당을 줄 수 있도록 그 조건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재무상은 정해진 조건하에서 재무상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재무상에 의해 획득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재무상의 채권매각 및 매입은 미국에서의 공공부채의 거래로 간주하여야 한다.

② 연방교도작업은 재무상에게 연방교도기금을 투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투자는 관리자위원회가 정한 법인의 필요에 맞는 만기일을 가진 공공부채증권으로 해야 하는데, 현행 시장에서의 채권에 대한 이윤율을 고려하여 내무상이 결정한 이윤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313 장 정신병이나 정신적 결함을 지닌 범죄인

제4241조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에 대한 판정〕 ① 피고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 범죄로 인하여 소추가 개시된 후 피고에 대한 선고전에는 언제든지 피고 또는 검사는 피고의 정신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드는 정신적 결함이나 정신병을 현재 갖고 있다고 믿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위의 심리를 명한다.

②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전에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보고서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결 - 심리결과를 법원이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피고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 무능력에 처하게 하는 정신병이나 정신적 결함을 현재 갖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적당한 시설에 처우를 위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피고를 입원시켜야 한다. -

1. 그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사실상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2. 다음 중 빠른 기간까지의 상당한 추가기간
   (A) 법원이 추가기간내에 그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사실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또는
   (B) 그에 대한 현 기소가 법률에 따라 처결될 때까지 지정된 기간의 만료시에 피고의 정신적 상태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지 아니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피고는 제42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석방 - 제3항에 의하여 피고를 입원시킨 시설의 장은 피고가 그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히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감호를 명했던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 증명의 등본을 피고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적격 판정하기 위하여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후에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소송철자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히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입원시설로부터 즉시 퇴원할 것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정한다. 퇴원에 있어서 피고는 제207장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적격인정의 채택 - 법원이 피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피고는 기소된 범죄에 대한 방어로 자신의 정신이상을 제기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위의 사실인정은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제4242조 〔범죄시 정신이상의 존재에 대한 판정〕 ① 재판시의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에 대한 신청 -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가 정신이상을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보고서 또는 심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② 특별평결 - 피고의 신청 또는 정부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에 규정된 바의 통지에 따라 정신이상이 쟁점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배심은 피고에게 다음이 인정된다는 설시를 받아야 하며,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유죄
2. 무죄
3. 정신이상만을 이유로 한 무죄

제4243조 〔정신이상만을 이유로 하여 무죄가 인정된 자의 입원〕 ①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현재의 정신상태의 판정 - 기소된 범죄당시의 정신이상만을 이유로 하여 무죄가 인정된 자는 제⑤항에 의한 석방의 적격을 갖출 때까지 적당한 시설에 감호된다.

②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제3항에 의한 심리기일전에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 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을 명한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특별평가 후 40일 이내에 행한다.

④ 입증책임 - 이 조 제3항에 의거한 심리에서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수반하거나 그러한 상해 또는 손실의 사실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범죄에 대하여 정신이상의 이유만으로 무죄로 인정된 자는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써 자신의 석방이 현재의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기타의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의 우세에 의한 입증책임을 진다.

⑤ 판정과 처결 - 심리 후에 법원은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그 자의 석방이 현재의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한다.

법무장관은 그의 주소지 또는 재판이 행하여진 지역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 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여 위의 주의 관계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주가 당해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

1. 당해 주가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 또는
2. 그의 석방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자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될때까지 ; 그 중 빠른 기간까지 그를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접무장관은 위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치료 및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⑥ 석방 - 무죄로 인정된 자가 제5항에 의거하여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가 석방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의 처방요법,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서를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무죄가 인정된 그 장의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 후에 법원은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1. 그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그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장이 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법원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그리고
   (B) 석방에 대한 명시적 조건으로 그에게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심리를 거쳐서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조건부 석방의 취소 - 무죄가 인정되어 제6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자에게 부과된 요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의료시설의 장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법무장관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또는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관할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그의 계속되는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재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⑧ 일시석방의 제한-범행시 정신이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어 제5항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떠날 수 있다.

1. 사건담당 법원의 승인, 검사와 당해 인에게 고지, 그리고 청문회 후에
2. 긴급시
3. 연방사법관리에 의해 수행될 때

⑨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정신이상으로 판명된 자

1. 법무장관에게 신병양도-콜럼비아 특별구 법 제24편 제301조 제8항과 이 편의 제4247조 제10항과는 별도로 컬럼비아 특별구법 제24편 제301조 제4항 1.에 따라 정신병으로 입원한 자는 법무장관에게 신병이 양도되고 법무장관은 당해 인을 적절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시켜야 한다.
2. 신청-
   (1) 일반적으로- 법무장관은 미연방 지방법원에 신병이 인도된 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2) 고지- 법무장관은 당해 인과 당해인의 가족 또는 변호사나 기타 합법적인 자에게 당해 인의 신병인도에 대해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당해 인은 15일내에 신병인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는 신병의 인도가 당해 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만을 결정해야 한다.
   (3) 명령- 법원은 법무장관의 신청서를 받으면 신병의 인도가 당해 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에로의 신병인도를 명령해야 한다.

(4) 효과- 이 조에 있는 어떤 내용도

(ⅰ) 청문회의 개최에 대한 관심이나 고지에 대한 자유를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다.

(ⅱ) 미국정부니 미국정부의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항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ⅲ)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인도된 자를 이동하고 양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정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제6항과 제7항, 그리고 제4247조는 이 조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신병이 인도된 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4244조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입원〕 ①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의 판정을 위한 신청 - 유죄가 인정된 피고 또는 검사는 피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피고가 선고를 받기 전에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의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실질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심리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의 감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그 피고에 대한 선고 전에 위의 심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신적 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전에 법원은 피고에 대한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 또는 심리에 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병 또는 심리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와 더불어 추가로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지만,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의 감호가 요구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검사관의 의견이 그 보고에 첨부된 때에는 그 보고는 또한 피고에게 필요로 하는 처우의 종류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선고방안에 관한 검사관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결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피고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자유형의 선고에 대신하여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한 적당한

시설에 감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피고를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그러한 감호는 당해 피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으로 자유형이 가선고된 것으로 본다.

⑤ 석방 - 피고가 제4항에 따라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피고가 더 이상 치료 EH는 처우를 위하여 그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당해 피고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의 제출시에 제4항에 따라 부과된 가선고가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하며 가선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45조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 수형자의 입원〕 ① 수형자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의 판정을 위한 신청 -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서면 또는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이송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현재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심리를 당해 시설이 위한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의 이송이 연기된다.

②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전에 법원은 그에 대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결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그가 더 이상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감호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또는 자유형의 선고가 만료될 때까지 양자 중 빠른 기간까지 그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⑤ 석방 - 그가 제4항에 따라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가 더 이상 치료 또는 처우를 위하여 그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효과에 대한 증명을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증명의 제출시에 그에게 부과된 자유형의 형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자유형의 형기의 만료시까지 그를 재구금할 것을 명해야 한다.

제4246조 〔석방되어야 할 자로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 자의 입원〕 ① 소송절차의 개시 - 형기의 만료가 임박한 자 또는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된 자 또는 정신적 상태에 관련된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상의 소추가 기각된 자가 입원되어 있는 시설의 장은 그러한 자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주의 감호와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가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그가 구금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와 검사에게 그리고 그가 제4241조 제4항에 의하여 감호된 경우에는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를 명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증명이 접수된 때에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의 석방이 연기된다.

② 정신적 검사 또는 심리검사와 보고 - 심리기일 전에 법원은 그 피고에 대한 정신병 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할 것과 정신병이나 심리에 관한 보고를 제4247조 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심리 - 심리는 제42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④ 판정과 처결 -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에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법무장관의 감호에 위탁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그의 주소지 또는 재판이 행해졌던 지역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여 그 주의 관계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주가 당해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가 그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1. 당해 주가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또는

2. 그의 석방 또는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의 정신적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그 중 빠른 기간까지 그를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입원시켜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의 주가 그에 대한 감호, 치료와 처우의 책임을 인수하도록 상당한 모든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

⑤ 석방 - 그가 제4항에 의거하여 입원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의 석방이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효과에 관한 증명을 감호를 명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그 증명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의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제424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심리를 거친 후에 법원은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1. 그의 석방이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그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장이 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증명하고 법원이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그에 대하여 마련된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그를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석방에 대한 명시적 조건으로 그에게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위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심리를 거쳐서 의료적 · 정신병적 · 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조건부 석방의 취소 - 제5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자에게 부과된 요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의료시설의 장은 그가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법무장관과 그에 대한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또는 그가 의료적 · 정신병적 · 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

요법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그를 그에 대한 관할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가 의료적·정신병적·심리적 치료와 처우에 관한 처방요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계속되는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당한 시설에 재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⑦ 기타 일정한 자의 주로의 석방 -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인하여 모든 소추가 기각된 자를 이 조에 의거하여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이 그가 현재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법무장관에게 증명한 때에는 법무장관은 주의 민사상의 구금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그의 주소가 있거나 그에 대한 재판이 행해졌던 주의 관계공무원에게 그를 석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당해 주가 위의 책임을 인수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당해 주로부터 위의 책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단, 통지의 접수는 시설의 장의 증명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정의- 이 장에서 주는 콜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한다.

제4247조 〔이 장의 총칙〕 ① 정의 - 이 장에 사용되는 용어

1. "사회복귀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개인이 그가 복귀할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범죄의 중대성과 그것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교육훈련.
   (B) 개인이 그가 복귀할 사회에 공헌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업훈련.
   (C) 개인이 자신의 심신적 의존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 알코올 기타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 그리고
   (D) 조직적인 신체적 운동과 오락프로그램
2. "적당한 시설" 이라 함은 범죄의 성실과 피고의 성격에 따른 치료 또는 처우를 제공하기에 적당한 시설을 의미한다.

②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 - 이 장에 의거하여 명해진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가를 받은 정신병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행한다. 단,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명의 검사관이 행한다.

각 검사관은 법원이 지명한다. 단, 제4245조 또는 제4245조에 따라 검사가 명해진 경우에는 피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추가로 1명의 검사관을 지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

4241조, 제4244조, 제4245조하의 명령에 의한 검사를 위해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기간동안 그리고 제4242조, 제4243조, 제4246조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동안 적당한 시설에서의 법무장관의 보호하에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장 근접한 적당한 시설에서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한다.

시설의 장은 피고를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추가기간이 필요하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제4241조, 제4244조, 제4245조에 있어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제4242조, 제4243조, 제42465조에 있어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상당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신병 또는 심리에 관한 보고 - 이 장에 의하여 명령된 정신병 또는 심리에 관한 보고는 정신병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행하도록 지명된 검사관이 준비하여 검사를 받는 자의 변호인과 검사에게 송달할 등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 자의 경력과 현재의 증후
2. 사용된 정신병적 · 심리적 · 의료적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
3. 검사관의 사실인정 그리고
4. 진단, 예단에 관한 검사관의 의견과,
   (A) 제4241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가 그에 대한 소송절차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그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정신적 무능력에 처하게 하는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B) 제4242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가 기소된 범죄 당시에 정신이상이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C)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그의 석방이 타인의 신체적 상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의 실질적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D) 제4244조 또는 제4245조에 의하여 검사가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가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치료나 처우를 위하여 적당한 시설에 감호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관의 의견.
   (E) 검사가 대배심의 기소를 위한 조사의 일부분으로 명하여진 경우에는 피고의 정신적 상태가 선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검사관의 추천.

④ 심리 - 이 장에 의하여 명하여진 심리에서 자신의 정신적 상태가 심리의 대상이 된 자는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며, 그가 재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적당한 대리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006조 A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변호인이 선정된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와 심리에 출석한 증인과 대면하여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기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⑤ 정기보고와 정보 요구 -

1.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은

(A) 제4241조에 의거한 경우에는 매 6월마다 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B)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에 의거한 경우에는 그 자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보고를 그의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추천을 포함하여서 매년마다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는 그 시설에의 그의 감호를 명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의 등본은 법원이 지정하는 기타의 자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에 의하여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입원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그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비디오테이프기록 - 피고측 변호인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4항에 의거한 정기보고의 근거가 된 피고의 증언이나 면담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로 기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비디오테이프기록은 정기보고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해받지 아니하는 인신보호영장 -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규정된 어떤 규정도 그 조항에 따라 구금된 자가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자신의 불법구금을 주장함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⑧ 석방 - 개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이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 각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제출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의 변호인이나 법률적 후견인은 그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제든지 감호를 명한 법원에 대하여 그가 당해시설로부터 석방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신청은 그가 계속 입원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180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없다. 신청의 등본은 그를 입원시키고 있는 시설의 장과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⑨ 법무장관의 권한과 책임

1. 법무장관은 -

(A) 이 장에 의하여 그의 보로에 위탁된 자의 구금, 입원, 치료 또는 처우와 그에 대한 봉사의 제공을 위하여 주, 하위행정구역, 지방 또는 사설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제4243조 또는 제4246조에 의하여 그의 보호에 위탁된 자에 대한 주법에 따른 민사구금을 신청할 수 있다.

(C) 제4241조, 제4243조, 제4244조, 제4245조, 제42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시설에 수감하기 전에 그 시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D) 이 장의 규정의 일반적인 이행과 이 장을 이행하는데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정립, 보건성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이 장은 콜롬비아 특별구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의회의 법률 또는 군사법무에 관한 통일법령집에 의한 소추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5 장 석방과 석방지출

제4281조 삭제

제4282조 〔체포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자〕 미국본토와 알래스카 지역에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되었더라도 유죄평결을 받지 않은 자 제207장에 따라서 구금된 자에 대해 법원은 재량을 가지고 미국연방지방재판관에게 법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불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4283조 삭제

제4284조 삭제

제4285조 〔재판진행 중 석방되는 자〕 제207장의 규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차후 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명령을 할 때 판사나 치안판사는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해 인이 해당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수단을 마련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될 시에 미국연방재판관으로 하여금 당해 인에 대한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요금을 마련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편의 제570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1일 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원출두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갈 때까지의 숙식비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 317 장 여자교정시설

제4321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법무장관, 교정국장, 연방여자교도소 소장과 함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4명의 일반시민이 4년 임기의 무보수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여자수용자들의 석방 후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훈련과 교육의 수단과 방법을 권고해야 한다.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을 위해 새로운 시민을 임명한다.

제 319 장 미연방교정연구소

제4351조 〔설치,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보수, 관리, 위원회, 권한위임, 국장〕

① 교정국내에 교정연구소를 설치한다.

② 교정연구소의 정책과 운영은 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의 6인은 직권상 위원회 위원으로 겸임한다; 연방교정국장, 사법지원국장, 양형위원회 의장, 연방사법센터 소장,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의 부소장, 의료복지교육국의 인간개발분야 부서장

③ 나머지 10인의 위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1. 법무장관은 처음에 5인을 임명하는데 1인은 1년의 임기로, 1인은 2년의 임기로, 3인은 3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각 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법무장관은 각 3년임기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은 연방, 주, 지방정부 차원의 교정, 보호관찰, 가석방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법무장관은 처음에 5인을 임명하는 데, 1인은 1년의 임기로, 3인은 2년의 임기로, 1인은 3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각 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법무장관은 각 3년임기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선출된 위원은 경제계, 노동계, 교육계의 자로서 교정, 보호관찰, 가석방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미국정부의 고용된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정부의 직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부가적인 보수없이 일을 해야 하며 위워회의 일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 숙식비,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률 제5편의 제5332조의 GS-18에 의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들은 위원들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1-2인의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공무원법에 의거하지 않고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술위원이나 기타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미연방의 공무원이 아니면서 연구소에 자문을 해 주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은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다만 그 비율이 미국 연방법률 제5편의 제5332조의 GS-18에 의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권한을 적절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연구소는 위원회와 논의하에 법무장관이 임명한 소장의 감독하에 있다. 소장은 조직, 직원, 재정적 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공무원법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이나 교수, 행정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소장은 토지와 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연구소를 위해 기부금이나 신용채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를 도와줄 컨설턴트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소장은 그 권한을 적절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52조 〔연구소의 권한, 시간, 수혜인 기록〕

① 미연방 교정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사기관, 교육기관, 개인들로부터 기금을 받거나 기금을 만들고 계약을 한다.
2. 교정관련정보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재범, 교정직원들에 대한 훈련, 범죄인과 비행소년들을 위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전파하는 정보센터로서 기능한다.
3. 연방법원, 주 법원, 지방법원이나 정부기관들에게 범죄인과 비행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 훈련, 처우, 재활을 위한 개발과 유지, 조정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4.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사기관들이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5. 여러 지역에서 사법집행관리, 판사, 법원직원, 보호관찰과 가석방관련 직원, 교정관련 직원, 사회복지사, 전과자, 법률보조원들에게 범죄인의 처우와 재활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등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
6. 수용자, 가석방자,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범죄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훈련팀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7. 범죄원인, 예방, 진단, 처우를 포함하는 교정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8.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교정관련 기관, 조직, 인력들을 위해 교정정책과 목표, 기준과 권고안을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한다.
9. 교정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채용된 새로운 관점, 기술, 체계, 프로그램, 고안물에 대한 효과측정을 하는 평가연구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
10. 연구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 자료, 프로그램 보고서, 기타 문건들을 연방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일을 한다.
11. 연방정부기관의 장과 인력, 설비, 기구의 사용에 대해 조정하고 지불하는 일을 한다.
12. 주정부나 기방정부, 떠는 기타 공공기관 사기관,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13. 연구소 기능의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기관과 계약을 맺는 일을 한다.
14. 미연방법률 제5편의 제3109조에 따라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을 하는 데 그 비용은 미국 연방법률 제5편의 제5332조의 GS-18에 의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불한다.

② 삭제

③ 이 장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은 연구소가 규정한대로 지원금액., 프로젝트의 총액, 프로젝트 중 타 기관에 의해 지원받은 액수의 비율 등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여 효과적인 회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연구소와 미연방의 감사관, 또는 그들의 위임자는 이 장에 따라 기금을 받은 수혜자의 서적, 문서, 논문, 기록 등에 대해 회계하고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 조의 내용은 이 편에 의해 지원받은 모든 수혜자에게 해당한다. 즉 연구소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연구소와의 계약자나 직접 수혜자로부터 하청계약을 맺은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제 4 편 소년범죄인의 교정

제 401 장 총 칙

제5001조 〔주 당국에의 인도, 비용〕 21세 이하의 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혐의로 체포되어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원에서 기소된 경우에 법무성의 조사결과, 그 소년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할 수 있고 또한 인수하여 그를 구금하고 당해 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그를 처리하려고 하는 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률에 의할 때 그가 범죄를 행하였거나 또는 범인라고 간주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합중국과 그 소년범

죄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때에는 그가 체포된 지역의 미합중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여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그 지역의 미합중국 집행관은 미합중국 검사의 서면명령에 의하여 그를 당해 주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에 이송하고, 이미 그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며, 그곳의 관계기관에 그를 인도하여 구금시켜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에 따라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로부터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에로 이송되기에 앞서서, 그 자신이 그러한 귀환에 대한 용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수형자는 귀환되어야 하는 주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의 행정당국에 의하여 이 장 제3182조에 규정된 바의 기소장이나 선거진술서를 첨부한 요구가 미합중국 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허가된 그러한 자의 이송에 부수하는 비용은 "임금, 수수료와 비용, 미합중국 집행관" 예산에 의거 지불된다.

제5003조 〔주 범죄인의 구금〕 ① 1. 교정국장은 어느 주 또는 지역의 법원에서 형사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보호·생계·교육·처우와 훈련을 위하여 인력과 시설이 이용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 또는 지역의 관계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 모든 비용과 기타 포함되는 모든 지출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그 전부를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2)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주나 지방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는 경우에는 제4082조 제2항 1. 에 규정된 지정에 의해 계약에서 타결된 형식과 조건을 따른다.

② 그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기금은 그러한 업무에 대한 본래의 지출이 행하여졌던 국고의 계정의 대변에 예치할 수 있다.

③ 계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법무장관 하에 구금된 자는 그에게 부과된 선고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미합중국의 모든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주"는 미합중국의 모든 주와 영토, 속령 그리고 파나마 운하지구를 포함한다.

제403장 소년범죄

제5031조 〔정의〕 "소년"이라 함은 이 장에 있어서는 아직 18회 생일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

며, 소년범죄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한 이 장의 소송절차와 처결에 있어서는 아직 21회 생일에 이르지 아니한 자이다.

"소년범죄"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가 행한 미합중국의 법률위반으로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범죄가 되었을 행위를 말한다.

제5032조 〔지방법원에서의 범죄소송, 형사소추 위한 이송〕 소년범죄행위의 혐의가 있는 소년은 미합중국의 영해와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법률위반으로서 자유형의 법정최고형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장관의 조사를 거쳐서

1. 소년법원이나 기타 주의 관할법원이 그 혐의받고 있는 소년범죄행위에 관하여 위의 소년에 대한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의 인수를 거절하였다는 점
2. 그 주에는 소년의 필요에 대하여 적당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설비가 없다는 점 또는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중죄로 볼 수 있는 폭력범죄이거나 규제약물법 제401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규제약물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의 제1002조, 1003조, 1005조, 1009조, 1010조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이 편의 제922조, 제924조에 규정된 범죄라는 점을 연방의 관할지방법원에 대하여 증명하고, 그 사건 또는 그 범죄에 있어서 연방 관할권의 집행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인 연방의 이익이 있는 경우 한 미합중국의 연방법원에 기소된다.

법무장관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년은 그 주의 관계 사법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주"는 미 본토와 콜롬비아 특별구, 속령을 포함한다.

혐의를 가진 비행소년이 이 조항에 따라 관할 주 당국에 자수하지 않으면 당해 안에 대한 모든 절차는 미연방의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언제든지 그 지역 내에서 판사실 기타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정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이 편의 제3401조의 제7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형사소추도 개시되지 아니한다.

소년범죄행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은 주 당국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성인으로서 기소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의거하여 기소된다.

단,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중죄로 볼 수 있는 폭력범죄이거나 규제약물법 제401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규제약물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의 제1002조, 1003조, 1005조, 1009조, 1010조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이 편의 제922조, 제924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15번째 생일이 지난 후에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소년에 있어서는 연방 관할

지방법원이 심리를 거쳐서 이송이 정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의 법무장관의 이송신청에 의하여 그 피의행위에 근거한 형사소추가 개시될 수 있다. 선고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만일 폭력범죄가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11조, 제1113조 하의 범죄이거나 제2111조, 제2113저, 제2241조 제1항, 제2241조 제3항 에 규정된 것처럼 당해 소년이 범행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15세'라는 규정은 '13세'로 대체되어야 하고 '15번째'는 '13번째'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1152조와 11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디안 부족정부의 형사관할하에 있는 자는 연방 관할하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타인에 대한 물리력의 사용, 사용의 기도, 사용의 협박을 범죄요소로 하는 중죄 또는 범죄의 본성상 범행에 있어 타인에 대한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한 중죄 또는 이 편의 제32조, 제81조, 제844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2275조, 규제약물법 제401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규제약물 수입과 수출에 관한 법의 제1002조, 1003조, 1009조, 101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만16세 이후에 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성인이 행하였더라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 또는 연방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주의 중죄법령에 위반한 범죄가 되었을 행위로 하여 유죄가 인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년은 형사소추를 위하여 연방의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이 정의를 위하는 것인가 여부를 평가하는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며, 각 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은 기록되어야 한다. 당해 소년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 피의범죄의 특성, 과거 범행경력, 당해 소년의 현재의 지적 발전과 정신적 성숙도, 과거의 처우노력의 성질과 그 노력에 대한 당해 소년의 반응 ; 당해 소년의 행동상의 문제를 처우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당해 소년이 범죄조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타인으로 하여금 규제약물이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행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런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사건을 성인법원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없더라도 성인법원으로의 이송을 할 수 있다.

이송의 심리에 대하여는 당해 소년,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에게 그리고 그의 변호인에게 상당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해 소년은 이송의 심리가 있는 동안 그리고 기타 소송상 주요한 모든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일단 소년이 유죄답변거래에 들어갔거나, 범죄 또는 피의소년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증거가 채택되기 시작한 단계에 도달한 때에는 그 피의소년의 범죄행위에 근거한 차후의 형사소추 또는 소년범 소송절차는 금지된다.

이송의 심리에 앞서 또는 심리동안에 소년이 행한 진술은 차후의 형사소추에서 원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소년이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 또는 그 소년이 일차적으로 기소되었더라면 이송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였을 또 다른 범죄로 일차적으로 기소되었더라면 이송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였을 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년에 관한 차후의 소송절차는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이 장에 의한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수행되는 소년에 대한 소송절차는 당해 소년에 관한 과거의 소년법원기록이 그 법원에 전달될 때까지 또는 소년법원의 서기가 당해 소년이 전과가 없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당해 소년의 기록이 이용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증명할 때까지 제5037조에 따라 개시되지 아니한다.

소년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때에는 그 소년이 행하였다고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를 공식적인 소송기록의 일부로, 그리고 그 소년에 관한 공식기록의 일부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5033조 〔치안판사에의 출석이전의 구금〕 소년이 소년범죄행위의 혐의로 구금된 경우에는 체포한 관리는 즉시 그 소년에게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즉시 법무장관과 소년의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에게 그 소년의 권리와 혐의받은 범죄에 성질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소년은 즉시 치안판사에게 출석되어야 한다. 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치안판사에게 출석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5034조 〔치안판사의 의무〕 치안판사는 소년이 결정적인 소송단계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과 부모·후견인·관리인이 재정적인 이유로 적절한 대리를 획득할 수 없는 쌀에는 소년은 대리할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소년과 부모, 후견인 또는 관리인이 재정상으로는 적절한 대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안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고 상당한 변호사비용을 지불을 명하거나 또는 소년, 그의 부모·후견인·관리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그 소년의 부모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부모나 후견인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소년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부모나 후견인의 이익과 소년의 이익이 반대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위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년이 치안판사에의 최초 출석이전에 아직 석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안판사는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심리를 거쳐서 당해 소년의 구금이 관할법원에의 적시의 출석을 보장

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소년이나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할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년을 그 법원에 출두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소년을 그의 부모 · 후견인 · 대리인 또는 기타 책임있는 당사자(피난 - 보호시설의 장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에게 석방하여야 한다.

제5035조 〔처결전의 구치〕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은 소년시설 기타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한하여 구치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고아원 또는 그의 거주가 있는 지역내이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지역사회적 기반을 가진 시설에 구치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성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능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범은 이미 선고를 받은 소년범과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구금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 · 난방 · 조광 · 위생시설 · 침구 · 의류 · 오락 · 교육과 필요한 정신병적 · 심리적인 또는 기타의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구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5036조 〔신속한 재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치되어 있는 소년범 피의자가 그 구치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당해 소년이나 그의 변호인에 의하여 추가적 지연이 야기되었다는 점 또는 당해소년과 그의 변호인이 추가적 지연에 동의하였다는 점 또는 추가적 지연이 특히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는 소년범 피의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기각된다. 법원의 공소가건 과다만을 이유로 한 지연은 정의를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의하여 기각된 공소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제5037조 〔처결을 위한 심리〕 ① 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제4항에 의거하여 조사의 계속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후 20일의 공판일 이내에 별도의 처결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처결심리 이후에 그리고 양형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관련 정책의 내용을 고려한 후에 법원은 소년범죄라는 결론을 유예하고 제3556조에 따라 배상명령에 들어가거나 보호관찰을 부과거나 공식구금할 수 있다. 처결 후 항소나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의 석방과 구금에 대해서는 법원은 제207장에 따라 진행시켜야 한다.

② 소년범죄로 결론이 내려진 소년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1. 18세미만인 경우,
   (1) 소년이 21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3561조의 제3항

에 따라 규정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년이 18세 이상 21세 이하인 경우

(1) 3년

(2)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3561조의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63조, 제3564조, 제3565조의 조항들은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명령을 하는 데도 적용된다.

③ 소년범죄자로 결론이 내려진 소년에게 명할 수 있는 공식구금의 기간은

1. 18세 미만인 경우

(1) 소년이 21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3561조의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년이 18세 이상 21세 이하인 경우

(1) 성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이 A급, B급, C급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나머지 경우에는

(ⅰ) 3년

(ⅱ) 소년이 성인으로 재판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의 징역

제3624조는 소년의 구금을 명하는데도 적용된다.

③ 법원은 소년범 피의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범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자료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통지와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심리를 거친 후에 적정한 기관에 의한 관찰과 조사를 위하여 그를 법무장관 하에 구금시킬 수 있다.

그러한 관찰과 조사는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입원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외래로 수행된다. 피의자인 소년에 있어서 입원조사는 당해 소년과 그의 변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명해질 수 있다. 기관은 그 피의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범에 대하여 그의 개인적 특성, 재능, 배경, 전과 또는 범죄경험, 정신적·신체적 결함, 그리고 기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철저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은 법원이 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소년의 구금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소년과 정부의 변호인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39조 〔구금〕 법무장관 하에 구금된 소년은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혐

의로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수용된 성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도는 성인교도소 또는 성인교도소에는 수용 내지 구금되지 아니한다.

구금된 모든 소년은 적당한 음식 · 난방 · 조광 · 위생시설 · 침구 · 의류 · 오락 · 상담 · 교육 · 훈련, 그리고 필요한 정신병적 · 심리적인 또는 기타 치료와 처우를 포함하는 의료구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법무장관은 소년을 고아원 또는 그의 주거가 있는 지역내이거나 그 부근에 위치한 지역 사회적 기반을 가진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제5040조 〔지원〕 법무장관은 그의 구금하에 있는 소년의 관찰과 조사, 구금과 보호를 위하여 공 · 사의 기관, 개인 그리고 지역내의 숙소와 고아원 등의 지역 사회적 기반을 가진 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법무장관은 필요한 규칙을 공포하고 "미합중국 수용자에 대한 지원"계정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5042조 〔보호관찰의 취소〕 소년보호관찰관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 취소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고지하고 논의해야 한다.

VI. 호주 South Australia 주의 교정서비스법

이 법은 1982년 4월 29일 교정서비스법 제48호에 의하여 교정시설의 설치와 관리, 수용자의 처우, 그리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발효됨.

[목 차]

제 1 편 서론 (제1조~4제조)

제 2 편 교정서비스

제1절 행정 (제7조~제9조)

제2절 교정자문회의 (제10조~제16조)

제3절 순회법원 (제17조)

제4절 지역사회 봉사 운영 (제17A조~제17D조)

제5절 프로베이션 호스텔 (제17E조)

제 3편 교정시설

제1절 교정시설의 설치 (제18조~제19조)

제2절 교정시설에 대한 조사 (제20조)

제 4편 징역

제1절 수용자의 입소 및 배치 (제21A조~제22조)

제3절 수용자 심사 (제23조)

제4절 수용자에 대한 권한 (제24조)

제5절 수용자의 이송 및 휴가 (제25조~제28조)

제6절 수용자 관리 (제29조~제37AA조)

제6A절 가택구금 (제37A조~제37D조)

제7절 석방 (제38조~제39C조)

제 5편 위법행위

제1절 순회판사의 권한 (제41조~제42조)

제2절 규칙위반 (제42A조~제49조)
제4절 도주중인 수용자 (제50조~제52조)
제 6편 가석방
제1절 가석방위원회 (제55조~제64조)
제3절 가석방 (제66조~제77조)
제 8편 기타 (제83조~제89조)

제 1 편 서 론

명칭

제1조 이 법은 교정서비스법 1982라고 한다.

해석

제4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원주민 부족(aboriginal people)"은 유럽의 식민지통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호주에서 살아온 부족들을 말하고,

"원주민(aborigine)"은 원주민 부족에 의해 원주민의 후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자문회의(the advisory council)"는 교정자문회의를 말한다.

"위원회(the board)"는 사우스 오스트렐리아의 가석방위원회를 말한다.

"국장(the chief executive officer)"은 교정국의 국장을 말한다.

"아동성범죄(child sexual offence)"는 1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

(a) 강간

(b) 강제추행

(c) 근친상간

(d) 불법적인 성관계

(e) 성문란행위(gross indecency)

(f) 아동성매매

(g) 형법 1935 의 제58조A 와 즉결심판법 1953의 제23조과 제33조에 규정된 위반을 포함한 성적 범죄행동

(h) 미수

(i) 살인이나 유괴범죄 등 다른 범죄를 자행하는 동안에 위에 열거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교정관(community corrections officer)"은 교정국의 관리 또는 고용인으로서 범죄자의 지역사회내에서 감독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모욕수용자(contempt prisoner)"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정모욕죄로 교도소 수용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교정시설(correctional institution)"은 교도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을 말한다.

"부서(Department)"는 교정국을 말한다.

"지정된 조건(designated condition)"이란 가석방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가석방의 조건으로 그 조건을 위반할 시 자동적으로 가석방이 취소되는 조건을 말한다.

"약물(drug)"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a) 약물통제법 1984에 의해 금지되거나 의존성 약물로 규정된 것

(b) 처방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약물로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

"치안판사(magistrate)"는 치안판사법 1983에 의해 임용된 판사를 말한다.

"소장"은 현재 한 교도소의 관리 ·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석방 불가 기간(non-parole period)"은 법원에 의해 정해진 기간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경찰 교도소(police prison)"는 이 법의 제3편에서 경찰교도소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교도소"란 이 법의 제3편에서 교도소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미결수(remand prisoner)"는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된 자를 말한다.

"부정기형(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은 법원의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범죄의 결과로 정신적, 육체적 상해나 신경적 충격(nervous shock)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말한다.

"VIC 벌금(VIC levy)"은 범죄피해자법 200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거의 법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말한다.

"순회법원(Visiting Tribunal)"은 교정시설과 관련된 재판을 위해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법원을 말한다.

제 2 편 교정서비스

제 1 절 행 정

장관과 교정국장의 위임권

제7조 ① 장관은 필요할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권한과 기능을 교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정국장은 장관의 승인하에 이 법과 관련법에 의해 부여되거나 위임된 권한, 기능과 책임을 교정국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a) 교정국장은 장관의 승인하에 다음과 같은 권한, 기능, 책임을 경찰 교도소의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a) 교정국장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되고, 위임된 권한, 기능, 책임

(b) 교도소, 경찰서, 또는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 기능, 책임

③ 위임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장관이나 교정국장의 권한, 기능 책임의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의해 교정국장에게 부여되거나 위임된 권한과 책임을 교정국장이 부재중이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교정국 직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법의 집행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8조 장관은 본 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수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교정국장의 연례보고

제9조 ① 교정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의 교정국 업무와 장관이 지시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연례보고서를 접수한 후 바로 의회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 절 교정자문회의

자문회의의 설치

제10조 ① 교정자문회의는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② 교정자문회의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a) 교정자문회의의 의장은 범죄학이나 행형학, 기타 관련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b) 교정자문회의의 부의장은 경영학, 의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c) 검찰총장에 의해 제청된 위원 1명

(d) 장관에 의해 제청된 위원 1명

③ 교정자문회의 위원 중 1명은 적어도 여성이어야 하며, 1명은 남성이어야 한다.

임기

제11조 ① 교정자문회의 의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나머지 위원들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정자문회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수당과 경비

제12조 교정자문회의 위원은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퇴와 해임

제13조 ① 주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교정자문회의 위원직의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a) 위원자격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함

(b) 불명예스러운 행동

(c) 직무유기

② 교정자문회의 위원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궐석이 된다.

(a) 사망

(b) 임기만료

(c) 장관에게 사표제출

(d) 위 1항에 의거 주지사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

③ 교정자문회의에 궐석이 생긴 경우, 본 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교정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 방법

제14조 ① 자문회의 의장, 또는 의장 부재시 부의장은 자문회의를 주재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의의 어떤 의결도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자문회의의 업무는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자문회의의 기능

제15조 ① 자문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본 법의 집행과 수행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b) 자문회의에 부여한 업무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c) 본 법의 집행과 수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

(d) 본 법이나 다른 관련법에 의해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② 자문회의 위원은 모든 교정시설을 적절한 시간에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 내의 사람에게 질문할 권한을 가진다.

연례보고

제16조 ① 자문회의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본 법의 시행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1)항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절 순회법원

순회법원의 설치

제17조 ① 장관은 각 교정시설마다 순회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주지사는 공포를 통해서 각 교정시설에 다음과 같은 순회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a) 1인의 행정관료나

(b) 2인의 치안판사나

(c) 1인의 치안판사

제 4 절 지역사회봉사 운영

지역사회 봉사센터의 설치

제17조A ① 장관은 관보에 게재를 통해서 지역사회봉사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관보에 게재를 통해서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지역사회봉사자문위원회

제17조B ① 보호관찰법 1913에 의해 설치된 지역사회봉사 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지속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3명이상 5명이하로 구성되며 장관이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a) 1인은 교역 및 노동위원회(the United Trades and labor Council)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b) 1인은 교정국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장관이 정한 임기와 조건에 따라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a) 범죄자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지침을 만든다

(b) 기타 장관이 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봉사 위원회

제17조C ① 장관은 각 지역사회봉사센터에 지역사회봉사 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사회봉사 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장관이 임명한다.

(a) 1인의 치안판사

(b) 1인은 교역 및 노동위원회가 임명한 사람

(c) 1인은 교정국장에 의해 제청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봉사 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정한 임기와 조건에 따라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봉사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봉사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봉 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과 과업을 승인한다

(b) 승인된 프로젝트와 과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

(c) 범죄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수행을 감시한다.

(d) 기타 장관이 명한 기능을 수행한다.

⑤ 지역사회봉사 위원회는 다음을 제외한 지역사회봉사 프로젝트의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a)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b) 연령이나 질병, 빈곤 기타 사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 단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

(c)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프로젝트

⑥ 지역사회봉사 위원회는 지역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범죄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를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a) 범죄자가 지역사회봉사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수행하게 하는 경우

(b) 범죄자가 기금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

제17조D ① 장관은 지역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범죄자에게 보험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범죄자들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자원봉사감독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해 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 의하여 충당된다.

제 5 절 프로베이션 호스텔(Probation hostels)

프로베이션 호스텔의 설치

제17조E ① 장관은 관보에 게재를 통해서 프로베이션 호스텔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관보에 게재를 통해서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프로베이션 호스텔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 3 편 교정시설

제 1 절 교정시설의 설치

주지사는 교도소나 경찰교도소 설치를 선포할 수 있다.

제18조 ① 주지사는 선포를 통해서

(a) 교도소를 지정하거나

(b) 경찰청장(the Commissioner of Police)의 지휘하에 경찰교도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지사는 선포를 통해서 이 규정의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장관의 지휘하에 둔다.

제19조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교정시설은 장관의 지휘하에 있다.

제 2 절 교정시설에 대한 조사

정기적으로 조사

제20조 ① 장관은 교정시설에서 이 법의 규정대로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는 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자로 하여금 정기적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주지사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2a) 조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사법부나 행정관료로 은퇴한 사람

(b) 변호사

(c) 치안판사

③ 조사자가 해당 교정시설의 순회판사이거나 순회법원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은 조사할 수 없다.

④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자는

(a) 교정시설의 어느 곳이던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b) 교정시설내의 모든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다.

(c) 수용자 일반이나 특정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

(d) 수용자의 진정을 받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⑤ 조사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조사자는 조사를 마친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조사결과와 조사기간중의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조사자는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권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 4 편 징 역

제 1 절 수용자의 입소 및 배정

입소개시서

제21조A 법원의 명령이나 수용영장에 의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없다

(a) 법원의 명령내용이 기재된 있는 진술서

(b) 법원의 명령내용이 기재된 입소영장(the warrant of committment)

수용자의 배정

제22조 ①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며 신병이 유치된 사람은 교정국장이 정하는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②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사람은 교정국장이 정하는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③ 15일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④ 수용영장에 지정된 교정시설이 다른 곳일지라도 교정시설의 지정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절 수용자의 심사

입소시 심사와 정기심사

제23조 ① 교정국장은 6개월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도소에 처음 입소한 후 적당한 시일내에 그리고 1년정도 마다 수용자를 심사하고 그 환경을 심사하여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교정국장을 도와 평가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정국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자의 연령, 성, 사회적, 의학적, 심리적, 직업적 배경

(b) 교육, 훈련이나 의학적, 정신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c) 특정유형의 직업훈련에 대한 소질과 적성

(d) 범죄의 유형과 선고형량

(e) 법원이 가지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정보

(f) 교도소 내에서의 수용자의 행동

(g) 교도소의 안전 및 수용능력

(h)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질문

(i)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의 석방이나 재활과 관련된 계획제안

(j) 교정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④ 교정국장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용자에게 그것을 알려야 하며, 만약 수용자가 원할 때에는 교정국장 앞이나 조항 (2)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용자는 교정국장이나 조항 (2)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자신의 심사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입소심사가 끝난 후에, 교정국장은 교육이나 훈련, 의학적, 정신의학적 치료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며 수차례의 심사가 수행된 후에는 그 프로그램을 첨

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4 절 수용자에 대한 권한

교정국장은 수용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24조 ① 교정국장은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 있던, 외부에 있던 관계없이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따라서 교정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a) 수용자를 특정 교도소에 배정하는 것

(b) 수용자의 작업, 레크리에이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등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율을 제도화하는 것

제 5 절 수용자의 이송 및 휴가

수용자의 이송

제25조 ① 교정국장은 문서로된 명령에 의해서 수용자를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조항 ①에 의해 행해진 교정국장의 지시는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떠나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 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권한을 갖는다.

수용자는 이동중에 임시적으로 다른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 이외의 별도의 권한의 부여 없이도 수용자가 수용될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제27조 ① 교정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로된 지시에 의해서 수용자에게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출소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a) 병원진료나 정신과 진료나 검사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b)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출석하거나,

(c) 임금을 받는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또 레크리에이션이나 오락 또는 지역사회봉사에 참가하는 경우

(d) 교정국장의 판단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e) 범죄수사와 관련된 목적

(f) 기타 교정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본 항에 근거한 출소의 경우 교정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장관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1인 이상의 교정국 직원에 의해 동행하거나 감시받게 할 수 있다.

(2a)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출소가 필요한 경우, 교정국장은 숙식비 등 일정금액을 매주 지불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수용자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하여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보상금(VIC levy)의 금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교정국장은 문서로 본 항에 의해 부여된 출소를 취소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출소가능기간이 취소되었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도망 다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장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교정국 직원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⑤ 출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수용자는 불법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본다.

⑥ 수용자가 출소가 취소된 후에 도망 다닌 기간은 징역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범죄수사, 법원출석 등을 위한 수용자의 출소

제28조 ① 수용자는 기소된 범죄의 사전조사나, 재판, 선고 등의 목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자격이 있다.

② 수용자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목격자로 법정이나 검시관 앞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나 법정, 또는 검시관은 소장에게 해당 수용자의 출석을 허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수용자가 출석했던 법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 수용자는 교정시설로 돌아갈 수 있다.

④ 수용자가 범죄의 의심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소장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수사, 범죄증거 획득을 위해 수용자의 신병을 경찰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6 절 수용자의 관리

교도작업

제29조 ①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교정시설의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간에 소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들은 그들의 요청이나 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교도작업의 대상이 되는 작업은 수용자에게 인정할만한 전문성과 교역, 그리고 취업등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연령,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기술과 경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정교육

제30조 교정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 훈련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용자 봉급과 기타 수당

제31조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제시한 비율에 따라 봉급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② 본 Division에 따라 작업을 하는 수용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제시한 비율에 따라 기타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2a) 장관은 소장이 특별히 긍정적인 태도나 탁월한 작업수행 능력이나 기타 교도소내의 의무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수용자에게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너스 지불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조항②의 목적을 위해서 장관은 다음에 따라서 봉급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a) 작업의 성격

(b)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교정시설

(c) 작업을 수행하는 수용자들의 분류

(d) 위에 제시한 요인들의 종합

④ 본 항에 의해 수용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수당은 소장에 의해 수용자 명의의 구좌에 적립된다.

(4a) 소장은 수용자의 주급의 일부(30%이하)를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위해 적립할 수용자 명의의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4b) 사회복귀를 위해 적립된 금액은 소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소에 있을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다.

⑤ 장관은 수용자에게 부여된 수당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5a) 소장은 수당이외에 수용자가 받는 돈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⑥ 소장은, 교정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용자가 빌린 대출금의 지불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차인할 수 있다.

(6a) 소장은 수용자가 피해자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때, 수용자의 주급에서 일정금액을 차인할 수 있다.

(6b) 조항 (6a)는 본 조항이 개시되기 전에 단지 피해자지불금의 집행을 위해 발부된 입소영장에 의해 감금된 수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c) 조항 (6a)에 의해 만들어진 금액과 피해자보상금(VIC levy)으로 지불된 금액은 범죄피해자펀드에 지불되어야 한다.

⑦ 본 법에 따라서 수용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구좌로부터의 인출은 소장의 재량에 따른다. 그러나 소장이 판단하기에 일반적인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인물품 구입

제32조 소장은 규정에 따라 개인적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물품도 구입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을 위한 금전의 인출에 대해서는 조 31에 따라 소장에게 재량이 있다.

서신

제33조 ① 본 조의 규정에 따라

(a) 수용자는 서신을 받고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b) 수용자에게 온 서신은 교도소에 도착한 후 적정한 기간내에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 수용자가 보낸 서신은 적정한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수용자가 발송한 서신이나 받은 서신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a)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b) 범행계획이나 범행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

(c) 불법적 위협이나 요구

(d) 폭력물이나 폭력을 촉발할 수 있는 물건

(e) 법에 의해 금지된 모든 행위에 대한 모의

(f) 법에 의해 금지된 물건

(g) 소장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현찰이나 기타의 금액

(h) 소장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요구

(i) 암호화된 내용

④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수용자에 의해 발송된 서신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편지를 개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서신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서신개봉과 열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서신을 정독하기 위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수신자가 다음인 경우에는 수용자의 서신을 개봉할 수 없다.

(a) 고충처리위원

(b) 국회의원

(c) 순회판사

(ca) 교정시설 조사자

(d)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되고 수신인이 변호사인 경우

⑦ 서신개봉의 권한을 가진 직원이 보기에 그 서신이 고충처리위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순회판사나 조사자, 또는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신을 개봉하여서는 안된다.

⑧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 본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소장은

(a) 서신인 경우

(ⅰ) 수용자에게 인계

(ⅱ) 소지하고 있다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인계

(ⅲ) 서신을 복사하여 위반사항을 삭제한 후 석방시 인계

(ⅳ) 위법행위의 증거로 보전하고 복사본을 합당한 기간내에, 또는 석방시에 수용자에게 인계

(b) 금지된 물품의 경우

(ⅰ) 물품을 파기

(ⅱ) 보관하고 있다가 석방시에 인계

(ⅲ) 위법행위의 증거로 보전

(ⅳ) 발송인에게 반송

(ⅴ) 소장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처리

(c) 돈인 경우

(ⅰ) 발송인과 지불이유를 확인할 때까지 보관
(ⅱ) 수용자의 구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
(iii) 전부 또는 일부를 지니고 있다가 수용자의 석방시에 지급
(iv) 전부 또는 일부를 발송인에게 반송
(ⅴ) 수용자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그리고 발송인의 신분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되지않은 돈에 관한 법 (the Unclaimed momey Act 1891)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지불
(vi) 위법행위의 증거로 보전

⑨ 수용자가 발송한 서신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소장은
(a) 서신인 경우
(ⅰ) 수용자에게 반환
(ⅱ) 위법행위의 증거로 보전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복사본을 수용자에게 제공
(b) 서신에서 금지된 물품이 발견된 경우
(ⅰ) 물품파기
(ⅱ) 소지하고 있다가 석방시에 수용자에게 인계
(iii) 위법행위의 증거로 보전
(iv) 수용자에게 반환
(ⅴ) 수신인에게 전달
(vi) 소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처리
(c) 돈인 경우
(ⅰ) 지불이유를 확인할 때까지 소지
(ⅱ) 위법행위의 증거로 보전
(iii) 국세청에 지불
(iv) 장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리

⑩ 소장은 합당한 방법으로 본 조항에 규정된 서신과 서신 속 물품과 관련한 사항들을 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⑪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법의 규정에 의하거나 의무의 수행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에게 서신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⑫ 본 조항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authorised officer)"은 본 규정을 실행을 목적으로 교정국장으로

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교정국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지 수용자와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물건

제33조A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가 없는 한 외부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수용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품 이외의 물품은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거나 줄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받거나 보내는 물품이나 소포 속의 물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만일 수용자가 받거나 보내는 물품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건이나 소장의 허가가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소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절대적 재량권을 가진다(예를 들어 물건을 발신인이나 기부자에게 보내거나 파기하거나 보관하거나, 또는 수용자의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⑤ 수용자가 받거나 보내는 물품이 금지된 품목이 아니고, 위법행위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수용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⑥ 타 법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위법행위의 증거가 아닌 한 파기되어야 한다.

⑦ 장관은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대금을 설정할 수 있다.

⑧ 물품을 파기하거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용자의 구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⑨ 만일 수용자가 석방시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소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

⑩ 판매한 물품의 대금은 수용자의 구좌에 입금하거나, 석방 후 소재를 아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⑪ 조항 ⑩에 의해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점유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된다.

접견에 관한 권리

제34조 ①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매 접견시마다 규정된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인이상 여러사람과 접견할 수 있으며 2주마다 정해진 횟수의 접견을 할 자격을 가진다.

② 미결수용자들은 주당 3회 또는 별도로 규정된 횟수에 걸쳐 규정된 수의 사람을 접견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a) 소장은 이 법에 의해 규정된 횟수보다 많은 접견을 수용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b) 소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기간동안 또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접견을 금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35조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더라도 법률적 도움과 관련된 모든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경우에, 그 접견은 34조에 의해 규정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용자 분리에 관한 권리

제36조 ① 수용자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② 교정국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a) 수용자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적절한 사법실행을 위해

(b) 수용자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c) 다른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d)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규율을 위해

③ 제2항의 (a)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3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④ 제2의 그 외 조항의 경우는 교정국장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⑤ 제2항의 (a)의 경우 위법행위 한 건에 대해서 1회만 가능하다.

⑥ 제2항에 관한 조치는

(a) 반드시 문서로 해야하며

(b) 교정국장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⑦ 제2항의 조치에 대한 문서사본은 그 조치가 내려진 24시간내에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⑧ 제2항의 조치가 실행되어 수용자가 그 제한을 받고 있을 때라도 교정국장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허가할 수 있다.

⑨ 교정국장은 제2항의 조치가 취해진 후 가급적 빨리 장관에게 그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⑩ 장관은 제9항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살펴 본후 그 조치를 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수용자에 대한 수색

제37조 ① 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용자의 신체 또는 소지품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a) 수용자가 입소하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경우

(b) 소장의 판단으로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c) 수용자가 본 법에 의해서 요청받은 소변검사를 하기 위한 표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② 다음 사항은 수용자에 대한 수색에 적용된다.

(a) 수용자가 나체로 수색을 당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와 동성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b) 수용자가 나체로 수색을 당하는 동안에는 수용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2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

(c) 수색을 위해 수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입을 열고

(ⅱ) 옷을 벗고

(ⅲ) 요구된 자세를 취하고

(ⅳ) 기타 수색을 위해 요청된 사항

만일 수용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의사의 감독없이는 수용자의 입을 강제력으로 열어서는 안된다.

④ 의사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신체에 있는 구멍에 무엇을 집어 넣어서는 안된다.

⑤ 수색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수용자에게 부당한 수치심을 주어서는 안된다.

약물검사

제37조AA ① 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용자에게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표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수용자가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b) 교정시설내에서 불법적인 약물사용 사건이 일어났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ⅰ) 수용자중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

(ⅱ) 교정시설내의 모든 수용자,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서는 약물사용이란 수용자 본인이 피우거나 마시거나 주입한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게 한 것을 말한다.

(2a) 위법행위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소변검사가 특정인에게 특정일자에 취득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소변검사가 특정 수의 사람에게 할당되었다는 주장은 반대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소변검사가 행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③ 재판과정에서 특정 약물이 특정 소변검사 표본에서 검출되었다는 증명은 반대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실증거가 된다.

제 6A 절 가택구금

수용자의 석방과 가택구금

제37조A ① 이 조항에 따라서 교정국장은 수용자를 교도소에서 석방하여 일정기간의 가택구금을 할 수 있는 절대적 재량권을 가진다.

(1a) 징역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용자가 가석방불가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른 석방의 자격이 없다.

② 수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석방될 수 있다.

(a) 가석방 불가기간이 정해져 있고 적어도 그 기간의 1/2을 경과한 경우

(b) 삭제

(c) 수용자가 장관이 이 조와 관련하여 정한 기타 기준을 충족한 경우

③ 이 조에 따라 석방된 수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 가택구금 기간 동안 수용자는 그의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탈해서는 안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직장출근

(ii) 긴급한 병원진료나 치과진료

(iii) 기타 수용자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이 허락하거나 지시한 사항

(b) 가택구금기간동안 성실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하는 조건

(c) 가택구금기간동안 직원의 합법적인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조건

(d) 기타 교정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

④ 이 Division에 의해 석방된 수용자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가택구금 하에 있는 것이다.

(a) 가석방 불가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는 가석방으로 석방될 때까지

(b) 다른 수용자들은 본 법에 의해 석방될 때까지

⑤ 교정국장은 문서에 의해 수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석방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가석방 불가 기간(non-parole period)"은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용자가 석방명령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거주지"는 수용자가 원주민인 경우 부족의 땅이나 원주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

제37조B ①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Division의 목적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교정국장은 수용자가 석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용자를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에게 할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에게 새로이 할당할 수 있다.

③ 수용자를 할당받은 직원은

(a) 수용자에게 합당한 지시를 할 수 있다.

(i) 수용자에게 특정 직장을 택하게 하거나 택하지 말게 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

(ii) 수용자에게 특정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하는 일

(b) 장관의 지시를 수용자 전체에게, 또는 특정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일

④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언제든지 수용자가 부여된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 가택구금 수용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다.

(b) 수용자가 출근한 직장이나 출석한 장소에 전화를 걸 수 있다.

(c) 주거지나 기타 장소에서 수용자의 소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⑤ 누구라도

(a) 본 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직원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b) 직원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은 자는 진실된 답을 하여야 한다.

최고형: $2,500

석방의 취소

제37조C ① 교정국장은

(a) 이 Division에 의해 석방된 수용자가 준수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석방을 취소하여야 한다.

(b) 교정국장의 절대적인 재량권에 따라서 그 이외의 이유로 인해서도 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만약 수용자가 거주지를 이탈한 이유가 (수용자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심각한 위험이나 죽음 또는 상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거주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석방이 취소된 때, 수용자는 영장없이 경찰이나 직원에 의해 체포되어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④ 가택구금하에 있는 수용자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가석방 불가기간의 나머지 또는 징역기간을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a) 가택구금 기간내에 조건위반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한 경우 조건을 위반한 날 또는 범행일자로부터 남은 기간

(b) 다른 기간동안에 행해진 위법행위의 경우--징역이 선고된 날부터 남은 기간

⑤ 제4항은 수용자가 체포되기 전에 가택구금의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⑥ 제37조 제3항의 (a)의 조건을 위반한 수용자는 불법도주에 해당한다.

여왕은 가택구금하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

제37조D 여왕은 가택구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 법률상 책임이 없다.

제 7 절 석 방

교도소나 가택구금으로부터의 석방

제38조 ① 본 법에 따라서 미결수를 제외한 수용자들은 이 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조기 석방되지 않은 한 징역형의 형기가 만료되는 날 석방되어야 한다.

② 교정국장은 문서로 교도소 석방이나 가택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을 징역형만료일 30일전부터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은 벌금에 대한 환형처분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수용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조에서

"벌금액"은 형법(the Criminal Law Act 1988)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석방시간

제39조 ① 교도소로부터 석방될 수용자는 석방당일 오전 10시 전후에 석방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 모독수용자가 자신의 법정모독을 보상하거나, 벌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당일 오후 5시에서 익일 오전 9시 사이에 수행하려고 할 때 소장은 익일 오전 10시 이전에 석방해서는 안된다.

④ 삭제

석방수용자에게 물품과 돈의 지급

제39조A 수용자가 가택구금이나 가석방, 또는 형기만료로 석방될 때에는 교정국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수용자의 개인물품을 인계하고 본 법에 따라 수용자에게 귀속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a) 일괄지급

(b) 수용자가 지역사회교정관리의 감독하에 가석방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하거나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수용자의 물품처리

제39조B ① 수용자가 석방이 되고서도 자신의 물품을 교정시설에 남겨두었다면 소장은 해당 수용자에게 문서로 물품목록과 찾을 장소를 적시하여 거주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알게된 후 3개월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처리해야 한다.

(a) 물품의 화폐적 가치가 크지 않고, 또 그 물품의 감상적(感傷)인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소장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b) 기타의 경우에는

(ⅰ) 수용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 소장은 가능하다면 그 주소지로 물건을 배달시켜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장은 그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ⅱ) 수용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국세청에 지불되어야 한다.

수용자에게 반환이 금지된 물품

제39조 C 법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배달이나 반환을 해서는 안된다.

제 5 편 위법행위

제 1 절 순회판사의 권한

제40조 삭제

순회판사의 권한

제41조 ① 이 Division에 따른 청문회를 위해

(a) 순회판사는 출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 판사가 서명한 소환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b) 순회판사는 판사의 서명을 받은 소환장을 통해서 서적이나 논문 또는 서류의 발간을 요청할 수 있다.

(c) 발간된 서적이나 논문 또는 서류를 살펴보고 일정기간동안 그것을 보유하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할 수 있다.

(d) 순회판사 앞에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짓없이 하겠다는 선서나 언약을 요청할 수 있다.

(e) 소환장에 의해서건 아니건에 상관없이 순회판사 앞에 출두한 사람에게 관련질문에 대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항과과 관련하여

(a)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순회판사 앞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환장에 의해 요구된 서적이나 논문, 서류 등을 작성하는데 실패한 경우나

(b) 순회판사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순회판사나 기타 순회판사와 관련된사람을 모욕하거나 순회판사의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및

(c) 선서를 기피하거나 순회판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확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위법행위가 된다.

최고형: 벌금 $5,000이나 3개월의 징역

③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해당자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순회법원의 면책

제42조 순회법원을 구성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2 절 규칙위반

교도소규칙의 사소한 위반

제42조A ① 소장은 수용자가 본 조에 규정된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수용자에게 문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

(a) 위반행위가 일어난 날짜와 위반의 내용

(b) 위반한 규칙의 확인

(c) 수용자에게 위반과 관련하여 정식기소를 선택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

(d) 수용자가 위반행위로 정식기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소장이 부과하게 될 처벌

② 해당 수용자가 소장의 문건을 본 후 24시간내에 소장이나 교정국 직원에게 문서로 정식으로 기소되기를 선택한다는 해답을 하지 않는 경우 소장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a) 증거를 듣거나 심사

(b) 목격자를 불러 심문하거나 반대심문

(c) 규칙위반과 처벌에 대한 제안서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은

(d) 개인필수품의 몰수 및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제한

(e)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작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조치

소장은 교도소의 규율위반을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 ① 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에는 정해진 시간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용자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징벌을 줄 수 있다.

(a) 소장이 가지고 있는 수용자의 돈이나 이 법에 의해 수용자가 받는 돈 중에서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몰수

(b) 28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용품이나 권리 몰수

(c)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공동작업 배제

또는 훈계나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만약 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가 규율위반행위을 범했다는 것을 의심없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소장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야 한다.

소장은 순회판사에게 어떤 문제든 회부할 수 있다.

제44조 ①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를 순회판사에게 회부하여 청문회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순회판사가 제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연 후 수용자의 위반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징벌을 내릴 수 있다.

(a), (b) 삭제

(c) 소장이 가지고 있는 수용자의 돈이나 본 법에 의해 수용자가 받는 돈 중에서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몰수

(d) 28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용품이나 권리 몰수

(e)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공동작업 배제

또는 훈계나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삭제

④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순회판사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상의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때 그 금액은 이 조항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순회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하며, 그 돈은 소장이 관리하는 수용자의 돈이나 수용자가 이 법에 의해 받는 수당으로부터 충당할수 있다.

⑤ 순회판사가 조항 (1)에 의해 회부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한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

규율위반에 따른 조사절차

제45조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a) 소장이나 순회판사는

(i) 수용자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주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ii) 수용자나 소장, 또는 소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심문, 반대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iii) 소장이나 해당 직원에게 부과할 징벌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허가해야 한다.

(iv) 수용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징벌에 대해 청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b) 수용자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소장이나 순회판사는 청문절차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ba) 수용자는 청문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자격이 없다.

(c) 소장이나 순회판사는 법률의 형식절차나 증거규칙에 의한 제한을받지 않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d) 한 개의 규율위반에 부과된 징벌이 1개 이상일 때, 또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여러 개의 위반이 생겼을 때 여러개의 징벌을 연속으로 부과할 수 없다.

(e) 규율위반을 한 수용자는 유죄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소장에 의해 부과된 징벌에 대한 불복

제46조 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해 부과된 징벌에 대해 순회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다.

② 이 조와 관련한 항소는 법정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항소제도에 따라서 불복된 징벌의 집행은 연기된다.

④ 순회판사는 본 조에 따라 불복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을 할 수 있다.

(a) 징벌을 재확인

(b) 징벌의 양을 늘이거나 줄이는 등 변경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으며 다른 징벌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따라 순회판사에 의해 결정된 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

순회판사의 명령에 대한 불복

제47조 ① 수용자는 순회판사가 절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1a) 본 조에 따른 불복은

(a) 행정관료로 구성된 순회판사에 의해 결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b) 치안판사나 판사로 구성된 순회판사에 의해 결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치안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② 본 조에 따른 상고는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a) 상고에 대한 통지에는 불복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상고를 처리하는 동안 불복된 명령의 집행은 연기된다.

④ 본 조에 따른 상고에 대해 법원은

(a) 상고를 기각하거나

(b) 순회판사의 명령을 무효로 할수있고

(c) 순회판사의 명령을 파기하고 순회판사가 애초에 부과했었어야 할 명령을 부과할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법원법은 이 절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8조 즉격절차법(the Summary Procedure Act 1921)은 이 Division하의 어떤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장은 소내 규율위반 처리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 ① 소장은 교정국장의 승인하에 이 Division에 의한 권한과 기능을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본 조에 따른 위임은

(a) 위임의 구체적인 조건에 한정된다.

(b) 위임은 교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c) 소장의 권한행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제 4 절 도주중인 수용자

도주의 효과

제50조 ①,② 삭제

③ 도주중인 기간은 징역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용자는 임시석방의 조건을 엄수해야 한다.

제51조 ① 본 법에 의해 교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을 떠날 것을 허락받은 수용자가 석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로 본다.

최고형-1년 징역

② 본 조에 의해 부과된 징역기간은 이미 부과받은 다른 징역기간에 부가된다.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범죄

제52조 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유죄로 한다.

(a) 규율에 의해 금지된 방법으로 수용자와 소통한 사람

(b) 소장의 허가없이 금지된 물품을 수용자에게 건네주거나 소내로 반입한 사람

(c) 불법적인 목적으로 교도소 주위를 배회한 사람

최고형-6개월 징역

② 소장의 허가없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용자가 그것을 소지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죄에 대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

교정국 직원의 체포권

제53조 ① 교정국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a) 도주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b) 수용자를 교도소로 부터 도주시키려고 시도를 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해 도주의 의심이 있는 사람을 체포한 교정국 직원은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도주중인 수용자를 교도소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b) 그외의 경우에는 체포한 사람을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가야 한다.

제 6 편 가석방

제 1 절 가석방위원회

가석방위원회의 설치

제55조 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석방위원회는 계속 유지된다.

② 위원회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가석방위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

(ⅰ) 1인의 대법관

(ii) 1인의 지방법원 판사

(iii) 1인의 대법관이나 지방법원 판사로 은퇴한 사람

(iv) 1인의 범죄학, 형벌학, 기타 관련학문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b) 1인의 정신의학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의사

(c) 1인의 범죄학, 사회학, 기타 관련학문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d) 3인은 장관에 의해 제청된 사람

③ 적어도 남성 1인, 여성 1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a) 적어도 원주민이 1인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정국의 직원은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임기

제56조 ① 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지사에 의해 결정되고 임명장에 기재된 대로 임명한다.

② 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지사에 의해 결정되고 임명장에 기재된 대로 임명한다.

③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수당과 비용

제57조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주지사가 정하는 바대로 수당과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직위해제와 해임

제58조 ①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가석방위원회 위원직을 취소할 수 있다.

(a) 직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

(b) 부도덕한 행위

(c) 직무유기

②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이 된다.

(a) 사망

(b) 임기만료

(c) 장관에게 사표제출

(d) 조항 (1) 에 의한 직위해제

③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대리인

제59조 ① 주지사는

(a)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b) 위원회 의장이나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위원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누군가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할 수 있다.

위원회 절차

제60조 ① 본 조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위원회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분임조를 편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과 2명의 위원이 위원회의 한 분임조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가 전체회의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의장, 그리고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재시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택된 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b) 4명의 위원으로 정족수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

(c)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결은 출석한 의원 중 다수결에 따른다.

(d) 각 위원들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의장은 결정을 위한 투표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가 분임조로 분할된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a) 의장은 의장이 속한 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부의장이 속한 조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b) 위원회의 개별 분임조 회의는 분임조 위원이 다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청문회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

(c) 한 분임조에 속한 위원들이 동의한 결정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이 된다.

(d) 두 개의 다른 청문회와 결정을 위해 2개의 분임조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

⑥ 한 조에 속한 위원들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분임조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새로운 청문회와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라 전체위원회와 조별 위원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들의 행위정당성과 면책

제60조A ①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위원의 해임이나 임명과정의 문제때문에 상실되지 않는다.
② 위원회 전체나 개별 위원이 선의로 행사한 권한이나 임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 위원에 대한 책임은 여왕에게 있다.

위원회 문서에 대한 사법적 고지

제61조 ① 위원회 위원에 의해 서명된 문서는 법정에서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위원에 의해 정당하게 서명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가 위원회의 사무총장에 의해 서명되었다면 반대증거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 의한 결정의 증거로 본다.

위원회 사무총장의 임명

제62조 ① 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이 수행한다.
② 사무총장의 직위는 정부 공무원 지위와 연계하여 정한다.

위원회의 권한

제63조 ① 이 법과 다른 법에 따른 위원회 절차를 위해서 위원회는
(a) 관련인에게 위원회에 출두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에 의해 서명된 소환장이 필요하다.
(b) 위원회에 제출할 사건관련 문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에 의해 서명된 소환장이 필요하다.
(c) 위원회에 출두한 사람은 사건관련 정보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d) 위원회에 관련인을 출두시켜 선서를 하고 묻는 질문에 답하게 할 수 있다.
(e) 법률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문서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죄가 된다.
(a)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출두하지 않거나 소환장에 기재된 대로 요구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b) 위원회나 위원을 의도적으로 모욕한 사람
(c) 위원회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
(d) 위원회의 회의절차를 방해한 사람

(e) 선서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

최고형: $5,000 또는 3개월의 징역

③ 위원회는 수용자를 언제든 심문할 수 있다. 특별한 등급의 수용자가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임해야 한다. 만일 심문이 교도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소장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수용자를 출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수용자의 요청에 따른 심문을 1년에 1번 이상 할 의무는 없다.

⑤ 본 조에서 수용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a)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수용자

(b) 부정기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

(c)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고 있으나 가석방 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수용자

위원회의 보고서

제64조 ① 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다음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a) 전 회계연도에 가석방된 수용자의 수

(b), (c) 삭제

(d) 전 회계연도에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로 복귀한 사람의 수와 각각의 가석방 취소사유

(e) 전 회계연도의 가석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 보고

(f)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장관이 지시한 사항

② 위원회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수용자, 부정기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을 살고 있으면서 가석방 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수용자의 개선상황에 대해 적어도 1년에 1번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보고해야 한다.

(a) 무기형이나 부정기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

(b) 본 Part와 관계된 문제들

④ 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a)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보고서에 본 법과 다른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대로 가석방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 절 가석방

5년미만 수용자의 가석방

제66조 위원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 불가기간이 정해진 수용자에 대해서는

석방날짜나 가석방 후 가택구금 날짜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데, 그 날짜는,

(a) 가석방불가기간이 그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b) 그 이외에는 가석방 불가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5년 이상 수용자의 가석방

제67조 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살면서 가석방 불가기간이 결정되어있는 경우에

(a) 수용자 또는

(b) 교정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정국의 직원은 정해진 방법으로 위원회에 수용자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은 부정기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가석방 불가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가석방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선고를 할 때 법원에 의해 제시된 관련 사항들

(b) 수용자의 가석방 조건 준수 가능성

(c)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는 가석방이 되려면 범죄의 정황과 죄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d) 교도소와 가택구금 기간 동안 수용자의 행동

(e) 이전 가석방기간동안의 수용자의 행동

(f) 수용자의 사회적 배경, 의학적, 심리적, 정신의학적 상태, 기타 수용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

(g) 수용자가 석방이나 가택구금된 후의 가능한 상황

(h)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

⑤ 위원회는 (무기형 수용자를 제외한) 명령서에 기재된 정해진 날짜에 석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수용자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그 수용자의 석방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할 경우에 위원회는

(a) 주지사에게

(ⅰ) 가석방 날짜

(ⅱ) 3년이상 10년이하의 가석방기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b) 승인을 위해 주지사에게 사본 1부를 보내야 한다.

⑦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주지사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가석방기간을 정해 정해진 날짜에

가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나 주지사는 수용자의 가석방불가기간이 완료되기 이전날짜로 석방일을 잡을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수용자의 가석방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수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a) 거부사실

(b) 거부이유와 수용자가 추후 가석방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

(c) 위원회가 가석방을 거부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는 가석방 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

⑩ 위원회는 제9항에 의해 정해진 날짜 이전에는 가석방 재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가석방의 조건

제68조 ① 가석방은

(a)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ⅰ) 다시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ⅱ) 위원회가 소유를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에 이용할만한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허가의 기간과 조건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건

(ⅲ) 수용자는 가석방기간만료때까지 또는 가석방위원회가 정한날까지

(A) 지역사회교정관의 감독하에

(B)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기타 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무기수의 경우 위원회가 권고하고 주지사가 승인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가석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유효하다.

(1a) 수용자가 아동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의 조건을 부과할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a) 수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학교나 학교주위, 공중화장실에 그 피해자가 있을 때 배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b)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업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동교육, 레크리에이션, 보육을 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

(c) 혈연이나 혼인관계 등에 의해 관계지어진 아동이 아니거나 법적인 양육권이 없는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② 가석방자가 지켜야 하는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형량 선고시의 법원의 판결문

(b) 조건준수의 가능성

(c) 범행의 정황과 죄질

(d) 수용자의 교도소내 도는 가택구금기간동안의 생활태도

(e) 이전 가석방기간동안의 생활태도

(f) 수용자의 사회적 배경, 의학적, 심리적, 정신의학적 상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서

(g) 가석방이나 가택구금동안의 수용자의 여건

(h) 기타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

③ 가석방자에게 부과되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부여할 때에,위원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석방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④ 가석방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문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Division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할 수 없다.

⑤ 제66조에 의해 가석방이 예정된 수용자가 가석방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는

(a) 3개월마다 수용자의 상황을 재심해야 한다.

(b) 재심에서 수용자가 조건을 수락한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들이면 가석방을 명할 수 있다.

무기수를 제외한 수용자의 가석방기간

제69조 무기수를 제외하고 가석방이 취소, 또는 유예되지 않는 한 가석방기간은 선고받은 징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이다.

무기수의 가석방기간

제70조 ① 무기수로서 가석방예정자는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유예되거나, 또는 형량이 만료되지 않는 한 가석방을 지속한다.

(a) 교도소법 수정법 1981이 시행되기 전에 가석방으로 석방된 수용자들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권고로 주지사가 수용자의 가석방기간만료시점을 정하지 않는 한 잔여형기를 가석방기간으로 한다.

(b) 그 외에는 위원회에 의해 권고되고 주지사에 의해 승인된 기간을 가석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가석방기간이 만료되면 징역형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석방조건 변경과 취소

제71조 ① 무기형을 제외한 형을 받은 수용자의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는 가석방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무기수용자로서 가석방을 받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가석방조건의 변경 및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지사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의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가석방자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그 당사자가 그 문제에 대해 만든 제안서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가능하다.

④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해 가석방자를 감독하는 지역사회교정관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의 감독하에 있는 가석방자와 관련하여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없다.

무기수를 제외한 가석방의 해제

제72조 ① 위원회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무기수가 아닌)의 신청에 의해 가석방을 해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해 가석방자를 감독하는 지역사회교정관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의 감독하에 있는 가석방자와 관련하여 명령을 할 수 없다.

③ 이 조에 의해 가석방이 해제된 자는 선고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조건의 위반에 의한 가석방 자동취소

제73조 ① 가석방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위원회가 인지하게 되면 가석방자는 위반이 일어난 날부터 잔여형기를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② 조건위반이 발견된 시점이 가석방이 완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제1항은 적용된다.

③ 조건위반이 발견된 시점이 가석방기간 중일때는 가석방은 이 조에 의해 취소된다.

기타조건의 위배에 의한 가석방 취소

제74조 ① 가석방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의 일반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위원회는 명령에 의해서 징역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거나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기

간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a) 위반이 일어난 날짜와 가석방이 완료되는 날 사이의 기간

(b) 6개월

중 더 적은 쪽을 넘지 못한다.

(1a) 조항(1)은 위반이 증명된 날짜가 가석방기간이 만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

(1b) 위원회가 조항(1)에 의해 가석방중에 있는 자에 대해 명령을 내릴 때에는 가석방의 취소를 명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사회교정관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는 지역사회교정관의 감독하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릴 수 없다.

③ 교도소법 수정법 1983(No.2)이 시행되기 전 조건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자는 조건위반날로부터 잔여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④ 조항 (4a)와 (4b)에 따라 교도소법 수정법 1983(No.2)의 시행이전에 일반조건의 위반으로 교도소로 복귀한 자는 남아있는 잔여형을 교도소에서 보내겠다는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채워졌을 때 가석방되어야 한다.

(4a) 이 조에 따라 교도소로 복귀한 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서 새로운 징역형이 부과되었다면 그 범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남아있는 잔여형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4b) 제4항에 의한 석방은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가석방이 아니다.

⑤ 제4항에 의한 가석방은 위원회에 의해 가석방자가 교도소로 돌아오기 이전에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

일반조건 위반에 대한 사회봉사의 부과

제74조AA ① 가석방중에 있는 자가 (지정조건이 아닌) 조건을 위배했지만 위원회가 보기에 가석방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제74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의 사회봉사 조건을 가석방조건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만약 기 가석방의 조건에 사회봉사의 이행이 있으면 위원회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역사회교정관의 감독하에 있는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교정관의 보고서가 없는 한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이 조에 따라 사회봉사 조건을 가석방자에게 부과한다면 다음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a) 사회봉사의 시간은 40시간 이상 200시간 내여야 한다.

(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i) 정해진 기간내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

(ii)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자는 교정국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이틀내에 정해진 장소에 출두해야 한다.

(iii) 배정된 지역사회교정관의 합법적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iv)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또는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c)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자는 지역사회교정관이 지시하는 대로 매주 4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d) 장관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자는 8시간이상 계속해서 일해서는 안된다.

(e) 4시간을 초과하는 사회봉사이행에는 1시간의 식사시간이 주어진다.

(f) 대상자가 금전적 수익을 얻는 일을 하는 시간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시간과 겹치거나, 또 자녀를 보살피는 일을 과다하게 방해하는 시간에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g) 종교적 실천을 행하는 시간에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h) 장관이 승인한 교육, 레크레이션, 강좌에 출석하는 것은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 사회봉사로 금전적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⑤ 지역사회교정관은

(a) 자신에게 할당된 자에게 다음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i) 정해진 시간에 지역사회봉사센터나 기타 다른 장소에 출두하는 것

(ii) 주소변경이나 직장변경시 교정관에게 알리는 것

(iii) 출국시 서면허락을 얻는 일

(iv) 사회봉사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

(v) 사회봉사센터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것

(vi)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b) 장관에 의해 위임된 일반적, 또는 개별적 지시를 주는 것

⑥ 사회봉사가 가석방조건이었던 자가 범죄행위(언제 저질렀던 간에)로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이 Division에 따라 교도소로 되돌아오게 되면 가석방조건은 취소된 것으로 한다.

가석방 전 발생한 범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 가석방의 유예

제74조A 가석방이 된 자가 가석방 이전의 범죄 또는 배상금의 미지불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a) 새로이 선고된 징역형을 보내고 있는 기간동안은 가석방은 유예된다.

(b) 석방에 대해서

(i) 처음 부과된 징역형에 대한 가석방은 새로운 선고형량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남아있는 가석방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

(ii) 그 다음의 선고형량에서도 가석방이 되면 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에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도 가석방상태에 있는 것이 된다.

가석방기간동안 발생한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자의 가석방 자동취소

제75조A ①

(a) 가석방 기간중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선고를 유예받지 않은 경우

(b) 가석방 기간중에 행한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된 경우에

그 자는 범행이 저질러 진 날로부터 남아있는 잔여형량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1a) 조항 (1)은 해당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취소로 인해 가석방이 완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한다.

(1b) 조항 (1)에 해당하는 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시점이 가석방 중에 있는 경우에도 이 조에 따라 그 가석방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가석방자의 체포 등

제76조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가석방중에 있는 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위원은

(a) 해당 자를 위원회에 소환하거나

(ab) 위원 1인의 동의하에 위원회에 구인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b) 위원회에 구인하기 위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부된 소환장에 의한 위원회의 소환에 출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a) 해당자의 출석없이도 사항에 대해 처리할 수 있거나

(b) 위원회에 출두시키기 위해

(ⅰ)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ⅱ)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판사에게 해당 자의 소환을 위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2a)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발부된 영장은, 위원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가석방이 취소된 자를 교도소에 보낼 수 있다.

(3a) 이 조에 의해, 영장신청을 받은 판사는 영장발부의 이유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인을 체포하여 교도소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④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명령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의 실행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절차

제77조 ① 이 편에 따라 가석방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해당 수용자, 교정국장,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다음을 고지해야 하며,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고지할 수 있다.

(a) 가석방신청의 접수

(b) 청문회 날짜와 시간

② 이 편의 절차와 관련하여

(a) 교정국장이나 위임받은 교정국 직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문서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b) 경찰서장, 또는 위임받은 경찰서 직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문서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ba)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문서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c) 기타 관련된 자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문서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절차와 관련된 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명령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은 문서를 수용자나 가석방자와 관련된 다음에 열거된 자에게 줄 수 있다.

(a) 위원회절차에 자료를 제출한 사람

(b) 수용자나 가석방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c) 변호사

(d) 기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⑤ 제4항의 정보제공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제 8 편 기 타

소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 ① 소장은 교정국장의 승인하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국장의 승인하에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하급법률에 관한 법 1978 은 이 조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장관은 이 조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을 장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위해 출판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에 효력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문맹자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수용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장의 사법절차 준수

제84조 이 법에 따라 소장은 법원이나 경찰, 또는 법에 의해 적법절차의 실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명령이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장의 집행

제85조 교정국장에 의해 위임된 교정국 직원은 경찰서장을 대신해서 법원이나 판사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수용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소장의 교정시설 참관인 제한

제85조A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합당한 근거에서 시설 내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나 제34조에 의해 수용자를 방문하는 사람이 시설의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시설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

수색과 체포의 권한

제85조B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들어 온 자가 규율에 의해 금지된 품목을 소장의 승인없이 지니고 있다는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에 들어 온 자동차에 소장의 승인없는 금지된 품목이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차를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수행되는 수색은 다음의 조항이 해당된다.

(a) 수색을 위해 의복을 벗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다음사항은 요구할 수는 있다.

(ⅰ) 입을 열고

(ⅱ) 특정자세를 취하고

(ⅲ) 옷을 입은 채로 몸수색

(ⅳ) 수색을 위해 필요한 기타를 행하는 것, 만약 해당자가 협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합당한 정도의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b) 의사의 입회와 감독이 없이 해당인의 입을 열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c) 해당인의 입을 비롯한 구멍 뚫린 곳에 어떤 물체도 집어넣을 수 없다.

(d) 수색의 전과정에는 해당 인 외에 적어도 2인이 동석해야 한다.

(e) 수색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수색할 때에 운전자는 수색에 필요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협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합당한 정도의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⑤ 수색결과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소장의 사전승인이 없는 반입금지된 품목이 발견되면

(a) 소장은 해당 인과 운전자를 구금하여 빠른 시간내에 신병을 경찰에 넘길 수 있다.

(b) 적발된 금지품목은 법 위반의 증거로 보존하거나 아니면 조 33A에 따라 다른 금지된 품목의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라 몸 수색을 하였으나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담당한 직원이 몸의 어딘가에 금지된 물품이 은닉되었을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해당인을 구금하여 빠른 시일내에 그 신병을 경찰에 넘길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의해 해당인이 구금되면 경찰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⑧ 매 회기연도에 대해 교정국장이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제5항에 따라 수색과 관련해서 구금된 사람의 수

(b) 제6항에 따라 수색과 관련해서 구금된 사람의 수

(c) 이 두 조항에 따라 구금된 기간

비밀보장

제85조C 본 법의 시행에 따라 얻어진 수용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a) 이 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요구될 때

(b)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집행에 필요할 때

(c) 이 법의 시행에 관련된 법률절차를 위해 필요할때

(d) 정부기관이나 연방국가가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할때

(e) 관련수용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자의 동의가 있을 때

최고형: $10,000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

제85조D ① 자격이 부여된 자는 교정국장에게 문서로 수용자와 관련된 다음의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a) 수용자가 속해있는 교정시설의 이름과 주소

(b) 교도소 이송에 대한 정보

(c) 수용자의 선고형량

(d) 수용자의 석방예정일(보석, 일시석방, 가택구금, 가석방 등 어떤 이유로든)

(e) 수용자의 도주에 관련된 내용

② 자격이 부여된 자란

(a) 범죄행위의 피해자

(b)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구

(c) 변호사

(d) 교정국장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③ 교정국장은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수락하거나 거부할 절대적 재량권을 가진다.

④ 교정국장의 정보공개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률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⑤ 교정국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가석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포기할 수 있다)

직원의 강제력 행사

제86조 이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고용된 교정국의 직원이나 경찰은 본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면책

제86조A ① 교정국의 직원은 본 법과 다른 법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제외하고는 직원에 대한 책임은 여왕이 진다.

교정시설 방문과 검사

제87조 법관과 지방법원 판사, 행정판사는 적절한 시간에 모든 교정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토지취득

제88조 장관은 이 법의 수행을 위해 토지획득법 1969 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경범죄

제88조A 기소할 수 없는 즉결범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조항

제88조B 일시석방 기간이 만료된 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중이거나 일시석방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절차에서는 일시석방이 허가되고, 취소되고 변경된다는 교정국장의 명령이 쓰여진 문서가,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 명령의 증거가 된다.

규율

제89조 ① 주지사는 본 법에 따라 이 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율을 만들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반성에 대한 제한없이 다음에 대한 규율은 만들 수 있다.

(a) 미결수용자의 처우

(b) 벌금미납자, 또는 법정모독죄로 들어온 수용자에 대한 처우

(c) 미결과 벌금미납자, 법정모독수용자를 제외한 개별 수용자나 수용자들의 처우

(d) 가택구금의 기간에도 석방될 수 없는 수용자들을 위한 규율

(e) 수용자나 일단의 수용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율

(ea) 수용자의 소변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표본채취 규제

(i) 소변표본을 채취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것

(ii)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제43조와 제44조에 규정된 처벌의 양보다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에게 최고형량을 주는 것

(f) 순회판사의 임무와 절차,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

(g) 규율위반에 대한 소장의 임무와 절차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

(h) 교정국 직원이나 교정시설에 고용된 경찰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

(ha) 수용자의 교정시설 입소시간을 규정하는 것

(i) 교정국 직원이나 교정시설에 고용된 경찰이 지니고 있는 무기 등에 대한 규정과 무기 등의 사용목적과 방법에 대한 규정

(j) 수용자에 의한 돈의 소지 및 수용자를 대신한 투자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

(ka) 수용자 면회의 금지, 제한, 규제에 관련된 것

(l) 지역사회교정관이 자신이 감독하는 가석방자에게 주는 지시에 대해 규정하는 것

빈 면

Ⅶ. 中華人民共和國 監獄法

(1994年 12月 29日 第8屆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11次會議 公布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35號)

[目 次]

第 1 章 總 則 …… 1條~10條
第 2 章 監 獄 …… 11條~14條
第 3 章 刑罰執行 …… 15條~38條
第1節 收 監 …… 15條~20條
第2節 受刑者의 請願, 告訴, 檢擧에 대한 處理 …… 21條~24條
第3節 監外執行 …… 25條~28條
第4節 減刑 및 假釋放 …… 29條~34條
第5節 釋放 및 安置 …… 5條~38條
第 4 章 矯導行政 …… 39條~60條
第1節 隔離收監 및 分類處遇 …… 39條~40條
第2節 警戒 …… 41條~44條
第3節 戒具와 武器의 使用 …… 45條~46條
第4節 接見 및 書信 …… 47條~49條
第5節 給與, 衛生 및 醫療 …… 50條~55條
第6節 奬勵 및 懲罰 …… 56條~58條
第7節 受刑者의 收監期間 중 犯罪에 대한 處理 …… 59條~60條
第 5 章 受刑者에 대한 敎育改造 …… 61條~73條
第 6 章 未成年 受刑者에 대한 敎育改造 …… 74條~77條
第 7 章 附 則 …… 78條

第1章 總 則

第1條 刑罰을 정확히 執行하고 受刑者를 懲罰·改造하며 犯罪의 豫防 및 減少를 目的으로 憲法에 根據하여 本法을 制定한다.

第2條 監獄은 國家의 刑罰執行機關이다.
刑法과 刑事訴訟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사형집행 2년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受刑者는 監獄 내에서 그 刑罰이 執行된다.

第3條 監獄은 受刑者에 대하여 懲罰과 改造, 敎育과 勞動을 서로 연계하는 原則을 적용하며 受刑者를 스스로 法秩序를 지키는 公民으로 矯正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監獄은 法에 따라 受刑者를 감시 . 관리하고 矯正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결성하여 作業에 종사하게 하며 適合한 思想, 文化 및 技術敎育을 실시한다.

第5條 監獄人民警察[1]은 법에 따라 監獄을 관리하고 刑罰을 집행하며 受刑者에 대하여 敎育을 진행하는 등 行爲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第6條 人民檢察院은 刑罰執行의 適法여부를 法에 따라 감독할 權限을 가진다.

第7條 受刑者의 人格은 모욕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人身安全, 合法的 財産, 請願, 告訴, 檢擧 및 기타 법에 의하여 剝奪 내지 制限되지 않는 권리는 侵害당하지 아니한다. 受刑者는 반드시 法律[2], 行政法規[3], 監獄 內의 規則을 嚴守해야 하며 管理에 복종하고 해당교육을 받으며 일정한 作業에 참가하여야 한다.

第8條 國家는 受刑者를 교정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감옥인민경찰업무비용, 수형자교정비용, 수형자생활비용, 교정시설 유지비 및 기타 소요비용은 國家의 예산에 포함시킨다. 國家는 受刑者들의 作業에 필요한 作業施設과 費用을 제공한다.

---

1) 中國의 감옥인민경찰은 韓國의 교도관에 해당함.
2) 法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및 그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規範.
3) 行政法規: 國務院이 公布한 行政規範.

第9條 監獄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 광산자원, 기타 자연자원 및 監獄의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점유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第10條 國務院 司法部는 全國의 矯正業務를 관장하는 機關이다.

第2章 監 獄

第11條 監獄의 신설, 폐지, 이전 등은 國務院 司法部가 허가한다.

第12條 監獄에는 監獄長[4] 1명, 副監獄長 약간 명을 두며 필요시 해당 업무기관을 設置하고 기타 監獄管理人力을 配置한다.
監獄의 管理人員은 바로 人民警察이다.

第13條 監獄人民警察은 憲法과 法律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紀律을 엄수하며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한다.

第14條 監獄人民警察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受刑者 및 그 가족의 재물을 강요, 수수, 점유하는 행위;
(2) 受刑者를 사사로이 풀어주거나 직무에 怠慢하여 受刑者의 逃走를 막지 못하는 행위;
(3) 受刑者를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體罰 또는 학대를 하는 행위;
(4) 受刑者의 人格을 모욕하는 행위;
(5) 受刑者를 구타하거나 혹은 他人이 受刑者를 구타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
(6) 私利를 도모하기 위해 受刑者를 이용하여 외부에 勞務를 제공하는 행위;
(7) 규정을 어기고 受刑者를 위해 사사로이 우편물 혹은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
(8) 受刑者에 대한 감시 및 관리권한을 불법으로 他人에게 代行시키는 행위;
(9) 其他 불법행위;

監獄人民警察이 前項에 따른 행위가 있어 그 罪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4) 中國의 監獄長은 韓國의 교도소장에 해당함.

第 3 章 刑罰의 執行

第 1 節 收 監

第15條 人民法院은 사형집행 2년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受刑者에 대한 執行通知書, 判決書 등을 被告人을 拘禁하고 있는 公安機關에 送達하고 公安機關은 執行通知書, 判決書 등을 받은 날부터 1月 內에 被告人을 監獄으로 押送한다.

被告人의 남은 刑期가 1年 以下일 경우에는 公安機關 拘置所가 그 刑罰을 代理로 執行한다.

第16條 受刑者를 監獄으로 押送할 때 人民法院은 人民檢察院의 公訴狀사본, 人民法院의 判決書, 執行通知書, 結案登記表 등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監獄으로 送達한다.

구비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監獄은 受刑者를 收監하지 못한다.

구비서류가 부족하거나 記載에 흠이 있을 경우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내린 人民法院은 속히 補完·訂正하여야 한다.

부당한 收監 可能性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收監을 연기한다.

第17條 監獄은 새로 入所한 受刑者를 상대로 健康檢診을 하여야 한다. 검진결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受刑者가 아래의 情況이 있을 경우 收監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으로 因하여 병원치료를 要하는 受刑者;

(2) 임신 혹은 乳兒를 哺乳하는 女子受刑者;

前項의 受刑者에 대해서는 原審法院이 한시적 監外執行決定을 내릴 수 있다. 但 한시적 監外執行이 사회질서 파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再收監決定을 해야 한다. 한시적 監外執行決定을 받은 受刑者에 대한 刑 執行은 해당 居住地 公安機關이 행하도록 한다. 前項의 해당 情況이 消滅되었을 경우에도 기존의 刑期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受刑者를 再收監시킴을 原則으로 한다.

第18條 收監時 受刑者의 身體 및 所持品에 대해서는 철저한 檢查하도록 한다. 규정에 따라 소지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監獄이 代理로 保管하거나 혹은 本人의 同意 하에 가족에게 되돌려보낼 수 있다. 但 禁止品에 限해서는 몰수한다.

女子受刑者에 대한 檢查는 女性監獄人民警察이 담당한다.

第19條 受刑者는 收監 時 子女를 帶同할 수 없다.

第20條 監獄은 受刑者를 收監한 후 그 가족에게 通知하며 通知書는 收監한 날부터 5日 內에 送達한다.

第 2 節 受刑者의 請願, 告訴, 檢擧에 대한 處理

第21條 受刑者는 이미 效力을 발생한 判決에 불복할 경우 再審請願을 할 수 있다.
受刑者의 請願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한 人民檢察院 혹은 人民法院이 제때에 處理하여야 한다.

第22條 受刑者가 제출한 告訴와 檢擧資料는 監獄 內部에서 제때에 처리하거나 公安機關 또는 人民檢察院에 넘겨 處理받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處理結果를 제때에 監獄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23條 監獄은 受刑者의 請願, 告訴, 檢擧資料를 제때에 전달하여야 하며 保留하지 못한다.

第24條 監獄은 刑罰執行 중 判決의 부당성을 발견할 경우 제때에 人民檢察院 혹은 人民法院에 提請하여 處理받도록 하며 人民檢察院 혹은 人民法院은 提請書를 받은 날부터 6月 內에 해당 處理結果를 監獄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 3 節 監外執行

第25條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收監 중인 受刑者가 刑事訴訟法이 규정한 監外執行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한시적으로 監獄 外에서 그 刑을 執行할 수 있다.

第26條 한시적 監外執行에 대해서는 監獄이 書面意見을 提出하여 해당 省, 自治區, 直轄市 監獄管理局[5]이 허가한다. 監獄管理局은 응당 해당 決定을 受刑者의 居住地 公安機關과 原審人民法院에 通報하며 동시에 同級人民檢察院에 그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同級人民檢察院은 受刑者에게 적용한 한시적 監外執行決定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月內에 書面意見을 監獄管理局에 보내야 하며; 監獄管理局은 人民

5) 中國의 司法部 監獄管理局은 韓國의 법무부 교정국에, 지방 省, 自治區, 直轄市 監獄管理局은 韓國의 지방교정청에 해당함.

檢察院의 書面意見을 접수한 후 즉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第27條 한시적 監外執行은 受刑者의 居住地 公安機關이 책임지고 행한다. 監獄은 受刑者의 監獄 內에서의 行績들을 즉시 居住地 公安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28條 한시적 監外執行狀況이 소멸된 후에도 刑期가 종료되지 아니하면 公安機關은 제때에 해당 監獄에 通報하여 收監하도록 하며 刑期가 終了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監獄이 節次에 따라 釋放하도록 한다. 受刑者가 한시적 監外執行 중에 死亡하였을 경우에도 제때에 해당 監獄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 4 節 減刑 및 假釋放

第29條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受刑者가 刑 집행 중 罪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하고 공을 세우는 등의 表現이 확실할 경우 通常 監獄이 審査하여 減刑을 決定할 수 있다. 단 아래 各 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減刑하여야 한다.

(1) 他人의 重大한 犯罪行爲를 저지하였을 경우;

(2) 監獄 內外의 重大한 犯罪行爲를 檢擧한 사실이 있을 경우;

(3) 발명창조 혹은 重大한 기술혁신에 성공했을 경우;

(4) 평소의 作業과 생활 중에서 자신을 잊고 남을 도왔을 경우;

(5) 자연재해나 중대한 事故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특출한 공헌이 있을 경우;

(6) 國家와 사회에 대한 其他 공헌이 인정될 경우;

第30條 減刑에 관한 建議는 監獄이 人民法院에 제출하며 人民法院은 建議를 받은 날부터 1月內에 심의해야 한다. 但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1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減刑裁決書의 사본은 人民檢察院에 송달해야 한다.

第31條 사형집행 2년유예를 선고받은 受刑者가 사형집행유예기간에 법률이 정한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의 減刑條件에 부합될 경우 2年의 기간만료 후 所在監獄이 제때에 省, 自治區, 直轄市 監獄管理局에 減刑建議를 하여 심의 한 후 高等人民法院에 提請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第32條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受刑者가 법이 정한 假釋放條件에 부합될 경우 監獄은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人民法院에 假釋放建議를 하며 人民法院에서는 假釋放建議書

를 받은 날부터 1月內에 심사하여야 한다. 但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1月 연장할 수 있다.

假釋放裁定書의 사본은 人民檢察院에 송달해야 한다.

第33條 人民法院이 假釋放審議를 완료하였을 경우 監獄은 受刑者 本人에게 假釋放證明書를 발급하고 속히 釋放하여야 한다.

假釋放된 受刑者에 대해서는 居住地 公安機關이 감독한다. 受刑者가 假釋放 기간에 法律, 行政法規 및 國務院 公安部가 公布한 假釋放監督管理規程에 反하였으나 새로운 罪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公安機關이 人民法院에 假釋放撤回의 건의를 할 수 있다. 人民法院은 假釋放撤回建議書를 받은 날부터 1月內에 심의하여야 한다. 人民法院이 이미 假釋放撤回決定을 하였을 경우 公安機關은 受刑者를 監獄으로 압송해 收監시킨다.

第34條 법이 정한 減刑과 假釋放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受刑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서도 減刑 또는 假釋放을 할 수 없다.

人民檢察院이 人民法院의 減刑 및 假釋放 심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期限 內에 抗訴하여야 하며 人民檢察院이 抗訴한 사건에 대해서는 人民法院이 반드시 재심사를 하여야한다.

第 5 節 釋放 및 安置

第35條 受刑者의 刑期가 종료되면 즉시 釋放하고 해당 釋放證明書를 발급한다.

第36條 受刑者가 釋放된 후 公安機關은 釋放證明書에 따라 本人의 戶籍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7條 刑이 종료되어 석방된 者에 대해서는 居住地 人民政府가 일정한 생활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만약 本人이 노동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法定扶養人과 養育人이 없으며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에는 居住地 人民政府가 지원을 하도록 한다.

第38條 刑이 종료되어 석방된 者는 법에 따라 他人과 평등한 권리를 享有한다.

第 4 章 矯導行政

第 1 節 隔離收監 및 分類管理

第39條 監獄은 成人男子受刑者와 女子受刑者 및 未成年受刑者를 각각 隔離收監하여 管理한다. 女子受刑者와 未成年受刑者를 收監할 경우에는 그들의 생리적 및 심리적 特性을 고려해야 한다.

監獄은 受刑者의 犯罪類型, 刑罰種類, 刑期, 改造表現 등 정황에 따라 分離收監시켜 각기 다른 방식으로 管理한다.

第40條 女子受刑者에 한해서는 女性監獄人民警察이 직접 관리한다.

第 2 節 警 戒

第41條 監獄의 武裝警戒는 人民武裝警察部隊[6]가 책임지며 구체적 실행방법은 國務院 및 中央軍事委員會의 규정에 의한다.

第42條 受刑者의 脫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저지하며 受刑者가 이미 逃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公安機關에 통보하여 追跡하게 하되 監獄은 이에 긴밀히 配合하여야 한다.

第43條 監獄은 감시관리의 수요에 따라 警戒施設을 설치한다. 監獄주위에 警戒隔離地域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出入을 금하도록 한다.

第44條 監獄주위에 위치한 國家機關, 社團法人, 會社 및 기타조직들은 監獄의 警戒業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第 3 節 戒具와 武器의 使用

第45條 監獄은 아래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情況에 봉착했을 경우 戒具를 使用할 수 있다.

(1) 受刑者가 逃走할 경우;

---

6) 人民武裝警察部隊: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반란, 폭동 등 돌발사태에 대처하며 중앙기관, 세관, 각국 대사관, 변방검사소, 감옥 등 국가의 중요시설과 지역의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내 특수한 경찰부대.

(2) 受刑者가 暴力을 사용할 경우;
(3) 受刑者가 호송도중에 있을 경우;
(4) 受刑者가 기타 不法行爲를 행함으로 因하여 방비대책이 필요할 경우;
前項에 열거한 情況이 消滅된 후에는 戒具의 使用을 停止하여야 한다.

第46條 人民警察과 人民武裝警察部隊의 당직인원은 아래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情況에 봉착하여 武器를 使用하지 않으면 制止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1) 受刑者들이 집단으로 騷亂을 피우거나 暴動을 일으킬 경우;
(2) 受刑者가 逃走를 감행하면서 체포에 저항할 경우;
(3) 受刑者가 凶器 또는 기타 危險物品을 소지하고 暴行 또는 파괴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他人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4) 외부의 조폭세력이 受刑者를 납치할 경우;
(5) 受刑者가 武器를 탈취할 경우;
武器의 使用은 국가의 해당 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그 사용정황은 사후에 上級機關 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 4 節 接見과 書信

第47條 收監기간 중 受刑者는 他人과 書信을 교환할 수 있다. 但 書信교환은 檢閱을 받아야 한다. 檢閱을 거쳐 受刑者의 矯正에 불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압수할 수 있다. 受刑者가 上級監獄管理局,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 등에 발송하는 書信은 檢閱을 받지 아니한다.

第48條 收監기간 중 受刑者는 그 가족 또는 후견인과 만날 수 있다.

第49條 受刑者가 가족 또는 他人으로부터 돈과 물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檢查를 받고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5 節 給與, 衛生 및 醫療

第50條 受刑者의 급식표준은 實物量[7]에 따라 계산하며 이는 國家가 별도로 定한다.

---

7) 實物量이라 함은 受刑者가 1月에 수요하는 음식물의 양을 뜻하는데 實物量에 따른 계산은 바로 受刑

第51條 受刑者의 衣類와 寢具는 監獄이 통일적으로 配給한다.

第52條 少數民族受刑者의 특수한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處遇해준다.

第53條 受刑者가 거주하는 수용거실은 견고하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어야 하며 청결하고 따뜻해야 한다.

第54條 監獄은 필요한 醫療施設과 制度를 갖추어야 하며 受刑者들에 대한 醫療保健은 監獄所在地域의 醫療豫防計劃에 반드시 包含시켜야 한다.

第55條 受刑者가 收監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속히 그 유가족과 해당 人民法院 및 人民檢察院에 통보해야 하며 受刑者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醫療鑑定을 하여야 한다. 人民檢察院은 위의 醫療鑑定에 疑義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로 再鑑定을 할 수 있다. 受刑者의 유가족이 疑義가 있을 경우에는 人民檢察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受刑者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人民檢察院이 제때에 그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鑑定을 하여야 한다.

第6節 獎勵와 懲罰

第56條 監獄은 受刑者들에 대한 日常審査制度를 수립하고 해당심사결과를 장려 또는 처벌의 根據로 한다.

第57條 受刑者가 아래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情況이 있을 경우 褒賞金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을 記入할 수 있다.

(1) 監獄 內의 規則을 엄수하고 공부에 열심하며 作業에 적극 참가하고 罪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2)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을 저지하였을 경우;

(3) 作業任務를 초과 완성하였을 경우;

(4) 원자재를 절약하고 공공재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成績이 인정될 경우;

(5) 기술적 難題의 解決과 作業技術의 傳授에 있어서 일정한 공헌이 인정될 경우;

者가 1月에 수요하는 음식물의 량, 종류, 질 등을 우선 확정한 후 계획적으로 사서 급여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受刑者의 영양수요를 충족시킬뿐더러 물가상승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利點이 있다.

(6) 재해 및 각종 사고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중에서 일정한 공헌이 인정될 경우;
(7) 國家와 社會에 대한 其他 공헌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受刑者가 위에 열거한 情況이 있고 그 刑期의 2分의 1을 이미 경과하였고 罪에 대한 뉘우침이 뚜렷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황을 參酌하여 歸家訪問을 허가할 수 있다.

第58條 受刑者가 監獄 內의 通常秩序를 파괴한 아래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情況이 있을 경우에는 警告, 過失의 記入 또는 7日～15日 以內의 禁置 등으로 懲罰한다.
(1) 무리를 지어 소란을 피워 監獄 내의 通常秩序를 파괴하였을 경우;
(2) 監獄人民警察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는 구타하였을 경우;
(3) 권세를 믿고 다른 受刑者들을 괴롭힐 경우;
(4) 절도, 도박, 싸움질,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5) 작업능력이 있음에도 작업을 거부하거나 怠慢하며 교육을 하여도 뉘우치지 아니한 경우;
(6)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방법으로 作業을 回避할 경우;
(7) 作業 중에 故意로 조작규정을 어기거나 作業道具를 파손하였을 경우;
(8) 監獄 內의 規則을 위반한 其他의 행위가 있을 경우;
受刑者가 刑 執行 중 위에 열거한 행위가 있어 罪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 7 節 受刑者의 收監期間 중 犯罪에 대한 處理

第59條 受刑者가 收監期間 중에 故意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엄벌한다.

第60條 監獄 內의 형사사건은 監獄人民警察이 수사하며 수사종료 후 起訴意見書 혹은 免起訴意見書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자료를 첨부하여 人民檢察院에 移送한다.

第 5 章 受刑者에 대한 敎育改造

第61條 受刑者를 敎育改造 함에 있어서 相對에 따른 적정방식을 택하고 分類하여 교육하며 도리로 설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교육과 개인교육을 연계하고 監獄 內의 교육과 사회적 협조교육을 서로 연계하는 방법을 취한다.

第62條 監獄은 受刑者들을 상대로 法制, 道德, 時事, 政策 및 將來 등 내용이 포함된 사상교육을 진행한다.

第63條 監獄은 受刑者의 各異한 水準에 따라 문맹퇴치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전문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者에 한해서는 교육행정 부서에서 상응한 학력증명서를 발급한다.

第64條 監獄은 監獄 內의 작업과 釋放 후의 취업수요를 감안하여 受刑者들을 상대로 다양한 職業訓鍊을 실시하며 심사를 거친 合格者에 한해서는 勞動行政 부서에서 상응한 기술자격증서를 발급한다.

第65條 監獄은 受刑者의 獨學을 장려하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 부서에서 상응한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第66條 受刑者에 대한 문화함양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내용은 監獄所在地域의 敎育計劃에 포함시켜야 한다.

第67條 監獄은 受刑者들을 상대로 필요한 운동 및 오락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第68條 國家機關, 社團法人, 軍機關, 會社와 사회각계인사 및 受刑者의 가족은 受刑者에 대한 敎育改造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第69條 勞動能力이 있는 受刑者는 반드시 作業에 참가하여야 한다.

第70條 監獄은 受刑者個人의 狀況에 따라 적당한 작업을 배치하여 악습을 고치고 훌륭한 勞動習慣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며 作業技術을 습득하여 釋放 후의 취업에 대비하도록 한다.

第71條 受刑者들의 작업시간은 국가의 해당 작업시간을 參酌하여 정하며 계절적 특징이 있는 작업에 限해서는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調整할 수 있다.
受刑者들은 명절 및 공휴일에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第72條 作業에 참가하는 受刑者들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賞與金을 支給해야 하며 국가의

勞動保護法規를 엄격히 適用해야 한다.

第73條 受刑者들이 작업 중 다치거나 불구 및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의 해당 勞動保險規程에 따라 處理한다.

第 6 章 未成年受刑者에 대한 敎育改造

第74條 未成年受刑者에 한해서는 少年犯管敎所에서 그 刑을 집행한다.

第75條 未成年受刑者에게 刑을 집행할 경우에는 敎育을 위주로 한다. 未成年受刑者에게 부가되는 作業은 未成年者의 연령과 심리특징에 맞아야 하며 문화소양의 향상과 기능습득에 치중해야 한다.

監獄은 社會의 해당 교육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未成年受刑者들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76條 未成年受刑者가 滿 18周歲가 되었을 경우에 남은 刑期가 2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少年犯管敎所에서 남은 刑을 집행할 수 있다.

第77條 未成年受刑者에 대한 기타 事項을 本 章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本 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第 7 章 附 則

第78條 본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빈 면

VIII. 싱가포르 구금법

제 1 부 총 칙

1. 이 법은 구금법이라고 칭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한 다음과 같다.
"법인"이라함은 싱가포르 재활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싱가포르 갱생사업공사를 의미한다.
"관리자(Director)"는 제 20조 항목에 근거하여 임명된 교도소장을 의미한다.
"소년(juvenile)"은 유죄선고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간에 감옥에 구류되어있는 16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교도소(prison)"는 제 3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도소 또는 개선 훈련센터로 설정된 건물, 빌딩, 주벽으로 둘러싸인 구내 또는 그런 시설들의 일부를 의미하며, 교도소의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이나 운동장을 포함하고 또한 옥외운동 장소 또는 다른 운동장 또는 이에 속한 건물 또는 거기에 부속되어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교도관(prison officer)"은 제 20절 규정에 근거하여 임명된 교도관을 의미하나 교도소장 또는 다른감독자 또는 경찰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용자(prisoner)"는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받지않았거나를 불문하고 교도소 또는 개선 훈련 센터에 구류되어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감독자(superintendent)"는 제20절 규정에 근거하여 임명된 교정 감독관(Superintendent of Prisons)을 말한다.
"순회판사(visiting justice)"는 제79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명된 순회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 2 부 구조와 운영

교도소를 설치하는 권한

3. 장관은 공고문에 의하여
(a) 어떤 건물, 빌딩, 주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또는 장소, 또는 그러한 시설의 어느 일부분을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구류중인 사람을 구금 또는 구치하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교도소로 선언할 수도 있다:

(b) 특정한 부류의 수용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어느 교도소가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규정할 수도 있다:

(c) 어떤 교도소가 교도소로서의 기능이 중지되는지도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관보에 그와 같은 선언을 발표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거기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또는 그 날짜 이후의 어느 날짜에 그 교도소가 교도소로서의 기능이 중지될 것인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

(d) 갱생훈련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구류를 위해 어느 교도소, 가옥, 빌딩, 주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또는 장소, 또는 그러한 곳의 어느 부분을 개선 훈련센터로 규정할 수도 있다.

경찰서와 법원의 구치소를 구류의 장소로서 지정하는 것

4. (1) 장관은, 관보의 공지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경찰서 법원의 유치장을 공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유치인, 또는 1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구금을 선고받은 자들을 위한 구금을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다.

(2) 세부(1)에 근거하여 구금의 장소로 지정된 유치장은 형법 또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한 교도소로 간주하지않는다(268 조) 또한 84절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그와 같은 유치장은 형사 절차법의 25조의 목적을 위한 교도소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68조)

(3) 장관은 다음 문제들을 규정하기 위해 세부(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유치장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a) 교도소와 교도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들의 감독과 경영;

(b)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사역

(c) 수용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d) 규율 유지

임시 교도소

5.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교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a) 어떤 교도소내의 수용자들의 숫자가 적합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초과수용자의 숫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 임시교도소를 운영 하거나

(b) 어떤 교도소 내에서 질병의 발생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안전한 보호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임시교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모든 임시 교도소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한 교도소가 될 것이다.

교도소장의 일반적인 교도소 행정

7. (1) 장관의 명령을 받아, 싱가포르 각 교도소에 대한 지시, 규제 그리고 교도행정의 책임은 감독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2) 각 교도소장은 때때로 교도관의 배치, 채용, 전출을 지시한다.

(3) 만약 교도소의 감독관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는, 부재 또는 자격박탈의 기간 동안, 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임무와 권한은 교도소장이 임명한 교도관에 의해서 수행한다.

감독관에 의한 교도행정

(1)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각 교도소의 행정은 감독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제 3 부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8. (1) 장관 또는 장관의 위임을 받은자가 임명한 사람은 교도소의 규율, 경영 또는 교도소의 문제들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장관이 지시했거나 어떤 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보고하고, 야기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위원회의 견해를 표시해야한다.

(3) "장관(Minister)"은 장관이 규정한 세부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을 활동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9. (1) 조사위원회는 장관이 임명한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다.

(2) 조사위원회가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곳에서는, 장관이 위원회의 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한다.

(3) 조사위원회가 오직 1인으로 구성되면, 그자신이 회장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4) 모든 조사위원회원은 형법(the Penal Code)의 효력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224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0. (a) 조사위원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선서 또는 선서를 하지 않은 증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취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소환할 수도 있다.

(b) 조사위원회는 취조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취조하기 위해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

소환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범죄

11. (1)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된 사람은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한 출두명령에 따라 소환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에 의해 취조의 목적으로 어떤 서류나 자료를 요청 받은 사람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료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규칙 위반죄로 처벌되며,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 또는 양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증언 거부의 범죄

12. (1) 조사위원회 앞에 출두한 사람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선서 또는 무선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가 합법적으로 제출하거나 답변하도록 요구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어떤 서류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이에 위반한 사람은 유죄로 처벌 될 것이고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 또는 양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거짓 증언의 죄

13. 조사위원회 앞에서 선서 또는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심사할 때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는 모든 사람은 유죄이고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 또는 양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에 처하게 된다.

증거와 소송

14. 증거와 소송법 또는 이 법 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떤 규정이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증거에 대한 규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사위원회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거의 허용

15. 형사소송이나 징계 소송과 달리 어떤 소송에서 위증하거나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어떤 것도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소송

16. (1) 조사위원회는 대중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

(2) 조사위원회의 회원은 회장이나 장관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신문이나 조사과정에 참석할 수 없다.

평결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17. (1) 교도소장, 교정감독관, 교도관 또는 증인이 평결에 의해 불리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회장이 명시해야 한다.

(2) 증인은 서약을 하고 조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송절차의 기록

18. (1) 조사위원회장은 조사위원회의 소송절차를 기록하거나 문서에 기록 해야한다.

(2) 증인은 조사위원회 앞에서 증언하고 서명해야 한다.

(3) 조사위원회의 소송절차의 기록은 회장과 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4) 조사위원회의 소송절차의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하여 유지해야하며 장관의 서류상의 허가가 없이는 위원회의 구성원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조사위원회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범죄

19. 조사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직간접적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무슨 일이건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한 사람이나 조사위원회의 회원은 유죄로 처벌 받게되고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형 및 양자에 해당하는 처벌을 선고받게 된다.

제 4 부 관 리

교도소장과 다른 관리들의 임명

20. (1) 장관은 교도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당분간 어떤 직책을 갖는 한사람 또는 그 이상의 교도감독관 그리고 필요한 인원의 여성과 남성의 교도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교도소장과 어느 교정감독관의 임명은 관보에 고시되어야 한다.

교도소 임시 훈령

21. 교도소장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어떤 규정들과 모순되지 않는 교도소 임시 훈령을 반포하는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교도소장에 의한 감독

22. 교도소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감독하거나 또는 방문을 받거나 감독을 받도록 해야한다.

교도소장은 교정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23. 교도소장은 법률적으로 교정감독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교정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들을 행사하거나 수행할 수도 있다.

교정감독관의 임무

24. (a) 교도소장의 훈령에 따라, 교정감독관은 교도소의 행정부가 그에게 부여한 어느 교도소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b) 성문법에 근거하여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의 지도와 처우 그리고 이의 규정 그리고 교도소 또는 수용자들 그리고 교도관에 대해서 소장은 책임이 있다.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의 준

수의무에 대해 교도소장에게 책임을 진다.

교도소의 진료소원

25. (1) 진료소장은 교도소에 의료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2) 진료소장에 의한 의료직원의 임명이 허가되지 않으면, 장관은 등록된 개업 의사를 특정한 교도소의 진료의사로서 임명할 수 있다.

(3) 임명된 진료의사나 의료직원이 질병이나 또는 일시적인 부재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정감독관에 의해 임명된 다른 진료직원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직원의 직무

26. 교도소장의 명에 따라, 의료직원은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교도관의 직무

27. 교도관은 규정된 직무들을 수행한다.

복장

28. 교정감독관과 교도관은 규정된대로 곤봉, 무기, 탄약 그리고 복장을 제공받는다.

법, 규율 그리고 명령의 준수

29. 모든 교정감독관과 교도관은

(a) 교도소와 수용자들에대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b) 서면이나 구두, 또는 교도소의 규정 그리고 임시 훈령등 형태의 것이라도 모든 교도관은 상사의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교도관

30. 이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도소장과 모든 교정감독관들, 진료소 직원들 그리고 교도관들은 형법의 효력 내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224 절)

무기의 사용

31. (1) 이 규정에 의해서 교정감독관 또는 교도관은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a)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특정 수용자

(b) 수용자의 도주를 조장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

(c) 교도소 또는 대문, 주벽등을 파괴하여 열거나 억지로 열거나 손상을 입히려는 어떤 시도에 가담한 사람

(i) 교도소 또는 교도소 다른 부분의 외부 문 또는 대문 또는 둘러싼 주벽

(ii) 수용자가 이송되는 어느 자동차의 일부분

(2) 감독관 또는 교도관은 어느 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다.

(a) 수용자의 집단폭동행위

(b)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시도하려는 모든 사람

(i) 교도소나 그외 다른 부분의 외부 문 또는 대문 또는 둘러싸인 주벽을 훼손하려는 행위

(ii) 수용자가 이송되는 자동차를 훼손하는것

그리고 집단폭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한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만약 교정감독관 또는 교도관이 교도관 또는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다른 심각한 상처가 야기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모든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4) 교정감독관 또는 교도관은 만약 그가 어느 수용자의 도주를 달리 막을 수 없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수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화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교정감독관 또는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발포경고를 해야한다.

(6) 어떤 교도관도 그의 상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상사의 면전에서 수용자나 다른 사람에게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무기의 사용은 가능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8) 수용자 또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보안을위하여 교도소 또는 유치장 내 외부의 경계 또는 호위대로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은 교도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관의 권한을 갖게되는 교정감독관과 교도관

32. 모든 교정감독관과 교도관은 경찰관을 대신하는 직무에 관하여 경찰관의 모든 권한, 권

위, 보호 그리고 특권을 갖게 된다.

제 5 부 수용자의 보호와 이송

법적 구금으로 간주되는 수용자들

33. (1) 교도소에 구금된 모든 수용자들은 교정감독관의 합법적 구금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수용자들은 구금되는 모든 기간동안 교도소의 구내에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교도소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비 또는 호위대와 같은 보조 경찰의 임용

34. (1) 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어느 교도소로 이송되는 동안 그리고 수용자들이 교도소 외부 어느 장소에 있는 동안 수용자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경비 또는 호위로서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수만큼의 보조 경찰을 고용할 수도 있다.

(2) 보조경찰의 보호로 인도되는 수용자는 합법적인 보호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경비 또는 호위에 대한 직무를 위해 고용된 모든 보조 경찰은 호위 또는 경비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a) 부여된 교도관의 권한을 가진다.

(b) 교도관으로 간주된다.

(c) 공직자로 간주된다.

(4) 모든 보조경찰관은 형법의 효력 내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224조)

(5) "보조경찰관"은 상업 및 산업 안전 자치법(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urity Corpor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보조경찰(the Auxiliary Police Force)의 직원 또는 성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조경찰의 직원을 의미한다.

혐의가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교정감독관

35. 교정감독관은 어떤 영장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탁되어지는 명령의 긴급성에 따라서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 면제될 때까지, 법정, 판사, 행정장관, 치안판사, 검시관 또는 합법적으로 민사 또는 사법재판권을 행사하는 다른 공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그들의 보호에 위탁된 모든 사람들을 유치 보호할 권한이 있고 명령을 받는다.

재 구류된 자들의 인도

36. (1) 법원, 판사, 치안판사 또는 검시관에 의해 어떤 교도소에 재 구류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도영장과 함께 장관이 그러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한 교도소의 교정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교정감독관은 영장의 조건에 따라서 위탁된 사람을 유치하고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법원, 판사, 치안판사 또는 검시관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또는 영장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영장에 지정된 시간에 그 사람을 석방한다.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인도

37. (1) 영장, 소환장 또는 어떤 법원의 명령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영장, 소환장 또는 명령이 발부된 법원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2) 만약 그때 법정이 개정중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중간 유치를 위하여 교정감독관에게 인도될 것이고, 교정감독관은 그 사람이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정의 다음 개정 때 그 법정 앞에 출석하도록 하여야한다.

법정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

38. (1) 감옥에 구속된 어떤 사람이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요구될 때마다, 법원은 지정되어진 장소와 시간에 따라 법정 앞에 사람을 출두시키라고 명령하는 교정감독관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서면으로 발할 수도 있다.

(2) 교정감독관은 지시된 사람을 출두시켜야 하고, 교도소로부터 나와있는 동안 수용자를 보호 해야한다.

(3) 법원은 명령에 배서함으로써 지명된 사람이 어느 때라도 다시 출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대법원이 발하는 명령은 법원의 서기에 의해 서명될 것이고, 만약 지방법원이 발할 것이라면 지방법원의 서기 또는 판사에 의해 서명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법원에 의해 발행되었다면, 치안판사 또는 검시관에 의해 서명된다.

어떤 사건에 수용자들을 출두시키는 장관의 권한

39. (1) 장관은 어느 장소에 어느 수용자들을 출석시키는 것이 재판상의 편익이 있거나, 공적 조사의 목적을 위해서 수용자를 그 장소로 출석시키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

(2) 교도소로부터 이송된 수용자는 그 교도소 외부에 있는 동안 장관이 서명날인한 서류에

기재된 명령대로 보호될 것이며, 그러한 보호 밑에 있는 동안은 합법적인 구류로 간주된다.

범죄자를 위해 범죄자를 출두시키는 교정감독관의 권한

40. (1) 수용자의 이익을 위해 어느 장소에 어느 수용자의 출두가 필요하다는 신념에 따라 서명 날인 된 문서로 그 수용자가 그 장소에 인도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교도소로부터 이송된 수용자는 그 외부에 있는 동안 교정감독관이 그의 서명날인 된 서류에 의해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보호될 것이며, 그러한 보호 밑에 있는 동안은 합법적인 구류로 간주된다.

범죄자들의 석방

41. 교정감독관은 모든 수용자들이, 형량의 만료, 사면 또는 감형, 또는 특사로 석방되도록 자격이 주어지면 즉시 모든 수용자들을 당연히 석방할 책임을 갖게 된다.

전염병의 발생

42. (1) 교도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생긴 경우에, 수용자들을 교도소로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합법적이다.

(2) 수용자의 이동은 장관의 서류상의 명령으로 이행되며, 또는, 비상시의 경우, 교정감독관 또는 그 교도소의 순회 판사들 중의 서류상의 명령으로 집행된다.

(3) 어느 장소에 수용자가 체류중인 동안에는 그 수용자가 이송되어져 온 교도소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4) 전염성질병이 치유되면, 교도소로부터 이송되어진 수용자는 그가 이송되어져온 교도소로 돌려 보내야한다.

정신이상의 죄수들

43. (1) 구금형을 받고있는 한 수용자가 등록된 개업의사의 증명서에 근거하여 정신이상이라고 진단될 때, 장관은 그 죄수가 정신이상이라고 믿는 근거를 밝히는 서면에 의한 명령에 의해 그 교도소로부터 다른 정신병원 또는 싱가포르내에서 안전하게 구금하는 다른 적합한 장소로 그를 이송할 수 있다.

장관이 지시하는 대로 구류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재판으로 명령된 구금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할 때

(b) 만약 수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에 따라 그가 석방될 때까지 의

학적인 치료와 처치를 받으며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진료소 직원에 의해 증명될 때

(2) 등록된 개업의의 진단에 따라 수용자가 또 다시 정상으로 판명되면, 장관은 서면으로 된 명령으로 그가 이송되어져 왔던 교도소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 만약 그의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를 석방하도록 지시한다.

(3) 정신장애와 치료법(178조)은 선고된 형기가 만료된 후에는 정신병원에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구금된 동안의 시간은 그 형기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수용자들의 이송

44. (1) 수용자들의 이송은 교도소장의 서면에 의한 명령으로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자나 일부 수용자들을 싱가포르내에 있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

(2) 이 명령에는 수용자의 성명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며, 국적이나 선고로 또는 기타 일반적 기록에 의하여 수용자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만약 장관은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21세 이하이고 개선센터에서 수용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장관은 선고한 법원의 지방판사 또는 판사와 실제적인 논의 후에 교도소장이 개선훈련 센터로 보내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 절차는 그가 이송하는 날짜에 감화훈련 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그에게 적용될 것이다.

(4) 이송되는 날짜에 남은 형기가 3년 미만이라면, 그 형기의 만료 3년 전 그가 개선 훈련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적용한다.

(5) 만약 개선 훈련 센터에 구속중인 한 사람이 개선되지 않거나 그 시설의 다른 수용자에게 악풍감염의 보고를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으면, 장관은 그가 개선 훈련 센터에 구금되기로 되어있는 형기의 잔형기를 구금의 형기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사람은 형기동안 구금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수용자의 질병

45. (1) 수용자를 위한 적합한 수용시설이 없는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 교도소 감독관은 진료의사의 증명에 따라 그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2) 교도소에 구속된 수용자가 등록된 개업의의 증명에 따라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장관은 서면으로 된 명령으로 전염병 법(the Infectious Diseases Act)에 근거하여 의료 서비스 관리자에 의해 명시된 장소 또는 병원으로 그를 이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의 나병이 치료될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어떤 병원 또는 장소로 이송되었던 어떤 수용자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그 곳에 있는 의료직원은 매월 말 교도소의 교정감독관에게 그 수용자가 그 병원 또는 장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를 그의 서명이 된 증명서를 보내야한다.

교도소의 송환

46. (1) 병원이나 다른 장소로 이송되었던 수용자가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면 진료소장 또는 병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료직원의 진단서나 사유서를 교정감독관에게 보내야 한다.
(2) 교정감독관은 그 수용자가 여전히 교도소에 구금되어야 한다면, 그 수용자를 교도소로 복귀시켜야 한다.

도주에 대한 책임

47. 만약 어떤 수용자가 어떤 병원, 정신병원 또는 앞서 언급했던 장소에 있는 시기 동안 도주를 한다면, 수용자가 그 교도관의 사적인 보호 하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교도관도 그 때문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도주를 막기 위한 의무

48. (1) 병원, 정신 병원 또는 어떤 장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의료직원 또는 다른 관리들에 의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
(2) 관리들은 수용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3) 의료직원의 의견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에 불리한 진료는 어떤 규정으로도 부과되지 않는다.

병원에서의 특별 수감

49. (1) 어떤 수용자가 범죄의 중대함 때문에 병원, 정신병원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교정감독관은 2명 이상의 적절하고 적임의 사람들에게 그 수용자를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적어도 주야로 그 수용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
(2)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 수용자가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와 전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 수용자의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병원, 정신 병원 또는 그와 같은 장소로부터 퇴원함에 따라,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던지, 교도관에게 그가 인도되는 시간까지 그의 안전과 수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고등법원의 권한 유보

50. 이 법에 포함된 어떤 것도 싱가포르에 수감된 수용자를 인신보호영장에 의해 법정 앞에 출두하게 하는 고등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권한을 감소시킬 수 없다.

제 6 부 가택연금 계획

51.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의 "가택 연금"은 가택연금명령으로 교도소 이외의 장소 또는 교도소이외의 장소에 대한 구금형을 받은 수용자의 의한 복역을 의미한다.
"가택 연금 명령은" 교도소장의 명령을 의미한다.
수용자에 관련된 "교정감독관"은 수용자가 가택 연금을 위해 석방된 교도소의 교정감독관을 의미한다.

가택연금에 대한 명령

52. 교도소장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에 의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가택연금의 자격이 있는 수용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

가택연금의 규정

53. (1) 수용자는 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택연금으로 석방될 자격이 있다.
(a) 6개월 이상의 구금의 형기를 복역중이고 그 형기 중 1/2 이상을 복역하였을 경우
(b) 52조의 근거하여 가택 연금으로 석방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부칙(the Schedule)에 명시된 수용자가 아닌 경우
(2) 6개월이상 복역중이고 형기중 1/2이상을 복역하였을 경우, 병과된 형기는 하나의 형기의 선고로 취급된다.

가택연금 조건

54. (1) 가택연금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거주지 또는 교도소장에 의해 명시되는 다른 장소 또는 장소들의 실내에서 그 명령에서 명시된 기간동안 머물러야 한다.
(b) 수용자는 교도소장이 명시하는 그의 신체부분에 항상 전자 감시의 확인을 위해서 전자 감시 장치의 송신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c) 교정감독관과 교정감독관에 의해 권한을 받은 어떤 사람이 어느 때라도 거주지 또

는 (a) 항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에 의해 명시된 장소 또는 기타장소에 머물도록 허용해야하고, 어떤 전자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검사하고 , 유지하고, 보수하거나 회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d) 수용자의 거주지 또는 (a)항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이 지명한 다른 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 전자 감시 장치가 전화선에 연결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e) (d) 항에 언급된 전화선에 통화중 대기 또는 통화전환장치 그리고 어떤 무선 전화기, 전화 응답장치, 병렬 전화선, 조절기 — 검파기 또는 그 전자 감시 장치의 정확한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치 — 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f) 수용자에게 지급된 전자 송신 장치 또는 (a) 항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에 의해 지정된 거주지 또는 다른 장소 또는 기타장소들에 설치된 전자 감시 장치(a)를 떼거나, 제거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전자 감시 장치에 부착된 전화선을 떼거나,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함부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g) 수용자의 전자 송신장치 또는 전자 감시장치가 오작동을 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교정감독관이나 교도관에게 알려야 한다.

(h) 전자 송신장치를 지급 받은 수용자들을 감시하도록 교도소장에게 임명받은 사람은 전화를 점검하고 수용자는 즉시 응답해야 한다.

(i) 교도소장이 그 명령에서 명시하는 다른 조건들을 따라야만 한다.

(2) 교도소장은 가택 연금 명령에 대한 수용자에게 집행을 서면으로 된 명령에 의해서 행한다.

(a) 명시된 조건들은 변경, 취소하거나 추가하거나

(b) 명시된 조건들 중 어느 것을 수용자에게 면제시킬 수 있다.

가택연금명령의 효과

55. 가택연금명령이 한 수용자에 관련하여 시행중인 곳에서 —

(a) 수용자는 구금형의 선고를 복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수용자는 교정감독관의 합법적인 구금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c) 수용자는 그 명령에 따라 복역되는 구금의 기간에 관하여 형기단축을 얻을 자격이 있다.

교도소로의 귀환

56. (1) 만약 어떤 교정감독관이 어떤 수용자가 가택연금명령의 조건들 중 어떤 것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가택연금명령을 받고 있는 동안 규율상의 위반을 범했다면, 그 교정감독관은

(a) 수용자가 가택연금명령의 어느 것이나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또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 동안 규율상의 위반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b) 그 조사를 마치는 동안 그 수용자를 교도소로 귀환시킬 수 있다.

(2) (b)항에 근거하여 교도소로 귀환되는 수용자의 가택연금명령의 기간은, 만약 58조에 근거하여 집행유예가 되거나 57조에 근거하여 그 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가 교도소로 귀환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다.

가택연금명령의 취소

57. (1) 만약 교도소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a) 한 수용자가 56조 (1) (b)에 근거하여 교도소로 송환된 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b) 한 수용자가 가택연금명령의 조건들 중 어느 것이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c) 한 수용자가 가택연금명령을 받는 동안 규율상의 위반을 범했을 경우

(d) 수용자의 소재가 전자장치로 그의 거주지 또는 가택연금명령의 조건에 따라 옥내에 머무르라고 요청을 받은 다른 장소 또는 장소들에서 더 이상 감지할 수 없다고

(e) 공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도소장은 그 수용자에 대하여 가택연금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수용자를 교도소로 송환할 수 있으며, 그 수용자는, 만약 도주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1)절에 근거한 가택연금명령의 취소에 따라, 그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지 못한 그의 구금의 형기의 부분을 복역할 것이다.

가택연금명령의 정지

58. (1) (2)절에 따라 가택연금명령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70조(1)(a) 또는 (b) 이하의 작은 교도소 범죄로 처벌을 당하거나 또는 71절(b) 또는 (c) 이하의 한결 무거운 교도소 범죄로 처벌을 당하고 있는 경우, 그 범죄자에 관한 가택연금명령은, 만약 57절에 근거하

여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그 날로부터 (다음 기간 동안) 정지될 것이다.

(a) 그 가석방범죄자가 70절(1)(a) 또는 71절(1)(b)에 근거한 명령에 따른 독방에서 구금되는 동안; 또는

(b) 70절(1)(b) 또는 71절(1)(c)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박탈된 형기단축의 기간동안.

(2) 만약 한 범죄자가 70절 (1) (a) 또는 71절 (1) (b)에 근거하여 독방에서 구금을 당하면서 70절 (1) (b) 또는 71절 (1) (c)에 근거하여 사면 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면 세부(1)에 따라 중지될 가택연금명령에 대한 기간은 그 수용자가 사면 권을 박탈당한 기간과 구금을 당하도록 명령된 기간의 합이 될 것이다.

출입과 조사의 권한

59. 경찰 부국장 또는 그 이상의 지위의 경찰 또는 그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경찰은 —

(a) 56절 (1) (b)에 근거하여 교정감독관에 의해 소환을 당한 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어떤 시설에도 경고 없이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

(b) 만약 경찰이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 장소의 창문 또는 바깥 문 또는 안쪽 문을 파괴하여 열 수 있다.

제 7 부 규율과 교도소 범죄

교도소 보급품을 지배하는 범죄

60. (1) 교도소장, 교정감독관, 교도관, 진료소 직원, 기업자치제의 직원 또는 구성원 또는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

(a) 교도소용 또는 수용자용으로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는 교도소용 또는 수용자용으로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함으로서 직·간접으로 이익이나 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B) (a)항에 언급된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계약 또는 협정에 직·간접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C) 교도소 보급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어떤 금전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고 또는 그러한 보급품을 파는 사람들 또는 계약자들로부터 할인, 선물 또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수용자들과 금전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수용자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친구들과 금전상의 거래를 가져서는 안 된다.

(2) 교도관, 의료직원, 기업자치제의 직원 또는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도소장 또는

교정감독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는 어떤 수용자를 대신하여 어떤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3) 세부(1) 또는 (2)를 위반한 자는 누구나 규칙 위반죄를 지게 될 것이며 6,000달러를 초과하는 않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 또는 양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기

61. 직무에서 이탈할 의사를 가지고 불법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결석한 교도관은 직무유기로 간주될 것이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형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게 지불할 모든 체불금은 박탈당할 것이다.

지불 금지

62. (1) 교도관, 진료소 직원, 기업자치제의 직원 또는 의원 또는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구실로 교도소에 들어오거나, 인도 중에 있거나, 계속 수감 중에 있거나 또는 석방된 범죄자를 대신해서 또는 수용자로부터 금전 또는 다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거나, 받거나 주어서도 안되고 약속을 받아서도 안 된다.

(2) 금전 또는 다른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 또는 그런 돈 또는 다른 대가를 약속하고 약속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일을 수행한 사람은 규칙위반죄를 범한 것이고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류 또는 양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이 항목에 근거하여 유죄가 선고된 공무원은, 그 유죄판결이 상소에서 파기되지 않는 한, 그의 직책으로부터 해고될 것이고 그에게 지불해야하는 모든 지불 잔금은 상실될 것이다.

퇴직 때 제복 등의 인도

63. (1) 교도관을 퇴직할 때,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의 교정감독관에게 제복, 옷, 그리고 모든 무기, 장비, 탄약, 지휘봉들 그리고 정부에 속한 모든 종류의 다른 물건들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

(2) 이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규칙위반죄에 해당될 것이고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대

가는 법원에서 즉시 확정하게 되고 벌금으로 보충하게 될 것이다.

상관 모욕 또는 협박

64. (1) 교도소 직원들이 선임자를 구타하고, 협박하거나 모욕한 교도관은 지방법원 또는 치안판사 법정 앞에서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구류의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2) 상관 목욕이나 협박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선고가 항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그의 직책에서 해임될 것이며 그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연체금은 상실된다.

교도관보상기금

65. (1) 이 법에 의거하여 교도관에게 몰수된 임금 그리고 그 교도관에게 부과된 벌금은 교도관보상기금으로 전임된다.

(2) 이 기금은 법규에 따라 교도소장에 의해 관리된다.

교도소에 반입될 할 수 없는 물품

66. (1) 법적인 권한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하면 규칙위반죄가 된다.

(a) 편지 또는 서류, 또는 취하게 하는 알콜음료, 담배, 대마 또는 대마초, 약, 아편, 돈, 의류, 식료품 또는 다른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자 또는 전달 공급되도록 하거나 그 자신이 사용하려고 감추거나 두는 모든 사람

(b) 편지 또는 서류 또는 취하게 하는 알콜음료, 담배, 대마 또는 대마초, 약, 아편, 돈, 의류, 식료품 또는 어떤 다른 물품을 팔거나 또는 그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교도소, 또는 수용자들이 작업하는 장소로 가져오거나 들여오려고 시도하거나 두거나 두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

(c) 다른 죄수와 교통하는 모든 사람은 규칙 위반죄가 될 것이다.

(2) 합법적인 권한이 없이 모든 교도관은

(a) 수용자를 대신해서 또는 수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수용자가 받은 또는 수용자에게 판매될 편지 또는 서류, 또는 취하게 하는 알콜음료, 담배, 대마 또는 대마초, 약물, 아편, 돈, 의류, 식료품, 편지, 서류 또는 다른 물품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교도관

(b) 그러한 취하게 하는 알코올 음료, 담배, 대마, 또는 대마초, 약물, 아편, 돈, 의류, 식료품 또는 다른 물품을 수용자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교도관

(c) 편지, 서류, 또는 다른 물품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죄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교도관은 규칙위반에 해당한다.

(3) 이 항목에 근거하여 규칙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은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구금 또는 양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교도관이라면, 그 유죄판결이 항소에서 파기되지 않는 한 그의 직책에서 해임될 것이고 그에게 지불될 모든 미지급금은 상실된다.

수용자의 직업

67. 구금형을 받은 사람은 규정대로 작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을 감내할 수 없는자는 의료 직원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의 격리

68. (1) 민사소송 하에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범죄 또는 규칙 위반 책임으로 재 구류 중인 사람들 또는 자신들의 판결을 받기 위해 수용중인 사람들 또는 보증인이 없어 구금되어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a) 평상시에는 수형자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

(b) 수용시설의 장소를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체와 옷을 단정한 상태로 유지하기에 적합한 노동이 행해져야 한다.

(2) 모든 청소년은, 지역 조건이 허락하는 한, 구류된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교도소외의 수감

69. 범죄자 합법적으로 구속되어 교도소로 이송될때, 또는 그가 외부에서 작업을 하거나, 교도소의 경계를 넘어서 있을 때 또는 교도관의 합법적인 수감 또는 통제 하에 있을 때마다, 그 수용자는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가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모든 동일한 부대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경미한 규칙위반에 대한 교정감독관의 처벌

70. (1) 교정감독관은 정당한 조사 후에 경미한 교도소 규칙위반죄로 판명된 수용자를 다음의 처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도록 명령함으로서 그를 처벌할 수 있다:

(a)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독방수용

(b)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사면의 박탈

(c) 규정된 기간에 대한 행형성적의 연기 또는 감점
(d) 경고장
(e) 가택연금명령을 받는 범죄자의 경우에, 범죄자가 실내에 머물도록 요구되는 시간의 연장

(2) 교정감독관은 순회판사의 검열에 공개되도록 그에게 처벌받은 각 수용자들의 명패, 죄목 그리고 처벌의 범위 등에 관련하여 보여주는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대한 교도소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교정감독관의 처벌

71. (1) 교정감독관은 정당한 조사 후에 73조에 명시된 것과 같은 중대 교도소 위반죄로 판명된 수용자에게 다음의 처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게 명령함으로서 처벌을 할 수 있다.

(a) 회초리로 12대를 초과하지 않는 신체형
(b)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독방 구금
(c)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사면의 박탈
(d) 규정된 기간의 행형성적의 연기 또는 점수의 삭감

(2) 교정감독관이 수용자에게 어떤 벌을 부과하면, 교정감독관은 7일안에 수용자에게 부과된 처벌과 그 사건의 사실을 교도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교도소장은 교정감독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a) 교정감독관에 의해 부과된 처벌을 확인할 수 있다.
(b) 교정감독관에 의해 부과된 어떤 처벌을 강화하고, 경감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도소장은 교정감독관이 부과한 처벌을 바꿀 수도 있다.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교정감독관의 처벌에 부가적인 처벌을 부가할 수 있다.

(4) 교도소장의 사면의 박탈부과는 규정초과해서는 안된다.

(5) 교정감독관에 의해 부과된 처벌은 교도소장에 의해 변경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6) 교정감독관은 순회판사의 검열에 공개되도록 교도소장에게 처벌받은 각 수용자들 명패, 죄목 그리고 형기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경미한 교도소 위반범죄

72. 다음의 것은 경미한 교도소 위반범죄에 속한다.

(1) 교도관에 의해 얘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후 근로시간 중에 얘기를 하거나 크게 얘

기하거나, 웃거나 노래하는 행위
(2) 다른 수용와 다투는 행위
(3) 무엇이든 물품을 은닉하는 행위
(4) 교도관 또는 시찰 공무원에게 불손한 행위
(5) 다른 수용자를 공격하는 데 동참하거나 집단 폭행하는 행위
(6) 교도관 또는 시찰 공무원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행위
(7) 교도소의 규율을 깨고 다른 수용자와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다른 식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8) 경미한 교도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행위
(9) 교도소 범죄를 보고했을때 규칙준수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교도관이 요청했을 때 협조를 게을리 하는 행위
(10) 다른 수용자의 선입관과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주기 위해 계산된 말을 사용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
(11) 수용자들 또는 교도관들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어 내려고 계산된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
(12) 교도관의 허락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그가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13) 교도관의 허락 없이 감방, 구내, 그가 줄지어 있는 장소, 그에게 부과된 좌석 또는 침대를 떠나는 행위;
(14) 구내나 감방이 열려있을 때 감방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구내에서 빈둥거리는 행위;
(15) 교도소 주변을 이동하거나 일터로 나가고 되돌아올 때 열을 지어 행진할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16) 교도관의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가거나 그 곳에 필요이상 오래 머무는 행위
(17) 교도소의 식사 계획대로 규정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18) 수용자에게 지정되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점유하거나 또는 다른 죄수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빼앗거나 주는 행위
(19) 교도관의 허락 없이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 또는 조리실에서 음식을 이동하거나 음식과 음료의 분배와 유출에 대하여 내린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20) 명령 없이 음식을 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음식을 소실시키는 행위
(21) 입에 맞지 않거나 건강에 나쁠 것 같은 무언가를 음료나 음식에 넣는 행위
(22) 수용자에게 주어진 의복을 입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또는 다른 수용자용의 의복으로 교환하거나 그 옷을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그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변

형시키는 행위
(23) 수용자 자신의 의복에 붙어있거나 달려있는 표식 등 구별되는 숫자를 떼어 내거나, 마모시키거나 변조시키는 행위
(24)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또는 머리를 자르는 것을 규제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
(25) 의복, 담요, 깔개, 수갑, 또는 기구들을 말끔하게 유지하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물품들을 정리 배치하는 것에 관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
(26) 자신과 관련 없는 교도소 자물쇠, 등불 또는 신호등 또는 다른 물건을 어떤 식으로든 쓸데없이 만지작거리는 행위
(27) 교도소의 의복 또는 다른 수용자의 교도소물품의 어느 부분을 은닉하는 행위
(28) 교도소의 어느 곳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29) 교도소의 어느 물품 또는 교도소 건물의 다른 부분 또는 바닥, 문, 벽에 침을 뱉거나 더럽히는 행위
(30) 화장실, 세면장 또는 목욕탕을 고의로 더럽히는 행위
(31) 교도소 구내에 있는 나무들을 손상시키는 행위
(32) 수용자에게 위탁된 모든 교도소의 물품을 마땅히 보살펴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33) 작업을 위해서 수용자에게 위탁된 도구와 용구를 마땅히 보존하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또는 손상시키거나 유용하는 행위
(34) 교도소의 물품이나 도구에 수용자가 야기 시킨 손실, 파손 또는 손상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행위
(35) 교도관의 허락 없이 또는 교도관 모르게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 행위
(36) 다른 수용자에게 할당된 업무의 몫을 수행하거나 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받는 행위
(37) 다른 수용자가 해야 할 업무의 몫을 전유하는 것
(38) 작업을 위해 제공된 재료에 다른 물질을 더하거나 혼합하는 행위
(39) 욕설 또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행위
(40) 어떤 종류의 반항 또는 폭력을 저지하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그런 행위를 야기시키는 행위
(41)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음란한 행위
(42) 도주시도의 경우 교도관을 돕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 또는 그런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공격하는 경우에 교도관을 돕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

(43) 교도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
(44)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만하거나 일하기를 거부하거나 빈둥거리는 행위
(45) 교도소의 주벽, 가구 또는 다른 물품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6) 꾀병
(47) 의학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48) 과중한 교도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가택연금명령을 받은 죄수가 명령의 조건들 중 어느 것을 불이행한 행위
(49) 규정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규율 또는 질서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손상하는 행위 또는 혼란시키는 행위

가중 교도소 위반 범죄

73. 다음의 것은 가중 교도소 위반범죄로 간주될 것이다:
(1) 폭동
(2) 도주 또는 도주를 시도하는 행위
(3) 어떤 교도관을 공격하거나 습격하는 것에 동참하는 행위
(4) 어느 다른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습격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
(5) 교도소의 물품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6) 고의로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불구로 만드는 행위
(7) 어느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 대해 고의로 거짓 또는 근거 없는 비난과 불평을 하는 행위
(8) 동일한 경범죄로 두 번 처벌을 받은 후에 경미한 교도소 위반죄를 반복하는 행위
(9) 가택연금 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그 명령에 명시된 사람, 시간 그리고 장소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
(10) 가택연금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감독관 또는 교정감독관에게 주거지 또는 그 명령에 지정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곳에서, 그 죄수가 그러한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그 출입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11) 어떤 총체적인 불복종 또는 비행 행위
(12) 어떤 가중한 교도소 위반범죄 실행을 교사하는 행위

순회판사에 의한 처벌

74. (1) 수용자가 어떤 가중한 교도소 위반죄를 졌을 때, 교정감독관이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처벌이 불충분 할 때 서면으로 순회판사나 판사들에게 그 문제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순회 판사 또는 판사들은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교도소에 출석하여 혐의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당한 조사 후 그 또는 그들이 그러한 위반의 유죄가 증명된 수용자에게 다음의 처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처벌 할 수 있다.

(a)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식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독방에 구금

(b) 곤봉으로 24대를 넘지 않는 신체형

(c)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사면의 박탈

수용자 항변권

75. 어떤 수용자도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와 증거에 대한 심문을 받고 자신을 방어하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석방일 이후의 구류

76. (1) 수용자에게 부과된 처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교도소로부터 석방일자를 초과하여 수용자를 구류할 수 있다.

(2) 구류의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그 기간은 그 수용자가 석방일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계산한다.

신체형

77. (1) 신체형의 선고가 어느 수용자에게 내려질 때, 그는 그 행동 또는 행동들 또는 태만과 관련된 선고는 하나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2) 어떤 경우에도 신체형의 선고는 여성에게 부과 될 수 없다.

(3) 어떠한 경우에도 가벼운 몽둥이로 10대 이상을 초과하는 신체형은 청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다.

(4) 진단서가 수용자나 청소년이 그 처벌을 감당하는데 적합한 건강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신체형이 부여되며, 어떤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식사의 또는 신체형의 처벌이 과해지지 않을 것이다.

범죄의 기소

78. 이 법의 어떤 것 도 정규 법의 진행에 어떤 위반에 대해서 범죄의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한다.

순회 판사들의 임용

79. (1) 장관은 치안판사위원회를 순회판사위원회라고 부를 것 이며, 그 중에는 모든 행정장관은 직무를 겸하는 구성원이 될 것이다.

(2) 순회판사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a) 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직책을 보유할 것이다

(b) 장관에 의해 때때로 재임명되거나 또는 언제라도 직책에서 물러날 수 있다.

(c) 장관에게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서 언제라도 그의 직책에서 사임할 수 있다.

(3) 순회 판사는

(a) 어느 때나 교도소 또는 교정훈련센터를 방문하고 여러 거실, 독방 그리고 교도소의 여러 거실 또는 독방 등을 조사하고 수용자들의 음식의 양과 질을 조사 검사하며 수용자들의 불만을 듣고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b) 교도소 규율이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교도소 또는 개선 수련센터의 운영에서 또는 그곳에 수감된 수용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찰된 변칙사항에 대해 교정감독관의 주위를 환기시킬 것이다.

(c) 규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고 실시할 것이다.

(4) 위원회는 교대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이 매달 교도소의 순회판사 또는 판사를 임명할 것이며, 그러한 순회 판사 또는 판사들은 보고 된 교도소 위반죄를 듣고, 심리하고 처리할 것이다.

(5) 모든 순회 판사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증인을 소환하고 선서를 지킬 권한을 가질 것이다.

(6) 그 위원회는 개선훈련센터에 수감된 사람들을 법규정에 의해 직무를 훈련시킬 것이다.

판사들, 행정관 등의 방문

80. 교도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재판권을 갖는 모든 판사, 행정관 또는 치안 판사는

(a) 그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교도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수용자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b) 어떤 수용자나 교도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c) 교도소에 대한 생각을 교정감독관이 순회판사들의 다음 방문 때 순회 판사들에게 제출해야하는 방명록을 작성한다.

수용자들의 고용계획

81. (1) 장관은 수용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돈벌이가 되는 고용에 종사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수용자들을 위해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고용에 종사하는 수용자는, 수용자의 범행에 대하여 법원, 판사, 행정관 또는 다른 공무원에 의해 주어진 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의 구역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 날마다 외출이 허가된다.

(3) 어느 교도소의 경계 밖에서 일을 수행하는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 교정감독관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그가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모든 동일한 부대조건에 따라야 한다.

(4) 장관은 수용자들의 유급 고용의 계획에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규정은 다음의 목적 또는 사정들 중의 어느 것 또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a) 어느 교도소의 밖에서 고용에 종사하기 위해 석방되어질 수용자들에 관한 지불 조건과 조건들

(b) 수용자의 고용에 관한 조건과 지불조건

(c) 수용자들에게 임금이 지불되어질 방식

(d) 그러한 고용의 계획 하에 수용자들이 버는 임금 중 식대와 여행 경비 지불을 위해 수용자들이 간직할 임금의 비율

장관의 계획 수정

82. 장관은 관보에 출판되는 명령에 의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범죄의 심리

83. (1) 이 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법 이하의 모든 위반죄는 지방 법원 또는 행정관의 법정에서 심리되어진다.

(2) 어느 지방 법원 또는 행정관의 법원은 형사 소송법에 있는 어느 것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반죄에 관한 이 법에 의해 규정된 최대한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규칙

84. (1) 장관은 교도소와 개선 훈련 센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또는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을, 이 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2)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 또는 사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a) 교도관들의 의무와 권한 업무와 복무의 조건

(b)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들의 의무기록, 검사, 사진촬영, 지문날인 그리고 기타기록, 통계치 등에 대한 충실하고 정직한 답변

(c) 검사, 사진, 지문 날인 또는 다른 기록들이 보내어져야 할 사람들 또는 공급되어져야 할 사람들

(d) 수용자들의 고용, 식사, 분류, 안전구금, 격리, 처우와 규율

(e) 장소와 방식에 있어서 구금의 다른 단계에 따라 부가되어지는 노동의 종류

(f) 구류의 판결과 벌금의 지불이 없는 구류의 판결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과 사면이 이루어지는 조건들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사면을 승인하는 것

(g) 수용자들의 노동 생산의 처리

(h) 선고가 만료된 수형자와 집행유예가 해제된 수용자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용역을 활용하고 그들의 작업에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수들의 원조 협회와 단체를 설립하는 것

(i) 수용자들이 석방될 때 그들에게 돈, 음식, 옷 또는 여행 수단을 제공하는 것

(j) 교도관 보상기금의 관리

(k) 순회판사들의 방문과 소송절차

(l) 교도소장에게 어떤 수용자가 조직, 작용 그리고 절차들에 근거하여 가택연금으로 석방되는 것이 적합한지 조언하는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m) 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져야 하거나 규정되어져야 할 기타 문제

(3) 이 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모든 규정들은 관보에 출판된 후 가능한 한 속히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부칙(THE SCHEDULE)

52조에 근거한 가택연금 석방 결격사유

만약 수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지면, 그 수용자는 가택연금 석방에 결격자로 선고받는다.

(1) 구금의 동일한 선고에 관하여 가택연금으로 석방된 적이 있고, 그 조에 근거한 그의 석방명령이 만료가 되었거나 취소된 자

(2) 종신 구금형을 복역하는 자

(3)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그의 사형이 종신형으로 대체된 자

(4) 형사절차법의 21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지시로 억류되어 있는 자

(5) 그의 구금형을 마치면 싱가포르를 떠날 것 같은 자

(6) 약물남용법의 5조에 근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
(7) 형법의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발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자
  (a) 147조 (폭동을 일으키는 것)
  (b) 148조 (폭동을 일으키는 것,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하는 것)
  (c) 304조 (살인에 이르지는 않는 무도한 살인행위)
  (d) 307조 (살인을 하려는 시도)
  (e) 325조 (자발적으로 중대한 상처를 입히는 것)
  (f) 326조 (자발적으로 위험한 무기나 수단으로 중대한 상처를 입히는 것)
  (g) 354조 (정숙을 깨는 것)
  (h) 354조 A (특정한 상황에서 정숙을 깨는 것)
  (i) 363조 (납치)
  (j) 364조 (살인을 하기 위해 납치 또는 유괴하는 것)
  (k) 376조 (강간)
  (l) 376조 B (남자에 의해 저질러진 근친상간)
  (m) 376조 C (여자에 의해 저질러진 근친상간)
  (n) 377조 (부도덕한 범죄들)
  (o) 395조 (집단—약탈)
  (p) 400조 (집단강도에 속하는 것)
(8) 수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로 인해 합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보호관리로부터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하여 형법 224조에 근거한 범죄를 저지른 자

빈 면

Ⅸ. 日本 監獄法

공포 : 1908년 3월 28일 법률 제 28호
시행 : 1908년 10월 1일
개정 : 1947년 3월 28일 법률 제20호
시행 : 1947년 5월 3일
개정 : 1947년 4월 16일 법률 제61호
시행 : 1947년 5월 3일
개정 : 1947년 12월 22일 법률 제223호
시행 : 1948년 1월 1일
개정 : 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43호
시행 : 1949년 7월 1일
개정 : 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86호
시행 : 1952년 9월 25일
개정 : 1953년 7월 21일 법률 제68호
시행 : 1953년 7월 22일
개정 : 1998년 10월 2일 법률 제 114호
시행 : 1999년 4월 1일
개정 :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시행 : 2001년 1월 6일

[目 次]

제1장 總則(제1조- 제10조)
제2장 收監(제11조～제14조)
제3장 拘禁(제15조～제18조)
제4장 戒護(제19조～제23조)
제5장 作業(제24조～제28조)
제6장 敎誨와 敎育(제29조～제31조)
제7장 給與(제32조～제35조)

제8장 衛生과 治療(제36조~제44조)
제9장 接見과 書信(제45조~제50조)
제10장 領置(제51조~제57조)
제11장 賞罰(제58조~제62조)
제12장 釋放(제63조~제70조)
제13장 死亡(제71조~제75조)
附 則

제 1 장 總 則

제1조 (監獄의 種類) ① 監獄은 이를 다음 4種으로 한다.

1. 懲役監 : 懲役을 宣告받은 자를 拘禁하는 곳으로 한다.
2. 禁錮監 : 禁錮를 宣告받은 자를 拘禁하는 곳으로 한다.
3. 拘留場 : 拘留를 宣告받은 자를 拘禁하는 곳으로 한다.
4. 拘置監 : 刑事被告人, 拘禁許可狀·假拘禁許可狀 또는 拘禁狀에 의하여 監獄에 拘禁된 자, 引致狀에 의하여 監獄에 留置된 자 및 死刑宣告를 받은 자를 拘禁하는 곳으로 한다.

② 拘置監에는 懲役, 禁錮 또는 拘留刑을 宣告받은 자를 一時拘禁할 수 있다.

③ 警察官署에 설치된 留置場은 이를 監獄으로 代用 할 수 있다. 그러나 懲役 또는 禁錮刑을 宣告받은 자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拘禁할 수 없다.

제2조 (少年의 拘禁場所) ① 2개월 (이사)이상의 懲役刑을 선고받은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설치한 監獄 또는 감옥 내에서 分界를 설치한 장소에 이를 拘禁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자는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또는 만 20세에 달한 후 3월내에 형기를 종료할 자는 그 殘余刑期동안 계속하여 이를 拘禁할 수 있다.

③ 心身의 發育狀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 2항의 적용에 있어 연령에 拘碍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男監과 女監의 分離, 監獄의 種類에 따른 分界) ① 監獄에 男監과 女監을 설치하고 이를 분리한다.

② 懲役監, 禁錮監, 拘留監 및 拘置監이 동일 구획 내에 있는 것은 이를 分界한다.

제4조 (巡閱, 巡視) ① 法務大臣은 적어도 2년에 1회 官吏로 하여금 監獄을 巡閱하게 하여야 한다.

② 判事와 檢察官은 監獄을 巡視할 수 있다.

제5조 (參觀) 監獄의 參觀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學術研究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法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제6조 (沒收物의 充用) 이 법에 의하여 沒收되거나 또는 國庫에 귀속된 물건은 이를 監獄의 慈惠에 充用한다.

제7조 (請願) 在監者는 監獄의 處遇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명령) 法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大臣 또는 巡閱官吏에게 請願을 할 수 있다.

제8조 (勞役場·監置場) ① 勞役場과 監置場은 이를 監獄에 부설한다.

② 監置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근에 監置場이 없는 경우 또는 監置場이 있어도 그 收容能力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拘留場(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用 되는 것을 포함)의 특히 구별된 장소를 監置場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③ 전 5조의 규정은 이를 勞役場 및 監置場에 준용한다.

제9조 (死刑囚·勞役場留置人에 대한 準用) 이 법 중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刑事被告人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拘禁許可狀·假拘禁許可狀 또는 拘禁狀에 의하여 監獄에 拘禁된 자, 引致狀에 의하여 監獄에 留置된 자, 監置者 및 死刑宣告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하며, 懲役囚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勞役場留置의 宣告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제35조의 규정은 監置者에게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陸·海軍監獄에의 不適用) 이 법은 陸·海軍에 속하는 監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收 監

제11조 (入監文書의 調査) 새로 入監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令狀 또는 判決書 및 執行指揮書, 기타 적법한 문서를 조사한 후 入監시켜야 한다.

제12조 (幼兒의 帶同) ① 새로 入監하는 婦女가 그 子를 帶同할 것을 구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만 1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監獄에서 分娩한 자에 대하여도 역시 전항의 例에 의한다.

제13조 (感染症의 患者) 새로 入監하는 자가 感染症의 예방 및 感染症의 환자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平成 12년 법률 제114호)에 정하는 感染症指定醫療機關에의 入院에 요하는 類型의 感染症에 걸린 자인 때에는 이를 入監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身體 및 衣類의 檢查) 새로 入監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身體 및 衣類를 검사하여야 하며, 在監 중인 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역시 같다.

제3장 拘 禁

제15조 (獨居拘禁) 在監者는 心身의 상황에 따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獨居拘禁할 수 있다.

제16조 (離居拘禁) ① 離居拘禁에 있어서는 在監者의 罪質·性格·年齡등을 참작하여 그 監房을 달리한다.
②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在監者의 종류에 따라 그 監房을 달리한다.
③ 18세 미만의 자는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의 자와 그 居室을 달리한다. 다만 心身發育의 狀況에 따라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工場에 就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關聯被告人의 取扱) 刑事被告人에 있어서 被告事件과 상호 관련있는 자는 서로 그 監房을 달리하고 居室 밖에서도 그 交通을 차단한다.

제18조 (病監·敎誨堂의 共同使用) ① 懲役監, 禁錮監, 拘留場, 拘置監, 勞役場 및 監置場이 동일 구획 내에 있는 경우에는 同性者에 대해 동일한 病監 또는 敎誨堂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在監者의 종류에 따라 監房이나 座席 또는 진찰이나 敎誨의 시간을 달리한다.

③ 病監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戒 護

제19조 (戒具의 使用) ① 在監者의 逃走, 暴行 또는 自殺의 우려가 있는 때 또는 監外에 있는 때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 戒具의 종류는 法務省令으로 이를 정한다.

제20조 (銃劍의 使用) 法令에 의하여 監獄官吏가 휴대하는 銃 또는 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在監者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람의 身體에 대하여 위험한 暴行을 하거나 脅迫을 가할 때
2. 위험한 暴行의 사용에 提供될 수 있는 물건을 所持하고 그 放棄命令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逃走의 목적으로 多衆騷擾를 일으킬 때
4. 逃走를 기도하는 자가 暴行을 하고 逮捕를 면하려고 하거나 또는 제지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때

제21조 (天災地變時의 處置) ① 天災地變時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在監者로 하여금 應急의 용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① 天災地變時에 監獄 내에 避難手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在監者를 다른 곳으로 護送해야 하고 만약 호송할 겨를이 없을 때에는 一時釋放할 수 있다.

② 釋放된 자는 監獄 또는 警察官署에 출석해야 하며, 석방 후 24시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엔 형법 제97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23조 (監獄官吏의 逮捕權) ① 在監者가 逃走한 때에는 監獄官吏는 逃走 후 48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체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刑事訴訟法 제60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장 作 業

제24조 (作業) ① 作業은 衛生, 經濟 및 재감자의 刑期, 健康, 技能, 職業 장래의 生計 등을 참작하여 이를 과한다.

② 18세 미만의 자에게 과해야 할 作業에 대해서는 전항 외에 특히 敎養에 관한 사항을 참작한다.

제25조 (作業의 免除) ① 大祝祭日, 1월 1일, 2일 및 12월 31일에는 就業을 免除한다.

② 父母의 訃音에 접한 자는 3일간 그 就業을 免除한다.

③ 法務大臣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就業을 免除할 수 있다.

④ 炊事, 淸掃, 看護 기타 監獄의 經理에 관하여 필요한 作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就業을 免除할 수 있다.

제26조 (請願作業) 刑事被告人, 拘留囚 또는 禁錮囚가 作業에 就業할 것을 신청하 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作業收入, 作業賞與金) ① 作業收入은 모두 國庫收入으로 한다.

② 在監者로서 作業에 就業한 자에게는 法務省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作業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作業賞與金은 行狀, 作業成績 등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한다.

제28조 (手當金) ① 在監者가 就業中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리고 이로 인해 死亡하거나 業務를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 때에는 情狀을 參酌하여 手當金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手當金은 釋放時에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며, 死亡한 경우에는 死亡者의 父·母·配偶者 또는 子女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6장 敎誨와 敎育

제29조 (敎誨) 受刑者에게는 敎誨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在監者가 敎誨를 신청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 (敎育) 18세 미만의 受刑者애개느 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受刑者에 있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敎育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1조 (圖書의 閱覽) ① 在監者가 文書, 圖書의 閱覽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② 文書, 圖書의 閱覽에 관한 制限은 法務省令으로서 이를 정한다.

제 7 장 給 與

제32조 (受刑者의 衣類등) 受刑者 및 監置者에게는 일정 衣類와 寢具를 사용하게 한다. 다만 拘留囚 및 監置者에게는 자기 옷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타의 자에게는 속옷의 自辯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3조 (被告人·留置人의 衣類 등) ① 刑事被告人 및 勞役場留置의 宣告를 받은 자의 衣類, 寢具는 自辯으로 하며, 自辯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이를 貸與한다.
② 自辯衣類·寢具에 관한 制限은 法務省令으로서 이를 정한다.

제34조 (食糧) 在監者에게는 그 體質, 健康, 年齡, 作業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食糧 및 飮料를 급여한다.

제35조 (被告人의 食糧自辯) 刑事被告人에게는 食糧의 自辯을 허가할 수 있다.

제 8 장 衛生과 醫療

제36조 (頭髮·鬚髯 (수염)의 短削) 재감자의 두발(頭髮)과 수염(鬚髯)은 이를 짧게 깍는다. 그러나 刑事被告人의 頭髮과 鬚髯은 衛生上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이를 짧게 깍을 수 없다.

제37조 (居室의 淸潔保存) 在監者는 그 拘禁되는 監房의 淸潔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用務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8조 (運動) 在監者에게는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한다.

제39조 (感染症의 豫防) 在監者에게는 感染症의 예방 및 感染症의 환자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平成 12년 법률 제114호)에 정하는 感染症의 豫防에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醫術

을 행할 수 있다.

제40조 (治療) 在監者가 疾病에 걸린 때에는 醫師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病監에 수용한다.

제41조 (感染症患者의 隔離)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에서 定하는 感染症指定醫療機關에의 入院을 要하는 類型의 感染症에 걸린 者는 이를 嚴格히 隔離하고 健康한 者 기타 病者에 接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懲役囚로 하여금 看護하게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自費治療) 病者가 醫師를 지칭하여 自費로서 補助治療를 원하는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 (病院에의 移送) ① (精神病, 傳染病) 精神病,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에서 정하는 感染症 其他의 疾病에 걸린 者가 監獄에서 적당한 治療를 행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病者는 情狀을 참작하여 임시로 이를 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된 자는 이를 在監者로 看做한다.

제44조 (病者에 準하는 者) 姙婦, 産婦, 老弱者 및 不具者는 이를 病者에 준할 수 있다.

제 9 장 接見과 書信

제45조 (接見) ① 在監者와 接見을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② 受刑者 및 監置者는 그 親族이 아닌 자와 接見을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書信受發의 許可) ① 在監者에게는 書信을 발송하거나 이를 받는 것을 許可한다.

② 受刑者 및 監置者는 그 親族이 아닌 자와 書信의 受發을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書信受發의 禁止) ① 受刑者 및 監置者와 關係되는 書信 중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受發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따라 受發을 허가하지 아니한 書信은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를 廢棄할 수 있다.

제48조 (公文書의 交付) 法院 기타 公務所로부터 在監者 앞으로 보내어진 文書는 개 披閱하고 이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49조 (書信 및 公文書의 領置) 在監者에게 교부한 書信 및 前條의 文書는 본인이 閱讀한 후에 이를 領置한다.

제50조 (接見 및 書信의 制限) 接見의 參與, 書信의 檢閱, 기타 接見 및 書信에 관한 제한은 法務省令으로서 이를 정한다.

제 10 장 領 置

제51조 (携帶物의 領置) ① 在監者가 携帶하는 물건은 點檢하여 이를 領置한다.

② 保存할 價値가 없거나 保存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그 領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開披할 수 있다.

③ 領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開披한 물건에 대해 재감자가 상당한 處分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제52조 (領置物의 充用) 在監者가 領置物로서 그 父母, 配偶者 또는 子女의 扶助 기타 정당한 用度에 충당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情狀을 參酌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53조 (差入) ① 在監者에게 差入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法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在監者 앞으로 送付되어 온 물건으로서 그 送付人의 姓名 또는 居所가 불명한 때, 그 差入을 許可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在監者가 그 受領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沒收 또는 廢棄할 수 있다.

제54조 (私的으로 所持하는 物件) 在監者가 私的으로 所持하는 물건은 이를 沒收하거나 廢棄할 수 있다.

제55조 (領置物의 交付) 領置物은 釋放時에 이를 교부한다.

제56조 (死亡者의 遺留物) 死亡者의 遺留物은 청구에 의하여 相續人 또는 親族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57조 (死亡者, 逃走者의 遺留物 國庫歸屬) ① 사망자의 遺留物은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前條에 열거한 자의 청구 한자 가 없는 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② 逃走者의 遺留物로서 逃走日로부터 1년 내에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역시 같다.

제 11 장 賞 罰

제58조 (賞遇) ① 受刑者가 改俊의 情이 있는 때에는 賞遇를 할 수 있다.

② 賞遇의 종류 및 방법은 法務省令으로서 이를 정한다.

제59조(懲罰) 在監者가 紀律에 위반한 때에는 懲罰에 처한다.

제60조 (懲罰의 種類) ① 懲罰은 다음과 같다.

1. 叱責
2. 賞遇의 3개월 이내의 停止
3. 賞遇의 廢止
4. 3개월 이내의 文書·圖畵 열독 禁止
5. 10일 이내의 請願作業 停止
6. 自辯에 의한 衣類, 寢具 着用의 15일 이내의 停止
7. 15일 이내의 食糧 自辯 禁止
8. 5일 이내의 運動停止
9. 作業賞與金 計算高의 일부 또는 전부 削減
10. 7일 이내의 減食
11. 2개월 이내의 輕屛金
12. 7일 이내의 重屛禁

② 屛禁은 受罰者를 罰室 내에서 주야로 屛居시키고, 정상을 참작하여 就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重屛禁에 있어서는 다시 罰室을 어둡게 하고 침구사용을 금지한다.

③ 제1항 각호의 懲罰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제61조 (減食의 適用 除外) 전조 제1항 제10호의 懲罰은 刑事被告人 및 18세 미만의 在監者에게는 이를 과하지 아니한다.

제62조 (懲罰의 執行停止·免除) ① 懲罰者에게 疾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懲罰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懲罰者가 改俊의 情이 현저한 때에는 그 懲罰을 免除할 수 있다.

제12장 釋 放

제63조 (釋放) 在監者의 釋放은 赦免, 權限있는 자의 命令 또는 刑期終了에 의하여 관계문서를 조사한 후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4조 (釋放의 猶豫期間) 赦免을 받거나 假釋放 또는 假出場을 허가 받은 자는 그 特赦狀, 減刑狀 또는 刑執行免除狀 또는 許可書가 監獄에 도달한 후 24시간 내에 이를 釋放한다.

제65조 前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命令에 의하여 釋放을 하여야 할 자는 命令書가 監獄에 도달한 후 10시간 내에 이를 釋放한다.

제66조 (假釋放 또는 假出場의 證票) 假釋放 또는 假出場을 허가 받은 자를 釋放할 때에는 이에 證票를 교부한다.

제67조 削除

제68조 (滿期者의 釋放) 滿期者는 그 刑期終了의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를 석방한다.

제69조 (請求에 의한 收容) 釋放되어야 할 자가 重疾病에 걸려 감옥에서 治療 중인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계속 在監시킬 수 있다.

제70조 (歸家旅費 또는 衣類의 支給) 釋放되어야 할 자가 歸家旅費 또는 상당한 衣類를 가지고 있지 못한 때, 또는 監獄行政의 便宜에 따라 移監시켰기 때문에 歸家旅費를 증가하게 된 때에는 衣類 또는 旅費를 給與할 수 있다.

제13장 死 亡

제71조 (死刑의 執行) ① 死刑의 執行은 監獄내의 刑場에서 이를 행한다.

② 大祝祭日, 1월 1일, 2일 및 12월 31일에는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

제72조 (絞首 후의 節次) 死刑을 執行할 때에는 絞首한 후 死相을 點檢하고 다시 5분의 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絞繩(교승)을 풀 수 없다.

제73조 (埋葬) ① 在監者가 死亡한 때에는 이를 埋葬한다.
② 死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
③ 死體 또는 遺骨은 假葬 후 2년을 경과하여 이를 合葬할 수 있다.

제74조 (死體의 交付) 死亡者의 親族, 親舊 중에서 死體 또는 遺骨을 신청하는 자 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合葬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解剖) 受刑者의 死體는 法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解剖하기 위하여 病院, 學校 또는 기타 公務所에 이를 송부할 수 있다.

附則(1908년 3월 28일 법률제28호)

① 이 法은 刑法施行日 (1908년 10월 1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監獄則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懲治人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則(1947년 3월 28일 법률 제20호)

이 법률은 1947년 5월 3일 시행한다.

附則(1947년 4월 16일 법률 제61호)

이 법률은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附則(1947년 12월 22일 법률 제223호)

이 법률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43호)

이 법률은 194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86호)

法律의 施行期日은 公布日부터 起算하여 六十日을 초과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政令이 定한다.

附則(1953년 7월 21일 법률 제68호)

이 법률은 195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附則(1998년 10월 2일 법률 제 114호)

이 법률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施行期日)

제1조 이 法律(第2條 및 第3條 除外)은, 2001.1.6부터 시행한다. 〔後略〕

빈 면

X. 日本 監獄法施行規則

(1908. 6. 16 司法省令 第18号)
(最终改正 2003년 3월 17일 法务省令 第12号)

① 이 規則은 監狱法施行日(1908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監狱規則施行细則은 폐지한다. 다만 惩治人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1921년 9월 1일 司法省令 第19号), 시행 공포일
개정(1922년 6월 2일 司法省令 第13号), 시행 공포일
개정(1922년 10월 14일 司法省令 第24号), 시행 공포일
개정(1924년 3월 8일 司法省令 第4号), 시행 공포일
개정(1928년 4월 9일 司法省令 第4号), 시행 공포일
개정(1930년 5월 3일 司法省令 第7号), 시행 공포일
개정(1931년 4월 30일 司法省令 第9号), 시행 공포일
개정(1946년 11월 9일 司法省令 第97号), 시행 공포일
개정(1949년 6월 23일 法务府令 第22号)
이 府令은 少年院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시행의 일(1949년 5월 30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1950년 4월 15일 法务府令 제32号), 시행 공포일
개정(1950년 9월 12일 法务府令 第111号)
이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5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1952년 9월 24일 法务省令 第28号)
이 省令은 1952년 9월25이부터 시행한다.

개정(1955년2월 1일 法務省令 第24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다.

개정1964년 3월 31일 法務省令 第47号

이 省令은 196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1966년 11월 1일 法务省令 第47号) 抄

제1조 (施行期日) 이 省令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独居拘禁 期间의 改正에 따를 经过措置) 이 省令에 의한 개정후의 제 27조의 규정은 이 省令의 施行时 현재 独居拘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省令의 시행일 (이하 '시행일'이라 한다)에 이 省令에 의한 改正前의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구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구금의 시행일 이전 6개월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 同行 但书规定에 의한 期间의 更新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자로서 시행일에 갱신후의 拘禁(2회이상 갱신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갱신 후의 拘禁. 이하 같다)期间이 3개월을 초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갱신후의 구금이 시행일 이전 3개월부터 개시된 자로 看做한다.

개정(1970년 4월 17일 法务省令 第12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72년 6월 30일 法务省令 第48号

이 省令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1974년 6월 28일 法务省令 第52号) 抄

1. (施行期日) 이 省令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经过措置) 이 省令의 시행전에 이 省令에 의한 개정전의 监狱法施行规则 제15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省令의 시행후에 赏金을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이 省令에 의한 개정전의 刑法累进处遇令 제46조 제1항(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许可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후의 监狱法 施行规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한 허가로 看做한다.

개정(1977년 4월 1일 法务省令 第24号) 시행 공포일
개정 (1991년 8월 7일 法务省令 第22号), 시행 공포일
개정 (1994년 8월 5일 法务省令 第37号), 시행 공포일
개정 (1995년 3월 30일 法务省令 第25号)

이 省令은 1995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년 3월 1일 法务省令 第11号), 시행 공포일
개정 (1999년 3월 30일 法务省令 第24号)

이 省令은 1999년4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2000년9월 18일 法务省令 第35号)

이 省令은 内阁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9년법률 第88号)의 시행일(2001년1월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1년 3월 22일 法务省令 第30号)

이 省令은 2001년4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2002년 2월 8일 法务省令 第6号)

이 省令은 2002년 3월1이부터 시행한다.

개정(2002년 8월 1일 法务省令 第48号) 抄

(시행기일)

1. 이 규칙은 20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3년 3월 17일 法务省令 第12号)

이 省令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總則(제1조~제10조)
제 2 장 收監(제11조~제22조)
제 3 장 拘禁(제23조~제40조)
제 4 장 戒護(제41조~제57조)
제 5 장 作業(제58조~제79조의 2)
제 6 장 敎誨와 敎育(제80조~제88조)
제 7 장 給與(제89조~제101조)
제 8 장 衛生과 治療(제102조~제119조)
제 9 장 接見과 書信(제120조~제139조)
제10장 領置(제140조~제151조)
제11장 賞罰(제152조~제166조)
제12장 釋放(제167조~제176조)
제13장 死亡(제177조~제182조)
附 則

제 1 장 总 则

제1조 (刑事被告人에 準하는 者 등)
少年法(1948 法律 제168호) 제17조의 4 제1항 및 少年院法(1948년 法律 제 169호)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拘置監에 임시로 收容된 자의 取扱에 있어서 는 少年法 및 少年院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被告人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을 準用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參觀의 申請) 監獄의 參觀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所長(刑務所, 少年刑務所

및 拘置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姓名, 職業, 住所, 年齡 및 參觀의 목적을 조사하고, 參觀을 허가한 자에게는 參觀者 注意事項을 고지해야 한다.

제4조 (請願) ① 法務大臣에게 請願을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請願書는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封緘시키고 監獄官吏는 이를 開披할 수 없다.

③ 請願書를 제출한 때에는 所長은 신속히 이를 法務大臣에게 傳達하여야한다.

제5조 ① 巡閱官吏에게는 書面 또는 口頭로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 巡閱官吏에게 청원을 豫告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所長은 그 자의 姓名을 請願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前條 第2項의 규정은 이 條의 請願書에 이를 적용한다.

제6조 巡閱官吏의 請願, 聽取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監獄官吏를 立會시키지 못한다.

제7조 ① 巡閱官吏가 請願을 심사한 때에는 스스로 裁決을 하거나 法務大臣의 裁決을 받을 수 있다.

② 巡閱官吏가 스스로 裁決을 한 때에는 請願簿에 그 要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請願에 대한 裁決은 所長이 신속히 이를 본인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제9조 ① 所長은 監獄의 處遇 또는 一身의 사정에 대한 面談을 원하는 在監者와 면담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面談을 豫告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面接簿에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면접한 후 본인에게 그가 開陳한 意見의 要旨를 面接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準用) 이 규칙 중 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刑事被告人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監置者에게 이를 準用하고, 懲役受刑者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勞役場留置의 宣告를 받은 자에게 이를 準用한다.

제2장 收 監

제11조 (引受) 새로 入監하는 자를 引受한 때에는 入監者의 姓名, 引受의 연월일시 및 引受官吏의 姓名을 기재한 引受書를 護送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子女의 引渡) ① 새로 入監하는 婦女에게 자녀의 帶同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引受人이 없는 때에는 都度府縣(도도부현)의 知事에게 통보하여 그가 지정하는 兒童福祉施設 또는 養父母에게 그 子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帶同을 허가받은 子女가 만 1세에 달하거나 달리 在監을 허가해서는 안되는 사 정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引受人이 없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3조 (健康診察) 監獄의 醫師는 새로 入監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健康診察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傳染病患者의 入監) 監獄에 隔離病監, 기타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1998년 法律 제114호)에 정하는 感染症에 걸린 자를 수용하기에 적당한 설비가 있을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感染症의 醫療機關에의 入院에 요하는 類型의 感染症에 걸린 자라도 이를 入監시켜야 한다.

제15조 監獄法 第13條에 의하여 入監을 거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入監을 지휘한 官廳 및 監獄所在地의 市町寸長(特別區가 있는 區域 및 地域保健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政令으로 정한 市에 있어서는 保健所長.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다시 그 사유를 法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自由刑의 執行停止의 경우 入監 등) ① 새로 入監하는 자에 대하여 刑事訴訟法(1948년 법률 제131조), 제 480조 및 제482조 각호에 정해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入監시킨 후 즉시 그 사유를 檢察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은 在監 중인 者에게 준용한다.

③ 監置者에 대하여 法廷등에서의 秩序維持에 관한 法律(1952년 법률 제286호) 제7조 제8항에 정해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裁判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入浴) ① 새로 入監하는 者에 대하여는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沐浴을 시켜야 한다.

② 婦女의 沐浴에는 女子인 監獄官吏가 참여하여야 하고, 婦女의 身體 및 衣類의 檢査 또한 女子인 監獄官吏가 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규정은 在監중인 婦女의 沐浴 및 身體衣類의 검사에 準用한다.

제18조 (番號) 入監者에게는 番號를 지정한다.

제19조 (遵守事項 등의 告知) ① 所長은 在監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刑期의 起算日과 終了日을 入監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② 所長은 入監者의 身上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身上調査表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調査를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 公私團體 또는 본인의 緣故者에게 照會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撮影 및 指紋의 採取) 所長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入監者를 촬영하고 指紋을 採取하여야 한다. 在監中인 者에 대하여도 같다.

제21조 (獨居拘禁) ① 새로 入監한 자는 疾病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獨居拘禁시켜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獨居拘禁된 懲役受刑者에게는 作業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 (身分帳簿 등) ① 入監者의 身分帳簿, 在監者 人名簿 및 放免歷簿는 收監 후 3일 이내에 整理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在監者 준수사항은 册子로서 이를 監房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拘 禁

제23조 (獨居拘禁) 獨居拘禁者는 다른 在監者와 交通을 遮斷하고 召喚, 運動, 沐浴, 接見, 敎誨, 診療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獨居시켜야 한다.

제24조 (刑事被告人의 獨居拘禁) 刑事被告人은 가능한 獨居拘禁하여야 한다.

제25조 (獨居拘禁할 者) ① 受刑者는 이 規則에 특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順位에 따라 獨居拘禁한다.

1. 餘罪 또는 刑期限 內의 범죄로 인하여 審問 중에 있는 者.
2. 刑期가 2개월 미만 인 者.
3. 分類調査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

② 獨居室에 殘餘居室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受刑者라 하더라도 이를 獨居拘禁할 수 있다.

제26조 (獨居拘禁의 禁止) 在監者의 情神 또는 身體에 害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감자를 獨居拘禁할 수 없다.

제27조 (獨居拘禁의 期間) ① 獨居拘禁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후 3개월마다 그 기간을 更新할 수 있다.

② 20세미만인 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獨居拘禁할 수 없다.

제28조 (巡視) 所長 및 감옥의 醫師는 적어도 30일마다 1회, 기타의 監獄官吏는 매일 수회 獨居拘禁者를 巡視하여야 한다.

제29조 (單獨巡視의 禁止) 所長, 監獄의 醫師 및 女子인 監獄官吏를 제외하고는 監獄官吏는 단독으로 獨居拘禁된 婦女를 巡視할 수 없다. 야간 獨居室에 拘禁된 婦女의 巡視에 대하여도 역시 같다.

제30조 獨居拘禁者를 순시한 監獄官吏는 그 巡察한 사항을 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夜間의 獨居室에의 拘禁) ① 제25조 제1항 각호의 受刑者로서 居室 부족으로 인하여 獨居拘禁할 수 없는 자 및 獨居拘禁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夜間獨居室에 구금할 수 있다.

②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夜間獨居室에 준용한다.

제32조 夜間獨居室에 拘禁된 자가 취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계속 在室시켜야 한다.

제33조 (同一居室에의 拘禁이 禁止되는 者) 勞役場留置의 선고를 받은 자와 受刑者와는 동일한 居室 또는 工場에 混居시킬 수 없다.

제34조 病者 또는 不具者와 健康한 자와는 동일 居室에 拘禁할 수 없다. 다만 看護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混居室) 混居室에는 3인 이상을 收容하여야 한다. 그러나 療養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席次) 混居室, 工場, 敎室 및 敎會堂에 있어서는 在監者의 席次를 정하여야 한다.

제37조 (交談의 禁止)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在監者 사이의 交談을 禁止할 수 있다.

제38조 (代用의 禁止) 混居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工場으로 代用할 수 없다.

제39조 (名札, 番號의 揭示) 居室의 앞에는 名札을 揭示하고 在室者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面積, 定員 등의 表示) 混居室에는 그 面積, 定員 및 現在人員을 기재한 標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戒 护

제41조 (檢査) ① 監獄에서는 出入의 戒護를 엄격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出入者의 携帶品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開監前·廢監後에는 所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監獄官吏 이외의 자를 출 입시킬 수 없다.

제42조 (閉鎖) ① 監獄의 外門, 각 出入口, 居室, 工場 및 在監者를 拘禁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閉鎖하여야 한다. 만일 필요에 의하여 一時開放하는 때에는 그 要所를 守衛하여야 한다.

② 所長은 受刑者의 處遇上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戒護에 지장이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열쇠는 일정한 監獄官吏가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授受를 할 수 없다.

제43조 (廢門등) 監獄官吏는 소장의 命令이나 다른 監獄官吏의 參與없이 居室을 열거나 在監者를 出室시킬 수 없다. 다만 病監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障害物등의 取扱) ① 監獄의 構內에는 항상 視察의 便宜를 위하여 觀望을 방해하거나 기타 戒護의 障害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 사다리 기타 戒護의 障害가 되는 물건을 구내에 둘 때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5조 (檢査) 所長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적어도 매일 1회 居室을 검사하게 하여 야 한다.

제46조 所長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工場 또는 居室 밖에서 돌아오는 재감자의 身 體 및 衣類를 검사시켜야 한다.

제46조의 2 所長은 受刑者의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隔離) 재감자로서 戒護上 필요가 있는 자는 이를 獨居拘禁할 수 있다.

제48조 (戒具의 種類) ① 戒具는 다음의 4種으로 한다.

1. 鎭靜衣
2. 防聲具
3. 手匣
4. 捕繩

② 戒具의 制式은 法務大臣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49조 (戒具의 使用) ① 戒具는 소장의 命令이 없이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 但書의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그 사실을 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戒具의 使用條件) ① 鎭靜衣는 暴行 또는 自殺의 우려가 있는 在監者, 防聲具는 制止에 불응하고 大聲을 발하는 在監者, 手匣 및 捕繩은 暴行, · 逃走 또는 自殺의 우려가 있는 在監者 또는 護送중인 在監者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鎭靜衣는 12시간 이상, 防聲具는 6시간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3시간 마다 更新할 수 있다.

③ 호송중인 자에게는 鎭靜衣를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銃의 使用報告) 監獄官吏가 在監者에 대하여 銃을 사용한 때에는 所長은 즉시 그 사실을 法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消防用務 · 消防練習) 所長은 受刑후 3개월을 경과하고 逃走의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사전에 消防用務에 나가야 할 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消防演習을 시켜야 한다.

제53조 (避難을 위한 釋放) 監獄法 제22조에 의하여 在監者를 一時避難 시킬 때에는 出席해야 할 기간 및 장소를 고지해야 한다.

제54조 (護送할 경우의 診斷 등) ① 在監者를 他所로 護送해야 할 경우에는 監獄 의 醫師로 하여금 이를 診斷하게 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護送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護送을 停止한 때에는 그 사실을 關係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 (男女同行의 禁止) ① 護送 중에는 男女를 同行시키지 못한다. 刑事被告人으로서 被告事件과 관련되는 자도 역시 같다.

② 刑事被告人 및 20세 미만의 자는 護送時에 다른 재감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56조 (逃走의 通報) 在監者가 逃走한 때에는 所長은 신속히 監獄所在地와 그 附近 및 逃走者가 들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地方의 警察署에 逃走者의 人相書를 첨부하여 逃走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7조 (逃走 등의 報告 등) ① 前條의 경우 所長은 그 事實을 法務大臣에게 報告해야 한다. 逃走者를 逮捕한 때에도 같다.

② 逃走者가 刑事被告人 또는 監置者인 때에는 전항의 報告를 하는 외에, 逃走 및 逮捕의 사실을 담당 檢察官 또는 法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作 业

제58조 (作業時間) ① 在監者의 작업시간은 法務大臣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② 所長은 地方의 狀況, 監獄의 構造 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시간을 신축할 수 있다.

③ 請求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한 자의 작업시간은 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④ 敎育, 敎誨 및 運動에 요하는 시간은 이를 작업시간에 通算할 수 있다.

제59조 삭 제

제60조 (作業의 種類 등의 告知) 在監者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그 종류 및 1일의 科程을 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61조 (作業過程) ① 作業科程은 보통 1인의 作業成績과 제58조 제1항의 작업시간을 標準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작업성적을 표준으로 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58조 제1항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한다.

③ 20세 미만의 수형자, 老人, 病弱者 및 不具者는 전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취업자에 대한 적당한 作業科程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 (作業의 併科) 作業時間의 전부를 통하여 就業하게 할 수 없는 작업은 이를 다른 작업과 竝科할 수 있다.

제63조 (繼續作業) 1일의 작업과정을 종료한 자라 하더라도 作業時間 내에는 계속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 (作業中止 등의 禁止) 請求에 의하여 작업에 就業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그

作業을 中止 또는 廢止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 삭제

제66조 (作業을 禁止하는 者) 刑事被告人은 監外의 作業에 취업할 수 없다.

제67조 (成績의 檢査) 所長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매일 1회 각 취업자에 대해 作業成績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제68조 (作業量) ① 作業成績은 每月 末日에 당해 月分을 積算하고 1일의 平均量과 1일의 과정을 對照하여 작업과정의 완료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61조 제2항의 作業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그 就業時間을 積算하며, 전항의 예에 의하여 作業科程의 완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作業賞與金) 前條에 의하여 作業과정의 完了與否를 정한 때에는 作業賞與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0조(作業賞與金) 作業에 就業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行狀이 불량하고 作業成績이 劣等한 자 에게는 作業賞與金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作業賞與金) 作業賞與金은 行狀, 性向, 작업의 종류, 成績, 科程의 完了與否 등을 참작하여 法務大臣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72조 (作業賞與金의 增額) 監獄法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作業에 就業한 者에게는 前條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제73조 (作業賞與金의 控除) 在監者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茶具, 製品, 素品 기타 물건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賠償에 상당하는 금액을 作業賞與金 計算額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4조 (作業賞與金 計算額의 告知) 就業者에게는 매월 15일까지 前月分의 작업 상여금 계산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 (作業賞與金의 給與時期 등) ① 作業賞與金은 釋放時에 이를 급여한다.

② 작업상여금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재감자가 死亡한 때에는 본인의 配偶者, 子女, 父 또는 母에게 이를 급여할 수 있다.

③ 作業賞與金을 給與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 (在監중의 作業賞與金의 給與) ①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受刑者 그 配偶者, 子女, 父 또는 母의 扶助, 犯罪被害者에 대한 賠償 또는 書籍의 구입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재감 중이라 하더라도 作業賞與金 計算額의 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급여할 수 있다.

② 受刑者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作業賞與金을 급여할 수 있다.

제77조 (作業賞與金)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刑事被告人이 그 배우자, 자녀, 父 또는 母의 扶助 기타 정당한 費用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在監중이라 하더라도 이에 作業賞與金을 급여할 수 있다.

제78조 (作業賞與金 計算額의 抹消)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가지고 있는 재감자가 逃走 후 6개월 내에 그 居所가 분명하지 아닐할 때에는 그 계산액을 抹消해야 한다.

제79조 (手當金) 監獄法 제21조 및 제28조에 의한 手當金은 法務大臣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給與해야 한다.

제79조의2 (勞作) ① 懲役受刑者가 行狀 및 作業成績이 우량하고 또 그 處遇上害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餘暇時間 내에 자기를 위한 勞作을 許可할 수 있다. 禁錮受刑者가 行狀이 우량하고 또 그 處遇上 해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勞作時間은 1일에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 6 장 敎誨와 敎育

제80조 (敎誨) ① 敎誨는 休業日 또는 日曜日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은 休業日 또는 日曜日 이외의 날에도 敎誨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居所敎誨) 病監 또는 獨居室에 拘禁하는 受刑者 및 刑事被告人에게는 그의 居所에서 敎誨를 하여야 한다.

제82조 (弔喪敎誨) ① 受刑者가 父母의 訃音에 접하여 취업을 免除받은 때에는 敎誨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본인의 希望에 따라 그 亡父母를 위하여 讀經 기타의 行事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삭제

제84조 (棺前敎誨) 受刑者가 死亡한 때에는 본인과 緣故가 있는 수형자를 모아 棺前에서 敎誨를 하여야 한다.

제85조 (敎科) ① 監獄法 제30조에 의하여 敎育을 實施하는 受刑者에게는 매일 4시간 이내 그 敎育의 程度에 따라 상당하는 敎科를 주어야 한다.

② 전항의 수형자로서 初等敎育 또는 中學校의 課程을 修了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시간을 초과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를 줄 수 있다.

제86조 (文書·圖書의 閱讀) ① 文書, 圖畵의 閱讀은 拘禁의 目的에 반하지 아니 하고 또 감옥의 紀律에 害가 없는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 文書, 圖畵가 多數 기타 事由로 인하여 監獄의 取扱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種類 또는 個數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제 7 장 削 除

제89조 삭제

제90조 삭제

제90조의2 삭제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제94조 삭제

제95조 삭제

제95조의2 삭제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 8 장 卫生과 医疗

제102조 (衛生) 監獄에서는 清潔을 제일로 하고 衣類와 寢具 및 雜具는 期限을 정하여 蒸汽 기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03조 (調髮) ① 在監者에게는 항상 頭髮의 淸潔을 유지하게 하고 그 容貌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在監者의 調髮은 대략 20일에 1회, 面刀는 적어도 7일에 1회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婦女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당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삭제

제105조 (沐浴의 回數) 在監者의 沐浴 回數는 作業의 種類 및 기타 事情을 참작하여 所長이 이를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 이상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 (運動) ① 在監者에게는 雨天時 이외에는 매일 30분 이내로 屋外에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운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운동시간은 獨居拘禁者에 한하여 1시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제107조 (健康診斷) 獨居拘禁 在監者로서 20세미만인 자는 적어도 30일에 1회, 기타의 자는 적어도 3개월에 1회, 混居拘禁 受刑者로서 刑期가 1년 이상인 자는 적어도 6개월마다 한번 감옥의 醫師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8조 (治療居室) 20세 미만인 자는 기타의 자와 治療時間 및 病監에 있어서 居室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109조 (獨居拘禁者 治療) 獨居拘禁者가 疾病에 걸린 때에는 病監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居室에서 치료하게 하고, 病監으로 옮긴 때에는 되도록 病監내의 獨居室에 구금하여야 한다.

제110조 (隔離)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2000년 法律 제114호)에서 정하는 感染症의 醫療機關에의 入院을 요하는 類型의 感染症유행에 걸린 徵兆가 있는 자는 그 豫防을 엄격히 하고, 流行地를 출발 또는 그 지방을 통과한 入監者는 1주일 이상 다른 자와 隔離하며, 그 携帶物은 消毒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豫防接種)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2000년 法律 제114호)에서 정하는 感染症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감자에게 豫防接種 기타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삭제

제113조 (傳染病者의 隔離) ① 在監者자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에서 定하는 感染症指定醫療機關에의 入院을 要하는 類型의 感染症에 걸린 때에는 즉시 이를 隔離하여 엄격히 消毒을 행하고 그 상황을 法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는 監獄 所在地의 市, 町, 村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 (病院移送) 監獄法 제43조에 의하여 在監者를 病院에 移送한 때에는 所長 은 監獄醫師의 診斷書 및 이송한 병원과의 協議書를 첨부하여 法務大臣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5조 (病院 移送後의 視察) 在監者를 병원으로 移送한 때에는 所長은 監獄官 吏로 하여금 매일 그 상황을 視察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 (還送) 病院에 移送한 자가 在院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所長은 신속히 이를 還送시키고 法務大臣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治療의 補助) ① 治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은 감옥의 醫師가 아닌 醫師로 하여금 治療를 補助하게 할 수 있다.
② 分娩時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은 助産婦를 둘 수 있다.

제118조 (疾病危篤의 通知) 재감자의 疾病이 危篤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의 親 族에게 통지하고, 刑事被告人 또는 監置者인 경우에는 담당 검찰관 또는 재판관에 게도 통보해야 한다.

제119조 (病者에 準하는 者) 任婦는 受胎 후 5개월 이상인 자, 産婦는 分娩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를 病者에 準 할 수 있다.

제 9 장 接见과 书信

제120조 삭제

제121조 (接見時間) 接見의 時間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辯護人과의 접견은 例外로 한다.

제122조 (接見의 許可) 接見은 執務時間內가 아니면 이를 許可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接見의 回數) 接見의 회수는 拘留受刑者 및 在監者에 대해서는 10일에 1회, 禁錮受刑者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懲役受刑者에 대하여는 1개월에 1회로 한다. 다만 20세 미만인 受刑者 또는 이에 준하는 處遇를 하는 受刑者의 接見回數는 所長이 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標準으로 하여 적절히 이를 增加할 수 있다.

제124조 所長은 處遇上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4조의 制限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 (接見의 請求가 있는 경우) ① 在監者와의 接見을 申請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직업, 주소, 연령, 在監者와의 관계 및 面談의 要旨를 기록하고, 허가를 부여한 때에는 接見者에게 注意事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접견을 신청하는 자에게 辯護人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직업 및 주소만을 기록하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辯護人이 된 자에게는 다시 그 事實을 證明하게 하여 야 한다.

제126조 (接見의 方法) ① 接見은 接見室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受刑者의 敎化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接見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在監者가 疾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居所에서 接見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 (接見의 參與) ① 接見에는 監獄官吏가 立會하여야 한다. 다만 刑事被告 人과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

② 前項 但書의 경우에는 逃走, 不法한 物品의 授受 또는 罪質湮滅 기타의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戒護上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所長은 敎化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受刑者의 接見에 參與를 하게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8조 (外國語의 禁止) 外國語는 所長의 허가없이는 接見時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9조 (發信의 回數) ① 發信의 回數는 拘留受刑者 및 監置者에 대하여는 10일에 1통, 禁錮受刑者에 대하여는 15일에 1통, 懲役受刑者에 대하여는 1개월에 마다 1통으로 한다. 다만 20세 미만의 受刑者 또는 이에 準하는 처우를 받는 受刑者가 발송하는 書信의 수는 所長이 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標準으로 하여 적절히 이를 증가할 수 있다.
② 所長이 處遇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9조의2 (書信의 交付) ① 受刑者가 受領할 書信으로서 敎化上 지장이 없는 것은 그 때마다 이를 본인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 受刑者에게 交付하여야 할 書信의 수가 많아 監獄의 取扱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急速을 요하는 書信을 먼저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書信의 檢閱) ① 在監者가 受發하는 書信은 所長이 이를 檢閱하여야 한다.
② 發信은 封緘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所長에게 제출하게 하며, 受信은 所長이 이를 開披하고 檢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제131조 (書信의 飜譯) ① 外國語를 사용한 書信은 檢閱을 위하여 在監者의 費用으로 이를 번역하게 할 수 있다.
② 在監者가 전항의 費用을 부담할 自力이 없거나 또는 그 부담을 肯定하지 아니 할 때에는 書信의 受發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 (書信作成의 制限) 受刑者가 發送하는 書信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업일 또는 휴게시간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게 할 수 없다.

제133조 (書信의 代書) 在監者가 서신을 스스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要求에 의하여 監獄官吏가 이를 代書하여야 한다.

제134조 (郵便料金의 自辯 등) ① 在監者가 발송하는 書信의 郵便料金은 自辯으로 한다. 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返信을 요하는 경우 및 處遇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편요금을 自辯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옥에서 이를 지불해야 한다.

② 서신용지 및 봉투는 감옥에서 이를 급여할 수 있다.

제135조 (書信의 所持) 在監者에게 交付한 書信 및 기타 文書는 소장이 處遇上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本人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 (書信의 檢閱 등의 迅速處理) 書信의 檢閱, 發送 및 交付節次는 되도록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7조 (書信의 發送 등의 기재) 書信의 發送, 交付 및 廢棄의 연월일은 이를 본인의 身分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 (書信의 制限) 監獄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受發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書信은 保管해 두고, 廢棄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釋放時에 이를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9조 (參考事項의 記載) 接見의 參與 및 書信의 檢閱時에 處遇上 기타 參考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要旨를 본인의 身分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장 領 置

제140조 (領置物의 記載 등) 領置物은 그 品目 및 數量을 領置金品元帳에 기재하고 領置品元帳에는 所長이 이를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141조 (領置物의 賣却) ① 金錢이 아닌 領置物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賣却하고 그 代金을 領置할 수 있다.

② 領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領置를 해제한 물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상당한 處分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가 없는 때라 하더라도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領置한 金錢에 대하여 본인이 預金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 그 금액, 身上關係 기타의 事情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許可하고 그 證書를 領置 할 수 있다.

제142조 삭제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 삭제

제146조 삭제

제147조 삭제

제148조 (領置) 自辯 또는 差入을 허가한 물건은 본인에게 交付하지 아니하는 때라 하더라도 携帶物의 예에 따라 領置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149조 (領置의 節次를 거치지 않는 物件) 新聞, 雜誌, 飮食物 및 日常必需品에 대하여는 領置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0조 (沒取 또는 廢棄) 沒取 또는 廢棄의 處分을 한 때에는 沒取·廢棄簿에 品目, 數量, 처분이유 그리고 연월일을 기재하고 所長이 이에 대한 확인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前條에 의하여 領置를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1조 (遺留物) 死亡者의 遺留物의 交付를 받아야 할 자가 遠隔地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遺留物을 賣却하고 代金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그 費用은 請求者의 負擔으로 한다.

제 11 장 賞 罰

제152조 (賞表) ① 賞遇를 하여야 할 자에게는 賞表를 주어야 한다.
② 賞表는 합하여 세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3조 賞表는 길이 6센티미터, 폭 3센티미터의 白色織物을 사용하여 上衣의 왼쪽소매의

어깨 팔뚝와 사이의 表面에 부착한다.

제154조 (賞遇) 賞遇는 다음과 같다.

1. 제123조에 정한 接見의 回數 및 제129조에 정한 書信發送의 回數를 1회씩 增加함.
2. 內衣의 自辯을 허가함.
3. 作業의 變更을 허가함.
4. 제71조에 의한 作業賞與金 計算額을 賞表 1개마다 10분의 1씩 增加함.
5. 特別食糧 및 飮料를 給與함.

제155조 (賞遇의 廢止) 賞遇를 廢止당한 자에게는 賞表를 剝奪하고, 賞遇를 停止 당한 자에게는 그 기간동안 賞表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56조 (賞金) 在監者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천엔 이하의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1. 人命을 救護한 경우.
2. 在監者의 逃走를 방지한 경우.
3. 天災地變 또는 感染症의 豫防 및 感染症의 患者에 대한 醫療에 관한 法律(2000년 法律 제114호)에서 정하는 感染症의 流行時에 監獄의 用務에 功勞가 있는 경우.

제157조 (減食) 減食은 제9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급여할 식량의 1회 분량을 2분의 1내지 3분의 1로 減한다.

제158조 (懲罰事犯者의 拘禁) 懲罰事犯으로 調査중인 자는 이를 獨居拘禁하거나 夜間 獨居室에 拘禁하여야 한다.

제159조 (懲罰의 宣告) 懲罰의 宣告는 所長이 하여야 한다.

제160조 (懲罰의 執行) ① 懲罰은 宣告 후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屋外運動의 停止, 減食 또는 屛禁을 宣告받은 자에 대하여는 監獄의 醫師로 하여금 본인을 診斷하게 하고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한 때가 아니면 懲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61조 (健康診斷) 減食 또는 屛禁의 執行 중에 있는 者는 監獄의 醫師로 하여금 수시로

그 健康을 診斷하게 하여야 한다.

제162조 (懲罰執行의 停止) ① 減食 또는 屛禁者가 法院의 召喚에 의하여 出席하는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懲罰의 執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② 前項에 열거한 자를 移監하기 위하여 他所로 護送하는 경우에는 호송의 전날, 그 당일 그리고 호송 중에는 懲罰의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日數는 이를 懲罰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3조 (健康診斷) 屋外運動의 停止, 減食 또는 屛禁을 宣告받은 자는 懲罰의 집행을 종료한 후 즉시 監獄의 醫師로 하여금 그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64조 (懲罰執行의 開始) ① 懲罰의 宣告를 받은 자를 移監으로 引受한 監獄은 收監 후 3일 이내에 懲罰의 執行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수감 후 執行開始에 이르기까지의 日數는 이를 處罰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5조 (紀律違反의 懲罰) 在監者가 호송도중에 紀律違反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를 引受한 監獄에서 이를 懲罰할 수 있다.

제166조 (懲罰에 관한 事項의 記載) 在監者의 賞罰에 관한 사항은 身分帳簿 및 懲罰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장 釋 放

제167조 (釋放 후의 諭告) 刑期의 終了로 인하여 釋放되어야 할 受刑者는 석방전 3일 이내는 獨居拘禁하고 소장은 석방후의 銘心事項에 대해 諭告를 하여야 한다.

제168조 (釋放후에 관한 調査) 刑期의 終了로서 석방되어야 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 후의 保護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여야 한다.

제169조 (意見의 通報) 所長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釋放되어야 할 者의 性格과 行狀 및 保護에 관한 意見을 그의 보호에 관계 있는 公務所 또는 그의 보호를 인수해야 할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0조 (領置物 등의 交付準備) 釋放되어야 할 자의 領置物과 作業賞與金은 미리 교부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제171조 (衣類의 調達 등) 釋放시에 사용해야 할 衣類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리 본인의 領置金 또는 作業賞與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서 이를 調達하게 하고 만일 조달할 수 없는 때에는 監獄에서 이를 給與하여야 한다.

제172조 (同行 등) 受刑者를 釋放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長은 監獄官吏로 하여금 停車場 또는 乘船所까지 同行하게 하고 그에 대신하여 歸住地 또는 歸住地 근처에 이르기까지의 乘車券 또는 乘船票를 구입하여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3조 삭제

제174조 (假出獄의 宣告) 假出獄에 의하여 釋放되어야 할 경우에는 일정한 方式에 의하여 所長이 釋放의 宣告를 하고 본인에게 證票를 交付하여야 한다.

제175조 (假出獄의 取消事由에 해당될 경우의 通報) 假出獄에 의해 釋放된 자가 刑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所長은 그 사실을 法務大臣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 (假出所에 대한 準用) 제174조의 규정은 刑法 제30조에 의한 假出所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3장 死 亡

제177조 (死亡한 경우의 節次) ① 在監者가 死亡한 때에는 所長은 그 死體를 檢查하여야 한다.

② 病死한 경우에는 監獄의 醫師는 그 病名, 病歷, 死因 및 死亡의 연월일시를 死亡簿에 기재하고 이에 署名하여야 한다.

③ 自殺 기타 變死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檢察官 및 警察署에 통보하여 檢屍를 받고 檢屍者와 參與者의 官等姓名 및 檢屍의 결과를 死亡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8조 (同行 등) 死亡者의 病名, 死因 및 死亡의 연월일시는 신속히 이를 死亡者의 친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死亡者가 刑事被告人 또는 監置者인 때에는 다시 담당 檢察官 또는 法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 (死體의 處理) ① 受刑者의 死體는 死亡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解剖를 위하여 法務大臣이 지정한 병원, 학교 또는 공무소에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② 死亡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후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또는 본인이 生前에 解剖를 긍정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表示한 경우에는 前項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80조 (死亡帳의 記載) 死體를 청구자에게 交付하거나 解剖를 위하여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死亡帳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1조 (假埋葬) ① 死亡後 24시간을 경과하여도 死體의 交付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7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감옥의 墓地에 假埋葬하여야 한다.

② 火葬을 한 경우에는 그 遺骨에 대하여 역시 위와 같다.

③ 假埋葬의 장소에는 死亡者의 성명 및 사망년월일을 기록한 나무標識(木標)를 세워야 한다.

제182조 (合葬) ① 死體 또는 遺骨을 合葬한 때에는 合葬者의 성명 및 사망년월일을 合葬簿에 기재하고 합장의 장소에는 墓標를 세워야 한다.

② 墓標는 石材를 사용해야 한다.

附則(1908년 6월 16일 司法省令 제18호)

① 이 規則은 監獄法施行日(1908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監獄規則施行細則은 폐지한다. 다만 懲治人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계속 그 효 력을 가진다.

附則(1921년 9월 1일 司法省令 第19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22년 6월 2일 司法省令 第13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22년 10월 14일 司法省令 第24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24년 3월 8일 司法省令 第4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28년 4월 9일 司法省令 第4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30년 5월 3일 司法省令 第7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31년 4월 30일 司法省令 第9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46년 11월 9일 司法省令 第97号)

이 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49년 6월 23일 法务府令 第22号)

이 府令은 少年院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시행의 일(1949년 5월 30일)로부터 적용한다.

附則(1950년 4월 15일 法务府令 第32号)

이 府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50년 9월 1일 法务府令 第111号)

이 府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50년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附則(1952년 9월 24일 法务省令 第28号)

이 省令은 1952년 9월25이부터 시행한다.

附則(1955년2월 1일 法务省令 第24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다.

附則(1964년 11월 1일 법무성령 第47号)

이 省令은 1964년4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1966년 11월 1일 법무성령 第47号)

제1조 (施行期日) 이 省令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獨居拘禁 期間의 改正에 따를 經過措置) 이 省令에 의한 개정후의 제 27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施行時 현재 獨居拘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省令의 시행일 (이하 '시행일'이라 한다)에 이 省令에 의한 改正前의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구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구금의 시행일 이전 6개월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항 단서규정에 의한 期間의 更新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자로서 시행일에 갱신후의 拘禁(2회이상 갱신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갱신 후의 拘禁. 이하 같다)期間이 3개월을 초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갱신후의 구금이 시행일 이전 3개월부터 개시된 자로 看做한다.

附則(1970년 4월 17일 法务省令 第12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1972년 6월 30일 法务省令 第48号)

이 省令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1974년 6월 28일 法务省令 第52号) 抄

1. (施行期日) 이 省令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經過措置) 이 省令의 시행전에 이 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監獄法施行規則 제15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성령의 시행후에 賞金을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이 省令에 의한 개정전의 刑法累進處遇令 제46조 제1항(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許可는 이 省令에 의한 개정후의 監獄法 施行規則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허가로 看做한다.

附 則(1977년 4월 1일 法务省令 第24号)

이 省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1년 8월 7일 法务省令 第22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94년 8월 5일 法務省令 第37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95년 3월 30일 法務省令 第25号)

이 省令은 1995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96년 3월 1일 法務省令 第11号)

이 省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99년 3월 30일 法務省令 第24号)

이 省令은 1999년4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2000년9월 18일 法務省令 第35号)

이 省令은 內閣法의 一部를 개정한 法律(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1월6일)부터 시행한다.

附則(2001년 3월 22일 法務省令 第30号)

이 省令은 2001년4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則(2002년 2월 8일 法務省令 第6号)

이 省令은 2002년 3월1이부터 시행한다.

附則(2002년 8월 1일 法务省令 第48号) 抄录

(施行期日)

1. 이 規則은 20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2003년 3월 17일 法务省令 第12号)

이 省令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빈 면

✦ 외국 교정관계법령 원문 ✦

Ⅰ.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295

Ⅱ. Strafvollzugsgesetz(StvollzG) / 319

Ⅲ. Strafvollstreckungsordnung(StvollstrO) / 387

Ⅳ. Prisons (Scotland) Act 1989 (c. 45) / 403

Ⅴ. PART Ⅲ. PRISON AND PRISONERS / 431

Ⅵ.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509

Ⅶ.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583

Ⅷ. SINGAPORE PRISONS ACT / 595

Ⅸ. 日本 監獄法 / 639

Ⅹ. 日本 監獄法施行規則 / 653

빈 면

I.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dopted by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held at Geneva in 1955, and approv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y its resolution 663 C (XXIV) of 31 July 1957 and 2076 (LXII) of 13 May 1977

Preliminary Observations

1. The following rules are not intended to describe in detail a model system of penal institutions. They seek onl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consensus of contemporary thought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most adequate systems of today, to set out what is generally accepted as being good principle and practice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2. In view of the great variety of legal, social, economic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world, it is evident that not all of the rules are capable of application in all places and at all times. They should, however, serve to stimulate a constant endeavour to overcome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wa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knowledge that they represent, as a whole, the minimum conditions which are accepted as suitable by the United Nations.

3. On the other hand, the rules cover a field in which thought is constantly developing. They are not intended to preclude experiment and practices, provided these are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s and seek to further the purposes which derive from the text of the rules as a whole. It will always be justifiable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authorize departures from the rules in this spirit.

4. (1) Part I of the rules covers the general management of institutions, and is applicable to all categories of prisoners, criminal or civil, untried or convicted,

including prisoners subject to "security measures" or corrective measures ordered by the judge.

(2) Part II contains rules applicable only to the special categories dealt with in each section. Nevertheless, the rules under section A, applicable to prisoners under sentence, shall be equally applicable to categories of prisoners dealt with in sections B, C and D, provided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rules governing those categories and are for their benefit.

5. (1) The rules do not seek to regulate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young persons such as Borst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schools, but in general part I would be equally applicable in such institutions.

(2) The category of young prisoners should include at least all young persons who co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ourts. As a rule, such young persons should not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PART I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Basic principle

6. (1)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impartially.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religious beliefs and moral precepts of the group to which a prisoner belongs.

Register

7. (1) In every place where persons are imprisoned there shall be kept a bound registration book with numbered pages in which shall be entered in respect of each prisoner received:

(a) Information concerning his identity:

(b) The reasons for his commitment and the authority therefor;

(c) The day and hour of his admission and release.

(2) No person shall be received in an institution without a valid commitment order of which the details shall have been previously entered in the register. Separation of categories

8. The different categories of prisoners shall be kept in separate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taking account of their sex, age, criminal record, the legal reason for their detention and the necessities of their treatment. Thus,

(a) Men and women shall so far as possib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in an institution which receives both men and women the whole of the premises allocated to women shall be entirely separate;

(b)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convicted prisoners;

(c) Persons imprisoned for debt and other civil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persons imprisoned by reason of a criminal offence;

(d) Young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ults. Accommodation

9. (1) Where sleeping accommodation is in individual cells or rooms, each prisoner shall occupy by night a cell or room by himself. If for special reasons, such as temporary overcrowding, it becomes necessary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make an exception to this rule, it is not desirable to have two prisoners in a cell or room.

(2) Where dormitories are used, they shall be occupied by prisoners carefully selected as being suitable to associate with one another in those conditions. There shall be regular supervision by night, in keeping with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10. All accommodation provided for the use of prisoners and in particular all sleeping accommodation shall meet all requirements of health, due regard being paid to climatic conditions and particularly to cubic content of air, minimum floor space, lighting, heating and ventilation.

11. In all places where prisoners are required to live or work,

(a) The windows shall be large enough to enable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by natural light, and shall be so constructed that they can allow the entrance of fresh air whether or not there is artificial ventilation;

(b) Artificial light shall be provided sufficient for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without injury to eyesight.

12. The sanitary installations shall be adequate to enable every prisoner to comply with the needs of nature when necessary and in a clean and decent manner.

13. Adequate bathing and shower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be enabled and required to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to the climate, as frequently as necessary for general hygiene according to season and geographical region, but at least once a week in a temperate climate.

14. All pans of an institution regularly used by prisoner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scrupulously clean at all times.

Personal hygiene

15. Prisoners shall be required to keep their persons clean, and to this end they shall be provided with water and with such toilet articles as are necessary for health and cleanliness.

16. In order that prisoners may maintain a good appearance compatible with their self-respect,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for the proper care of the hair and beard, and men shall be enabled to shave regularly.

Clothing and bedding

17. (I) Every prisoner who is not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shall be provided with an outfit of clothing suitable for the climate and adequate to keep

him in good health. Such clothing shall in no manner be degrading or humiliating.

(2) All clothing shall be clean and kept in proper condition. Underclothing shall be changed and washed as often a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hygiene.

(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never a prisoner is removed outside the institution for an authorized purpose, he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or other inconspicuous clothing.

18. If prisoners are allowed to wear their own clothing, arrangements shall be made on their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to ensure that it shall be clean and fit for use.

19. Every prisoner shall, in accordance with local or national standards,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with separate and sufficient bedding which shall be clean when issued, kept in good order and changed often enough to ensure its cleanliness.

Food

20. (1)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by the administration at the usual hours with food of nutritional value adequate for health and strength, of wholesome quality and well prepared and served.

(2) Drinking wat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whenever he needs it.

Exercise and sport

21. (1) Every prisoner who is not employed in outdoor work shall have at least one hour of suitable exercise in the open air daily if the weather permits.

(2) Young prisoners, and others of suitable age and physique, shall receive physical and recreational training during the period of exercise. To this end space, installations and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Medical services

22. (1) At every institution there shall be available the services of at least

one qualified medical officer who should have some knowledge of psychiatry. The medical services should be organized in close relationship to the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or nation. They shall include a psychiatric service for the diagnosis and, in proper cases, the treatment of states of mental abnormality.

(2) Sick prisoners who require specialist treatment shall be transferr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or to civil hospitals. Where hospital facilities are provided in an institution, their equipment, furnishings and pharmaceutical supplies shall be proper for the medical care and treatment of sick prisoners, and there shall be a staff of suitable trained officers.

(3) The services of a qualified dental offic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23. (1) In women's institutions there shall be special accommodation for all necessary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treatment. Arrangements shall be made wherever practicable for children to be torn in a hospital outside the institution. If a child is born in prison, this fact shall not be mentioned in the birth certificate.

(2) Where nursing infants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institution with their mother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nursery staffed by qualified persons, where the infants shall be placed when they are not in the care of their mothers.

24. The medical officer shall see and examine every prisoner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and thereafter as necessary, with a view particularly to the discovery of physical or mental illness and the taking of all necessary measures; the segregation of prisoners suspected of infectious or contagious conditions; the noting of physical or mental defects which might hamper rehabilit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physical capacity of every prisoner for work.

25. (1) The medical officer shall have the car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s and should daily see all sick prisoners, all who complain of illness, and any prisoner to whom his attention is specially directed.

(2) The medical officer shall report to the director whenever he considers that a

prisoner's physical or mental health has been or will be injuriously affected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by any condition of imprisonment.

26. (I) The medical officer shall regularly inspect and advise the director upon:

(a) The quantity, quality, preparation and service of food;

(b)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institution and the prisoners;

(c) The sanitation, heating, lighting and ventilation of the institution;

(d) The suitability and cleanliness of the prisoners' clothing and bedding;

(e) The observance of the rules concern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cases where there is no technical personnel in charge of these activities.

(2) The directo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ports and advice that the medical officer submits according to rules 25 (2) and 26 and, in case he concurs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give effect to those recommendations; if they are not within his competence or if he does not concur with them, he shall immediately submit his own report and the advice of the medical officer to higher authority.

Discipline and punishment

27. Discipline and order shall be maintained with firmness, but with no more restriction than is necessary for safe custody and well-ordered community life.

28. (1) No prisoner shall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institution, in any disciplinary capacity.

(2) This rule shall not, however, impede the proper functioning of systems based on self-government, under which specified social, educational or sports activities or responsibilities are entrusted, under supervision, to prisoners who are formed into groups for the purposes of treatment.

29. The following shall always be determined by the law or by the regulation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a) Conduct constituting a disciplinary offence;

(b) The types and duration of punishment which may be inflicted;

(c) The authority competent to impose such punishment.

30. (1)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uch law or regulation, and never twice for the same offence.

(2)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unless he has been informed of the offence alleged against him and given a proper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defenc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duct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3) Where necessary and practicable the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make his defence through an interpreter.

31. Corporal punishment, punishment by placing in a dark cell, and all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s shall be completely prohibited as punishments for disciplinary offences.

32. (1) Punishment by close confinement or reduction of diet shall never be inflicted unless the medical officer has examined the prisoner and certified in writing that he is fit to sustain it.

(2) The same shall apply to any other punishment that may be prejudicial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a prisoner. In no case may such punishment be contrary to or depart from the principle stated in rule 31.

(3) The medical officer shall visit daily prisoners undergoing such punishments and shall advise the director if he considers the termination or alteration of the punishment necessary on grounds of physical or mental health.

Instruments of restraint

33. Instruments of restraint, such as handcuffs, chains, irons and strait-jacket, shall never be applied as a punishment. Furthermore, chains or irons shall not be used as restraints. Other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not be used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As a precaution against escape during a transfer, provided that they shall

be removed when the prisoner appear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b) On medical grounds by direction of the medical officer; (c) By order of the director, if other methods of control fail,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injuring himself or others or from damaging property; in such instances the director shall at once consult the medical officer and report to th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34. The patterns and manner of use of instruments of restraint shall be decided by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Such instruments must not be applied for any longer time than is strictly necessary.

Information to and complaints by prisoners

35. (1) Every prisoner on admission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information about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his category, the disciplinary requirements of the institution, the authorized methods of seeking information and making complaints, and all such other matters as are necessary to enable him to understand both his rights and his obligations and to adapt himself to the life of the institution.

(2) If a prisoner is illiterate, the aforesaid information shall be conveyed to him orally.

36. (1) Every prisoner shall have the opportunity each week day of making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or the officer authorized to represent him.

(2) It shall be possible to make requests or complaints to the inspector of prisons during his inspection. The prisoner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to the inspector or to any other inspecting officer without the director or other members of the staff being present.

(3)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make a request or complaint, without censorship as to substance but in proper form, to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he judicial authority or other proper authorities through approved

channels.

(4) Unless it is evidently frivolous or groundless, every request or complaint shall be promptly dealt with and replied to without undue delay.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37. Prisoners shall be allowed under necessary supervision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and reputable friends at regular intervals, both by correspondence and by receiving visits.

38. (1)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all be allowed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to which they belong. (2) Prisoners who are nationals of States without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 and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llowed simila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ich takes charge of their interests or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whose task it is to protect such persons.

39. Prisoners shall be kept informed regularly of the more important items of news by the reading of newspapers, periodicals or special institutional publications, by hearing wireless transmissions, by lectures or by any similar means as authorized or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Books

40. Every institution shall have a library for the use of all categories of prisoners, adequately stocked with both recreational and instructional books, an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make full use of it.

Religion

41. (1) If the institution contains a sufficient number of prisoners of the same religion,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that religion shall be appointed or approved. If the number of prisoners justifies it and conditions permit, the ar-

rangement should be on a full-time basis.

(2) A qualified representative appointed or approv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llowed to hold regular services and to pay pastoral visits in private to prisoners of his religion at proper times.

(3) Access to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any religion shall not be refused to any prisoner. On the other hand, if any prisoner should object to a visit of any religious representative, his attitude shall be fully respected.

42. So far as practicable,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satisfy the needs of his religious life by attending the services provided in the institution and having in his possession the books of religious observance and instruction of his denomination.

Retention of prisoners' property

43. (1) All money, valuables, clothing and other effects belonging to a prisoner which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he is not allowed to retain shall on his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be placed in safe custody. An inventory thereof shall be signed by the prisoner. Steps shall be taken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2) On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ll such articles and money shall be returned to him except in so far as he has been authorized to spend money or send any such property out of the institution, or it has been found necessary on hygienic grounds to destroy any article of clothing. The prisoner shall sign a receipt for the articles and money returned to him.

(3) Any money or effects received for a prisoner from outside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way.

(4) If a prisoner brings in any drugs or medicine, the medical officer shall decide what use shall be made of them.

Notification of death, illness, transfer, etc.

44. (1) Upon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or serious injury to a prisoner, or his removal to an institution for the treatment of mental affections, the director

shall at once inform the spouse, if the prisoner is married, or the nearest relative and shall in any event inform any other person previously designated by the prisoner.

(2) A prisoner shall be informed at once of the death or serious illness of any near relative. In case of the critical illness of a near relative, the prisoner should be authorized, whenever circumstances allow, to go to his bedside either under escort or alone.

(3) Every prisoner shall have the right to inform at once his family of his imprisonment or his transfer to another institution.

Removal of prisoners

45. (1) When the prisoners are being removed to or from an institution, they shall be exposed to public view as little as possible, and proper safeguards shall be adopted to protect them from insult, curiosity and publicity in any form.

(2) The transport of prisoners in conveyances with inadequate ventilation or light, or in any way which would subject them to unnecessary physical hardship, shall be prohibited.

(3) The transport of prisoners shall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administration and equal conditions shall obtain for all of them.

Institutional personnel

46. (1) The prison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for the careful selection of every grade of the personnel, since it is on their integrity, humanity, professional capacity and personal suitability for the work that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s depends.

(2) The prison administration shall constantly seek to awaken and maintain in the minds both of the personnel and of the public the conviction that this work is a social service of great importance, and to this end all appropriate means of informing the public should be used.

(3) To secure the foregoing ends, personnel shall be appointed on a full-time basis as professional prison officers and have civil service status with security of tenure subject only to good conduct, efficiency and physical fitness. Salaries shall

be adequate to attract and retain suitable men and women; employment benefits and conditions of service shall be favourable in view of the exacting nature of the work.

47. (1) The personnel shall possess an adequate standard of education and intelligence.

(2) Before entering on duty, the personnel shall be given a course of training in their general and specific duties and be required to pass theoretical and practical tests.

(3) After entering on duty and during their career, the personnel shall maintain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professional capacity by attending courses of in-service training to be organized at suitable intervals.

48. All members of the personnel shall at all times so conduct themselves and perform their duties as to influence the prisoners for good by their example and to command their respect.

49. (1) So far as possible, the personnel shall include a sufficient number of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social workers, teachers and trade instructors.

(2) The services of social workers, teachers and trade instructors shall be secured on a permanent basis, without thereby excluding part-time or voluntary workers.

50. (1) The director of an institution should be adequately qualified for his task by character, administrative ability, suitable training and experience.

(2) He shall devote his entire time to his official duties and shall not be appointed on a part-time basis.

(3) He shall resid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or in its immediate vicinity.

(4) When two or more institutions are under the authority of one director, he shall visit each of them at frequent intervals. A responsible resident official shall

be in charge of each of these institutions.

51. (1) The director, his deputy, and the majority of the other personnel of the institution shall be able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greatest number of prisoners, or a language understood by the greatest number of them.

(2) Whenever necessary, the services of an interpreter shall be used.

52. (1) In institutions which are large enough to require the services of one or more full-time medical officers, at least one of them shall reside on the premises of the institution or in its immediate vicinity.

(2) In other institutions the medical officer shall visit daily and shall reside near enough to be able to attend without delay in cases of urgency.

53. (1) In an institution for both men and women,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shall be under the authority of a responsible woman officer who shall have the custody of the keys of all that part of the institution.

(2) No male member of the staff shall enter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unless accompanied by a woman officer.

(3) Women prisoners shall be attended and supervised only by women officers. This does not, however, preclude male members of the staff, particularly doctors and teachers, from carrying out their professional duties in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women.

54. (1) Officers of the institutions shall not, in their relations with the prisoners, use force except in self-defence or in cases of attempted escape, or active or passive physical resistance to an order based on law or regulations. Officers who have recourse to force must use no more than is strictly necessary and must report the incident immediately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2) Prison officers shall be given special physical training to enable them to restrain aggressive prisoners.

(3)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staff performing duties which bring them into direct contact with prisoners should not be armed. Furthermore, staff should

in no circumstances be provided with arms unless they have been trained in their use.

Inspection

55. There shall be a regular inspection of penal institutions and services by qualified and experienced inspectors appoi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Their task shall be in particular to ensure that these institutions are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 a view to bringing about the objectives of penal and correctional services.

PART II

RULES APPLICABLE TO SPECIAL CATEGORIES

A. PRISONERS UNDER SENTENCE

Guiding principles

56. The guiding principles hereafter are intended to show the spirit in which penal institutions should be administered and the purposes at which they should aim,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made under Preliminary Observation I of the present text.

57. Imprisonment and other measures which result in cutting off an offender from the outside world are afflictive by the very fact of taking from the pers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Therefore the prison system shall not, except as incidental to justifiable segregation or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aggravate the suffering inherent in such a situation.

58.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deprivative of liberty is ultimately to protect society against crime. This end can only be achieved if the period of imprisonment is used to ensure, so far as

possible, that upon his return to society the offender is not only willing but able to lead a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fe.

59. To this end, the institution should utilize all the remedial, educational, moral, spiritual and other forces and forms of assistance which are appropriate and available, and should seek to apply them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reatment needs of the prisoners.

60. (1) The regime of the institution should seek to minimize any differences between prison life and life at liberty which tend to less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soners or the respect due to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2)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entence, it is desirable that the necessary steps be taken to ensure for the prisoner a gradual return to life in society. This aim may be achieved, depending on the case, by a pre-release regime organized in the same institution or in another appropriate institution, or by release on trial under some kind of supervision which must not be entrusted to the police but should be combined with effective social aid.

61. The treatment of prisoners should emphasize not their exclusion from the community, but their continuing part in it. Community agencies should, therefore, be enlisted wherever possible to assist the staff of the institution in the task of social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There should be in connection with every institution social workers charged with the duty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all desirable relations of a prisoner with his family and with valuable social agencies. Steps should be taken to safeguard, to the maximum extent compatible with the law and the sentence, the rights relating to civil interests, social security rights and other social benefits of prisoners.

62. The medical services of the institution shall seek to detect and shall treat any physical or mental illnesses or defects which may hamper a prisoner's rehabilitation. All necessary medical, surgical and psychiatric services shall be provided to that end.

63. (1) The fulfilment of these principles requires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nd for this purpose a flexible system of classifying prisoners in groups; it is therefore desirable that such groups should be distributed in separate institutions suitable for the treatment of each group.

(2) These institutions need not provide the same degree of security for every group. It is desirable to provide varying degrees of security according to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Open institutions, by the very fact that they provide no physical security against escape but rely on the self-discipline of the inmates, provide the conditions most favourable to rehabilitation for carefully selected prisoners.

(3) It is desirable that the number of prisoners in closed institutions should not be so large that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is hindered. In some countr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population of such institutions should not exceed five hundred. In open institutions the population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4) On the other hand, it is undesirable to maintain prisons which are so small that proper facilities cannot be provided.

64. The duty of society does not end with a prisoner's release. There should, therefore, be governmental or private agencies capable of lending the released prisoner efficient after-care directed towards the lessening of prejudice against him and towards his social rehabilitation.

Treatment

65. The treatment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shall have as its purpose, so far as the length of the sentence permits, to establish in them the will to lead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ves after their release and to fit them to do so. The treatment shall be such as will encourage their self-respect and develop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66. (1) To these ends, all appropriate means shall be used, including religious care in the countries where this is possible, education,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social casework, employment counselling, physic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moral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needs of each

prisoner, taking account of his social and criminal history, his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and aptitudes, his personal temperament, the length of his sentence and his prospects after release.

(2) For every prisoner with a sentence of suitable length, the director shall receive,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full reports on all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foregoing paragraph. Such reports shall always include a report by a medical officer, wherever possible qualified in psychiatry, on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risoner.

(3) The repor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shall be placed in an individual file. This file shall be kept up to date and classified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consulted by the responsible personnel whenever the need arises.

Clas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67. The purposes of classification shall be:

(a) To separate from others those prisoners who, by reason of their criminal records or bad characters, are likely to exercise a bad influence;

(b) To divide the prisoners into class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treatment with a view to their social rehabilitation.

68. So far as possible separate institutions or separate sections of an institution shall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the different classes of prisoners.

69.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and after a study of the personality of each prisoner with a sentence of suitable length, a programme of treatment shall be prepared for him in the light of the knowledge obtained about his individual needs, his capacities and dispositions.

Privileges

70. Systems of privileges appropriate for the different classes of prisoners and the different methods of treatment shall be established at every institution, in order to encourage good conduct,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ecure

the interest and co-operation of the prisoners in their treatment.

Work

71. (1) Prison labour must not be of an afflictive nature.

(2) All prisoners under sentence shall be required to work, subject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fitness as determined by the medical officer.

(3) Sufficient work of a useful nature shall be provided to keep prisoners actively employed for a normal working day.

(4) So far as possible the work provided shall be such as will maintain or increase the prisoners, ability to earn an honest living after release.

(5) Vocational training in useful trades shall be provided for prisoners able to profit thereby and especially for young prisoners.

(6) Within the limits compatible with proper vocational selection and with the requirements of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and discipline, the prisoners shall be able to choose the type of work they wish to perform.

72. (1) Th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in the institutions shall resemble as closely as possible those of similar work outside institutions, so as to prepare prisoners for the conditions of normal occupational life.

(2) The interests of the prisoners and of their vocational training, however, must not be subordinated to the purpose of making a financial profit from an industry in the institution.

73. (1) Preferably institutional industries and farms should be operated directly by the administration and not by private contractors.

(2) Where prisoners are employed in work not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they shall always b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nstitution's personnel. Unless the work is for othe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he full normal wages for such work shall be paid to the administration by the persons to whom the labour is supplied, account being taken of the output of the prisoners.

74. (1) The precautions laid down to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free

workmen shall be equally observed in institutions.

(2) Provision shall be made to indemnify prisoners against industrial injury, including occupational disease, on terms not less favourable than those extended by law to free workmen.

75. (1) The maximum daily and weekly working hours of the prisoners shall be fixed by law or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taking into account local rules or custom in regard to the employment of free workmen.

(2) The hours so fixed shall leave one rest day a week and sufficient time for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required as part of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76. (1) There shall b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work of prisoners.

(2) Under the system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spend at least a part of their earnings on approved articles for their own use and to send a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y.

(3) The system should also provide that a part of the earnings should be set aside by the administration so as to constitute a savings fund to be handed over to the prisoner on his release.

Education and recreation

77. (1)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further education of all prisoners capable of profiting thereby, including religious instruction in the countries where this is possible. The education of illiterates and young prisoners shall be compulsory and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it by the administration.

(2) So far as practicable, the education of prisoners shall be integrated with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country so that after their release they may continue their education without difficulty. 78.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shall be provided in all institutions for the benefit of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prisoners.

78.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shall be provided in all institutions for the benefit of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prisoners.

Social relations and after-care

79. Special attention shall be paid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such relations between a prisoner and his family as are desirable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80. From the beginning of a prisoner's sentenc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his future after release and he shall be encouraged and assisted to maintain or establish such relations with persons or agencies outside the institution as may promote the best interests of his family and his own social rehabilitation.

81. (1) Services and agencies, governmental or otherwise, which assist released prisoners to re-establish themselves in society shall ensure, so far as is possible and necessary, that released prisoners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documents and identification papers, have suitable homes and work to go to, are suitably and adequately clothed having regard to the climate and season, and have sufficient means to reach their destination and maintain themselves in the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ir release.

(2) The approved representatives of such agencies shall have all necessary access to the institution and to prisoners and shall be taken into consultation as to the future of a prisoner from the beginning of his sentence.

(3) It is desirable that the activities of such agencies shall be centralized or co-ordinated as far as possible in order to secure the best use of their efforts.

B. INSANE AND MENTALLY ABNORMAL PRISONERS

82. (1) Persons who are found to be insane shall not be detained in prisons and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remove them to mental institutions as soon as possible.

(2) Prisoners who suffer from other mental diseases or abnormalities shall be

observed and treated in specialized institutions under medical management.

(3) During their stay in a prison, such prisoners shall be placed under the special supervision of a medical officer.

(4) The medical or psychiatric service of the penal institutions shall provide for the psychiatric treatment of all other prisoners who are in need of such treatment.

83. It is desirable that steps should be taken, by arrangement with the appropriate agencies, to ensure if necessary the continuation of psychiatric treatment after release and the provision of social-psychiatric after-care.

C. PRISONERS UNDER ARREST OR AWAITING TRIAL

84. (1) Persons arrested or imprisoned by reason of a criminal charge against them, who are detained either in police custody or in prison custody (jail) but have not yet been tried and sentenced, will be referred to as "untried prisoners," hereinafter in these rules.

(2) Unconvicted prisoners are presumed to be innocent and shall be treated as such.

(3) Without prejudice to legal rul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y or prescribing the procedure to be observed in respect of untried prisoners, these prisoners shall benefit by a special regime which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rules in its essential requirements only.

85. (1)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convicted prisoners.

(2) Young untried prisoner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ults and shall in princip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86. Untried prisoners shall sleep singly in separate rooms, with the reservation of different local custom in respect of the climate.

87. Within the limits compatible with the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untried prisoners may, if they so desire, have their food procured at their own expense from the outside, either through the administration or through their family

or friends. Otherwise, the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their food.

88. (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if it is clean and suitable.

(2) If he wears prison dress, it shall be different from that supplied to convicted prisoners.

89. An untried prisoner shall always be offered opportunity to work, but shall not be required to work. If he chooses to work, he shall be paid for it.

90.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procure at his own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third party such books, newspapers, writing materials and other means of occupation as are compatible with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9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be visited and treated by his own doctor or dentist if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his application and he is able to pay any expenses incurred.

92.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inform immediately his family of his detention and shall be given all reasonable facilities for communicating with his family and friends, and for receiving visits from them, subject only to restrictions and supervision as are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of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93. For the purposes of his defence,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apply for free legal aid where such aid is available, and to receive visits from his legal adviser with a view to his defence and to prepare and hand to him confidential instructions. For these purposes, he shall if he so desires be supplied with writing material. Interviews between the prisoner and his legal adviser may be within sight but not within the hearing of a police or institution official.

D. CIVIL PRISONERS

94. In countries where the law perm its imprisonment for debt, or by order of a court under any other non-criminal process, persons so imprisoned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greater restriction or severity than is necessary to ensure safe custody and good order. Their treatment shall be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of untried prisoners, with the reservation, however, that they may possibly be required to work.

E.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CHARGE

95.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ersons arrested or imprisoned without charg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that accorded under part I and part II, section C. Relevant provisions of part II, section A, shall likewise be applicable where their application may be conducive to the benefit of this special group of persons in custody, provided that no measures shall be taken implying that re-education or rehabilitation is in any way appropriate to persons not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I. Strafvollzugsgesetz(StvollzG)

Erster Abschnitt:

Anwendungsbereich

§ 1 Dieses Gesetz regelt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in Justizvollzugsanstalten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weiter Abschnitt: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rster Titel - Grundsätze

§ 2 (**Aufgaben des Vollzuges**)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oll der Gefangene fähig werden, künfti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 Leben ohne Straftaten zu führen (Vollzugsziel). Der Vollzug der Freiheitsstrafe dient auch dem Schutz der Allgemeinheit vor weiteren Straftaten.

§ 3 (**Gestaltung des Vollzuges**) (1) Das Leben im Vollzug soll den allgemeinen Lebensverhältnissen soweit als möglich angeglichen werden.
(2) Schädlichen Folgen des Freiheitsentzuges ist entgegenzuwirken.
(3) Der Vollzug ist darauf auszurichten, daß er dem Gefangenen hilft, sich in das Leben in Freiheit einzugliedern.

§ 4 (**Stellung des Gefangenen**) (1) Der Gefangene wirkt an der Gestaltung seiner Behandlung und an der Erreichung des Vollzugszieles mit. Seine Bereitschaft hierzu ist zu wecken und zu fördern.
(2) Der Gefangene unterliegt den in diesem Gesetz vorgesehenen Beschränkungen seiner Freiheit. Soweit das Gesetz eine besondere Regelung nicht enthält, dürfen

ihm nur Beschränkungen auferlegt werd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zur Abwendung einer schwerwiegenden Störung 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sind.

Zweiter Titel - Planung des Vollzuges

§ 5 **(Aufnahmeverfahren)** (1) Beim Aufnahmeverfahren dürfen andere Gefangene nicht zugegen sein.

(2) Der Gefangene wird über seine Rechte und Pflichten unterrichtet.

(3) Nach der Aufnahme wird der Gefangene alsbald ärztlich untersucht und dem Leiter der Anstalt oder der Aufnahmeabteilung vorgestellt.

§ 6 **(Behandlungsuntersuchung. Beteiligung des Gefangenen)** (1) Nach dem Aufnahmeverfahren wird damit begonnen, die Persönlichkeit und die Lebensverhältnisse des Gefangenen zu erforschen. Hiervon kann abgesehen werden, wenn dies mit Rücksicht auf die Vollzugsdauer nicht geboten erscheint.

(2) Die Untersuchung erstreckt sich auf die Umstände, deren Kenntnis für eine planvolle Behandlung des Gefangenen im Vollzuge und für die Eingliederung nach seiner Entlassung notwendig ist. Bei Gefangenen, die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verurteilt worden sind, ist besonders gründlich zu prüfen, ob die Verlegung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ngezeigt ist.

(3) Die Planung der Behandlung wird mit dem Gefangenen erörtert.

§ 7 **(Vollzugsplan)** (1) Auf Grund der Behandlungsuntersuchung (§ 6) wird ein Vollzugsplan erstellt.

(2) Der Vollzugsplan enthält Angaben mindestens über folgende Behandlungsmaßnahmen:

1. die Unterbringung im geschlossenen oder offenen Vollzug,
2. di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3. die Zuweisung zu Wohngruppen und Behandlungsgruppen,
4. den Arbeitseinsatz sowie Maßnahmen der beruflichen Ausbildung oder Weiterbildung,

5. die Teilnahme a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6. besondere Hilfs- und Behandlungsmaßnahmen,
7. Lockerungen des Vollzuges und
8. notwendige Maßnahmen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3) Der Vollzugsplan ist mit der Entwicklung des Gefangenen und weiteren Ergebnissen der Persönlichkeitserforschung in Einklang zu halten. Hierfür sind im Vollzugsplan angemessene Fristen vorzusehen.

(4) Bei Gefangenen, die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zu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urteilt worden sind, ist über ein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jeweils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neu zu entscheiden.

§ 8 **(Verlegung, Überstellung)** (1) Der Gefangene kann abweichend vom Vollstreckungsplan in eine andere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zuständige Anstalt verlegt werden,

1. wenn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oder seine Eingliederung nach der Entlassung hierdurch gefördert wird oder
2. wenn dies aus Gründen der Vollzugsorganisation oder aus anderen wichtigen Gründen erforderlich ist.

(2) Der Gefangene darf aus wichtigem Grund in eine andere Vollzugsanstalt überstellt werden.

§ 9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1) Ein Gefangener ist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zu verlegen, wenn e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zu zeitiger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urteilt worden ist und die Behandlung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nach § 6 Abs.2 Satz 2 oder § 7 Abs.4 angezeigt ist. Der Gefangene ist zurückzuverlegen, wenn der Zweck der Behandlung aus Gründen, die in der Person des Gefangenen liegen, nicht erreicht werden kann.

(2) Andere Gefangene können mit ihrer Zustimm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verlegt werden, wenn die besonderen therapeutischen Mittel und sozialen Hilfen der Anstalt zu ihrer Resozialisierung angezeigt sind. In diesen Fällen be-

darf die Verlegung der Zustimmung des Leiters d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3) Die §§ 8 und 85 bleiben unberührt.

§ 10 **(Offener und geschlossener Vollzug)** (1) Ein Gefangener soll mit seiner Zustimmung in einer Anstalt oder Abteilung des offenen Vollzuges untergebracht werden, wenn er den besonderen Anforderungen des offenen Vollzuges genügt und namentlich nicht zu befürchten ist, daß er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Möglichkeiten des offenen Vollzuges zu Straftaten mißbrauchen werde.

(2) Im übrigen sind die Gefangenen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zubringen. Ein Gefangener kann auch dann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gebracht oder dorthin zurückverlegt werden, wenn dies zu seiner Behandlung notwendig ist.

§ 11 **(Lockerungen des Vollzuges)** (1) Als Lockerung des Vollzuges kann namentlich angeordnet werden, daß der Gefangene

1. außerhalb der Anstalt regelmäßig einer Beschäftigung unter Aufsicht (Außenbeschäftigung) oder ohne Aufsicht eines Voll zugsbediensteten (Freigang) nachgehen darf oder
2. für eine bestimmte Tageszeit die Anstalt unter Aufsicht (Ausführung) oder ohne Aufsicht eines Vollzugsbediensteten (Ausgang) verlassen darf.

(2) Diese Lockerungen dürfen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angeordnet werden, wenn nicht zu befürchten ist, daß der Gefangene sich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ntziehen oder die Lockerungen des Vollzuges zu Straftaten mißbrauchen werde.

§ 12 **(Ausführung aus besonderen Gründen)** Ein Gefangener darf auch ohne seine Zustimmung ausgeführt werden, wenn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notwendig ist.

§ 13 **(Urlaub aus der Haft)** (1) Ein Gefangener kann bis zu einundzwanzig Kalendertagen in einem Jahr aus der Haft beurlaubt werden. § 11 Abs.2 gilt

entsprechend.

(2) Der Urlaub soll in der Regel erst gewährt werden, wenn der Gefangene sich mindestens sechs Monate im Strafvollzug befunden hat.

(3) Ein zu lebenslanger Freiheitsstrafe verurteilter Gefangener kann beurlaubt werden, wenn er sich einschließlich einer vorhergehenden Untersuchungshaft oder einer anderen Freiheitsentziehung zehn Jahre im Vollzug befunden hat oder wenn er in den offenen Vollzug überwiesen ist.

(4) Gefangenen, die sich für den offenen Vollzug eignen, aus besonderen Gründen aber in einer geschlossenen Anstalt untergebracht sind, kann nach den für den offenen Vollzug geltenden Vorschriften Urlaub erteilt werden.

(5) Durch den Urlaub wird die Strafvollstreckung nicht unterbrochen.

§ 14 **(Weisungen, Aufhebung von Lockerungen und Urlaub)** (1) Der Anstaltsleiter kann dem Gefangenen für Lockerungen und Urlaub Weisungen erteilen.

(2) Er kann Lockerungen und Urlaub widerrufen, wenn

1. er auf Grund nachträglich eingetretener Umstände berechtigt wäre, die Maßnahmen zu versagen,
2. der Gefangene die Maßnahmen mißbraucht oder
3. der Gefangene Weisungen nicht nachkommt.

Er kann Lockerungen und Urlaub mit Wirkung für die Zukunft zurücknehm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ihre Bewilligung nicht vorgelegen haben.

§ 15 **(Entlassungsvorbereitung)** (1)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soll der Vollzug gelockert werden (§ 11).

(2) Der Gefangene kann in eine offene Anstalt oder Abteilung (§ 10) verlegt werden, wenn dies de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dient.

(3) Innerhalb von drei Monaten vor der Entlassung kann zu deren Vorbereitung Sonderurlaub bis zu einer Woche gewährt werden. § 11 Abs.2, § 13 Abs.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4) Freigängern (§ 11 Abs.1 Nr.1) kann innerhalb von neun Monaten vor der Entlassung Sonderurlaub bis zu sechs Tagen im Monat gewährt werden. § 11

Abs.2, § 13 Abs.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Absatz 3 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 16 (**Entlassungszeitpunkt**) (1) Der Gefangene soll am letzten Tag seiner Strafzeit möglichst frühzeitig, jedenfalls noch am Vormittag entlassen werden.
(2) Fällt das Strafende auf einen Sonnabend oder Sonntag, einen gesetzlichen Feiertag, den ersten Werktag nach Ostern oder Pfingsten oder in die Zeit vom 22. Dezember bis zum 2. Januar, so kann der Gefangene an dem diesem Tag oder Zeitraum vorhergehenden Werktag entlassen werden, wenn dies nach der Länge der Strafzeit vertretbar ist und fürsorgerische Gründe nicht entgegenstehen.
(3) Der Entlassungszeitpunkt kann bis zu zwei Tagen vorverlegt werden, wenn dringende Gründe dafür vorliegen, daß der Gefangene zu seiner Eingliederung hierauf angewiesen ist.

Dritter Titel - Unterbringung und Ernährung des Gefangenen

§ 17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und Freizeit**) (1) Die Gefangenen arbeiten gemeinsam. Dasselbe gilt für Berufsausbildung, berufliche Weiterbildung sowie arbeitstherapeutische und sonstige Beschäfti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2) Während der Freizeit können die Gefangenen sich in der Gemeinschaft mit den anderen aufhalten. Für die Teilnahme an gemeinschaftlichen Veranstaltungen kann der Anstaltsleiter mit Rücksicht auf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besondere Regelungen treffen.
(3)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und Freizeit kann eingeschränkt werden,

1. wenn ein schädlicher Einfluß auf andere Gefangene zu befürchten ist,
2. wenn der Gefangene nach § 6 untersucht wird, aber nicht länger als zwei Monate,
3. wenn es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t oder
4. wenn der Gefangene zustimmt.

§ 18 **(Unterbringung während der Ruhezeit)** (1) Gefangene werden während der Ruhezeit allein in ihren Hafträumen untergebracht.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ist zulässig, sofern ein Gefangener hilfsbedürftig ist oder eine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eines Gefangenen besteht.

(2) Im offenen Vollzug dürfen Gefangene mit ihrer Zustimmung während der Ruhezeit gemeinsam untergebracht werden, wenn eine schädliche Beeinflussung nicht zu befürchten ist. Im geschlossenen Vollzug ist ein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zur Ruhezeit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r vorübergehend und aus zwingenden Gründen zulässig.

§ 19 **(Ausstattung des Haftraumes durch den Gefangenen und sein persönlicher Besitz)** (1) Der Gefangene darf seinen Haftraum in angemessenem Umfang mit eigenen Sachen ausstatten. Lichtbilder nahestehender Personen und Erinnerungsstücke von persönlichem Wert werden ihm belassen.

(2) Vorkehrungen und Gegenstände, die die Übersichtlichkeit des Haftraumes behindern oder in anderer Weis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können ausgeschlossen werden.

§ 20 **(Kleidung)** (1) Der Gefangene trägt Anstaltskleidung. Für die Freizeit erhält er eine besondere Oberbekleidung.

(2) Der Anstaltsleiter gestattet dem Gefangenen, bei einer Ausführung eigene Kleider zu trag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r nicht entweichen wird. Er kann dies auch sonst gestatten, sofern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21 **(Anstaltsverpflegung)** Zusammensetzung und Nährwert der Anstaltsverpflegung werden ärztlich überwacht. Auf ärztliche Anordnung wird besondere Verpflegung gewährt. Dem Gefangenen ist zu ermöglichen, Speisevorschriften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zu befolgen.

§ 22 **(Einkauf)** (1) Der Gefangene kann sich von seinem Hausgeld (§ 47) oder von seinem Taschengeld (§ 46) aus einem von der Anstalt vermittelten Angebot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kaufen. Die Anstalt soll für ein Angebot sorgen, das auf Wünsche und Bedürfnisse der Gefangenen Rücksicht nimmt.

(2) Gegenstände, die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können vom Einkauf ausgeschlossen werden. Auf ärztliche Anordnung kann dem Gefangenen der Einkauf einzelner Nahrungs- und Genußmittel ganz oder teilweise untersagt werden,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ie seine Gesundheit ernsthaft gefährden. In Krankenhäusern und Krankenabteilungen kann der Einkauf einzelner Nahrungs- und Genußmittel auf ärztliche Anordnung allgemein untersagt oder eingeschränkt werden.

(3) Verfügt der Gefangene ohne eigenes Verschulden nicht über Haus- oder Taschengeld, wird ihm gestattet, in angemessenem Umfang vom Eigengeld einzukaufen.

Vierter Titel - Besuche, Schriftwechsel sowie Urlaub, Ausgang und Ausführung aus besonderem Anlaß

§ 23 (**Grundsatz**) Der Gefangene hat das Recht,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m Rahmen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verkehren. Der Verkehr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st zu fördern.

§ 24 (**Recht auf Besuch**) (1) Der Gefangene darf regelmäßig Besuch empfangen. Die Gesamtdauer beträgt mindestens eine Stunde im Monat. Das Weitere regelt die Hausordnung.

(2) Besuche sollen darüber hinaus zugelassen werden, wenn sie die Behandlung o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fördern oder persönlichen, rechtlichen oder geschäftlichen Angelegenheiten dienen, die nicht vom Gefangenen schriftlich erledigt, durch Dritte wahrgenommen oder bis zur Entlassung des Gefangenen aufgeschoben werden können.

(3) Aus Gründen der Sicherheit kann ein Besuch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sich der Besucher durchsuchen läßt.

§ 25 (**Besuchsverbot**) Der Anstaltsleiter kann Besuche untersagen,

1.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bei Besuchern, die nicht Angehörige des Gefangen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sind,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ie einen schä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n.

§ 26 (**Besuche von Verteidigern, Rechtsanwälten und Notaren**) Besuche von Verteidigern sowie von Rechtsanwälten oder Notar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sind zu gestatten. § 24 Abs.3 gilt entsprechend. Eine inhaltliche Überprüfung der vom Verteidiger mitgeführt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ist nicht zulässig. § 29 Abs.1 Satz 2 und 3 bleibt unberührt.

§ 27 (**Überwachung der Besuche**) (1) Die Besuche dürfen aus Gründen der Behandlung oder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wacht werden, es sei denn, es liegen im Einzelfall Erkenntnisse dafür vor, daß es der Überwachung nicht bedarf. Die Unterhaltung darf nur überwacht werden, soweit dies im Einzelfall aus diesen Gründen erforderlich ist.

(2) Ein Besuch darf abgebrochen werden, wenn Besucher oder Gefangene ge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oder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getroffenen Anordnungen trotz Abmahnung verstoßen. Die Abmahnung unterbleibt, wenn es unerläßlich ist, den Besuch sofort abzubrechen.

(3) Besuche von Verteidigern werden nicht überwacht.

(4) Gegenstände dürfen beim Besuch nur mit Erlaubnis übergeben werden. Dies gilt nicht für die bei dem Besuch des Verteidigers übergeben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sowie für die bei dem Besuch eines Rechtsanwalts oder Notars zur Erledigung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übergebenen Schriftstücke und sonstigen Unterlagen; bei dem Besuch eines Rechtsanwalts oder Notars kann die Übergabe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von der Erlaubnis abhängig gemacht werden. § 29 Abs.1 Satz 2 und 3 bleibt unberührt.

§ 28 **(Recht auf Schriftwechsel)** (1) Der Gefangene hat das Recht, unbeschränkt Schreiben abzusenden und zu empfangen.

(2) Der Anstaltsleiter kann den Schriftwechsel mit bestimmten Personen untersagen,

1.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bei Personen, die nicht Angehörige des Gefangen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sind,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der Schriftwechsel einen schä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 29 **(Überwachung des Schriftwechsels)** (1) Der Schriftwechsel des Gefangenen mit seinem Verteidiger wird nicht überwacht. Liegt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ine Straftat nach § 129a des Strafgesetzbuches zugrunde, gelten § 148 Abs.2, § 148a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dies gilt nicht, wenn der Gefangene sich in einer Einrichtung des offenen Vollzuges befindet oder wenn ihm Lockerungen des Vollzuges gemäß § 11 Abs.1 Nr.1 oder 2 zweiter Halbsatz oder Urlaub gemäß § 13 oder § 15 Abs.3 gewährt worden sind und ein Grund, der den Anstaltsleiter nach § 14 Abs.2 zum Widerruf oder zur Zurücknahme von Lockerungen und Urlaub ermächtigt, nicht vorliegt. Satz 2 gilt auch, wenn gegen einen Strafgefangenen im Anschluß an die de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zugrundeliegende Verurteilung eine Freiheitsstrafe wegen einer Straftat nach § 129a des Strafgesetzbuches zu vollstrecken ist.

(2) Nicht überwacht werden ferner Schreiben des Gefangenen an Volksvertretung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owie an deren Mitglieder, soweit die Schreiben an die Anschriften dieser Volksvertretungen gerichtet sind und den Absender zutreffend angeben. Entsprechendes gilt für Schreibe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und dessen Mitglieder,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die Europäische Kommission für Menschenrechte, den Europäischen Ausschuß zur Verhütung von Folter und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Behandlung oder Strafe und die Datenschutzbeauftragt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chreiben der in den Sätzen 1 und 2 genannten Stellen, die an den Gefangenen gerichtet sind, werden nicht überwacht, sofern die Identität des Absenders zweifelsfrei feststeht.

(3) Der übrige Schriftwechsel darf überwacht werden, soweit es aus Gründen der Behandlung oder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 30 **(Weiterleitung von Schreiben, Aufbewahrung)** (1) Der Gefangene hat Absendung und Empfang seiner Schreiben durch die Anstalt vermitteln zu lassen, soweit nichts anderes gestattet ist.

(2) Eingehende und ausgehende Schreiben sind unverzüglich weiterzuleiten.

(3) Der Gefangene hat eingehende Schreiben unverschlossen zu verwahren, sofern nichts anderes gestattet wird; er kann sie verschlossen zu seiner Habe geben.

§ 31 **(Anhalten von Schreiben)** (1) Der Anstaltsleiter kann Schreiben anhalten,

1. wenn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ürde,
2. wenn die Weitergabe in Kenntnis ihres Inhalts einen Straf oder Bußgeldtatbestand verwirklichen würde,
3. wenn sie grob unrichtige oder erheblich entstellende Darstellungen von Anstaltsverhältnissen enthalten,
4. wenn sie grobe Beleidigungen enthalten,
5. wenn sie die Eingliederung eines anderen Gefangenen gefährden können oder
6. wenn sie in Geheimschrift, unlesbar, unverständlich oder ohne zwingenden Grund in einer fremden Sprache abgefaßt sind.

(2) Ausgehenden Schreiben, die unrichtige Darstellungen enthalten, kann ein Begleitschreiben beigefügt werden, wenn der Gefangene auf der Absendung besteht.

(3) Ist ein Schreiben angehalten worden, wird das dem Gefangenen mitgeteilt. Angehaltene Schreiben werden an den Absender zurückgegeben oder, sofern dies unmöglich oder aus besonderen Gründen untunlich ist, behördlich verwahrt.

(4) Schreiben, deren Überwachung nach § 29 Abs. 1 und 2 ausgeschlossen ist, dürfen nicht angehalten werden.

§ 32 (**Ferngespräche und Telegramme**)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Ferngespräche zu führen oder Telegramme aufzugeben. Im übrigen gelten für Ferngespräche die Vorschriften über den Besuch und für Telegramme die Vorschriften über den Schriftwechsel entsprechend. Ist die Überwachung der fernmündlichen Unterhaltung erforderlich, ist die beabsichtigte Überwachung dem Gesprächspartner des Gefangenen mitzuteilen. Der Gefangene ist rechtzeitig vor Beginn der fernmündlichen Unterhaltung über die beabsichtigte Überwachung und die Mitteilungspflicht nach Satz 3 zu unterrichten.

§ 33 (**Pakete**) (1) Der Gefangene darf dreimal jährlich in angemessenen Abständen ein Paket mit Nahrungs- und Genußmitteln empfangen. Die Vollzugsbehörde kann Zeitpunkt und Höchstmengen für die Sendung und für einzelne Gegenstände festsetzen. Der Empfang weiterer Pakete oder solcher mit anderem Inhalt bedarf ihrer Erlaubnis. Für den Ausschluß von Gegenständen gilt § 22 Abs.2 entsprechend.

(2) Pakete sind in Gegenwart des Gefangenen zu öffnen. Ausgeschlossene Gegenstände können zu seiner Habe genommen oder dem Absender zurückgesandt werden. Nicht ausgehändigte Gegenstände, durch die bei der Versendung oder Aufbewahrung Personen verletzt oder Sachschäden verursacht werden können, dürfen vernichtet werden.. Die hiernach getroffenen Maßnahmen werden dem Gefangenen eröffnet.

(3) Der Empfang von Paketen kann vorübergehend versagt werden, wenn dies wegen Gefährd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ist.

(4)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Pakete zu versenden. Die Vollzugsbehörde kann ihren Inhalt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überprüfen.

§ 34 (aufgehoben)

§ 35 (**Urlaub, Ausgang und Ausführung aus wichtigem Anlaß**) (1) Aus wichtigem Anlaß kann der Anstaltsleiter dem Gefangenen Ausgang gewähren oder ihn bis zu sieben Tagen beurlauben; der Urlaub aus anderem wichtigen Anlaß als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wegen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darf sieben Tage im Jahr nicht übersteigen. § 11 Abs.2, § 13 Abs.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2) Der Urlaub nach Absatz 1 wird nicht auf den regelmäßigen Urlaub angerechnet.

(3) Kann Ausgang oder Urlaub aus den in § 11 Abs.2 genannten Gründen nicht gewährt werden, kann der Anstaltsleiter den Gefangenen ausführen lassen. Die Aufwendungen hierfür hat der Gefangene zu tragen. Der Anspruch ist nicht geltend zu machen, wenn dies die Behandlung oder di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 36 **(Gerichtliche Termine)** (1) Der Anstaltsleiter kann einem Gefangenen zur Teilnahme an einem gerichtlichen Termin Ausgang oder Urlaub erteilen, wenn anzunehmen ist, daß er der Ladung folgt und keine Entweichungs oder Mißbrauchsgefahr (§ 11 Abs.2) besteht. § 13 Abs.5 und § 14 gelten entsprechend.

(2) Wenn ein Gefangener zu einem gerichtlichen Termin geladen ist und Ausgang oder Urlaub nicht gewährt wird, läßt der Anstaltsleiter ihn mit seiner Zustimmung zu dem Termin ausführen, sofern wegen Entweichungs- oder Mißbrauchsgefahr (§ 11 Abs.2) keine überwiegenden Gründe entgegenstehen. Auf Ersuchen eines Gerichts läßt er den Gefangenen vorführen, sofern ein Vorführungsbefehl vorliegt.

(3) Die Vollzugsbehörde unterrichtet das Gericht über das Veranlaßte.

Fünfter Titel -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 37 **(Zuweisung)** (1) Arbeit,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dienen insbesondere dem Ziel,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2) Die Vollzugsbehörde soll dem Gefangenen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zuweisen und dabei seine Fähigkeiten, Fertigkeiten und Neigungen berücksichtigen.

(3) Geeigneten Gefangenen soll Gelegenheit zur Berufsausbildung, beruflichen Weiterbildung oder Teilnahme an anderen ausbildenden oder weiterbildenden Maßnahmen gegeben werden.

(4) Kann einem arbeitsfähigen Gefangenen keine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oder die Teilnahme an Maßnahmen nach Absatz 3 zugewiesen werden, wird ihm eine angemessene Beschäftigung zugeteilt.
(5) Ist ein Gefangener zu wirtschaftlich ergiebiger Arbeit nicht fähig, soll er arbeitstherapeutisch beschäftigt werden.

§ 38 (**Unterricht**) (1) Für geeignete Gefangene, die den Abschluß der Hauptschule nicht erreicht haben, soll Unterricht in den zum Hauptschulabschluß führenden Fächern oder ein der Sonderschule entsprechender Unterricht vorgesehen werden. Bei der beruflichen Ausbildung ist berufsbildender Unterricht vorzusehen; dies gilt auch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soweit die Art der Maßnahme es erfordert.
(2) Unterricht soll während der Arbeitszeit stattfinden.

§ 39 (**Frei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Selbstbeschäftigung**) (1) Dem Gefangenen soll gestattet werden, einer Arbeit, o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auf der Grundlage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außerhalb der Anstalt nachzugehen, wenn dies im Rahmen des Vollzugsplanes dem Ziel dient,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und nicht überwiegende Gründe des Vollzuges entgegenstehen. § 11 Abs.1 Nr.1, Abs.2 und § 14 bleiben unberührt.
(2) Dem Gefangenen kann gestattet werden,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3) Die Vollzugsbehörde kann verlangen, daß ihr das Entgelt zur Gutschrift für den Gefangenen überwiesen wird.

§ 40 (**Abschlußzeugnis**) Aus dem Abschlußzeugnis über eine ausbildende oder weiterbildende Maßnahme darf die Gefangenschaft eines Teilnehmers nicht erkennbar sein.

§ 41 (**Arbeitspflicht**) (1) Der Gefangene ist verpflichtet, eine ihm zugewiesene, seinen körperlichen Fähigkeiten angemessene Arbeit, arbeitstherapeutische oder sonstige Beschäftigung auszuüben, zu deren Verrichtung er auf Grund seines kör-

perlichen Zustandes in der Lage ist. Er kann jährlich bis zu drei Monaten zu Hilfstätigkeiten in der Anstalt verpflichtet werden, mit seiner Zustimmung auch darüber hinaus.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Gefangene, die über 65 Jahre alt sind, und nicht für werdende und stillende Mütter, soweit gesetzliche Beschäftigungsverbote zum Schutze erwerbstätiger Mütter bestehen.

(2) Die Teilnahme an einer Maßnahme nach § 37 Abs.3 bedarf der Zustimmung des Gefangenen. Die Zustimmung darf nicht zur Unzeit widerrufen werden.

(3) Die Beschäftigung in einem von privaten Unternehmen unterhaltenen Betriebe (§ 149 Abs.4) bedarf der Zustimmung des Gefangenen. Der Widerruf der Zustimmung wird erst wirksam, wenn der Arbeitsplatz von einem anderen Gefangenen eingenommen werden kann, spätestens nach sechs Wochen.

§ 42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1) Hat der Gefangene ein Jahr lang zugewiesene Tätigkeit nach § 37 oder Hilfstätigkeiten nach § 41 Abs.1 Satz 2 ausgeübt, so kann er beanspruchen, achtzehn Werktage von d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zu werden. Zeiten, in denen der Gefangene infolge Krankheit an seiner Arbeitsleistung verhindert war, werden auf das Jahr bis zu sechs Wochen jährlich angerechnet.

(2) Auf die Zeit der Freistellung wird Urlaub aus der Haft (§§ 13, 35) angerechnet, soweit er in die Arbeitszeit fällt und nicht wegen einer lebensgefährlichen Erkrankung oder des Todes eines Angehörigen erteilt worden ist.

(3) Der Gefangene erhält für die Zeit der Freistellung seine zuletzt gezahlten Bezüge weiter.

(4) Urlaubsregelungen d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außerhalb des Strafvollzuges bleiben unberührt.

§ 43 **(Arbeitsentgelt)** (1) Übt der Gefangene eine zugewiesene Arbeit, sonstige Beschäftigung oder eine Hilfstätigkeit nach § 41 Abs.1 Satz 2 aus, so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ist der in § 200 bestimmte Satz der Bezugsgröße nach § 18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zugrunde zu legen (Eckvergütung). Ein Tagessatz ist der zweihundertfünfzigste Teil der Eckvergütung; das Arbeitsentgelt kann nach einem Stundensatz bemessen

werden.

(2) Das Arbeitsentgelt kann je nach der Leistung des Gefangenen und der Art der Arbeit gestuft werden. 75 vom Hundert der Eckvergütung dürfen nur dann unterschritten werden, wenn die Arbeitsleistungen des Gefangenen den Mindestanforderungen nicht genügen.

(3) Übt ein Gefangener zugewiesene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aus,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soweit dies der Art seiner Beschäftigung und seiner Arbeitsleistung entspricht.

(4) Das Arbeitsentgelt ist dem Gefangenen schriftlich bekanntzugeben.

§ 44 **(Ausbildungsbeihilfe)** (1) Nimmt der Gefangene an einer Berufsausbildung, beruflichen Weiterbildung oder an einem Unterricht teil und ist er zu diesem Zweck von seiner Arbeitspflicht freigestellt, so erhält er eine Ausbildungsbeihilfe, soweit ihm keine Leistungen zum Lebensunterhalt zustehen, die freien Personen aus solchem Anlaß gewährt werden. Der Nachrang der Sozialhilfe nach § 2 Abs.2 des Bundessozialhilfegesetzes wird nicht berührt.

(2) Für die Bemessung der Ausbildungsbeihilfe gilt § 43 Abs.1 und 2 entsprechend.

(3) Nimmt der Gefangene während der Arbeitszeit stunden- oder tageweise am Unterricht oder an anderen zugewiesenen Maßnahmen gemäß § 37 Abs.3 teil, so erhält er in Höhe des ihm dadurch entgehenden Arbeitsentgelts eine Ausbildungsbeihilfe.

§ 45 **(Ausfallentschädigung)** (1) Kann einem arbeitsfähigen Gefangenen aus Gründen, die nicht in seiner Person liegen, länger als eine Woche eine Arbeit oder Beschäftigung im Sinne des § 37 Abs.4 nicht zugewiesen werden, erhält er eine Ausfallentschädigung.

(2) Wird ein Gefangener nach Beginn der Arbeit oder Beschäftigung infolge Krankheit länger als eine Woche an seiner Arbeitsleistung verhindert, ohne daß ihn ein Verschulden trifft, so erhält er ebenfalls eine Ausfallentschädigung. Gleiches gilt für Gefangene, die eine Ausbildungsbeihilfe nach § 44 oder Ausfallentschädigung nach Absatz 1 bezogen haben.

(3) Werdende Mütter, die eine Arbeit oder Beschäftigung im Sinne des § 37 nicht

verrichten, erhalten Ausfallentschädigung in den letzten sechs Wochen vor der Entbindung und bis zum Ablauf von acht Wochen, bei Früh- und Mehrlingsgeburten bis zu zwölf Wochen nach der Entbindung.

(4) Die Ausfallentschädigung darf 60 vom Hundert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1 nur dann unterschreiten, wenn der Gefangene das Mindestentgelt des § 43 Abs.2 vor der Arbeitslosigkeit oder Krankheit nicht erreicht hat.

(5) Ausfallentschädigung wird unbeschadet der Regelung nach Absatz 3 insgesamt bis zur Höchstdauer von sechs Wochen jährlich gewährt. Eine weitere Ausfallentschädigung wird erst gewährt, wenn der Gefangene erneut wenigstens ein Jahr Arbeitsentgelt oder Ausbildungsbeihilfe bezogen hat.

(6) Soweit der Gefangene nach § 566 Abs.2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Übergangsgeld erhält, ruht der Anspruch auf Ausfallentschädigung.

§ 46 (**Taschengeld**) Wenn ein Gefangener wegen Alters oder Gebrechlichkeit nicht mehr arbeitet oder ihm eine Ausfallentschädigung nicht oder nicht mehr gewährt wird, erhält er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falls er bedürftig ist. Gleiches gilt für Gefangene, die für eine Beschäftigung nach § 37 Abs.5 kein Arbeitsentgelt erhalten.

§ 47 (**Hausgeld**) (1) Der Gefangene darf von sein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mindestens dreißig Deutsche Mark monatlich (Hausgeld) und das Taschengeld (§ 46) für den Einkauf (§ 22 Abs.1) oder anderweit verwenden.

(2) Der Mindestbetrag des Hausgeldes erhöht sich um jeweils zehn vom Hundert der dreihundert Deutsche Mark übersteigenden monatlichen Bezüge. Die Vollzugsbehörde kann höhere Beträge von der Höhe des Überbrückungsgeldes abhängig machen.

(3) Für Gefangene,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2), wird aus ihren Bezügen ein angemessenes Hausgeld festgesetzt.

§ 48 (**Rechtsverordn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zur Durchführung der §§ 43 bis 45 Rechtsverordnungen über die Vergütungsstufen zu erlassen.

§ 49 **(Unterhaltsbeitrag)** (1) Auf Antrag des Gefangenen ist zur Erfüllung einer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 aus seinen Bezügen an den Berechtigten oder einen Dritten ein Unterhaltsbeitrag zu zahlen.

(2) Reichen die Einkünfte des Gefangenen nach Abzug des Hausgeldes und des Unterhaltsbeitrages nicht aus, um den Haftkostenbeitrag zu begleichen, so wird ein Unterhaltsbeitrag nur bis zur Höhe des nach § 850c der Zivilprozeßordnung unpfändbaren Betrages gezahlt. Bei der Bemessung des nach Satz 1 maßgeblichen Betrages wird die Zahl der unterhaltsberechtigten Personen um eine vermindert.

§ 50 **(Haftkostenbeitrag)** (1) Von d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und von den Bezügen der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1), darf ein Haftkostenbeitrag in Höhe des Betrages einbehalten werden, der nach § 160 Abs.2 der Reichsversicherungsordnung durchschnittlich zur Bewertung der Sachbezüge festgesetzt ist.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stellt den Durchschnittsbetrag für jedes Kalenderjahr nach den am 1. Oktober des vorhergehenden Jahres geltenden Bewertungen der Sachbezüge fest und macht ihn im Bundesanzeiger bekannt. Der Haftkostenbeitrag darf auch von dem unpfändbaren Teil der Bezüge, jedoch nicht zu Lasten des Hausgeldes oder des Unterhaltsbeitrages angesetzt werden.

(2) Die Selbstbeschäftigung (§ 39 Abs.2)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er Gefangene den Haftkostenbeitrag monatlich im voraus entrichtet.

§ 51 **(Überbrückungsgeld)** (1) Aus d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und aus den Bezügen der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2), ist ein Überbrückungsgeld zu bilden, das den notwendigen Lebensunterhalt des Gefangenen und seiner Unterhaltsberechtigten für die ersten vier Wochen nach seiner Entlassung sichern soll.

(2) Das Überbrückungsgeld wird dem Gefangenen bei der Entlassung in die

Freiheit ausgezahlt. Die Vollzugsbehörde kann es auch ganz oder zum Teil dem Bewährungshelfer oder einer mit der Entlassenenbetreuung befaßten Stelle überweisen, die darüber entscheiden, wie das Geld innerhalb der ersten vier Wochen nach der Entlassung an den Gefangenen ausgezahlt wird. Der Bewährungshelfer und die mit der Entlassenenbetreuung befaßte Stelle sind verpflichtet, das Überbrückungsgeld von ihrem Vermögen gesondert zu halten.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kann das Überbrückungsgeld auch dem Unterhaltsberechtigten überwiesen werden.

(3) Der Anstaltsleiter kann gestatten, daß das Überbrückungsgeld für Ausgaben in Anspruch genommen wird, die der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dienen.

(4) Der Anspruch auf Auszahlung des Überbrückungsgeldes ist unpfändbar. Erreicht es nicht die in Absatz 1 bestimmte Höhe, so ist in Höhe des Unterschiedsbetrages auch der Anspruch auf Auszahlung des Eigengeldes unpfändbar. Bargeld des entlassenen Gefangenen, an den wegen der nach Satz 1 oder Satz 2 unpfändbaren Ansprüche Geld ausgezahlt worden ist, ist für die Dauer von vier Wochen seit der Entlassung insoweit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als es dem Teil der Ansprüche für die Zeit von der Pfändung bis zum Ablauf der vier Wochen entspricht.

(5) Absatz 4 gilt nicht bei einer Pfändung wegen der in § 850d Abs.1 Satz 1 der Zivilprozeßordnung bezeichneten Unterhaltsansprüche. Dem entlassenen Gefangenen ist jedoch so viel zu belassen, als er für seinen notwendigen Unterhalt und zur Erfüllung seiner sonstigen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en für die Zeit von der Pfändung bis zum Ablauf von vier Wochen seit der Entlassung bedarf.

§ 52 **(Eigengeld)** Bezüge des Gefangenen, die nicht als Hausgeld, Haftkostenbeitrag, Unterhaltsbeitrag oder Überbrückungsgeld in Anspruch genommen werden, sind dem Gefangenen zum Eigengeld gutzuschreiben.

Sechster Titel - Religionsausübung

§ 53 **(Seelsorge)** (1) Dem Gefangenen darf religiöse Betreuung durch einen Seelsorger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nicht versagt werden. Auf seinen Wunsch ist ihm zu helfen, mit einem Seelsorger seiner Religionsgemeinschaft in

Verbindung zu treten.

(2) Der Gefangene darf grundlegende religiöse Schriften besitzen. Sie dürfen ihm nur bei grobem Mißbrauch entzogen werden.

(3) Dem Gefangenen sind Gegenstände des religiösen Gebrauchs in angemessenem Umfange zu belasten.

§ 54 (**Religiöse Veranstaltungen**) (1) Der Gefangene hat das Recht, am Gottesdienst und an anderen religiösen Veranstaltungen seines Bekenntnisses teilzunehmen.

(2) Zu dem Gottesdienst oder zu religiösen Veranstaltungen einer anderen Religionsgemeinschaft wird der Gefangene zugelassen, wenn deren Seelsorger zustimmt.

(3) Der Gefangene kann von der Teilnahme am Gottesdienst oder anderen religiösen Veranstaltungen ausgeschlossen werden, wenn dies aus überwiegenden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geboten ist; der Seelsorger soll vorher gehört werden.

§ 55 (**Weltanschauungsgemeinschaften**) Für Angehörige weltanschaulicher Bekenntnisse gelten die §§ 53 und 54 entsprechend.

Siebter Titel - Gesundheitsfürsorge

§ 56 (**Allgemeine Regeln**) (1) Für die körperliche und geistige Gesundheit des Gefangenen ist zu sorgen. § 101 bleibt unberührt.

(2) Der Gefangene hat die notwendigen Maßnahmen zum Gesundheitschutz und zur Hygiene zu unterstützen.

§ 57 (**Gesundheitsuntersuchungen, medizinische Vorsorgeleistungen**) (1) Gefangene, die das fünfunddreißigste Lebensjahr vollendet haben, haben jedes zweite Jahr Anspruch auf eine ärztliche Gesundheitsuntersuchung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insbesondere zur Früherkennung von Herz-Kreislauf- und Nierenerkrankungen sowie der Zuckerkrankheit.

(2) Gefangene haben höchstens einmal jährlich Anspruch auf eine Untersuchung

zur Früherkennung von Krebserkrankungen, Frauen frühestens vom Beginn des zwanzigsten Lebensjahres an, Männer frühestens vom Beginn des fünfundvierzigsten Lebensjahres an.

(3) Voraussetzung für die Untersuch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ist, daß

1. es sich um Krankheiten handelt, die wirksam behandelt werden können,
2. das Vor- oder Frühstadium dieser Krankheiten durch diagnostische Maßnahmen erfaßbar ist,
3. die Krankheitszeichen medizinisch-technisch genügend eindeutig zu erfassen sind,
4. genügend Ärzte und Einrichtungen vorhanden sind, um die aufgefundenen Verdachtsfälle eingehend zu diagnostizieren und zu behandeln.

(4) Gefangene Frauen haben für ihre Kinder, die mit ihnen in der Vollzugsanstalt untergebracht sind, bis zur Vollendung des sechsten Lebensjahres Anspruch auf Untersuchungen zur Früherkennung von Krankheiten, die die körperliche oder geistige Entwicklung ihrer Kinder in nicht geringfügigem Maße gefährden.

(5) Gefangene, die das vierzehnte, aber noch nicht das zwanzigste Lebensjahr vollendet haben, können sich zur Verhütung von Zahnerkrankungen einmal in jedem Kalenderhalbjahr zahnärztlich untersuchen lassen. Die Untersuchungen sollten sich auf den Befund des Zahnfleisches, die Aufklärung über Krankheitsursachen und ihre Vermeidung, das Erstellen von diagnostischen Vergleichen zur Mundhygiene, zum Zustand des Zahnfleisches und zur Anfälligkeit gegenüber Karieserkrankungen, auf die Motivation und Einweisung bei der Mundpflege sowie auf Maßnahmen zur Schmelzhärtung der Zähne erstrecken.

(6) Gefangene haben Anspruch auf ärztliche Behandlung und Versorgung mit Arznei-, Verband-, Heil- und Hilfsmitteln, wenn diese notwendig sind,

1. eine Schwächung der Gesundheit, die in absehbarer Zeit voraussichtlich zu einer Krankheit führen würde, zu beseitigen,
2. einer Gefährdung der gesundheitlichen Entwicklung eines Kindes entgegenzuwirken oder
3. Pflegebedürftigkeit zu vermeiden.

§ 58 (**Krankenbehandlung**) Gefangene haben Anspruch auf Krankenbehandlung,

wenn sie notwendig ist, um eine Krankheit zu erkennen, zu heilen, ihre Verschlimmerung zu verhüten oder Krankheitsbeschwerden zu lindern. Die Krankenbehandlung umfaßt insbesondere

1. ärztliche Behandlung,
2. zahnärztliche Behandlung einschließlich der Versorgung mit Zahnersatz,
3. Versorgung mit Arznei-, Verband-, Heil- und Hilfsmitteln,
4. medizinische und ergänzende Leistungen zur Rehabilitation sowie Belastungserprobung und Arbeitstherapie, soweit die Belange des Vollzuges dem nicht entgegenstehen.

§ 59 (**Versorgung mit Hilfsmitteln**) Gefangene haben Anspruch auf Versorgung mit Seh- und Hörhilfen, Körperersatzstükken, orthopädischen und anderen Hilfsmitteln, die im Einzelfall erforderlich sind, um den Erfolg der Krankenbehandlung zu sichern oder eine Behinderung auszugleichen, sofern dies nicht mit Rücksicht auf die Kürze des Freiheitsentzugs ungerechtfertigt ist und soweit die Hilfsmittel nicht als allgemeine Gebrauchsgegenstände des täglichen Lebens anzusehen sind. Der Anspruch umfaßt auch die notwendige Änderung, Instandsetzung und Ersatzbeschaffung von Hilfsmitteln sowie die Ausbildung in ihrem Gebrauch, soweit die Belange des Vollzuges dem nicht entgegenstehen. Ein erneuter Anspruch auf Versorgung mit Sehhilfen besteht nur bei einer Änderung der Sehfähigkeit um mindestens 0,5 Dioptrien. Anspruch auf Versorgung mit Kontaktlinsen besteht nur in medizinisch zwingend erforderlichen Ausnahmefällen.

§ 60 (**Krankenbehandlung im Urlaub**)

Während eines Urlaubs oder Ausgangs hat der Gefangene gegen die Vollzugsbehörde nur einen Anspruch auf Krankenbehandlung in der für ihn zuständigen Vollzugsanstalt.

§ 61 (**Art und Umfang der Leistungen**)

Für die Art der Gesundheitsuntersuchungen und medizinischen Vorsorgeleistungen sowie für den Umfang dieser Leistungen und der Leistungen zur Krankenbehandlung einschließlich der Versorgung mit Hilfsmitteln gelten die entsprechenden Vorschriften

des Sozialgesetzbuchs und die auf Grund dieser Vorschriften getroffenen Regelungen.

§ 62 (**Zuschüsse zu Zahnersatz und Zahnkronen**)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bestimmen durch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en die Höhe der Zuschüsse zu den Kosten der zahnärztlichen Behandlung und der zahntechnischen Leistungen bei der Versorgung mit Zahnersatz. Sie können bestimmen, daß die gesamten Kosten übernommen werden.

§ 62a (**Ruhen der Ansprüche**) Der Anspruch auf Leistungen nach den §§ 57 bis 59 ruht, solange der Gefangene auf Grund eines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 39 Abs.1) krankenversichert ist.

§ 63 (**Ärztliche Behandlung zur sozialen Eingliederung**) Mit Zustimmung des Gefangenen soll die Vollzugsbehörde ärztliche Behandlung, namentlich Operationen oder prothetische Maßnahmen durchführen lassen, die seine soziale Eingliederung fördern. Er ist an den Kosten zu beteiligen, wenn dies nach seinen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gerechtfertigt ist und der Zweck der Behandlung dadurch nicht in Frage gestellt wird.

§ 64 (**Aufenthalt im Freien**) Arbeitet ein Gefangener nicht im Freien, so wird ihm täglich mindestens eine Stunde Aufenthalt im Freien ermöglicht, wenn die Witterung dies zu der festgesetzten Zeit zuläßt.

§ 65 (**Verlegung**) (1) Ein kranker Gefangener kann in ein Anstaltskrankenhaus oder in eine für die Behandlung seiner Krankheit besser geeignete Vollzugsanstalt verlegt werden.

(2) Kann die Krankheit eines Gefangenen in einer Vollzugsanstalt oder einem Anstaltskrankenhaus nicht erkannt oder behandelt werden oder ist es nicht möglich, den Gefangenen rechtzeitig in ein Anstaltskrankenhaus zu verlegen, ist dieser in ein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zu bringen. Ist während des Aufenthalts des Gefangenen in einem Krankenhaus die Strafvollstreckung unterbrochen worden, hat der Versicherte nach den Vorschrift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Anspruch auf die erforderlichen Leistungen.

§ 66 **(Benachrichtigung bei Erkrankung oder Todesfall)** (1) Wird ein Gefangener schwer krank, so ist ein Angehöriger, eine Person seines Vertrauens oder der gesetzliche Vertreter unverzüglich zu benachrichtigen. Dasselbe gilt, wenn ein Gefangener stirbt.

(2) Dem Wunsche des Gefangenen, auch andere Personen zu benachrichtigen, soll nach Möglichkeit entsprochen werden.

Achter Titel - Freizeit

§ 67 **(Allgemeines)** Der Gefangene erhält Gelegenheit, sich in seiner Freizeit zu beschäftigen. Er soll Gelegenheit erhalten, am Unterricht einschließlich Sport, an Fernunterricht, Lehrgängen und sonstige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an Freizeitgruppen, Gruppengesprächen sowie an Sportveranstaltungen teilzunehmen und eine Bücherei zu benutzen.

§ 68 **(Zeitungen und Zeitschriften)** (1) Der Gefangene darf Zeitungen und Zeitschriften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beziehen.

(2) Ausgeschlossen sind Zeitungen und Zeitschriften, deren Verbreitung mit Strafe oder Geldbuße bedroht ist. Einzelne Ausgaben oder Teile von Zeitungen oder Zeitschriften können dem Gefangenen vorenthalten werden, wenn sie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heblich gefährden würden.

§ 69 **(Hörfunk und Fernsehen)** (1) Der Gefangene kann am Hörfunkprogramm der Anstalt sowie am gemeinschaftlichen Fernsehempfang teilnehmen. Die Sendungen sind so auszuwählen, daß Wünsche und Bedürfnisse nach staatsbürgerlicher Information, Bildung und Unterhaltung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er Hörfunk- und Fernsehempfang kann vorübergehend ausgesetzt oder einzelnen Gefangenen untersagt werden, wenn dies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unerläßlich ist.

(2) Eigene Hörfunk- und Fernsehgeräte werde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70 zugelassen.

§ 70 (**Besitz von Gegenständen für die Freizeitbeschäftigung**) (1) Der Gefangene darf in angemessenem Umfange Bücher und andere Gegenstände zur Fortbildung oder zur Freizeitbeschäftigung besitzen.

(2) Dies gilt nicht, wenn der Besitz, die Überlassung oder die Benutzung des Gegenstands

1. mit Strafe oder Geldbuße bedroht wäre oder
2. das Ziel des Vollzuges ode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n würde.

(3) Die Erlaubnis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widerrufen werden.

Neunter Titel - Soziale Hilfe

§ 71 (**Grundsatz**) Der Gefangene kann die soziale Hilfe der Anstalt in Anspruch nehmen, um seine persönlichen Schwierigkeiten zu lösen. Die Hilfe soll darauf gerichtet sein, den Gefangenen in die Lage zu versetzen, seine Angelegenheiten selbst zu ordnen und zu regeln.

§ 72 (**Hilfe bei der Aufnahme**) (1) Bei der Aufnahme wird dem Gefangenen geholfen, die notwendigen Maßnahmen für hilfsbedürftige Angehörige zu veranlassen und seine Habe außerhalb der Anstalt sicherzustellen.

(2) Der Gefangene ist über die Aufrechterhaltung einer Sozialversicherung zu beraten.

§ 73 (**Hilfe während des Vollzuges**) Der Gefangene wird in dem Bemühen unterstützt, seine Rechte und Pflichten wahrzunehmen, namentlich sein Wahlrecht auszuüben sowie für Unterhaltsberechtigte zu sorgen und einen durch seine Straftat verursachten Schaden zu regeln.

§ 74 (**Hilfe zur Entlassung**)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ist der Gefangene

bei der Ordnung seiner persönlich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Angelegenheiten zu beraten. Die Berat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Benennung der für Sozialleistungen zuständigen Stellen. Dem Gefangenen ist zu helfen, Arbeit, Unterkunft und persönlichen Beistand für die Zeit nach der Entlassung zu finden.

§ 75 **(Entlassungsbeihilfe)** (1) Der Gefangene erhält, soweit seine eigenen Mittel nicht ausreichen, von der Anstalt eine Beihilfe zu den Reisekosten sowie eine Überbrückungsbeihilfe und erforderlichenfalls ausreichende Kleidung.

(2) Bei der Bemessung der Höhe der Überbrückungsbeihilfe sind die Dauer des Freiheitsentzuges, der persönliche Arbeitseinsatz des Gefangenen und die Wirtschaftlichkeit seiner Verfügungen über Eigengeld und Hausgeld während der Strafzeit zu berücksichtigen. § 51 Abs.2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Die Überbrückungsbeihilfe kann ganz oder teilweise auch dem Unterhaltsberechtigten überwiesen werden.

(3) Der Anspruch auf Beihilfe zu den Reisekosten und die ausgezahlte Reisebeihilfe sind unpfändbar. Für den Anspruch auf Überbrückungsbeihilfe und für Bargeld nach Auszahlung einer Überbrükkungsbeihilfe an den Gefangenen gilt § 51 Abs.4 Satz 1 und 3, Abs.5 entsprechend.

Zehnter Titel -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Frauenstrafvollzug

§ 76 **(Leistungen bei Schwangerschaft und Mutterschaft)** (1) Bei einer Schwangeren oder einer Gefangenen, die unlängst entbunden hat, ist auf ihren Zustand Rücksicht zu nehmen.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über die Gestaltung des Arbeitspla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Gefangene hat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bei und nach der Entbindung Anspruch auf ärztliche Betreuung und auf Hebammenhilfe in der Vollzugsanstalt. Zur ärztlichen Betreuung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gehören insbesondere Untersuchungen zur Feststellung der Schwangerschaft sowie Vorsorgeuntersuchungen einschließlich der laborärztlichen Untersuchungen.

(3) Zur Entbindung ist die Schwangere in ein Krankenhaus außerhalb des

Vollzuges zu bringen. Ist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nicht angezeigt, so ist die Entbindung in einer Vollzugsanstalt mit Entbindungsabteilung vorzunehmen. Bei der Entbindung wird Hilfe durch eine Hebamme und, falls erforderlich, durch einen Arzt gewährt.

§ 77 **(Arznei-, Verband- und Heilmittel)** Bei Schwangerschaftsbeschwerden und im Zusammenhang mit der Entbindung werden Arznei-, Verband- und Heilmittel geleistet.

§ 78 **(Art, Umfang und Ruhen der Leistungen bei Schwangerschaft und Mutterschaft)**
Die §§ 60, 61, 62a und 65 gelten für die Leistungen nach den §§ 76 und 77 entsprechend.

§ 79 **(Geburtsanzeige)** In der Anzeige der Geburt an den Standesbeamten dürfen die Anstalt als Geburtsstätte des Kindes, das Verhältnis des Anzeigenden zur Anstalt und die Gefangenschaft der Mutter nicht vermerkt sein.

§ 80 **(Mütter mit Kindern)** (1) Ist das Kind einer Gefangenen noch nicht schulpflichtig, so kann es mit Zustimmung des Inhabers des Aufenthaltbestimmungsrechts in der Vollzugsanstalt untergebracht werden, in der sich seine Mutter befindet, wenn dies seinem Wohle entspricht. Vor der Unterbringung ist das Jugendamt zu hören.
(2) Die Unterbringung erfolgt auf Kosten des für das Kind Unterhaltspflichtigen. Von der Geltendmachung des Kostenersatzanspruchs kann abgesehen werden, wenn hierdurch die gemeinsame Unterbringung von Mutter und Kind gefährdet würde.

Elfter Titel - Sicherheit und Ordnung

§ 81 **(Grundsatz)** (1) Das Verantwortungsbewußtsein des Gefangenen für ein geordnetes Zusammenleben in der Anstalt ist zu wecken und zu fördern.
(2) Die Pflichten und Beschränkungen, die dem Gefangenen zur 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auferlegt werden, sind so zu wählen, daß sie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ihrem Zweck stehen und den Gefangenen nicht mehr und nicht länger als notwendig beeinträchtigen.

§ 82 **(Verhaltensvorschriften)** (1) Der Gefangene hat sich nach der Tageseinteilung der Anstalt (Arbeitszeit, Freizeit, Ruhezeit) zu richten. Er darf durch sein Verhalten gegenüber Vollzugsbediensteten, Mitgefangenen und anderen Personen das geordnete Zusammenleben nicht stören.

(2) Der Gefangene hat die Anordnungen der Vollzugsbediensteten zu befolgen, auch wenn er sich durch sie beschwert fühlt. Einen ihm zugewiesenen Bereich darf er nicht ohne Erlaubnis verlassen.

(3) Seinen Haftraum und die ihm von der Anstalt überlassenen Sachen hat er in Ordnung zu halten und schonend zu behandeln.

(4) Der Gefangene hat Umstände, die eine Gefahr für das Leben oder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Gesundheit einer Person bedeuten, unverzüglich zu melden.

§ 83 **(Persönlicher Gewahrsam, Eigengeld)** (1) Der Gefangene darf nur Sachen in Gewahrsam haben oder annehmen, die ihm von der Vollzugsbehörde oder mit ihrer Zustimmung überlassen werden. Ohne Zustimmung darf er Sachen von geringem Wert von einem anderen Gefangenen annehmen; die Vollzugsbehörde kann Annahme und Gewahrsam auch dieser Sachen von ihrer Zustimmung abhängig machen.

(2) Eingebrachte Sachen, die der Gefangene nicht in Gewahrsam haben darf, sind für ihn aufzubewahren, sofern dies nach Art und Umfang möglich ist. Geld wird ihm als Eigengeld gutgeschrieben. Dem Gefangenen wird Gelegenheit gegeben, seine Sachen, die er während des Vollzuges und für seine Entlassung nicht benötigt, abzusenden oder über sein Eigengeld zu verfügen, soweit dieses nicht als Überbrückungsgeld notwendig ist.

(3) Weigert sich ein Gefangener, eingebrachtes Gut, dessen Aufbewahrung nach Art und Umfang nicht möglich ist, aus der Anstalt zu verbringen, so ist die Vollzugsbehörde berechtigt, diese Gegenstände auf Kosten des Gefangenen aus der Anstalt entfernen zu lassen.

(4) Aufzeichnungen und andere Gegenstände, die Kenntnisse über Sicherungsvorkehrungen der Anstalt vermitteln, dürfen von der Vollzugsbehörde vernichtet oder unbrauchbar gemacht werden.

§ 84 **(Durchsuchung)** (1) Gefangene, ihre Sachen und die Hafträume dürfen durchsucht werden. Die Durchsuchung männlicher Gefangener darf nur von Männern, die Durchsuchung weiblicher Gefangener darf nur von Frauen vorgenommen werden. Das Schamgefühl ist zu schonen.

(2) Nur bei Gefahr im Verzuge oder auf Anordnung des Anstaltsleiters im Einzelfall ist es zulässig, eine mit einer Entkleidung verbundene körperliche Durchsuchung vorzunehmen. Sie darf bei männlichen Gefangenen nur in Gegenwart von Männern, bei weiblichen Gefangenen nur in Gegenwart von Frauen erfolgen. Sie ist in einem geschlossenen Raum durchzuführen.

(3) Der Anstaltsleiter kann allgemein anordnen, daß Gefangene bei der Aufnahme, nach Kontakten mit Besuchern und nach jeder Abwesenheit von der Anstalt nach Absatz 2 zu durchsuchen sind.

§ 85 **(Sichere Unterbringung)** Ein Gefangener kann in eine Anstalt verlegt werden, die zu seiner sicheren Unterbringung besser geeignet ist, wenn in erhöhtem Maße Fluchtgefahr gegeben ist oder sonst sein Verhalten oder sein Zustand eine Gefahr für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darstellt.

§ 86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1) Zur Sicherung des Vollzuges sind als 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 zulässig

1. die Abnahme von Finger- und Handflächenabdrücken,
2. die Aufnahme von Lichtbildern,
3. die Feststellung äußerlicher körperlicher Merkmale,
4. Messungen.

(2) Die gewonnenen erkennungsdienstlichen Unterlagen werden zu den Gefangenenpersonalakten genommen. Sie können auch in kriminalpolizeilichen Sammlungen verwahrt werden. Die nach Absatz 1 erhobenen Daten dürfen nur für die in Absatz 1, § 87 Abs.2 und § 180 Abs.2 Nr.4 genannten Zwecke verarbeitet

und genutzt werden.

(3) Personen, die aufgrund des Absatzes 1 erkennungsdienstlich behandelt worden sind, können nach der Entlassung aus dem Vollzug verlangen, daß die gewonnenen erkennungsdienstlichen Unterlagen mit Ausnahme von Lichtbildern und der Beschreibung von körperlichen Merkmalen vernichtet werden, sobald die Vollstreckung der richterlichen Entscheidung, die dem Vollzug zugrunde gelegen hat, abgeschlossen ist. Sie sind über dieses Recht bei der erkennungsdienstlichen Behandlung und bei der Entlassung aufzuklären.

§ 87 **(Festnahmerecht)** (1) Ein Gefangener, der entwichen ist oder sich sonst ohne Erlaubnis außerhalb der Anstalt aufhält, kann durch die Vollzugsbehörde oder auf ihre Veranlassung hin festgenommen und in die Anstalt zurückgebracht werden.

(2) Nach § 86 Abs.1 erhobene und nach § 179 erhobene und zur Identifizierung oder Festnahme erforderliche Daten dürfen den Vollstreckungs- und Strafverfolgungs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dies für Zwecke der Fahndung und Festnahme des entwichenen oder sich sonst ohne Erlaubnis außerhalb der Anstalt aufhaltenden Gefangenen erforderlich ist.

§ 88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1) Gegen einen Gefangenen können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angeordnet werden, wenn nach seinem Verhalten oder auf Grund seines seelischen Zustandes in erhöhtem Maße Fluchtgefahr oder die Gefahr von Gewalttätigkeiten gegen Personen oder Sachen oder die Gefahr des Selbstmordes oder der Selbstverletzung besteht.

(2) Als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sind zulässig:

1. der Entzug oder die Vorenthaltung von Gegenständen,
2. die Beobachtung bei Nacht,
3. die Absonderung von anderen Gefangenen,
4. der Entzug oder die Beschränkung des Aufenthalts im Freien,
5. die Unterbringung in einem besonders gesicherten Haftraum ohne gefährdende Gegenstände und
6. die Fesselung.

(3) Maßnahmen nach Absatz 2 Nr.1, 3 bis 5 sind auch zulässig, wenn die Gefahr einer Befreiung oder eine erhebliche Störung der Anstaltsordnung anders nicht vermieden oder behoben werden kann.
(4) Bei einer Ausführung, Vorführung oder beim Transport ist die Fesselung auch dann zulässig, wenn aus anderen Gründen als denen des Absatzes 1 in erhöhtem Maße Fluchtgefahr besteht.
(5)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dürfen nur soweit aufrechterhalten werden, als es ihr Zweck erfordert.

§ 89 **(Einzelhaft)** (1) Die unausgesetzte Absonderung eines Gefangenen (Einzelhaft) ist nur zulässig, wenn dies aus Gründen, die in der Person des Gefangenen liegen, unerläßlich ist.
(2) Einzelhaft von mehr als drei Monaten Gesamtdauer in einem Jahr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Diese Frist wird nicht dadurch unterbrochen, daß der Gefangene am Gottesdienst oder an der Freistunde teilnimmt.

§ 90 **(Fesselung)** In der Regel dürfen Fesseln nur an den Händen oder an den Füßen angelegt werden. Im Interesse des Gefangenen kann der Anstaltsleiter eine andere Art der Fesselung anordnen. Die Fesselung wird zeitweise gelockert, soweit dies notwendig ist.

§ 91 **(Anordnung besonderer Sicherungsmaßnahmen)** (1)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ordnet der Anstaltsleiter an. Bei Gefahr im Verzuge können auch andere Bedienstete der Anstalt diese Maßnahmen vorläufig anordnen. Die Entscheidung des Anstaltsleiters ist unverzüglich einzuholen.
(2) Wird ein Gefangener ärztlich behandelt oder beobachtet oder bildet sein seelischer Zustand den Anlaß der Maßnahme, ist vorher der Arzt zu hören. Ist dies wegen Gefahr im Verzuge nicht möglich, wird seine Stellungnahme unverzüglich eingeholt.

§ 92 **(Ärztliche Überwachung)** (1) Ist ein Gefangener in einem besonderen gesicherten Haftraum untergebracht oder gefesselt (§ 88 Abs.2 Nr.5 und 6), so

sucht ihn der Anstaltsarzt alsbald und in der Folge möglichst täglich auf. Dies gilt nicht bei einer Fesselung während einer Ausführung, Vorführung oder eines Transportes (§ 88 Abs. 4).

(2) Der Arzt ist regelmäßig zu hören, solange einem Gefangenen der tägliche Aufenthalt im Freien entzogen wird.

§ 93 (**Ersatz von Aufwendungen**) (1) Der Gefangene ist verpflichtet, der Vollzugsbehörde Aufwendungen zu ersetzen, die er durch eine vorsätzliche oder grob fahrlässige Selbstverletzung oder Verletzung eines anderen Gefangenen verursacht hat. Ansprüche aus sonstigen Rechtsvorschriften bleiben unberührt.

(2) Bei der Geltendmachung dieser Forderungen kann auch der den Mindestbetrag übersteigende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3)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Forderungen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4) Von der Aufrechnung oder Vollstreckung wegen der in Absatz 1 genannten Forderungen ist abzusehen, wenn hierdurch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t würde.

Zwölfter Titel - Unmittelbarer Zwang

§ 94 (**Allgemeine Voraussetzungen**) (1) Bedienstete der Justizvollzugsanstalten dürfen unmittelbaren Zwang anwenden, wenn sie Vollzugs- und Sicherungsmaßnahmen rechtmäßig durchführen und der damit verfolgte Zweck auf keine andere Weise erreicht werden kann.

(2) Gegen andere Personen als Gefangene darf unmittelbarer Zwang angewendet werden, wenn sie es unternehmen, Gefangene zu befreien oder in den Anstaltsbereich widerrechtlich einzudringen, oder wenn sie sich unbefugt darin aufhalten.

(3) Das Recht zu unmittelbarem Zwang auf Grund anderer Regelungen bleibt unberührt.

§ 95 (**Begriffsbestimmungen**) (1) Unmittelbarer Zwang ist die Einwirkung auf

Personen oder Sachen durch körperliche Gewalt, ihre Hilfsmittel und durch Waffen.

(2) Körperliche Gewalt ist jede unmittelbare körperliche Einwirkung auf Personen oder Sachen.

(3) Hilfsmittel der körperlichen Gewalt sind namentlich Fesseln.

(4) Waffen sind die dienstlich zugelassenen Hieb- und Schußwaffen sowie Reizstoffe.

§ 96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1) Unter mehreren möglichen und geeigneten Maßnahmen des unmittelbaren Zwanges sind diejenigen zu wählen, die den Einzelnen und die Allgemeinheit voraussichtlich am wenigsten beeinträchtigen.

(2) Unmittelbarer Zwang unterbleibt, wenn ein durch ihn zu erwartender Schaden erkennbar außer Verhältnis zu dem angestrebten Erfolg steht.

§ 97 **(Handeln auf Anordnung)** (1) Wird unmittelbarer Zwang von einem Vorgesetzten oder einer sonst befugten Person angeordnet, sind Vollzugsbedienstete verpflichtet, ihn anzuwenden, es sei denn, die Anordnung verletzt die Menschenwürde oder ist nicht zu dienstlichen Zwecken erteilt worden.

(2) Die Anordnung darf nicht befolgt werden, wenn dadurch eine Straftat begangen würde. Befolgt der Vollzugsbedienstete sie trotzdem, trifft ihn eine Schuld nur, wenn er erkennt oder wenn es nach den ihm bekannten Umständen offensichtlich ist, daß dadurch eine Straftat begangen wird.

(3) Bedenken gegen die Rechtmäßigkeit der Anordnung hat der Vollzugsbedienstete dem Anordnenden gegenüber vorzubringen, soweit das nach den Umständen möglich ist. Abweichend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Beamtenrechts über die Mitteilung solcher Bedenken an einen Vorgesetzten (§ 38 Abs.2 und 3 des Beamtenrechtsrahmengesetzes) sind nicht anzuwenden.

§ 98 **(Androhung)** Unmittelbarer Zwang ist vorher anzudrohen. Die Androhung darf nur dann unterbleiben, wenn die Umstände sie nicht zulassen oder un-

mittelbarer Zwang sofort angewendet werden muß, um eine rechtswidrige Tat, die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erfüllt, zu verhindern oder eine gegenwärtige Gefahr abzuwenden.

§ 99 **〔Allgemeine Vorschrif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1) Schußwaffen dürfen nur gebraucht werden, wenn andere Maßnahmen des unmittelbaren Zwanges bereits erfolglos waren oder keinen Erfolg versprechen. Gegen Personen ist ihr Gebrauch nur zulässig, wenn der Zweck nicht durch Waffenwirkung gegen Sachen erreicht wird.

(2) Schußwaffen dürfen nur die dazu bestimmten Vollzugsbediensteten gebrauchen und nur, um angriffs- oder fluchtunfähig zu machen. Ihr Gebrauch unterbleibt, wenn dadurch erkennbar Unbeteiligte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gefährdet würden.

(3) Der Gebrauch von Schußwaffen ist vorher anzudrohen. Als Androhung gilt auch ein Warnschuß. Ohne Androhung dürfen Schußwaffen nur dann gebraucht werden, wenn das zur Abwehr einer gegenwärtig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erforderlich ist.

§ 100 **〔Besondere Vorschriften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1) Gegen Gefangene dürfen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1. wenn sie eine Waffe oder ein anderes gefährliches Werkzeug trotz wiederholter Aufforderung nicht ablegen,
2. wenn sie eine Meuterei (§ 121 des Strafgesetzbuches) unternehmen oder
3. um ihre Flucht zu vereiteln oder um sie wiederzuergreifen.

Um die Flucht aus einer offenen Anstalt zu vereiteln, dürfen keine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2) Gegen andere Personen dürfen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wenn sie es unternehmen, Gefangene gewaltsam zu befreien oder gewaltsam in eine Anstalt einzudringen.

§ 101 **〔Zwangsmaßnahmen auf dem Gebiet der Gesundheitsfürsorge〕** (1) Medizinische Untersuchung und Behandlung sowie Ernährung sind zwangsweise

nur bei Lebensgefahr, bei schwerwiegender Gefahr für die Gesundheit des Gefangenen oder bei Gefahr für die Gesundheit anderer Personen zulässig; die Maßnahmen müssen für die Beteiligten zumutbar und dürfen nicht mit erheblicher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des Gefangenen verbunden sein. Zur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ist die Vollzugsbehörde nicht verpflichtet, solange von einer freien Willensbestimmung des Gefangenen ausgegangen werden kann.

(2) Zum Gesundheitsschutz und zur Hygiene ist die zwangsweise körperliche Untersuchung außer im Falle des Absatzes 1 zulässig, wenn sie nicht mit einem körperlichen Eingriff verbunden ist.

(3) Die Maßnahmen dürfen nur auf Anordnung und unter Leitung eines Arztes durchgeführt werden, unbeschadet der Leistung erster Hilfe für den Fall, daß ein Arzt nicht rechtzeitig erreichbar und mit einem Aufschub Lebensgefahr verbunden ist.

Dreizehnter Titel - Disziplinarmaßnahmen

§ **102 (Voraussetzungen)** (1) Verstößt ein Gefangener schuldhaft gegen Pflichten, die ihm durch dieses Gesetz oder auf Grund dieses Gesetzes auferlegt sind, kann der Anstaltsleiter gegen ihn Disziplinarmaßnahmen anordnen.

(2) Von einer Disziplinarmaßnahme wird abgesehen, wenn es genügt, den Gefangenen zu verwarnen.

(3) Eine Disziplinarmaßnahme ist auch zulässig, wenn wegen derselben Verfehlung ein Straf- oder Bußgeldverfahren eingeleitet wird.

§ **103 (Arten der Disziplinarmaßnahmen)** (1) Die zulässigen Disziplinarmaßnahmen sind:

1. Verweis,
2.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r Verfügung über das Hausgeld und des Einkaufs bis zu drei Monaten,
3.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s Lesestoffs bis zu zwei Wochen sowie des Hörfunk- und Fernsehempfangs bis zu drei Monaten; der gleichzeitige Entzug jedoch nur bis zu zwei Wochen,

4. die Beschränkung oder der Entzug der Gegenstände für eine Beschäftigung in der Freizeit oder der Teilnahme an gemeinschaftlichen Veranstaltungen bis zu drei Monaten,
5. die getrennte Unterbringung während der Freizeit bis zu vier Wochen,
6. (gestrichen),
7. der Entzug der zugewiesenen Arbeit oder Beschäftigung bis zu vier Wochen unter Wegfall der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
8. die Beschränkung des Verkehrs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auf dringende Fälle bis zu drei Monaten,
9. Arrest bis zu vier Wochen.

(2) Arrest darf nur wegen schwerer oder mehrfach wiederholter Verfehlungen verhängt werden.

(3) Mehrere Disziplinarmaßnahmen können miteinander verbunden werden.

(4) Die Maßnahmen nach Absatz 1 Nr.3 bis 8 sollen möglichst nur angeordnet werden, wenn die Verfehlung mit den zu beschränkenden oder zu entziehenden Befugnissen im Zusammenhang steht. Dies gilt nicht bei einer Verbindung mit Arrest.

§ 104 (Vollzug der Disziplinarmaßnahmen, Aussetzung zur Bewährung)

(1) Disziplinarmaßnahmen werden in der Regel sofort vollstreckt.

(2) Eine Disziplinarmaßnahme kann ganz oder teilweise bis zu sechs Monaten zur Bewährung ausgesetzt werden.

(3) Wird die Verfügung über das Hausgeld beschränkt oder entzogen, ist das in dieser Zeit anfallende Hausgeld dem Überbrükkungsgeld hinzuzurechnen.

(4) Wird der Verkehr des Gefangenen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eingeschränkt, ist ihm Gelegenheit zu geben, dies einer Person, mit der er im Schriftwechsel steht oder die ihn zu besuchen pflegt, mitzuteilen. Der Schriftwechsel mit den in § 29 Abs.1 und 2 genannten Empfängern, mit Gerichten und Justizbehörden in der Bundesrepublik sowie mit Rechtsanwälten und Notaren in einer den Gefangenen betreffenden Rechtssache bleibt unbeschränkt.

(5) Arrest wird in Einzelhaft vollzogen. Der Gefangene kann in einem besonderen Arrestraum untergebracht werden, der den Anforderungen entsprechen muß, die

an einen zum Aufenthalt bei Tag und Nacht bestimmten Haftraum gestellt werden. Soweit nichts anderes angeordnet wird, ruhen die Befugnisse des Gefangenen aus den §§ 19, 20, 22, 37, 38, 68 bis 70.

§ 105 (**Disziplinarbefugnis**) (1) Disziplinarmaßnahmen ordnet der Anstaltsleiter an. Bei einer Verfehlung auf dem Wege in eine andere Anstalt zum Zwecke der Verlegung ist der Leiter der Bestimmungsanstalt zuständig.

(2) Die Aufsichtsbehörde entscheidet, wenn sich die Verfehlung des Gefangenen gegen den Anstaltsleiter richtet.

(3) Disziplinarmaßnahmen, die gegen einen Gefangenen in einer anderen Vollzugsanstalt oder während einer Untersuchungshaft angeordnet worden sind, werden auf Ersuchen vollstreckt. § 104 Abs.2 bleibt unberührt.

§ 106 (**Verfahren**) (1) Der Sachverhalt ist zu klären. Der Gefangene wird gehört. Die Erhebungen werden in einer Niederschrift festgelegt; die Einlassung des Gefangenen wird vermerkt.

(2) Bei schweren Verstößen soll der Anstaltsleiter sich vor der Entscheidung in einer Konferenz mit Personen besprechen, die bei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mitwirken. Vor der Anordnung einer Disziplinarmaßnahme gegen einen Gefangenen, der sich in ärztlicher Behandlung befindet, oder gegen eine Schwangere oder eine stillende Mutter ist der Anstaltsarzt zu hören.

(3) Die Entscheidung wird dem Gefangenen vom Anstaltsleiter mündlich eröffnet und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schriftlich abgefaßt.

§ 107 (**Mitwirkung des Arztes**) (1) Bevor der Arrest vollzogen wird, ist der Arzt zu hören. Während des Arrestes steht der Gefangene unter ärztlicher Aufsicht.

(2) Der Vollzug des Arrestes unterbleibt oder wird unterbrochen, wenn die Gesundheit des Gefangenen gefährdet würde.

Vierzehnter Titel - Rechtsbehelfe

§ 108 (**Beschwerderecht**) (1) Der Gefangene erhält Gelegenheit, sich mit Wünschen, Anregungen und Beschwerden in Angelegenheiten, die ihn selbst be-

treffen, an den Anstaltsleiter zu wenden. Regelmäßige Sprechstunden sind einzurichten.

(2) Besichtigt ein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die Anstalt, so ist zu gewährleisten, daß ein Gefangener sich in Angelegenheiten, die ihn selbst betreffen, an ihn wenden kann.

(3) Die Möglichkeit der Dienstaufsichtsbeschwerde bleibt unberührt.

§ 109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1) Gegen eine Maßnahme zur Regelung einzelner Angelegenheiten auf dem Gebiete des Strafvollzuges kann gerichtliche Entscheidung beantragt werden. Mit dem Antrag kann auch die Verpflichtung zum Erlaß einer abgelehnten oder unterlassenen Maßnahme begehrt werden.

(2)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ist nur zulässig, wenn der Antragsteller geltend macht, durch die Maßnahme oder ihr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in seinen Rechten verletzt zu sein.

(3) Das Landesrecht kann vorsehen, daß der Antrag erst nach vorausgegangenem Verwaltungsvorverfahren gestellt werden kann.

§ 110 **(Zuständigkeit)**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n deren Bezirk die beteiligte Vollzugsbehörde ihren Sitz hat. Durch die Entscheidung in einem Verwaltungsvorverfahren nach § 109 Abs.3 ändert sich die Zuständigkeit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nicht.

§ 111 **(Beteiligte)** (1) Beteiligte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1. der Antragsteller,
2. die Vollzugsbehörde, die die angefochtene Maßnahme angeordnet oder die beantragte abgelehnt oder unterlassen hat.

(2) In dem Verfahren vor dem Oberlandesgericht oder dem Bundesgerichtshof ist Beteiligte nach Absatz 1 Nr.2 die zuständige Aufsichtsbehörde.

§ 112 **(Antragsfrist, Wiedereinsetzung)** (1) Der Antrag muß binnen zwei Wochen nach Zustellung oder schriftlicher Bekanntgabe der Maßnahme oder ihrer

Ablehnung schriftlich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gestellt werden. Soweit ein Verwaltungsvorverfahren (§ 109 Abs.3) durchzuführen ist, beginnt die Frist mit der Zustellung oder schriftlichen Bekanntgabe des Widerspruchsbescheides.

(2) War der Antragsteller ohne Verschulden verhindert, die Frist einzuhalten, so ist ihm auf Antrag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zu gewähren.

(3)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ist binnen zwei Wochen nach Wegfall des Hindernisses zu stellen. Die Tatsachen zur Begründung des Antrags sind bei der Antragstellung oder im Verfahren über den Antrag glaubhaft zu machen. Innerhalb der Antragsfrist ist die versäumte Rechtshandlung nachzuholen. Ist dies geschehen, so kann die Wiedereinsetzung auch ohne Antrag gewährt werden.

(4) Nach einem Jahr seit dem Ende der versäumten Frist ist der Antrag auf Wiedereinsetzung unzulässig, außer wenn der Antrag vor Ablauf der Jahresfrist infolge höherer Gewalt unmöglich war.

§ **113 (Vornahmeantrag)** (1) Wendet sich der Antragsteller gegen das Unterlassen einer Maßnahme, kann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vor Ablauf von drei Monaten seit dem Antrag auf Vornahme der Maßnahme gestellt werden, es sei denn, daß eine frühere Anrufung des Gerichts wegen besonderer Umstände des Falles geboten ist.

(2) Liegt ein zureichender Grund dafür vor, daß die beantragte Maßnahme noch nicht erlassen ist, so setzt das Gericht das Verfahren bis zum Ablauf einer von ihm bestimmten Frist aus. Die Frist kann verlängert werden. Wird die beantragte Maßnahme in der gesetzten Frist erlassen, so ist der Rechtsstreit in der Hauptsache erledigt.

(3) Der Antrag nach Absatz 1 ist nur bis zum Ablauf eines Jahres seit der Stellung des Antrags auf Vornahme der Maßnahme zulässig, außer wenn die Antragstellung vor Ablauf der Jahresfrist infolge höherer Gewalt unmöglich war oder unter den besonderen Verhältnissen des Einzelfalles unterblieben ist.

§ **114 (Aussetzung der Maßnahme)** (1) Der Antrag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2) Das Gericht kann den Vollzug der angefochtenen Maßnahme aussetzen, wenn die Gefahr besteht, daß die Verwirklichung eines Rechts des Antragstellers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ird und ein höher zu bewertendes Interesse an dem sofortigen Vollzug nicht entgegensteht. Das Gericht kann auch eine einstweilige Anordnung erlassen; § 123 Abs. 1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st entsprechend anzuwenden. Die Entscheidungen sind nicht anfechtbar; sie können vom Gericht jederzeit geändert oder aufgehoben werden.

(3) Der Antrag auf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2 ist schon vor Stellung des Antrags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zulässig.

§ 115 (**Gerichtliche Entscheidung**) (1) Das Gericht entscheide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2) Soweit die Maßnahme rechtswidrig und der Antragstell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hebt das Gericht die Maßnahme und, soweit ein Verwaltungsvorverfahren vorhergegangen ist, den Widerspruchsbescheid auf. Ist die Maßnahme schon vollzogen, kann das Gericht auch aussprechen, daß und wie die Vollzugsbehörde die Vollziehung rückgängig zu machen hat, soweit die Sache spruchreif ist.

(3) Hat sich die Maßnahme vorher durch Zurücknahme oder anders erledigt, spricht das Gericht auf Antrag aus, daß die Maßnahme rechtswidrig gewesen ist, wenn der Antragstell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ieser Feststellung hat.

(4) Soweit di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der Maßnahme rechtswidrig und der Antragstell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spricht das Gericht die Verpflichtung der Vollzugsbehörde aus, die beantragte Amtshandlung vorzunehm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Anderenfalls spricht es die Verpflichtung aus, den Antragsteller unter Beachtung der Rechtsauffassung des Gerichts zu bescheiden.

(5) Soweit die Vollzugsbehörde ermächtigt ist, nach ihrem Ermessen zu handeln, prüft das Gericht auch, ob die Maßnahme oder ihr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rechtswidrig ist, weil die gesetzlichen Grenzen des Ermessens überschritten sind oder von dem Ermessen in einer dem Zweck der Ermächtigung nicht entsprechenden Weise Gebrauch gemacht ist.

§ 116 (**Rechtsbeschwerde**) (1) Gegen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ist die Rechtsbeschwerde zulässig, wenn es geboten ist, die Nachprüfung zur Fortbildung des Rechts oder zur Sicher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prechung zu ermöglichen.

(2) Die Rechtsbeschwerde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die Entscheidung auf einer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e. Das Gesetz ist verletzt, wenn eine Rechtsnorm nicht oder nicht richtig angewendet worden ist.

(3) Die Rechtsbeschwe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114 Abs.2 gilt entsprechend.

(4) Für die Rechtsbeschwerde gelten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über die Beschwerde entsprechend, soweit diese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 117 (**Zuständigkeit für die Rechtsbeschwerde**) Über die Rechtsbeschwerde entscheidet ein Strafsenat des Oberlandesgerichts, in dessen Bezirk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ihren Sitz hat.

§ 118 (**Form, Frist, Begründung**) (1) Die Rechtsbeschwerde muß bei dem Gericht, dessen Entscheidung angefochten wird, binnen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eingelegt werden. In dieser Frist ist außerdem die Erklärung abzugeben, inwieweit die Entscheidung angefochten und ihre Aufhebung beantragt wird. Die Anträge sind zu begründen.

(2) Aus der Begründung muß hervorgehen, ob die Entscheidung wegen Verletzung einer Rechtsnorm über das Verfahren oder wegen Verletzung einer anderen Rechtsnorm angefochten wird. Ersterenfalls müssen die den Mangel enthaltenden Tatsachen angegeben werden.

(3) Der Antragsteller als Beschwerdeführer kann dies nur in einer von einem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tun.

§ 119 (**Entscheidung über die Rechtsbeschwerde**) (1) Der Strafsenat entscheidet ohne mündliche Verhandlung durch Beschluß.

(2) Seiner Prüfung unterliegen nur die Beschwerdeanträge und, soweit die Rechtsbeschwerde auf Mängel des Verfahrens gestützt wird, nur die Tatsachen, die in der Begründung der Rechtsbeschwerde bezeichnet worden sind.

(3) Der Beschluß, durch den die Beschwerde verworfen wird, bedarf keiner Begründung, wenn der Strafsenat die Beschwerde einstimmig für unzulässig oder für offensichtlich unbegründet erachtet.

(4) Soweit die Rechtsbeschwerde für begründet erachtet wird, ist die angefochtene Entscheidung aufzuheben. Der Strafsenat kann an Stelle der Strafvollstreckungskammer entscheid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Sonst ist die Sache zur neuen Entscheidung an die Strafvollstreckungskammer zurückzuverweisen.

(5) Die Entscheidung des Strafsenats ist endgültig.

§ 120 **(Entsprechende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1) Soweit sich aus diesem Gesetz nichts anderes ergibt, sind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2) Auf die Bewilligung der Prozeßkostenhilfe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 121 **(Kosten des Verfahrens)** (1) In der das Verfahren abschließenden Entscheidung ist zu bestimmen, von wem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zu tragen sind.

(2) Soweit der Antragsteller unterliegt oder seinen Antrag zurücknimmt, trägt er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Hat sich die Maßnahme vor einer Entscheidung nach Absatz 1 in anderer Weise als durch Zurücknahme des Antrags erledigt, so entscheidet das Gericht über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die notwendigen Auslagen nach billigem Ermessen.

(3) Absatz 2 Satz 2 gilt nicht im Falle des § 115 Abs.3.

(4) Im übrigen gelten die §§ 464 bis 473 der Strafprozeßordnung entsprechend.

(5) Für die Kosten des Verfahrens nach den §§ 109 ff. kann auch ein fünffacher Tagessatz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1 in Anspruch genommen werden.

Fünfzehnter Titel - Strafvollstreckung und Untersuchungshaft

§ 122 (1) Wird Untersuchungshaft zum Zwecke der Strafvollstreckung unterbrochen oder wird gegen einen Strafgefangenen in anderer Sache Untersuchungshaft angeordnet, so unterliegt der Gefangene abweichend von § 4 Abs.2 auch denjenigen Beschränkungen seiner Freiheit, die der Zweck der Untersuchungshaft erfordert. Die notwendigen Maßnahmen ordnet der nach § 126 der Strafprozeßordnung zuständige Richter an. § 119 Abs.6 Satz 2 und 3 der Strafprozeßordnung gilt entsprechend.

(2) § 148 Abs.2, § 148a der Strafprozeßordnung sind anzuwenden.

Sechzehnter Titel -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 123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und Abteilungen)** (1) Für den Vollzug nach § 9 sind von den übrigen Vollzugsanstalten getrennt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vorzusehen.

(2)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auch sozialtherapeutische Abteilungen in anderen Vollzugsanstalten eingerichtet werden. Für diese Abteilungen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entsprechend.

§ 124 **(Urlaub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1) Der Anstaltsleiter kann dem Gefangenen zur Vorbereitung der Entlassung Sonderurlaub bis zu sechs Monaten gewähren. § 11 Abs.2 und § 13 Abs.5 gelten entsprechend.

(2) Dem Beurlaubten sollen für den Urlaub Weisungen erteilt werden. Er kann insbesondere angewiesen werden, sich einer von der Anstalt bestimmten Betreuungsperson zu unterstellen und jeweils für kurze Zeit in die Anstalt zurückzukehren.

(3) § 14 Abs.2 gilt entsprechend. Der Urlaub wird widerrufen, wenn dies für die Behandlung des Gefangenen notwendig ist.

§ 125 **(Aufnahme auf freiwilliger Grundlage)** (1) Ein früherer Gefangener kann auf seinen Antrag vorübergehend wieder in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aufgenommen werden, wenn das Ziel seiner Behandlung gefährdet und ein Aufenthalt in der Anstalt aus diesem Grunde gerechtfertigt ist. Die Aufnahme ist

jederzeit widerruflich.

(2) Gegen den Aufgenommenen dürfen Maßnahmen des Vollzuges nicht mit unmittelbarem Zwang durchgesetzt werden.

(3) Auf seinen Antrag ist der Aufgenommene unverzüglich zu entlassen.

§ **126 (Nachgehende Betreuung)** Die Zahl der Fachkräfte für di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ist so zu bemessen, daß auch eine nachgehende Betreuung der Gefangenen gewährleistet ist, soweit diese anderweitig nicht sichergestellt werden kann.

§§ **127 und 128** (aufgehoben)

Dritter Abschnitt:

Besonder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rster Titel - Sicherungsverwahrung

§ **129 (Ziel der Unterbringung)** Der Sicherungsverwahrte wird zum Schutz der Allgemeinheit sicher untergebracht. Ihm soll geholfen werden, sich in das Leben in Freiheit einzugliedern.

§ **130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3 bis 126, 179 bis 187) entsprechend, soweit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131 (Ausstattung)** Die Ausstattung der Sicherungsanstalten, namentlich der Hafträume, und besondere Maßnahmen zur Förderung und Betreuung sollen dem Untergebrachten helfen, sein Leben in der Anstalt sinnvoll zu gestalten, und ihn vor Schäden eines langen Freiheitsentzuges bewahren. Seinen persönlichen Bedürfnissen ist nach Möglichkeit Rechnung zu tragen.

§ 132 (**Kleidung**) Der Untergebracht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Untergebracht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133 (**Selbstbeschäftigung, Taschengeld**) (1) Dem Untergebrachten wird gestattet, sich gegen Entgelt selbst zu beschäftigen, wenn dies dem Ziel dient, Fähigkeiten für eine Erwerbstätigkeit nach der Entlassung zu vermitteln, zu erhalten oder zu fördern.
(2) Das Taschengeld (§ 46) darf den fünf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1 im Monat nicht unterschreiten.

§ 134 (**Entlassungsvorbereitung**) Um die Entlassung zu erproben und vorzubereiten, kann der Vollzug gelockert und Sonderurlaub bis zu einem Monat gewährt werden. Bei Untergebrachten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bleibt § 124 unberührt.

§ 135 (**Sicherungsverwahrung in Frauenanstalten**) Die Sicherungsverwahrung einer Frau kann auch in einer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stimmten Frauenanstalt durchgeführt werden, wenn diese Anstalt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eingerichtet ist. Zweiter Titel -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in einer Entziehungsanstalt

§ 136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Die Behandlung des Untergebrachten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richtet sich nach ärztlichen Gesichtspunkten. Soweit möglich, soll er geheilt oder sein Zustand soweit gebessert werden, daß er nicht mehr gefährlich ist. Ihm wird die nötige Aufsicht, Betreuung und Pflege zuteil.

§ 137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Ziel der Behandlung des Untergebrachten in einer Entziehungsanstalt ist es, ihn von seinem Hang zu heilen und die zugrunde liegende Fehlhaltung zu beheben.

§ 138 (**Anwendung anderer Vorschriften**) (1) Die Unterbring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oder in einer Entziehungsanstalt richtet sich nach Landesrecht, soweit Bundesgesetze nichts anderes bestimmen.
(2) Für die Unterbringung gelten § 51 Abs.4 und 5, § 75 Abs.3 und die §§ 109 bis 121 entsprechend.

Vierter Abschnitt:
Vollzugsbehörden

Erster Titel - Arten und Einrichtung der Justizvollzugsanstalten

§ 139 (**Justizvollzugsanstalten**) Die Freiheitsstrafe sowie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erden in Anstalten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Justizvollzugsanstalten) vollzogen.

§ 140 (**Trennung des Vollzuges**) (1) 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wird in getrennten Anstalten oder in getrennten Abteilungen einer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bestimmten Vollzugsanstalt vollzogen.
(2) Frauen sind getrennt von Männern in besonderen Frauenanstalten unterzubringen.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für Frauen getrennte Abteilungen in Anstalten für Männer vorgesehen werden.
(3) Von der getrennten Unterbringung nach den Absätzen 1 und 2 darf abgewichen werden, um dem Gefangenen die Teilnahme an Behandlungsmaßnahmen in einer anderen Anstalt oder in einer anderen Abteilung zu ermöglichen.

§ 141 (**Differenzierung**) (1) Fü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ind Haftplätze vorzusehen in verschiedenen Anstalten oder Abteilungen, in denen eine auf die unterschiedlichen Bedürfnisse der Gefangenen abgestimm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2) Anstalten des geschlossenen Vollzuges sehen eine sichere Unterbringung vor, Anstalten des offenen Vollzuges keine oder nur verminderte Vorkehrungen gegen Entweichungen.

§ 142 (**Einrichtungen für Mütter mit Kindern**) In Anstalten für Frauen sollen Einrichtungen vorgesehen werden, in denen Mütter mit ihren Kindern untergebracht werden können.

§ 143 (**Größe und Gestaltung der Anstalten**) (1) Justizvollzugsanstalten sind so zu gestalten, daß eine auf die Bedürfnisse des einzelnen abgestell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2) Die Vollzugsanstalten sind so zu gliedern, daß die Gefangenen in überschaubaren Betreuungs- und Behandlungsgruppen zusammengefaßt werden können.

(3) Die für sozialtherapeutische Anstalten und für Justizvollzugsanstalten für Frauen vorgesehene Belegung soll zweihundert Plätze nicht übersteigen.

§ 144 (**Größe und Ausgestaltung der Räume**) (1) Räume für den Aufenthalt während der Ruhe- und Freizeit sowie Gemeinschafts- und Besuchsräume sind wohnlich oder sonst ihrem Zweck entsprechend auszugestalten. Sie müssen hinreichend Luftinhalt haben und für eine gesunde Lebensführung ausreichend mit Heizung und Lüftung, Boden- und Fensterfläche ausgestattet sein.

(2)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urch Rechtsverordnung Näheres über den Luftinhalt, die Lüftung, die Boden- und Fensterfläche sowie die Heizung und Einrichtung der Räume zu bestimmen.

§ 145 (**Festsetzung der Belegungsfähigkeit**) Die Aufsichtsbehörde setzt die Belegungsfähigkeit für jede Anstalt so fest, daß eine angemessene Unterbringung während der Ruhezeit (§ 18) gewährleistet ist.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eine ausreichende Anzahl von Plätzen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iterbildung sowie von Räumen für Seelsorge, Freizeit, Sport, therapeutische Maßnahmen und Besuche zur Verfügung steht.

§ 146 (**Verbot der Überbelegung**) (1) Hafträume dürfen nicht mit mehr Personen als zugelassen belegt werden.

(2) Ausnahmen hiervon sind nur vorübergehend und nur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zulässig.

§ 147 (**Einrichtungen für die Entlassung**) Um die Entlassung vorzubereiten, sollen den geschlossenen Anstalten offene Einrichtungen angegliedert oder gesonderte offene Anstalten vorgesehen werden.

§ 148 (**Arbeitsbeschaffung, Gelegenheit zur beruflichen Bildung**) (1) Die Vollzugsbehörde soll im Zusammenwirken mit den Vereinigungen und Stellen des Arbeits- und Wirtschaftslebens dafür sorgen, daß jeder arbeitsfähige Gefangene wirtschaftlich ergiebige Arbeit ausüben kann, und dazu beitragen, daß er beruflich gefördert, beraten und vermittelt wird.

(2) Die Vollzugsbehörde stellt durch geeignete organisatorische Maßnahmen sicher, daß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ihr obliegenden Aufgaben wie Berufsberatung, Ausbildungsvermittlung und Arbeitsvermittlung durchführen kann.

§ 149 (**Arbeitsbetriebe,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1) In den Anstalten sind die notwendigen Betriebe für die nach § 37 Abs.2 zuzuweisenden Arbeiten sowie die erforderlichen Einrich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 (§ 37 Abs.3) und arbeitstherapeutischen Beschäftigung (§ 37 Abs.5) vorzusehen.

(2) Die in Absatz 1 genannten Betriebe und sonstigen Einrichtungen sind den Verhältnissen außerhalb der Anstalten anzugleichen. Die Arbeitsschutz- und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 sind zu beachten.

(3) Die berufliche Bildung und die arbeitstherapeutische Beschäftigung können auch in geeigneten Einrichtungen privater Unternehmen erfolgen.

(4) In den von privaten Unternehmen unterhaltenen Betrieben und sonstigen Einrichtungen kann die technische und fachliche Leitung Angehörigen dieser Unternehmen übertragen werden.

§ 150 (**Vollzugsgemeinschaften**) Für Vollzugsanstalten nach den §§ 139 bis 149 können die Länder Vollzugsgemeinschaften bilden.

Zweiter Titel -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 151 (**Aufsichtbehörden**) (1)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führen die Aufsicht über die Justizvollzugsanstalten. Sie können Aufsichtsbefugnisse auf Justizvollzugsämter übertragen.

(2) An der Aufsicht über das Arbeitswesen sowie über die Sozialarbeit, die Weiterbildung, die Gesundheitsfürsorge und die sonstige fachlich begründete Behandlung der Gefangenen sind eigene Fachkräfte zu beteiligen.

§ 152 (**Vollstreckungsplan**) (1) Die Landesjustizverwaltung regelt die örtliche und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einem Vollstrekkungsplan.

(2) Der Vollstreckungsplan sieht vor, welche Verurteilten in eine Einweisungsanstalt oder -abteilung eingewiesen werden. Über eine Verlegung zum weiteren Vollzug kann nach Gründen der Behandlung und Eingliederung entschieden werden.

(3) Im übrigen ist die Zuständigkeit nach allgemeinen Merkmalen zu bestimmen.

§ 153 (**Zuständigkeit für Verlegungen**) Die Landesjustizverwaltung kann sich Entscheidungen über Verlegungen vorbehalten oder sie einer zentralen Stelle übertragen.

Dritter Titel - Innerer Aufbau der Justizvollzugsanstalten

§ 154 (**Zusammenarbeit**) (1) Alle im Vollzug Tätigen arbeiten zusammen und wirken daran mit, die Aufgaben des Vollzuges zu erfüllen.

(2) Mit den Behörden und Stellen der Entlassenenfürsorge, der Bewährungshilfe, den Aufsichtsstellen für die Führungsaufsicht, den Arbeitsämtern, den Trägern der Sozialversicherung und der Sozialhilfe, den Hilfeeinrichtungen anderer Behörden und den Verbänden der freien Wohlfahrtspflege ist eng zusammenzuarbeiten. Die Vollzugsbehörden sollen mit Personen und Vereinen, deren Einfluß die Eingliederung des Gefangenen fördern kann, zusammenarbeiten.

§ 155 (**Vollzugsbedienstete**) (1) Die Aufgaben der Justizvollzugsanstalten werden von Vollzugsbeamten wahrgenommen. Aus besonderen Gründen können sie auch anderen Bediensteten der Justizvollzugsanstalten sowie nebenamtlichen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en Personen übertragen werden.

(2) Für jede Anstalt ist entsprechend ihrer Aufgabe die erforderliche Anzahl von Bediensteten der verschiedenen Berufsgruppen, namentlich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des Verwaltungsdienstes und des Werkdienstes, sowie von Seelsorgern, Ärzten, Pädagogen, Psychologen und Sozialarbeitern vorzusehen.

§ 156 (**Anstaltsleitung**) (1) Für jede Justizvollzugsanstalt ist ein Beamter des höheren Dienstes zum hauptamtlichen Leiter zu bestellen. Aus besonderen Gründen kann eine Anstalt auch von einzelnen Beamten des gehobenen Dienstes geleistet werden.

(2) Der Anstaltsleiter vertritt die Anstalt nach außen. Er trägt die Verantwortung für den gesamten Vollzug, soweit nicht bestimmte Aufgabenbereiche der Verantwortung anderer Vollzugsbedienstete oder ihrer gemeinsamen Verantwortung übertragen sind.

(3) Die Befugnis, die Durchsuchung nach § 84 Abs.2, die besonderen Sicherungsmaßnahmen nach § 88 und die Disziplinarmaßnahmen nach § 103 anzuordnen, darf nur mit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übertragen werden.

§ 157 (**Seelsorge**) (1) Seelsorger werden im Einvernehmen mit der jeweiligen Religionsgemeinschaft im Hauptamt bestellt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

(2) Wenn die geringe Zahl der Angehörigen einer Religionsgemeinschaft eine Seelsorge nach Absatz 1 nicht rechtfertigt, ist die seelsorgerische Betreuung auf andere Weise zuzulassen.

(3) Mit Zustimmung des Anstaltsleiters dürfen die Anstaltsseelsorger sich freier Seelsorgehelfer bedienen und für Gottesdienste sowie für andere religiöse Veranstaltungen Seelsorger von außen zuziehen.

§ 158 (**Ärztliche Versorgung**) (1) Die ärztliche Versorgung ist durch hauptamtliche Ärzte sicherzustellen. Sie kann aus besonderen Gründen nebenamtlichen oder vertraglich verpflichteten Ärzten übertragen werden.

(2) Die Sorge der Kranken soll von Personen ausgeübt werden, die eine Erlaubnis nach dem Krankenpflegegesetz besitzen. Solange Personen im Sinne von Satz 1

nicht zur Verfügung stehen, können auch Bedienstete des allgemeinen Vollzugsdienstes eingesetzt werden, die eine sonstige Ausbildung in der Krankenpflege erfahren haben.

§ 159 (**Konferenzen**) Zur Aufstellung und Überprüfung des Vollzugsplanes und zur Vorbereitung wichtiger Entscheidungen im Vollzuge führt der Anstaltsleiter Konferenzen mit an der Behandlung maßgeblich Beteiligten durch.

§ 160 (**Gefangenenmitverantwortung**) Den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soll ermöglicht werden, an der Verantwortung für Angelegenheiten von gemeinsamem Interesse teilzunehmen, die sich ihrer Eigenart und der Aufgabe der Anstalt nach für ihre Mitwirkung eignen.

§ 161 (**Hausordnung**) (1) Der Anstaltsleiter erläßt eine Hausordnung. Sie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2) In die Hausordnung sind namentlich die Anordnungen aufzunehmen über

1. die Besuchszeiten, Häufigkeit und Dauer der Besuche,
2. die Arbeitszeit, Freizeit und Ruhezeit sowie
3. die Gelegenheit, Anträge und Beschwerden anzubringen, oder sich an einen Vertreter der Aufsichtsbehörde zu wenden.

(3) Ein Abdruck der Hausordnung ist in jedem Haftraum auszulegen.

Vierter Titel - Anstaltsbeiräte

§ 162 (**Bildung der Beiräte**) (1) Bei den Justizvollzugsanstalten sind Beiträge zu bilden.

(2) Vollzugsbedienstete dürfen nicht Mitglieder der Beiräte sein.

(3) Das Nähere regeln die Länder.

§ 163 (**Aufgabe der Beiräte**) Die Mitglieder des Beirats wirken bei der Gestaltung des Vollzuges und bei der Betreuung der Gefangenen mit. Sie unterstützen den Anstaltsleiter durch Anregung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und helfen bei der Eingliederung der Gefangenen nach der Entlassung.

§ 164 (**Befugnisse**) (1) Die Mitglieder des Beirats können namentlich Wünsche, Anregungen und Beanstandungen entgegennehmen. Sie können sich über die Unterbringung, Beschäftigung, berufliche Bildung, Verpflegung, ärztliche Versorgung und Behandlung unterrichten sowie die Anstalt und ihre Einrichtungen besichtigen.

(2) Die Mitglieder des Beirats können die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in ihren Räumen aussuchen. Aussprache und Schriftwechsel werden nicht überwacht.

§ 165 (**Pflicht zur Verschwiegenheit**) Die Mitglieder des Beirats sind verpflichtet, außerhalb ihres Amtes über alle Angelegenheiten, die ihrer Natur nach vertraulich sind, besonders über Namen und Persönlichkeit der Gefangenen und Untergebrachten, Verschwiegenheit zu bewahren. Dies gilt auch nach Beendigung ihres Amtes.

Fünfter Titel - Kriminologische Forschung im Strafvollzug

§ 166 (1) Dem kriminologischen Dienst obliegt es, in Zusammenarbeit mit den Einrichtungen der Forschung den Vollzug, namentlich die Behandlungsmethoden, wissenschaftlich fortzuentwickeln und seine Ergebnisse für Zwecke der Strafrechtspflege nutzbar zu machen.

(2) Die Vorschriften des § 186 gelten entsprechend.

Fünfter Abschnitt: Vollzug weiterer freiheitsentziehener Maßnahmen in Justizvollzugsanstalten, Datenschutz, Sozia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Schlußvorschriften

Erster Titel -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 167 (**Grundsatz**) Für den Vollzug des Strafarrestes in Justizvollzugsanstalten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2 bis 122, 179 bis 187) entsprechend, soweit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168 (**Unterbringung, Besuche und Schriftverkehr**) (1)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Freizeit und Ruhezeit (§§ 17 und 18) ist nur mit Einwilligung des Gefange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in Unterbrechung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2) Dem Gefangenen soll gestattet werden, einmal wöchentlich Besuch zu empfangen.

(3) Besuche und Schriftwechsel dürfen nur untersagt oder überwacht werden, wenn dies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notwendig ist.

§ 169 (**Kleidung, Wäsche und Bettzeug**) Der Gefangen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170 (**Einkauf**) Der Gefangene darf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f eigene Kosten erwerben.

Zweiter Titel - Vollzug vo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 171 (**Grundsatz**) Für den Vollzug einer gerichtlich angeordneten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 3 bis 122, 179 bis 187) entsprechend, soweit nicht Eigenart und Zweck der Haft entgegenstehen oder im folgenden etwas anderes bestimmt ist.

§ 172 (**Unterbringung**) Eine gemeinsam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 Freizeit und Ruhezeit (§§ 17 und 18) ist nur mit Einwilligung des Gefangenen zulässig. Dies gilt nicht, wenn Ordnungshaft in Unterbrechung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 173 (**Kleidung, Wäsche und Bettzeug**) Der Gefangene darf eigene Kleidung, Wäsche und eigenes Bettzeug benutzen, wenn Gründe der Sicherheit nicht entgegenstehen und der Gefangene für Reinigung, Instandsetzung und regelmäßigen Wechsel auf eigene Kosten sorgt.

§ 174 (**Einkauf**) Der Gefangene darf Nahrungs- und Genußmittel sowie Mittel zur Körperpflege in angemessenem Umfang durch Vermittlung der Anstalt auf eigene Kosten erwerben.

§ 175 (**Arbeit**) Der Gefangene ist zu einer Arbeit,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nicht verpflichtet.

Dritter Titel - Arbeitsentgelt in Jugendstrafanstalten und 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 176 (**Jugendstrafanstalten**) (1) Übt ein Gefangener in einer Jugendstrafanstalt eine ihm zugewiesene Arbeit aus, so erhält er unbeschadet der Vorschriften des Jugendarbeitsschutzgesetzes über die Akkord- und Fließarbeit ein nach § 43 Abs.1 und 2 zu bemessendes Arbeitsentgelt. Übt er eine sonstige zugewiesene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aus, so erhält er ein Arbeitsentgelt nach Satz 1, soweit dies der Art seiner Beschäftigung und seiner Arbeitsleistung entspricht.

(2) Arbeitsfähige Gefangene, denen aus Gründen, die nicht in ihrer Person liegen, Arbeit nicht zugewiesen werden kann, erkrankte Gefangene, bei denen die Voraussetzungen des § 45 Abs.2 vorliegen, und werdende Mütter, die eine Arbeit nicht verrichten, erhalten eine Ausfallentschädigung. Höhe und Dauer der Ausfallentschädigung sind nach § 45 Abs.3 bis 6 zu bestimmen.

(3) Gefangene, die wegen Gebrechlichkeit nicht arbeiten oder denen eine Ausfallentschädigung nicht oder nicht mehr gewährt wird, erhalten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falls sie bedürftig sind. Gleiches gilt für Gefangene, die für eine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nach Absatz 1 Satz 2 kein Arbeitsentgelt erhalten.

(4) Im übrigen gelten § 44 und die §§ 49 bis 52 entsprechend.

§ **177 (Untersuchungshaft)** Übt der Untersuchungsgefangene eine ihm zugewiesene Arbeit, Beschäftigung oder Hilfstätigkeit aus, so erhält er ein nach § 43 zu bemessendes Arbeitsentgelt.

Vierter Titel - Unmittelbarer Zwang in Justizvollzugsanstalten

§ **178** (1) Die §§ 94 bis 101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gelte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Absätze auch für Justizvollzugsbedienstete außerhalb des Anwendungsbereichs des Strafvollzugsgesetzes (§ 1).

(2) Beim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und der einstweiligen Unterbringung nach § 126a der Strafprozeßordnung bleibt § 119 Abs.5 und 6 der Strafprozeßordnung unberührt.

(3) Beim Vollzug des Jugendarrestes, des Strafarrestes sowie der 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dürfen zur Vereitelung einer Flucht oder zur Wiederergreifung (§ 100 Abs.1 Nr.3) keine Schußwaffen gebraucht werden. Dies gilt nicht, wenn Strafarrest oder Ordnungs-, Sicherungs-, Zwangs- oder Erzwingungshaft in Unterbrechung einer Untersuchungshaft, einer Strafhaft oder einer Unterbringung im Vollzuge ein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4) Das Landesrecht kann, namentlich beim Vollzug der Jugendstrafe, weitere Einschränkungen des Rechtes zum Schußwaffengebrauch vorsehen.

Fünfter Titel - Datenschutz

§ **179 (Datenerhebung)** (1) Die Vollzugsbehörde darf personenbezogene Daten erheben, soweit deren Kenntnis für den ihr nach diesem Gesetz aufgegeben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rforderlich ist.

(2) Personenbezogene Daten sind bei dem Betroffenen zu erheben. Für die Erhebung ohne Mitwirkung des Betroffenen, die Erhebung bei anderen Personen oder Stellen und für die Hinweis- und Aufklärungspflichten gilt § 13 Abs.2 bis 4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3) Daten über Personen, die nicht Gefangene sind, dürfen ohne ihre Mitwirkung bei Personen oder Stellen außerhalb der Vollzugsbehörde nur erhoben werden, wenn sie für die Behandlung eines Gefangenen, die Sicherheit der Anstalt oder die

Sicherung des Vollzuges einer Freiheitsstrafe unerläßlich sind und die Art der Erhebung schutzwürdige Interessen der Betroffenen nicht beeinträchtigt.

(4) Über eine ohne seine Kenntnis vorgenommene Erhebung personenbezogener Daten wird der Betroffene unter Angabe dieser Daten unterrichtet, soweit der in Absatz 1 genannte Zweck dadurch nicht gefährdet wird. Sind die Daten bei anderen Personen oder Stellen erhoben worden, kann die Unterrichtung unterbleiben, wenn

1. die Daten nach einer Rechtsvorschrift oder ihrem Wesen nach, namentlich wegen des überwiegenden berechtigten Interesses eines Dritten, geheimgehalten werden müssen oder
2. der Aufwand der Unterrichtung außer Verhältnis zum Schutzzweck steht und kein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 beeinträchtigt werden.

§ 180 **(Verarbeitung und Nutzung)** (1) Die Vollzugsbehörde darf personenbezogene Daten verarbeiten und nutzen, soweit dies für den ihr nach diesem Gesetz aufgegeben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erforderlich ist. Die Vollzugsbehörde kann einen Gefangenen verpflichten, einen Lichtbildausweis mit sich zu führen, wenn dies aus Gründen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2)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soweit dies

1. zur Abwehr von sicherheitsgefährdenden oder geheimdienstlichen Tätigkeiten für eine fremde Macht oder von Bestrebungen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die durch Anwendung von Gewalt oder darauf gerichtete Vorbereitungshandlungen
   a) geg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n Bestand oder die Sicherheit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gerichtet sind,
   b) eine ungesetzliche Beeinträchtigung der Amtsführung de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oder ihrer Mitglieder zum Ziele haben oder
   c) auswärtige' Belang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fährden,

2. zur Abwehr erheblicher Nachteile für das Gemeinwohl oder einer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3. zur Abwehr einer schwerwiegenden Beeinträchtigung der Rechte einer anderen Person,
4. zur Verhinderung o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sowie zur Verhinderung oder Verfolgung von Ordnungswidrigkeiten, durch welche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gefährdet werden, oder
5. für Maßnahmen der Strafvollstreckung oder strafvollstreckungsrechtliche Entscheidungen erforderlich ist.

(3)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für andere Zwecke liegt nicht vor, soweit sie dem gerichtlichen Rechtsschutz nach den §§ 109 bis 121 oder den in § 14 Abs.3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genannten Zwecken dient.

(4) Über die in den Absätzen 1 und 2 geregelten Zwecke hinaus dürfen zuständigen öffentlichen Stellen personenbezogene Dat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dies für

1. Maßnahmen der Gerichtshilfe, Jugendgerichtshilfe, Bewährungshilfe oder Führungsaufsicht,
2. Entscheidungen in Gnadensachen,
3. gesetzlich angeordnete Statistiken der Rechtspflege,
4. Entscheidungen über Leistungen, die mit der Aufnahme in einer Justizvollzugsanstalt entfallen oder sich mindern,
5. die Einleitung von Hilfsmaßnahmen für Angehörige (§ 11 Abs.1 Nr.1 des Strafgesetzbuchs) des Gefangenen,
6. dienstliche Maßnahmen der Bundeswehr im Zusammenhang mit der Aufnahme und Entlassung von Soldaten oder
7. ausländerrechtliche Maßnahmen erforderlich ist. Eine Übermittlung für andere Zwecke ist auch zulässig, soweit eine andere gesetzliche Vorschrift dies vorsieht und sich dabei ausdrücklich auf personenbezogene Daten über Gefangene bezieht.

(5) Öffentlichen und nicht-öffentlichen Stellen darf die Vollzugsbehörde auf schriftlichen Antrag mitteilen, ob sich eine Person in Haft befindet sowie ob und wann ihre Entlassung voraussichtlich innerhalb eines Jahres bevorsteht, soweit

1. die Mitteilung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öffentlichen Stelle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oder
2. von nicht-öffentlichen Stellen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ieser Mitteilung glaubhaft dargelegt wird und der Gefangene k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m Ausschluß der Übermittlung hat.

Dem Verletzten einer Straftat können darüber hinaus auf schriftlichen Antrag Auskünfte über die Entlassungsadresse oder die Vermögensverhältnisse des Gefangenen erteilt werden, wenn die Erteilung zur Feststellung oder Durchsetzung von Rechtsansprüchen im Zusammenhang mit der Straftat erforderlich ist. Der Gefangene wird vor der Mitteilung gehört, es sei denn, es ist zu besorgen, daß dadurch die Verfolgung des Interesses des Antragstellers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erden würde, und eine Abwägung ergibt, daß dieses Interesse des Antragstellers das Interesse des Gefangenen an seiner vorherigen Anhörung überwiegt. Ist die Anhörung unterblieben, wird der betroffene Gefangene über die Mitteilung der Vollzugsbehörde nachträglich unterrichtet.

(6) Akten mit personenbezogenen Daten dürfen nur anderen Vollzugsbehörden, den zur Dienst- oder Fachaufsicht oder zu dienstlichen Weisungen befugten Stellen, den für strafvollzugs-, strafvollstreckungs- und strafrechtliche Entscheidungen zuständigen Gerichten sowie den Strafvollstreckungs- und Strafverfolgungsbehörden überlassen werden; die Überlassung an andere 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soweit die Erteilung einer Auskunft einen unvertretbaren Aufwand erfordert oder nach Darlegung der Akteneinsicht begehrenden Stellen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 nicht ausreicht. Entsprechendes gilt für die Überlassung von Akten an die von der Vollzugsbehörde mit Gutachten beauftragten Stellen.

(7) Sind mit personenbezogenen Daten, die nach den Absätzen 1, 2 oder 4 übermittelt werden dürfen, weitere personenbezogene Daten des Betroffenen oder eines Dritten in Akten so verbunden, daß eine Trennung nicht oder nur mit unvertretbarem Aufwand möglich ist, so ist die Übermittlung auch dieser Daten zulässig, soweit nicht berechtigte Interessen des Betroffenen oder eines Dritten an deren Geheimhaltung offensichtlich überwiegen;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dieser Daten durch den Empfänger ist unzulässig.

(8) Bei der Überwachung der Besuche oder des Schriftwechsels sowie bei der Überwachung des Inhaltes von Paketen bekanntgewordene personenbezogene Daten dürfen nur für die in Absatz 2 aufgeführten Zwecke, für das gerichtliche Verfahren nach den §§ 109 bis 121, zur Wahrung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oder nach Anhörung des Gefangenen für Zwecke der Behandlung verarbeitet und genutzt werden.

(9) Personenbezogene Daten, die gemäß § 179 Abs.3 über Personen, die nicht Gefangene sind, erhoben worden sind, dürfen nur zur Erfüllung des Erhebungszweckes, für die in Absatz 2 Nr.1 bis 3 geregelten Zwecke oder zur Verhinderung o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von erheblicher Bedeutung 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10) Die Übermittlung von personenbezogenen Daten unterbleibt, soweit die in § 182 Abs.2, § 184 Abs.2 und 4 geregelten Einschränkungen oder besondere gesetzliche Verwendungsregelungen entgegenstehen.

(11)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Vollzugsbehörde. Erfolgt die Übermittlung auf Ersuchen einer öffentlichen Stelle, trägt diese die Verantwortung. In diesem Fall prüft die Vollzugsbehörde nur, ob das Übermittlungsersuchen im Rahmen der Aufgaben des Empfängers liegt und die Absätze 8 bis 10 der Übermittlung nicht entgegenstehen, es sei denn, daß besonderer Anlaß zu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besteht.

§ **181 (Zweckbindung)** Von der Vollzugsbehörde übermittelte personenbezogene Daten dürfen nur zu dem Zweck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zu dessen Erfüllung sie übermittelt worden sind. Der Empfänger darf die Daten für andere Zwecke nur verarbeiten oder nutzen, soweit sie ihm auch für diese Zwecke hätten übermittelt werden dürfen, und wenn im Falle einer Übermittlung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die übermittelnde Vollzugsbehörde zugestimmt hat. Die Vollzugsbehörde hat den nicht-öffentlichen Empfänger auf die Zweckbindung nach Satz 1 hinzuweisen.

§ **182 (Schutz besonderer Daten)** (1) Das religiöse oder weltanschauliche Bekenntnis eines Gefangenen und personenbezogene Daten, die anläßlich ärzt-

licher Untersuchungen erhoben worden sind, dürfen in der Anstalt nicht allgemein kenntlich gemacht werden. Andere personenbezogene Daten über den Gefangenen dürfen innerhalb der Anstalt allgemein kenntlich gemacht werden, soweit dies für ein geordnetes Zusammenleben in der Anstalt erforderlich ist; § 180 Abs.8 bis 10 bleibt unberührt.

(2) Personenbezogene Daten, die den in § 203 Abs.1 Nr.1, 2 und 5 des Strafgesetzbuchs genannten Personen von einem Gefangenen als Geheimnis anvertraut oder über einen Gefangenen sonst bekanntgeworden sind, unterliegen auch gegenüber der Vollzugsbehörde der Schweigepflicht. Die in § 203 Abs.1 Nr.1, 2 und 5 des Strafgesetzbuchs genannten Personen haben sich gegenüber dem Anstaltsleiter zu offenbaren, soweit dies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er Vollzugsbehörde oder zur Abwehr von erheblichen Gefahren für Leib oder Leben des Gefangenen oder Dritter erforderlich ist. Der Arzt ist zur Offenbarung ihm im Rahmen der allgemeinen Gesundheitsfürsorge bekanntgewordener Geheimnisse befugt, soweit dies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er Vollzugsbehörde unerläßlich oder zur Abwehr von erheblichen Gefahren für Leib oder Leben des Gefangenen oder Dritter erforderlich ist. Sonstige Offenbarungsbefugnisse bleiben unberührt. Der Gefangene ist vor der Erhebung über die nach den Sätzen 2 und 3 bestehenden Offenbarungsbefugnisse zu unterrichten.

(3) Die nach Absatz 2 offenbarten Daten dürfen nur für den Zweck, für den sie offenbart wurden oder für den eine Offenbarung zulässig gewesen wäre, und nur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unter denen eine in § 203 Abs.1 Nr.1, 2 und 5 des Strafgesetzbuchs genannte Person selbst hierzu befugt wäre. Der Anstaltsleiter kann unter diesen Voraussetzungen die unmittelbare Offenbarung gegenüber bestimmten Anstaltsbediensteten allgemein zulassen.

(4) Sofern Ärzte oder Psychologen außerhalb des Vollzuges mit der Untersuchung oder Behandlung eines Gefangenen beauftragt werden, gilt Absatz 2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daß der beauftragte Arzt oder Psychologe auch zur Unterrichtung des Anstaltsarztes oder des in der Anstalt mit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betrauten Psychologen befugt sind.

§ 183 (**Schutz der Daten in Akten und Dateien**) (1) Der einzelne Vollzugsbedienstete darf sich von personenbezogenen Daten nur Kenntnis verschaffen, soweit dies zur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Aufgabe oder für die Zusammenarbeit nach § 154 Abs.1 erforderlich ist.

(2) Akten und Dateien mit personenbezogenen Daten sind durch die erforderlichen technischen und organisatorischen Maßnahmen gegen unbefugten Zugang und unbefugten Gebrauch zu schützen. Gesundheitsakten und Krankenblätter sind getrennt von anderen Unterlagen zu führen und besonders zu sichern. Im übrigen gilt für die Art und den Umfang der Schutzvorkehrungen § 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 184 (**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1) Die in Dateien gespeicherten personenbezogenen Daten sind spätestens zwei Jahre nach der Entlassung des Gefangenen oder der Verlegung des Gefangenen in eine andere Anstalt zu löschen. Hiervon können bis zum Ablauf der Aufbewahrungsfrist für die Gefangenenpersonalakte die Angaben über Familienname, Vorname, Geburtsname, Geburtstag, Geburtsort, Eintritts- und Austrittsdatum des Gefangenen ausgenommen werden, soweit dies für das Auffinden der Gefangenenpersonalakte erforderlich ist.

(2) Personenbezogene Daten in Akten dürfen nach Ablauf von zwei Jahren seit der Entlassung des Gefangenen nur übermittelt oder genutzt werden, soweit dies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2. für die Durchführung wissenschaftlicher Forschungsvorhaben gemäß § 186,
3. zur Behebung einer bestehenden Beweisnot,
4. zur Feststellung, Durchsetzung oder Abwehr von Rechtsansprüchen im Zusammenhang mit dem Vollzug einer Freiheitsstrafe

unerläßlich ist. Diese Verwendungsbeschränkungen enden, wenn der Gefangene erneut zum Vollzug einer Freiheitsstrafe aufgenommen wird oder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3) Bei der Aufbewahrung von Akten mit nach Absatz 2 gesperrten Daten dürfen folgende Fristen nicht überschritten werden:

Gefangenenpersonalakten, Gesundheitsakten
und Krankenblätter 20 Jahre,
Gefangenenbücher 30 Jahre.

Dies gilt nicht, wenn aufgrund bestimmter Tatsachen anzunehmen ist, daß die Aufbewahrung für die in Absatz 2 Satz 1 genannten Zwecke weiterhin erforderlich ist. Die Aufbewahrungsfrist beginnt mit dem auf das Jahr der aktenmäßigen Weglegung folgenden Kalenderjahr. Die archivrechtlichen Vorschrift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bleiben unberührt.

(4) Wird festgestellt, daß unrichtige Daten übermittelt worden sind, ist dies dem Empfänger mitzuteilen, wenn dies zur Wahrung schutzwürdiger Interessen des Betroffenen erforderlich ist.

(5) Im übrigen gilt für die 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personenbezogener Daten § 20 Abs.1 bis 7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 185 (**Auskunft an den Betroffenen, Akteneinsicht**) Der Betroffene erhält nach Maßgabe des § 1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Auskunft und, soweit eine Auskunft für die Wahrnehmung seiner rechtlichen Interessen nicht ausreicht und er hierfür auf die Einsichtnahme angewiesen ist, Akteneinsicht. An die Stelle des Bu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in § 19 Abs.5 und 6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tritt der La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an die Stelle der obersten Bundesbehörde tritt die entsprechende Landesbehörde.

§ 186 (**Auskunft und Akteneinsicht für wissenschaftliche Zwecke**) Für die Auskunft und Akteneinsicht für wissenschaftliche Zwecke gilt § 476 der Strafprozessordnung entsprechend.

§ 187 (**Anwend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Die Regelungen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über öffentliche und nicht-öffentliche Stellen (§ 2), weitere Begriffsbestimmungen (§ 3), Einholung und Form der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 4 Abs.2 und 3), das Datengeheimnis (§ 5), unabdingbare Rechte des Betroffenen (§ 6 Abs.1) und die Durchführung des Datenschutzes (§ 18 Abs.2 und 3) gelten entsprechend. Die Landesdatenschutzgesetze bleiben im Hinblick

auf die Schadensersatz-,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sowie die Bestimmungen über die Kontrolle durch die La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unberührt.

Sechster Titel - Anpassung des Bundesrechts

§ 188 (gestrichen)

§ 189 (Verordnung über Kosten im Bereich der Justizverwaltung)

Siebter Titel - Sozia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 190 (Reichsversicherungsordnung)

§ 191 (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z)

§ 192 (Reichsknappschaftsgesetz)

§ 193 (Gesetz über die Krankenversicherung der Landwirte)

§ 194 (gestrichen)

§ 195 (Einbehaltung von Beitragsteilen) Soweit die Vollzugsbehörde Beiträge zur Kranken- und Rentenversicherung sowie zu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 entrichten hat, kann sie von dem Arbeitsentgelt, der Ausbildungsbeihilfe oder der Ausfallentschädigung einen Betrag einbehalten, der dem Anteil des Gefangenen am Beitrag entsprechen würde, wenn er diese Bezüge als Arbeitnehmer erhielte.

Achter Titel -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Inkrafttreten

§ 196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urch dieses Gesetz werden die Grundrechte aus Artikel 2 Abs.2 Satz 1 und 2 (körperliche Unversehrtheit und Freiheit der Person) und Artikel 10 Abs.1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des Grundgesetzes eingeschränkt.

§ **197** (gestrichen)

§ **198 (Inkrafttreten)** (1) Dieses Gesetz tritt unbeschadet der §§ 199 und 201 am 1. Januar 1977 in Kraft, soweit die Absätze 2 und 3 nichts anderes bestimmen.

(2) Am 1. Januar 1986 treten folgende Vorschriften in Kraft:

§ 37 - Arbeitszuweisung

§ 39 Abs.1 - Frei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 41 Abs.2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weiterbilden den Maßnahmen

§ 42 - Freistellung von der Arbeitspflicht

§ 149 Abs.1 - Arbeitsbetriebe, Einrichtungen zur beruf lichen Bildung

§ 162 Abs.1 - Beiräte

2. (gestrichen)

3. (gestrichen)

(3) Durch besonderes Bundesgesetz werden die folgenden Vorschriften an inzwischen vorgenommene Gesetzesänderungen angepaßt und in Kraft gesetzt:

§ 41 Abs.3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Beschäftigung in Unternehmerbetrieben

§ 45 - Ausfallentschädigung

§ 46 - Taschengeld

§ 47 - Hausgeld

§ 49 - Unterhaltsbeitrag

§ 50 - Haftkostenbeitrag

§ 65 Abs.2 Satz 2 - Krankenversicherungsleistungen bei Krankenhausaufenthalt

§ 93 Abs.2 - Inanspruchnahme des Hausgeldes

§ 176 Abs.2 und 3 - Ausfallentschädigung und Taschengeld im Jugendstrafvollzug

§ 189 - Verordnung über Kosten

§ 190 Nr.1 bis 10 und 13 bis 18,

§§ 191 bis 193 - Sozialversicherung.

(4) Über das Inkrafttreten des § 41 Abs.3 - Zustimmungsbedürftigkeit bei Beschäftigung in Unternehmerbetrieben - wird zum 31. Dezember 1983 und über

die Fortgeltung des § 201 Nr.1 - Unterbringung im offenen Vollzug - wird zum 31. Dezember 1985 befunden.

§ **199 (Übergangsfassungen)** Bis zum Inkrafttreten des besonderen Bundesgesetzes nach § 198 Abs.3 gilt folgendes:

1. § 46 - Taschengeld - erhält folgende Fassung: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 tig ist.«
2. § 47 - Hausgeld - erhält folgende Fassung:
   »(1) Der Gefangene darf von seinen in diesem Gesetz geregelten Bezügen zwei Drittel monatlich (Hausgeld) und das Taschengeld (§ 46) für den Einkauf (§ 22 Abs.1) oder anderweit verwenden.
   (2) Für Gefangene,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en (§ 39 Abs.1) oder denen gestattet ist, sich selbst zu beschäftigen (§ 39 Abs.2), wird aus ihren Bezügen ein angemessenes Hausgeld festgesetzt.«
3. § 50 - Haftkostenbeitrag - erhählt folgende Fassung:
   »(1) Von Gefangenen, die Bezüge nach diesem Gesetz erhalten, werden Haftkosten nicht erhoben.
   (2) Von Gefangenen, die in einem freien Beschäftigungs verhältnis stehen (§ 39 Abs.1), darf ein Haftkosten beitrag in Höhe des Betrages erhoben werden, der nach § 17 Abs.1 Nr.3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durchschnittlich zur Bewertung der Sachbezüge festgesetzt ist.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tellt den Durchschnittsbetrag für jedes Kalenderjahr nach den am 1. Oktober des vorhergehenden Jahres geltenden Bewertungen der Sachbezüge, jeweils getrennt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und für das Gebiet, in dem das Strafvollzugsgesetz schon vor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gegolten hat, fest und macht ihn im Bundesanzeiger bekannt. Der Haftkostenbeitrag darf auch von dem unpfändbaren Teil der Bezüge, jedoch nicht zu Lasten des Hausgeldes oder des Unterhaltsbeitrages, angesetzt werden.

(3) Die Selbstbeschäftigung (§ 39 Abs.2) kann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er Gefangene einen Haftkostenbeitrag bis zur Höhe des in Absatz 2 genannten Satzes monatlich im voraus entrichtet.

(4) Im Land Berlin gilt einheitlich der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geltende Durchschnittsbetrag.«

4. § 93 Abs.2 - Inanspruchnahme des Hausgeldes - erhält folgende Fassung: »(2) Bei der Geltendmachung dieser Forderungen kann auch ein den fünfachen Tagessatz der Eckvergütung nach § 43 Abs.1 übersteigender Teil des Hausgeldes (§ 47) in Anspruch genommen werden.«
5. § 176 Abs.3 - Taschengeld im Jugendstrafvollzug - erhält folgende Fassung: »(3) Wenn ein Gefangener ohne sein Verschulden kein Arbeitsentgelt und keine Ausbildungsbeihilfe erhält, wird ihm ein angemessenes Taschengeld gewährt, falls er bedürftig ist.«
6. (aufgehoben)

(3) Bis zum 31. Dezember 2002 gilt § 9 Abs.1 Satz 1 in der folgenden Fassung: »Ein Gefangener soll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verlegt werden, wenn er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4 bis 180 oder 182 des Strafgesetzbuches zu zeitiger Freiheitsstrafe von mehr als zwei Jahren verurteilt worden ist und die Behandlung in einer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 nach § 6 Abs.2 Satz 2 oder § 7 Abs.4 angezeigt ist.«

§ 200 (**Höhe des Arbeitsentgelts**) (1) Der Bemessung des Arbeitsentgelts nach § 43 sind fünf vom Hundert der Bezugsgröße nach § 18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zugrunde zu legen.

(2) Über eine Erhöhung des Anteils von dem in Absatz 1 bezeichneten Arbeitsentgelt wird zum 31. Dezember 1980 befunden.

§ 201 (**Übergangsbestimmungen für bestehende Anstalten**) Für Anstalten, mit deren Errichtung vor Inkraftreten dieses Gesetzes begonnen wurde, gilt folgendes:

1. Abweichend von § 10 dürfen Gefangene ausschließlich im geschlossenen Vollzug untergebracht werden, solange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Anstaltsverhältnisse dies erfordern.

2. Abweichend von § 17 kann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und Freizeit auch eingeschränkt werden, wenn und solange die räumlichen, personellen und organisatoris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dies erfordern; die 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während der Arbeitszeit jedoch nur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88.
3. Abweichend vom § 18 dürfen Gefangene während der Ruhezeit auch gemeinsam untergebracht werden, solange die räumlichen Verhältnisse der Anstalt dies erfordern. Eine gemeinschaft liche Unterbringung von mehr als acht Personen ist nur bis zum Ablauf des 31. Dezember 1985 zulässig.
4. Abweichend von § 143 Abs.1 und 2 sollen Justizvollzugsanstalten so gestaltet und gegliedert werden, daß eine auf die Bedürfnisse des einzelnen abgestellte Behandlung gewährleistet ist und daß die Gefangenen in überschaubaren Betreuungs- und Behandlungsgruppen zusammengefaßt werden können.
5. Abweichend von § 145 kann die Belegungsfähigkeit einer Anstalt nach Maßgabe der Nummern 2 und 3 festgesetzt werden.

§ 202 **(Freiheitsstrafe und Jugend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 Für den Vollzug der nach dem Straf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gen Jugendliche und Heranwachsende erkannten Freiheitsstrafe gelten die Vorschriften für den Vollzug der Jugendstrafe, für den Vollzug der Jugendhaft die 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s Jugendarrestes.
(2) Im übrigen gelten für den Vollzug der nach dem Straf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tskräftig erkannten Freiheitsstrafe und der Haftstrafe die Vorschriften des Strafvollzugsgesetzes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빈 면

III. Strafvollstreckungsordnung(StvollstrO)

vom 15. Februar 1956 in der ab 1. Marz 2001 geltenden Fassung

§ 1 **(Geltungsbereich)** (1) Die Vorschriften der Strafvollstreckungsordnung gelten für die Vollstreckung von Urteilen und ihnen, gleichstehenden Entscheidungen, die auf eine Strafe, Nebenstrafe. Nebenfolge od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lauten.

(2) Die Vorschriften der Strafvollstreckungsordnung gelten ferner, soweit die §§ 87, 88 dies bestimmen, für die Vollstreck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nach dem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sowie für die Vollstreckung von Ordnungs- und Zwangshaft in Straf- und Bußgeldsachen.

(3) Für die Vollstreckung von Entscheidungen gegen Jugendliche und Heranwachsende gelten die Vorschriften der Strafvollstreckungsordnung nur, soweit das Jugendgerichtsgesetz (JGG), die Richtlinien (RiJGG) dazu einschließlich der Verwaltungsvorschriften zum Jugendstrafvollzug (VVJug), die Bundeswehrvollzugsordnung und das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nichts anderes bestimmen.

§ 2 **(Nachdrückliche Vollstreckung)** (1)Im Interesse einer wirksamen Strafrechtspflege ist die richterliche Entscheidung mit Nachdruck und Beschleunigung zu vollstrecken.

(2) Durch Gnadengesuche sowie durch andere Gesuche und Eingaben darf die Vollstreckung grundsätzlich nicht verzögert werden.

§ 3 **(Aufgaben der Vollstreckungsbehörde)** (1) Die Vollstreckungsbehörde prüft, ob die Voraussetzungen der Vollstreckung gegeben sind. Sie trifft die Anordnungen, die zur Durchführung der Entscheidung erforderlich sind.

(2)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llstreckungsbehörde erstreckt sich nicht auf den besonderen Pflichtenkreis der Vollzugsbehörde.

§ 4 (**Vollstreckungsbehörde**) Vollstreckungsbehörde ist

a) die Staatsanwaltschaft,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b) die Generalstaatsanwaltschaft, wenn das Oberlandesgericht im ersten Rechtszug entschieden hat und nicht ein Fall der Nummer 3 vorliegt;

c) der Generalbundesanwalt beim Bundesgerichtshof in Sachen, in denen im ersten Rechtszug in Ausübung von Gerichtsbarkeit des Bundes entschieden worden ist (Artikel 96 Abs. 5 GG, §§ 120, 142a GVG).

§ 6 (**Sachliche Zuständigkeit für dringende Vollstreckungsanordnungen**) Ist die sachlich zuständige Vollstreckungsbehörde nicht alsbald erreichbar, so kann an Stelle der Staatsanwaltschaft die Generalstaatsanwaltschaft dringende Strafvollstreckungsanordnungen treffen.

§ 7 (**Örtliche Zuständigkeit der Vollstreckungsbehörde**) (1) Die örtliche Zuständigkeit der Vollstreckungsbehörde bestimmt sich nach dem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vgl. § 143 Abs. 1 GVG).

(2) Hat das Revisionsgericht in den Fällen des § 354 Abs. 2, der §§ 354a und 355 der Strafprozessordnung (StPO) eine Sache unter Aufhebung des Urteils zur Verhandlung und zur Entscheidung an ein anderes Gericht zurückverwiesen, so bestimmt sich die Zuständigkeit der Vollstreckungsbehörde nach diesem Gericht. Ist im Wiederaufnahmeverfahren eine Entscheidung nach § 373 StPO ergangen, so bestimmt sich die Zuständigkeit der Vollstreckungsbehörde in den Fällen des § 140a Abs. 1, 3 Satz 2 GVG nach dem Gericht, das diese Entscheidung getroffen hat.

(3) Ist die örtlich zuständige Vollstreckungsbehörde nicht alsbald erreichbar, so kann dringende Vollstreckungsanordnungen auch eine örtlich unzuständige Vollstreckungsbehörde treffen (vgl. § 143 Abs. 2 GVG).

(4) Die Zuständigkeit zur Vollstreckung einer nachträglich gebildeten Gesamtstrafe richtet sich nach dem Gericht, das sie gebildet hat (§§ 460, 462, 462a Abs. 3 StPO).

§ 8 (**Vollstreckung von Gesamtstrafen**) Die zur Vollstreckung einer

Gesamtstrafe zuständige Vollstreckungsbehörde teilt die Bildung der Gesamtstrafe und die Übernahme der Vollstreckung unverzüglich zu allen betroffenen Verfahren mit. Sie fügt der Mitteilung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s erkennenden Teils der Entscheidung über die Gesamtstrafe bei, auf welcher der Zeitpunkt des Eintritts der Rechtskraft vermerkt ist.

§ 9 **(Vollstreckungshilfe)** (1) Soll eine Vollstreckungsanordnung außerhalb des Landes, in dem die Vollstreckungsbehörde ihren Sitz hat, durch eine Landesbehörde durchgeführt werden, so ist - sofern nicht durch die Vereinbarung der Lä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Vereinfachung und zur Beschleunigung der Strafvollstreckung und der Vollstreckung anderer freiheitsentziehender Maßnahmen in Straf- und Bußgeldsachen vom 8.6.1999 (Anhang) eine einfachere und schnellere Durchführung ermöglicht wird - die hierfür örtlich zuständige Staatsanwaltschaft des anderen Landes um Vollstreckungshilfe zu ersuchen. Die Zuständigkeit bestimmt sich bei Ersuchen um Vollstreckung von Freiheitsstrafen nach den §§ 162, 163 GVG; in den übrigen Fällen, insbesondere bei Anordnungen nach §§ 63, 64 oder 66 des Strafgesetzbuches (StGB) sind diese Bestimmungen sinngemäß anzuwenden (§ 463 Abs. 1 StPO). Ist eine Maßregelvollzugseinrichtung eines anderen Landes für den Vollzug der Unterbringung nach §§ 63 oder 64 StGB zuständig, ist die örtlich zuständige Staatsanwaltschaft dieses Landes um Vermittlung der Aufnahme in die Maßregelvollzugseinrichtung zu ersuchen. Unberührt bleiben §§ 48 und 57. (2) Der Generalbundesanwalt kann in den Fällen, in denen er Vollstreckungsbehörde ist, unmittelbar vollstrecken.

§ 10 **(Strafvollstreckung durch den Rechtspfleger)** Für die Wahrnehmung der Geschäfte der Strafvollstreckung gelten § 31 des Rechtspflegergesetzes und die Verordnung über die Begrenzung der Geschäfte des Rechtspflegers bei der Vollstreckung in Straf- und Bußgeldsachen.

§ 13 **(Urkundliche Grundlage der Vollstreckung)** (1) Die Vollstreckung setzt die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voraus (§ 449 StPO).

(2) Urkundliche Grundlage der Vollstreckung ist die Urschrift oder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r Entscheidung oder ihres erkennenden Teils; auf ihr muss die Rechtskraft bescheinigt und angegeben sein, wann sie eingetreten ist (§ 451 Abs. 1 StPO).

(3) Die Rechtskraft kann bereits bescheinigt werden, bevor die schriftlichen Urteilsgründe vorliegen. Ist die verurteilte Person in Haft, so hat die die Rechtskraft bescheinigende Stelle die urkundliche Grundlage der Vollstreckung binnen drei Tagen nach Eintritt der Rechtskraft der Vollstreckungsbehörde zu übersenden.

(4) Die Rechtskraft bescheinigt die Urkundsbeamtin oder der Urkundsbeamte der Geschäftsstelle beim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Wird gegen ein Berufungsurteil keine Revision eingelegt, so bescheinigt sie die Urkundsbeamtin oder der Urkundsbeamte der Geschäftsstelle beim Berufungsgericht.

(5) Wird gegen ein Urteil Revision eingelegt, so behält die Vollstreckungsbehörde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s erkennenden Teils der für die Vollstreckung erforderlichen Urteile zurück. Die Urkundsbeamtin oder der Urkundsbeamte der Geschäftsstelle beim Revisionsgericht übersendet der Vollstreckungsbehörde unverzüglich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s erkennenden Teils des Revisionsurteils, wenn dieses die Rechtskraft des angefochtenen Urteils herbeigeführt hat oder selbst vollstreckungsfähig ist. Dasselbe gilt, wenn die Revision durch Beschluss verworfen wird und die Akten nicht sofort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 14 **(Weitere urkundliche Grundlagen der Vollstreckung)** (1) Weitere urkundliche Grundlage der Vollstreckung ist die Urschrift oder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r Entscheidung oder ihres erkennenden Teils, durch die

1. eine Verurteilung zu der vorbehaltenen Strafe (§ 59b StGB) ausgesprochen wird;
2. die Aussetzung einer Strafe, eines Strafrestes oder einer Unterbringung (§ 56f Abs. 1, § 57 Abs. 3, § 57a Abs. 3, § 67g Abs. 1 bis 3 StGB) oder ein Straferlass (§ 56g Abs. 2 StGB) widerrufen wird;
3. eine Anordnung über eine vom Urteil abweichende Reihenfolge der Vollstreckung von Freiheitsstrafen und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 67 Abs. 3 StGB) getroffen wird;

4. der Vollzug der Freiheitsstrafe angeordnet wird (§ 67 Abs. 5 Satz 2, Halbsatz 2 StGB);
5. die Überweisung in den Vollzug einer anderen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angeordnet wird (§ 67a Abs. 1 bis 3 StGB);
6. nach § 67c Abs. 2 StGB die Vollstreckung einer Unterbringung angeordnet wird;
7. nach § 67d Abs. 5 StGB bestimmt wird, dass die Unterbringung in einer Entziehungsanstalt nicht weiter zu vollziehen ist;
8. der Vollzug der nächsten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 angeordnet wird (§ 72 Abs. 3 StGB).

(2) § 13 Abs. 2, 3 und 4 Satz 1 gilt entsprechend.

§ 15 (Vollstreckungsheft) (1) Die zur Einleitung der Strafvollstreckung erforderlichen Akten soll die Vollstreckungsbehörde erst aus der Hand geben, wenn sie die erforderlichen Vollstreckungsanordnungen in die Wege geleitet hat. Die Durchführung eines Rechtsmittelverfahrens darf nicht verzögert werden.

(2) Ist damit zu rechnen, dass die Akten während der Vollstreckung anderweitig benötigt werden, oder handelt es sich um Strafsachen größeren Umfangs, so ist ein Vollstreckungsheft anzulegen. Bei Strafsachen mit mehreren Verurteilten ist für jede verurteilte Person ein besonderes Vollstreckungsheft erforderlich.

§ 16 (Inhalt des Vollstreckungsheftes) (1) Zum Vollstreckungsheft sind zu nehmen:

1. eine mit der Bescheinigung der Rechtskraft versehene beglaubigte Abschrift der Entscheidung und, soweit darin gemäß § 267 Abs. 4 StPO auf den Anklagesatz, die Anklage gemäß § 418 Abs. 3 Satz 2 StPO, den Strafbefehl oder den Strafbefehlsantrag verwiesen wird, auch eine beglaubigte Abschrift dieser Schriftstücke oder Entscheidungen sowie, wenn nachträglich eine Gesamtstrafe gebildet worden ist, auch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r einbezogenen Entscheidungen;

2. eine mit Bescheinigung der Rechtskraft versehene beglaubigte Abschrift der Beschlüsse,
   a) durch welche die Vollstreckung eines Strafrestes oder einer Unterbring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worden ist,
   b) die in § 14 Abs. 1 genannt sind;
3.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r Entscheidungen, durch die in den Fällen der Nummern 1 und 2 über ein Rechtsmittel entschieden worden ist, und eine beglaubigte Abschrift sonstiger die Strafvollstreckung betreffender Beschlüsse;
4. die für die Berechnung der Strafzeit maßgebenden Angaben;
5. sämtliche die Strafvollstreckung betreffenden Verfügungen, Gesuche, Eingaben und andere Eingänge.

(2) Kostenrechnungen, Zahlungsanzeigen und Nachrichten der zuständigen Kasse über die Löschung des Kostensolls sind unter dem Aktendeckel vor dem ersten Blatt des Vollstreckungsheftes einzuheften oder, wenn dieses nicht zu heften ist, lose zu verwahren (vgl. § 3 Abs. 3 der Kostenverfügung),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 17 (Absehen von der Vollstreckung bei Auslieferung und Ausweisung)

(1) Soll eine verurteilte Person wegen einer anderen Tat einer ausländischen Regierung ausgeliefert oder aus de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er Strafprozessordnung ausgewiesen werden, so prüft die Vollstreckungsbehörde - unter Beachtung der hierzu erlassenen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 ob und inwieweit es angezeigt ist, von der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einer Ersatzfreiheitsstrafe oder einer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bzusehen (§ 456a StPO). Sieht die Vollstreckungsbehörde von der Vollstreckung ab, so teilt sie dies der Ausländerbehörde mit und legt einen Suchvermerk im Bundeszentralregister nieder.

(2) Die Vollstreckungsbehörde soll zugleich mit dem Absehen von der Vollstreckung die Nachholung für den Fall anordnen, dass die ausgelieferte oder ausgewiesene Person zurückkehrt, und hierzu einen Haftbefehl oder einen Unterbringungsbefehl erlassen sowie die erforderlichen Fahndungsmaßnahmen,

insbesondere die Ausschreibung zur Festnahme, veranlassen. Hierüber ist die verurteilte Person in einer für sie verständlichen Sprache zu belehren. Die Belehrung ist aktenkundig zu machen. Sie kann der Vollzugsanstalt übertragen werden.

§ 18 **(Rechtshilfeverkehr mit dem Ausland)** Für den Rechtshilfeverkehr mit dem Ausland gelten insbesondere die jeweiligen völkerrechtlichen Übereinkünfte, das Gesetz über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das Überstellungsausführungsgesetz und die Richtlinien für den Verkehr mit dem Ausland in strafrechtlichen Angelegenheiten (RiVASt).

§ 19 **(Rechskraft bei einzelnen Verurteilten)** Haben von mehreren Angeklagten nur einzelne das Urteil mit der Revision angefochten, so steht § 357 StPO der Vollstreckung gegen die übrigen Verurteilten nicht entgegen. Ist zu erwarten, dass das Revisionsgericht das Urteil auch gegenüber der verurteilten Person, gegen die vollstreckt werden soll, als angefochten behandelt, so kann die Vollstreckung aufgeschoben oder unterbrochen werden.

§ 20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 Ist zweifelhaft, ob die Auslieferung oder Überstellung einer verurteilten Person erreicht werden kann, so beantrag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ie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 (§ 79b StGB) in der Regel erst, nachdem sie der obersten Justizbehörde berichtet hat.

§ 21 **(Beschwerde)** (1) Über Einwendungen gegen eine Entscheidung oder eine andere Anordnung der Vollstreckungsbehörde entscheidet, soweit nicht das Gericht dafür zuständig ist (§§ 458, 459h StPO, § 83 Abs. 1 JGG),

1. die Generalstaatsanwaltschaft, wenn die Staatsanwaltschaft bzw. die Jugendrichterin als Vollstreckungsleiterin oder der Jugendrichter als Vollstreckungsleiter,
2. die oberste Behörde der Landesjustizverwaltung, wenn die Generalstaatsanwaltschaft,

3.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enn der Generalbundesanwalt beim Bundesgerichtshof die beanstandete Entscheidung oder Anordnung getroffen hat.

(2) Durch Einwendungen nach Absatz 1 wird die Vollstreckung nicht gehemmt.

§ **22 (Vollstreckungsplan)** (1) Aus dem Vollstreckungsplan (§152 des Strafvollzugsgesetzes - StVollzG -) ergeben sich für jeden Gerichtsbezirk die Vollzugsanstalten, die für die Vollstreckung von Jugendarrest, Freiheitsstrafen und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achlich und örtlich zuständig sind.

(2) Der Vollstreckungsplan regelt auch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zur Vollstreckung von Jugendarrest, Freiheitsstrafen und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die im ersten Rechtszug in Ausübung von Gerichtsbarkeit des Bundes verhängt worden sind.

(3) Vollzieht die Bundeswehr Strafarrest (Artikel 5 Abs. 1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Wehrstrafgesetz - EGWStG -) oder auf Ersuchen der Vollstreckungsbehörde Freiheitsstrafe von nicht mehr als sechs Monaten oder Jugendarrest (Artikel 5 Abs. 2 EGWStG), so gibt die Befehlshaberin oder der Befehlshaber im Wehrbereich durch seine Rechtsberaterin oder seinen Rechtsberater die zuständige Vollzugseinrichtung der Bundeswehr an. Von einem Vollstreckungsersuchen (Artikel 5 Abs. 2 EGWStG) ist regelmäßig abzusehen, wenn

1. die Soldatin oder der Soldat aus persönlichen Gründen oder wegen der der Verurteilung zu Grunde liegenden Straftat für den Vollzug bei der Bundeswehr ungeeignet ist;
2. die Bildung einer höheren als einer sechsmonatigen Gesamtstrafe zu erwarten ist;
3. die Soldatin oder der Soldat vor dem voraussichtlichen Strafende aus dem Dienst bei der Bundeswehr ausscheidet;
4. gegen die Soldatin oder den Soldaten in anderer Sache Untersuchungshaft, Sicherungshaft nach § 453c StPO oder eine einstweilige Unterbringung nach § 126a StPO angeordnet worden ist.

Im Falle des Satz 2 Nr. 4 ist ein bereits eingeleiteter Strafvollzug in Vollzugseinrichtungen der Bundeswehr in der Regel zu unterbrechen.

§ 23 **(Sachliche Vollzugszuständigkeit)** (1) Soweit der Vollstreckungsplan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einer Vollzugsanstalt von der Vollzugsdauer abhängig macht, kommt es auf die Zeit an, welche die verurteilte Person vom Tage der bevorstehenden Aufnahme in die zuständige Vollzugsanstalt an im Strafvollzug zuzubringen hat. Ist eine nachträglich gebildete Gesamtstrafe zu vollstrecken, nachdem die Vollstreckung einer in sie einbezogenen Strafe bereits begonnen hat oder beendet ist, so ist der Strafrest maßgebend, der bei Beginn des Vollzuges der Gesamtstrafe verbleibt; von einer Verlegung ist abzusehen, wenn der verbleibende Strafrest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der Vollzugsanstalt nicht übersteigt. Für die sachliche Vollzugszuständigkeit bei Vollstreckung mehrerer Freiheitsstrafen gilt § 43 Abs. 6.

(2) Soweit sich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einer Vollzugsanstalt nach dem Alter der verurteilten Person richtet, ist der Tag der bevorstehenden Aufnahme in die zuständige Vollzugsanstalt maßgebend.

(3) Die Vollzugsbehörde kann die Aufnahme nicht ablehnen, wenn die Vollzugsdauer oder das Alter, nach dem Tage der Aufnahme berechnet, um nicht mehr als zwei Wochen vom Vollstreckungsplan abweicht.

§ 24 **(Örtliche Vollzugszuständigkeit)** (1) Die örtliche Zuständigkeit der Vollzugsanstalt richtet sich nach dem Gerichtsbezirk, in dem die verurteilte Person wohnt, sich aufhält oder bei behördlicher Verwahrung sich zuletzt aufgehalten hat, bei Soldatinnen und Soldaten auch nach dem Gerichtsbezirk, in dem der Standort liegt. Ist die verurteilte Person behördlich verwahrt, so richtet sich die Zuständigkeit bei einer Vollzugsdauer bis zu sechs Monaten nach dem Verwahrungsort. Wohnort ist der Ort, an dem die verurteilte Person den Schwerpunkt ihrer Lebensbeziehungen hat und an dem sie freiwillig unter Umständen verweilt, die darauf schließen lassen, dass das Verweilen von einer gewissen Dauer und Regelmäßigkeit ist. Aufenthaltsort ist der Ort, an dem die nicht in behördlicher Verwahrung befindliche verurteilte Person - auch nur für kurze

Zeit - tatsächlich anwesend ist.

(2) Wird eine Strafe mit einer Vollzugsdauer von mehr als sechs Monaten in einer für den Aufenthaltsort zuständigen Vollzugsanstalt vollzogen, so ist die verurteilte Person in die für den Wohnort' zuständige Vollzugsanstalt zu verlegen, wenn sie es binnen zwei Wochen nach der Aufnahmeverhandlung (Nummer 16 der Vollzugsgeschäftsordnung - VGO -) bei der Vollzugsanstalt beantragt. Wird eine solche Strafe im Anschluss oder in Unterbrechung der Untersuchungshaft vollzogen, so ist die verurteilte Person in die für den Wohnort zuständige Vollzugsanstalt zu verlegen, wenn sie dies binnen zwei Wochen nach der Mitteilung gemäß Nummer 32 Abs. 5 VGO bei der Vollzugsanstalt beantragt. Die Vollzugsanstalt weist sie bei der Aufnahmeverhandlung oder bei der Mitteilung nach Nummer 32 Abs. 5 VGO auf diese Möglichkeit hin und gibt der Vollzugsanstalt des anderen Landes, in welche die verurteilte Person verlegt werden soll, zur Prüfung die die örtliche Zuständigkeit der Vollzugsanstalt begründenden Umstände an und teilt mit, wie der Wohnort der verurteilten Person festgestellt wurde.

(3) Für eine verurteilte Person, die sich im Ausland aufhält und für die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er Strafprozessordnung keine örtliche Vollzugszuständigkeit nach Absatz 1 besteht, richtet sich die örtliche Zuständigkeit der Vollzugsanstalt nach dem Sitz des Gerichts, das im ersten Rechtszug erkannt hat. Bei einer Vollzugsdauer bis zu sechs Monaten kann die verurteilte Person auch in diejenige sachlich zuständige Vollzugsanstalt eingewiesen werden, die mit dem geringsten Aufwand an Überführungskosten zu erreichen ist.

(4) Ist der Vollzug - z.B. auf Grund der Aussetzung eines Strafrestes zur Bewährung oder durch Entweichen der verurteilten Person - unterbrochen worden, so wird er in der Vollzugsanstalt, in der sie sich vor der Unterbrechung befunden hat, fortgesetzt. In dieser Anstalt werden auch weitere Strafen vollzogen, wenn der Rest der Gesamtvollzugsdauer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dieser Anstalt nicht übersteigt. Befindet die verurteilte Person sich jedoch zum Vollzug einer weiteren Strafe bereits in einer anderen sachlich und örtlich zuständigen oder nach § 26 bestimmten Vollzugsanstalt in Strafhaft, so werden der Strafrest und weitere Strafen in dieser Anstalt vollzogen, wenn sie auch für den

Rest der Gesamtvollzugsdauer zuständig ist; dies gilt sinngemäß, wenn die verurteilte Person nachträglich nach Absatz 2 Satz 1 und 2 in eine andere Vollzugsanstalt verlegt wird. Im Übrigen richtet sich die örtliche Zuständigkeit zum Vollzug weiterer Strafen nach den Absätzen 1 bis 3. Hatte sich die verurteilte Person vor der Unterbrechung in einer Anstalt des offenen Vollzuges oder des Erstvollzuges befunden, ist für den weiteren Vollzug die zuständige Anstalt des geschlossenen Vollzuges oder des Regelvollzuges maßgebend; dies gilt nicht für die in § 455 Abs. 4, § 455a StPO bezeichneten Fälle, für Fälle der Unterbrechung im Gnadenwege und soweit Anstalten des offenen Vollzuges oder des Erstvollzuges über geschlossene Abteilungen verfügen.

(5) Der Generalbundesanwalt weist vorbehaltlich besonderer Vereinbarung mit einer Landesjustizverwaltung die verurteilte Person in die zuständige Vollzugsanstalt des Landes ein, in dem diese zuletzt gewohnt oder sich aufgehalten hat.

§ 25 **(Strafvollstreckung bei jungen Verurteilten)** Für die Vollstreckung von Freiheitsstrafen an Verurteilten unter 24 Jahren gelten die Richtlinien zu § 114 JGG.

§ 26 **(Abweichen vom Vollstreckungsplan)** (1) Vom Vollstreckungsplan darf von Amts wegen oder auf Antrag bezüglich der örtlichen oder der sachlichen Vollzugszuständigkeit aus den Gründen der § 7 Abs. 4, §§ 8, 65, 85, 152 Abs. 2 Satz 2 StVollzG abgewichen werden. Bei 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gemäß §§ 63, 64 StGB, § 7 JGG gilt Satz 1, soweit die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über den Maßregelvollzug nichts anderes bestimmen.

(2) Ein Abweichen erfolgt in den in Absatz 1genannten Fällen vor Beginn des Vollzuges durch Einweisung und nach Beginn des Vollzuges durch Verlegung und bedarf der Zustimmung der höheren Vollzügsbehörde. Untersteht die Vollzugsanstalt, in die eingewiesen oder verlegt werden soll, einer anderen höheren Vollzügsbehörde des Landes, so muss auch diese zustimmen. Soll in die Vollzugsanstalt eines anderen Landes eingewiesen oder verlegt werden, so bedarf es einer Einigung der obersten Vollzugsbehörden beider Länder.

(3) Vollstreckt die Vollstreckungsbehörde ein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ach §§ 63, 64 StGB, § 7 JGG und soll die verurteilte Person in Abweichung vom Vollstreckungsplan in eine Einrichtung eines anderen Landes eingewiesen werden, so ist auf dem Dienstwege der obersten Justizbehörde zu berichten, damit diese die Entscheidung der zuständigen Behörden des anderen Landes herbeiführen kann.

§ 27 **(Ladung zum Strafantritt)** (1) Ist die verurteilte Person auf freiem Fuß, so lädt die Vollstreckungsbehörde sie unmittelbar zum Strafantritt, es sei denn, dass die Strafe in der Vollzugsanstalt eines anderen Landes zu vollziehen ist und die Voraussetzungen der Vereinbarung der Länder zur Vereinfachung und zur Beschleunigung der Strafvollstreckung und der Vollstreckung anderer freiheitsentziehender Maßnahmen in Straf- und Bußgeldsachen vom 8.6.1999 (Anhang) nicht vorliegen.

(2) In der Ladung ist der verurteilten Person grundsätzlich eine Frist zu setzen, binnen der sie sich in der angegebenen Vollzugsanstalt einzufinden hat; die Frist wird in der Regel so bemessen, dass ihr mindestens eine Woche zum Ordnen ihrer Angelegenheiten bleibt. Zum sofortigen Strafantritt kann geladen werden, wenn die sofortige Vollstreckung geboten ist. In der Ladung wird sie darauf hingewiesen, dass sie mit Zwangsmaßnahmen zu rechnen habe, falls sie ihr nicht fristgemäß (Satz 1) oder nicht rechtzeitig (Satz 2) Folge leistet.

(3) Die verurteilte Person kann durch einfachen Brief geladen werden. Eine förmliche Zustellung der Ladung ist jedoch erforderlich, wenn sie zum sofortigen Strafantritt geladen wird, der Ladung im Interesse beschleunigter Vollstreckung besonderer Nachdruck gegeben werden soll, eine formlose Ladung nach den Umständen des Einzelfalles keinen Erfolg verspricht oder sie bereits vergeblich gewesen ist. Die Ladung zum sofortigen Strafantritt kann der verurteilten Person, insbesondere wenn sie an der Amtsstelle anwesend ist, auch mündlich eröffnet werden.

(4) Wird eine Soldatin oder ein Soldat zum Strafantritt geladen, so übersendet die Vollstreckungsbehörde der oder dem nächsten Disziplinarvorgesetzten gleichzeitig eine Abschrift der Ladung.

(5) Hat die verurteilte Person offenbar nicht die Mittel, um von ihrem Wohn- oder Aufenthaltsort aus der Ladung in die zuständige Vollzugsanstalt nachzukommen, so kann sie in eine näher gelegene Anstalt geladen werden; von dort ist sie der zuständigen Anstalt zuzuführen.

§ 28 (**Überführungsersuchen**) (1) Ist die verurteilte Person nicht auf freiem Fuß, so veranlasst die Vollstreckungsbehörde, soweit erforderlich, ihre Überführung in die zuständige Vollzugsanstalt. Befindet sie sich in anderer Sache in Untersuchungshaft, so ist die Strafe möglichst in Unterbrechung der Untersuchungshaft zu vollstrecken; in Fällen dieser Art kann vom Vollstreckungsplan abgewichen werden (§ 26), wenn hierdurch die schwebende Untersuchung erleichtert oder beschleunigt wird. Die Untersuchungshaft ist nicht zu unterbrechen, wenn Strafarrest zu vollstrecken ist. In den Fällen, in denen um Vollstreckung durch Behörden der Bundeswehr ersucht werden kann (§ 22 Abs. 3), darf die Untersuchungshaft nur unterbrochen werden, wenn die Vollstreckung in einer Justizvollzugsanstalt erfolgt.
(2) Im Falle des § 27 Abs. 5 ist zugleich mit der Ladung der verurteilten Person das Überführungsersuchen an die Anstalt zu senden, in die sie geladen ist.

§ 29 (**Einweisung durch das Aufnahmeersuchen**) (1) Die Vollstreckungsbehörde weist die verurteilte Person durch ein Aufnahmeersuchen in die zuständige Vollzugsanstalt ein. Das Aufnahmeersuchen ist der Vollzugsanstalt in zwei Stücken zu übersenden; es muss ihr noch vor dem Eintreffen der verurteilten Person zugehen.
(2) Werden gleichzeitig mehrere Verurteilte eingewiesen, so ist für jede verurteilte Person ein besonderes Aufnahmeersuchen zu stellen.
(3) Ist der verurteilten Person der Beschluss über den Widerruf der Aussetzung der Strafe, des Strafrestes, der Unterbringung, des Straferlasses oder über die nach § 67c Abs. 2 StGB angeordnete Vollstreckung der Unterbringung öffentlich zugestellt, so sind dem Aufnahmeersuchen zur Aushändigung an die verurteilte Person beizufügen

1. je eine Ausfertigung oder beglaubigte Abschrift der genannten Beschlüsse und
2. eine Belehrung über die Möglichkeit, die nachträgliche Anhörung (§ 33a

StPO) oder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zu beantragen und gleichzeitig sofortige Beschwerde einzulegen (§§ 44, 45, 453 Abs. 2 Satz 3 StPO).

§ 30 (**Inhalt des Aufnahmeersuchen**) (1) Das Aufhahmeersuchen muss - außer den Angaben zur verurteilten Person - enthalten:

1. die genaue Bezeichnung der zu vollstreckenden Entscheidung (Angabe des Gerichts, des Tages der Entscheidung und des Aktenzeichens);
2. die Bezeichnung der Tat;
3. Art und Dauer der zu vollstreckenden Strafe;
4. den Zeitpunkt, von dem an die Strafzeit zu berechnen ist;
5. die Zeitdauer der anzurechnenden Untersuchungshaft oder sonstigen Freiheitsentziehung;
6. die etwa schon verbüßte Strafzeit;
7. den Zeitpunkt, bis zu dem sich die verurteilte Person zum Strafantritt zu stellen hat (§ 27 Abs. 2), oder die Angabe, dass sie aus behördlicher Verwahrung der Strafhaft zugeführt wird (§ 28);
8. Angaben über die Staatsangehörigkeit der verurteilten Person;
9. die Begründung für die Zuständigkeit der Vollzugsanstalt, wenn die Einweisung vom Vollstreckungsplan abweicht;
10. bei Soldatinnen und Soldaten die nächste disziplinarvorgesetzte Person und deren Anschrift; dabei ist auf Nummer 52 Abs. 6 VGO hinzuweisen;
11. einen Hinweis, falls eine Entscheidung über Halbstrafenentlassung von Amts wegen zu treffen ist (§ 57 Abs. 2 Nr. 1 StGB).

(2) Außerdem nimmt die Vollstreckungsbehörde andere für den Vollzug besonders wichtige Angaben aus dem Inhalt der Sachakten in das Aufnahmeersuchen auf. Dies gilt insbesondere, wenn ihr Umstände bekannt sind, die auf Selbsttötungsgefahr, Fluchtverdacht, die Gefahr gewalttätigen Verhaltens gegen Beamtinnen und Beamte oder Mitgefangene hindeuten oder sonst für die Sicherheit und Ordnung in der Vollzugsanstalt bedeutsam sind. Ist die verurteilte Person im Strafverfahren oder vor Strafantritt auf ihren körperlichen oder geistigen Zustand untersucht worden, so muss das Aufnahmeersuchen einen Hinweis

auf die Untersuchung enthalten, auch wenn Gutachten nicht beigefügt werden (§ 31 Abs. 2).

§ 31 **(Anlagen zum Aufnahmeersuchen)** (1) Dem Aufnahmeersuchen sind beizufügen:

1. eine vollständige Abschrift der in § 16 Abs. 1 Nm. 1 und 3 genannten Entscheidungen mit Ausnahme solcher Teile, die geheimhaltungsbedürftig sind; falls die Abschrift der vollständigen Entscheidung zur Zeit des Aufnahmeersuchens noch nicht vorliegt, ist sie unverzüglich nachzusenden;
2. ein Auszug aus dem Bundeszentralregister, der möglichst nicht älter als sechs Monate ist.

(2) Enthalten die Strafakten oder das Vollstreckungsheft ein Gutachten über den körperlichen oder geistigen Zustand der verurteilten Person, so soll die Vollstreckungsbehörde eine Abschrift des Gutachtens übersenden, sofern dieses für den Vollzug von Bedeutung sein kann.

§ 33 **(Vorführungs- und Haftbefehl)** (1) Die Vollstreckungsbehörde erlässt einen Vorführungs- oder Haftbefehl (vgl. § 457 Abs. 2 Satz 1 StPO), wenn die verurteilte Person sich auf die an sie ergangene Ladung (§ 27 Abs. 3) ohne ausreichende Entschuldigung nicht

1. binnen einer ihr gesetzten Frist (§ 27 Abs. 2 Satz 1) oder
2. im Falle einer Ladung zum sofortigen Strafantritt (§ 27 Abs. 2 Satz 2) spätestens am Tage nach deren Zustellung zum Strafantritt gestellt hat.

(2) Dasselbe gilt, wenn

1. der Verdacht begründet ist, die verurteilte Person werde sich der Strafvollstreckung zu entziehen suchen,
2. die verurteilte Person sich nach mündlicher Eröffnung der Ladung (§ 27 Abs. 3 Satz 3) nicht zum sofortigen Strafantritt bereit zeigt oder
3. die verurteilte Person aus dem Strafvollzug entwichen ist oder sich sonst dem Vollzug entzieht (§ 457 Abs. 2 StPO).

(3) Zur Beschleunigung der Strafvollstreckung kann ein Vorführungs- oder

Haftbefehl bereits bei der Ladung für den Fall ergehen, dass die verurteilte Person sich nicht fristgemäß oder nicht rechtzeitig stellt. Er darf erst vollzogen werden, wenn

1. der Zugang der Ladung nachgewiesen ist und die Vollstreckungsbehörde durch Anfrage bei der Vollzugsanstalt festgestellt hat, dass die verurteilte Person sich nicht bis zu dem in Ladung bezeichneten Zeitpunkt gestellt hat, oder
2. die Ladung nicht ausführbar und der Verdacht begründet ist, die verurteilte Person werde sich der Vollstreckung zu entziehen suchen.

(4) Der Vorführungs- oder Haftbefehl muss enthalten:

1. die genaue Bezeichnung der verurteilten Person;
2. die Angabe der zu vollstreckenden Entscheidung;
3. Art und Dauer der zu vollstreckenden Strafe;
4. den Grund der Vorführung oder Verhaftung;
5. das Ersuchen um Vorführung oder Verhaftung;
6. die Angabe der Vollzugsanstalt, in die die verurteilte Person eingeliefert werden soll;
7. bei Ersatzfreiheitsstrafen die Angabe des Geldbetrages, bei dessen nachgewiesener Zahlung die Vorführung oder Verhaftung unterbleibt.

(5) Um die Vollziehung von Vorführungs- und Haftbefehlen können die Polizeidienststellen des Landes ersucht werden, bei Soldatinnen und Soldaten auch die Feldjägereinheiten. Soll die Polizeidienststelle eines anderen Landes ersucht werden, so ist nach § 9 Abs. 1 Satz 1 und 2 zu verfahren.

(6) Der Vorführungs- oder Haftbefehl ist der verurteilten Person, wenn möglich bei der Ergreifung, bekannt zu geben.

Ⅳ. Prisons (Scotland) Act 1989 (c. 45)

Central administration

General control over prisons in Scotland.

1. All powers and jurisdiction in relation to prisons and prisoners which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s (Scotland) Act 1877 were exercisable by any other authority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ntinue to be exercisable by the Secretary of State.

Appointment of officers and servant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1) There shall be employ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such inspectors and other officers and servants as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sanction of the Treasury as to number, may appoint.

(2) There shall be pai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to the inspectors and officers and servants appointed in pursuance of the foregoing subsection such salari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General superintèndence of prisons.

3. (1) The general superintendence of prisons shall be vested in the Secretary of State, who shall appoint the governors and other officers of prisons including medical officers, being medical practitioners duly registered under the Medical Acts.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ppoint to each prison a chaplain being a minister or a licentiate of the Church of Scotland.

(3)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make contracts and do all other act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prisons and prisoners therein.

(4) There shall be provided such office accommodation in connection with the

general superintendence of pris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may determine.

General duties in relation to prisons.

4. (1) Subject to any directions of the Secretary of State officers duly authorised by him shall visit and inspect all prisons and examine the state of the buildings, the conduct of officers, the treatment and conduct of the prisoners and all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risons.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himself or by any authorised officer, exercise in relation to any prison and the prisoners therein all powers and jurisdiction exercisable by the prison authority of a prison by virtue of any Act of Parliament or by any rules duly made thereunder.

Report to Parliament.

5.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t such time or times as he may think fit, cause a report to be prepared of the condition of the prisons and prisoners, and shall lay such report before Parliament.

(2) A report prepared under subsection (1) above shall state the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carried on in each prison with such particulars as to the kinds and quantities of, and the commercial value of the labour on, the manufactures, and as to the number of prisoners employed and otherwise as may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be best calculated to afford information to Parliament.

Annual return of punishments.

6.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make a yearly return to Parliament of all punishments inflicted within each prison and the offences for which they were inflicted.

Appointment and functions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Prisons for Scotland.

7. (1) Her Majesty may appoint a person to be Chief Inspector of Prisons for

Scotland.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hief Inspector to inspect or arrange for the inspection of prisons in Scotland and to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m.

(3) The Chief Inspector shall in particular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conditions in prisons.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fer specific matters connected with prisons in Scotland and prisoners in them to the Chief Inspector and direct him to report on them.

(5) The Chief Inspector shall in each year submit to the Secretary of State a report in such form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and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lay a copy of that report before Parliament.

(6) The Chief Inspector shall be paid such salary and allowanc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7)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prisons include legalised police cell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4(1) of this Act.

Visiting committees.

8. (1) Rules made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shall provide for the constitution, for prisons, of visiting committees appointed, at such times, in such manner, for such periods and by such regional, island and district council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rules.

(2) Rules made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shall prescribe the functions of visiting committees, and shall among other things require the members to pay frequent visits to the prison and hear any complaints which may be made by the prisoners and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ny matter which they consider it expedient to report; and any member of a visiting committee may at any time enter the prison and shall have free access to every part thereof and to every prisoner.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pay

(a) to the members of any visiting committee appointed under or in pursuance of this section such allowances in respect of loss of earnings or travelling or subsistence or other expenses necessarily suffered or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b) to the officers of any such committee such remuneration (whether by way of salary or fees) and such allowances in respect of travelling or subsistence expens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Appointment of prison ministers.

9. (1) Where in any prison the number of prisoners who belong to a religious denomination other than the Church of Scotland is such as in the opin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require the appointment of a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such a minister to that prison.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pay a minister appointed under the foregoing subsection such remuneration as he thinks reasonable.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allow a minister of any denomination other than the Church of Scotland to visit prisoners of his denomination in a prison to which no minister of that denomination has been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4) No prisoner shall be visited against his will by such a minister as is mentioned in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but every prisoner not belonging to the Church of Scotland shall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in force in the prison in which he is confined, to attend chapel or to be visited by the chaplain.

(5) The governor of a prison shall on the reception of each prisoner record the religious denomination to which the prisoner declares himself to belong, and shall give to any minister who under this section is appointed to the prison or permitted to visit prisoners therein a list of the prisoners who have declared themselves to belong to his denomination; and the minister shall not be permitted to visit any other prisoners.

Confine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Place of confinement of prisoners.

10. Prisoners shall be committed to such prison as may be appointed by

rules under this Act, and a convicted criminal prisoner may be rem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rom any one prison to any other prison for the purpose of undergoing any part of his sentence.

Removal of prisoners for judicial and other purposes.

11. (1) Rules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may provide in what manner an appella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79 of the 1975 Act, when in custody, is to be taken to, kept in custody at, and brought back from, any place at which he is entitled to be present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or any place to which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or any judge thereof, may order him to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s of that court.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he is satisfied that a person detained in Scotland in a prison requires medical or surgical treatment of any description, direct him to be taken to a hospital or other suitable place for the purpose of the treatment.

(3) Where any person is directed under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to be taken to any place he shall,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be kept in custody while being so taken, while at that place, and while being taken back to the prison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4) The governor or any officer of a prison may execute any warrant issued by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for the removal of a prisoner in that prison to any other prison for the purpose of trial before that court.

(5)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egulations as to the mode in which and the officers by whom warrants issued under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shall be executed.

Photographing and measuring of prisoners.

12.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egulations as to the measuring and photographing of prisoners and such regulations may prescribe the time or times at which, and the manner and dress in which prisoners shall be measured and photographed, and the number of copies of the measurements and photographs of

each prisoner which shall be made and the persons to whom they shall be sent.

Legal custody of prisoner.

13.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in legal custody

(a) while he is confined in or being taken to or from any prison in which he may be lawfully confined; or

(b) while he is working or is, for any other reason, outside the prison in the custody or under the control of an officer of the prison; or

(c) while he is being taken to any place to which he is required or authorised by or under this Act to be taken; or

(d) while he is kept in custody in pursuance of such requirement or authorisation.

Legalised police cells.

14. (1)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 application of a police authority, may from time to time by rules under this Act declare that any police cells or other premises in the possession of the police authority shall be a legal prison for the detention of prisoners before, during or after trial for any period not exceeding 30 days. Any such police cells or other premise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alised police cells.

(2) Any perso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e or offence committed within any region or islands area who might have been lawfully confined in a prison situated therein may be lawfully confined in any legalised police cells situated in that region or islands area for such period as aforesaid.

(3) The maintenance of prisoners confined in any legalised police cells shall be deemed to be the maintenance of prisoners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police authority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payment for the use of the legalised police cells or for services rendered by any of their officers in connection with the detention or removal of the prisoners so confined.

(4) The police authorit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section, shall at all times have a prior claim to the uninterrupted use of any legalised police cells in

their area.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police authority of any region or islands area in which there are any legalised police cells and all persons in their employmen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any rules made thereunder.

(6)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y arrangements required for the removal of any prisoners confined in legalised police cells in the islands area of Orkney or of Shetland.

(7) In this section the expression "police authority" means the council of a region or islands area, except that where there is an amalgamation scheme in force under the [1967 c. 77.] Police (Scotland) Act 1967 it means a joint police committee.

(8)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8 and 39 of this Act, legalised police cells shall be deemed to be prisons.

Right of sheriff or justice to visit prison.

15. (1) A sheriff or justice of the peace may visit any prison within his jurisdiction or in which a prisoner is confined for any offence committed within his jurisdiction, and may examine the condition of the prison and of the prisoners therein and enter in the visitors book to be kept by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y observations on the condition of the prison or on any abuses therein.

(2) Nothing in the foregoing subsection shall authorise a sheriff or justice of the peace to communicate with any prisoner except on the subject of his treatment in the prison nor to visit any prisoner under sentence of death.

(3)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or of a prison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visiting committee at their next visit to any entry in the visitors book made in pursuance of this section.

Discharge of prisoners

Discharge of prisoners.

16. (1) Where a prisoner would, but for this subsection, be discharged on a Saturday or Sunday, he shall be discharged on the preceding Friday.

(2) A prisoner discharged from a prison situated outside the district or islands

area in which he was convicted shall be entitled to be taken back to that district or islands area at the expense of the Secretary of State.

Allowances to prisoner on discharge.

17. (1) When a prisoner is discharged from prison the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him with the means of returning to his home by causing his fare to be paid or in any other convenient manner.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such payments to or in respect of persons released or about to be released from prisons as h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determine.

Constitution and functions of Parole Board and local review committees.

18. (1)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the functions conferred on it by this Act as respects Scotland there shall be a body to be known as the Parole Board for Scotland, consisting of a chairman and not less than four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Board to advise the Secretary of State with respect to

(a) the release on licence under section 22, 25 or 26 of this Act and the recall under section 25, 28, 31 or 32 of this Act of persons whose cases have been referred to the Board by the Secretary of State;

(b) the conditions of such licences and the variation or cancellation of such conditions; and

(c) any other matter so referred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ecall of persons to whom the said section 31 or 32 applies or the release on licence or recall of persons to whom the said section 22, 25 or 26 applies.

(3)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with respect to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on any case referred to it, that is to say

(a) the Board shall deal with the case on consideration of any documents given to it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of any reports it has called for and any in-

formation whether oral or in writing that it has obtained; and

(b) if in any particular case the Board thinks it necessary to interview the person to whom the case relates before reaching a decision, the Board may request one of its members to interview him an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port of that interview by that member;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foregoing,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ules mak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on cases referred to it, including provision authorising such cases to be dealt with by a prescribed number of members of the Board.

(4) The documents to be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Board under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shall include

(a) where the case referred to the Board is one of release under section 22, 25 or 26 of this Act, any written representations made by the person to whom the case relates in connection with or since his last interview in accordance with rules under the next following subsection;

(b) where the case so referred relates to a person recalled under section 25, 28, 31 or 32 of this Act, any written representations made under that section.

(5)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ules make provision

(a) for the establishment and constitution of local review committees having the duty of reviewing at such times or in such circumstances as may be prescribed by or determined under the rules the cases of persons who are or will become eligible for release under section 22, 25 or 26 of this Act, and reporting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ir suitability for release on licence; and

(b) for the interview of such persons by a member of any such committee (not being a prison officer);

and rules under this subsection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cases.

(6)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contained in Schedule 1 to this Act shall have effect with respect to the Parole Board and local review committees.

Detention and transfer of young offenders

Remand centres and young offenders institutions.

19.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a) remand centres, that is to say places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not less than 14 but under 21 years of age who are remanded or committed in custody for trial or sentence; and

(b) young offenders institutions, that is to say, places in which offenders sentenced to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may be kept.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provide in remand centres facilities for the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f any person detained therein on whose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a medical report may be desirable for the assistance of the court in determining the most suitable method of dealing with his case.

(3)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ppoint for every remand centre and young offenders institution a visiting committee of which not less than two members shall be justices of the peace and not less than such number of member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rules shall be women.

(4) The following provisions, that is to say

(a) sections 8(2) and (3), 11(2) and (3), 12 and 38 of this Act, and (b) subject as hereinafter provided, sections 1 to 7, 9, 10, 11(1), (4) and (5), 13 to 17, 24, 33 to 37 and 41 of this Act,

shall apply to remand centres and young offenders institutions, to persons detained therein and to visiting committees appointed therefor under subsection (3) above in like manner as the said provisions apply to prisons, prisoners and visiting committees appointed for prisons under section 8(1) of this Act:

Provided that

(i) section 11(4) and (5)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o young offenders institutions;

(ii) section 24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o remand centres;

(iii) the provisions specified in paragraph (b) of this subsection,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s (i) and (ii) of this proviso, shall apply as aforesaid subject to such adaptation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made by rules of the Secretary of State.

Temporary detention of persons liable to detention in young offenders institution or remand centre.

20. A person who is required to be taken to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or remand centre may, until arrangements can be made for taking him there, be temporarily detained elsewhere.

Transfer to prison of persons over 21, and maximum age for detention in young offenders institution.

21.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where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has attained the age of 21 year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have power to transfer him to prison.

(2) No person shall be detained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after he has attained the age of 23 years, and accordingly any person so detained shall, not later tha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his twenty-third birthday, be transferred to prison.

(3) Where a person has been transferred to prison under this section, he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his serving the unexpired part of his sentence and of his supervision on release as if the sentence of detention passed upon him were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like term, and the provisions of the 1975 Act and this Act relating to the treatment and supervision of prisoners shall apply to him accordingly:

Provided that section 212, or as the case may be section 421, of the 1975 Act (recall on reconviction) shall continue to apply to a person so transferred to prison.

Release on licence, etc.

Release on licence of persons serving determinate sentences.

22.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recommended to do so by the Parole Board, release on licence a person,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ther than imprisonment for life, or a sentence of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imposed in England and Wales, after he has served not less than one-third of his sentence or the specified period, whichever expires the later.

(2) In subsection (1) above, "the specified period" means 12 months or such period, not more than 12 month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provide.

(3) An order under subsection (2) above may make such incidental or supplementary provision (including provision amending enactments) as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appropriate.

(4) A person subject to a lic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comply with such conditions, if any, as may for the time being be specified in the licence.

(5)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Parole Board before including on release, or subsequently inserting, a condition in a licence under this section or varying or cancelling any such condition;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treated as having consulted the Board about a proposal to include, insert, vary or cancel a condition in any case if he has consulted the Board about the implementation of proposals of that description generally or in that class of case.

(6) A licence granted to any person under this section shall, unless previously revoked under section 62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or section 28 of this Act, remain in force until a date specified in the licence, being the date on which he could have been discharged from prison on remission of part of his sentence under rules made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if, after the date of his release on licence, he had not forfeited remission of any part of the sentence under the rules.

Release on licence without recommendation of Parole Board.

23. If, in any case falling within such class of case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ole Board, a local review committee recommends the release on licence of a person to whom subsection (1) of section 22 of this Act applie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be obliged to refer the case to the Board before releasing him under that subsection and, unless he nevertheless refers it to the Board, may so release him without any recommendation by the Board.

Remission for good conduct.

24. Rules made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may make provision whereby, in such circumstance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rules,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such a term as may be so prescribed, may be granted remission of such part of that sentence as may be so prescribed on the ground of his industry and good conduct; and on the discharge of a person from a prison in pursuance of any such remission as aforesaid his sentence shall expire.

Release on licence of children convicted on indictment.

25. (1) Subject to subsection (2) below,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lease on licence, on such conditions as may for the time being be specified in the licence, a person detained under section 206 of the 1975 Act (detention of children convicted on indictment).

(2) Where a person has been sentenced under the said section 206 to be detained for a period exceeding 18 months, the Secretary of State

(a) shall not release him on licence under subsection (1) above excep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arole Board; and

(b) shall consult the Board with regard to the inclusion or subsequent insertion of any condition in the licence or the variation or cancellation of any such condition; but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be treated as having consulted the Board about a proposal to include, insert, vary or cancel a condition in any case if he has consulted the Board about the implementation of proposals of that description generally or in that class of case.

(3) A licence granted under subsection (1) above shall, unless previously revoked under subsection (4) below, remain in force until the expiry of the period of

(a) detention specified by the court under the said section 206, or

(b) 12 months from the date of release under the licence,

whichever is the later.

(4) The Secretary of State may

(a)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arole Board, or

(b) at his own instance, where it appears to him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before consultation with the Board is practicable,
revoke a licence granted under subsection (1) above and recall the person released under the licence to a place in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directs that he should be detained; and on such revocation, the person shall be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his sentence, and, if at large,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5)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nform a person recalled under subsection (4) above of the reasons for his recall, so that the person may make representations in writing to the Parole Board with respect to his recall; and the Board may, on receipt of such representations, require the Secretary of State to release him on licence forthwith.

(6) Subject to subsection (5) above, a person detained in pursuance of subsection (4) above shall remain in detention until the expiry of the period of

(a) detention specified by the court under the said section 206; or

(b)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his detention in pursuance of the said subsection (4), whichever is the later:

Release on licence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etc.

26.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recommended to do so by the Parole Board, release on licence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life, or a sentence of custody for life imposed in England and Wales, or a person detained under section 205(2) or (3) of the 1975 Act (persons under 21 convicted of murder); but shall not release on licence such a person excep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ord Justice-General together with the trial judge, if available.

(2) Subsections (6) and (7) of section 22 of this Act shall apply in relation to a licence under this section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a licence under that section.

Power of Secretary of State to discharge prisoners temporarily on account of their health.

27. (1) If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by reason of the condition of a prisoner's health it is undesirable to detain him in prison, but that, such con-

dition of health being due in whole or in part to the prisoner's own conduct in prison, it is desirable that his release should be temporary and conditional only, the Secretary of State may, if he thinks fit,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by order authorise the temporary discharge of the prisoner for such period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stated in the order.

(2) Where an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is made in the case of a prisoner not under sentence, the order shall contain conditions requiring the attendance of the prisoner at any further proceedings on his case at which his presence may be required.

(3) Any prisoner discharged under this section shall comply with any conditions stated in the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and shall return to prison at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stated in the order, or of such extended period as may be fixed by any subsequent order of the Secretary of State, and, if the prisoner fails so to comply or return, he may be arrested without warrant and taken back to prison.

(4) Where a prisoner under sentence is discharged in pursuance of an order of temporary discharge, the currency of th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y on which he is discharged from prison under the order to the day on which he is received back into prison, so that the former day shall be reckoned and the latter shall not be reckoned as part of the sentence.

(5)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ffect the duties of the medical officer of a prison in respect of a prisoner whom the Secretary of State does not think fit to discharge under this section.

Revocation of licences and conviction of prisoners on licence.

28. (1) Where the Parole Board recommends the recall of any person who is subject to a licence under section 22 or 26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voke that person's licence and recall him to prison.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revoke the licence of any such person and recall him as aforesaid without consulting the Board, where it appears to him that it is expedient in the public interest to recall that person before such consultation is practicable.

(3) A person recalled to prison under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may make representations in writing with respect to his recall and shall on his return to prison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his recall and of his right to make such representations.

(4)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refer to the Parole Board the case of a person recalled under subsection (1) above who makes representations under the last foregoing subsection and shall in any event so refer the case of a person returned to prison after being recalled under subsection (2) above.

(5) Where the Board recommends the immediate release on licence of a person whose case is referred to it under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give effect to the recommendation, and where it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to release that person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26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do so without the consultation required by that subsection.

(6) If a person subject to a licence under section 60 or 61 of the [1967 c. 80.] Criminal Justice Act 1967 or section 22 or 26 of this Act is convicted by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or by a sheriff, whether summarily or on indictment, of an offence punishable on indictment with imprisonment, the court by which he is convicted may, whether or not it passes any other sentence on him, revoke the licence.

(7) On the revocation of the licence of any person under this section, he shall be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his sentence, and, if at large,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8) If, in the case of a person subject to a licence under section 60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release on licence) or section 22 of this Act, a Crown Court or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or a sheriff revokes that licence under section 62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67 or, as the case may be, under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thereafter release him under subsection (1) of the said section 22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pecified period from the date of revocation or before the expiration of one-third of the period during which the licence would have remained in force, whichever is the later; but the foregoing provision shall not affect any power to release him otherwise than under that subsection.

(9) In subsection (8) above, "the specified period"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22(2) above.

(10) This section shall have effect, in its application to a person sentenced in England and Wales to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or sentenced to be detained under section 205(2) of the 1975 Act (punishment of person under 18 for murder), as if for any reference to a prison there were substituted a reference to any place in which that person was detained immediately before he was released on licence.

(11) This section shall have effect, in its application to a person sentenced to be detained under section 205(3), 207 or 415 of the 1975 Act (detention of young offenders) as if for any reference to a prison there were substituted a reference to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Determination of age.

29. Without prejudice to section 43(7) of this Act,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relating to licences or persons on licence, the age of any person at the time when sentence was passed on him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hat which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have been his age at that time.

Supervision after release

Supervision of certain prisoners after release.

30. (1) If it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a pers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he shall, by notice given to such pers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 below, place him under supervision on his release from prison.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7) below, this section applies

(a) to any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three years or more;

(b) to any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six months, but less than three years, who is under the age of 26 years at the commencement of the sentence;

but does not apply to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life.

(3) Before the release from prison of any pers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ause to be given to him a notice ("a notice of supervision") giv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 is to be his supervising officer in the first instance, and specifying the requirements with which he has to comply while under supervision; and a notice given to any person under this subsection shall contain a statement that it is given to him as falling within a specified class of the persons to whom this section for the time being applies.

(4) Subject to this section and sections 214 and 423 of the 1975 Act, every pers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shall,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and until the expiry of the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his release, be under supervision, and shall, while under that supervision, be required

(a) to keep in touch with his supervising officer in accordance with such instruction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given by that officer; and

(b) to comply with the directions of his supervising officer as to conduct; and

(c) to comply with such other requirements as may be specified in his notice of supervision.

(5)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4) above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notice in writing given to a person under supervision as aforesaid,

(a) discharge him from supervision, or

(b) replace as from a specified date his supervising officer by another supervising officer whose name and address shall be specified in that notice, or

(c) cancel or modify any other of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his notice of supervision.

(6)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substitute a lower limit of three months instead of six months in paragraph (b) of subsection (2) above.

Supervision of children after release.

31. (1) A child released after detention under section 206 of the 1975 Act who has not been released on licence during the period of detention may be re-

quired, by notice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his release, to be under the supervision of such officer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and to comply, while the notice is in force, with such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2) Subject to subsection (5) below, the supervision requirement shall not continue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release.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on giving notice to the person concerned, at any time vary or cancel a requirement or condition specified under subsection (1) above.

(4) A period of supervision required under subsection (1)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under supervision attains the age of 23 years.

(5) Where, before a supervision requirement expires,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to whom it relates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terms and either

(a) the Parole Board so recommends, or

(b) it appears to him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before consultation with the Board is practicable,

he may recall the person to deten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and a person at large after such recall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6)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nform a person recalled under subsection (5) above of the reasons for his recall, so that the person may make representations in writing to the Parole Board with respect to his recall; and the Board may, on receipt of such representations, require the Secretary of State to release him forthwith.

(7) The Secretary of State may at any time release a person detained by virtue of subsection (5) above.

(8)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5) above may be exercised as often as it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supervision requirement; but no person may be recalled to detention for periods totalling more than three months by virtue of that subsection.

(9) A recall under subsection (5) above may continue beyond the date of expiry of the supervision requirement unless the person to whom it relates is not in cus-

tody at that date.

(10) In this section, "child"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462(1) (interpretation) of the 1975 Act.

Supervision of persons released from young offenders institution.

32. (1) This section applies in relation to persons sentenced under section 207 or 415 of the 1975 Act (detention of young offenders).

(2) Subject to sections 212 and 421 of the 1975 Act (which relate to recall of young offenders on re-conviction) and to subsections (4) to (6) and (10) below, a person in relati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may, where he has been sentenced to a period of (or, as the case may be, periods totalling) six months or more, be required, by not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given to the person on his release from that detention, both to be under the supervision of such officer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and to comply, while under the supervision, with such conditions as may be so specified; and the supervision shall continue

(a) in a case where such release is on licence under section 60(1) or section 61 of the [1967 c. 80.] Criminal Justice Act 1967 or section 22(1) or 26 of this Act, until the expiry of the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release or until the expiry of the licence, whichever is the later;

(b) in any other case

(i) where the term was less than 18 months, until the expiry of the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release; or

(ii) where the term was 18 months or more, until the expiry of the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release.

(3) In a case such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a) of subsection (2) above, the requirement and conditions specifi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at subsec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y conditions specified in the licence mentioned in that paragraph.

(4) Without prejudice to subsection (7) below, a period of supervision required under subsection (2)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under supervision attains the age of 23 years.

(5)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tend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2) above to persons in relation to whom this section applies whose detention is for less than six months but not less than three months.

(6) The Secretary of State may, on giving notice to the person concerned, at any time modify or cancel a requirement, or condition, which is specified under subsection (2) above.

(7) Subject to subsections (9) and (10) below, where,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is required under this section to be under supervision,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 o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condition for the time being specified in the notice given to him under subsection (2) above and either

(a) the Parole Board so recommends, or

(b) it appears to him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before consultation with the Board is practicable,

he may (except in a case such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a) of subsection (2) above) recall the person to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and thereupon the person shall be liable to be detained in that institu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and if at large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8)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nform a person recalled under subsection (7) above of the reasons for his recall, so that the person may make representations in writing to the Parole Board with respect to his recall; and the Board may, on receipt of such representations, require the Secretary of State to release him forthwith.

(9) A recall under subsection (7) above shall cease to have effect at the expiry of the first period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unless the person to whom it relates is then in custody thereunder.

(10) The Secretary of State may at any time release a person who is, by virtue of subsection (7) above, detained; an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person released under subsection (8) above or this subsection as if, following the release mentioned in subsection (2) above, neither the recall under the said subsection (7) nor the subsequent release under subsection (8) above or this subsection had taken place, except that the period of detention between the recall and

the subsequent release shall be deducted from the period for which the person would otherwise be liable to be detained were he again to be recalled.

Miscellaneous

Duties of governor of prison.

33. The governor of a prison shall

(a) as far as practicable, visit the whole of the prison and see every prisoner at least once in every 24 hours, and, in default of such daily visits, state in his journal the extent of and the reason for such default;

(b) as soon as practicable draw the attention of the medical officer to any prisoner whose state of mind or body appears to require attention and carry into effect the written directions of the medical officer as to alterations in the discipline or treatment of such prisoner;

(c) notify the medical officer without delay of the illness of any prisoner, and deliver to him daily a list of prisoners complaining of illness;

(d) deliver to the chaplain and to the medical officer lists of prisoners confined to their cells; and

(e) keep records regarding the commitment to and liberation from the prison of prisoners committed thereto in pursuance of criminal warrants and when so required exhibit such records to the sheriff within whose jurisdiction the prison is situated.

Notification of and inquiry into death of prisoner.

34. The governor of a prison shall,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 prisoner, give immediate notice thereof to the procurator fiscal within whose area the prison is situated, and to the visiting committee, and, where practicable, to the nearest relative of the prisoner.

Return of warrants for or sentences of imprisonment.

35. Where a warrant for imprisonment is granted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pronounced by any court, a return thereof shall be made by the clerk of

the cou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t such time and in such form as he may determine.

Legal estate in prison.

36. The legal estate in every prison and in all heritable or moveable property belonging to a prison shall be vested in the Secretary of State and may be disposed of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may determine.

Discontinuance of prison.

37.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discontinue any prison, and any prison so discontinued shall be sold or otherwise disposed of as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may direct.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ri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discontinued by reason only of its appropriation for use as a remand centre or young offenders institution.

Acquisition of land for prisons.

38.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purchase by agreement, or compulsorily, any land required for the alteration, enlargement or rebuilding of a prison or for building or establishing a new prison or for any other purpose connected with the management of a pris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for officers or servants employed therein).

(2) For the purpose of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foregoing subsection, the [1947 c. 42.] Acquisition of Land (Authorisation Procedure) (Scotland) Act 1947 shall apply as if section 1(1)(d) (which refers to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1972 c. 58.]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Act 1972) included a reference to the foregoing subsection.

(3) In relation to the purchase of land by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the Lands Clauses Acts (excep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urchase of land other-

wise than by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relating to access to the special Act, and except sections 120 to 125 (sale of superfluous lands) of the [1845 c. 19.] Lands Clauses Consolidation (Scotland) Act 1845) shall be incorporated with this section, and in construing those Acts as so incorporated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special Act and references to the promoters of the undertaking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the Secretary of State.

Rules for the management of prisons and other institutions.

39.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ules for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prisons, remand centres and young offenders institutions respectively, and for the classification, treatment, employment, discipline and control of persons required to be detained therein.

(2)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make provision for ensuring that a person who is charged with any offence under the rules shall be given a proper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case.

(3)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training of particular classes of persons and their allocation for that purpose to any prison or other institution in which they may lawfully be detained.

(4)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appointment of a convenient prison or prisons

(a) in which prisoners are to be confined before and during trial, or at either of such times;

(b) in which particular classes of prisoners may be confined;

(c) in which civil prisoners may be confined during the period of their imprisonment.

(5)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provide for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following persons whilst required to be detained in a prison, that is to say

(a) any appella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79 of the 1975 Act pending the determination of his appeal;

(b) any other person detained in a prison, not being a person serving a sentence imposed on conviction of an offence.

(6)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for the temporary release of per-

sons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detention.

Persons unlawfully at large.

40. (1) Any person who, having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to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or having been committed to a prison or remand centre, is unlawfully at large may be arrested by a constable or prison officer without warrant and taken to the place in which he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detained.

(2) Where any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to detention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is,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detained in pursuance of the sentence, absent, otherwise than with lawful authority, from the prison or young offenders institution, as the case may be, then,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therwise directs,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calculating the period for which he is liable to be so detained, of any time during which he is so absent.

Unlawful introduction of tobacco, etc., into prison.

41. (1) Any person who brings, or introduces or attempts by any means to bring or introduce, into a prison any letter, tobacco, spirits or other article not allowed by rules made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by a court of summary jurisd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3 on the standard scale or to imprisonment for any period not exceeding 30 days.

(2) For the purposes of the foregoing subsection a person shall be deemed to introduce an article into a prison if he conveys it to a prisoner outside the prison or places it anywhere outside the prison with intent that it shall come into the possession of a prisoner.

(3) It shall be lawful for any officer of the prison to apprehend an offender against this section.

Exercise of power to make rules, etc.

42. (1) Any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rules or regulations under this Act, and the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under section 22(2), 30(6) or (7), 32(5) or 37(1) of this Act, shall be exercisable by statutory instrument.

(2) Any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12 or an order made under section 37(1) of this Act and the draft of any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rules made under section 39 of this Act shall be laid before Parliament.

(3) Any rule made under section 18(3) or (5) of this Act or any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an order under section 30(6) or (7) or 32(5) of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4) An order shall not be made under section 22(2) of this Act unless a draft of the order has been laid before Parliament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of Parliament.

Interpretation.

43.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following expressions have the meanings hereby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the 1975 Act" means the [1975 c. 21.]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1975;

"court" does not include a court-martial;

"criminal prisoner" means a person committed to prison in respect of a charge or conviction of a criminal offence and "civil prisoner" includes any other prisoner;

"local review committee"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18(5) of this Act;

"Parole Board" means the Parole Board for Scotland;

"prison" includes any prison other than a naval, military or air force prison;

"prisoner" means a person committed for trial, safe custody, punishment or otherwise; and

"sentence of imprisonment" does not include a committal in default of payment of any sum of money or for failure to do or abstain from doing anything required to be done or left undone.

(2) For the purposes of any reference, however expressed, in this Act (other than in section 25) to the term of imprisonment or other detention to which a person has been sentenced or which, or part of which, he has served, consecutive terms and terms which are wholly or partly concurrent shall be treated as a single term.

(3) Any reference in this Act, however expressed, to a previous conviction or sentence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a previous conviction by a court in any part of Great Britain and to a previous sentence passed by any such court.

(4) Any reference in this Act to an offenc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shall be construed, in relation to any offender, without regard to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imposed by or under any enactment on the imprisonment of offenders of his age.

(5) References, however expressed, in this Act (other than in section 30) to imprisonment shall, so far as those provisions apply to institutions provided under section 19 of this Act, be construed as including detention in those institutions.

(6)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maintenance of a prisoner shall include all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the prisoner for food, clothing, custody and removal from one place to another from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order for his committal to prison until his death or discharge from prison.

(7) Where the age of any person at any time is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regulating the powers of a court, his age at the material time shall be deemed to be or to have been that which appears to the court, after considering any available evidence, to be or to have been his age at that time.

Expenses.

44. All expenses incurred in the maintenance of prisons and prisoners and all other expenses of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is Act shall be defrayed out of moneys provided by Parliament.

빈 면

V. PART III. PRISON AND PRISONERS

CHAPTER 301 - GENERAL PROVISIONS

Sec. 4001. Limitation on detention; control of prisons

(a) No citizen shall be imprisoned or otherwise detained by the United States except pursuant to an Act of Congress.

(b) (1)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except military or naval institutions, shall be vested in the Attorney General, who shall promulgate rules for the government thereof, and appoint all necessary officers an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service laws, the Classification Act, as amended,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2)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and conduct industries, farms, and other activities and classify the inmates; and provide for their proper government, discipline, treatment, care, rehabilitation, and reformation

Sec. 4002. Federal prisoners in State institutions;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uitable quarters for the safekeeping, care, and subsistence of all persons held under authority of any enactment of Congress, the Attorney General may contrac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with the proper authorities of any State,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for the imprisonment, subsistence, care, and proper employment of such persons.

Such Federal prisoners shall be employed only in the manufacture of articles for, the production of supplies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for, and the maintenance and care of the institutions of, the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in which they are imprisoned.

The rates to be paid for the care and custody of said person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 of the quarters furnished, sanitary conditions, and quality of subsistence and may be such as will permit and encourage the proper authorities to provide reasonably decent, sanitary, and healthful quarters and

subsistence for such persons

Sec. 4003. Federal institutions in States without appropriate facilities

If by reason of the refusal or inability of the authorities having control of any jail, workhouse, penal, correctional, or other suitable institution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to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imprisonment, subsistence, care, or proper employ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r if there are no suitable or sufficient facilities available at reasonable cost, the Attorney General may select a site either within or convenient to the State, Territory, or judicial district concerned and cause to be erected thereon a house of detention, workhouse, jail, prison-industries project, or camp, or other place of confinement, which shall be used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held under authority of any Act of Congress, and of such other persons as in the opinion of the Attorney General are proper subjects for confinement in such institutions

Sec. 4004. - Oaths and acknowledgments

The wardens and superintendents, associate wardens and superintendents, chief clerks, and record clerks, of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may administer oaths to and take acknowledgments of officers, employees, and inmates of such institutions, but shall not demand or accept any fee or compensation therefor

Sec. 4005. - Medical relief; expenses

(a) Upon request of the Attorney General an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ssisted Suicide Funding Restriction Act of 1997, the Federal Security Administrator shall detail regular and reserve commissioned officer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pharmacists, acting assistant surgeons, and other employee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the purpose of supervising and furnishing medical, psychiatric, and other 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to the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b) The compensation, allowances, and expenses of the personnel detailed under this section may be paid from applicable appropriation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sonne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such appropriations to be reimbursed from applicable appropria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or the Attorney General may make allotments of funds and transfer of credit to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such amounts as are available and necessary, for payment of compensation, allowances, and expenses of personnel so detail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sonne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Sec. 4006. - Subsistence for prisoners

(a) In General. -

The Attorney General shall allow and pay only the reasonable and actual cost of the subsistence of prisoners in the custody of any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and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for the government of the marshals as will enable him to determine the actual and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

(1) In general. -

Payment for costs incurred for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for individuals in the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amount that would be paid for the provision of similar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under -

(A) the Medicare program under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or

(B) the Medicaid program under title XIX of such Act of the State in which the services were provided.

(2) Full and final payment. -

Any payment for a health care item or service made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full and final payment.

Sec. 4007. - Expenses of prisoners

The expenses attendant upon the confinement of persons arrested or committ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upon the execution of any sentence of a court thereof respecting them, shall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Sec. 4008. - Transportation expenses

Prisoners shall be transported by agents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 reasonable expense of transportation, necessary subsistence, and hire and transportation of guards and agents shall be paid by the Attorney General from such appropriation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he shall direct.

Upon conviction by a consular court or court martial the prisoner shall be transported from the court to the place of confinement by agen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he Army, Navy, or Air Force, as the case may be, the expense to be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Sec. 4009. - Appropriations for sites and buildings

The Attorney General may authorize the use of a sum not to exceed $100,000 in each instance, payable from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leasing or acquiring a site, preparation of plans, and erection of necessary buildings under section 4003 of this title.

If in any instance it shall be impossible or impracticable to secure a proper site and erect the necessary buildings within the above limitation the Attorney General may authorize the use of a sum not to exceed $10,000 in each instance, payable from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options and making preliminary surveys or sketches.

Upon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ite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to

Congress an estimate of the cost of purchasing same and of remodeling, constructing, and equipping the necessary buildings thereon

Sec. 4010. - Acquisition of additional land

The Attorney General may, when authorized by law, acquire land adjacent to or in the vicinity of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if he considers the additional land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the health or safety of the inmates of the institution

Sec. 4011. - Disposition of cash collections for meals, laundry, etc.

Collections in cash for meals, laundry, barber service, uniform equipment, and other items for which payment is made originally from appropriations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may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to the credit of the appropriation currently available for those items when the collection is made

Sec. 4012. - Summary seizure and forfeiture of prison contraband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Bureau of Prisons may, pursuant to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summarily seize any object introduced into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facility or possessed by an inmate of such a facility in violation of a rule, regulation or order promulgated by the Director, and such object shall be forfeited to the United States

Sec. 4013. -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in non-Federal institutions

(a) The Attorney General, i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in non-Federal institutions, is authorized to make payments from funds appropriated for the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for -

(1) necessary clothing;

(2) medical care and necessary guard hire;

(3) the housing, care, and security of persons held in custody of a United States marshal pursuant to Federal law under agreements with State or local units of government or contracts with private entities; and

(4) entering into contracts or cooperative agreements with any State, territory,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for the necessary construction, physical renovation, acquisition of equipment, supplies, or materials required to establish acceptable conditions of confinement and detention services in any State or local jurisdiction which agrees to provide guaranteed bed space for Federal detainees within that correctional syste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which are issued by the Attorney General and are comparable to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section 4006 of this title, except that -

(A) amounts made available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exceed the average per-inmate cost of constructing similar confinement facilities for the Federal prison population,

(B) the availability of such federally assisted facility shall be assured for housing Federal prisoners, and

(C) the per diem rate charged for housing such Federal prisoners shall not exceed allowable costs or other conditions specified in the contract or cooperative agreement.

(b) (1)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may designate districts that need additional support from private detention entities under subsection (a)(3) based on -

(A) the number of Federal detainees in the district; and

(B)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detention facilities.

(2) In order to be eligible for a contract for the housing, care, and security of persons held in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 pursuant to Federal law and funding under subsection (a)(3), a private entity shall -

(A) be located in a district that has been designated as needing additional Federal detention facil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B) meet the standards of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C) comply with all applicable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D) have approved fire, security, escape, and riot plans; and
(E) comply with any other regulations that the Marshals Service deems appropriate.

(3)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on a contract under subsection (a)(3).

(c) Health Care Fees For Federal Prisoners in Non-Federal Institutions. -

(1) In general. -

Notwithstanding amounts paid under subsection (a)(3), a State or local government may assess and collect a reasonable fee from the trust fund account (or institutional equivalent) of a Federal prisoner for health care services, if -
(A) the prisoner is confined in a non-Federal institution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 the fee -
(i) is authorized under State law; and
(ii) does not exceed the amount collected from State or local prisoners for the same services; and
(C) the services -
(i) are provided within or outside of the institution by a person who is licensed or certified under State law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and who is operating within the scope of such license;
(ii) constitute a health care visi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048(a)(4) of this title; and
(iii) are not preventative health care services, emergency services, prenatal care, diagnosis or treatment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s, mental health care, or substance abuse treatment.

(2) No refusal of treatment for financial reasons. -

Nothing in this subsection may be construed to permit any refusal of treatment to a prisoner on the basis that -
(A) the account of the prisoner is insolvent; or

(B) the prisoner is otherwise unable to pay a fee assessed under this subsection.

(3) Notice to prisoners of law. -

Each person who is or becomes a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this subsection to the prisoner.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ubsection, a fee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such person -

(A)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such notices; and

(B)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4) Notice to prisoners of state or local implementation. -

The implementation of this subsection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any amendment to that implement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at implementation (or amendment, as the case may be). A fee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a prisoner pursuant to such implementation (or amendments, as the case may be)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5) Notice before public comment period. -

Before the beginning of any period a proposed implementation under this subsection is open to public comment, written and oral notice of the provisions of that proposed implementation shall be provided to groups that advocate on behalf of Federal prisoners and to each prisoner subject to such proposed implementation.

(6) Comprehensive hiv/aids services required. - Any State or local government assessing or collecting a fee under this subsection shall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for services relating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to each Federal prisoner in the custody of such State or local government when medically appropriat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may not assess or collect a fee under this subsection for providing such coverage

Sec. 4014. - Testing f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 The Attorney General shall cause each individual convicted of a Federal offense who is sentenced to incarceration for a period of 6 months or more to be tested for the presence of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s appropriat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at incarceration, if such individual is determined to be at risk for infection with such viru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of Prisons relating to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b) If the Attorney General has a well-founded reason to believe that a person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for a Federal offense, or ordered detained before trial under section 3142(e), may have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transmitted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o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or to any person lawfully present in a correctional facility who is not incarcerated there, the Attorney General shall -

(1) cause the person who may have transmitted the virus to be tested promptly for the presence of such virus and communicate the test results to the person tested; and

(2)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of Prisons relating to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form any person (in, as appropriate, confidential consultation with the person's physician) who may have been exposed to such virus, of the potential risk involved and, if warranted by the circumstances, that prophylactic or other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c) If the results of a test under subsection (a) or (b) indicate the presence of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vide appropriate access for counselling, health care, and support services to the affected officer, employee, or other person, and to the person tested.

(d) The results of a test under this section are inadmissible against the person tested in any Federal or State civil or criminal case or proceeding.

(e)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ec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issue rules to implement this section. Such rules shall require that the results of any test are communicated only to the person tested, and, if the results of the test indicate the presence of the virus, to correctional facility personnel consistent with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of Prisons. Such rules

shall also provide for procedures designed to protect the privacy of a person requesting that the test be performed and the privacy of the person

CHAPTER 303 - BUREAU OF PRISONS

Sec. 4041. - Bureau of Prisons; director and employees

The Bureau of Prisons shall be in charge of a director appointed by and serving directly under the Attorney General at a salary of $10,000 a year. The Attorney General may appoint such additional officers and employees as he deems necessary

Sec. 4042. - Duties of Bureau of Prisons

(a) In General. -

The Bureau of Prisons, under the dire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shall -

(1) have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all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2) provide suitable quarters and provide for the safekeeping, care, and subsistence of all persons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held as witnesses or otherwise;

(3) provide for the protection, instruction, and discipline of all persons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4)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improvement of their correctional systems; and

(5) provide notice of release of prisoners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b) and (c).

(b) Notice of Release of Prisoners. -

(1) At least 5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a prisoner described in paragraph (3) is to be released on supervised release, or, in the case of a prisoner on supervised release, at least 5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prisoner changes residence to a new jurisdiction, written notice of the release or change of residence shall be provided to the chief law enforcement officer of the State and of the local jurisdiction in which the prisoner will reside. Notice prior to release shall be pro-

vided by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Notice concerning a change of residence following release shall be provided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released prisoner,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The notice requirements under this subsection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prisoner being protected under chapter 224.

(2)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disclose -

(A) the prisoner's name;

(B) the prisoner's criminal history,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offense of which the prisoner was convicted; and

(C) any restrictions on conduct or other conditions to the release of the prisoner that are imposed by law, the sentencing court, or the Bureau of Prisons or any other Federal agency.

(3) A prisoner i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if the prisoner was convicted of -

(A) a drug trafficking crime,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924(c)(2); or

(B) a crime of violence (as defined in section 924(c)(3)).

(c) Notice of Sex Offender Release. -

(1) In the case of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4) who is released from prison or sentenced to probation, notice shall be provided to -

(A) the chief law enforcement officer of the State and of the local jurisdiction in which the person will reside; and

(B) a State or local agency responsible for the receipt or maintenanc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information in the State or local jurisdiction in which the person will reside.

The notice requirements under this subsection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person being protected under chapter 224.

(2) Notice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b)(2), the place where the person will reside, and the information that the person shall be subject to a registration requirement as a sex offender. For a person who is released from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whose expected place of residence following release is known to the Bureau of Prisons, notice shall be provided at least 5 days prior to release by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For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probation, notice shall be provided promptly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person,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Notice concerning a subsequent change of residence by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4) during any period of probation, supervised release, or parole shall also be provided to the agencies and officers specified in paragraph (1)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the person,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3)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shall inform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4) who is released from prison that the person shall be subject to a registration requirement as a sex offender in any State in which the person resides, is employed, carries on a vocation, or is a student (as such terms are defined for purposes of section 170101(a)(3)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and the sam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4) who is sentenced to probation by the probation officer responsible for supervision of the person or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4) A person i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if the person was convicted of any of the following offenses (including such an offense prosecuted pursuant to section 1152 or 1153):

(A) An offense under section 1201 involving a minor victim.

(B) An offense under chapter 109A.

(C) An offense under chapter 110.

(D) An offense under chapter 117.

(E) Any other offense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as a sexual offense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5) The United States and its agencies,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be immune from liability based on good faith conduct in carrying out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 (b).

(d) Application of Section. -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military or naval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the persons confined therein.

Sec. 4043. - Acceptance of gifts and bequests to the Commissary Funds, Federal Prisons

The Attorney General may accept gifts or bequests of money for credit to the "Commissary Funds, Federal Prisons". A gift or bequest under this section is a gift or bequest to or for the us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26 U.S.C. 1 et seq.)

Sec. 4044. - Donations on behalf of the Bureau of Prisons

The Attorney General may, in accordance with rules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accept in the nam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y form of devise, bequest, gift or donation of money or property for use by the Bureau of Prisons or Federal Prison Industries. The Attorney General may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secure possession of such property and may sell, assign, transfer, or convey such property other than money

Sec. 4045. - Authority to conduct autopsies

A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Federal penal or correctional facility may, pursuant to rules prescribed by the Director, order an autopsy and related scientific or medical tests to be performed on the body of a deceased inmate of the facility in the event of homicide, suicide, fatal illness or accident, or unexplained death, when it is determined that such autopsy or test is necessary to detect a crime, maintain discipline, protect the health or safety of other inmates, remedy official misconduct, or defend the United States or its employees from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 facilit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needs of the autopsy or of specific scientific or medical tests, provisions of State and local law protecting religious beliefs with respect to such autopsies shall be observed. Such officer may also order an autopsy or post-mortem operation, including removal of tissue for transplanting, to be performed on the body of a deceased inmate of the facility, with the written consent of a person authorized to

permit such an autopsy or post-mortem operation under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facility is located

Sec. 4046. - Shock incarceration program

(a) The Bureau of Prisons may place in a shock incarceration program any person who is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more than 12, but not more than 30, months, if such person consents to that placement.

(b) For such initial por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as the Bureau of Prisons may determine, not to exceed 6 months, an inmate in the shock incarceration program shall be required to -

(1) adhere to a highly regimented schedule that provides the strict discipline, physical training, hard labor, drill, and ceremony characteristic of military basic training; and

(2) participate in appropriate job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literacy programs) and drug, alcohol, and other counseling programs.

(c) An inmate who in the judgment of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required period of shock incarceration shall remain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for such period (not to exceed the remainder of the prison term otherwise required by law to be served by that inmate),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he Bureau deems appropriate

Sec. 4047. - Prison impact assessments

(a) Any submission of legislation by the Judicial or Executive branch which could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persons incarcerated in Federal penal institu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a prison impact statement (as defined in subsection (b)).

(b) The Attorney General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prepare and furnish prison impact assessments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and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Congress for information relating to a pending measure or matter that might affect the number of defendants processed through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A prison impact assessment on pending legis-

lation must be supplied within 21 days of any request. A prison impact assessment shall include -

(1) projections of the impact on prison, probation, and post prison supervision populations;

(2) an estimate of the fiscal impact of such population changes on Federal expenditures, including those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for the current fiscal year and 5 succeeding fiscal years;

(3) an analysis of any other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cost of the measure and its impact on the operations of compon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4) a statement of the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utilized in preparing the assessment.

(c)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epare and transmit to the Congress, by March 1 of each year, a prison impact assessment reflecting the cumulative effect of all relevant changes in the law taking effect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Sec. 4048. - Fees for health care services for prisoners

(a) Definitions. -

In this section -

(1) the term "account" means the trust fund account (or institutional equivalent) of a prisoner;

(2) the term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3) the term "health care provider" means any person who is -

(A) authorized by the Director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and

(B) operating within the scope of such authorization;

(4) the term "health care visit" -

(A) means a visit,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by a prisoner to an institutional or noninstitutional health care provider; and

(B) does not include a visit initiated by a prisoner -

(i) pursuant to a staff referral; or

(ii) to obtain staff-approved follow-up treatment for a chronic condition; and

(5) the term "prisoner" means -

(A) any individual who is incarcerated in an institu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ureau of Prisons; or

(B) any other individual, as designated by the Director, who has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b) Fees for Health Care Services. -

(1) In general. -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with such regulations as the Director shall promulgate to carry out this section, may assess and collect a fee for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each health care visit requested by a prisoner.

(2) Exclusion. -

The Director may not assess or collect a fee under this section for preventative health care services, emergency services, prenatal care, diagnosis or treatment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s, mental health care, or substance abuse treatment,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c) Persons Subject to Fee. -

Each fee assess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llected by the Director from the account of -

(1) the prisoner receiving health car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 health care visit described in subsection (b)(1); or

(2) in the case of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a health care visit described in subsection (b)(1) that results from an injury inflicted on a prisoner by another prisoner, the prisoner who inflicted the injury,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d) Amount of Fee. -

Any fee assessed and collec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1.

(e) No Consent Required.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the consent of a prisoner shall not be required for the collection of a fee from the account of the prisoner under this section. However, each such prisoner shall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dispute the amount of the fee or whether the prisoner qualifies under an exclusion under this section.

(f) No Refusal of Treatment For Financial Reasons. -

Nothing in this section may be construed to permit any refusal of treatment to a prisoner on the basis that -

(1) the account of the prisoner is insolvent; or

(2) the prisoner is otherwise unable to pay a fee assessed under this section.

(g) Use of Amounts. -

(1) Restitution of specific victims. -

Amounts collected by the Director under this section from a prisoner subject to an order of restitution issued pursuant to section 3663 or 3663A shall be paid to victim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restitution.

(2) Allocation of other amounts. -

Of amounts collected by the Director under this section from prisoners not subject to an order of restitution issued pursuant to section 3663 or 3663A -

(A) 75 percent shall be deposited in the Crime Victims Fund established under section 1402 of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42 U.S.C. 10601); and

(B) 25 percent shall be available to the Attorney General for administrative expenses incurred in carrying out this section.

(h) Notice to Prisoners of Law. -

Each person who is or becomes a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this section to the prisoner.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a fee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such person -

(1)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such notices; and

(2)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i) Notice to Prisoners of Regulations. -

The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Director under subsection (b)(1), and any amendments to those regulations,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each prisoner in the prison system is provided with written and oral

notices of the provisions of those regulations (or amendments, as the case may be). A fee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assessed against, or collected from, a prisoner pursuant to such regulations (or amendments, as the case may be) for services provided before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j) Notice Before Public Comment Period. -

Before the beginning of any period a proposed regulation under this section is open to public comment, the Director shall provide written and oral notice of the provisions of that proposed regulation to groups that advocate on behalf of Federal prisoners and to each prisoner subject to such proposed regulation.

(k) Reports to Congress. -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Prisoner Health Care Copayment Act of 2000, and annually thereafter, the Director shall transmit to Congress a report, which shall include -

(1) a description of the amounts collected under this section during the preceding 12-month period;

(2)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if any, on the nature and extent of heath care visits by prisoners;

(3) an itemization of the cost of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the program;

(4) a description of current inmate health status indicators as compared to the year prior to enactment; and

(5) a description of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to inmates during the preceding 12-month period, as compared with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such Act.

(l) Comprehensive HIV/AIDS Services Required. - The Bureau of Prisons shall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for services relating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to each Federal prisoner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when medically appropriate. The Bureau of Prisons may not assess or collect a fee under this section for providing such coverage

CHAPTER 305 - COMMITMENT AND TRANSFER

Sec. 4081. -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The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all be so planned and limited in size a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ystem which will assure the proper classification and segregation of Federal prisoner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ffenses committed, the character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risoners, and such other factors as should be considered in providing an individualized system of discipline, care, and treatment of the persons committed to such institutions

Sec. 4082. - Commitment to Attorney General;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extension of limits of confinement; work furlough

(a) The willful failure of a prisoner to remain within the extended limits of his confinement, or to return within the time prescribed to an institution or facility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shall be deemed an escape from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nishable as provided in chapter 35 of this title.

(b) (1) The Attorney General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any law enforcement agency of a State or of a unit of local government in a State, make availabl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to such agency, with respect to prisoners who have been convicted of felony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who are confined at a facility which is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located in the geographical area in which such agency has jurisdic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maintained by the Bureau of Prisons (to the extent that the Bureau of Prisons maintains such information) -

(A) the names of such prisoners;

(B) the community treatment center addresses of such prisoners;

(C) the dates of birth of such prisoners;

(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umbers assigned to such prisoners;

(E) photographs and fingerprints of such prisoners; and

(F) the nature of the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which each such pris-

oner has been convicted and the factual circumstances relating to such offenses.

(2) Any law enforcement agency which receives information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disseminate such information outside of such agency.

(c) As used in this section - the term "facility" shall include a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 and the term "relative" shall mean a spouse, child (including stepchild, adopted child or child as to whom the prisoner, though not a natural parent, has acted in the place of a parent), parent (including a person who, though not a natural parent, has acted in the place of a parent), brother, or sister

Sec. 4083. - Penitentiary imprisonment; consent

Persons convicted of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by courts-martial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may be confined in any United States penitentiary.

A sentence for an offens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less shall not be served in a penitentiar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efendant

Sec. 4086. - Temporary safe-keeping of federal offenders by marshals

United States marshals shall provide for the safe-keeping of any person arrested, or held under authority of any enactment of Congress pending commitment to an institution

CHAPTER 306 - TRANSFER TO OR FROM FOREIGN COUNTRIES

Sec. 4100. - Scope and limitation of chapter

(a)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relating to the transfer of offenders shall be applicable only when a treaty providing for such a transfer is in force, and shall only be applicable to transfers of offenders to and from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such a treaty.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country upon an offender who is

subsequently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a treaty shall be subject to being fully executed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treaty under which the offender was transferred is no longer in force.

(b) An offender may be transferred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is chapter only to a country of which the offender is a citizen or national. Only an offender who is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may be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An offender may be transferred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only with the offender's consent, and only if the offense for which the offender was sentenced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double criminality as defined in this chapter. Once an offender's consent to transfer has been verified by a verifying officer, that consent shall be irrevocable. If at the time of transfer the offender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or is deemed by the verifying officer to be mentally incompetent or otherwise incapable of knowingly and voluntarily consenting to the transfer, the transfer shall not be accomplished unless consent to the transfer be given by a parent or guardian, guardian ad litem, or by an appropriate court of the sentencing country.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ad litem shall be independent of the appointment of counsel under section 4109 of this title.

(c) An offender shall not be transferred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if a proceeding by way of appeal or of collateral attack upon the conviction or sentence be pending.

(d) The United States upon receiving notice from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that the offender has been granted a pardon, commutation, or amnesty, or that there has been an ameliorating modification or a revocation of the sentence shall give the offender the benefit of the action taken by the sentencing country

Sec. 4101. -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the term -

(a) "double criminality" means that at the time of transfer of an offender the offense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is still an offense in the transferring country and is also an offense in the receiving country. With regard to a country which has a federal form of government, an act shall be deemed to be an offense in

that country if it is an offense under the federal laws or the laws of any state or province thereof;

(b) "imprisonment" means a penalty imposed by a court under which the individual is confined to an institution;

(c) "juvenile" means -

(1) a person who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or

(2)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and disposition under chapter 403 of this title because of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 person who is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d) "juvenile delinquency" means -

(1) a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thereof or of a foreign country committed by a juvenile which would have been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or

(2) noncriminal acts committed by a juvenile for which supervision or treatment by juvenile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thereof, or of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is authorized;

(e) "offender" means a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se or who has been adjud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f) "parole" means any form of release of an offender from imprisonment to the community by a releasing authority prior to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subject to conditions imposed by the releasing authority and to its supervision, including a term of supervised release pursuant to section 3583;

(g) "probation" means any form of a sentence under which the offender is permitted to remain at liberty under supervision and subject to conditions for the breach of which a penalty of imprisonment may be ordered executed;

(h) "sentence" means not only the penalty imposed but also the judgment of conviction in a criminal case or a judgment of acquittal in the same proceeding, or the adjudication of delinquency in a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or dismissal of allegations of delinquency in the same proceedings;

(i) "State" mean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j) "transfer" means a transfer of an individual for the purpose of the execution in one country of a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of another country; and

(k) "treaty" means a treaty under which an offender sentenced in the courts of one country may be transferred to the country of which he is a citizen or national for the purpose of serving the sentence

Sec. 4102. -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

(1) to ac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s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a treaty;

(2) to receive custody of offenders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n parole, or on probation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transferred from foreign countries and as appropriate confine them in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assign them to the parole or probation authorities for supervision;

(3) to transfer offenders und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n parole, or on probation to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4) to make regulations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such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nd to make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chapter;

(5) to render to foreign countries and to receive from them the certifications and reports required to be made under such treaties;

(6) to make arrangements by agreement with the States for the transfer of offenders in their custody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foreign countries to the foreig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citizens or nationals and for the confinement, where appropriate, in State institutions of offender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7) to make agreements and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ation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offenders convicted in a foreign country who are being transported to a third country for the execution of their sentences,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requesting the transportation;

(8) to make agre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and to issue regulations for the transfer and treatment of juveniles who are

transferred pursuant to treaty,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of which the juvenile is a citizen or national;

(9) in concert with the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o make arrang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and to issue regulations for the transfer and treatment of individuals who are accused of an offense but who have been determined to be mentally ill; the expenses of which shall be paid by the country of which such person is a citizen or national;

(10) to designate agents to receiv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the delivery by a foreign government of any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being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serving a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of the foreign country, and to convey him to the place designated by the Attorney General. Such agent shall have all the powers of a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everal districts through which it may be necessary for him to pass with the offender, so far as such power is requisite for the offender's transfer and safekeep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such agent shall have such powers as the authorities of the foreign country may accord him;

(11) to delegate the authority conferred by this chapter to officer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Sec. 4103. - Applicability of United States laws

All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appropriate, pertaining to prisoners, probationers, parolees, and juvenile offenders shall be applicable to offenders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unless a treaty or this chapter provides otherwise

Sec. 4104. - Transfer of offenders on probation

(a) Prior to consenting to the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of an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determine that the appropriat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is willing to undertake the supervision of the offender.

(b)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on prob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cause the offender to be brought before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hich is to exercise supervision over the offender.

(c) The court shall place the offender under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 of the court. The offender shall be supervised by a probation officer, under such conditions as are deemed appropriate by the court as though probation had been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The probation may be revok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653 of this title and rule 32(f)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A violation of the conditions of probation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revocation. If probation is revoked the suspended sentenc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shall be executed.

(e) The provisions of sections 4105 and 4106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following a revocation of probation.

(f) Prior to consenting to the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of an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obtain the assent of the court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probationer

Sec. 4105. - Transfer of offenders serving sentence of imprisonment

(a) Except as provided elsewhere in this section,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n a foreign country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main in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an offender who had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eriod of tim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b) The transferred offender shall be given credit toward service of the sentence for any days, prior to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sentence, spent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offense or acts for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c) (1) The transferred offender shall be entitled to all credits for good time, for labor, or any other credit toward the service of the sentence which had been given by the transferring country for time served as of the time of the transfer. Subsequent to the transfer, the offender shall in addition be entitled to credits toward service of sentence for satisfactory behavior,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time remaining to be served at the time of the transfer and at the rate provided in section 3624(b) of this title for a sentence of the length of the total sentence im-

posed and certified by the foreign authorities. These credits shall be combined to provide a release date for the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3624(a) of this title.

(2) If the country from which the offender is transferred does not give credit for good time, the basis of computing the deduction from the sentence shall b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sentencing court and certified to be served upon transfer, at the rate provided in section 3624(b) of this title.

(3) Credit toward service of sentence may be withheld as provided in section 3624(b) of this title.

(4) Any sentence for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imposed while the transferred offender is serving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imposed in a foreign country, shall be aggregated with the foreign sentence, in the same manner as if the foreign sentence was one impos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Notes on Sec. 4106.

SOURCE

Added Pub. L. 95-144, Sec. 1, Oct. 28, 1977, 91 Stat. 1216

amended Pub. L. 98-473, title II, Sec. 223(m)(3), Oct. 12, 1984, 98 Stat. 2029

Pub. L. 100-182, Sec. 14, Dec. 7, 1987, 101 Stat. 1268

Pub. L. 100-690, title VII, Sec. 7072(c), Nov. 18, 1988, 102 Stat. 4405.

REFERENCES IN TEXT

Sections 4201 through 4204; 4205(d), (e), and (h); 4206 through 4215; and 4218 of this title, referred to in subsec. (b), were repealed effective Nov. 1, 1987, by Pub. L. 98-473, title II, Sec. 218(a)(5), 235(a)(1), (b)(1), Oct. 12, 1984, 98 Stat. 2027, 2031, 2032, subject to remaining effective for five years after Nov. 1, 1987, in certain circumstances.

Section 235 of the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 referred to in subsec. (d), is set out as an Effective Date note under section 3551 of this title

AMENDMENTS

1988 - Subsec. (b). Pub. L. 100-690 substituted "4215" for "4216". 1987 - Pub. L. 100-182 amended section generally. Prior to amendment, section read as follows: "(a) Upon the receipt of an offender who is on parole from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he Attorney General shall assign the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Probation System for supervision. "(b)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shall be released pursuant to section 3624(a) of this title after serving the period of time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entencing guideline promulgated pursuant to 28 U.S.C. 994(a)(1). He shall be released to serve a term of supervised release for any term specified in the applicable guideline. The provisions of section 3742 of this title apply to a sentence to a term of imprisonment under this subsection, and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offender is imprisoned after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has jurisdiction to review the period of imprisonment as though it had been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1984 - Subsec. (a). Pub. L. 98-473 substituted "Probation System" for "Parole Commission".

Subsec. (b). Pub. L. 98-473 amended subsec. (b) generally. Prior to amendment, subsec. (b) read as follows: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have the same powers and duties with reference to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who at the time of transfer is on parole as they have with reference to an offender convicted in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or in the pertinent treaty. Sections 4201 through 4204; 4205(d), (e), and (h); 4206 through 4216; and 4218 of this title shall be applicable."

Subsec. (c). Pub. L. 98-473 struck out subsec. (c) which read as follows: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of imprisonment may be released on parole at such time as the Parole Commission may determine.'

EFFECTIVE DATE OF 1984 AMENDMENT

Amendment by Pub. L. 98-473 effective Nov. 1, 1987, and applicable only to of-

fenses committed after the taking effect of such amendment, see section 235(a)(1) of Pub. L. 98-473, set out as an Effective Date note under section 3551 of this title

SECTION REFERRED TO IN OTHER SECTIONS
This section is referred to in section 4104 of this title

Sec. 4107. - Verification of consent of offender to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a) Prior to the transfer of an offender from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offender consents to such transfer and that such consent is voluntar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shall be verified by a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or a judge as defined in section 451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b) The verifying officer shall inquire of the offender whether h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transfer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only the appropriat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may modify or set aside the conviction or sentence, and any proceedings seeking such action may only be brought in such courts;

(2) the sentence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ountry to which he is to be transferred and that those laws are subject to change;

(3) if a court in the country to which he is transferred should determine upon a proceeding initiated by him or on his behalf that his transfer was not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laws of that country, he may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sentence if the United States requests his return; and

(4) his consent to transfer, once verified by the verifying officer, is irrevocable.

(c) The verifying officer, before determining that an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shall advise the offender of his right to consult with counsel as provided by this chapter. If the offender wishes to consult with counsel before giving his consent, he shall be advised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continu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counsel.

(d) The verifying officer shall make the necessary inquiries to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not the result of any promises, threats, or other improper inducements, and that the offender accepts the transfer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b). The consent and acceptance shall be on an appropriate form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down by a reporter or recorded by suitable sound recording equip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intain custody of the records

Sec. 4108. - Verification of consent of offender to transfer to the United States

(a) Prior to the transfer of an offender to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offender consents to such transfer and that such consent is voluntary and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shall be verified in the country in which the sentence was imposed by a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or by a citizen specifically designated by a judge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451 of title 28, United States Code. The designation of a citizen who is an employee or officer of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at department or agency.

(b) The verifying officer shall inquire of the offender whether h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the transfer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only the country in which 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can modify or set aside the conviction or sentence, and any proceedings seeking such action may only be brought in that country;

(2) the sentence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ose laws are subject to change;

(3) if a United States court should determine upon a proceeding initiated by him or on his behalf that his transfer was not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e returned to the country which imposed the sentence for the purpose of completing the sentence if that country requests his return; and

(4) his consent to transfer, once verified by the verifying officer, is irrevocable.

(c) The verifying officer, before determining that an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shall advise the offender of his right to consult with counsel as provided by this chapter. If the offender wishes to consult with counsel before giving his consent, he shall be advised that the proceedings will be continu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counsel.

(d) The verifying officer shall make the necessary inquiries to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consent is voluntary and not the result of any promises, threats, or other improper inducements, and that the offender accepts the transfer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b). The consent and acceptance shall be on an appropriate form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e) The proceedings shall be taken down by a reporter or recorded by suitable sound recording equip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intain custody of the records

Sec. 4109. - Right to counsel, appointment of counsel

(a) In proceedings to verify consent of an offender for transfer, the offender shall have the right to advice of counsel. If the offender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counsel -

(1) counsel for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4107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006A of this title. Such appointment shall be considered an appointment in a misdemeanor case for purposes of compensation under the Act; [1]

(2) counsel for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4108 shall be appointed by the verifying officer pursuant to such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make payments of fees and expenses of the appointed counsel, in amounts approved by the verifying officer, which shall not exceed the amounts authorized under section 3006A of this title for representation in a misdemeanor case. Payment in excess of the maximum amount authorized may be made for ex-

tended or complex representation whenever the verifying officer certifies that the amount of the excess payment is necessary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and the payment is approved by the chief judge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ppropriate circuit. Counsel from other agencies in any branch of the Government may be appointe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pay counsel directly, or reimburse the employing agency for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Notwithstanding section 3324(a) and (b) of title 31, the Secretary may make advance payments of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to counsel appointed under this subsection.

(b) Guardians ad litem appointed by the verifying officer under section 4100 of this title to represent offenders who are financially unable to provide for compensation and travel expenses of the guardian ad litem shall be compensated and reimbursed under subsection (a)(1) of this section.

(c) The offender shall have the right to advice of counsel in proceedings before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under section 4106A of this title and in an appeal from a determination of such Commission under such section. If the offender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counsel, counsel for such proceedings and appeal shall be appointed under section 3006A of this title

Sec. 4110. - Transfer of juveniles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an act which would have been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had it been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hereof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403 of this tit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relevant treaty or in an agreement pursuant to such treaty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authority of the foreign country

Sec. 4111. - Prosecution barred by foreign conviction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detained, prosecuted, tried, or sentenc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thereof for any offense the prosecution of which would have been barred if the sentence up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had been by a court of the jurisdiction seeking to prosecute

the transferred offender, or if prosecution would have been barred by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seeking to prosecute the transferred offender if the sentence 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had been issued by a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by a court of another State

Sec. 4112. - Loss of rights, disqualification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to serve a sentence imposed by a foreign court shall not incur any loss of civil, political, or civic rights nor incur any disqualification other than those which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State in which the issue arises would result from the fact of the conviction in the foreign country

Notes on Sec. 4113.

SOURCE

Added Pub. L. 95-144, Sec. 1, Oct. 28, 1977, 91 Stat. 1219

amended Pub. L. 104-208, div. C, title III, Sec. 308(d)(4)(U), (e)(1)(Q), (2)(I), (g)(3)(B), (5)(A)(iv), Sept. 30, 1996, 110 Stat. 3009-619, 3009-620, 3009-622, 3009-623.

REFERENCES IN TEXT

Section 24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referred to in subsec. (a), is classified to section 1229c of 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

Section 24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referred to in subsecs. (b) and (c), is classified to section 1229a of Title 8

AMENDMENTS

1996 - Subsec. (a). Pub. L. 104-208, Sec. 308(g)(5)(A)(iv)(I), substituted "section 24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section 1252(b) or section 1254(e)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Subsec. (b). Pub. L. 104-208, Sec. 308(g)(5)(A)(iv)(II), substituted "section 24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section 1252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Pub. L. 104-208, Sec. 308(e)(1)(Q), (2)(I), substituted "removal" for "deportation" and "removed" for "deported".

Subsec. (c). Pub. L. 104-208, Sec. 308(g)(3)(B), substituted "24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1226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Pub. L. 104-208, Sec. 308(d)(4)(U), (e)(2)(I), substituted "removal" for "exclusion and deportation" and "removed" for "deported"

EFFECTIVE DATE OF 1997 AMENDMENT
Amendment by Pub. L. 104-208 effective, with certain transitional provisions,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beginning more than 180 days after Sept. 30, 1996, see section 309 of Pub. L. 104-208, set out as a note under section 1101 of 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

Notes on Sec. 4114.

SOURCE
Added Pub. L. 95-144, Sec. 1, Oct. 28, 1977, 91 Stat. 1219
amended Pub. L. 101-650, title III, Sec. 321, Dec. 1, 1990, 104 Stat. 5117.

CHANGE OF NAME
Words "magistrate judge" substituted for "magistrate" wherever appearing in subsec. (b) pursuant to section 321 of Pub. L. 101-650, set out as a note under section 631 of Title 28,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Sec. 4115. - Execution of sentences imposing an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or reparations

If in a sentence issued in a penal proceeding of a transferring country an offender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ordered to pay a sum of money to

the victim of the offense for damage caused by the offense, that penalty or award of damages may be enforced as though it were a civil judgment rendered by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Proceedings to collect the moneys ordered to be paid may be instituted by the Attorney General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Moneys recovered pursuant to such proceedings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the treaty authority of the transferring country for distribution to the victim

CHAPTER 307 - EMPLOYMENT

Sec. 4121. - Federal Prison Industries; board of directors

"Federal Prison Industries", a government corpor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administered by a board of six directo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serve at the will of the President without compensation.

The directors shall be representatives of

(1) industry,

(2) labor,

(3) agriculture,

(4) retailers and consumers,

(5)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6) the Attorney General, respectively

Sec. 4122. - Administration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a)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determine in what manner and to what extent industrial operations shall be carried on in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for consumption in such institutions or for sale to the departments or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but not for sale to the public in competition with private enterprise.

(b) (1) Its board of directors shall provide employment for the greatest number of those inmates in the United States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who

are eligible to work as is reasonably possible, diversify, so far as practicable, prison industrial operations and so operate the prison shops that no single private industry shall be forced to bear an undue burden of competition from the products of the prison workshops, and to reduce to a minimum competition with private industry or free labor.

(2)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conduct its operations so as to produce products on an economic basis, but shall avoid capturing more than a reasonable share of the market among Federal departments, agencies, and institutions for any specific product.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concentrate on providing to the Federal Government only those products which permit employment of the greatest number of those inmates who are eligible to work as is reasonably possible.

(3)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diversify its products so that its sales are distributed among its industries as broadly as possible.

(4) Any decision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produce a new product or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shall b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makes a final decision, the corporation shall do the following:

(A) The corporation shall prepare a detailed written analysis of the probable impact on industry and free labor of the plans for new production or expanded production. In such written analysis the corporation shall, at a minimum, identify and consider -

(i) the number of vendors currentl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product;

(ii) the propor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market for the product currently served by small businesses, 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 or businesses operating in labor surplus areas;

(iii) the siz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non-Federal Government markets for the product;

(iv) the projected growth in the Federal Government demand for the product; and

(v) the projected a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market to sustain both

Federal Prison Industries and private vendors.

(B) The corporation shall announce in a publication designed to most effectively provide notice to potentially affected private vendors the plans to produce any new product or to significantly expand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The announcement shall also indicate that the analysis prepared under subparagraph (A) is available through the corporation and shall invite comments from private industry regarding the new production or expanded production.

(C) The corporation shall directly advise those affected trade associations that the corporation can reasonably identify the plans for new production or expanded production, and the corporation shall invite such trade associations to submit comments on those plans.

(D) The corporation shall provide to the board of directors -

(i) the analysis prepared under subparagraph (A) on the proposal to produce a new product or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ii) comments submitted to the corporation on the proposal, and

(iii) the corporation's recommendations for action on the proposal in light of such comments.

In addition,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under this paragraph on a proposal, shall, upon the request of an established trade association or other interested representatives of private industry, provid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uch trade association or other representatives to present comments directly to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proposal.

(5)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publish in the manner specified in paragraph (4)(B) the final decision of the board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of a new product or the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production of an existing product.

(6)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publish, after the end of each 6-month period, a list of sales by the corporation for that 6-month period. Such list shall be made available to all interested parties.

(c) Its board of directors may provide for the vocational training of qualified inmates without regard to their industrial or other assignments.

(d)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employ-

ment and training of prisoners convicted by general courts-martial and confined in any institu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department or agency compris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the extent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2) Any department or agency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may, without exchange of funds, transfer to Federal Prison Industries any property or equipment suitable for us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covered by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e)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industrial employment and training of prisoners confined in any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o the extent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by the Commissioner,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2)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ay, without exchange of funds, transfer to the Federal Prison Industries any property or equipment suitable for us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covered by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e)(1) of this section.

(3)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Act approved October 3, 1964 (D.C. Code, sections 24-451 et seq.), entitled "An Act to establish in the Treasury a correctional industries fund for the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for other purposes."

Sec. 4123. - New industries

Any industry established under this chapter shall be so operated as not to curtail the production of any existing arsenal, navy yard, or other Government workshop.

Such forms of employment shall be provided as will give the inmates of all Federal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a maximum opportunity to acquire a knowledge and skill in trades and occupations which will provide them with a means of earning a livelihood upon release.

The industries may be either within the precincts of any penal or correc-

tional institution or in any convenient locality where an existing property may be obtained by lease, purchase, or otherwise

Sec. 4124. - Purchase of prison-made products by Federal departments

(a) The several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all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shall purchase at not to exceed current market prices, such products of the industries authorized by this chapter as meet their requirements and may be available.

(b) Disputes as to the price, quality, character, or suitability of such products shall be arbitrated by a board consisting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and the President, or their representatives. Their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c) Each Federal department, agency, and institu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shall separately report acquisitions of products and services from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the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as referred to in section 6(d)(4) of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in the same manner as it reports other acquisitions. Each report published by the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System shall include a statement to accompany the information reported by the department, agency, or institu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as follows: "Under current law, sales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are considered intragovernmental transfers. The purpose of reporting sales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is to provide a complete overview of acquisitions by the Federal Governmen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d)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ubsection,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publish a catalog of all products and services which it offers for sale. This catalog shall be updated periodical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n the catalog is complete and accurate

Sec. 4125. - Public works; prison camps

(a) The Attorney General may make available to the heads of the several departments the services of United States prisoners under terms, conditions, and rates mutually agreed upon, for constructing or repairing roads, clearing, maintaining and reforesting public lands, building levees, and constructing or repairing any other public ways or works financed wholly or in major part by funds appropriated by Congress.

(b)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equip, and maintain camps upon sites selected by him elsewhere than upon Indian reservations, and designate such camps as places for confinement of persons convicted of an offense against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c) The expenses of transferring and maintaining prisoners at such camps and of operating such camps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which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be reimbursed for such expenses.

(d) As part of the expense of operating such camps the Attorney General is authorized to provide for the payment to the inmates or their dependents such pecuniary earnings as he may deem proper,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e) All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the imprisonment, transfer, control, discipline, escape, release of, or in any way affecting prisoners, shall apply to prisoners transferred to such camps

Sec. 4126. - Prison Industries Fund; use and settlement of accounts

(a) All moneys under the control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or received from the sale of the products or by-products of such Industries, or for the services of federal prisoners, shall be deposited or covered into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redit of the Prison Industries Fund and withdrawn therefrom only pursuant to accountable warrants or certificates of settlement issued by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b) All valid claims and obligations payable out of said fund shall be assumed by the corporation.

(c) The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generally applicable to the expenditures of the several departments, agencies, and establishments of the Government, is authorized to employ the fund, and any earnings that may accrue to the corporation -

(1) as operating capital in performing the duties imposed by this chapter;

(2) in the lease, purchase, other acquisition, repair, alteration, erection, and maintenance of industrial buildings and equipment;

(3) in the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without regard to their industrial or other assignments;

(4) in paying, under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Attorney General, compensation to inmates employed in any industry, or performing outstanding services in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compensation to inmates or their dependents for injuries suffered in any industry or in any work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maintenance or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inmates are confined.

In no event may compensation for such injuries be paid in an amount greater than that provided in chapter 81 of title 5.

(d) Accounts of all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rendered to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for settlement and adjustment, as required by the Comptroller General.

(e) Such accounting shall include all fiscal transactions of the corporation, whether involving appropriated moneys, capital, or receipts from other sources.

(f) Funds available to the corporation may be used for the lease, purchase, other acquisition, repair, alteration, erection, or maintenance of facilities only to the extent such facilities are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operations of the corporation under this chapter. Such funds may not be used for the construction or acquisition of penal or correc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camps described in section

Sec. 4127. - Prison Industries report to Congress

The board of directors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during each fiscal year, and on the condition of its funds during such fiscal year. Such report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amount of obligations issued under section 4129(a)(1) during such fiscal year, and an estimate of the amount of obligations that will be so issued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Sec. 4128. - Enforcement by Attorney General

In the event of any failure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act,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be limited in carrying out the duties conferred upon him by law

Sec. 4129. - Authority to borrow and invest

(a) (1) A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Federal Prison Industries, to such extent and in such amounts as are provided in appropriations Acts, is authorized to issue its obligations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may purchase or agree to purchase any such obligations, except that the aggregate amount of obligations issued by Federal Prison Industries under this paragraph that are outstanding at any time may not exceed 25 percent of the net worth of the corporation. For purchases of such obligation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use as a public debt transaction the proceeds of the sale of any securities issued under chapter 31 of title 31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section, and the purposes for which securities may be issued under that chapter are extended to include such purchases. Each purchase of obligation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o yield a return at a rate not less than a rat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average yield on outstanding marketabl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comparable maturity. For purposes of the first sentence of this paragraph, the net worth of Federal Prison Industries is the amount by which its assets (including capital) exceed its liabilities.

(2)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sell,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at such price or prices as the Secretary shall determine, any of the obligations acquired by the Secretary under this subsection. All purchases and sale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f such obligation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treated as public debt transactions of the United States.

(b) Federal Prison Industries may reques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invest excess moneys from the Prison Industries Fund. Such investments shall be in public debt securities with maturities suitable to the needs of the corporation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bearing interest at rate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aking into consideration current market yields on outstanding marketabl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comparable maturities

CHAPTER 313 - OFFENDERS WITH MENTAL DISEASE OR DEFECT

Sec. 4241. - Determination of mental competency to stand trial

(a) Motion To Determine Competency of Defendant. -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a prosecution for an offense and prior t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or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file a motion for a hearing to determine the mental competency of the defendant.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or shall order such a hearing on its own motion,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the court shall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defendant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

(1) for such a reasonable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four months, a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he will attain the capacity to permit the trial to proceed; and

(2) for an additional reasonable period of time until -

(A) his mental condition is so improved that trial may proceed, if the court finds that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within such additional period of time he will attain the capacity to permit the trial to proceed; or

(B) the pending charges against him are disposed of according to law;

whichever is earlier.

If, at the end of the time period specified, it is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mental condition has not so improved as to permit the trial to proceed, the defenda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6.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defendant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nd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the competency of the defendant.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

fendant has recovered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nd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the court shall order his immediate discharge from the facility in which he is hospitalized and shall set the date for trial. Upon discharge, the defenda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207.

(f) Admissibility of Finding of Competency. -

A finding by the court that the defendant is mentally competent to stand trial shall not prejudice the defendant in raising the issue of his insanity as a defense to the offense charged, and shall not be admissible as evidence in a trial for the offense charged.

Sec. 4242. -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insan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a) Motion for Pretri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

Upon the filing of a notice, as provided in Rule 12.2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hat the defendant intends to rely on the defense of insanity, the court, upon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shall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b) Special Verdict. -

If the issue of insanity is raised by notice as provided in Rule 12.2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n motion of the defendant or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the court's own motion, the jury shall be instructed to find, or, in the event of a nonjury trial, the court shall find the defendant -

(1) guilty;

(2) not guilty; or

(3)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Sec. 4243. - Hospitalization of a person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a) Determination of Present Mental Condition of Acquitted Person. -
If a person is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at the time of the offense charged, he shall be committed to a suitable facility until such time as he is eligible for release pursuant to subsection (e).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pursuant to subsection (c), the court shall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
A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and shall take place not later than forty days following the special verdict.

(d) Burden of Proof. -
In a hearing pursuant to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a person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of an offense involving bodily injury to, or serious damage to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or involving a substantial risk of such injury or damage, has the burden of proving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his release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of property of another due to a present mental disease or defect. With respect to any other offense, the person has the burden of such 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e)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ails to find by the standard specified in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that the person's release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of property of another due to a present mental disease or defect,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

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is such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whichever is earli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periodically to exert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custody, care, and treatment.

(f)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n acquitted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e)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acquitted person or, on the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the standard specified in subsection (d)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

(1)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g)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

The director of a medical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n acquitted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f)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is continued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 Limitations on Furloughs. -

An individual who is hospitalized under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after being found 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 of an offense for which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creates a burden of proof of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may leave temporarily the premises of the facility in which that individual is hospitalized only -

(1)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tting court, upon notice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such individual, and after opportunity for a hearing;

(2) in an emergency; or

(3) when accompanied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is title).

(i) Certain Persons Found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1) Transfer to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

Notwithstanding section 301(h) of title 24 of the District of Columbia Code, and notwithstanding subsection 4247(j) of this title, all persons who have been committed to a hospital for the mentally ill pursuant to section 301(d)(1) of title 24 of the District of Columbia Code, and for whom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ing financial responsibility, may be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who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2) Application. -

(A) In general. -

The Attorney General may establish custody over such persons by filing an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demonstrating that the person to be transferred is a person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B) Notice. -

The Attorney General shall, by any means reasonably designed to do so, provide written notice of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to such person or such person's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other lawful agent. The person to be transferred shall be afforded an opportunity, not to exceed 15 days, to respond to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and may, at the court's discretion, be afforded a hearing on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Such hearing, if granted, shall be limited to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such person would be violated by the proposed transfer of custody.

(C) Order. -

Upon applica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e court shall order the person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unless, pursuant to a hearing under this paragraph, the court finds that the proposed transfer would violate a right of such person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D) Effect. -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

(i) create in any person a liberty interest in being granted a hearing or notice on any matter;

(ii) create in favor of any person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or

(iii) limit in any manner or degree the a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to move, transfer, or otherwise manage any perso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3) Construction with other sections. -

Subsections (f) and (g) and section 4247 shall apply to any person transferr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ec. 4244. - Hospitalization of a convicted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Motion To Determin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Convicted Defendant. - A defendant found guilty of an offense, or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may, within ten days after the defendant is found guilty, and prior to the time the defendant is sentenced, file a motion for a hearing on th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if the motion is supported by substantial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or at any time prior t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shall order such a hearing on its own motion, if it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psy-

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c), if the report includes an opinion by the examiners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but that it is not such as to require his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report shall also include an opinion by the examiner concerning the sentencing alternatives that could best accord the defendant the kind of treatment he does need.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defendant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nd that he should, in lieu of being sentenced to imprisonment, be committed to a suitable facility for care or treatment, the court shall commit the defendant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defendant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Such a commitment constitutes a provisional sentence of imprisonment to the maximum term authorized by law for the offense for which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defendant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no longer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such a facility,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f,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the provisional sentence imposed pursuant to subsection (d) has not expired, the court shall proceed finally to sentencing and may modify the provisional sentence.

Sec. 4245. - Hospitalization of an imprisoned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Motion To Determin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Imprisoned Person. -

If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bjects either in writing or through

his attorney to being transferred to a suitable facility for care or treatment,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imprisoned, may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facility is located for a hearing on the present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The court shall grant the motion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may presently be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A mo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transfer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 may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for the treatmen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he is no longer in need of such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o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hichever occurs earlier.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e is no longer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such a facility,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f,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ertificate, the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pon the

person has not expired, the court shall order that the person be reimprisoned until the expiration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Sec. 4246. - Hospitalization of a person due for release but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 or defect

(a) Institution of Proceeding. -

If the director of a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certifies that a person in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whose sentence is about to expire, or who has been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section 4241(d), or against whom all crimina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solely for reasons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and that suitable arrangements for State custody and care of the person are not available, he shall transmit the certificate to the clerk of the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is confined.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if the person was committed pursuant to section 4241(d), to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ourt shall orde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A certificate fil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stay the release of the person pending completion of procedures contained in this section.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Report. -

Prior to the date of the hearing, the court may order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be conducted, and that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be filed with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b) and (c).

(c) Hearing. -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d)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er-

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commit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if such State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his custody, care, and treatme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If, notwithstanding such efforts,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hospitalize the person f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til -

(1) such a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or

(2) the person's mental condition is such that his release, or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t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whichever is earli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periodically to exert all reasonable efforts to cause such a State to assume such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custody, care, and treatment.

(e) Discharge. -

When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ubsection (d) determines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he shall promptly file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with the clerk of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The clerk shall send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person's counsel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discharge of the person or, on the motion of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or on its own motion, shall hold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7(d),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If, after the hearing, the court find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has recovered from his mental disease or defect to such an extent that -

(1) his release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order that he be immediately discharged; or

(2) his conditional release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would no longer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court shall -

(A) order that he be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a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at has been prepared for him, that has been certified to the court as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he is committed, and that has been found by the court to be appropriate; and

(B) order, as an explicit condition of release, that he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court at any time may, after a hearing employing the same criteria, modify or eliminate the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f) Revocation of Conditional Discharge. -

The director of a medical facilit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a regimen imposed on a person conditionally discharged under subsection (e)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f any failure of the person to comply with the regimen. Upon such notice, or upon other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the person may be arrested, and, upon arrest, shall be taken without unnecessary delay before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him. The court shall, after a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remanded to a suitable facility on the ground that, in light of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gimen of medical,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care or treatment, his continued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g) Release to State of Certain Other Persons. -

If the director of a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this chapter certifies to the Attorney General that a person, against whom all charges have

been dismissed for reasons not related to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presently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to the appropriate official of the State in which the person is domiciled or was tried for the purpose of institution of State proceedings for civil commitment. If neither such State will assume such responsibil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lease the person upon receipt of notice from the State that it will not assume such responsibility, but not later than ten days after cer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h) Definition. -

As used in this chapter the term "State" includes the District of Columbia.

Sec. 4247. - General provisions for chapter

(a)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chapter -

(1) "rehabilitation program" includes -

(A) basic educational training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understanding the society to which he will return and that will assist him in understanding the magnitude of his offense and its impact on society;

(B) vocational training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contributing to, and in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to which he will return;

(C) drug, alcohol, and other treatment programs that will assist the individual in overcoming his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 and

(D) organized physical sports and recreation programs;

(2) "suitable facility" means a facility that is suitable to provide care or treatment given the nature of the offen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and

(3) "State" includes the District of Columbia.

(b)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conducted by a licensed or certified psychiatrist or psychologist, or, if the court finds it appropriate, by more than one such examiner. Each examiner shall be des-

ignated by the court, except that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5 or 4246,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an additional examiner may be selected b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s of an examination pursuant to an order under section 4241, 4244, or 4245, the court may commit the person to be examined for a reasonable period, but not to exceed thirty days, and under section 4242, 4243, or 4246, for a reasonable period, but not to exceed forty-five days,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for placement in a suitable facility. Unless impracticable,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suitable facility closest to the court.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may apply for a reasonable extension, but not to exceed fifteen days under section 4241, 4244, or 4245, and not to exceed thirty days under section 4242, 4243, or 4246, upon a showing of good cause that the additional time is necessary to observe and evaluate the defendant.

(c)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s. -

A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report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shall be prepared by the examiner designated to conduct the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with copies provided to the counsel for the person examined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and shall include -

(1) the person's history and present symptoms;

(2) a description of the psychiatric, psychological, and medical tests that were employed and their results;

(3) the examiner's findings; and

(4) the examiner's opinions as to diagnosis, prognosis, and -

(A)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1,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rendering him mentally incompetent to the extent that 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or to assist properly in his defense;

(B)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2, whether the person was insane at the time of the offense charged;

(C)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3 or 4246,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is release would create a substantial risk of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f another;
(D)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under section 4244 or 4245, whether the person is suffering from a mental disease or defect as a result of which he is in need of custody for care or treatment in a suitable facility; or
(E) if the examination is ordered as a part of a presentence investigation, any recommendation the examiner may have as to how the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should affect the sentence.

(d) Hearing. -
At a hearing ordered pursuant to this chapter the person whose mental condition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shall be represented by counsel and, if he is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counsel shall be appointed for him pursuant to section 3006A. The person shall be afforded an opportunity to testify, to present evidence, to subpoena witnesses on his behalf, and to confront and cross-examine witnesses who appear at the hearing.

(e) Periodic Report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

(1)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
(A) section 4241 shall prepare semiannual reports; or
(B) section 4243, 4244, 4245, or 4246 shall prepare annual reports concerning the mental condition of the person and containing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need for his continued hospitalization.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that ordered the person's commitment to the facility and copies of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such other persons as the court may direct. A copy of each such report concerning a person hospitalized after the beginning of a prosecution of that person for violation of section 871, 879, or 1751 of this title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Except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court, the Secret Service shall not use or disclose the information in these copies for any purpose other than carrying out protective duties under section 3056(a) of this title.

(2)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pursuant to section 4241, 4243, 4244, 4245, or 4246 shall inform such person of any rehabilitation programs that are available for persons hospitalized in that facility.

(f) Videotape Record. -

Upon written request of defense counsel, the court may order a videotape record made of the defendant's testimony or interview upon which the periodic report is based pursuant to subsection (e). Such videotape record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along with the periodic report.

(g) Habeas Corpus Unimpaired. -

Nothing contained in section 4243 or 4246 precludes a person who is committed under either of such sections from establishing by writ of habeas corpus the illegality of his detention.

(h) Discharge. -

Regardless of whether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a person is hospitalized has filed a certificat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e) of section 4241, 4244, 4245, or 4246, or subsection (f) of section 4243, counsel for the person or his legal guardian may, at any time during such person's hospitalization, file with the court that ordered the commitment a motion for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 should be discharged from such facility, but no such motion may be filed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f a court 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should continue to be hospitalized. A copy of the motion shall be sent to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in which the person is hospitalized and to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i)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

The Attorney General -

(A) may contract with a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ity, or a private agency for the confinement, hospitalization, care, or treatment of,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a person committed to his custody pursuant to this chapter;

(B) may apply for the civil commitment, pursuant to State law, of a person committed to his custody pursuant to section 4243 or 4246;

(C) shall, before placing a person in a facil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241, 4243, 4244, 4245, or 4246, consider the suitability of the facility's rehabilitation programs in meeting the needs of the person; and

(D) shall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the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i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acilities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j) Sections 4241, 4242, 4243, and 4244 do not apply to a prosecution under an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or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CHAPTER 315 - DISCHRGE AND RELEASE PAYMENTS

Sec. 4281. - Repealed. Pub. L. 98-473, title II, Sec. 218a7, Oct. 12, 1984, 98 Stat. 2027

Sec. 4282. - Arrested but unconvicted persons

On the release from custody of a person arrested on a charge of violating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Territory of Alaska, but not indicted nor informed against, or indicted or informed against but not convicted, and detained pursuant to chapter 207, or a person held as a material witness, the court in its discretion may direct the United States marshal for the district wherein he is released, pursuant to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Attorney General, to furnish the person so released with transportation and subsistence to the place of his arrest, or, at his election, to the place of his bona fide residence if such cost is not greater than to the place of arrest

Sec. 4283, 4284. - Repealed. Pub. L. 98-473, title II, Sec. 218a7, Oct. 12, 1984, 98 Stat. 2027

Sec. 4285. - Persons released pending further judicial proceedings

Any judge or magistrate judge of the United States, when ordering a person released under chapter 207 on a condition of his subsequent appearance before that court, any division of that court, or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another

judicial district in which criminal proceedings are pending, may, when the interests of justice would be served thereby and the United States judge or magistrate judge is satisfied, after appropriate inquiry, that the defendant is financially un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transportation to appear before the required court on his own, direct the United States marshal to arrange for that person's means of noncustodial transportation or furnish the fare for such transportation to the place where his appearance is required, and in addition may direct the United States marshal to furnish that person with an amount of money for subsistence expenses to his destination, not to exceed the amount authorized as a per diem allowance for travel under section 5702(a)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When so ordered, such expenses shall be paid by the marshal out of funds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for such expenses

CHAPTER 317 - INSTITUTIONS FOR WOMEN

Sec. 4321. - Board of Advisers

Four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prominence and distinction,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serve without compensation, for terms of four years, together with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and the warden of the Federal Reformatory for Women, shall constitute a Board of Advisers of said Federal Reformatory for Women, which shall recommend ways and means for the discipline and training of the inmates, to fit them for suitable employment upon their discharge.

Any person chosen to fill a vacancy shall be appointed only for the unexpired term of the citizen whom he shall succeed

CHAPTER 319 -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Sec. 4351. - Establishment; Advisory Board; appointment of members; compensation; officers; committees; delegation of powers; Director, appointment and powers FOOTNOTE 1

[1] Section catchline editorially supplied.

(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Bureau of Prisons a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b) The overall policy and oper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shall be under the supervision of an Advisory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sixteen members. The following six individuals shall serve as members of the Commission ex officio: 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or his designee,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or his designee, Chairman of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or his designee, the Director of the Federal Judicial Center or his designee, the Associate Administrator for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 or his designee, and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uman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r his designee.

(c) The remaining ten members of the Board shall be selected as follows:

(1) Five shall be appointed initially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staggered terms; one member shall serve for one year, one member for two years, and three members for three years. Upon the expiration of each member's term, the Attorney General shall appoint successors who will each serve for a term of three years. Each member selected shall be qualified as a practitioner (Federal, State, or local) in the field of corrections, probation, or parole.

(2) Five shall be appointed initially b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staggered terms, one member shall serve for one year, three members for two years, and one member for three years. Upon the expiration of each member's term the Attorney General shall appoint successors who will each serve for a term of three years. Each member selected shall be from the private sector, such as business, labor, and education, having demonstrated an active interest in cor-

rections, probation, or parole.

(d)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not, by reason of such membership, be deemed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are full-tim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serve without additional compensation, but shall be reimbursed for travel, subsistence,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vested in the Board. Other members of the Board shall, while attending meetings of the Board or while engaged in duties related to such meetings or in other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is title, be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at the rate not to exceed the daily equivalent of the rate authorized for GS-18 by section 533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ncluding traveltime, and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may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equal to that authorized by section 570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for persons in the Government service employed intermittently.

(e) The Board shall elect a chairman from among its members who shall serve for a term of one year.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also elect one or more members as a vice-chairman.

(f) The Board is authorized to appoint, without regard to the civil service laws, technical, or other advisory committees to advise the Institute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title as it deems appropriate. Members of these committees not otherwise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while engaged in advising the Institute or attending meetings of the committees,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at the rate fixed by the Board but not to exceed the daily equivalent of the rate authorized for GS-18 by section 533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d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may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equal to that authorized by section 570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for persons in the Government service employed intermittently.

(g) The Board is authorized to delegate its powers under this title to such persons as it deems appropriate.

(h) The Institute shall be under the supervision of an officer to be known as

the Director,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Board. The Director shall have authority to supervise the organization, employees, enrollees, financial affairs, and all other operations of the Institute and may employ such staff, faculty,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subject to the civil service and classification laws, as are necessary to the functioning of the Institute. The Director shall have the power to acquire and hold real and personal property for the Institute and may receive gifts, donations, and trusts on behalf of the Institute. The Director shall also have the power to appoint such technical or other advisory councils comprised of consultants to guide and advise the Board. The Director is authorized to delegate his powers under this title to such persons as he deems appropriate

Sec. 4352. - Authority of Institute; time; records of recipients; access; scope of section FOOTNOTE 1

[1] Section catchline editorially supplied.

(a) In addition to the other powers, express and implied,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shall have authority -

(1) to receive from or make grants to and enter into contracts with Federal, State, and general units of local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2) to serve as a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 center for the collection,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corre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grams for prevention of crime and recidivism, training of corrections personnel, and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criminal and juvenile offenders;

(3) to assist and serve in a consulting capacity to Federal, State, and local courts, departments, and agencies in th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coordination of programs, facilities, and services, train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ith respect to criminal and juvenile offenders;

(4) to encourage and assist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ograms and services, and programs and services of other public and private agenc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their efforts to develop and implement improved

corrections programs;

(5) to devise and conduct, in various geographical locations,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judges, and judicial personnel, probation and parole personnel, correctional personnel, welfare workers, and other persons, including lay ex-offenders, and paraprofessional personnel, connected with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criminal and juvenile offenders;

(6) to develop technical training teams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within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State and local agencies which work with prisoners, parolees, probationers, and other offenders;

(7) to conduct, encourage, and coordinate research relating to corrections, including the causes,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criminal offenders;

(8) to formulate and disseminate correctional policy, goals,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or Federal, State, and local correctional agencies,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personnel;

(9) to conduct evaluation programs which study the effectiveness of new approaches, techniques, systems, programs, and devices employed to improve the corrections system;

(10) to receive from any Federal department or agency such statistics, data, program reports, and other material as the Institute deem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Each such department or agency is author- ized to cooperate with the Institute and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consult with and furnish information to the Institute;

(11) to arrange with and reimburse the heads of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for the use of personnel, facilities, or equipment of such departments and agencies;

(12) to confer with and avail itself of the assistance, services, records, and fac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other public or private agenci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13) to enter into contracts with public or private agenci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or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functions of the Institute; and

(14) to procure the services of experts and consultan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09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at rates of compensation not to exceed the daily equivalent of the rate authorized for GS-18 by section 5332 of title 5 of the United States Code.

(b) Repealed. Pub. L. 97-375, title I, Sec. 109(a), Dec. 21, 1982, 96 Stat. 1820.)

(c) Each recipient of assistance under this chapter shall keep such records as the Institute shall prescribe, including records which fully disclose the amount and disposition by such recipient of the proceeds of such assistance,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or undertaking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assistance is given or used, and the amount of that portion of the cost of the project or undertaking supplied by other sources, and such other records as will facilitate an effective audit.

(d) The Institute, and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shall have access for purposes of audit and examinations to any books, documents, papers, and records of the recipients that are pertinent to the grants received under this chapter.

(e) The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ll recipients of assistance under this title, whether by direct grant or contract from the Institute or by subgrant or subcontract from primary grantees or contractors of the Institute

PART IV.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CHAPTER 401 - GENERAL PROVISIONS

Sec. 5001. - Surrender to State authorities; expenses

Whenever any person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has been arrested, charged with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punishable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fter investigation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it appears that such person has committed an offense or is a delinquent

under the laws of any State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can and will assume jurisdiction over such juvenile and will take him into custody and deal with him according to the laws of such State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at it will be to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juvenile offender, the United States attorney of the district in which such person has been arrested may forego his prosecution and surrender him as herein provided, unless such surrender is precluded under section 5032 of this title.

The United States marshal of such district upon written order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 shall convey such person to such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f already therein, to any other part thereof and deliver him into the custody of the proper authority thereof.

Before any person is conveyed from one State to another or from or to the District of Columbia under this section, he shall signify his willingness to be so returned, or there shall be presented to the United States attorney a demand from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which the prisoner is to be returned, supported by indictment or affidavit as prescribed by section 3182 of this title.

The expense incident to the transportation of any such person, as herein authorized, shall be paid from the appropriation "Salaries, Fees, and Expenses, United States Marshals.'

Sec. 5003. - Custody of State offenders

(a) (1)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Prisons when proper and adequate facilities and personnel are available may contract with proper officials of a State or territory, for the custody, care, subsistence, education, treatment, and training of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such State or territory.

(2) Any such contract shall provide -

(A) for reimbursing the United States in full for all costs or expenses involved;

(B) for receiving in exchange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serve their sentence in appropriate institutions or facilities of the State or territory by designation as provided in section 4082(b) [1] of this title, this exchange to be made according to formulas or conditions which may

be negotiated in the contract; or

(C) for compensating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a combination of monetary payment and of receipt of persons convicted of criminal offenses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formulas or conditions which may be negotiated in the contract.

(3) No such contract shall provide for the receipt of more State or territory prisoners by the United States than are transferred to that State or territory by such contract.

(b) Funds received under such contract may be deposited in the Treasury to the credit of the appropriation or appropriations from which the payments for such service were originally made.

(c)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contract, a person committed to the Attorney General hereunder shall be subject to all the provisions of law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persons committed for violations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not inconsistent with the sentence imposed.

(d) The term "State" as used in this section includes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anal Zone

CHAPTER 403 - JUVENILE DELINQUENCY

Sec. 5031.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juvenile" is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his eighteenth birthday, or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and disposi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his twenty-first birthday,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violation of a law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d by a person prior to his eighteenth birthday which would have been a crime if committed by an adult or a violation by such a person of section 922(x)

Sec. 5032. - Delinquency proceedings in district courts; transfer for criminal prosecution

A juvenile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other than a violation of law committed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which the maximum authorized term of imprisonment does not exceed six months, shall not be proceeded against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Attorney General, after investigation, certifies to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t

(1) the juvenile court or other appropriate court of a State does not have jurisdiction or refuses to assume jurisdiction over said juvenile with respect to such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2) the State does not have available programs and services adequate for the needs of juveniles, or

(3) the offense charged is a crime of violence that is a felony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41), or section 1002(a), 1003, 1005, 1009, or 1010(b)(1), (2), or (3)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2(a), 953, 955, 959, 960(b)(1), (2), (3)), section 922(x) or section 924(b), (g), or (h) of this title, an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Federal interest in the case or the offense to warrant the exercise of Federal jurisdiction.

If the Attorney General does not so certify, such juvenile shall be surrendered to the appropriate legal authorities of such Stat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State" includes a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ny commonwealth,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If an alleged juvenile delinquent is not surrendered to the authorities of a State pursuant to this section, any proceedings against him shall be in an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such purposes, the court may be convened at any time and place within the district, in chambers or otherwise.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ceed by information or as authorized under section 3401(g) of this title, and no criminal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for the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except as provided below.

A juvenile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who is not surrendered to State authorities shall be proceeded against under this chapter unless he has requested in writing upon advice of counsel to be proceeded against as an adult, except that, with respect to a juvenile fifteen years and older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after his fifteen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that is a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41), or section 1002(a), 1005, or 1009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2(a), 955, 959), or section 922(x) of this title, or in section 924(b), (g), or (h) of this title, criminal prosecution on the basis of the alleged act may be begun by motion to transfer of the Attorney General in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f such court finds, after hearing, such transfe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sentence, if the crime of violence is an offense under section 113(a), 113(b), 113(c), 1111, 1113, or, if the juvenile possessed a firearm during the offense, section 2111, 2113, 2241(a), or 2241(c), "thirteen" shall be substituted for "fifteen" and "thirteenth" shall be substituted for "fifteenth". Notwithstanding sections 1152 and 1153, no person subject to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an Indian tribal government shall be subject to the preceding sentence for any offense the Federal jurisdiction for which is predicated solely on Indian country (as defined in section 1151), and which has occurred within the boundaries of such Indian country, unless the governing body of the tribe has elected that the preceding sentence have effect over land and persons subject to its criminal jurisdiction. However, a juvenile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 act after his sixteen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offense that has as an element thereof the use, attempted use, or threatened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f another, or that, by its very nature, involves a substantial risk that physical force against the person of another may be used in committing the offense, or would be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32, 81, 844(d), (e), (f), (h), (i) or 2275 of this title, subsection (b)(1)(A), (B), or (C), (d), or (e) of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r section 1002(a), 1003, 1009, or 1010(b)(1), (2), or (3)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21 U.S.C. 952(a), 953, 959, 960(b)(1), (2), (3)), and who has previously been found guilty of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have been one of the offenses set forth in this paragraph or an offense in violation of a State felony statute that would have been such an offense if a circumstance giving rise to Federal jurisdiction had existed, shall be transferred to the appropriat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criminal prosecution.

Evidence of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and findings with regard to each factor shall be made in the record, in assessing whether a transfe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the age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juvenile;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se;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juvenile's prior delinquency record; the juvenile's present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maturity; the nature of past treatment efforts and the juvenile's response to such efforts; the availability of programs designed to treat the juvenile's behavioral problems. I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ffense, as required by this paragraph,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juvenile played a leadership role in an organization, or otherwise influenced other persons to take part in criminal activities, involving the use or distribution of controlled substances or firearms. Such a factor, if found to exist, shall weigh in favor of a transfer to adult status, but the absence of this factor shall not preclude such a transfer.

Reasonable notice of the transfer hearing shall be given to the juvenile,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nd to his counsel. The juvenile shall be assisted by counsel during the transfer hearing, and at every other critical stage of the proceedings.

Once a juvenile has entered a plea of guilty or the proceeding has reached the stage that evidence has begun to be taken with respect to a crime 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 or juvenile proceedings based upon such alleged act of delinquency shall be barred.

Statements made by a juvenile prior to or during a transfer hearing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admissible at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s.

Whenever a juvenile transferred to district court under this section is not convicted of the crime upon which the transfer was based or another crime which would have warranted transfer had the juvenile been initially charged with that crime, further proceedings concerning the juvenile sha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juvenile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dult prosecution nor shall a hearing be held under section 5037 (disposition after a finding of juvenile delinquency) until any prior juvenile court records of such juvenile have been received by the court, or the clerk of the juvenile court has certified in writing that the juvenile has no prior record, or that the juvenile's record is unavailable and why it is unavailable.

Whenever a juvenile is adjudged delinqu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specific acts which the juvenile has been found to have committed shall be described as part of the official record of the proceedings and part of the juvenile's official record

Sec. 5033. - Custody prior to appearance before magistrate judge

Whenever a juvenile is taken into custody for an alleged act of juvenile delinquency, the arres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advise such juvenile of his legal rights, in language comprehensive to a juvenile,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juvenile'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of such custody. The arresting officer shall also notify the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of the rights of the juvenile and of the nature of the alleged offense.

The juvenile shall be taken before a magistrate judge forthwith.

In no event shall the juvenile be detained for longer tha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efore being brought before a magistrate judge

Sec. 5034. - Duties of magistrate judge

The magistrate judge shall insure that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before proceeding with critical stages of the proceedings. Counsel shall be assigned to represent a juvenile when the juvenile and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re financially un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In cases where the juvenile and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are financially able to obtain adequate representation but have not retained counsel, the magistrate judge may assign counsel and order the payment of reasonable attorney's fees or may direct the juvenile, his parents, guardian, or custodian to retain private counsel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magistrate judge may appoint a guardian ad litem if a parent or guardian of the juvenile is not present, or if the magistrate judge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arents or guardian will not cooperate with the juvenile in preparing for trial, or that the interests of the parents or guardian and those of the juvenile are adverse.

If the juvenile has not been discharged before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the magistrate judge, the magistrate judge shall release the juvenile to his parents, guardian, custodian, or other responsible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irector of a shelter-care facility) upon their promise to bring such juvenile before the appropriate court when requested by such court unless the magistrate judge determines, after hearing, at which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that the detention of such juvenile is required to secure his timely appearance before the appropriate court or to insure his safety or that of others

Sec. 5035. - Detention prior to disposition

A juvenile alleged to be delinquent may be detained only in a juvenile facility or such other suitable place as the Attorney General may designate. Whenever possible, detention shall be in a foster home or community based facility located in or near his home community.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cause any juvenile alleged to be delinquent to be detained or confined in any institution in which the juvenile has regular contact with adult persons convicted of a crime or awaiting trial on criminal charges. Insofar as possible, alleged delinquents shall be kept separate from adjudicated delinquents. Every juvenile in custody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heat, light, sanitary facilities, bedding, clothing, recreation, education, and medical care, including necessary psychiatric, psychological, or other care and treatment

Sec. 5036. - Speedy trial

If an alleged delinquent who is in detention pending trial is not brought to trial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detention was begun, the information shall be dismissed on motion of the alleged delinquent or at the direc-

tion of the court, unless the Attorney General shows that additional delay was caused by the juvenile or his counsel, or consented to by the juvenile and his counsel, or would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in the particular case. Delays attributable solely to court calendar congestion may not be considered in the interest of justice.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n information dismissed under this section may not be reinstituted

Sec. 5037. - Dispositional hearing

(a) If the court finds a juvenile to be a juvenile delinquent, the court shall hold a disposition hearing concerning the appropriate disposition no later than twenty court days after the juvenile delinquency hearing unless the court has ordered further study pursuant to subsection (d). After the disposition hearing, and after considering any pertinent policy statements promulgated by the Sentencing Commission pursuant to 28 U.S.C. 994, the court may suspend the findings of juvenile delinquency, enter an order of restitution pursuant to section 3556, place him on probation, or commit him to official detention. With respect to release or detention pending an appeal or a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after disposition, the court shall proce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207.

(b) The term for which probation may be ordered for a juvenile found to be a juvenile delinquent may not extend -

(1)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less than eighteen years old, beyond the lesser of -

(A) the date when the juvenile becomes twenty-one years old; or

(B) the maximum term that would be authorized by section 3561(c)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or

(2)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between eighteen and twenty-one years old, beyond the lesser of -

(A) three years; or

(B) the maximum term that would be authorized by section 3561(c)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The provisions dealing with probation set forth in sections 3563, 3564, and 3565 are applicable to an order placing a juvenile on probation.

(c) The term for which official detention may be ordered for a juvenile found to be a juvenile delinquent may not extend -

(1)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less than eighteen years old, beyond the lesser of -

(A) the date when the juvenile becomes twenty-one years old; or

(B)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that would be authorized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or

(2) in the case of a juvenile who is between eighteen and twenty-one years old -

(A) who if convicted as an adult would be convicted of a Class A, B, or C felony, beyond five years; or

(B) in any other case beyond the lesser of -

(i) three years; or

(ii)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that would be authorized if the juvenile had been tried and convicted as an adult.

Section 3624 is applicable to an order placing a juvenile under detention.

(d) If the court desires more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an alleged or adjudicated delinquent, it may commit him, after notice and hearing at which the juvenile is represented by counsel,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for observation and study by an appropriate agency. Such observation and study shall be conducted on an out-patient basis,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inpatient observation and study are necessary to obtain the desired information. In the case of an alleged juvenile delinquent, inpatient study may be order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juvenile and his attorney. The agency shall make a complete study of the alleged or adjudicated delinquent to ascertain his personal traits, his capabilities, his background, any previous delinquency or criminal experience, any mental or physical defect, and any other relevant factors.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to the court and the attorneys for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commitment of the juvenile, unless the court grants additional time

(a) Throughout and upon the comple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the records shall be safeguarded from disclosure to unauthorized persons.

The records shall be releas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mee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inquiries received from another court of law;

(2) inquiries from an agency preparing a presentence report for another court;

(3) inquiries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wher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a crime or a position within that agency;

(4) inquiries, in writing, from the director of a treatment agency or the director of a facility to which the juvenile has been committed by the court;

(5) inquiries from an agency considering the person for a position immediately and directly aff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6) inquiries from any victim of such juvenile delinquency, or if the victim is deceased from the immediate family of such victim, related to the final disposition of such juvenile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7.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is section, information about the juvenile record may not be released whe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lated to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license, bonding, or any civil right or privilege. Responses to such inquiries shall not be different from responses made about persons who have never been involved in a delinquency proceeding.

(b) District courts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any juvenile shall inform the juvenile, and his parent or guardian, in writing in clear and nontechnical language, of rights relating to his juvenile record.

(c) During the course of any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all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ing to the proceeding, which are obtained or prepared in the discharge of an official duty by an employee of the court or an employee of any other governmental agency, shall not be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yone other than the judge, counsel for the juvenile and the Government, or others entitled under this section to receive juvenile records.

(d) Whenever a juvenile is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that is a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r section 1001(a), 1005, or 1009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such juvenile shall

be fingerprinted and photographed. Except a juvenile described in subsection (f),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of a juvenile who is not prosecuted as an adult shall be made availabl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of a juvenile who is prosecuted as an adult shall be made available in the manner applicable to adult defendants.

(e) Unless a juvenile who is taken into custody is prosecuted as an adult neither the name nor picture of any juvenile shall be made public in connection with a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

(f) Whenever a juvenile has on two separate occasions been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 felony crime of violence or an offense described in section 401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r section 1001(a), 1005, or 1009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or whenever a juvenile has been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 act after his 13th birthday which if committed by an adult would be an offense described in the second sentence of the fourth paragraph of section 5032 of this title, the court shall transmit to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djudications, including name, date of adjudication, court, offenses, and sentence, along with the notation that the matters were juvenile adjudications

Sec. 5039. - Commitment

No juvenile committed, whether pursuant to an adjudication of delinquency or conviction for an offense,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may be placed or retained in an adult jail or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he has regular contact with adults incarcerated because they have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are awaiting trial on criminal charges.

Every juvenile who has been committed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heat, light, sanitary facilities, bedding, clothing, recreation, counseling, education, training, and medical care including necessary psychiatric, psychological, or other care and treatment.

Whenever possible,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mmit a juvenile to a foster home or community-based facility located in or near his home community

Sec. 5040. - Support

The Attorney General may contract with any public or private agency or individual and such community-based facilities as halfway houses and foster homes for the observation and study and the custody and care of juveniles in his custody. For these purposes, the Attorney General may promulgate such regulations as are necessary and may use the appropriation for "suppor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r such other appropriations as he may designate

Sec. 5042. - Revocation of probation

Any juvenile probationer shall be accorded notice and a hearing with counsel before his probation can be revoked

빈 면

VI.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being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No. 48 of 1982
[Assented to 29 April 1982]

SUMMARY OF PROVISIONS

PART 1
PRELIMINARY

1. Short title
4. Interpretation

PART 2
CORRECTIONAL SERVICES

DIVISION 1-ADMINISTRATION

7. Power of Minist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to delegate
8. Use of volunteers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9. Annual report of Chief Executive Officer

DIVISION 2-THE CORRECTIONAL SERVICES ADVISORY COUNCIL

10. Continuation of the Advisory Council
11. Term of office of members
12. Allowances and expenses
13. Removal from and vacancies of office
14. Manner in which business of the Advisory Council must be conducted

15. Functions of the Advisory Council
16. Annual report

DIVISION 3-VISITING TRIBUNALS
17. Establishment of Visiting Tribunals

DIVISION 4-COMMUNITY SERVICE ADMINISTRATION
17A. Establishment of community service centres
17B. The community service advisory committee
17C. Community service committees
17D. Insurance cover to be provided by Minister

DIVISION 5-PROBATION HOSTELS
17E. Establishment of probation hostels

PART 3
CORRECTIONAL INSTITUTIONS

DIVISION 1-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18. Governor may proclaim premises to be a prison or police prison
19.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er

DIVISION 2-INSPEC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20. Correctional institutions must be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PART 4
IMPRISONMENT

DIVISION 1-ADMISSION AND ASSIGNMENT OF PRISONERS
21A. Documentation to be presented upon admission of a prisoner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22. Assignment of prisoners to particular correctional institutions

DIVISION 3-ASSESSMENT OF PRISONERS

23. Initial and periodic assessment of prisoners

DIVISION 4-CUSTODY OF PRISONERS

24. Chief Executive Officer has custody of prisoners

DIVISION 5-TRANSFER AND LEAVE OF ABSENCE OF PRISONERS

25. Transfer of prisoners

26. Prisoner may be temporarily detained in any other prison, etc., while in transit

27. Leave of absence from prison

28. Removal of prisoner for criminal investigation, attendance in court, etc.

DIVISION 6-MANAGEMENT OF PRISONERS

29. Prison work

30. Prison education

31. Prisoner allowances and other money

32. Purchase of items of personal use by prisoners

33. Prisoners' mail

33A. Prisoners' goods

34. Prisoners' rights to have visitors

35. Prisoners' rights to access to legal aid and legal services

36. Power to keep a prisoner apart from all other prisoners

37. Search of prisoners

37AA. Drug testing of prisoners

DIVISION 6A-HOME DETENTION

37A. Release of eligible prisoners on home detention

37B. Authorised officers

37C. Revocation of release

37D. Crown not liable to maintain prisoners on home detention

DIVISION 7-RELEASE OF PRISONERS FROM PRISON

38. Release of prisoner from prison or home detention

39. Time of release from prison
39A. Delivery of property and money to prisoner on release
39B. Manner in which former prisoner's personal property is to be dealt with
39C. Certain prohibited items not to be returned to prisoners

PART 5
OFFENCES

DIVISION 1-POWERS OF VISITING TRIBUNALS
41. Powers of a Visiting Tribunal
42. Immunity from liability of persons who constitute Visiting Tribunals

DIVISION 2-BREACHES OF REGULATIONS
42A. Minor breaches of prison regulations
43. Manager may deal with breaches of prison regulations
44. Manager may refer any matter to a Visiting Tribunal
45. Procedure at inquiries under this Division
46. Appeals against penalties imposed by managers
47. Appeals against orders of Visiting Tribunals
48. Justices Act does not apply to proceedings under this Division
49. Manager may delegate power to deal with breaches of prison regulations

DIVISION 4-PRISONERS AT LARGE
50. Effect of prisoner being at large
50A. Prisoner must comply with conditions to which temporary leave of absence is subject
51. Offences by persons other than prisoners
52. Power of arrest by officers of the Department

PART 6
PAROLE

DIVISION 1-THE PAROLE BOARD

55. Continuation of the Parole Board
56. Term of office of members
57. Allowances and expenses
58. Removal from and vacancies of office
59. Deputies
60. Proceedings of the Board
60A. Validity of acts of the Board and immunity of its members
61. Judicial notice of Board documents
62. Appointment of secretary to the Board
63. Powers of the Board
64. Reports by the Board

DIVISION 3-RELEASE ON PAROLE

66. Release on parole-prisoners imprisoned for less than five years
67. Release on parole-prisoners imprisoned for five years or more
68. Conditions of release on parole
69. Duration of parole in relation to prisoners other than life prisoners
70. Duration of parole for life prisoners
71. Variation or revocation of parole conditions
72. Discharge from parole of prisoners other than life prisoners
73. Automatic cancellation of parole for breach of designated conditions
74. Cancellation of release on parole by Board for breach of conditions other than designated conditions
74AA. Board may impose community service for breach of nonconditions
74A. Suspension of parole while serving imprisonment for offence committed before release on parole
75. Automatic cancellation of parole upon imprisonment for offence committed

while on parole
76. Apprehension, etc., of parolees
77.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PART 8
MISCELLANEOUS

83. Managers may make rules
84. Managers to comply with the execution of process
85. Execution of warrants
85A. Manager of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refuse entry to or cause the eviction of certain persons
85B. Power of search and arrest
85C. Confidentiality
85D. Release of information to victims, etc.
86. Prison officers may use reasonable force in certain cases
86A. Immunity from liability
87. Certain persons may enter and inspect correctional institutions
88. Minister may acquire land
88A. Summary offences
88B. Evidentiary provision
89. Regulations

Part 1-Preliminary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 * * * * * * * * *

Interpretation

4.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Aboriginal people**" means the people who inhabited Australia before European colonisation;

"**Aborigine**" means a descendant of the Aboriginal people who is accepted as a member by a group in the community who claim descent from the Aboriginal people;

"**the Advisory Council**" means the Correctional Services Advisory Council

"**the Board**" means the Parole Board of South Australia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eans the person holding or acting in the position of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Department;

"**child sexual offence**" means any of the following offences committed against or in relation to a child under 16 years of age (including a substantially similar offence against the law of another place):

(a) rape;

(b) indecent assault;

(c) incest;

(d) an offence involving unlawful sexual intercourse;

(e) an offence involving an act of gross indecency;

(f) an offence involving child prostitution;

(g) an offence involving indecency or sexual misbehaviour including an offence against sectionof the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or against section 23 or 33 of the Summary Offences Act 1953

(h) an attempt to commit, or assault with intent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above paragraphs;

(i) any other offence (such as homicide or abduction),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above paragraphs was also committed by the same person against or in relation to the child in the course of, or as part of the events surrounding,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mean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Department whose duties include the supervision of offenders in the community;

"**contempt prisoner**" means a person committed to prison,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failure to comply with an order for the payment of a pecuniary sum, or for contempt of court;

"**correctional institution**" means a prison or police prison;

"**the Department**" means the Depart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designated condition**", in relation to release on parole, means a condition of the parole that is designated by the Board as a condition the breach of which will result in automatic cancellation of parole;

"**drug**" means-

(a) a drug of dependence or prohibited substance, as defined in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1984 or

(b) a substance, generally supplied on prescription only, declared by the regulations to be a drug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magistrate**" means a magistrate appointed under the Magistrates Act 1983

"**manager**", in relation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means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nonperiod**" means a period fixed by a court as a period during which a prisoner may not be released on parole;

"**police prison**" means premises declared to be a police prison under Part 3;

"**prison**" means premises declared to be a prison under Part

"**prisoner**" means a person committed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pursuant to an order of a court or a warrant of commitment;

"**remand prisoner**" means a person remanded in custody awaiting trial or sentence;

"**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 means detention in custody until further order of a court;

"**victim**", in relation to an offence, means a person who suffered mental or physical injury or nervous shock as a result of the offence;

"**VIC levy**" means a levy imposed under the Victims of Crime Act 2001 or a corresponding previous law;

"**Visiting Tribunal**", in relation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means a Visiting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that institution.

* * * * * * * * * *

Part 2-Correctional services

Division 1-Administration

Power of Minist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to delegate

7. (1) The Minister may, from time to time, by instrument in writing, delegate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y powers, duties or functions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2)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delegate to any employee of the Department, any of the powers, functions, duties or responsibilities vested in, imposed on or delegated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2a)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delegate to the manager of a police prison any of the powers, functions, duties or responsibilities-

(a) that are vested in, imposed on or delegated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b) that are applicable to the police prison or to those persons who are, or are to be, detained in it.

(3) A delegation under this section is revocable at will, and does not prevent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f any power, function, duty or responsibility by the Minister or the Chief Executive Officer.

(4) Any power, function, duty or responsibility vested in, imposed on or delegated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under this Act may, i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s absent from or otherwise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office, be exercised or performed by such other employee of the Department as the Minister may authorise.

Use of volunteers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8. The Minister must promote the use of volunteers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to such extent as the Minister thinks appropriate.

Annual report of Chief Executive Officer

9.(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not later than 31 October in each year, submit to the Minister a report on the work of the Department during the previous financial year and on such other matters as the Minister may direct.

(2) The Minist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receipt of a report submitted under this section, cause a copy of the report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Division 2-The Correctional Services Advisory Council

Continuation of the Advisory Council

10. (1) The Correctional Services Advisory Council continues in existence.

(2) The Advisory Council consists of six members appointed by the Governor, of whom-

(a) one (the presiding member) will be a person who has, in the opinion of the Governor,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the science of criminology or penologyor any other related science; and

(b) one (the deputy presiding member) will be a person who has, in the opinion of the Governor,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medicine, social welfare or education; and

(c) one will be a person nominated by the Attorney and

(d) three will be persons nominated by the Minister.

(3) At least one of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uncil must be a woman and at least one must be a man.

Term of office of members

11. (1) The presiding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wi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five

(2)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ther than the presiding member will be appointed for such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as the Governor determines and specifies in the instrument of appointment.

(3) 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the member is eligible for reappointment.

Allowances and expenses

12.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is entitled to receive such allowances and expenses as the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determine.

Removal from and vacancies of office

13. (1) The Governor may remove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from office on the ground of

(a) mental or physical incapacity to carry out satisfactorily the duties of office; or

(b) dishonourable conduct; or

(c) neglect of duty.

(2)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becomes vacant if the member

(a) dies; or

(b) completes a term of office; or

(c) resigns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Minister; or

(d) is removed from office by the Governor pursuant to subsection (1).

(3) On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becoming vacant, a person must be appointed to that office in accordance with this Act.

Manner in which business of the Advisory Council must be conducted

14. (1) The presiding member or, in the presiding member's absence, the deputy presiding member will preside at any meeting of the Advisory Council.

(2) Four members, one of whom must be the presiding member or the deputy presiding member, constitute a quorum of the Advisory Council, and no business may be transacted at any meeting of the Advisory Council unless a quorum is present.

(3) Subject to this Division, the business of the Advisory Council will be conducted in such manner as the Advisory Council may determine.

Functions of the Advisory Council

15. (1) The functions of the Advisory Council are as follows:

(a) to monitor and evaluate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is Act; and

(b) to report to the Minister on any matter referred to the Advisory Council

by the Minister; and

(c) to report of its own motion to the Minister on any matter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on or operation of this Act; and

(d) to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o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2)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is entitled at any reasonable time to enter and inspect any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ask questions of any person within the institution.

Annual report

16.(1) The Advisory Council must, not later than 31 October in each year, report to the Minister on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is Act during the previous financial year.

(2) The Minist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receipt of a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1), cause a copy of the report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Division 3-Visiting Tribunals

Establishment of Visiting Tribunals

17. (1) There must be established for each correctional institution such number of Visiting Tribunals as the Minister thinks necessary or desirable.

(2) The Governor may, by proclamation, appoint

(a) a magistrate; or

(b) two justices of the peace; or

(c) a justice of the peace,

to be a Visiting Tribunal for a correctional institution.

* * * * * * * * * *

(4) The Governor may, by further proclamation, vary or revoke a proclamation under this section.

Division 4-Community service administration

Establishment of community service centres

17A. (1)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declare any premises to be a community service centre.

(2)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revoke or vary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3) Community service centre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er.

The community service advisory committee

17B. (1) The community service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Offenders Probation Act 1913 is continued in existence under this Act.

(2) The advisory committee is comprised of not less than three, nor more than five, member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whom

(a) one will be appoin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Trades and Labor Council; and

(b) one will be a person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3)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will hold offic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Minister thinks fit.

(4) The func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are

(a) to formulate guidelines for the approval of projects and tasks suitable for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 by offenders; and

(b) to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the Minister may direct.

Community service committees

17C. (1) The Minister will establish a community service committee for each community service centre.

(2) A community service committee will consist of not less than three, nor more than five, members, of whom-

(a) one will be a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and

(b) one will be appoin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Trades and Labor Council; and

(c) one will be a person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3) The members of a community service committee will hold office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Minister thinks fit.

(4) The functions of a community service committee are

(a) to approve, within the guidelines formulated by the community service advisory committee, the projects and tasks to be performed as community service work by offenders attending the community service centre in respect of which the committee was established and

(b) to keep approved projects and tasks under regular review; and

(c) to monitor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 work by offenders attending the centre; and

(d) to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the Minister may direct.

(5) A community service committee must not approve a project or task for community service unless

(a) it is a project or task for the benefit of an organisation that does not seek to secure a pecuniary profit for its members; or

(b) it is a project or task to aid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who, in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is or are disadvantaged through age, illness, incapacity, poverty or any other adversity; or

(c) it is a project or task of a Government department or instrumentality or of a local government authority.

(6) A community service committee must not approve a project or task for community service work if an offender, in undertaking that project or task

(a) would replace a person who is being paid to perform any work; or

(b) would perform any work for which funds are available.

Insurance cover to be provided by Minister

17D.(1) The Minister must provide insuranc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Minister thinks fit, for offenders in respect of death or injury arising out of, or occurring in the course of, community service performed pursuant to any Act.

(2) The Minister must provide insuranc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Minister thinks fit, for persons appointed as voluntary supervisors of offenders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pursuant to any Act in respect of death or injury

arising out of, or occurring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eir duties as supervisors.

(3) The cost of providing insurance cover under this section will be borne by the Crown.

Division 5-Probation hostels

Establishment of probation hostels

17E. (1)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declare any premises to be a probation hostel.

(2)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vary or revoke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3) Probation hostel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er.

Part 3-Correctional institutions

Division 1-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Governor may proclaim premises to be a prison or police prison

18. (1) The Governor may, by proclamation

(a) declare any premises to be a prison; or

(b) declare any premises under the control of the Commissioner of Police to be a police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The Governor may, by further proclamation, vary or revoke a proclamation under subsection (1).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er

19. (1) All correc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is Act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er.

* * * * * * * * * *

Division 2-Inspec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Correctional institutions must be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20.(1) The Minister must cause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be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by an inspector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are being complied with.

(2) The Governor may appoint such number of inspector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s the Governor thinks fit.

(2a)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appointment as an inspector unless he or she-

(a) is a person who has retired from judicial or magisterial office; or

(b) is a legal practitioner; or

(c) is a justice of the peace.

(3) An inspector cannot be directed to inspect a correctional institution in respect of which the inspector constitutes a Visiting Tribunal or is a member of such a Tribunal.

(4) For the purposes of, or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an inspection, an inspector may

(a) enter and inspect any par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b) question any person within the institution; and

(c) inquire in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r of a particular prisoner; and

(d) receive and investigate any complaint of a prisoner.

(5) An inspector may, in investigating a complaint, be assisted by any other person authorised by the Attorneyfor the purpose.

(6) An inspector must,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carrying out an inspection pursuant to this section, or at such other intervals as the Minister may direct, furnish the Minister with a written report on the inspection, including findings in relation to any complaint investigated by the inspector in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7) An inspector may, in a report furnished pursuant to this section, make such recommendations on any matter arising out of the report as he or she thinks fit.

Part 4-Imprisonment

* * * * * * * * * *

Division 1-Admission and assignment of prisoners

Documentation to be presented upon admission of a prisoner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21A. A person who is to be deta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pursuantto an order of a court or a warrant of commitment cannot be admitted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detention except on presentation of

(a) a written statement that contains particulars of the order of the court; or

(b) the warrant of commitment, which must contain particulars of the order of the court on which it is founded.

* * * * * * * * * *

Assignment of prisoners to particular correctional institutions

22. (1) A person who is remanded in custody awaiting trial or sentence will be detained insuch correctional institution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determine.

(2) Subject to this section,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committed to prison will be imprisoned in such correctional institution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determine.

(3) Subject to this Act,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exceeding 15must not be imprisoned in a police prison.

(4) A person may be detained in a particular correctional institution pursuant to this section notwithstanding that the warrant of commitment by virtue of which the person is detained in custody directs that he or she be detained in some other correctional institution.

Division 3-Assessment of prisoners

Initial and periodic assessment of prisoners

23. (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initial

admission to a prison of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exceeding six months, to life imprisonment or to a 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 and thereafter at regular intervals of not more than one year, assess the prisoner and his or her circumstances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risoner should be transferred to some other prison.

(2) The Minister may establish a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n carrying out assessments under this section.

(3) In carrying out an assessment under this section,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have regard to

(a) the age, sex and social, medical, psychological and vocational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prisoner; and

(b) the needs of the prisoner in respect of education or training or medical or psychiatric treatment; and

(c) the aptitude or suitability of the prisoner for any particular form of training or work; and

(d) the nature of the offence, or offences, in respect of which the prisoner is imprisoned and the length of sentence; and

(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ny file held by a court in respect of the prisoner; and

(f) the behaviour of the prisoner while in prison; and

(g) the security of, and availability of accommodation in, anyprison under consideration; and

(h) the question of maintaining the prisoner's family ties; and

(i) where relevant, any proposed plans in respect of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nd his or her social rehabilitation; and

(j) such other matter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relevant.

(4)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notify the prisoner before commencing an assessment, and must, if the prisoner so requests, grant the prisoner an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in person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to a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2).

(5) The prisoner may make written representations in respect of his or her assessment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to a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subsection (2).

(6) After the first assessment of a prisoner has been completed,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prepare a programme in relation to the prisoner that contains particulars of any proposals for the education or training or medical or psychiatric treatment of the prisoner, and may, after any subsequent assessment, add to or vary that programme.

Division 4-Custody of prisoners

Chief Executive Officer has custody of prisoners

24. (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as the custody of a prisoner, whether the prisoner is within, or outside, the precincts of the place in which he or she is being detained, or is to be detained.

(2) Subject to this Ac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as an absolute discretion-

(a) to place any particular prisoner or prisoner of a particular class in such par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b) to establish in respect of any particular prisoner, or prisoner of a particular class, or in respect of prisoners placed in any particular par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such a regime for work, recreation, contact with other prisoners or any other aspect of the day-to-day life of prisoners,

as from time to time seems expedient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Division 5-Transfer and leave of absence of prisoners

Transfer of prisoners

25.(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by written order, direct that a prisoner be transferred from the place in which he or she is being detained to any other correctional institution.

(2) An order given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under subsection (1) is sufficient authority for the transfer of the prisoner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and the detention of the prisoner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which he or she is transferred.

Prisoner may be temporarily detained in any other prison, etc., while in transit

26.While a prisoner is being taken to any place in which he or she is to be detained, or is being taken for any purpose contemplated by this Act from any place in which he or sheis being detained, the prisoner may, without any authority other than this section, be detained in any other place for as long as may reasonably be required in the course of effecting the transfer.

Leave of absence from prison

27. (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by written order, grant to a prisoner leave to be absent from the place in which he or she is being detained

(a) for the medical or psychiatric examination, assessment or treatment of the prisoner; or

(b) for the attendance of the prisoner at an educational or training course; or

(c)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prisoner in paid employment or in any form of recreation, entertainment or community service; or

(d) for such compassionate purpose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fit; or

(e) for any purpose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 or

(f) for such other purpose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fit.

(2) Leave of absence granted under this section may b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fit, including,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it is appropriate, a condition that the prisoner will be in the custody of, and supervised by, one or more employees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Minister for the purpose.

(2a) If leave of absence is to be granted to a prisoner for participation in paid employmen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impose a condition requiring the prisoner to pay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 specified amount per week,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er's directions, towards the cost of his or her board and lodging while so employed, or towards reducing the amount of any VIC levy that the prisoner is liable to pay in respect of any offence.

(3)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by further written order, revoke any leave of absence granted under this section, or vary any of the conditions to which it is subject.

(4) Where a prisoner is still at large after the revocation or expiry of leave of absence, the prisoner may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by any member of the police force or any employee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Minister for the purpose.

(5) A prisoner who is still at large after the expiry of leave of absence will be taken to be unlawfully at large.

(6) A prisoner is not, while still at large after revocation of leave of absence, serving his or her sentence of imprisonment.

Removal of prisoner for criminal investigation, attendance in court, etc.

28. (1) A prisoner is entitled to attend before a justice or a court for the purpose of preliminary examination, trial or sentence for the offence in respect of which the prisoner is being detained or for any other offence with which he or she has been charged.

(2) Where a prisoner is required to attend before a justice, court or coroner, whether as a party to any proceedings or as a witness, the justice, court or coroner hearing the proceedings may, by order, direct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the prisoner is being detained to cause the prisoner to be brought before the justice, court, or coroner,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3) On the determination or an adjournment of proceedings at which a prisoner attends under this section, the prisoner may be returned 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out any further process or authority.

(4) Where a prisone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or has been charged with an offence,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must, at the request of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release the prisoner into the custody of that member of the police force for the purposes of investigation of the offence, obtaining evidence as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or identifying the prisoner as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offence, in accordance with law.

Division 6-Management of prisoners

Prison work

29.(1) A prisoner (other than a remand prisoner) is, while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required to perform such work, whether within or outside the precinct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s the manager directs.

(2) A remand prisoner may, at his or her own request, and subject to any directions of the manager, perform any work that has been arranged by the manager.

(3) Tasks selected for prison work must, as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 be selected on the basis that they are likely to provide prisoners with experience in a recognised profession, trade or other field of employment.

(4) A manager must, in directing a prisoner to perform any particular work, have regard to the age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 and any skills or work experience of the prisoner.

Prison education

30.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arrange for such courses of instruction or training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fit to be made available to prisoners.

Prisoner allowances and other money

31.(1) A prisoner is, while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entitled to an allowance at a rate from time to time fixed by the Minister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er.

(2) A prisoner who performs work pursuant to this Division is entitled to a further allowance at a rate from time to time fixed by the Minister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er.

(2a) The Minister may establish a system ofbonus payments, at rates approved by the Treasurer, for prisoners who, in the opinion of the manager of the prison, display a positive attitude, or apply themselves with particular effort, to the performance of work or other tasks or duties in the prison.

(3) The Minister may,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fix rates of allowance

that vary according to-

(a) the classes of work to which they apply; or

(b)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the work will be performed; or

(c) the different security classifications of prisoners performing the work; or

(d) any combination of those factors.

(4) All allowances to which a prisoner is entitled under this section will be credited to the prisoner to an account, or accounts, kept in his or her name by the manager of the prison.

(4a) The manager of a prison may establish an account in the name of a prisoner into which is paid from time to time a proportion (not exceeding 30 per cent) of the prisoner's weekly income under this sec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settlement of the prisoner in the community on being discharged from prison.

(4b) The amount standing to a prisoner's credit in a resettlement account cannot be drawn on while the prisoner is in prison unless the manager of the prison is of the opinion that special reason exists for doing so.

(5) The Minister must review regularly the rates of the allowances to which a prisoner is entitled under this section.

(5a)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ust, if a prisoner receives any money (other than the allowances paid pursuant to this section) that is to be held in trust for the prisoner, establish an account in the name of the prisoner into which all such money will be paid.

(6)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on the dir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deduct from any money standing to the credit of a prisoner pursuant to this section any amount due and payable by the prisoner by way of repayment of a loan made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6a) If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is aware, by virtue of a warrant executed against the prisoner (whether issued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subsection), that a prisoner is liable for a VIC levy imposed in respect of any offence, the manager must deduct from the prisoner's weekly income under this section an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er's directions.

(6b) Subsection (6a)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prisoner who is being detained by virtue only of a warrant of commitment issu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subsection solely for the enforcement of a VIC levy.

(6c) Money deducted under subsectionand any money paid to the manager at any time by a prisoner in or towards satisfaction of a VIC levy, must be paid into the Victims of Crime Fund.

(7) Subject to this Act, withdrawals from any account held in the name of a prisoner, and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made,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at discretion, withdrawals may be refused where the manager thinks that the refusal is justified in the interests of the good management of the prisoner o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generally.

Purchase of items of personal use by prisoners

32.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ust make available for purchase by prisoners such items of personal use or consumption as may be prescribed, and may make available for purchase any other items that the manager thinks fit, but withdrawals of money for the purchase of items made available under this section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manag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

Prisoners' mail

33. (1) Subject to this section

(a) prisoners are entitled to receive and send letters; and

(b) letters sent to prisoners must be handed to the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delivery to the institution; and

(c) letters sent by prisoners must be forwarded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 * * * * * * * * *

(3) A letter sent to or by a prisoner contravenes this section if it contains-

(a) a threat of a criminal act; or

(b) a proposal or plan to commit a criminal act, or to do anything towards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act; or

(c) an unlawful threat or demand; or

(d) an incitement to violence, or material likely to inflame violence; or

(e) plans for any activity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or

(f) an item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or

(g) a sum of money, whether in cash or otherwise, or a request for any such sum, where the prior permission of the manager has not been obtained in respect of that sum or request; or

(h) a request for any good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manager; or

(i) a statement that is in code.

(4) A manager may cause all letters sent to or by prisoners to be opened and examined by an authorised officer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ny letter contravenes this section.

* * * * * * * * * *

(6) An authorised officer may, for the purpose of perusing a letter opened by the authorised officer that i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cause the letter to be translated.

(7) A letter sent by a prisoner

(a) to the Ombudsman; or

(b) to a Member of Parliament; or

(c) to a Visiting Tribunal; or

(ca) to an inspecto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or

(d) to a legal practitioner at the practitioner's business address,

cannot be opened pursuant to this section.

(7a) Nothing in this section empowers an authorised officer to open a declaration vote sent by a prisoner to a returning officer.

(8) Where an authorised officer is satisfied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letter sent to a prisoner is from the Ombudsman, aMember of Parliament, a Visiting Tribunal, an inspector or a legal practitioner, the authorised officer must not open that letter.

* * * * * * * * * *

(10) Where a letter sent to a prisoner is found to contravene this section, the manager may

(a) in the case of a letter

(i) hand it over to the prisoner; or

(ii) retain it and hand it over to the prisoner on discharge from prison; or

(iii) furnish a copy of it to the prisoner with any material that contravenes this section deleted from the copy, provided that the letter is handed over to the prisoner on discharge from prison; or

(iv) retain it as evidence of an offence, provided that a copy of it, or an expurgated copy of it, is handed over to the prisoner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or on discharge from prison; and

(b) in the case of a prohibited item found in a letter

(i) cause the item to be destroyed; or

(ii) retain it and hand it over to the prisoner on discharge from prison; or

(iii) retain it as evidence of an offence; or

(iv) return it to the sender; or

(v) dispose of it in such other manner as the manager thinks fit; and

(c) in the case of a sum of money

(i) hold the money for as long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ascertaining the identity of the sender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payment; or

(ii) credit the whole, or part, of it to the prisoner; or

(iii) hold the whole, or part, of it on behalf of the prisoner and pay it over to the prisoner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n discharge from prison; or

(iv) return the whole, or part of it to the sender; or

(v) if the prisoner is not lawfully entitled to the money, and the identity or whereabouts of the sender cannot be ascertained-pay the money to the Treasurer as unclaimed money for the purposes of the

UnclaimedAct 1891 or

(vi) retain it as evidence of an offence.

(11) Where a letter sent by a prisoner is found to contravene this section, the manager may

(a) in the case of a letter

(i) return it to the prisoner; or

(ii) retain it as evidence of an offence, provided that a copy is furnished to the prisoner at some time prior to any hearing in respect of the offence; and

(b) in the case of a prohibited item found in a letter

(i) cause the item to be destroyed; or

(ii) retain it and hand it over to the prisoner on discharge from prison; or

(iii) retain it as evidence of an offence; or

(iv) return it to the prisoner; or

(v) forward it to the intended recipient; or

(vi) dispose of it in such other manner as the manager thinks fit; and

(c) in the case of a sum of money

(i) hold it for as long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ascerta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payment; or

(ii) retain it as evidence of an offence; or

(iii) pay it into the General Revenue of the State; or

(iv) disburse it in such other manner as the Minister may direct.

(12) The manager must advise a prisoner insuch manner as the manager thinks fit of any action taken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 letter, or anything contained in a letter, sent to or by the prisoner.

(13) An authorised officer must not, otherwise than as required by law or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disclose to any other person the contents of any letter perused pursuant to this section.

(14) In this section

"authorised officer" means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not being a person who is

employed in a position involving substantial daycontact with prisoners.

Prisoners' goods

33A. (1) A prisoner is not entitledto receive any goods from a person outside the prison unless the prisoner has the permission of the manager to do so.

(2) A prisoner is entitled to send or give any goods to a person outside the prison other than items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3) The manager may cause all goods, and all parcels apparently containing goods, sent or given to a prisoner, or sent or given by a prisoner, to be examined.

(4) If goods sent or given to a prisoner consist of items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or are goods in respect of which permission is not given, the manager has an absolute discretion to deal with or dispose of the goods as he or she thinks fit (for example, by returning them to the sender or donor, selling, destroying or storing them, handing them over to a member of the prisoner's family).

(5) Goods sent or given by a prisoner must be forwarded or handed on to the recipient unless the goods are prohibited items or are to be kept as evidence of an offence.

(6) Goods that a person is prohibited by some other Act or law from possessing must be destroyed unless they are to be kept as evidence of an offence.

(7) The Minister may fix charges for the storage of goods on behalf of prisoners.

(8) Any costs incurred in dealing with or disposing of goods (including storage charges) may be deducted by the manager from any account (other than a resettlement account) held on behalf of the prisoner under this Act.

(9) If a prisoner fails, on being discharged from prison, to take any goods that have been stored in the prison on his or her behalf, the manager may deal with or dispose of the goods as the manager thinks fit.

(10) Any proceeds from the sale of goods under this section will (after deduction of the costs of storage and sale) be credited to the prisoner's account or, if the prisoner has been discharged and his or her whereabouts are known, refunded to the prisoner.

(11) Money not refunded under subsection (10) wi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Unclaimed Moneys Act 1891.

Prisoners' rights to have visitors

34.(1) A prisoner (other than a remand prisoner) is, while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entitled to be visited by a person, or a number of persons not exceeding the prescribed number, on one occasion, or such greater number of occasions as may be prescribed, in each period of two weeks.

(2) A remand prisoner is entitled to be visited by a person, or a number of persons not exceeding the prescribed number, on three occasions, or such greater number of occasions as may be prescribed, in each week.

(3)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if of the opinion that special reasons exist for doing so-

(a) permit a prisoner to be visited on any further occasion than is provided by or under this Act; or

(b) debar a particular person from visiting a prisoner for such period as the manager thinks fit, or until further order of the manager.

Prisoners' rights to access to legal aid and legal services

35. (1) A prisoner is not by virtue of imprisonment debarred from the benefit of any Act or law relating to legal aid.

(2) Where a prisoner is visited by a legal practitioner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any legal services, that visit will not be held to be a visi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4.

Power to keep a prisoner apart from all other prisoners

36. (1) A prisoner mustnot be kept separately and apart from all other prisoner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except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2)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direct that a prisoner be kept separately and apart from all other prisoner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desirable to do so

(a) in the interests of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where an investigation is to be conducted into an offence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the prisoner; or

(b) in the interests of the safety or welfare of the prisoner; or

(c) i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other prisoners; or

(d) in the interests of security or good order with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3) A direction given pursuant to subsection (2)(a)has effect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30 days, as may be specified in the direction.

(4) Any other direction under subsection (2) has effect until revok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5) A direction cannot be given more than once pursuant to subsection (2)(a) in respect of the incident giving rise to the alleged offence.

(6) A direction given under subsection (2)

(a) must be in writing; and

(b) may be revoked at any time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7) A copy of a direction given under subsection (2) must be served personally on the prisoner within 24 hours of being so given.

(8) Despite the fact that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2) is in force in respect of a prisoner, the Chief Executive Officermay permit the prisoner to have contact with such other prisoners on such occasion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fit.

(9)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giving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2), furnishthe Minister with a report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irection was given.

(10) On receiving a report under subsection (9), the Minister may review the matter and may confirm or revoke the direction.

Search of prisoners

37. (1) The manager of acorrectional institution may cause a prisoner or a prisoner's belongings to be search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the prisoner enters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or moves from one part of the institution to another;

(b) where the manager has reasonable cause to suspect that the prisoner has in his or her possessi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 item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c) where the prisoner is required pursuant to this Act to provide a specimen of his or her urine for analysis.

(2)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to the search of a prisoner:

(a) those present at any time during the search when the prisoner is naked, except a medical practitioner, must be of the same sex as the prisoner;

(b) at least two persons, apart from the prisoner, must be present at all times during the search when the prisoner is naked;

(c) for the purposes of the search, the prisoner may be required-

(i) to open his or her mouth;

(ii) to strip;

(iii) to adopt particular postures;

(iv) to do anything els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search,

and if the prisoner does not comply with such a requirement reasonable force may be applied to secure compliance.

(3) Force must not be applied to open a prisoner's mouth except by or under the supervision of a medical practitioner.

(4) Nothing may be introduced into an orifice of a prisoner's body for the purposes of a search except by a medical practitioner.

(5) A search must be carried out expeditiously and undue humiliation of the prisoner must be avoided.

Drug testing of prisoners

37AA.(1)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require a prisoner to provide a specimen of his or her urine for analysis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the manager suspects that the prisoner has unlawfully used a drug;

(b) where the manager,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incidence of unlawful drug use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 has caused the random selection of prisoners from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institution for urine testing; or

(ii) proposes that all prisoners within the institution, or a part of the

institution, be so tested.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prisoner uses a drug if he or she smokes or consumes the drug or administers the drug to himself or herself, or permits another person to administer the drug to him or her.

(2a) An allegation in a complaint or information or other notice of charge for an offence (whether against this Act or any other Act) that a sample of urine was obtained from a specified prisoner on a specified day and that it was assigned a specified identifying number, is,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proof of the facts alleged and that those things were done in accordance with this Act.

(3) In any legal proceedings, an apparently genuine certificate purporting to be signed by an analyst and certifying that a specified drug was found to be present in a specified sample of urine is,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proof of the matters so certified.

Division 6A-Home detention

Release of eligible prisoners on home detention

37A.(1) Subject to this section and the regulation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as an absolute discretion to release a prisoner from prison to serve a period of home detention in accordance with this Division.

(1a) A prison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n respect of which a non-parole period has not been fixed is not (except where the total term to be served is less than one year) eligible for release under this section.

(2) A prisoner will not be released under this Division unless-

(a) in the case of a prisoner serving a sentence in respect of which a non-parole period has been fixed, the prisoner has served at least one-half of that non-parole period; and

* * * * * * * * * *

(c) the prisoner satisfies any other criteria determined by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3) The release of a prisoner under this Divis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

ditions:

(a) a condition requiring the prisoner to remain at the prisoner's residence during the period of home detention and not to leave the residence at any time during that period except for the following purposes:

(i) remunerated employment; or

(ii) urgent medical or dental treatment for the prisoner; or

(iii) any other purpose approved or directed by the authorised officer to whom the prisoner is assigned; and

(b) a condition requiring the prisoner to be of good behaviour during the period of home detention; and

(c) a condition requiring the prisoner to obey the lawful directions of the authorised officer during the period of home detention; and

(d) such other condition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appropriate.

(4) A prisoner released under this Division will, unless the release is earlier revoked, remain on home detention-

(a) in the case of a prisoner subject to a non-parole period-until he or she is released on parole;

(b) in the case of any other prisoner-until the time at which he or she would, but for this Division, have been released from prison pursuant to this Act.

(5)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by notice in writing served personally on the prisoner, vary or revoke any of the conditions to which the prisoner's release is subject.

(6) In this section

"non-parole period", in relation to a prisoner serving a sentence imposed for an offence against a law of the Commonwealth, includes the minimum term to be served under a recognisance release order;

"residence" includes, if the prisoner is an Aborigine who resides on tribal lands or an Aboriginal reserve, any area of land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release.

Authorised officers

37B. (1) The Minister may appoint such authorised officers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as the Minister thinks fit.

(2)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on the release of a prisoner under this Division, assign the prisoner to an authorised officer andfrom time to time reassign the prisoner to another authorised officer.

(3) An authorised officer to whom a prisoner is assigned

(a) may give reasonable directions to the prisoner

(i) requiring the prisoner to take up, not to take up or not to give up some particular employment; or

(ii) requiring the prisoner to attend a particular course of counselling or instruction; and

(b) may give the prisoner other directions of a kind authorised by the Minister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the particular prisoner.

(4) Any authorised officer may, at any time

(a) enter or telephone the residence of a prisoner serving a period of home detention; or

(b) telephone the prisoner's place of employment or any other place at which the prisoner is permitted or required to attend; or

(c) question any person at that residence or place as to the whereabouts of the prisoner,

for the purposes of ascertaining whether or not the prisoner is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prisoner's release is subject.

(5) A person must not

(a) hinder an authorised officer in the exercise of powers under this section; or

(b) fail to answer truthfully any question put to the person by an authorised officer pursuant to those powers.

Maximum penalty: $2,500.

Revocation of release

37C. (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 must revoke the release of a prisoner under this Division if the prisoner breaches a condition to which the release is subject; and

(b) may, in the absolute discre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revoke the release of a prisoner under this Division for any other reason.

(2) A prisoner is not in breach of the condition requiring the prisoner to remain at the prisoner's residence if the prisoner leaves the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serious risk of death or injury (either to the prisoner or some other person).

(3) On the revocation of the release of a prisoner under this Division, the prisoner may be apprehended, without warrant, by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or any authorised officer and returned to prison.

(4) Where a prisoner breaches a condition to which the release of the prisoner is subject or is, during the period of home detentio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n offence (whenever committed), the prisoner is liable to serve in prison the balance of the non-parole period or the term of imprisonment (as the case may require), being

(a) in the case of a breach of condition or an offence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home detention-the unexpired balance as at the date of the breach or offence; and

(b) in the case of an offence committed at any other time-the unexpired balance as at the date on which the further sentence of imprisonment is imposed.

(5) Subsection (4)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eriod of home detention may have expired before the prisoner can be apprehended.

(6) A prisoner is, on breaching the condition referred to in section 37A(3)(a), unlawfully at large.

Crown not liable to maintain prisoners on home detention

37D. The Crown is not liable to maintain a prisoner who is serving a period of home detention.

Division 7-Release of prisoners from prison

Release of prisoner from prison or home detention

38. (1) Subject to this Act, a prisoner (other than a remand prisoner) will be released from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the prisoner is being detained on the day on which the prisoner's sentence of imprisonment expires, unless released earlier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or under any other Act or law.

(2) Subject to subsection (3),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by instrument in writing, authorise the release of a prisoner from prison or from home detention on any day during the period of 30 days preceding the day on which the prisoner is due, or would have been due, to be released from prison pursuant to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3) Subsection (2)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prisoner who is serving a term of imprisonment for default in payment of a pecuniary sum.

(4) In this section-

"pecuniary sum"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riminal Law (Sentencing) Act 1988.

Time of release from prison

39.(1) A prisoner must be released from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the prisoner is being detained as near as practicable to 10 a.m. on the day of the prisoner's release.

* * * * * * * * * *

(3) Where a contempt prisoner purges his or her contempt or complies with the court order for payment of a pecuniary sum, and does so between 5 p.m. on one day and 9 a.m. on the next day,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not,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or any other Act or law, required to release the prisoner from the institution until that next day, at some time after 10 a.m.

* * * * * * * * * *

Delivery of property and money to prisoner on release

39A. Where a prisoner is released from prison on home detention or parole, or on the expiration or extinguishment of his or her sentence of imprisonmen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ust,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and over to the prisoner any personal property held on the prisoner's behalf, and must pay to the prisoner any money held to the prisoner's credit pursuant to this Act

(a) in a lump sum; or

(b) in the case of a prisoner released onparole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in a lump sum, or in such instalments payable during the period of supervision as th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may determine.

Manner in which former prisoner's personal property is to be dealt with

39B. (1) Where a former prisoner has left any personal property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he or she was at some time detained,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must give a written notice to the former prisoner, sent by post to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setting out particulars of the personal property and of the place at which it may be collected.

(2) If the former prisoner fails to collect the personal property within three months of being given a notice under subsection (1), the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must deal with the property in the following manner:

(a) where the property consists solely of items that would, in the opinion of the manager, be of negligible monetary value and of no sentimental value to the former prisoner, the manager may dispose of the property in such manner as the manager thinks fit; and

(b) in any other case-

(i) if the whereabouts of the former prisoner is known to the manager, the manager must cause the property to be delivered to the former prisoner except where it is not practicable to do so, in which case the manager may dispose of the property in such manner as the manager thinks fit; or

(ii) if the whereabouts of the former prisoner is, after reasonable inquiries, unknown to the manager, the manager may dispose of the property in such manner as the manager thinks fit.

(3) Money received from the sale of any personal property pursuant to this section will be paid into the General Revenue of the State.

Certain prohibited items not to be returned to prisoners

39C. Nothing in this Division requires the delivery or return to a person of any item of personal property the possession of which by that person is prohibited by law.

Part 5-Offences

Division 1-Powers of visiting tribunals

* * * * * * * * * * *

Powers of a Visiting Tribunal

41. (1) For the purposes of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a Visiting Tribunal may-

(a) by summons signed by theperson, or one of the persons, constituting the Tribunal, require the attendance before the Visiting Tribunal of any person whom the Visiting Tribunal thinks fit to call before it; or

(b) by summons signed by the person, or one of the persons, constituting the Tribunal,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papers or documents; or

(c) inspect any books, papers or documents produced before it, retain them for such reasonable period as it thinks fit, and make copies of any of them, or of any of their contents; or

(d) require any person to make an oath or affirmation that the person will answer truthfully all questions put by the Visiting Tribunal, or by any person appearing before the Visiting Tribunal, relevant to any matter

being inquired into by the Visiting Tribunal (which oath or affirmation may be administered by the person, or one of the persons, constituting the Visiting Tribunal); or

(e) require any person appearing before the Visiting Tribunal (whether summoned to appear or not) to answer any relevant question put by the Visiting Tribunal, or one of the persons constituting the Visiting Tribunal, or by any other person appearing before the Visiting Tribunal.

(2) Subject to subsection (3), a person who

(a) having been duly served with a summons, fails, without reasonable excuse, to attend before the Visiting Tribunal, or to produce any books, papers o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summons; or

(b) misbehaves before a Visiting Tribunal, wilfully insults a Visiting Tribunal or any person who constitutes a Visiting Tribunal, or interrupts the proceedings of a Visiting Tribunal; or

(c) refuses to be sworn, to affirm or to answer a relevant question when required to do so by a Visiting Tribunal,

is guilty of an offence.

Maximum penalty: $5,000 or imprisonment for 3 months.

(3) A person is not required to answer a question put pursuant to this section if the answer would tend to incriminate the person.

Immunity from liability of persons who constitute Visiting Tribunals

42.No liability attaches to a person who constitutes, or is a member of, a Visiting Tribunal for any act or omission by the person, or by the Visiting Tribunal, in good faith and in the exercise or purported exercise of powers, or the discharge or purported discharge of duties, under this Act.

* * * * * * * * * *

Division 2-Breaches of regulations

Minor breaches of prison regulations

42A. (1) Where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satisfied that a prisoner has committed a breach of a regulation that is specified to be a regul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the manager may give the prisoner notice in writing that-

(a) sets out the date of the alleged offence and briefly states the facts on which the allegation is founded; and

(b) identifies the particular regulation that is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and

(c) specifies that the prisoner may elect to be charged with, and receive a formal hearing in relation to, the offence; and

(d) specifies the punishment that the manager proposes to impose if the prisoner does not elect to be charged with the offence.

(2) If the prisoner does not within 24 hours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manager, or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specified in the manager's notice, that the prisoner elects to becharged with the offence, the manager may, without affording further opportunity for persons

(a) to hear or view evidence; or

(b) to call, examine or cross-examine witnesses; or

(c) to make submissions on the alleged breach or penalty,

impose on the prisoner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penalties:

(d) forfeiture of any specified amenities or privilege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even days; or

(e) exclusion from any work that is performed in association with other prisoner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even days.

Manager may deal with breaches of prison regulations

43.(1) Where it is alleged that a prisoner has committed a breach of the regulations, the manage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within the prescribed time, charge the prisoner with the offence, and conduct an inquiry into the allegation, in the prescribed manner.

(2) If, after conducting an inquiry under subsection (1), the manager is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allegation has beenproved, the manager may impose on the prisoner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enalties:

(a) forfeiture to the Crown of a sum,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payable out of any money held by the manager on behalf of the prisoner, or any allowance to be paid to the prisoner under this Act; or

(b) forfeiture of any specified amenities or privilege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28 days; or

(c) exclusion from any work that is performed in association with other prisoner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14 days,

or may reprimand and caution the prisoner.

(3) If, after conducting an inquiry under subsection (1), the manager is not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allegation has been proved, the manager must dismiss the charge.

Manager may refer any matter to a Visiting Tribunal

44. (1)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at any time before imposing a penalty on a prisoner in respect of an alleged breach of the regulations, refer the matter to a Visiting Tribunal for hearing and determination.

(2) The Visiting Tribunal may, on hearing any matter referred to it under subsection (1) and on being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allegation against the prisoner is proved, impose on the prisoner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enalties:

* * * * * * * * * *

(c) forfeiture to the Crown of a sum,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payable out of any money held by the manager on behalf of theprisoner, or any allowance to be paid to the prisoner under this Act; or

(d) forfeiture of any specified amenities or privilege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2 or

(e) exclusion from any work that is performed in association with other prisoner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28 days,

or it may reprimand and caution the prisoner.

* * * * * * * * * *

(4) Where a prisoner causes any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as a result of a breach of the regulations, the Visiting Tribunal may, whether or not it imposes a penalty in respect of the breach, direct that the prisoner pay to the owner of the property as compensation for the loss or damage such sum, not exceeding an amount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s the Visiting Tribunal thinks fit, payable out of any money held by the manager on behalf of the prisoner, or any allowance to be paid to the prisoner under this Act.

(5) If, after hearing a matter referred to it under subsection (1), the Visiting Tribunal is not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 allegation against the prisoner is proved, it must dismiss the charge.

Procedure at inquiries under this Division

45. In any proceedings under this Division for an offence against the regulations,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a) the manager or Visiting Tribunal-

(i) must afford the prisoner the opportunity of hearing or viewing all the evidence in support of the charge; and

(ii) must afford the prisoner and the manager, or any employee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manager for the purpose, reasonable opportunities to make submissions in relation to the charge and to call, examine or crossexamine witnesses; and

(iii) must permit the manager or authorised employee to make submissions as to the penalty to be imposed; and

(iv) must permit the prisoner to hear any submissions made, and to make submissions, as to the penalty to be imposed;

(b) if the prisoner refuses to attend at the hearing of the proceedings, the manager or Visiting Tribunal may hear and determine the proceedings ex parte

(ba) the prisoner is not entitled to be represented in the proceedings by a legal practitioner;

(c) the manager or Visiting Tribunal is not, subject to this Act, bound by legal forms or technicalities or the rules of evidence, but may inform himself, herself or itself, in such manner as he, she or it thinks fit;

(d) where more than one penalty of forfeiture of amenities or privileges or exclusion from work is imposed for an offence, or for a number of offences arising out of the one incident, those penalties cannot be made consecutive one on the other;

(e) no conviction may be recorded against a prisoner who is found guilty of a breach of the regulations.

Appeals against penalties imposed by managers

46. (1) A prisoner may appeal to a Visiting Tribunal against any penalty imposed on the prisoner by a manager.

(2)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must be instituted in the prescribed manner.

(3) On the institution of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the penalty appealed against is suspended.

(4) On determining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the Visiting Tribunal may-

(a) affirm the penalty; or

(b) increase, decrease or otherwise vary the penalty, or revoke it and substitute any other penalty that could have been imposed in the first instance by the manager.

(5) No appeal lies against an order of a Visiting Tribunal made on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Appeals against orders of Visiting Tribunals

47. (1) A prisoner may appeal against an order of a Visiting Tribunal made in any proceedings against the prisoner under this Division on the ground that the proceedings were no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1a)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lies

(a) to the District Court if the order appealed against was made by a Visiting Tribunal constituted of a magistrate; and

(b) to the Magistrates Court if the order was made by a Visiting Tribunal constituted of a justice, or justices, of the peace.

(2)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must be instituted in the prescribed manner.

(2a) The notice of appeal must specify the grounds on which the appeal is made.

(3) On the institution of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the order appealed against is suspended.

(4) On any appeal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may

(a) dismiss the appeal; or

(b) quash the order of the Visiting Tribunal; or

(c) quash the order of the Visiting Tribunal and make any order that the court thinks should have been made by the Visiting Tribunal in the first instance.

(5) No appeal lies against a decision of a court on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Justices Act does not apply to proceedings under this Division

48. The Summary Procedure Act 1921 does not apply to or in relation to any proceedings under this Division.

* * * * * * * * * *

Manager may delegate power to deal with breaches of prison regulations

49.(1)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delegate to any employee of the Department any of his or her powers or functions under this Division.

(2) A delegation under this section

(a) may be subject to conditions specified in the delegation; and

(b) may be revoked by the manager or varied by the manager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c) does not prevent the manager from acting in any matter.

Division 4-Prisoners at large

Effect of prisoner being at large

50. * * * * * * * * * *

(3) A prisoner is not, while unlawfully at large, serving his or her sentence of imprisonment.

Prisoner must comply with conditions to which temporary leave of absence is subject

50A.(1) A prisoner who has been granted leave of absence from a correctional institution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pursuant to this Act and who contravenes or fails to comply with a condition to which the leave is subject is guilty of an offence.

Maximum penalty: Imprisonment for 1 year.

(2) A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a prisoner is sentenced for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is cumulative on any other imprisonment that the prisoner is liable to serve.

Offences by persons other than prisoners

51. (1) A person who

(a) communicates with a prisoner in a manner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or

(b) delivers to a prisoner, or introduces in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anager, any item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or

(c) loiters outside a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any unlawful purpose,

is guilty of an offence.

Maximum penalty: Imprisonment for 6 months.

(2) It is a defence to a charge of an offence of introducing in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anager an item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he or she had reasonable grounds for being in possession of the item and at no time had any intention of parting with possession

of it while within the institution.

Power of arrest by officers of the Department

52. (1)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may, without warrant, apprehend

(a) any person who the officer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of being an escaped prisoner or a prisoner otherwise unlawfully at large; or

(b) any person who the employee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of having assisted or being about to assist a prisoner in an escape or attempted escape or of having removed or attempted to remove, or being about to remove, a prisoner from custody.

(2)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who has apprehended a person pursuant to subsection (1) must

(a) in relation to a prisoner unlawfully at large, return the prisoner forthwith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b) in relation to any other person, take the person forthwith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 * * * * * * * * *

Part 6-Parole

Division 1-The Parole Board

Continuation of the Parole Board

55. (1) The Parole Board of South Australia continues in existence.

(2) The Board consists of six members appointed by the Governor, of whom-

(a) one, the presiding member of the Board, will be

(i) ajudge of the Supreme Court; or

(ii) a District Court judge; or

(iii) a person who has retired from the office of judge of the Supreme Court or District Court judge; or

(iv) a person who has, in the opinion of the Governor, extensive knowl-

edge of, and experience in, the science of criminology, penology, or any other related science; and

(b) one will be a legally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who has, in the opinion of the Governor,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the practice of psychiatry; and

(c) one will be a person who has, in the opinion of the Governor, extensiv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criminology, sociology or any other related science; and

(d) three will be persons nominated by the Minister.

(3) At least one member of the Board must be a woman and at least one member must be a man.

(3a) At least one member of the Board must be a person of Aboriginal descent.

(4)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is not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Board.

Term of office of members

56. (1) The presiding member of the Board will be appointed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determined by the Governor and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appointment.

(2) A member of the Board other than the presiding member will be appointed for such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as the Governor determines and specifies in the instrument of appointment.

(3) 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of the Board, the member is eligible for reappointment.

Allowances and expenses

57. A member of the Board is entitled to receive such allowances and expenses as the Governor may from time to time determine.

Removal from and vacancies of office

58. (1) The Governor may remove a member of the Board from office on the ground of

(a) mental or physical incapacity to carry out satisfactorily the duties of office; or

(b) dishonourable conduct; or

(c) neglect of duty.

(2)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Board becomes vacant if the member

(a) dies; or

(b) completes a term of office; or

(c) resigns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Minister; or

(d) is removed from office by the Governor pursuant to subsection

(3) On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Board becoming vacant, a person must be appointed to that office in accordance with this Act.

Deputies

59. (1) The Governor

(a) must appoint one of the members of the Board to be the deputy presiding member of the Board; and

(b) may appoint a suitable person to be the deputy of a member of the Board other than the presiding member or the deputy presiding member.

(2) Where a member is for any reason absent or unable to act as a member of the Board, the member's deputy may act as a member of the Board.

Proceedings of the Board

60. (1) Subject to this section, the Board will sit as a full board.

(2) If the presiding member thinks it necessary or desirable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the determination of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the Board may sit in separate divisions.

(3) The presiding member or deputy presiding member and any other two members of the Board constitute a division of the Board.

(4) Where the Board sits as a full board,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a) the presiding member or, in the presiding member's absence, the deputy presiding member will preside and, in the absence of both the presiding member and the deputy presiding member, a member chosen from

amongst their own number by the members present will preside; and

(b) four members constitute a quorum and the Board cannot proceed with the hearing or determination of any matter unless a quorum is present; and

(c) a question arising for decision by the Board will be decid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by the members present; and

(d) each member present is entitled to one vote and,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the person presiding is entitled to a second or casting vote.

(5) Where the Board sits in separate divisions,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a) the presiding member will preside at proceedings before the division of which he or she is a member and the deputy presiding member will preside at proceedings before the division of which he or she is a member; and

(b) a division of the Board cannot proceed with the hearing or determination of any matter unless all members of the division are present; and

(c) a decision in which all the members of a division of the Board concur is a decision of the Board; and

(d) the two divisions of the Board may sit concurrently for the purpose of hearing and determining separate proceedings.

(6) Where the members ofa division of the Board are unable to concur in a decision in any proceedings before that division, the person presiding over that division must refer the proceedings to the Board sitting as a full board for fresh hearing and determination.

(7) Subject to this Act, the Board, or a division of the Board, may conduct its proceedings as it thinks fit.

Validity of acts of the Board and immunity of its members

60A. (1) No act or proceeding of the Board is invalid by reason of a vacancy in its membership or a defect in the appointment of a member.

(2) No liability attaches to a member of the Board for an act or omission by the member, or by the Board, in good faith and in the exercise or purported exercise of powers or functions, or in the discharge or purported discharge of duties, under this Act.

(3) A liability that would, but for subsection (2), attach to a member of the Board lies against the Crown.

Judicial notice of Board documents

61. (1) Where a document purports to bear the signature of a member of the Board, it will be presumed in any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the absenceproof to the contrary, that the document had been duly signed by that

(2) An apparently genuine document purporting to be a record of anydecision or finding of the Board and purporting to be signed bythe secretary to the Board is,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proof that the determination, decision or finding was made by the Board.

Appointment of secretary to the Board

62. (1) There will be a secretary to the Board who will be a Public Service employee.

(2) The position of secretary to the Board may be held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position in the Public Service of the State.

Powers of the Board

63. (1) For the purposes of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the Board may-

(a) by summons signed on behalf of the Board by a member of the Board, require any person to attend before the Board; or

(b) by summons signed on behalf of the Board by a member of the Board, require any person to produce any document relating to any matter before the Board; or

(c) require any person to furnish the Board with a written report or written information in relation to any aspect of a matter before the Board; or

(d) require any person appearing before the Board to answer on oath or affirmation any questions put by the Board that are relevant to any matter before the Board; or

(e) require any written report or information to be verified by statutory declaration.

(2) A person who-

(a) having been duly served with a summons, fails to attend before the Board, or fails to produce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summons; or

(b) wilfully insults the Board or any member of the Board; or

(c) misbehaves before the Board; or

(d) interrupts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or

(e) refuses to be sworn or to affirm, or refuses to answer any question that the person would be compellable to answer before a court,

is guilty of an offence.

Maximum penalty: $5,000 or imprisonment for 3 months.

(3) The Board may (and must, if a prisoner of a prescribed class so requests) interview a prisoner at any time and, if such an interview is to be conducted outside the prison, may request the manager of the prison to cause the prisoner to be brought before the Board at a specified time and place.

(4) The Board is not obliged to interview a prisoner pursuant toprisoner's request more than once in any year.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risoner is of a prescribed class if the prisoner is serving-

(a)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or

(b) a 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 or

(c)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more than one year in respect of which a nonperiod has not been fixed.

Reports by the Board

64. (1) The Board must, not later than 31 October in each year, report to the Minister on

(a) the number of prisoners released on parole during the previous financial

year; and

* * * * * * * * * * *

(d) the number of persons returned to prison in the previous financial year on cancellation of parole, and the reasons for each such cancellation; and

(e) the work of the Board generally in the previous financial year; and

(f) such other matters as the Board thinks fit, or as the Minister may direct.

(2) The Board must at least once in each year review the progress and circumstances of, and report to the Minister on, each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or any 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 and each prisoner serving a sentence for a term of more than one year in respect of whom a nonperiod has not been fixed.

(3) The Board must,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Minister, report to the Minister-

(a) on any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or any 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 or

(b) on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Part.

* * * * * * * * * * *

(4) The Board may, in a report furnished under subsection (2) or (3)(a)in respect of a prisoner, include such recommendations as to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s the Board is empowered to make pursuant to this Act or any other Act.

* * * * * * * * * * *

Division 3-Release on parole

Release on parole-prisoners imprisoned for less than five years

66.The Board must order that a prisoner who is liable to serve a total period of

imprisonment of less than five years and for whom a non-parole period has been fixed be released from prison or home detention on parole on a day specified by the Board, being a day

(a) where, because the commencement of the nonperiod has been back dated, the non-parole period expires prior to the date on which it is fixe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it is fixed; or

(b) in any other case,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non-parole period expires.

Release on parole-prisoners imprisoned for five years or more

67. (1) Where a prisoner is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or is liable to serve a total period of imprisonment of five years or more and a non-parole period has been fixed in respect of the sentence or sentences

(a) the prisoner; or

(b)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any employee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y apply in the prescribed manner to the Board for the prisoner's release on parole.

(2)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indeterminate duration.

(3) An application cannot be made under subsection (1) more than six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non-parole period fixed in respect of the prisoner's sentence.

(4) In determining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for the release of a prisoner on parole, the Board must have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a) any relevant remarks made by the court in passing sentence; and

(b) the likelihood of the prisoner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parole; and

(c) where the prisoner was imprisoned for anoffence or offences involving violence, the circumstances and gravity of the offence, or offences, for which the prisoner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but only insofar as it may assist the Board to determine how the prisoner is likely to behave

should the prisoner be released on parole; and

(d) the behaviour of the prisoner while in prison or on home detention; and

(e) the behaviour of the prisoner during any previous release on parole; and

(f) any reports tendered to the Board on the social background, the medical, psychological or psychiatric condition of the prisoner, or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prisoner; and

(g) the probable circumstances of the prisoner after release from prison or home detention; and

(h) any other matters that the Board thinks are relevant.

(5) The Board may,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order that a prisoner (not being a prison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be released from prison on parole on a day specified in the order.

(6) The Board may,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 prisoner who is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recommend to the Governor that the prisoner be released from prison on parole and, if the Board so recommends, the Board

(a) must recommend to the Governor

(i) a day on which the prisoner is to be released on parole; and

(ii)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or more than ten years, for which the prisoner should continue on parole; and

(b) must forward a copy of it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or for approval.

(7) The Governor may, on receiving the Board's recommendations, order that the prisoner be released from prison on parole on a day and for a period specified in the order, being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not more than ten years.

(8) The Board or the Governor cannot specify a release date under this section that is earlier than the day on which the prisoner's non-parole period expires.

(9) The Board must, not more than 30 days after refusing an application by a prisoner for release on parole, notify the prisoner in writing of

(a) its refusal; and

(b) the reasons for its refusal and of any matters that might assist the prisoner in making any further application for parole; and

(c) a date, not less than six months or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Board refuses the application, before which the Board will not accept any further application by the prisoner for release on parole.

(10) The Board is not obliged to (but may, if in its opinion good reason exists for doing so) accept a further application by a prisoner for release on parole before the date notified by the Board under subsection (9).

Conditions of release on parole

68. (1) The release of a prisoner on parole

(a) must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i) that the prisoner not commit any offence; and

(ii) that the prisoner not possess an offensive weapon unless the prisoner has first obtained the permission of the Board to do so and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permission; and

(iii) that the prisoner

(A) be under supervision of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and

(B) obey the reasonable directions of th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arole or such earlier date as is specified by the Board; and

(b) may be subject to any other condition fixed by the Board or, in the case of a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recommended by the Board and approved by the Governor, to be effectiv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arole, or for such lesser period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1a) If the prisoner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child sexual offence, the Board must consider imposing the following conditions on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 a condition preventing the prisoner from loitering, without reasonable excuse, at or in the vicinity of a school, public toilet or place at which children are regularly present whilechildren are present at the school, toilet or place;

(b) a condition preventing the prisoner from engaging in remunerative or voluntary work with children or at a place used for the education, care or recreation of children;

(c) a condition preventing the prisoner from providing or offering to provide accommodation to a child who is not related to the prisoner by blood or marriage or of whom the prisoner does not have lawful custody.

(2) In fixing or recommending conditions to which the release of a prisoner on parole will be subject, the Board must have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a) any remarks made by the court in passing sentence; and

(b) the likelihood of the prisoner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and

(c) the circumstances and gravity of the offence, or offences, for which the prisoner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d) the behaviour of the prisoner while in prison or on home detention; and

(e) the behaviour of the prisoner during any previous release on parole; and

(f) any reports tendered to the Board on the social background, the medical, psychological or psychiatric condition of the prisoner, or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prisoner; and

(g) the probable circumstances of the prisoner after release from prison or home detention; and

(h) any other matters that the Board thinks are relevant.

(3) In fixing or recommending conditions to which the release on parole of a prisoner will be subject, the Board may designate any condition as a condition that, if breached, will result in automatic cancellation of parole.

(4)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Division, a prisoner must not be released on parole unless he or she has accepted in writing the conditions to which the parole will be subject.

(5) If a prisoner who is to be released under section 66 does not accept the conditions of parole, the Board-

(a) must review the circumstances of the prisoner at intervals of not less than 3 months or more than 12; and

(b) may, on such a review, if the prisoner will now accept the parole conditions, order the release of the prisoner on his or her written accept-

ance of those conditions.

Duration of parole in relation to prisoners other than life prisoners

69.A prisoner (not being a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who is released on parole will, unless the release is cancelled or suspended, the parole order is discharged or the sentence is extinguished, remain on parole until the expiry of the term, or terms, of imprisonment to which the prisoner was sentenced.

Duration of parole for life prisoners

70.(1) A prisoner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who is released on parole will, unless the release is cancelled or suspended, or the sentence is extinguished, remain on parole

(a) in the case of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s Act Amendment Act 1981-for the remainder of the sentence unless the Governor,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approvesa day on which the parole of the prisoner is to expire, in which case the parole of the prisoner expires on that day; and

(b) in any other case-for the period recommended by the Board and approved by the Governor.

(2) On the expiry of the parole of a person pursuant to subsection (1),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ll, subject to this Part, be taken to have been wholly satisfied.

Variation or revocation of parole conditions

71. (1) Where a person has been released on parole from a sentence other than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the Board may, on the application of that person or of its own motion, vary or revoke a condition to which the parole is subject.

(2) Where a person has been released on parole from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the Board may, on the application of that person or of its own motion, recommend to the Governor that a condition to which the parole is subject be varied or revoked, and the Governor may, on receiving such a recommendation, order

accordingly.

(3) The Board cannot exercise its powers under this section of its own motion in relation to a person released on parole unless it has given reasonable notice of its intention to doso to that person and has considered any submissions made by the person on the matter.

(4) The Board cannot make an order or recommendation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person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unlessit has obtained and considered a report from that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Discharge from parole of prisoners other than life prisoners

72. (1) The Board may, 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not being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make an order discharging the person from parole.

(2) The Board cannot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person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unless it has obtained and considered a report from that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3) Where a person has been discharged from parole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sentence, or sentences, of imprisonment will, subject to this Part, be taken to have been wholly satisfied.

Automatic cancellation of parole for breach of designated conditions

73.(1) Where the Board finds that a person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has, while on parole, breached a designated condition, the person is, subject to this Part, liable to serve in prison the balance of the sentence, or sentences, of imprisonment in respect of which the person was on parole, being the balance unexpired as at the day on which the breach was committed.

(2) Subsection (1)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at the time of finding the breach proved, the parole has expired or been discharged.

(3) Where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at theof finding the breach proved, still on parole, the parole is, by virtuethis section, cancelled.

Cancellation of release on parole by Board for breach of conditions other than designated conditions

74.(1) If the Board is satisfied that a person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has, while on parole, breached a condition of the parole (not being a designated condition), the Board may, by order, direct that the person serve in prison the sentence, or sentences, of imprisonment in respect of which he or she was on parole for such further period as the Board thinks appropriate, but not exceeding-

(a) the period between the day on which the breach occurred and the date of expiry of the parole; or

(b) six months,

whichever is the lesser.

(1a) Subsection (1)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at the time of finding the breach proved, the parole has expired or been discharged.

(1b) Where the Board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1) in respect of a person who is still on parole, the Board must order that the person's release on parole be cancelled.

(2) The Board cannot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a person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unless it has obtained and considered a report from that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3) Where the release of a person was cancelled for breach of parole condition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s Act Amendment Act (No. 2) 1983 the person is (subject to any nonparole period that may have been fixed) liable to serve in prison the balance of the sentence, or sentences, unexpired as at the day on which the breach was committed.

(4) Subject to subsections (4a) and (4b), a person who is returned to prison for breach of a parole condition (not being a designated condition)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Prisons Act Amendment Act (No. 2) 1983 will, unless the person has, by instrument in writing, elected to remain in prison to serve the balance of sentence then remaining, be released from prison on parole when the period for which the person was returned has been served.

(4a) If a person who has been returned to prison pursuant to this section commits an offence while in prison and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imposed for the offence, the person is liable to serve in prison the balance of the sentence, or sentences, unexpired as at the day on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

(4b) The release of a person under subsection (4) is not release on parole if the period of parole has expired.

(5) The release of a prisoner on parole under subsection (4) will be taken to be pursuant to the order of the Board in force immediately prior to the return of the prisoner to prison.

Board may impose community service for breach of nonconditions

74AA.(1) If the Board is satisfied that a person who is still on parole has, while on parole, breached a condition of the parole (not being a designated condition), the Board may, instead of exercising its powers under section 74, impose a further condition on the parole requiring the person to serve a specified number of hours of community service.

(2) The Board cannot exercise its powers under subsection (1) if the parole is already subject to a condition requiring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

(3) The Board cannot exercise its powers under subsectionin relation to a person who is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unless it has obtained and considered a report from that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4) If the Board imposes a parole condition requiring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a) the number of hours of community service to be performed cannot be less than 40 or more than 200;

(b) the Board may impose ancillary conditions on the parole requiring the person

(i) to perform the community service within a specified period;

(ii) to report to a specified place not later than two working days after the date of the hearing unless, within that period, the person receives a notice from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o the contrary;

(iii) to obey the lawful directions of th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to

whom the person is assigned;

(iv) to do, or refrain from doing, such other things as the Board thinks necessary for ensuring proper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c) the person is required to perform the community service for not less than 4 or more than 24 hours in any week and on such day, or days, as th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to whom the person is assigned may direct;

(d) the person cannot, except in circumstances approved by the Minister, be required to perform the community service for a continuous period exceeding 8 hours;

(e) one hour of any period of community service exceeding 4 hours is to be a meal break;

(f) the person cannot be required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at a time that would interfere with his or her remunerated employment or with a course of training or instruction relating to, or likely to assist in him or her obtaining, such employment, or that would cause unreasonable disruption of the person's commitments in caring for his or her children;

(g) the person cannot be required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at a time that would cause him or her to offend against a rule of a religion that he or she practises;

(h) the attendance of the person at any educational or recreational course of instruction approved by the Minister will be taken to be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

(i) the person will not be remunerat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5) A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to whom a person is assigned

(a) may give reasonable directions to the person requiring the person

(i) to report to a community service centre or other place at certain times; or

(ii) to notify the officer of any change in the person's place of residence or employment; or

(iii) to obtain the officer's written permission before leaving the State for any reason; or

(iv) to carry out certain projects or tasks as community service; or

(v) to undertake, or participate in, courses of instruction at a community service centre or other place; or

(vi) to behave in a particular manner while undertaking community service; and

(b) may give the person other directions of a kind authorised by the Minister,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that person.

(6) If a person who is subject to a parole condition requiring performance of community servic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n offence (whenever committed) or for nonof a pecuniary sum or is returned to prison pursuant to this Division, the parole condition will be taken to have been revoked.

Suspension of parole while serving imprisonment for offence committed before release on parole

74A. Where a person who has been released on parol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n offence committed before release on parole or for nonof a pecuniary sum

(a) the parole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the imprisonment actually served in prison in pursuance of the subsequent sentence; and

(b) on release from prison

(i) the person will continue on parole in respect of the sentence that was first imposed for the balance of the period of parole remaining as at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the subsequent sentence; and

(ii) if released on parole from the subsequent sentence, the person will onalso be on parole in respect of that sentence for the period of that parole.

Automatic cancellation of parole upon imprisonment for offence committed while on parole

75. (1) Where

(a) a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n offence committed while on parole and the sentence is not suspended; or

(b) the suspens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imposed for an offence committed by a person while on parole is revoked,

the person is liable to serve in prison the balance of the sentence, or sentences, of imprisonment in respect of which he or she was on parole, being the balance unexpired as at the day on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

(1a) Subsection (1)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at the time of conviction of the person or of the revocation of the suspended sentence, the parole may have expired or been discharged.

(2) Where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at the time of conviction or revocation of the suspended sentence, still on parole, the parole is,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cancelled.

* * * * * * * * * *

Apprehension, etc., of parolees

76.(1) Where a member of the Board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person released on parole may have breached a condition of parole, the member may

(a) summon the person to appear before the Board; or

(ab) with the concurrence of a second member of the Board-issue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 person before the Board; or

(b) apply to a justice for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 person before the Board.

(2) Where a person fails to attend before the Board in pursuance of a summons issued under subsection (1), the Board

(a) may proceed to deal with the matter in the person's absence; or

(b) may

(i) issue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or

(ii) direct a member of the Board to apply to a justice for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of the pers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 person before the Board.

(2a) A warrant issued under subsection (1) or (2) authorises the detention of the person in custody pending attendance before the Board.

(3) A member of the Board may apply to a justice for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and return to prison of a person whose release on parole has been cancelled.

(3a) A justice must, o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issue a warrant for the apprehension of a person or for the apprehension and return to prison of a person, as the case may require, unless it is apparent, on the face of the application, that no reasonable grounds exist for the issue of the warrant.

(4) If it thinks good reason exists for doing so, the Board may, by order, cancel a warrant issued pursuant to this section that has not been executed.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77.(1) On receiving an application made under this Part, the Board must notify the prisoner,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the Commissioner for Police and may notify a victim of the offence

(a) of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b) of the day and time fixed for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2)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s under this Part

(a)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any employee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for the purpose, may make such submissions to the Board in writing as he or she thinks fit; and

(b) the Commissioner of Police, or any member of the police force authorised by the Commissioner for the purpose, may make such submissions to the Board in writing as he or she thinks fit; and

(ba) any victim of the offence may make such submissions to the Board in writing as he or she thinks fit; and

(c) the person to whom the proceedings relate may make such submissions

to the Board in writing as he or she thinks fit.

(3) The person to whom any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relate is entitled to be represented in those proceedings by a legal practitioner.

(4) The Board may, on written request, give details of the orders made by the Board in any proceedings relating to a prisoner or parolee to

(a) a person who made submissions to the Board in the proceedings; or

(b) a member of the prisoner's or parolee's family or a close associate of the prisoner or parolee; or

(c) a legal practitioner who represents the prisoner or parolee; or

(d) any other person who the Board thinks has a proper interest in the release of such information.

(5) The Board's decision to release or not to release information under subsection (4) is final and is not reviewable by a court.

* * * * * * * * * *

Part 8-Miscellaneous

Managers may make rules

83. (1)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make rule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2) A manage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vary or revoke any rules made under subsection (1).

(3) The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78does not apply to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4) The Minister must cause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to be published for the benefit of prisoners in such manner as the Minister thinks fit and, in giving effect to this section, mustensure, 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at the rules are made known to any prisoner who is illiterate or whose principal language is not the English language.

Managers to comply with the execution of process

84. Subject to this Act,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ust comply

with any order or direction lawfully given by an officer of a court or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for the purposes of the due execution of any process or order of a court or justice or issued otherwise pursuant to law.

Execution of warrants

85.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authoris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for the purpose may, on behalf of the Commissioner of Police, execute on a prisoner any warrant of a court or justice or other duly issued warrant.

Manager of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refuse entry to or cause the eviction of certain persons

85A.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if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 volunteer who is engaged in any activity within the institution, or a person who visits a prisoner pursuant to section 34, is interfering with, or is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good order or security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manager may refuse that person entry to the institution or may cause the person to be removed from the institution.

Power of search and arrest

85B. (1)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cause any person who enters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be detained and searched for the presence of items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person is in possession of such an item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anager.

(2)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cause any vehicle that enters the institution to be detained and searched for the presence of items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such an item is being carried on or in the vehicl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anager.

(3)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to a search carried out under subsection (1):

(a) for the purposes of the search the person cannot be required to remove his or her clothing but may be required

(i) to open his or her mouth; or

(ii) to adopt certain postures; or

(iii) to submit to being frisked; or

(iv) to do anything els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search, and if the person does not comply with such a requirement, reasonable force may be applied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b) force cannot be applied to open the person's mouth except by or under the supervision of a medical practitioner;

(c) nothing may be introduced into an orifice (including the mouth) of the person's body;

(d) at least 2 persons, apart from the person being searched, must be present at all times during the search;

(e) the search must be carried out expeditiously and undue humiliation of the person must be avoided.

(4) For the purposes of a search of a vehicle under subsection (2), the driver of the vehicle may be required to do anything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search, and if the driver does not comply with such a requirement, reasonable force may be used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5) If an item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is found on a person or on or in a vehicle as a result of a search carried out under this section and the prior permission of the manager to be in possession of or to carry the item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obtained

(a) the manager may cause the person or driver to be further detained and handed over into the custody of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nd

(b) the item may be kept as evidence of an offence or otherwise dealt with in the same manner as a prohibited item may be dealt with under section 33A.

(6) If no item prohibited by the regulations is found on a person as a result of a search carried out under this section but the officer who carried out the search suspects on reasonable grounds that such an item may be concealed on or in the person's body, the manager may cause the person to be further detained and

handed over into the custody of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7) If a person is detained pursuant to subsection (5) or (6), the manager must forthwith cause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to be notified of that fact.

(8) The annual report to be submitted under this Act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n respect of each financial year must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umber of persons detained under subsection (5) in consequence of searches carried out under this section during the relevant year; and

(b) the number of persons detained under subsection (6) in consequence of such a search; and

(c) the duration of all detentions effected under those subsections.

Confidentiality

85C. A person must not divulge information relating to a prisoner, probationer or parolee, being information obtained (whether by the person or some other person) in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is Act, except

(a) as required or authorised by this Act or any other Act or law; or

(b) as reasonably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is Act or any other prescribed Act; or

(c) for the purposes of legal proceedings arising out of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is Act; or

(d) to a government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is State, the Commonwealth or another State or Territory of the Commonwealth for the purposes of the proper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or

(e) with the consent of the prisoner, probationer or parolee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Maximum penalty: $10,000.

Release of information to victims, etc.

85D. (1) An eligible person may apply in writing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for the release to him or her of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relating to a prisoner: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which the prisoner is for the time being imprisoned;

(b) details of any transfer of the prisoner from on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another;

(c) details of the sentence or sentences of imprisonment that the prisoner is liable to serve;

(d) the date on which and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risoner was, is to be or is likely to be released from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any reason (for example, on bail, leave of absence, home detention, parole);

(e) details of any escape from custody by the prisoner.

(2) A person is an eligible person if he or she is

(a) a victim of the offence, or one of the offences, for which the prisoner is being imprisoned and has registered as such wit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b) a member of the prisoner's family or a close associate of the prisoner; or

(c) a legal practitioner who represents the prisoner; or

(d) any other person wh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nks has a proper interest in the release of such information.

(3)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as an absolute discretion to grant or refuse an application for release of information to an eligible person.

(4) A decis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s to whether a person is an eligible person or to grant or refuse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is final and is not reviewable by a court.

(5)Chief Executive Officer must not release information relating to a prisoner's release on paro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ole Board (but the Board may waive this requirement in such circumstances as it thinks fit).

Prison officers may use reasonable force in certain cases

86. Subject to this Act, an officer of the Department or a member of the police force employ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may, for the purposes of exercising powers or discharging duties under this Act, use such force against any person as is reasonably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Immunity from liability

86A.(1)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incurs no civil liability for an act or omission in good faith and in the exercise, or purported exercise, of powers vested in the employee by o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2) A liability that would, but for subsection (1), lie against an employee lies against the Crown.

Certain persons may enter and inspect correctional institutions

87. Any judge of the Supreme Court, District Court judge or magistrate may, at any reasonable time, enter and inspect any correctional institution.

Minister may acquire land

88. The Minister ma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cquire land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cquisition Act 1969.

Summary offences

88A. Offences against this Act (not being indictable offences) are summary offences.

Evidentiary provision

88B.In any proceedings against a prisoner for being unlawfully at large after expiry of leave of absence from prison, or for contravention of or failure to comply with a condition to which the leave was subject, a document purporting to be the order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his or her delegate) by which the leave of absence was granted or revoked or a condition was varied, will,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be taken to be proof of the order.

Regulations

89.(1) The Governor may make such regulations as are contemplated by this Act, or as are necessary or expedi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regulations may be made-

(a) providing for the treatment of remand prisoners; and

(b) providing for the treatment of contempt prisoners; and

(c) providing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or any particular class of prisoners, other than remand or contempt prisoners; and

(d) prescribing a class of prisoners who may not be released from prison to serve a period of home detention; and

(e) regulating the conduct of prisoners, or of prisoners of a particular class; and

(ea) regulating the collection of urine specimens from prisoners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is paragraph

(i) prescribing the directions that can be given to a prisoner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authenticating a urine specimen;

(ii) prescribing higher maxima for the penalties prescribed by sections 43 and 44 where a prisoner breaches regulations under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those higher maxima do not exceed by more than three times the maxima prescribed in those sections; and

(f) prescribing the practice and procedure, and any powers, of Visiting Tribunals, or of persons constituting Visiting Tribunals; and

(g) prescribing the practice and procedure, and any powers, of the manager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in dealing with breaches of the regulations; and

(h) prescribing the duties of officers of the Department or members of the police force employ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ha) regulating the times at which and procedure by which persons may be admitted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detention; and

(i) prescribing the weapons or any other thing that may be carried or used by officers of theDepartment or members of the police force employ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ny such weapon or thing may, or may not, be used; and

(j) prohibiting or regulating the holding or investing of money or any other personal property by or on behalf of prisoners, or of prisoners of a particular class; and

* * * * * * * * * *

(ka) prohibiting, restricting or regulating the entering into of contracts between prisoners; and

(l) prescribing directions that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s may give to persons under their supervision while on parole.

빈 면

Ⅶ.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监 狱
第三章 刑罚的执行
第一节 收 监
第二节 对罪犯提出的申诉、控告、检举的处理
第三节 监外执行
第四节 减刑、假释
第五节 释放和安置
第四章 狱政管理
第一节 分押分管
第二节 警 戒
第三节 戒具和武器的使用
第四节 通信、会见
第五节 生活、卫生
第六节 奖 惩
第七节 对罪犯服刑期间犯罪的处理
第五章 对罪犯的教育改造
第六章 对未成年犯的教育改造
第七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正确执行刑罚，惩罚和改造罪犯，预防和减少犯罪，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监狱是国家的刑罚执行机关。

依照刑法和刑事诉讼法的规定，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在监狱内执行刑罚。

第三条 监狱对罪犯实行惩罚和改造相结合、教育和劳动相结合的原则，将罪犯改造成为守法公民。

第四条 监狱对罪犯应当依法监管，根据改造罪犯的需要，组织罪犯从事生产劳动，对罪犯进行思想教育、文化教育、技术教育。

第五条 监狱的人民警察依法管理监狱、执行刑罚、对罪犯进行教育改造等活动，受法律保护。

第六条 人民检察院对监狱执行刑罚的活动是否合法，依法实行监督。

第七条 罪犯的人格不受侮辱，其人身安全、合法财产和辩护、申诉、控告、检举以及其他未被依法剥夺或者限制的权利不受侵犯。

罪犯必须严格遵守法律、法规和监规纪律，服从管理，接受教育，参加劳动。

第八条 国家保障监狱改造罪犯所需经费。监狱的人民警察经费、罪犯改造经费、罪犯生活费、狱政设施经费及其他专项经费，列入国家预算。

国家提供罪犯劳动必需的生产设施和生产经费。

第九条 监狱依法使用的土地、矿产资源和其他自然资源以及监狱的财产，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破坏。

第十条 国务院司法行政部门主管全国的监狱工作。

第二章 监 狱

第十一条 监狱的设置、撤销、迁移，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批准。

第十二条 监狱设监狱长一人、副监狱长若干人，并根据实际需要设置必要的工作机构和配备其他监狱管理人员。

监狱的管理人员是人民警察。

第十三条 监狱的人民警察应当严格遵守宪法和法律，忠于职守，秉公执法，严守纪律，清正廉洁。

第十四条 监狱的人民警察不得有下列行为：

（一）索要、收受、侵占罪犯及其亲属的财物；

（二）私放罪犯或者玩忽职守造成罪犯脱逃；

（三）刑讯逼供或者体罚、虐待罪犯；

（四）侮辱罪犯的人格；

（五）殴打或者纵容他人殴打罪犯；

（六）为谋取私利，利用罪犯提供劳务；

（七）违反规定，私自为罪犯传递信件或者物品；

（八）非法将监管罪犯的职权交予他人行使；

（九）其他违法行为。

监狱的人民警察有前款所列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未构成犯罪的，应当予以行政处分。

第三章 刑罚的执行

第一节 收 监

第十五条 人民法院对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应当将执行通知书、判决书送达羁押该罪犯的公安机关，公安机关应当自收到执行通知书、

判决书之日起一个月内将该罪犯送交监狱执行刑罚。

罪犯在被交付执行刑罚前，剩余刑期在一年以下的，由看守所代为执行。

第十六条 罪犯被交付执行刑罚时，交付执行的人民法院应当将人民检察院的起诉书副本、人民法院的判决书、执行通知书、结案登记表同时送达监狱。监狱没有收到上述文件的，不得收监；上述文件不齐全或者记载有误的，作出生效判决的人民法院应当及时补充齐全或者作出更正；对其中可能导致错误收监的，不予收监。

第十七条 监狱应当对交付执行刑罚的罪犯进行身体检查。经检查，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暂不收监：

（一）有严重疾病需要保外就医的；

（二）怀孕或者正在哺乳自己婴儿的妇女。

对前款所列暂不收监的罪犯，应当由交付执行的人民法院决定暂予监外执行。对其中暂予监外执行有社会危险性的，应当收监。暂予监外执行的罪犯，由居住地公安机关执行刑罚。前款所列暂不收监的情形消失后，原判刑期尚未执行完毕的罪犯，由公安机关送交监狱收监。

第十八条 罪犯收监，应当严格检查其人身和所携带的物品。非生活必需品，由监狱代为保管或者征得罪犯同意退回其家属，违禁品予以没收。

女犯由女性人民警察检查。

第十九条 罪犯不得携带子女在监内服刑。

第二十条 罪犯收监后，监狱应当通知罪犯家属。通知书应当自收监之日起五日内发出。

第二节 对罪犯提出的申诉、控告、检举的处理

第二十一条 罪犯对生效的判决不服的，可以提出申诉。

对于罪犯的申诉，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应当及时处理。

第二十二条 对罪犯提出的控告、检举材料，监狱应当及时处理或者转送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院处理，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院应当将处理结果通知监狱。

第二十三条 罪犯的申诉、控告、检举材料，监狱应当及时转递，不得扣压。

第二十四条 监狱在执行刑罚过程中，根据罪犯的申诉，认为判决可能有错误的，应当提请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处理，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应当自收到监狱提请处理意见书之日起六个月内将处理结果通知监狱。

第三节 监外执行

第二十五条 对于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在监内服刑的罪犯，符合刑事诉讼法规定的监外执行条件的，可以暂予监外执行。

第二十六条 暂予监外执行，由监狱提出书面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监狱管理机关批准。批准机关应当将批准的暂予监外执行决定通知公安机关和原判人民法院，并抄送人民检察院。

人民检察院认为对罪犯适用暂予监外执行不当的，应当自接到通知之日起一个月内将书面意见送交批准暂予监外执行的机关，批准暂予监外执行的机关接到人民检察院的书面意见后，应当立即对该决定进行重新核查。

第二十七条 暂予监外执行的罪犯，由居住地公安机关执行。原关押监狱应当及时将罪犯在监内改造情况通报负责执行的公安机关。

第二十八条 暂予监外执行的情形消失后，刑期未满的，负责执行的公安机关应当及时通知监狱收监；刑期届满的，由原关押监狱办理释放手续。罪犯在暂予监外执行期间死亡的，公安机关应当及时通知原关押监狱。

第四节 减刑、假释

第二十九条 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在服刑期间确有悔改或者立功表现的，根据监狱考核的结果，可以减刑。有下列重大立功表现之一的，应当减刑：

（一）阻止他人重大犯罪活动的；

（二）检举监狱内外重大犯罪活动，经查证属实的；

（三）有发明创造或者重大技术革新的；

（四）在日常生产、生活中舍己救人的；
（五）在抗御自然灾害或者排除重大事故中，有突出表现的；
（六）对国家和社会有其他重大贡献的。

第三十条 减刑建议由监狱向人民法院提出，人民法院应当自收到减刑建议书之日起一个月内予以审核裁定；案情复杂或者情况特殊的，可以延长一个月。减刑裁定的副本应当抄送人民检察院。

第三十一条 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的罪犯，在死刑缓期执行期间，符合法律规定的减为无期徒刑、有期徒刑条件的，二年期满时，所在监狱应当及时提出减刑建议，报经省、自治区、直辖市监狱管理机关审核后，提请高级人民法院裁定。

第三十二条 被判处无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符合法律规定的假释条件的，由监狱根据考核结果向人民法院提出假释建议，人民法院应当自收到假释建议书之日起一个月内予以审核裁定；案情复杂或者情况特殊的，可以延长一个月。假释裁定的副本应当抄送人民检察院。

第三十三条 人民法院裁定假释的，监狱应当按期假释并发给假释证明书。

被假释的罪犯由公安机关予以监督。被假释的罪犯，在假释期间有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公安部门有关假释的监督管理规定的行为，尚未构成新的犯罪的，公安机关可以向人民法院提出撤销假释的建议，人民法院应当自收到撤销假释建议书之日起一个月内予以审核裁定。人民法院裁定撤销假释的，由公安机关将罪犯送交监狱收监。

第三十四条 对不符合法律规定的减刑、假释条件的罪犯，不得以任何理由将其减刑、假释。

人民检察院认为人民法院减刑、假释的裁定不当，应当依照刑事诉讼法规定的期间提出抗诉，对于人民检察院抗诉的案件，人民法院应当重新审理。

第五节 释放和安置

第三十五条 罪犯服刑期满，监狱应当按期释放并发给释放证明书。

第三十六条 罪犯释放后，公安机关凭释放证明书办理户籍登记。

第三十七条 对刑满释放人员，当地人民政府帮助其安置生活。

刑满释放人员丧失劳动能力又无法定赡养人、扶养人和基本生活来源的，由当地人民政府予以救济。

第三十八条 刑满释放人员依法享有与其他公民平等的权利。

第四章 狱政管理

第一节 分押分管

第三十九条 监狱对成年男犯、女犯和未成年犯实行分开关押和管理，对未成年犯和女犯的改造，应当照顾其生理、心理特点。

监狱根据罪犯的犯罪类型、刑罚种类、刑期、改造表现等情况，对罪犯实行分别关押，采取不同方式管理。

第四十条 女犯由女性人民警察直接管理。

第二节 警 戒

第四十一条 监狱的武装警戒由人民武装警察部队负责，具体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规定。

第四十二条 监狱发现在押罪犯脱逃，应当即时将其抓获，不能即时抓获的，应当立即通知公安机关，由公安机关负责追捕，监狱密切配合。

第四十三条 监狱根据监管需要，设立警戒设施。监狱周围设警戒隔离带，未经准许，任何人不得进入。

第四十四条 监区、作业区周围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基层组织，应当协助监狱做好安全警戒工作。

第三节 戒具和武器的使用

第四十五条 监狱遇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使用戒具：

（一）罪犯有脱逃行为的；

（二）罪犯有使用暴力行为的；

（三）罪犯正在押解途中的；

（四）罪犯有其他危险行为需要采取防范措施的。

前款所列情形消失后，应当停止使用戒具。

第四十六条 人民警察和人民武装警察部队的执勤人员遇有下列情形之一，非使用武器不能制止的，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使用武器：

（一）罪犯聚众骚乱、暴乱的；

（二）罪犯脱逃或者拒捕的；

（三）罪犯持有凶器或者其他危险物，正在行凶或者破坏，危及他人生命、财产安全的；

（四）劫夺罪犯的；

（五）罪犯抢夺武器的。

使用武器的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报告情况。

第四节 通信、会见

第四十七条 罪犯在服刑期间可以与他人通信，但是来往信件应当经过监狱检查。监狱发现有碍罪犯改造内容的信件，可以扣留。罪犯写给监狱的上级机关和司法机关的信件，不受检查。

第四十八条 罪犯在监狱服刑期间，按照规定，可以会见亲属、监护人。

第四十九条 罪犯收受物品和钱款，应当经监狱批准、检查。

第五节 生活、卫生

第五十条 罪犯的生活标准按实物量计算，由国家规定。

第五十一条 罪犯的被服由监狱统一配发。

第五十二条 对少数民族罪犯的特殊生活习惯，应当予以照顾。

第五十三条 罪犯居住的监舍应当坚固、通风、透光、清洁、保暖。

第五十四条 监狱应当设立医疗机构和生活、卫生设施，建立罪犯生活、卫生制度。罪犯的医疗保健列入监狱所在地区的卫生、防疫计划。

第五十五条 罪犯在服刑期间死亡的，监狱应当立即通知罪犯家属和人民检察院、人民法院。罪犯因病死亡的，由监狱作出医疗鉴定。人民检察院对监狱的医疗鉴定有疑义的，可以重新对死亡原因作出鉴定。罪犯家属有疑义的，可以向人民检察院提出。罪犯非正常死亡的，人民检察院应当立即检验，对死亡原因作出鉴定。

第六节 奖 惩

第五十六条 监狱应当建立罪犯的日常考核制度，考核的结果作为对罪犯奖励和处罚的依据。

第五十七条 罪犯有下列情形之一的，监狱可以给予表扬、物质奖励或者记功：

（一）遵守监规纪律，努力学习，积极劳动，有认罪服法表现的；

（二）阻止违法犯罪活动的；

（三）超额完成生产任务的；

（四）节约原材料或者爱护公物，有成绩的；

（五）进行技术革新或者传授生产技术，有一定成效的；

（六）在防止或者消除灾害事故中作出一定贡献的；

（七）对国家和社会有其他贡献的。

被判处有期徒刑的罪犯有前款所列情形之一，执行原判刑期二分之一以上，在服刑期间一贯表现好，离开监狱不致再危害社会的，监狱可以根据情况准其离监探亲。

第五十八条 罪犯有下列破坏监管秩序情形之一的，监狱可以给予警告、记过或者禁闭：

（一）聚众哄闹监狱，扰乱正常秩序的；

（二）辱骂或者殴打人民警察的；

（三）欺压其他罪犯的；

（四）偷窃、赌博、打架斗殴、寻衅滋事的；

（五）有劳动能力拒不参加劳动或者消极怠工，经教育不改的；

（六）以自伤、自残手段逃避劳动的；

（七）在生产劳动中故意违反操作规程，或者有意损坏生产工具的；

（八）有违反监规纪律的其他行为的。

依照前款规定对罪犯实行禁闭的期限为七天至十五天。

罪犯在服刑期间有第一款所列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节 对罪犯服刑期间犯罪的处理

第五十九条 罪犯在服刑期间故意犯罪的，依法从重处罚。

第六十条 对罪犯在监狱内犯罪的案件，由监狱进行侦查。侦查终结后，写出起诉意见书或者免予起诉意见书，连同案卷材料、证据一并移送人民检察院。

第五章 对罪犯的教育改造

第六十一条 教育改造罪犯，实行因人施教、分类教育、以理服人的原则，采取集体教育与个别教育相结合、狱内教育与社会教育相结合的方法。

第六十二条 监狱应当对罪犯进行法制、道德、形势、政策、前途等内容的思想教育。

第六十三条 监狱应当根据不同情况，对罪犯进行扫盲教育、初等教育和初级中等教

育，经考试合格的，由教育部门发给相应的学业证书。

第六十四条 监狱应当根据监狱生产和罪犯释放后就业的需要，对罪犯进行职业技术教育，经考核合格的，由劳动部门发给相应的技术等级证书。

第六十五条 监狱鼓励罪犯自学，经考试合格的，由有关部门发给相应的证书。

第六十六条 罪犯的文化和职业技术教育，应当列入所在地区教育规划。监狱应当设立教室、图书阅览室等必要的教育设施。

第六十七条 监狱应当组织罪犯开展适当的体育活动和文化娱乐活动。

第六十八条 国家机关、社会团体、部队、企业事业单位和社会各界人士以及罪犯的亲属，应当协助监狱做好对罪犯的教育改造工作。

第六十九条 有劳动能力的罪犯，必须参加劳动。

第七十条 监狱根据罪犯的个人情况，合理组织劳动，使其矫正恶习，养成劳动习惯，学会生产技能，并为释放后就业创造条件。

第七十一条 监狱对罪犯的劳动时间，参照国家有关劳动工时的规定执行；在季节性生产等特殊情况下，可以调整劳动时间。

罪犯有在法定节日和休息日休息的权利。

第七十二条 监狱对参加劳动的罪犯，应当按照有关规定给予报酬并执行国家有关劳动保护的规定。

第七十三条 罪犯在劳动中致伤、致残或者死亡的，由监狱参照国家劳动保险的有关规定处理。

第六章 对未成年犯的教育改造

第七十四条 对未成年犯应当在未成年犯管教所执行刑罚。

第七十五条 对未成年犯执行刑罚应当以教育改造为主。未成年犯的劳动，应当符合未成年人的特点，以学习文化和生产技能为主。

监狱应当配合国家、社会、学校等教育机构，为未成年犯接受义务教育提供必要的条件。

第七十六条 未成年犯年满十八周岁时，剩余刑期不超过二年的，仍可以留在未成年犯管教所执行剩余刑期。

第七十七条 对未成年犯的管理和教育改造，本章未作规定的，适用本法的有关规定。

第七章 附 则

第七十八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Ⅷ. SINGAPORE PRISONS ACT

PART I

PRELIMINARY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risons Act.

Interpretation

2.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Corporation" means the Singapore Corporation of Rehabilitative Enterprises established under the Singapore Corporation of Rehabilitative Enterprises Act (Cap. 298);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Prisons appointed under section 20;

"juvenile" means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6 years, whether convicted or not, under detention in any prison;

"prison" means any house, building, enclosure or place, or any part thereof, declared to be a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under section 3, and includes the grounds and buildings within the prison enclosure and also the airing grounds or other grounds or buildings belonging or attached thereto and used by prisoners;

"prison officer" means any prison officer appointed under section 20 but does not include the Director or any Superintendent;

"prisoner" means any person, whether convicted or not, under detention in any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Superintendent" means a Superintendent of Prisons appointed under section 20;

"Visiting Justice" means a member of the Board of Visiting Justices appointed under section 79.

PART II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ON

Power to declare prisons

3.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

(a) declare any house, building, enclosure or place, or any part thereof, to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for the imprisonment or detention of persons lawfully in custody;

(b) define which prisons shall be used for the custody of particular classes of prisoners;

(c) declare that any prison shall cease to be a prison; and on the publication in the

Gazette of such declaration, or from and after any later date specified therein, that prison shall cease to be a prison; and

(d) declare any prison, house, building, enclosure or place, or any part thereof, to be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sentenced to reformative training.

Appointment of lock-ups at police stations and court houses as places of detention

4. —(1)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appoint the lock-ups at such police stations and court houses to be places for the confinement of persons awaiting trial, remanded, or sentenced to such terms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month, as may be specified in each case.

(2) A lock-up appointed as a place of confinement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be deemed to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r of the Registration of Criminals Act (Cap. 268) and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84 shall not apply thereto, but every such lock-up shall be deemed to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Chapter XXV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p. 68).

(3)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with regard to lock-ups appointed under

subsection (1) to provide for all or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a) the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such lock-ups and the officers to be in charge thereof;

(b) the employment of persons confined therein;

(c) the diets to be supplied to such persons;

(d)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Temporary prisons

5. —(1) Whenever it appears to the Director —

(a) that the number of prisoners in any prison is greater than can be conveniently kept therein, and that it is not convenient to transfer the excess number to some other prison; or

(b) that, by reason of the outbreak within any prison of disease or for any other reas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for the temporary shelter and safe custody of any prisoners,

such provision shall be made as the Directo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direct for the shelter and safe custody in temporary prisons of so many of the prisoners as cannot be conveniently or safely kept in the prison.

(2) Every such temporary prison shall be a pris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eneral administration of prisons by Director

6. —(1)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Minister, the general charge and administration of prisons and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prison officers throughout Singapore shall be vested in the Director.

(2) The Director may from time to time make such transfers, and direct the employment and distribution, of prison officers as he may think fit.

Administration of prison by Superintendent

7. —(1)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Director, the administration of each prison shall be vested in a Superintendent.

[8/2000]

(2) If the Superintendent of a prison is temporarily absent or temporarily incapacitated,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uperintendent under the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may, during the period of absence or incapacity, be exercised and performed by any prison officer appointed by the Director.

[8/2000]

COMMITTEE OF INQUIRY

Committee of inquiry

8. —(1) Where it is expedient that the Minister, or such other person as the Minister may appoint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upon the Minister by this Part, should be informed on any matter connected with the discipline, administration or functions of any prison or affecting any prisoner, the Minister or the person appointed by the Minister may convene a committee of inquiry.

[8/2000]

(2)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inquire into and report on the facts relating to any matter referred to it and, if directed by the Minister to do so, express its opinion on any question arising out of any such matter.

[8/2000]

(3) In this Part, "Minister" includes the person appointed by the Minister under subsection (1) to act on his behalf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7A

[8/2000]

Composition of committee of inquiry

9. —(1)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consist of one or more person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8/2000]

(2) Where a committee of inquiry consists of more than one person, the Minister shall appoint one of the members to be the chairman.

[8/2000]

(3) Where a committee of inquiry consists of one member only, he shall be vest-

ed with the powers of a chairman.

[8/2000]

(4) Every member of a committee of inquiry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a public servant within the meaning of the Penal Code (Cap. 224).

[7B

[8/2000]

Powers of committee of inquiry

10. A committee of inquiry may —

(a) summon any person to give evidence on oath or on affirmation, or to produce any document or material,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the inquiry; and

(b) visit any place in order to inquire into any matter which may arise in the course of the inquiry.

[7C

[8/2000]

Disobedience to summons an offence

11. —(1) A person who is summoned to give evidence before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not, without lawful excuse, fail to appear in obedience to the summons.

[8/2000]

(2) A person who is required by a committee of inquiry to produce any document or material for the purpose of the inquiry shall not, without lawful excuse, fail to produce the document or material.

[8/2000]

(3)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or (2)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2,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both.

[7D

[8/2000]

Refusal to give evidence an offence

12. —(1) A person who appears before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not, without lawful excuse, refuse to be sworn or to make an affirmation, or to produce any document or material, or to answer any question, which he is lawfully required to produce or answer.

[8/2000]

(2)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2,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both.

[7E

[8/2000]

Giving of false evidence an offence

13. Every person who wilfully gives false evidence when examined on oath or on affirmation before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7 years or to both.

[7F

[8/2000]

Evidence and procedure

1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not be bound by the rules of evidence and may act in such manner as the committee of inquiry thinks most expedient.

[7G

[8/2000]

Admissibility of evidence

15. No statement made in the course of any inquiry and no report of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in any proceedings other than proceedings, whether criminal or disciplinary, for an offence of giving or fabricating false

evidence under any written law.

[7H

[8/2000]

Proceedings not open to public

16. —(1)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not sit in public.

[8/2000]

(2) No person shall be allowed to attend the proceedings of a committee of inquiry, or address a committee of inquiry, except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irman or if the Minister so directs.

[7I

[8/2000]

Persons who may be affected by findings

17. —(1) Where it appears to a committee of inquiry that the Director, any Superintendent, prison officer or witness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its findings, the committee shall notify him and give him an opportunity to be present at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of inquiry or at such part thereof as the chairman may specify.

[8/2000]

(2) The person notifi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allowed to give evidence and examine any witness.

[7J

[8/2000]

Record of proceedings

18. —(1) The chairman shall record or cause to be recorded in writing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of inquiry.

[8/2000]

(2) The evidence of each witness before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be read over to him and shall be signed by him.

[8/2000]

(3) A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be signed by the chairman an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if any, and forwarded to the Minister.

[8/2000]

(4) The record of proceedings of a committee of inquiry, or any part thereof, or any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shall not be released to any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committe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Minister.

[7K

[8/2000]

Offence to influence or attempt to influence committee of inquiry

19. Every person who, otherwise than in the course of duty, directly or indirectly by himself or by any other person in any manner whatsoever influences or attempts to influence any decision of a committee of inquiry or any member of a committee of inquiry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2,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both.

[7L

[8/2000]

OFFICERS

Appointment of Director and other officers

20. —(1) The Minister may appoint a Director of Prisons, and, either by name or as holding any office for the time being, one or more Superintendents of Prisons, and such and so many prison officers, male or female, as may be necessary.

[7/97]

(2) 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and of any Superintendent shall be notified in the Gazette.

〔8

Prison Standing Orders

21. The Director may issue orders, to be called Prison Standing Order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of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9

Inspection by Director

22. The Director shall periodically visit and inspect, or cause to be visited and inspected, all prisons in Singapore.

〔10

Director may exercise powers of Superintendent

23. The Director may exercise and perform any of the powers conferred or duties imposed by law on a Superintendent.

〔11

Duties of Superintendent

24.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Director, a Superintendent shall —

(a) supervise and control all matters in connection with any prison the administration of which is vested in him; and

(b) be responsible to the Director for the conduct and treatment of the prison officers and prisoners under his control, and for the due observance by prison officers and prisoners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of all other written law relating to prisons or prisoners.

〔12

Medical officer for prisons

25. —(1) The Director of Medical Services shall, whenever the circumstances permit, appoint a medical officer for the prisons.

(2) If circumstances do not permit the appointment of a medical officer under subsection (1) by the Director of Medical Services, the Minister may appoint any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o be the medical officer for any particular prison.

(3) Whenever a medical officer appointed under subsection (1) is, owing to illness or temporary absence or for other sufficient reason,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his duties shall be performed by another medical officer appointed in that behalf by the medical officer, or in default of the medical officer by the Superintendent.

[13

Duties of medical officer

26.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Director, the medical officer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prescribed.

[14

Duties of prison officers

27. Prison officers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prescribed.

[17

Accoutrements

28.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shall be provided with such staves, arms, ammunition and other accoutrements as may be prescribed.

[18

Observance of laws, regulations and orders

29.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shall —

(a) strictly conform to 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prisons and prisoners; and

(b) obey all lawful orders of his superior officers, whether given verbally or in writing, or issued in the form of prison regulations or standing orders.

[19

Prison officers deemed public servants

30. The Director and all Superintendents, medical officers and prison officers appointed under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shall be deemed to be public servants within the meaning of the Penal Code (Cap. 224).

[20

Use of weapons

31. —(1) Subject to this section, a Superintendent or prison officer may use any weapon --

(a) against any prisoner escaping or attempting to escape;

(b) against any person who does any act or attempts to do any act to facilitate the escape of any prisoner; or

(c) against any person engaged in any attempt to damage or force or break open —

(i) the outside door or gate or enclosure wall of a prison or any other part of a prison; or

(ii) any part of any vehicle in which a prisoner is conveyed.

[8/2000]

(2) A Superintendent or prison officer may use any weapon —

(a) on any prisoner engaged in any combined outbreak; and

(b) on any person engaged in any attempt to damage or force or break open —

(i) the outside door or gate or enclosure wall of a prison or any other part of a prison; or

(ii) any part of any vehicle in which a prisoner is conveyed,

and may continue to use the weapon so long as the combined outbreak or attempt is actually being prosecuted.

[8/2000]

(3)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may use weapons against any prisoner using violence on any prison officer or other person, if the Superintendent or prison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 prison officer or other person is in danger of life or limb, or that other grievous hurt is likely to be caused

to him.

(4) A Superintendent or prison officer shall not resort to the use of any weapon under subsection (1) unless he ha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he cannot otherwise prevent the escape of any prisoner.

[8/2000]

(5) Before using any firearm against a prisoner or other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Superintendent or prison officer shall give a warning to the prisoner or that other person, as the case may be, that he is about to fire on him.

[8/2000]

(6) No prison officer shall, in the presence of his superior officer, use any firearm against a prisoner or other person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ubsection (1) or (2) except under the orders of his superior officer.

[8/2000]

(7) The use of weapon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as far as possible, to disable and not to kill.

(8) Every police officer who is for the time being serving in the capacity of an escort, or of a guard in or around any prison or lock-up,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safe custody of any prisoner or prisoners, shall be deemed to have all the powers and privileges granted to prison officers under this section.

[21

Superintendent and prison officer to have powers of police officer

32. Every Superintendent and every prison officer while acting as such shall by virtue of his office have all the powers, authorities, protection and privileges of a police officer.

[22

PART V

CUSTODY AND REMOVAL OF PRISONERS

Prisoners deemed in legal custody

33. —(1) Every prisoner confined in any prison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legal custody of the Superintendent thereof.

(2) Every prisoner shall be subject to the prison discipline and regulations during the whole time of his imprisonment, whether or not he is within the precincts of any prison.

[23

Employment of auxiliary police officers as escorts and guards

34. —(1)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him in the discharge of his duties under this Act, the Director may employ such numbers of auxiliary police officers as he considers fit as escorts or guards to ensure the safe custody of the prisoners who are under his custody while the prisoners are transported to, or from, any prison and while the prisoners are at any place outside a prison.

[8/2000]

(2) A prisoner who is delivered into the custody of an auxiliary police officer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in lawful custody.

[8/2000]

(3) Every auxiliary police officer who is employed as an escort or a guard under subsection (1) shall,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his duties as an escort or a guard —

(a) have the powers of a prison officer conferred under section 31;

(b) be deemed to be a prison officer for the purpose of section 69; and

(c) be deemed to be an officer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72 and 73.

[8/2000]

(4) Every auxiliary police officer employ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deemed to be a public servant within the meaning of the Penal Code (Cap. 224).

〔8/2000〕

(5)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uxiliary police officer" means a member of the Auxiliary Police Force established under section 12 of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urity Corporation Act (Cap. 47) or a member of an auxiliary police force established under any other written law.

〔23A

〔8/2000〕

Superintendent to detain persons committed

35. The Superintendents are authorised and required to keep and detain all persons duly committed to their custody by any court, Judge, Magistrate, Justice of the Peace, Coroner, or other public officer lawfully exercising civil or criminal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exigency of any writ, warrant or order by which such persons have been committed, or until such persons are discharged by due course of law.

〔24

Delivery of persons on remandy

36. —(1) Every person remanded to any prison by any court, Judge, Magistrate, Justice of the Peace or Coroner, charged with any crime or offence, shall be delivered to the Superintendent of such prison as the Minister appoints for the custody of such persons, together with a warrant of commitment.

(2) The Superintendent shall detain a pers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warrant, and shall cause that person to be delivered to such court, Judge, Magistrate, Justice of the Peace or Coroner, or shall discharge that person at the time named in an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warrant.

〔25

Delivery of persons arrested on warrant

37. —(1) Every person arrested in pursuance of any writ, warrant or order of any court having civil jurisdiction shall be brought without delay before the court by

which the writ, warrant or order was issued, awarded or made.

(2) If the court is not then sitting, the person shall be delivered to the Superintendent for intermediate custody, and the Superintendent shall cause the person to be brought before that court at its next sitting in order that the person may be dealt with according to law.

〔26

Production of persons before court

38. —(1) Whenever the presence of any person confined in a prison is required in any court of civil or criminal jurisdiction, the court may issue an order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uperintendent requiring the production before the court of the person in proper custody at the time and place to be named in the order.

(2) The Superintendent shall cause the person named in the order to be brought up as directed, and shall provide for his safe custody during his absence from prison.

(3) Every court may by endorsement on the order require the person named therein to be again brought up at any time to which the matter wherein the person is required may be adjourned.

(4) Every such order issued by the Supreme Court may be signed by the Registrar of the Court, and if issued by a District Court, may be signed by the Judge or Registrar thereof, and if issued by any other court, shall be signed by the Magistrate or Coroner, as the case may be.

〔27

Powers of Minister for production of prisoner in certain cases

39. —(1) The Minister may, on proof to his satisfaction that the presence of any prisoner at any place is required in the interests of justice, or for the purpose of any public inquiry, by writing under his hand order that the prisoner be taken to that place.

(2) A prisoner taken from a prison in pursuance of an order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while outside that prison, be kept in such custody as the Minister may by writing under his hand so direct, and while in that custody shall be

deemed to be in legal custody.

[28

Powers of Superintendent for production of prisoner in interest of prisoner

40. —(1) The Superintendent of any prison may, on proof to his satisfaction that the presence of a prisoner at any place is required in the interest of the prisoner, by writing under his hand order that the prisoner be taken to that place.

[8/2000]

(2) A prisoner taken from a prison under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1) shall, while outside that prison, be kept in such custody as the Superintendent may by writing under his hand so direct, and while in that custody shall be deemed to be in lawful custody.

[28A

[8/2000]

Discharge of prisoners

41. The Superinten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ue discharge of all prisoners immediately upon their becoming entitled to release, whether by the expiration of their terms of sentence, or by pardon, or by commutation, or by remission of sentence.

[29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

42. —(1) In case of a contagious or infectious disease occurring in any prison, it shall be lawful to remove any of the prisoners from the prison to another place although that place may not be a prison under this Act.

(2) The removal under subsection (1) may be made in pursuance of an order under the hand of the Minister, or, in a case of emergency, of the Superintendent or of any of the Visiting Justices of the prison.

(3) Any such place shall be deemed during the continuance of any prisoner

therein to be a part of the prison from which the prisoner was so removed.

(4) When the disease shall have ceased, any prisoner so removed from any prison shall be taken back to the prison from where he was removed, if still liable to be confined therein.

〔30

Prisoners of unsound mind

43. —(1) Whenever a prisoner undergo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appears to the Minister on the certificat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o be of unsound mind, the Minister may, by order in writing, setting forth the grounds of belief that the prisoner is of unsound mind, direct his removal from any prison to any mental hospital or other fit place of safe custody within Singapore, there to be kept and treated as the Minister directs —

(a)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ordered by the sentence; or

(b) if it is certified by a medical officer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prisoner or of others that he should be detained under medical care and treatment, until he is discharged according to law.

(2) When it appears to the Minister on the certificat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hat such prisoner has again become of sound mind, the Minister shall, by an order in writing, return him to the prison from where he was removed if his term of imprisonment has not expired, but if the term has expired, shall direct him to be discharged.

(3) Section 40 of the Mental Disorders and Treatment Act (Cap. 178) shall apply to every person confined in a mental hospital under this sec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to which he has been sentenced, and the time during which he is so confined shall be reckoned as part of such term.

〔31

Removal of prisoners

44. —(1) The Director may, by order in writing, remove all or any prisoners con-

fined in any prison to another prison within Singapore.

(2) It shall not be necessary in the order under subsection (1) to designate any prisoner by name, but it shall be sufficient to describe the prisoner or prisoners by reference to their nationality or sentence, or by some other like general description.

(3)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under 21 years of age and might with advantage be detained in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the Minister may, after consultation where practicable with the Judge or District Judge of the court which passed the sentence, authorise the Director to transfer him to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and section 13 (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p. 68) shall thereupon apply to him as if he had on the date of the transfer been sentenced to reformative training.

(4) If on the date of the transfer under subsection (3), the unexpired term of his sentence is less than 3 years, that subsection shall apply to him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reformative training 3 years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term.

(5) If a person detained in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is reported to the Minister by the Director to be incorrigible, or to be exercising a bad influence on the other inmates of the institution, the Minister may commute the unexpired part of the term for which that person is then liable to be detained in a reformative training centre to such term of imprisonment as the Minister may determine, not exceeding the said unexpired part; and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at person shall be treated as if he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at term.

[32

[8/2000]

Illness of prisoner

45. —(1) In case of serious illness of a prisoner (other than a prisoner referred to in subsection (2)) confined in a prison in which there is no suitable accommodation for the prisoner, any Superintendent may, on the certificate of a medical officer, make an order for his removal to a hospital.

(2) Where a prisoner confined in a prison appears to the Minister on the certifi-

cate of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to be suffering from leprosy, the Minister may, by order in writing, direct his removal to any hospital or place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Medical Services under section 8 (2) of the Infectious Diseases Act (Cap. 137), there to be kept and treated until cured of his leprosy.

(3) So long as any prisoner who has been removed to any hospital or place under subsection (2) shall remain therein, the medical officer thereof shall, at the end of every month, transmit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prison a certificate signed by him that it is in his opinion necessary that the prisoner should remain in the hospital or place.

(4)

Deleted by Act 26/2001, wef 01/09/2001.

Return to prison

46. —(1) So soon as, in the opinion of the medical officer in charge of any hospital or place specified by the Director of Medical Services under section 8 (2) of the Infectious Diseases Act (Cap. 137), it is no longer necessary that any prisoner who has been removed to the hospital or place should remain therein, the medical officer shall transmit to the Superintendent a certificate, stating that such necessity has ceased.

(2) Thereupon the Superintendent shall forthwith cause the prisoner to be brought back to the prison if he is still liable to be confined therein.

[34

Liability for escape

47. If any prisoner escapes during such time as he is in any hospital, mental hospital or place as aforesaid, no prison officer shall be held answerable therefor, unless the prisoner has been in the personal custody of that officer.

[35

Duty to prevent escape

48. —(1) Every precaution shall be taken by the medical officers and other officers

of any hospital, mental hospital or place to prevent the escape of prisoners who may at any time be under treatment therein.

(2) The officer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may take such measures for preventing the escape of any prisoner as shall be necessary.

(3) Nothing shall be done under the authority under this section which in the opinion of the medical officers is likely to be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those prisoners.

[36

Special custody in hospital

49. —(1) Where in any case, from the gravity of the offence for which any prisoner may be in custody or for any other reason, the Superintendent considers it to be desirable to take special measures for the security of the prisoner while under treatment in a hospital, mental hospital or place, the Superintendent may give the prisoner into the charge of fit and proper persons not being less than 2 in number, one of whom at the least shall always be with the prisoner day and night.

(2) Such persons shall be vested with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o all things necessary to prevent the prisoner from escaping, and shall be answerable for his safe custody until such time as he is handed over to a prison officer on his discharge from the hospital, mental hospital or place or until such time as his sentence expires, whichever may first occur.

[37

Saving of powers of High Court

50. Nothing in this Act contained shall be held to lessen or affect the power of the High Court to direct persons confined in Singapore to b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writ of habeas corpus.

[38

PART VI

HOME DETENTION SCHEME

Interpretation of this Part

51. In this Part –

"home detention", in relation to a prisoner, means the serving by the prisoner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in such place or places, outside the limits of any prison, as may be specified in the home detention order;

"home detention order" means an order of the Director under section 52;

"Superintendent", in relation to a prisoner, means the Superintendent of the prison from which the prisoner had been released for home detention.

[38A

[8/2000]

Order for home detention

52. Subject to section 53, the Director may, if he thinks fit, by order release a prisoner who is eligible for home deten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 months.

[38B

[8/2000]

Eligibility for home detention

53. –(1) A prisoner is eligible to be released for home detention under section 52 if –

(a) he is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6 months and has served not less than half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and

(b) he is not a prisoner specified under the Schedule as being disqualified from being released for home detention under section 52.

[8/2000]

(2)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1) (

a), the total consecutive periods of imprisonment of whatever nature shall be treated as one sentence.

[38C

[8/2000]

Conditions for home detention

54. —(1) A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shall —

(a) remain indoors at his place of residence or at such other place or places as may be designated by the Director in the order, and between such tim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b) wear at all times on such part of his body as the Director may specify, such electronic transmitting device as may be issued by the Director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his whereabouts by means of an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c) allow the Superintendent and any person authorised by the Superintendent to enter at any time his place of residence, or such other place or places designated by the Director under paragraph (a), to install, inspect, maintain, repair or retrieve any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d) allow a telephone line at his place of residence, or at such other place or places designated by the Director under paragraph (a), to be connected to an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e) ensure that there is no call waiting or call transfer facility attached to the telephone line referred to in paragraph (d) and that the telephone line is not connected to any cordless telephone, telephone answering machine, parallel telephone line, modulator — demodulator unit or any other equipment which may interfere with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f) not disconnect, remove, damage, tamper with, or lose the electronic transmitting device issued to him or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installed at his place of residence or at such other place or places designated by the Director under paragraph (a), or disconnect, remove,

damage or tamper with the telephone line connected to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g) immediately inform the Superintendent or any prison officer of any malfunction or loss of, or damage to, the electronic transmitting device or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h) respond promptly to any telephone call from any person appointed by the Director to monitor prisoners who have been issued with an electronic transmitting device; and

(i) comply with such other conditions as the Director may specify in the order.

[8/2000]

(2) The Director may at any time by order in writing served on the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

(a) vary, cancel or add to any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subsection (1); or

(b) exempt the prisoner from any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subsection (1).

[38D

[8/2000]

Effect of home detention order

55. Where a home detention order is in force in respect of a prisoner —

(a) the prisoner shall be deemed to be serving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b) the prisoner shall be deemed to be in the lawful custody of the Superintendent; and

(c) the prisoner is entitled to earn remission in respect of the period of imprisonment which is served under the order.

[38E

[8/2000]

Recall to prison

56. —(1) If a Superintendent has reason to suspect that a priso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ny of the conditions of the home detention order, or has committed a disciplinary offence while being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the Superintendent may —

(a) make such inquiry as may be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the priso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ny of the conditions of the home detention order or committed a disciplinary offence while being subject to the order; and

(b) recall the prisoner to prison pending the completion of the inquiry.

[8/2000]

(2) The period of the home detention order of a prisoner who is recalled to prison under subsection (1) (b) shall continue to ru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he is recalled to prison, unless the order is revoked under section 57 or suspended under section 58.

[38F

[8/2000]

Revocation of home detention order

57. —(1) If the Director is satisfied that —

(a) a prisoner has failed to return to prison after he has been recalled to prison under section 56 (1) (b);

(b) a priso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ny of the conditions of the home detention order;

(c) a prisoner has committed a disciplinary offence while being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d) the whereabouts of a prisoner can no longer be electronically monitored at his place of residence, or at such other place or places at which the prisoner is required to remain within doors under the conditions of the home detention order; or

(e) it is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the Director may revoke the home detention order in respect of that prisoner and recall the prisoner to prison, and the prisoner shall, if at large, be deemed to be unlawfully at large.

[8/2000]

(2) Upon the revocation of the home detention order under subsection (1), the prisoner shall serve the unexpired part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in prison.

[38G

[8/2000]

Suspension of home detention order

58. —(1) Subject to subsection (2), where a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is punished for a minor prison offence under section 70 (1) (a) or (b), or for an aggravated prison offence under section 71 (1) (b) or (c), the home detention order in respect of the prisoner shall, unless revoked under section 57, be suspend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soner is punished for —

(a) the period that the prisoner is confined in a punishment cell pursuant to an order under section 70 (1) (a) or 71 (1) (b); or

(b) the period of remission which is forfeited pursuant to an order under section 70 (1) (b) or 71 (1) (c).

[8/2000]

(2) If a prisoner is punished with both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under section 70 (1) (a) or 71 (1) (b) and forfeiture of remission under section 70 (1) (b) or 71 (1) (c), the period for which the home detention order shall be suspend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the sum of the period for which the prisoner is ordered to undergo confinement and the period of remission forfeited.

[38H

[8/2000]

Powers to enter and search

59. A police officer of or above the rank of Assistant Superintendent of Police or a police officer authorised by him may —

(a) enter and search a place without a warrant to effect the arrest of any prisoner who has failed to return to prison after he is recalled by the Superintendent under section 56 (1) (b); and

(b) in order to effect an entrance into that place, break open any outer or inner door or window of that place if he cannot otherwise obtain admittance thereto.

[38]

[8/2000]

PART VII

DISCIPLINE AND PRISON OFFENCES

Offences governing prison supplies

60. —(1) The Director, any Superintendent, prison officer, medical officer, memb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or any other person working in a prison shall not —

(a) sell, supply or receive, directly or indirectly, any benefit or advantage from the sale or supply of any article to or for the use of any prisoner or for the use of any prison;

(b) directly or indirectly have any interest in any contract or agreement for the sale or supply of any article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c) directly or indirectly have any pecuniary interest in the purchase of any prison supplies, or receive any discount, gift or other consideration from contractors for or sellers of such supplies, or have any pecuniary dealing with prisoners or with their friends with regard to them.

[8/2000]

(2) A prison officer, medical officer, memb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or any other person working in a prison shall not hold any communication with any person on behalf of any prisoner unless authorised by the Director or the Superintendent.

[8/2000]

(3)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or (2)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6,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or to both.

[39
[8/2000]

Desertion

61. Any prison officer who unlawfully or in breach of his engagement absents himself from duty under circumstances which show that he has the intention of not returning to his duty shall be deemed to have deserted,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shall be forfeited.

[40

Payment of money forbidden

62. —(1) No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shall on any pretext whatsoever be payable, paid, given or promised by or on behalf of any prisoner, either on his entry into, commitment to, continuance in or discharge from any prison, to any prison officer, medical officer, memb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or to any other person working in a prison.

(2) Any such person receiving or demanding any such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or undertaking any service in consideration of receiving or the promising of such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1,2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both.

[8/2000]

(3) Any public officer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41
[8/2000]

Delivery of uniform, etc., on leaving

63. —(1) Every person, upon ceasing to be a prison officer, shall forthwith deliver

up to the Superintendent of the prison in which he is serving at the time of ceasing to be a prison officer, every article of uniform and clothing and all arms, accoutrements, ammunition, staves and other effects of every kind belonging to the Government.

[8/2000]

(2)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is section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1,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months or to both and in addition thereto shall be liable to pay the value of any article not delivered up, which value shall be summarily ascertained by the court and shall be recoverable as if it were a fine.

[42

[8/2000]

Threatening or insulting superiors

64. —(1) Any prison officer who assaults, threatens or insults any officer senior to him in the prisons service when the senior officer is on duty or when the assault, threat or insult is related to or is consequent upon the discharge of duty by the officer so assaulted, threatened or insulted,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before a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to a fine not exceeding $1,2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8/2000]

(2) Any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47

Prison Officers Reward Fund

65. —(1) All pay which is forfeited by and fines inflicted upon prison officers under this Act shall be paid into a fund to be called the Prison Officers Reward Fund.

(2) The Fund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84.

[48

Articles not to be conveyed into or out of prison

66. —(1) Every person who without lawful authority —

(a) conveys, supplies or causes to be supplied or conveyed to any prisoner, or hides or places for his use any letter or document, or any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drug, opiate, money, clothing, provisions or any other article;

(b) brings or attempts by any means to introduce into any prison, or places or attempts to place where prisoners labour, any letter or document, or any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drug, opiate, money, clothing, provisions or any other article to be sold or used therein;

(c) brings or attempts to bring out of any prison, or conveys from any prisoner, any letter, document or other article; or

(d) communicates with any prisoner,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2) Every prison officer who without lawful authority —

(a) knowingly suffers any letter or document, or any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drug, opiate, money, clothing, provisions, letter, document or other article to be sold to or received or used by or on behalf of any prisoner;

(b) lends or gives to any prisoner any such intoxicating liquor, tobacco, bhang or hemp, drug, opiate, money, clothing, provisions or other article; or

(c) knowingly suffers any letter, document or other article to be brought out of any prison, or to be conveyed from any prisoner,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3) Any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3,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or to both and, if he is a prison officer, he may, unless the conviction is reversed on appeal,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and all arrears of pay due to him may be forfeited.

〔49
〔8/2000〕

Prisoner may be required to work

67. Whenever any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 person may be required to work at any labour prescribed under this Act, and for which he is certified as fit by the medical officer.

〔50

Separation of prisoners

68. —(1) Persons confined under civil process, and persons on remand charged with crimes or offences, or committed to take their trial, or confined for want of sureties, shall not —

(a) ordinarily be associated with convicted prisoners; or

(b) be required to labour beyond such labour as is reasonably proper for keeping their persons and dress in a proper state, and keeping the places in which they are confined clean.

(2) All juveniles shall, so far as local conditions permit, be kept apart from adults under detention.

〔51

Extramural custody of prisoners

69. A prisoner, when being taken to or from any prison in which he may be lawfully confined, or whenever he is working outside or is otherwise beyond the limits of any such prison in or under the lawful custody or control of a prison officer, shall be deemed to be in prison,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he same incidents as if he were actually in prison.

〔52

Punishment by Superintendent for minor prison offences

70. —(1) The Superintendent may punish any prisoner found after due inquiry to

be guilty of a minor prison offence as specified in section 72 by ordering him to underg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for a term not exceeding 7 days;

(b) forfeiture of remission not exceeding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c) reduction in grade or postponement of promotion for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d) a written warning;

(e) in the case of a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under section 52, extension of the hours to which the prisoner is required to remain indoors under the conditions of the order.

[8/2000]

(2) The Superintendent shall enter in a register to be open to the inspection of the Visiting Justices a record of the punishments imposed by him upon prisoners, showing, in respect of each prisoner punished, the name of the prisoner, the nature of his offence and the extent of his punishment.

[53

Punishment by Superintendent for aggravated prison offences

71. —(1) The Superintendent may punish any prisoner found after due inquiry to be guilty of an aggravated prison offence as specified in section 73 by ordering him to underg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orporal punishment not exceeding 12 strokes with a rattan;

(b)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for a term not exceeding 7 days;

(c) forfeiture of remission not exceeding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d) reduction in grade or postponement of promotion for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8/2000]

(2) Where the Superintendent has imposed any punishment upon any prisoner under subsection (1), the Superintendent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punishment imposed on the prisoner not later than 7 days after imposition of the punishment.

[8/2000]

(3) The Director may within 7 days of being notified by the Superintendent under subsection (2) —

(a) confirm any punishment imposed by the Superintendent under subsection (1); or

(b) vary any punishment imposed by a Superintendent under subsection (1), including enhancing, reducing or substituting the punishment imposed by the Superintendent or imposing such additional punishment that could have been awarded by the Superintendent under that subsection.

[8/2000]

(4) Where the Director imposes forfeiture of remission under subsection (3) (b), the forfeiture of remission shall not exceed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8/2000]

(5) Any punishment imposed by a Superintendent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be carried out until confirmed, or varied, by the Director under subsection (3).

[8/2000]

(6) The Superintendent shall enter in a register to be open to the inspection of the Visiting Justices a record of the punishments imposed by him and by the Director under subsection (3) upon prisoners, showing, in respect of each prisoner punished, the name of the prisoner, the nature of his offence and the extent of his punishment.

[54

[8/2000]

Minor prison offences

72.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to be minor prison offences:

(1) talking during working hours, or talking loudly, laughing or singing at any time after having been ordered by an officer of the prison to desist;

(2) quarrelling with any other prisoner;

(3) secreting any article whatever;

(4) showing disrespect to any officer or official visitor;

(5) common assault or taking part in any attack on any other prisoner;

(6) answering untruthfully any question put by an officer or an official visitor;

(7) holding any communication (in writing, by word of mouth, or otherwise) with any person in disobedience of the regulations of the prison;

(8) abetting the commission of any minor prison offence;

(9) omitting to assist in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by reporting any prison offence, or to give assistance to an officer when called on to do so;

(10) doing any act or using any language calculated to wound or offend the feelings and prejudices of any other prisoner;

(11) doing any act calculated to create any unnecessary alarm in the minds of the prisoners or officers;

(12) leaving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the gang to which he is attached, or the part of the prison in which he is confined;

(13) leaving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the ward, the yard, the place in file, the seat or berth assigned to him;

(14) loitering about the yards or lingering in the wards when these are open;

(15) omitting or refusing to march in file when moving about the prison or proceeding to or returning from work;

(16) visiting the toilets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or remaining there longer than is necessary;

(17) refusing to eat the food prescribed by the prison diet scale;

(18) eating or appropriating any food not assigned to him or taking from or adding to the portions assigned to other prisoners;

(19) removing without permission of an officer food from the cook-room or from the place where meals are served, or disobeying any order as to the issue and distribution of food and drink;

(20) wilfully destroying food or throwing it away without orders;

(21) introducing into food or drink anything likely to render it unpalatable or unwholesome;

(22) omitting or refusing to wear the clothing given to him, or exchanging any portion of it for the clothing of other prisoners, or losing, discarding, damaging or altering any part of it;

(23) removing, defacing or altering any distinctive number, mark or badge at-

tached to, or worn on, the clothing or person;

(24) omitting or refusing to keep the person clean, or disobeying any order regulating the cutting of hair;

(25) omitting or refusing to keep clothing, blankets, bedding, fetters, or utensils clean, or disobeying any order as to the arrangement or disposition of such articles;

(26) tampering in any way with prison locks, lamps or lights or other property with which he has no concern;

(27) stealing the prison clothing or any part of the prison kit of any other prisoner;

(28) committing a nuisance in any part of the prison;

(29) spitting on or otherwise soiling any floor, door, wall or other part of the prison building or any article in the prison;

(30) wilfully befouling the toilets, washing or bathing places;

(31) damaging the trees within the enclosure of the prison;

(32) omitting or refusing to take due care of all prison property entrusted to him;

(33) omitting or refusing to take due care of, or injuring, or misappropriating, the materials and implements entrusted to him for work;

(34) omitting to report at once any loss, breakage or damage which he may have caused to prison property or implements;

(35) manufacturing any article without the knowledge or permission of an officer;

(36) performing any portion of the task allotted to another prisoner, or obtaining the assistance of another prisoner in the performance of his own task;

(37) appropriating any portion of the task performed by another prisoner;

(38) mixing or adding any foreign substance to the materials issued for work;

(39) cursing or swearing, or using indecent, violent, threatening or insulting language;

(40) causing or omitting to assist in suppressing violence or insubordination of any kind;

(41) immoral, disorderly or indecent behaviour;

(42) omitting or refusing to help any prison officer in case of an attempted escape or of an attack upon such officer or upon another prisoner;

(43) disobeying any lawful order of an officer;

(44) idling or refusing to work or showing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 allotted task;

(45) defacing or damaging the walls, furniture or other property of the prison;

(46) malingering;

(47) refusing to undergo medical treatment;

(48) any breach by a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under section 52 of the conditions of the order other than conduct constituting an aggravated prison offence specified in section 73;

(49) any other act, conduct, disorder or neglect to the prejudice of good order or discipline though not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55

[8/2000]

Aggravated prison offences

73.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to be aggravated prison offences:

(1) mutiny;

(2) escape or attempt to escape;

(3) taking part in any assault or attack on any officer;

(4) aggravated or repeated assault on any other prisoner;

(5) wilful destruction of prison property;

(6) wilfully causing to himself any illness, injury or disability;

(7) wilfully making a false or groundless accusation or complaint against any officer or prisoner;

(8) repetition of any minor prison offence after having been twice punished for the same minor offence;

(9) failure by a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under section 52 to report to such person and at such times and place as may be specifi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order;

(10) where a prisoner subject to a home detention order under section 52 is re-

quir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order to allow the Superintendent or any person authorised by the Superintendent to enter his place of residence, or any other place or places designated under the order, the refusal by the prisoner to allow the entry, or obstructing or hindering the entry, of such person;

(11) any other act of gross misconduct or insubordination;

(12) abetting the commission of any aggravated prison offence.

[56

[8/2000]

Punishment by Visiting Justices

74. —(1) Where a prisoner is accused of any aggravated prison offence and the Superintendent is of the opinion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power of punishment which he possesses is inadequate, he shall forthwith report the matter in writing to the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2) The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shall, upon receipt of such report, attend at the prison without undue delay and investigate the charge, and may punish any prisoner whom after due inquiry upon oath he or they may find guilty of such offe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nishments:

(a) confinement in a punishment cell for a term not exceeding 30 days on such prescribed diet as he or they may think fit;

(b) corporal punishment not exceeding 24 strokes with a rattan;

(c) forfeiture of remission not exceeding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57

Prisoner may make his defence

75.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of hearing the charge and evidence against him, and making his defence.

[58

Detention after date of discharge

76. —(1) Any punishment lawfully imposed on a prisoner under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may be carried into effect notwithstanding that the carrying into effect thereof may necessitate the detention of the prisoner beyond the date at which he would otherwise be entitled to be discharged from prison.

(2) The period of deten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exceed 48 hours, such period to be calculated from the last hour of the day upon which the prisoner would otherwise be entitled to be discharged.

〔59

Corporal punishment

77. —(1) When any sentence of corporal punishment is passed under this Act upon any prisoner, he shall not be liable to more than one such sentence in respect of the act or acts, or omission or omissions, for which he has been sentenced.

(2) In no case shall a sentence of corporal punishment be passed upon a woman.

(3) In no case shall a sentence of corporal punishment in excess of 10 strokes with a light rattan be passed upon a juvenile.

(4) In no case shall a sentence of dietary or corporal punishment be inflicted upon any prisoner or juvenile until a medical certificate has been given to the effect that the prisoner or juvenile is in a fit condition of health to undergo the punishment.

〔60

Prosecution for offences

78.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exempt any prisoner from being proceeded against for any offence by the ordinary course of law, but no prisoner shall be punished twice for the same offence.

〔61

Appointment of Visiting Justices

79. —(1) The Minister shall appoint a Board of Justices of the Peace, to be called the Board of Visiting Justices, of which all Magistrates shall be ex-officio members.

[8/2000]

(2) Each member of the Board of Visiting Justices -

(a) shall hold offi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or for such other period as the Minister may determine;

(b) may from time to time be re-appointed or at any time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Minister; and

(c) may at any time resign from his office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Minister.

[8/2000]

(3) A Visiting Justice —

(a) may at any time visit any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and may inspect the several wards, cells, yards, solitary or punishment cells and other apartments or divisions of the prison, inspect and tes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prisoners' food, hear the complaints (if any) of the prisoners, and question any prisoner or prison officer;

(b) shall ascertain, so far as possible, whether the prison regulations are adhered to, and shall call the attention of the Superintendent to any irregularity that may be observed in the working of the prison or reformative training centre or in the treatment of any prisoner confined therein; and

(c) shall exercise and perform such other powers and duties as may be prescribed.

(4) The Board shall appoint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be, on rotation, a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of the prisons for each month of the year, and such Visiting Justice or Justices shall hear, try and dispose of such prison offences as to which a report under section 74 (1) has been made.

(5) Every Visiting Justic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have power to summon witnesses and to administer oaths.

(6) The Board shall in relation to persons detained in reformative training centres exercise such functions as may be required of it by any written law.

[62

Visits by Judges, Magistrates, etc.

80. Every Judg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having jurisdiction in the place where any prison is situate may —

(a) whenever he thinks fit, enter into and examine the condition of the prison and of the prisoners therein;

(b) question any prisoner or officer; and

(c) enter any observation he thinks fit to make in reference to the condition of the prison in a Visitors' Book to be kept for that purpose by the Superintendent, which book shall be duly produced to the Visiting Justices at their next ensuing visit.

[63

Scheme for prisoners to engage in employment

81. —(1) The Minister may introduce a scheme for prisoners who are considered suitable to take up gainful employment whilst they are serving their sentences.

(2) Any prisoner taking up employment under a schem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ny order made by any court, Judge, Magistrate or other public officer for the committal of such prisoner, be released daily to perform any work outside the limits of any prison.

(3) A prisoner who carries out work outside the limits of any prison pursuant to such a scheme shall be deemed to be in prison and in the lawful custody of the Superintendent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he same incidents as if he were actually in prison.

(4)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scheme of gainful employment for prisoners and such regulations may prescribe for all 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or matters:

(a)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prisoners are to be released to take up employment outside the limits of any prison;

(b)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ngagement of prisoners;

(c) the manner in which wages shall be paid to the prisoners; and

(d) the proportion of wages earned by prisoners under such scheme of employment which may be retained by the prisoners for the payment of food

and travelling expenses.

[64

[5/85]

Minister may amend Schedule

82. The Minister may, by order published in the Gazette, amend the Schedule.

[67

[8/2000]

Trial of offences

83. —(1) Except where by this Act it i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all offences under this Act shall be cognizable by a District Court or a Magistrate's Court.

(2) Any District Court or Magistrate's Court ma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p. 68), impose the full punishment prescribed by this Act in respect of any offence.

[66

Regulations

84. —(1) The Minister may make all such regulation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are necessary for the good management and government of prisons and reformative training centres or for carrying out the objects of this Act.

(2) In particular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such regulations may prescribe for all 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or matters:

(a) the conditions of service and the powers, conduct and duties of the officers of prisons;

(b) the medical examination, measuring, photographing and taking of fingerprint impressions or other records of persons confined in any prison or otherwise detained in custody, including detailed personal statistics and histories, and for requiring full and truthful answers to all questions put to such persons with the object of obtaining such statistics

and histories;

(c) the persons, if any, to whom such measurements, photographs, finger-print impressions or other records are to be sent or supplied;

(d) the employment, diets, classification, safe custody, separation, treatment and discipline of prisoners;

(e) the kind of labour to be exacted at the different stages of their imprisonment with the manner and place of exacting the same;

(f) the granting,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any law, of remission in respect of sentences of imprisonment and imprisonment in default of payment of fine to prisoners who duly comply with the regulations that apply to them and with the conditions on which such remissions are to be made;

(g) the disposal of the products of the labour of prisoners;

(h) the establishment of prisoners aid associations and societies and for the subsidising of their work and the utilising of thei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prisoners discharged on probation and convicted prisoners whose sentences have expired;

(i) the supply of money, food, clothing or means of travelling to prisoners on their discharge;

(j) the administration of the Prison Officers Reward Fund;

(k) the proceedings and visits of the Visiting Justices;

(l) the establishment of an advisory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advising the Director on the suitability of a prisoner to be released for home detention under Part VI and its constitution, functions and procedures;

(m) any other matter which under this Act is required or permitted to be prescribed.

[8/2000]

(3) All regulations mad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resented to Parliament as soon as possible after publication in the Gazette.

(4) If a resolution is passed pursuant to a motion notice whereof has been given for a sitting day not later than the first available sitting day of Parliament next after the expiry of 3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regulations are so presented

annulling the regulations or any part thereof as from a specified date, the regulations or such part thereof, as the case may be, shall thereupon become void as from that date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validity of anything previously done thereunder or to the making of new regulations.

[65

SCHEDULE

Sections 53 (1) (b) and 82

DISQUALIFICATION FROM BEING RELEASED FOR HOME DETENTION UNDER SECTION 52

A prisoner is disqualified from being released for home detention if the prisoner —

(1) has, in respect of the same sentence of imprisonment, previously been released for home detention under section 52 and the order for his release under that section has expired or has been revoked;
(2) is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life;
(3) has been convicted of a capital offence and whose death penalty has been commuted to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life;
(4) is being detained under the President's pleasure under section 213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p. 68);
(5) is liable to be removed from Singapore on completion of his sentence of imprisonment;
(6) is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section 5 of the Misuse of Drugs Act (Cap. 185);
(7) is convicted of an offence punishable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Penal Code (Cap. 224):
(a) section 147 (Rioting);
(b) section 148 (Rioting, armed with a deadly weapon);
(c) section 304 (Culpable homicide not amounting to murder);
(d) section 307 (Attempt to murder);

(e) section 325 (Voluntarily causing grievous hurt);

(f) section 326 (Voluntarily causing grievous hurt by dangerous weapons or means);

(g) section 354 (Outraging modesty);

(h) section 354A (Outraging modesty in certain circumstances);

(i) section 363 (Kidnapping);

(j) section 364 (Kidnapping or abducting in order to murder);

(k) section 376 (Rape);

(l) section 376B (Incest committed by men);

(m) section 376C (Incest committed by women);

(n) section 377 (Unnatural offences);

(o) section 395 (Gang-robbery);

(p) section 400 (Belonging to gang-robbers); or

(8) is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section 224 of the Penal Code (Cap. 224) for escaping or attempting to escape from any custody in which he is lawfully detained for an offence of which he has been charged or convicted.

[8/2000]

빈 면

IX. 日本 監獄法

目 次

公布：明治４１年3月２８日法律第２８号
施行：明治４１年１０月1日
改正：昭和２２年3月２８日法律第２０号
施行：昭和２２年5月3日
改正：昭和２２年4月１６日法律第６１号
施行：昭和２２年5月3日
改正：昭和２２年１２月２２日法律第２２３号
施行：昭和２３年1月1日
改正：昭和２４年5月３１日法律第１４３号
施行：昭和２４年7月1日
改正：昭和２７年7月３１日法律第２８６号
施行：昭和２７年9月２５日
改正：昭和２８年7月２１日法律第６８号
施行：昭和２８年7月２２日
改正：平成１０年１０月2日法律第１１４号
施行：平成１１年4月1日
改正：平成１１年１２月２２日法律第１６０号
施行：平成１３年1月6日

第一章　总则(第一条－第十条)
第二章　收监(第十一条－第十四条)
第三章　拘禁(第十五条－第十八条)
第四章　戒护(第十九条－第二十三条)
第五章　作业(第二十四条－第二十八条)

第六章　教诲及ヒ教育(第二十九条－第三十一条)
第七章　给养(第三十二条－第三十五条)
第八章　卫生及ヒ医疗(第三十六条－第四十四条)
第九章　接见及ヒ信书(第四十五条－第五十条)
第十章　领置(第五十一条－第五十七条)
第十一章　赏罚(第五十八条－第六十二条)
第十二章　释放(第六十三条－第七十条)
第十三章　死亡(第七十一条－第七十五条)

第一章　总则

第一条　监狱ハ之ヲ左ノ四种トス

一　惩役监　惩役ニ处セラレ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二　禁锢监　禁锢ニ处セラレ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三　拘留场　拘留ニ处セラレ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四　拘置监　刑事被告人、拘禁许可状、仮拘禁许可状又ハ拘禁状ニ依リ监狱ニ拘禁シタル者、引致状ニ依リ监狱ニ留置シタル者及ヒ死刑ノ言渡ヲ受ケタル者ヲ拘禁スル所トス

2　拘置监ニハ惩役、禁锢又ハ拘留ニ处セラレタル者ヲ一时拘禁スルコトヲ得

3　警察官署ニ附属スル留置场ハ之ヲ监狱ニ代用スルコトヲ得但惩役又ハ禁锢ニ处セラレタル者ヲ一月以上継续シテ拘禁スルコトヲ得ス

第二条　二月以上ノ惩役ニ处セラレタル十八岁未满ノ者ハ特ニ设ケタル监狱又ハ监狱内ニ於テ特ニ分界ヲ设ケタル场所ニ之ヲ拘禁ス

2　前项ノ规定ニ依ル者ハ满二十岁ニ至ルマテ又满二十岁ニ至リタル後三月内ニ刑期终了ス可キ者ハ其残刑期间仍ホ継续シテ之ヲ拘禁スルコトヲ得

3　心身发育ノ状况ニ因リ必要ト认ムル者ハ前二项ノ适用ニ付キ年龄ニ拘ハラサルコトヲ得

第三条　监狱ニ男监及ヒ女监ヲ设ケ之ヲ分隔ス

2　惩役监、禁锢监、拘留场及ヒ拘置监ノ同一区画内ニ在ルモノハ之ヲ分界ス

第四条　法务大臣ハ少クトモ二年毎ニ一回官吏ヲシテ監狱ヲ巡阅セシム可シ
　2　判事及ヒ检察官ハ监狱ヲ巡视スルコトヲ得

第五条　监狱ノ参观ヲ请フ者アルトキハ学术ノ研究其他正当ノ理由アリト认ムル场合ニ限リ法务省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许スコトヲ得

第六条　本法ニ依リ没入シ又ハ国库ニ归属シタル物ハ之ヲ监狱慈惠ノ用ニ充ツ

第七条　在监者监狱ノ处置ニ对シ不服アルトキハ法务省令ノ定ムル所ニ依リ法务大臣又ハ巡阅官吏ニ情愿ヲ为スコトヲ得

第八条　劳役场及ビ监置场ハ之ヲ监狱ニ附设ス
　2　监置ノ执行ヲ为スニ当リ最寄ノ地ニ监置场ナキ场合又ハ监置场アルモ其收容能力十分ナラザル场合ニ於テハ拘留场(第一条第三项ノ规定ニ依リ代用セラルルモノヲ含ム)ノ特ニ区别シタル场所ヲ监置场ニ充ツルコトヲ得
　3　前五条ノ规定ハ之ヲ劳役场及ビ监置场ニ准用ス

第九条　本法中别段ノ规定アルモノヲ除ク外刑事被告人ニ适用ス可キ规定ハ拘禁许可状、仮拘禁许可状又ハ拘禁状ニ依リ监狱ニ拘禁シタル者、引致状ニ依リ监狱ニ留置シタル者、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及ヒ死刑ノ言渡ヲ受ケタル者ニ之ヲ准用シ惩役囚ニ适用ス可キ规定ハ劳役场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ニ之ヲ准用ス但第三十五条ノ规定ハ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ニ之ヲ准用セズ

第十条　本法ハ陆海军ニ属スル监狱ニ之ヲ适用セス

第二章　收监

第十一条　新ニ入监スル者アルトキハ令状又ハ判决书及ヒ执行指挥书其他适法ノ文书ヲ查阅シタル後入监セシム可シ

第十二条　新ニ入监スル妇女其子ヲ携带センコトヲ请フトキハ必要ト认ムル场合ニ限リ满一岁ニ至ルマテ之ヲ许スコトヲ得

2 監狱ニ於テ分娩シタル子ニ付テモ亦前项ノ例ニ依ル

第十三条 新ニ入监スル者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疗に关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十四号)ニ定ムル感染症指定医疗机关ヘノ入院ヲ要スル类型ノ感染症ニ罹リタルモノナルトキハ之ヲ入监セシメサルコトヲ得

第十四条 新ニ入监スル者アルトキハ其身体及ヒ衣类ノ检查ヲ为ス可シ在监中ノ者ニ付キ必要ト认ムルトキ亦同シ

第三章 拘禁

第十五条 在监者ハ心身ノ状况ニ因リ不适当ト认ムルモノヲ除ク外之ヲ独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

第十六条 杂居拘禁ニ在テハ在监者ノ罪质、性格、犯数、年龄等ヲ斟酌シテ其监房ヲ别异ス

2 第一条第二项及ヒ第三项ノ场合ニ於テハ在监者ノ种类ニ依リ其监房ヲ别异ス

3 十八岁未满ノ者ハ第二条第二项ノ场合ヲ除ク外十八岁以上ノ者ト其监房ヲ别异ス但心身发育ノ状况ニ因リ其必要ナシト认ム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4 前三项ノ规定ハ工场ニ於ケル就业ノ场合ニ之ヲ准用ス

第十七条 刑事被告人ニシテ被告事件ノ相关连スルモノハ互ニ其监房ヲ别异シ监房外ニ於テモ其交通ヲ遮断ス

第十八条 惩役监、禁锢监、拘留场、拘置监、劳役场及ビ监置场ノ同一区画内ニ在ル场合ニ於テハ同性者ニ付キ同一ノ病监又ハ教诲堂ヲ使用スルコトヲ得

2 前项ノ场合ニ於テハ在监者ノ种类ニ因リ监房若クハ座席又ハ诊察若クハ教诲ノ时间ヲ异ニス

3 病监ニ在テハ第二条及ヒ第十六条ヲ适用セサルコトヲ得

第四章　戒护

第十九条　在监者逃走、暴行若クハ自杀ノ虞アルトキ又ハ监外ニ在ルトキハ戒具ヲ使用スルコトヲ得

2　戒具ノ种类ハ法务省令ヲ以テ之ヲ定ム

第二十条　法令ニ依リ监狱官吏ノ携带スル剑又ハ铳ハ左ノ各号ノ一ニ该ル场合ニ限リ在监者ニ对シ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

一　人ノ身体ニ对シテ危险ナル暴行ヲ为シ又ハ为ス可キ胁迫ヲ加フルトキ

二　危险ナル暴行ノ用ニ供シ得可キ物ヲ所持シ其放弃ヲ肯セサルトキ

三　逃走ノ目的ヲ以テ多众骚扰スルトキ

四　逃走ヲ企テタル者暴行ヲ为シテ捕拿ヲ免カレントシ又ハ制止ニ从ハスシテ逃走セントスルトキ

第二十一条　天灾事变ニ际シ必要ト认ムルトキハ在监者ヲシテ应急ノ用务ニ就カシムルコトヲ得

2　前项ノ用务ニ就キタル者ニハ第二十八条ノ规定ヲ准用ス

第二十二条　天灾事变ニ际シ监狱内ニ於テ避难ノ手段ナシト认ムルトキハ在监者ヲ他所ニ护送ス可シ若シ护送スルノ遑ナキトキハ一时之ヲ解放スルコトヲ得

2　解放セラレタル者ハ监狱又ハ警察官署ニ出头ス可シ解放後二十四时间内ニ出头セサルトキハ刑法第九十七条ニ依リ处断ス

第二十三条　在监者逃走シタルトキハ监狱官吏ハ逃走後四十八时间内ニ限リ之ヲ逮捕スルコトヲ得

2　前项ノ规定ハ刑事诉讼法第六十条ノ适用ヲ妨ケス

第五章　作业

第二十四条　作业ハ卫生、经济及ヒ在监者ノ刑期、健康、技能、职业、将来ノ生计等ヲ斟酌シテ之ヲ课ス

2 十八岁未满ノ者ニ课ス可キ作业ニ付テハ前项ノ外特ニ教养ニ关スル事项ヲ斟酌ス

第二十五条 大祭祝日、一月一日二日及ヒ十二月三十一日ニハ就业ヲ免ス

2 父母ノ讣ニ接シタル者ハ三日间其就业ヲ免ス

3 法务大臣ハ必要ト认ムルトキハ临时就业ヲ免スルコトヲ得

4 炊事、洒扫、看护其他监狱ノ经理ニ关シ必要ナル作业ニ就ク者ニ付テハ就业ヲ免セサルコトヲ得

第二十六条 刑事被告人、拘留囚又ハ禁锢囚作业ニ就カンコトヲ请フトキハ其选择スルモノニ就キ之ヲ许スコトヲ得

第二十七条 作业ノ收入ハ总テ国库ノ所得トス

2 在监者ニシテ作业ニ就クモノニハ法务省令ノ定ムル所ニ依リ作业赏与金ヲ给スルコトヲ得

3 作业赏与金ハ行状、作业ノ成绩等ヲ斟酌シテ其额ヲ定ム

第二十八条 在监者就业ニ因リ创伤ヲ受ケ又ハ疾病ニ罹リ之カ为メニ死亡シ又ハ业务ヲ营ミ难キニ至リタルトキハ情状ニ因リ手当金ヲ给スルコトヲ得

2 前项ノ手当金ハ释放ノ际本人ニ之ヲ给シ死亡ノ场合ニ於テハ死亡者ノ父、母、配偶者又ハ子ニ之ヲ给ス

第六章 教诲及ヒ教育

第二十九条 受刑者ニハ教诲ヲ施ス可シ其他ノ在监者教诲ヲ请フトキハ之ヲ许スコトヲ得

第三十条 十八岁未满ノ受刑者ニハ教育ヲ施ス可シ其他ノ受刑者ニシテ特ニ必要アリト认ムルモノニハ年龄ニ拘ハラス教育ヲ施スコトヲ得

第三十一条 在监者文书、图画ノ阅读ヲ请フトキハ之ヲ许ス

2 文书、图画ノ阅读ニ关スル制限ハ法务省令ヲ以テ之ヲ定ム

第七章　给养

第三十二条　受刑者及ビ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ニハ一定ノ衣类卧具ヲ著用セシム但拘留囚及ビ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ニハ自衣ノ著用ヲ许シ其他ノ者ニハ衬衣ノ自弁ヲ许スコトヲ得

第三十三条　刑事被告人及ヒ劳役场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ノ衣类卧具ハ自弁トシ其自弁スルコト能ハサル者ニハ之ヲ贷与ス

2　自弁ノ衣类卧具ニ关スル制限ハ法务省令ヲ以テ之ヲ定ム

第三十四条　在监者ニハ其体质、健康、年龄、作业等ヲ斟酌シテ必要ナル粮食及ヒ饮料ヲ给ス

第三十五条　刑事被告人ニハ粮食ノ自弁ヲ许スコトヲ得

第八章　卫生及ヒ医疗

第三十六条　在监者ノ头发须髯ハ之ヲ翦剃セシムルコトヲ得但刑事被告人ノ头发须髯ハ卫生上特ニ必要アリト认ムル场合ヲ除ク外其意思ニ反シテ之ヲ翦剃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三十七条　在监者ハ其拘禁セラルル监房ノ清洁ヲ保ツニ必要ナル用务ニ服ス可シ

第三十八条　在监者ニハ其健康ヲ保ツニ必要ナル运动ヲ为サシム

第三十九条　在监者ニハ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对する医疗に关する法律ニ定ムル感染症ノ予防ニ必要ト认ムル医术ヲ行フコトヲ得

第四十条　在监者疾病ニ罹リタルトキハ医师ヲシテ治疗セシメ必要アルトキハ之ヲ病监ニ收容ス

第四十一条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对する医疗に关する法律ニ定ムル感染症

指定医疗机关ヘノ入院ヲ要スル类型ノ感染症ニ罹リタル者ハ严ニ之ヲ离隔シ健康者及ヒ他ノ病者ニ接近セシムルコトヲ得ス但惩役囚ヲシテ看护セシムルハ此限ニ在ラス

第四十二条　病者医师ヲ指定シ自费ヲ以テ治疗ヲ补助セシメンコトヲ请フトキハ情状ニ因リ之ヲ许スコトヲ得

第四十三条　精神病、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对する医疗に关する法律ニ定ムル感染症其他ノ疾病ニ罹リ监狱ニ在テ适当ノ治疗ヲ施スコト能ハスト认ムル病者ハ情状ニ因リ仮ニ之ヲ病院ニ移送スルコトヲ得

2　前项ニ依リ病院ニ移送シタル者ハ之ヲ在监者ト看做ス

第四十四条　妊妇、产妇、老衰者及ヒ不具者ハ之ヲ病者ニ准スルコトヲ得

第九章　接见及ヒ信书

第四十五条　在监者ニ接见センコトヲ请フ者アルトキハ之ヲ许ス

2　受刑者及ビ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ニハ其亲族ニ非サル者ト接见ヲ为サシムルコトヲ得ス但特ニ必要アリト认ムル场合ハ此限ニ在ラス

第四十六条　在监者ニハ信书ヲ发シ又ハ之ヲ受クルコトヲ许ス

2　受刑者及ビ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ニハ其亲族ニ非サル者ト信书ノ发受ヲ为サシムルコトヲ得ス但特ニ必要アリト认ムル场合ハ此限ニ在ラス

第四十七条　受刑者及ビ监置ニ处セラレタル者ニ系ル信书ニシテ不适当ト认ムルモノハ其发受ヲ许サス

2　前项ニ依リ发受ヲ许ササル信书ハ二年ヲ经过シタル後之ヲ废弃スルコトヲ得

第四十八条　裁判所其他ノ公务所ヨリ在监者ニ宛テタル文书ハ披阅シテ之ヲ本人ニ交付ス

第四十九条　在监者ニ交付シタル信书及ヒ前条ノ文书ハ本人阅读ノ後之ヲ领置ス

第五十条　接见ノ立会、信书ノ检阅其他接见及ヒ信书ニ关スル制限ハ法务省令ヲ以テ之ヲ定ム

第十章　领置

第五十一条　在监者ノ携有スル物ハ点检シテ之ヲ领置ス

2　保存ノ価值ナク又ハ保存ニ不适当ト认ムル物ハ其领置ヲ为サス又ハ之ヲ解クコトヲ得

3　领置ヲ为サス又ハ之ヲ解キタル物ニ付キ在监者相当ノ处分ヲ为ササルトキハ之ヲ废弃スルコトヲ得

第五十二条　在监者领置物ヲ以テ其父、母、配偶者又ハ子ノ扶助其他正当ノ用途ニ充テンコトヲ请フトキハ情状ニ因リ之ヲ许スコトヲ得

第五十三条　在监者ニ差入ヲ为サンコトヲ请フ者アルトキハ法务省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许スコトヲ得

2　在监者ニ宛テ送致シ来リタル物ニシテ其差出人ノ氏名若クハ居所不明ナルトキ、其差入ヲ许ス可カラスト认ムルトキ又ハ在监者ニ於テ其受领ヲ拒ミタルトキハ之ヲ没入又ハ废弃スルコトヲ得

第五十四条　在监者ノ私ニ所持スル物ハ之ヲ没入又ハ废弃スルコトヲ得

第五十五条　领置物ハ释放ノ际之ヲ交付ス

第五十六条　死亡者ノ遗留物ハ请求ニ因リ相续人又ハ亲族ニ之ヲ交付ス

第五十七条　死亡者ノ遗留物ハ死亡ノ日ヨリ一年内ニ前条ニ揭ケタル者ノ请求ナキトキハ国库ニ归属ス

2　逃走者ノ遗留物ニシテ逃走ノ日ヨリ一年内ニ居所分明セサルトキ亦同シ

第十一章 赏罚

第五十八条 受刑者改悛ノ状アルトキハ赏遇ヲ为スコトヲ得

2 赏遇ノ种类及ヒ方法ハ法务省令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九条 在监者纪律ニ违ヒタルトキハ惩罚ニ处ス

第六十条 惩罚ハ左ノ如シ

一 叱责

二 赏遇ノ三月以内ノ停止

三 赏遇ノ废止

四 文书、図画阅读ノ三月以内ノ禁止

五 请愿作业ノ十日以内ノ停止

六 自弁ニ系ル衣类卧具著用ノ十五日以内ノ停止

七 粮食自弁ノ十五日以内ノ停止

八 运动ノ五日以内ノ停止

九 作业赏与金计算高ノ一部又ハ全部减削

十 七日以内ノ减食

十一 二月以内ノ轻屏禁

十二 七日以内ノ重屏禁

2 屏禁ハ受罚者ヲ罚室内ニ昼夜屏居セシメ情状ニ因リ就业セシメサルコトヲ得重屏禁ニ在テハ仍ホ罚室ヲ暗クシ卧具ヲ禁ス

3 第一项各号ノ惩罚ハ之ヲ并科スルコトヲ得

第六十一条 前条第一项第十号ノ惩罚ハ刑事被告人及ヒ十八岁未满ノ在监者ニ之ヲ科セス

第六十二条 惩罚ニ处セラレタル者疾病其他特别ノ事由アルトキハ其惩罚ノ执行ヲ停止スルコトヲ得

2 惩罚ニ处セラレタル者改悛ノ状著シキトキハ其惩罚ヲ免除スルコトヲ得

第十二章　释放

第六十三条　在监者ノ释放ハ恩赦、职权アル者ノ命令又ハ刑期ノ终了ニ因リ关系文书ヲ查阅シテ其手续ヲ为ス可シ

第六十四条　恩赦ヲ受ケ又ハ仮出狱若クハ仮出场ヲ许サレタル者ハ其特赦状、减刑状若クハ刑ノ执行ノ免除状又ハ许可书ノ监狱ニ达シタル後二十四时间内ニ之ヲ释放ス

第六十五条　前条ノ场合ヲ除ク外命令ニ因リ释放ヲ为ス可キ者ハ命令书ノ监狱ニ达シタル後十时间内ニ之ヲ释放ス

第六十六条　仮出狱又ハ仮出场ヲ许サレタル者ヲ释放スルトキハ之ニ证票ヲ交付ス

第六十七条　削除

第六十八条　满期ノ者ハ其刑期终了ノ翌日午後六时マテニ之ヲ释放ス

第六十九条　释放セラル可キ者重キ疾病ニ罹リ监狱ニ於テ医疗中ナルトキハ其请求ニ因リ仍ホ在监セシムルコトヲ得

第七十条　释放セラル可キ者归住旅费若クハ相当ノ衣类ヲ有セサルトキ又ハ监狱行政ノ便宜ニ因リ移监セシメタルカ为メ归住旅费ノ增加ヲ要スルニ至リタルトキハ衣类又ハ旅费ヲ给与スルコトヲ得

第十三章　死亡

第七十一条　死刑ノ执行ハ监狱内ノ刑场ニ於テ之ヲ为ス

2　大祭祝日、一月一日二日及ヒ十二月三十一日ニハ死刑ヲ执行セス

第七十二条　死刑ヲ执行スルトキハ绞首ノ後死相ヲ检シ仍ホ五分时ヲ经ルニ非サレハ绞

縄ヲ解クコトヲ得ス

第七十三条　在監者死亡シタルトキハ之ヲ仮葬ス

2　死体ハ必要ト认ムルトキハ之ヲ火葬スルコトヲ得

3　死体又ハ遺骨ハ仮葬後二年ヲ経テ之ヲ合葬スルコトヲ得

第七十四条　死亡者ノ亲族故旧ニシテ死体又ハ遺骨ヲ请フ者アルトキハ何时ニテモ之ヲ交付スルコトヲ得但合葬後ハ此限ニ在ラス

第七十五条　受刑者ノ死体ハ法务省令ノ定ムル所ニ依リ解剖ノ为メ病院、学校又ハ其他ノ公务所ニ之ヲ送付スルコトヲ得

附　則

公布：明治４１年3月２８日法律第２８号

施行：明治４１年１０月1日

① 本法ハ刑法施行ノ日ヨリ之ヲ施行ス

② 监狱则ハ废之ヲ止ス但惩治人ニ关スル规定ハ当分ノ内仍ホ其效力ヲ有ス

附　則(昭和二二年三月二八日法律第二十号)

この法律は、1947年 5月 3日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　則(昭和二二年四月一六日法律第六一号)

この法律は、1947年 5月3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　則(昭和二二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二二三号)

この法律は、1948年一月一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　則(昭和二四年五月三一日法律第一四三号)

この法律は、1949年 7월 1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　則(昭和二七年七月三一日法律第二八六号)

この法律の施行期日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十日をこえない范围内で、政令で定める。

附　則(昭和二八年七月二一日法律第六八号)

1　この法律は、1953年 7月2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一0年一0月二日法律第一一四号)
(施行期日)

この法律は、1999년4月1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0号)
(施行期日)

この法律(第二条及び第三条を除外く)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빈 면

X. 日本監獄法施行規則

【法令番号 】明治四十一年六月十六日司法省令第十八号
【施行年月日】明治四十一年十月一日
○1 本則ハ監獄法施行ノ日ヨリ之ヲ施行ス
○2 監獄則施行細則ハ之ヲ廢止ス但懲治人ニ關スル規定ハ当分ノ繼續仍ホ其效力ヲ有ス

附則(大正一0年九月一日司法省令第一九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大正一一年六月二日司法省令第一三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大正一一年一0月一四日司法省令第二四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大正一三年三月八日司法省令第四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三年四月九日司法省令第四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　則　(昭和五年五月三日司法省令第七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六年四月三0日司法省令第九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二一年一一月九日司法省令第九七호)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四年六月二三日法务府令第二二호)

この府令は、少年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施行の日(昭和二十四年五月三十日)から適用する。

附則(昭和二五年四月一五日法务府令第三二호)

この府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二五年九月一二日法务府令第一一一호)

この府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昭和二十五年九月一日から適用する。

附則(昭和二七年九月二四日法务省令第二八호)

この省令は、昭和二十七年九月二十五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0年二月一日法务省令第二四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九年三月三一日法務省令第四七号)

この省令は、昭和三十九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一年一一月一日法務省令第四七号)

(施行期日)
第一條　この省令は、昭和四十二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獨居拘禁の期間の改正に伴う經過措置)
第二條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第二十七條規定は、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獨居拘禁中の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において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第二十七條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る拘禁の期間が六月を越えている者については、その拘禁が施行日以前六月から開始されたものとみなし、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期間の更新を受けて拘禁されている者で施行日において更新後の拘禁(二回以上更新を受けて拘禁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最後の更新後の拘禁。以下同じ。)の期間が三月を越え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更新後の拘禁が施行日以前三月から開始されたものとみなす。

附則(昭和四五年四月一七日法務省令第一二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七年六月三日法務省令第四八号)

この省令は、昭和四十七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九年六月二八日法務省令第五二号)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昭和四十九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經過措置)

2　この省令の施行前に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監獄法施行規則第百五十六條各號に該當する行をした者にし、この省令の施行後に賞金を給するときは、なお前の例による。

附則(昭和五二年四月一日法務省令第二四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三年八月七日法務省令第二二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六年八月五日法務省令第三七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七年三月三日法務省令第二五号)

この省令は、平成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八年三月一日法務省令第一一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一年三月三日法務省令第二四号)

この省令は、平成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二年九月一八日法務省令第三五号)

この省令は、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八號)の施行の日(平

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三年三月二二日法務省令第三0号)

この省令は、平成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四年二月八日法務省令第六号)

この省令は、平成十四年三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四年八月一日法務省令第四八号)　抄

(施行期日)

1　この規則は、平成十五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五年三月一七日法務省令第一二号)

この省令は、平成十五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第一章　総則

第一條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八号)第十七條の二第一項及ヒ少年院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九号)第十七條の二ノ規定ニ依リ拘置監ニ仮ニ收容シタル者ノ取扱ニ付テハ少年法及ヒ少年院法ノ趣旨ニ反セサル限リ刑事被告人ニ適用スヘキ規定ヲ準用ス

第二條　削除

第三條　監獄ノ參觀ヲ請フ者アルトキハ所長(刑務所、少年刑務所及ヒ拘置所ノ長ヲ謂フ以下同ジ)ハ其氏名、職業、住所、年齢及ヒ參觀ノ目的ヲ調査シ許可ヲ与ヘタル者ニハ參觀者心得事項ヲ告知ス可シ

第四條　法務大臣ニ情願ヲ爲スニハ其趣旨ヲ記載シタル書面ヲ差出スコトヲ要ス

2　情願書ハ本人ヲシテ之ヲ封緘セシメ監獄官吏ハ之ヲ披閲スルコトヲ得ス

3　情願書ヲ差出シ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之ヲ法務大臣ニ進達ス可シ

第五條　巡閲官吏ニハ書面又ハ口頭ヲ以テ情願ヲ爲スコトヲ得

2　巡閲官吏ニ情願ヲ爲サンコトヲ予告スル者アルトキハ所長ハ其者ノ氏名ヲ情願簿ニ記載シ置ク可シ

3　前條第二項ノ規定ハ本條ノ情願書ニ之ヲ適用ス

第六條　巡閲官吏情願ヲ聽クニハ必要アル場合ヲ除ク外監獄官吏ヲシテ之ニ立會ハシム可カラス

第七條　巡閲官吏情願ヲ審査シタルトキハ自ラ裁決ヲ爲シ又ハ法務大臣ノ裁決ヲ乞フコトヲ得

2　巡閲官吏自ラ裁決ヲ爲シタルトキハ情願簿ニ其要旨ヲ記載ス可シ

第八條　情願ニ對スル裁決ハ所長速ニ之ヲ本人ニ告知ス可シ

第九條　所長ハ監獄ノ處置又ハ一身ノ事情ニ付キ申立ヲ爲サンコトヲ請フ在監者ニ面接ス可シ

2　前項ノ申立ヲ爲サンコトヲ予告スル者アルトキハ其氏名ヲ面會簿ニ記載シ置キ其順序ニ從ヒ面接シタル後本人ニ開示シタル意見ノ要旨ヲ面會簿ニ記載ス可シ

第十條　本則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外刑事被告人ニ適用ス可キ規定ハ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シ懲役受刑者ニ適用ス可キ規定ハ勞役場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ニ之ヲ準用ス

第二章　收監

第十一條　新ニ入監スル者ヲ領收シタルトキハ入監者ノ氏名、領收ノ年月日時及ヒ領收官吏ノ氏名ヲ記載シタル領收書ヲ護送者ニ交付ス可シ

第十二條　新ニ入監スル婦女ニ子ノ携帯ヲ許ササル場合ニ於テ相当ノ引取人ナキトキハ都道府縣知事ニ通報シ其指定スル兒童福祉施設又ハ里親ニ其子ヲ引渡ス可シ

2　携帯ヲ許シタル子カ滿一歳ニ達シ又ハ他ニ在監ヲ許ス可カラサル事情アル場合ニ於テ相当ノ引取人ナキトキ亦同シ

第十三條　新ニ入監スル者アルトキハ監獄ノ医師其健康ヲ診査ス可シ

第十四條 監獄ニ於テ隔離病監其他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對する醫療に關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十四號）ニ定ムル感染症ニ罹リタル者ノ收容ニ適當ノ設備アルトキハ同法 ニ定ムル感染症指定醫療機關ヘノ入院ヲ要スル類型ノ感染症ニ罹リタル者ト雖モ之ヲ入監セシム可

第十五條　監獄法第十三條ニ依リ入監セシメサル場合ニ於テハ直ニ其旨ヲ入監ヲ指揮シタル官廳及ヒ監獄所在地ノ市町村長（特別區ノ存スル區域及ビ地域保健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一号）第五條ノ規定ニ基ク政令ヲ以テ定メタル市ニ於テハ保健所長以下同ジ）ニ通報シ仍ホ其事情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第十六條　新ニ入監スル者ニ付キ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四百八十條及ヒ第四百八十二條各号ニ定メタル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之ヲ入監セシメタル上直ニ其旨ヲ檢察官ニ通報ス可シ

2　前項ノ規定ハ在監中ノ者ニ之ヲ準用ス

3　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ニ付キ法廷等の秩序維持に關する法律（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八十六号）第七條第八項ニ定メタル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直ニ其旨ヲ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十七條　新ニ入監スル者アルトキハ疾病其他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外入浴ヲ爲サシム可シ

2　婦女ノ入浴ニハ女子ノ監獄官吏之ニ立會ヒ婦女ノ身体及ヒ衣類ノ檢査ハ女子ノ監獄官吏之ヲ爲ス可シ

3　前項ノ規定ハ在監中ノ婦女ノ入浴及ヒ身体衣類ノ檢査ニ之ヲ準用ス

第十八條　入監者ニハ番号ヲ付ス可シ

第十九條　所長ハ在監者ノ遵守スヘキ事項並ニ刑期ノ起算及ヒ終了ノ日ヲ入監者ニ告知

ス可シ

2 所長ハ入監者ノ身上ニ關スル事情ヲ調査シ其結果ヲ身上調査表ニ記載ス可シ

3 前項ノ調査ヲ爲スニ付キ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公務所、公私ノ団体又ハ本人ニ緣故アル者ニ照會ヲ爲ス可シ

第二十條 所長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入監者ノ撮影及ビ指紋ノ採取ヲ爲ス可シ在監中ノ者ニ付キ亦同シ

第二十一條 新ニ入監シタル者ハ疾病其他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外三日以內之ヲ獨居拘禁ニ付ス可シ

2 前項ニ依リ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懲役受刑者ニハ作業ヲ課セザルコトヲ得

第二十二條 入監者ノ身分帳簿、在監人人名簿及放免曆簿ハ收監後三日以內ニ整理シ必要ナル事項ヲ記載ス可シ

2 在監者遵守事項ハ册子トシテ之ヲ監房內ニ備へ置ク可シ

第三章 拘禁

第二十三條 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ハ他ノ在監者ト交通ヲ遮斷シ召喚、運動、入浴、接見、敎誨、診療又ハ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外常ニ一房ノ內ニ獨居セシム可シ

第二十四條 刑事被告人ハ成ル可ク之ヲ獨居拘禁ニ付ス可シ

第二十五條 受刑者ハ本則ニ於テ特ニ規定アル場合ヲ除ク外左ノ順序ニ從ヒ之ヲ獨居拘禁ニ付ス可シ

一 余罪又ハ刑期限內ノ犯罪ニ因リ審問中ニ在ル者

二 刑期二月未滿ノ者

三 分類調查ノ爲必要ト認ムル者

2 獨居監房ニ殘余アルトキハ前項ニ該当セサル受刑者ト雖モ之ヲ獨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

第二十六條 在監者ノ精神又ハ身体ニ害アリト認ムルトキハ在監者ヲ獨居拘禁ニ付スル

コトヲ得ス

第二十七條　獨房拘禁ノ期間ハ六月ヲ超ユルコトヲ得ス但特ニ継續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爾後三月毎ニ其期間ヲ更新スルコトヲ妨ケス

2　二十歳未滿ノ者ハ特ニ必要アリト認メタル場合ヲ除ク外三月以上継續シテ之ヲ獨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ス

第二十八條　所長及ヒ監獄ノ医師ハ少クトモ三十日毎ニ一回、其他ノ監獄官吏ハ毎日數次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在監者ヲ巡視ス可シ

第二十九條　所長、監獄ノ医師及ヒ女子ノ監獄官吏ヲ除ク外監獄官吏ハ單獨ニテ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婦女ヲ巡視スルコトヲ得ス夜間獨居監房ニ拘禁セラレタル婦女ノ巡視ニ付キ亦同シ

第三十條　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在監者ヲ巡視シタル監獄官吏ハ其視察シタル事項ヲ所長ニ報告ス可シ

第三十一條　第二十五條第一項各号ニ揭ケタル受刑者ニシテ監房不足ノ爲メ獨居拘禁ニ付スルコト能ハサルモノ及ヒ獨居拘禁ノ期間滿了後必要アリト認ムルモノハ之ヲ夜間獨居監房ニ拘禁ス可シ

2　第二十五條第二項ノ規定ハ夜間獨居監房ニ之ヲ準用ス

第三十二條　夜間獨居監房ニ拘禁セラレタル者作業ニ就カサルトキハ晝間ト雖モ仍ホ在房セシム可シ

第三十三條　勞役場留置ノ言渡ヲ受ケタル者ト受刑者トハ之ヲ同一ノ監房又ハ工場ニ雜居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三十四條　病者又ハ不具者ト健康者トハ之ヲ同一監房ニ拘禁スルコトヲ得ス但看護ニ從事スルモノハ此限ニ在ラス

第三十五條　雜居監房ニハ三人以上ヲ拘禁ス可シ但療養其他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ハ此

限ニ在ラス

第三十六條　雜居監房、工場、敎場及ヒ敎誨堂ニ於テハ在監者ノ席次ヲ定ム可シ

第三十七條　所長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在監者ノ交談ヲ禁止スルコトヲ得

第三十八條　雜居監房ハ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ヲ除クノ外之ヲ工場ニ代用スルコトヲ得ス

第三十九條　居房ノ前ニハ小札ヲ揭ケ在房者ノ番号ヲ記載ス可シ

第四十條　雜居監房ニハ其容積、定員及ヒ現在人員ヲ記載シタル小札ヲ揭ク可シ

第四章　戒护

第四十一條　監獄ニ於テハ出入ノ警戒ヲ嚴ニシ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出入者ノ携帶品ヲ檢查ス可シ

2　開監前閉監後ハ所長ノ許可アルニ非サレハ監獄官吏以外ノ者ヲ出入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四十二條　監獄ノ外門、各出入口、監房、工場及ヒ現ニ在監者ヲ拘禁スル場所ハ之ヲ閉鎖シ置ク可シ若シ必要ニ因リ一時開放スルトキハ其要所ヲ守衛ス可シ

2　所長ニ於テ受刑者ノ處遇上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戒護ニ支障ナキ限リ前項ノ規定ニ依ラザルコトヲ得

3　鍵ハ一定ノ監獄官吏之ヲ保管シ必要アル場合ニ非サレハ其授受ヲ爲スコトヲ得ス

第四十三條　監獄官吏ハ所長ノ命令アルニ非サレハ他ノ監獄官吏ノ立會ナクシテ監房ヲ開扉シ又ハ在監者ヲ出房セシムルコトヲ得ス但病監ニ在リテハ此限ニ在ラス

第四十四條　監獄ノ構內ニ於テハ常ニ視察ノ便ヲ計リ觀望ヲ妨ケ其他戒護ノ障害ト爲ル可キ物ヲ置ク可カラス

2　已ムコトヲ得サル場合ニ於テ梯子其他戒護ノ障害ト爲ル可キ物ヲ構內ニ置クトキハ施錠其他必要ナル措置ヲ講ズ可シ

第四十五條　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少クトモ毎日一回監房ノ檢查ヲ爲サシム可シ

第四十六條　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工場又ハ監外ヨリ還房スル在監者ノ身体及ヒ衣類ノ檢査ヲ爲サシム可シ

第四十六條ノ二　所長ニ於テ受刑者ノ處遇上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二條ノ規定ニ依ラザルコトヲ得

第四十七條　在監者ニシテ戒護ノ爲メ隔離ノ必要アルモノハ之ヲ獨居拘禁ニ付ス可シ

第四十八條　戒具ハ左ノ四種トス

一　鎭靜衣
二　防聲具
三　手錠
四　捕繩

2　戒具ノ製式ハ法務大臣別ニ之ヲ定ム

第四十九條　戒具ハ所長ノ命令アルニ非サレハ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但緊急ヲ要スルトキハ此限ニ在ラズ

2　前項但書ノ場合ニ於テハ使用後直ニ其旨ヲ所長ニ報告ス可シ

第五十條　鎭靜衣ハ暴行又ハ自殺ノ虞アル在監者、防聲具ハ制止ヲ肯ンセスシテ大聲ヲ發スル在監者、手錠及捕繩ハ暴行、逃走若クハ自殺ノ虞アル在監者又ハ護送中ノ在監者ニシテ必要アリト認ムルモノニ限リ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

2　鎭靜衣ハ十二時間以上、防聲具ハ六時間以上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但特ニ繼續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爾後三時間毎ニ更新スルコトヲ妨ケス

3　護送中ノ者ニハ鎭靜衣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

第五十一條　監獄官吏在監者ニ對シテ銃ヲ使用シタルトキハ所長ハ直ニ其旨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第五十二條　所長ハ受刑後三月ヲ經過シ逃走ノ虞ナキ者ノ中ニ就キ予メ消防ノ用務ニ就カシム可キモノヲ指定シ隨時消防演習ヲ爲サシム可シ

第五十三條　監獄法第二十二條ニ依リ在監者ヲ解放スルトキハ出頭ス可キ期間及ヒ場所ヲ告知ス可シ

第五十四條　在監者ヲ他所ニ護送ス可キ場合ニ於テハ監獄ノ医師ヲシテ之ヲ診斷セシメ健康ニ害アリト認ムルトキハ其護送ヲ停止ス可シ

2　護送ヲ停止シタルトキハ其旨ヲ關係官廳ニ通報ス可シ

第五十五條　護送中ハ男女ヲ同行セシム可カラス刑事被告人ニシテ被告事件ノ相關連スルモノ亦同シ

2　刑事被告人及ヒ二十歲未滿ノ者ハ護送ノ際他ノ在監者ト區分ス可シ

第五十六條　在監者逃走シ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監獄所在地及ヒ其附近並ニ逃走者ノ立寄ル可キ見込アル地方ノ警察署ニ逃走者ノ人相書ヲ添ヘ逃走ノ事實ヲ通報ス可シ

第五十七條　前條ノ場合ニ於テハ所長ハ其事實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逃走者ヲ逮捕シタルトキ亦同シ

2　逃走者刑事被告人又ハ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ナルトキハ前項ノ報告ヲ爲ス外逃走及ヒ逮捕ノ事實ヲ夫々檢察官又ハ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五章　作业

第五十八條　在監者ノ作業時間ハ法務大臣別ニ之ヲ定ム

2　所長ハ地方ノ狀況、監獄ノ構造又ハ作業ノ種類ニ因リ作業時間ヲ伸縮スルコトヲ得

3　請求ニ因リ作業ニ就ク者ノ作業時間ハ二時間以內短縮スルコトヲ得

4　敎育、敎誨及ヒ運動ニ要スル時間ハ之ヲ作業時間ニ通算スルコトヲ得

第五十九條　削除

第六十條　在監者ニ課スル作業ハ其種類及ヒ一日ノ科程ヲ指定シ之ヲ本人ニ告知ス可シ

第六十一條　作業科程ハ普通一人ノ仕上高及ヒ第五十八條第一項ノ作業時間ヲ標準トシテ等一ニ之ヲ定ム可シ

2　仕上高ヲ標準トスルコト能ハサル作業ニ付テハ第五十八條第一項ノ作業時間ヲ以テ作業科程トス

3　二十歳未滿ノ受刑者、老者、病弱者及ヒ不具者ハ前二項ニ依ラス各就業者ニ付キ相当ノ作業科程ヲ定ムルコトヲ得

第六十二條　作業時間ノ全部ヲ通シテ就業セシムルコト能ハサル作業ハ之ヲ他ノ作業ト併課スルコトヲ得

第六十三條　一日ノ作業科程ヲ終了シタル者ト雖モ作業時間内ハ継續シテ作業ニ就カシム可シ

第六十四條　請求ニ因リ作業ニ就ク者ハ正当ノ事由アルニ非サレハ其作業ヲ中止シ若クハ之ヲ廢止シ又ハ作業ノ種類ヲ変更スルコトヲ得ス

第六十五條　削除

第六十六條　刑事被告人ハ之ヲ監外ノ作業ニ就カシムルコトヲ得ス

第六十七條　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毎日一回各就業者ニ就キ作業ノ成績ヲ檢査セシム可シ

第六十八條　仕上高ハ毎月末日ニ其月分ヲ積算シ一日ノ平均高ト一日ノ科程トヲ對照シ作業科程ノ了否ヲ定ム可シ

2　第六十一條第二項ノ作業ニ付テハ一月毎ニ其就業時間ヲ積算シ前項ノ例ニ依リ作業科程ノ了否ヲ定ム可シ

第六十九條　前條ニ依リ作業科程ノ了否ヲ定メタルトキハ作業賞与金ノ計算ヲ爲ス可シ

第七十條　作業ニ就キタル者ト雖モ行狀不良ニシテ作業成績劣等ナルモノニハ作業賞与金ノ計算ヲ爲ササルコトヲ得

第七十一條　作業賞与金ハ行狀、性向、作業ノ種類、成績、科程ノ了否ヲ斟酌シ法務大臣ノ定ムル所ニ依リ計算ス可シ

第七十二條　監獄法第二十五條第四項ニ依リ作業ニ就キタル者ニハ前條ニ依リ計算シタル額ヲ增加スルコトヲ得

第七十三條　在監者惡意又ハ重過失ニ因リ器具、製品、素品其他ノ物ニ損害ヲ加ヘタルトキハ其賠償ニ相当スル金額ヲ作業賞与金計算高ノ內ヨリ控除スルコトヲ得

第七十四條　就業者ニハ每月十五日マテニ前月分ノ作業賞与金計算高ヲ告知ス可シ

第七十五條　作業賞与金ハ釋放ノ際之ヲ給与ス

2　作業賞与金ハ其計算高ヲ有スル者死亡シタルトキハ本人ノ配偶者、子、父又ハ母ニ之ヲ給与スルコトヲ得

3　作業賞与金ヲ給与スル場合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條件ヲ指定スルコトヲ得

第七十六條　作業賞与金計算高ヲ有スル受刑者其配偶者、子、父若クハ母ノ扶助、犯罪被害者ニ對スル賠償又ハ書籍ノ購求其他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情狀ニ因リ在監中ト雖モ作業賞与金計算高ノ三分ノ一ヲ超エサル金額ヲ給スルコトヲ得

2　受刑者ノ爲メ特ニ必要アリト認ム可キ場合ニ於テハ前項ノ規定ニ依ラス之ニ作業賞与金ヲ給スルコトヲ得

第七十七條　作業賞与金計算高ヲ有スル刑事被告人其配偶者、子、父又ハ母ノ扶助其他正当ノ費用ヲ要スル場合ニ於テハ情狀ニ因リ在監中ト雖モ之ニ作業賞与金ヲ給スルコトヲ得

第七十八條　作業賞与金計算高ヲ有スル在監者逃走後六月內ニ其居所分明セサルトキハ其計算高ヲ抹消ス可シ

第七十九條　監獄法第二十一條及ヒ第二十八條ニ依ル手当金ハ法務大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給与ス可シ

第七十九條ノ二　懲役受刑者行狀及ビ作業成績優良ニシテ且ツ其處遇上害ナシト認ムルトキハ余暇時間內ニ於テ自己ノ爲ニスル勞作ヲ許スコトヲ得禁錮受刑者行狀優良ニシテ且ツ其處遇上害ナシト認ムルトキ亦同ジ

2　前項ノ勞作ノ時間ハ一日ニ付キ二時間以内ナルコトヲ要ス

第六章　教誨及ヒ教育

第八十條　教誨ハ休業日又ハ日曜日ニ於テ之ヲ爲ス可シ

2　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休業日又ハ日曜日以外ノ日ニ於テモ教誨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第八十一條　病監又ハ獨居監房ニ拘禁スル受刑者及ヒ刑事被告人ニハ其居所ニ就キ教誨ヲ爲ス可シ

第八十二條　受刑者父母ノ訃ニ接シ就業ヲ免セラレタルトキハ教誨ヲ爲ス可シ

2　前項ノ場合ニ於テハ本人ノ希望ニ因リ其亡父母ノ爲メ讀経其他ノ行事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3　第一項ノ受刑者ハ之ヲ獨居拘禁ニ付スルコトヲ得

第八十三條　削除

第八十四條　受刑者死亡シタルトキハ本人ト緣故アル受刑者ヲ集メ棺前ニ於テ教誨ヲ爲ス可シ

第八十五條　監獄法第三十條ニ依リ教育ヲ施ス受刑者ニハ毎日四時間以内其教育ノ程度ニ応シ相当ノ教科ヲ授ク可シ

2　前項ノ受刑者ニシテ小學校又ハ中學校ノ課程ヲ修了セサルモノニ付キ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項ノ時間ヲ超エ小學校又ハ中學校ニ於テ必要トスル教科ヲ授クルコトヲ得

第八十六條　文書図畫ノ閲讀ハ拘禁ノ目的ニ反セズ且ツ監獄ノ紀律ニ害ナキモノニ限リ之ヲ許ス

2　文書図畫多數其他ノ事由ニ因リ監獄ノ取扱ニ著シク困難ヲ來タス虞アルトキハ其種類又ハ箇數ヲ制限スルコトヲ得

第八十七條　削除

第八十八條　削除

第七章　削除

第八十九條　削除

第九十條　削除

第九十條ノ二削除

第九十一條　削除

第九十二條　削除

第九十三條　削除

第九十四條　削除

第九十五條　削除

第九十五條ノ二削除

第九十六條　削除

第九十九條　削除

第百條　削除

第百一條　削除

第八章　卫生及ヒ医疗

第百二條　監獄ニ於テハ清潔ヲ旨トシ衣類臥具及ヒ雜具ハ期限ヲ定メ蒸汽其他適当ノ方法ヲ用ヰテ之ヲ清淨ナラシム可シ

第百三條　在監者ニハ常ニ頭髮ノ清潔ヲ保タシメ其容姿ヲ整ヘシム可シ

2　在監者ノ調髮ハ概ネ二十日毎ニ一回、顔剃ハ少クトモ七日毎ニ一回之ヲ行ハシム可シ但婦女及ビ特別ノ事情アル者ニ付テハ適宜之ヲ行ハシムルコトヲ得

第百四條　削除

第百五條　在監者ノ入浴ノ度數ハ作業ノ種類及ヒ其他ノ事情ヲ斟酌シテ所長之ヲ定ム但六月ヨリ九月マテハ五日毎ニ一回、十月ヨリ五月マテハ七日毎ニ一回ヲ下ルコトヲ得ス

第百六條　在監者ニハ雨天ノ外毎日三十分以内戸外ニ於テ運動ヲ爲サシム可シ但作業ノ種類其他ノ事由ニ因リ運動ノ必要ナシト認ム可キ者ニ付テハ此限ニ在ラス

2　前項ノ運動時間ハ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ニ限リ一時間以内ニ伸長スルコトヲ得

第百七條　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在監者ニシテ二十歲未滿ノモノハ少クトモ三十日毎ニ一回、其他ノモノハ少クトモ三月毎ニ一回、雜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受刑者ニシテ刑期一年以上ノモノハ少クトモ六月毎ニ一回監獄ノ医師ヲシテ健康診斷ヲ爲サシム可シ

第百八條　二十歲未滿ノ者ハ其他ノ者ト治療ノ時間及ヒ病監ニ於ケル居室ヲ異ニス可シ

第百九條　獨居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疾病ニ罹リタルトキハ病監ニ移ス必要アル場合ヲ除ク外其監房ニ於テ治療セシメ病監ニ移シタルトキハ成ル可ク病監内ノ獨居監房ニ拘禁ス可シ

第百十條　伝染病流行ノ兆アルトキハ其予防ヲ嚴ニシ流行地ヲ發シ又其地方ヲ経過シタル入監者ハ一週日以上他ノ者ト隔離シ其携帶物ニハ消毒方法ヲ行フ可シ

第百十一條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관する醫療に關 する法律 ニ定ムル感染

症予防ノメ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在監者ニ予防接種其他ノ措置ヲ施ス可シ

第百十二條　削除

第百十三條　在監者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關する醫療に關する法律ニ定ムル感染症指定醫療機關ヘノ入院ヲ要スル類型ノ感染症ニ罹リタルトキハ直ニ之ヲ隔離シ嚴格ニ消毒方法ヲ行ヒ其狀況ヲ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第百十四條　監獄法第四十三條ニ依リ在監者ヲ病院ニ移送シタルトキハ所長ハ監獄ノ医師ノ診斷書及ヒ移送シタル病院トノ協議書ヲ添ヘ法務大臣ニ申報ス可シ

第百十五條　在監者ヲ病院ニ移送シタルトキハ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每日其狀況ヲ視察セシム可シ

第百十六條　病院ニ移送シタル者在院ノ必要ナキニ至リ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之ヲ還送セシメ法務大臣ニ其旨ヲ申報ス可シ

第百十七條　治療ノ爲メ特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監獄ノ医師ニ非サル医師ヲシテ治療ヲ補助セシムルコトヲ得

2　分娩ノ際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助產婦ヲ付スルコトヲ得

第百十八條　在監者ノ疾病危篤ナルトキハ其旨ヲ本人ノ親族ニ通知シ刑事被告人又ハ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ナルトキハ仍ホ夫々檢察官又ハ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百十九條　妊婦ハ受胎後五月以上ノ者產婦ハ分娩後二月ヲ經過セサル者ニ限リ之ヲ病者ニ準スルコトヲ得

第九章　接見及ヒ信书

第百二十條　削除

第百二十一條　接見ノ時間ハ三十分以內トス但弁護人トノ接見ハ此限ニ在ラス

第百二十二條　接見ハ執務時間內ニ非サレハ之ヲ許サス

第百二十三條　接見ノ度數ハ拘留受刑者及ヒ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ニ付テハ十日每ニ一回、禁錮受刑者ニ付テハ十五日每ニ一回、懲役受刑者ニ付テハ一月每ニ一回トス但二十歲未滿ノ受刑者又ハ之ニ準スル處遇ヲ爲ス受刑者ノ接見度數ハ所長ニ於テ敎化上必要ト認ムル程度ヲ標準トシテ適宜之ヲ增加スルコトヲ得

第百二十四條　所長ニ於テ處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三條ノ制限ニ依ラサルコトヲ得

第百二十五條　在監者ニ接見センコトヲ請フ者アルトキハ其氏名、職業、住所、年齡、在監者トノ續柄及ヒ面談ノ要旨ヲ聞取リ許可ヲ与ヘタル者ニハ接見者心得事項ヲ告知ス可シ

2　接見センコトヲ請フ者弁護人ナルトキハ其氏名、職業及ヒ住所ノミヲ聞取リ裁判所ノ許可ヲ得テ弁護人ト爲リタル者ニハ仍ホ其旨ヲ証明セシム可シ

第百二十六條　接見ハ接見所ニ於テ之ヲ爲サシム可シ

2　受刑者ノ敎化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接見所以外ノ適当ナル場所ニ於テ接見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3　在監者疾病ノ爲メ已ムコトヲ得ザル場合ハ其居所ニ於テ接見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第百二十七條　接見ニハ監獄官吏之ニ立會フ可シ但刑事被告人ト弁護人トノ接見ハ此限ニ在ラス

2　前項但書ノ場合ニ於テハ逃走不法ナル物品ノ授受又ハ罪証湮滅其他ノ事故ヲ防止スル爲メ必要ナル戒護上ノ措置ヲ講ス可シ

3　所長ニ於テ敎化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受刑者ノ接見ニ付立會ヲ爲サシメサルコトヲ得

第百二十八條　外國語ハ所長ノ許可アルニ非サレハ接見ノ際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ス

第百二十九條　發信ノ數ハ拘留受刑者及ヒ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ニ付テハ十日每ニ一通、禁錮受刑者ニ付テハ十五日每ニ一通、懲役受刑者ニ付テハ一月每ニ一通トス但二十歲未滿ノ受刑者又ハ之ニ準スル處遇ヲ爲ス受刑者ノ發送スル信書ノ數ハ所長ニ於テ敎化

上必要ト認ムル程度ヲ標準トシテ適宜之ヲ增加スルコトヲ得

2 所長ニ於テ處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前項ノ制限ニ依ラサルコトヲ得

第百二十九條ノ二 受刑者ノ受ク可キ信書ニシテ敎化上支障ナキモノハ其都度之ヲ本人ニ交付ス可シ

2 受刑者ニ交付ス可キ信書多數ニシテ監獄ノ取扱ニ著シキ困難ヲ來タス虞アルトキハ急速ヲ要スル信書ヲ先ツ交付ス可シ

第百三十條 在監者ノ發受スル信書ハ所長之ヲ檢閱ス可シ

2 發信ハ封緘ヲ爲サシテ之ヲ所長ニ差出サシメ受信ハ所長之ヲ開披シ檢印ヲ押捺ス可シ

第百三十一條 外國文ヲ用ヰタル信書ハ檢閱ノ爲メ在監者ノ費用ヲ以テ之ヲ翻譯セシムルコトヲ得

2 在監者前項ノ費用ヲ負担スル資力ナク又ハ其負担ヲ肯セサルトキハ信書ノ發受ヲ許ササルコトヲ得

第百三十二條 受刑者ノ發送スル信書ハ急速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日曜日、休業日又ハ休憩時間內ニ非サレハ之ヲ作成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百三十三條 在監者信書ヲ自書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本人ノ求ニ因リ監獄官吏之ヲ代書ス可シ

第百三十四條 在監者ノ發送スル信書ノ郵便料金ハ自弁トス裁判所其他公務所ニ對シ返信ヲ要スル場合及ビ處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場合ニ於テ郵便料金ヲ自弁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監獄ニ於テ之ヲ支弁ス可シ

2 書信用紙及ヒ封筒ハ監獄ニ於テ之ヲ給与スルコトヲ得

第百三十五條 在監者ニ交付シタル信書及ヒ其他ノ文書ハ所長ニ於テ處遇上其他必要アリト認ムル期間之ヲ本人ニ所持セシムルコトヲ得

第百三十六條 信書ノ檢閱、發送及ヒ交付ノ手續ハ成ル可ク速ニ之ヲ爲ス可シ

第百三十七條　信書ノ發送、交付及ヒ廢棄ノ年月日ハ之ヲ本人ノ身分帳簿ニ記載ス可シ

第百三十八條　監獄法第四十七條第一項ニ依リ發受ヲ許ササル信書ハ保管シ置キ廢棄ス可キモノヲ除ク外釋放ノ際之ヲ本人ニ交付ス可シ

第百三十九條　接見ノ立會及ヒ信書ノ檢閱ノ際處遇上其他參考ト爲ル可キ事項ヲ發見シタルトキハ其要旨ヲ本人ノ身分帳簿ニ記載ス可シ

第十章　領置

第百四十條　領置物ハ其品目及ヒ數量ヲ領置金品基帳ニ記載シ領置品基帳ニハ所長之ニ証印ス可シ

第百四十一條　金錢ニ非サル領置物ハ本人ノ請求ニ因リ之ヲ賣却シテ其代金ヲ領置スルコトヲ得

2　領置ヲ爲サス又ハ領置ヲ解キタル物ニ付キ本人相当ノ處分ヲ爲ササルトキハ請求ナキトキト雖モ前項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3　領置シタル金錢ニ付キ本人預金センコトヲ請ヒタル場合ニ於テ其金額、身上關係其他ノ事情ヲ斟酌シテ相当ト認ムルトキハ之ヲ許シ其証書ヲ領置スルコトヲ得

第百四十二條　削除

第百四十三條　削除

第百四十四條　削除

第百四十五條　削除

第百四十六條　削除

第百四十七條　削除

第百四十八條　自弁又ハ差入ヲ許シタル物ハ本人ニ交付セサルトキト雖モ携有物ノ例ニ

依リ領置ノ手續ヲ爲ス可シ

第百四十九條　新聞紙、雜誌、飮食物及ビ日常必需品ニ付テハ領置ノ手續ヲ爲サザルコトヲ得

第百五十條　沒入又ハ廢棄ノ處分ヲ爲シタルトキハ沒入廢棄簿ニ品目、數量並ニ處分ヲ爲シタル理由及ヒ年月日ヲ記載シ所長之ニ証印ス可シ但前條ニ依リ領置ヲ爲サザル物ニ付テハ此限ニ在ラズ

第百五十一條　死亡者ノ遺留物ノ交付ヲ受ク可キ者遠隔地ニ在ルトキハ其請求ニ因リ遺留物ヲ賣却シテ代金ヲ送付スルコトヲ得但其費用ハ請求者ノ負担トス

第十一章　賞罰

第百五十二條　賞遇ヲ爲ス可キ者ニハ賞表ヲ付与ス可シ

2　賞表ハ加ヘテ三箇ヲ超ユルコトヲ得ス

第百五十三條　賞表ハ長六糎幅三糎ノ白色ノ布ヲ用ヰ上衣ノ左袖肩臂間ノ表面ニ縫著セシム可シ

第百五十四條　賞遇ハ左ノ如シ

一　第百二十三條ニ定メタル接見ノ度數及ヒ第百二十九條ニ定メタル信書發送ノ度數ヲ一回宛增加スルコト

二　襯衣ノ自弁ヲ許スコト

三　作業ノ変更ヲ許スコト

四　第七十一條ニ依ル作業賞与金計算高ヲ賞表一箇毎ニ十分ノ二宛增加スルコト

五　特別ノ糧食及ヒ飮料ヲ給与スルコト

第百五十五條　賞遇ヲ廢止セラレタル者ニハ賞表ヲ剝奪シ賞遇ヲ停止セラレタル者ニハ其期間賞表ヲ除去ス可シ

第百五十六條　在監者左ノ各号ニ該ル行爲アルトキハ五千円以下ノ賞金ヲ給スルコトヲ得

一　人命ヲ救護シタルトキ

二　在監者ノ逃走ヲ防止シタルトキ
三　天災事変又ハ伝染病流行ノ際監獄ノ用務ニ服シ功勞アリタルトキ

第百五十七條　減食ハ第九十四條ノ規定ニ拘ハラズ本人ニ給与スル糧食ノ一回ノ分量ヲ二分ノ一乃至三分ノ一ニ減ス

第百五十八條　懲罰事犯ニ付キ取調中ノ者ハ之ヲ獨居拘禁ニ付シ又ハ夜間獨居監房ニ拘禁ス可シ

第百五十九條　懲罰ノ言渡ハ所長之ヲ爲ス可シ

第百六十條　懲罰ノ言渡ノ後直ニ之ヲ執行ス可シ
2　戸外運動ノ停止、減食又ハヘイ禁ニ處セラレタル者ニ付テハ監獄ノ医師ヲシテ本人ヲ診斷セシメ其健康ニ害ナシト認メタルトキニ非サレハ懲罰ヲ執行スルコトヲ得ス

第百六十一條　減食又ハヘイ禁ノ執行中ニ在ル者ハ監獄ノ医師ヲシテ時時其健康ヲ診斷セシム可シ

第百六十二條　減食又ハヘイ禁ニ處セラレタル者裁判所ノ呼出ニ因リ出頭スルトキハ当日ニ限リ懲罰ノ執行ヲ停止ス可シ
2　前項ニ揭ケタル者ヲ移監ノ爲メ他所ニ護送スルトキハ護送ノ前日、其当日及ヒ護送中懲罰ノ執行ヲ停止ス可シ
3　停止ノ日數ハ之ヲ處罰期間ニ算入セス

第百六十三條　戸外運動ノ停止、減食又ハヘイ禁ニ處セラレタル者ハ懲罰ノ執行ヲ終リタル後速ニ監獄ノ医師ヲシテ其健康ヲ診斷セシム可シ

第百六十四條　懲罰ニ處セラレタル者ヲ移監ニ因リ受領シタル監獄ニ於テハ收監後三日以内ニ懲罰ノ執行ヲ開始ス可シ
2　收監後執行開始ニ至ル迄ノ日數ハ之ヲ處罰期間ニ算入セス

第百六十五條　在監者護送ノ途中ニ於テ紀律違反ノ行爲アリタルトキハ本人ヲ受領シタ

ル監獄ニ於テ之ヲ懲罰ニ處スルコトヲ得

第百六十六條　在監者ノ賞罰ニ關スル事項ハ身分帳簿及ヒ懲罰簿ニ記載ス可シ

第十二章　釋放

第百六十七條　刑期ノ終了ニ因リ釋放セラル可キ受刑者ハ釋放前三日以內獨居拘禁ニ付シ所長ハ釋放後ノ心得ニ付キ諭告ヲ爲ス可シ

第百六十八條　刑期ノ終了ニ因リ釋放セラル可キ受刑者ニ付テハ釋放ノ十日前迄ニ釋放後ノ保護ニ關スル事項ヲ調査ス可シ

第百六十九條　所長ニ於テ必要アリト認メタルトキハ釋放セラル可キ者ノ性格及ヒ行狀並ニ保護ニ關スル意見ヲ本人ノ保護ニ關係アル公務所又ハ本人ノ保護ヲ引受ク可キ者ニ通報ス可シ

第百七十條　釋放セラル可キ者ノ領置物及ヒ作業賞与金ハ予メ交付ノ準備ヲ爲シ置ク可シ

第百七十一條　釋放ノ際著用ス可キ衣類ヲ有セサル者ニハ予メ本人ノ領置金若クハ作業賞与金又ハ其他ノ方法ヲ以テ之ヲ調達セシメ若シ調達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監獄ニ於テ之ヲ給与ス可シ

第百七十二條　受刑者ヲ釋放シタル場合ニ於テ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所長ハ監獄官吏ヲシテ停車場又ハ乘船所迄同行セシメ本人ニ代リ其歸住地又ハ歸住地ニ最近ノ場所ニ至ル迄ノ乘車券又ハ乘船切符ヲ購求シ之ヲ本人ニ交付セシム可シ

第百七十三條　削除

第百七十四條　仮出獄ニ因リ釋放ス可キ場合ニ於テハ一定ノ式ニ依リ所長釋放ノ申渡ヲ爲シ本人ニ証票ヲ交付ス可シ

第百七十五條　仮出獄ニ因リ釋放セラレタル者刑法第二十九條第一項第一号乃至第三号

ニ該ルコトヲ知リタルトキハ所長ハ速ニ其旨ヲ法務大臣ノ別ニ定ムル所ニ依リ保護觀察所ノ長ニ通報ス可シ

第百七十六條　第百七十四條ノ規定ハ刑法第三十條ニ依ル仮出場ノ場合ニ之ヲ準用ス

第十三章　死亡

第百七十七條　在監者死亡シタルトキハ所長ハ其死体ヲ檢ス可シ

2　病死ノ場合ニ於テハ監獄ノ医師ハ其病名、病歷、死因及ヒ死亡ノ年月日時ヲ死亡帳ニ記載シ之ニ署名ス可シ

3　自殺其他変死ノ場合ニ於テハ其旨ヲ檢察官及ビ警察署ニ通報シテ檢視ヲ受ケ檢視者及ヒ立會者ノ官氏名並ニ檢視ノ結果ヲ死亡帳ニ記載ス可シ

第百七十八條　死亡者ノ病名、死因及ヒ死亡ノ年月日時ハ速ニ之ヲ死亡者ノ親族ニ通報ス可シ死亡者刑事被告人又ハ監置ニ處セラレタル者ナルトキハ仍ホ夫々檢察官又ハ裁判官ニ通報ス可シ

第百七十九條　受刑者ノ死体ハ死亡後二十四時間ヲ經テ交付ヲ請フ者ナキ場合ニ限リ解剖ノ爲メ法務大臣ニ於テ指定シタル病院、學校又ハ公務所ニ之ヲ送付スルコトヲ得

2　死亡後二十四時間ヲ經テ交付ヲ請フ者ナキ場合ト雖モ其後ニ至リ交付ヲ請フ者アリト思料ス可キトキ又ハ本人カ生前ニ於テ解剖ヲ肯セサル意思ヲ表示シタルトキハ前項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ス

第百八十條　死体ヲ請求者ニ交付シ又ハ解剖ノ爲メ送付シタルトキハ其旨ヲ死亡帳ニ記載ス可シ

第百八十一條　死亡後二十四時間ヲ經テ死体ノ交付ヲ請フ者ナキトキハ第百七十九條ノ場合ヲ除ク外之ヲ監獄ノ墓地ニ仮葬ス可シ

2　火葬ニ付シタル場合ニ於テハ其遺骨ニ付キ亦同シ

3　仮葬ノ場所ニハ死亡者ノ氏名及ヒ死亡ノ年月日ヲ記シタル木標ヲ立ツ可シ

第百八十二條　死体又ハ遺骨ヲ合葬シタルトキハ合葬者ノ氏名及ヒ死亡ノ年月日ヲ合葬

簿ニ記載シ合葬ノ場所ニハ墓標ヲ立ツ可シ

2　墓標ニハ石ヲ用ウ可シ

附　則

【法令番号　】明治四十一年六月十六日司法省令第十八号

【施行年月日】明治四十一年十月一日

○1　本則ハ監獄法施行ノ日ヨリ之ヲ施行ス

○2　監獄則施行細則ハ之ヲ廢止ス但懲治人ニ關スル規定ハ当分ノ繼續仍ホ其效力ヲ有ス

附則(大正一0年九月一日司法省令第一九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大正一一年六月二日司法省令第一三호)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大正一一年一0月一四日司法省令第二四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大正一三年三月八日司法省令第四호)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三年四月九日司法省令第四호)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五年五月三日司法省令第七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六年四月三0日司法省令第九号)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附則(昭和二一年一一月九日司法省令第九七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附則(昭和二四年六月二三日法務府令第二二号)

この府令は、少年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施行の日(昭和二十四年五月三十日)から適用する。

附則(昭和二五年四月一五日法務府令第三二号)

この府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二五年九月一二日法務府令第一一一号)

この府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し、昭和二十五年九月一日から適用する。

附則(昭和二七年九月二四日法務省令第二八号)

この省令は、昭和二十七年九月二十五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0年二月一日法务省令第二四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九年三月三一日法务省令第四七号)

この省令は、昭和三十九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一年一一月一日法务省令第四七호)

(施行期日)
第一條　この省令は、昭和四十二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獨居拘禁の期間の改正に伴う經過措置)
第二條　この省令による改正後の第二十七條規定は、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獨居拘禁中の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において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第二十七條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る拘禁の期間が六月を越えている者については、その拘禁が施行日以前六月から開始されたものとみなし、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期間の更新を受けて拘禁されている者で施行日において更新後の拘禁(二回以上更新を受けて拘禁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は最後の更新後の拘禁。以下同じ。)の期間が三月を越え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更新後の拘禁が施行日以前三月から開始されたものとみなす。

附則(昭和四五年四月一七日法务省令第一二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七年六月三日法务省令第四八号)

この省令は、昭和四十七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九年六月二八日法務省令第五二号)

(施行期日)

1 この省令は、昭和四十九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經過措置)

2 この省令の施行前にこの省令による改正前の監獄法施行規則第百五十六條各號に該當する行をした者にし、この省令の施行後に賞金を給するときは、なお前の例による。

附則(昭和五二年四月一日法務省令第二四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三年八月七日法務省令第二二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六年八月五日法務省令第三七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七年三月三日法務省令第二五号)

この省令は、平成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八年三月一日法務省令第一一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一年三月三日法務省令第二四号)

この省令は、平成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二年九月一八日法務省令第三五号)

この省令は、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八號)の施行の日(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三年三月二二日法務省令第三0号)

この省令は、平成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四年二月八日法務省令第六号)

この省令は、平成十四年三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四年八月一日法務省令第四八号) 抄

(施行期日)

1 この規則は、平成十五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五年三月一七日法務省令第一二号)

この省令は、平成十五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 부 록 ✦

Ⅰ. 대한민국 행형법 / 685

Ⅱ. 대한민국 행형법시행령 / 705

빈 면

Ⅰ. 대한민국 행형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8호]

[목 차]

제 1 장 총칙(제1조~제7조)
제 2 장 수용(제8조~제13조)
제 3 장 계호(제14조~제17조)
제 4 장 접견과 서신(제18조~제19조)
제 5 장 급여(제20조~제22조)
제 6 장 위생과 의료(제23조~제30조)
제 7 장 교육과 교회(제31조~제34조)
제 8 장 직업(제35조~제40조)
제 9 장 영치(제41조~제43조)
제10장 분류와 처우(제44조~제48조)
제11장 가석방(제49조~제52조)
제12장 석방(제53조~제56조)
제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제57조~제61조)
제14장 미결수용(제62조~제69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조 (구분수용) ① 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신설 1999.12.28〉

⑤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전문개정 1995·1·5〕

제3조 (구분수용의 예외) 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 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1995 · 1 · 5〕

제4조 (이성의 격리〈개정 1995 · 1 · 5〉) 남자와 녀자는 격리수용한다.

제4조의2 (교도소등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5조 (교도소등의 순회점검등〈개정 1995.1.5〉)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②판사와 검사는 교도소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등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0 · 12 · 22, 1999.12.28〉

④삭제〈1995 · 1 · 5〉

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신설 1995 · 1 · 5〉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7조 (직무규정)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장 수 용

제8조 (신입자의 수용등) ①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③신입의 녀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④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녀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28〉

제8조의2 (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률・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본조신설 1999.12.28〕

제9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개정 1995.1.5, 1999.12.28〉)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10조 (사진촬영 등)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1조 (독거수용) ①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삭, 연령, 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개정 1995·1·5〉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2·22〉

제12조 (수용자의 이송〈개정 1995.1.5〉)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제13조 (사형수의 수용)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제3장 계 호

제14조 (계구)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28〉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제14조의2 (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0·12·22, 1995·1·5, 1999.12.28〉

③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28〉

제16조 (수용자의 긴급이송등) 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등의 안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②다른 장소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교도소등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80 · 12 · 22, 1995 · 1 · 5, 1999.12.28〉

④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9.12.28〉

제17조 (도주자의 체포〈개정 1995 · 1 · 5〉)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제17조의2 (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 · 의류 · 휴대품 ·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녀자의 신체 · 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녀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 4 장 접견과 서신

제18조 (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 · 시간 · 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 · 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8조의3 (전화통화)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9조 (서신등의 령치) 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령치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제5장 급 여

제20조 (급여)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1조 (급여〈개정 1995·1·5〉) 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개정 1995·1·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의류 등의 자비부담〈개정 1995·1·5〉)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 6 장 위생과 의료

제23조 (리발과 면도〈개정 1995 · 1 · 5〉)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녀자수형자와 3월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 1 · 5〉

제24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5조 (전염병예방)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 1 · 5〉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 1 · 5〉

제27조 (격리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 1 · 5〉

제28조 (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제29조 (병원이송〈개정 1999.12.28〉)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개정 1999.12.28〉

제29조의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30조 (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 7 장 교육과 교회

제31조 (교회) ① 삭제〈1980 · 12 · 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 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로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 · 12 · 22, 1999.12.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제33조 (신문 · 도서의 열람〈개정 1995 · 1 · 5〉)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33조의2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시청)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젼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본조신설 1995 · 1 · 5〕

제33조의3 (집필)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 · 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34조 (교육규정 등)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8장 작 업

제35조 (작업)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1·5〉

제36조 (휴일의 작업)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38조 (신청에 의한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9조 (작업수입등)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

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 · 12 · 22, 1999.12.28〉

제40조 (위로금, 조위금) ①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 9 장 영 치

제41조 (휴대금품의 령치)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령치한다. 다만, 령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 · 12 · 22〉

제42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개정 1995 · 1 · 5〉)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 1 · 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 · 1 · 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 · 12 · 22, 1999.12.28〉

제43조 (령치금품의 환부) ①령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9.12.28〉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1999.12.28〉

제 10 장 분류와 처우<개정 1980.12.22>

제44조 (분류 · 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1995 · 1 · 5〉

③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9.12.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1. 직계존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분류 · 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 · 12 · 22〕

제45조 (규률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6조 (징벌)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형법 ·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 ·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 소지 · 사용 ·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률을 위반하는 행위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 · 12 · 22, 1995 · 1 · 5, 1999.12.28〉

1. 경 고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6. 삭제〈1995 · 1 · 5〉
7. 삭제〈1995 · 1 · 5〉
8. 삭제〈1995 · 1 · 5〉
9. 삭제〈1995 · 1 · 5〉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1999.12.28〉

④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2.28〉

제47조 (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48조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개정 1999.12.28〉)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률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28〕

제 11 장 가석방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6 · 12 · 12〕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 · 12 · 12〕

제51조 (가석방심사〈개정 1995 · 1 · 5〉)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 12 · 12〕

제52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 12 · 12〕

제12장 석 방

제53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5 · 1 · 5〉

제54조 (석방시기〈개정 1999.12.28〉)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피석방자의 수용)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등에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56조 (귀가여비등) 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등에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57조 (사형의 집행) ①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개정 1995 · 1 · 5〉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시체의 가매장등〈개정 1999.12.28〉)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59조 (시체,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다. 다만,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제60조 (시체,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61조 (시체의 해부) 수용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 14 장 미결수용

제62조 삭제〈1995 · 1 · 5〉

제63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64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65조 (미결수용자의 리발〈개정 1995 · 1 · 5〉)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1995 · 1 · 5, 1999.12.28〉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등의 규률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12.28〕

제67조 (작업과 교회) ①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31조 · 제35조제1항 · 제36조 · 제37조 ·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 1 · 5〉

제68조 (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9조 삭제〈1999.12.28〉

부 칙 〈제858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42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 당시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시행 당시의 타법령중의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형무관은 본법에 의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교도관으로 각각 설치,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222호,1962.12.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 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 칙 〈제3289호,19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36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75호,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부 칙 〈제6038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빈 면

Ⅱ. 대한민국 행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3.28 대통령령 제16759호]

[목 차]

제 1 장 총칙(제1조~제9조)
제 2 장 수용(제10조~제37조)
제 3 장 계호(제38조~제53조)
제 4 장 접견과 통신(제54조~제72조)
제 5 장 급여(제73조~제91조)
제 6 장 위생과 의료(제92조~제106조)
제 7 장 교육과 교회(제107조~제114조)
제 8 장 작업(제115조~제125조)
제 9 장 영치(제126조~제138조)
제10장 귀휴와 징벌(제139조~제151조)
제11장 가석방(제152조~제158조)
제12장 석방(제159조~제163조)
제13장 사망 및 사형의 집행(제164조~제169조)
제14장 미결수용(제170조~제176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2조 (교도소등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받은 공무원(이하 "순회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3조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4조 (참관) ①소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5조 삭제 〈2000.3.28〉

제6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못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제8조 삭제 〈2000.3.28〉

제9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제2장 수 용

제10조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형의 집행절차) ①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검사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서류를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2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3조 (유아인도) ①소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양육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14조 (전염병의 정의) 법 제9조·제25조 및 제27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15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 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할 때에는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할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하여야한다. 〈개정 1995.8.26〉

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1979.8.29, 1995.8.26〉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8조 (목욕)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한다. 〈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은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8.26〉

제19조 (신입자의 번호) 소장은 신입자의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중 그 번호표를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20조 (신원조사 등) ①삭제 〈2000.3.28〉

②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또는 신입자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는 지체없이 그에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21조 (신입자의 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8.26〉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수용자의 신분장등) ①수용자의 신분장부·수용자명부·만기력부는 수용후3일이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용자 거실의 보기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23조 (독거수용의 규율) 독거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목욕·접견·작업·교회·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독거시켜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24조 삭제 〈2000.3.28〉

제25조 삭제 〈2000.3.28〉

제26조 삭제 〈2000.3.28〉

제27조 (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29조 삭제 〈2000.3.28〉

제30조 삭제 〈2000.3.28〉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수 있다.

1.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경우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0.3.28〕

제32조 (혼거수용의 금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

고는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3.28〕

제33조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35조 (혼거실의 대용금지)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0.3.28〉

제36조 (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 〈개정 1995.8.26〉

제37조 (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수용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3장 계 호

제38조 (외부인의 출입) 교도관외의 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는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39조 (수용자의 계호등) ①교도소등의 외문·출입구·거실·작업장 기타 수용자를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개방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고 받지 못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40조 (거실개방 및 출입) 교도관은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병실에 있어서나 긴

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41조 (장애물의 금지) 교도소등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게 하거나 기타 계호상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개정 1995.8.26〉

제42조 (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43조 (수용자의 신체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 8 · 26, 2000 · 3 · 28〉

제44조 삭제 〈2000.3.28〉

제45조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46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 · 폭행 · 도주 또는 자살의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개정 1995.8.26〉
②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8.26〉
③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47조 (강제력의 행사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명령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48조 (천재 · 사변시의 조치) ①소장은 천재 · 지변 기타 사변에 있어서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종사한 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3.28〉

제49조 (일시석방) 소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경우에는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51조 (이송시의 남녀 구분 등)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남자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52조 (도주시의 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숨을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53조 (도주시의 보고) 소장은 제52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26〉

제 4 장 접견과 통신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58조 (접견시의 기록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기록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
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3.28〉

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

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제59조 (접견의 장소)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60조 (접견시의 외국어 사용금지)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61조 (서신발송의 횟수)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은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8.26〕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3.28〉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8.26〉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신설 2000.3.28〉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3조 삭제 〈1995.8.26〉

제64조 (공무소로부터의 서신)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온 문서는 이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65조 (집필시간)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일요일 · 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66조 (집필장소)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집필실 · 거실 또는 작업장안의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67조 (집필한 문서 등의 영치 등) ①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집필한 문서 등은 이를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집필후 외부에 발송할것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수용중에 외부에 발송하고자 하거나 석방시에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3제1항 각호 및 이 영제6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문서 등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폐기한다.
③소장은 다 쓴 필기구와 집필용지의 회수 · 폐기 등 집필용구의 관리상태를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④기타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68조 (서신 등의 대서) 수용자가 서신 · 소송서류 기타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69조 (요금부담) 수용자의 집필용구의 구매비용과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우편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집필용구와우표를 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3.28〕

제70조 삭제 〈2000.3.28〉

제71조 (석방시 서신의 교부등) ①법 제18조의2제5항 단서에서 "폐기하는 것이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서신의 내용이 법 제33조의3제1항 각호 및 이영 제6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3.28〉

②소장은 서신 기타 문서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2조 (서신·접견시 참고사항의 기록) 소장은 서신의 검열과 접견의 참여에 있어업무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5장 급 여

제73조 (급여의류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색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4조 (식기등의 급여) ①수용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외에수용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식기등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8.26〉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치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75조 (의류등의 급여수량) ①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소장은 날씨·수용자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5.8.26〉

③식기와 생활용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5.8.26〉

④삭제 〈1995.8.26〉

⑤삭제 〈1995.8.26〉

제76조 (식기등의 정결)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식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기타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급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7조 (생활용구의 비치) ①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거실·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③거실과 작업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제78조 (주식·부식등의 급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기타영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8.26〉

제79조 (주식의 혼합) ①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으로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1995.8.26〉

제81조 삭제 〈1995.8.26〉

제82조 (특식의 급여)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83조 삭제 〈2000.3.28〉

제84조 (환자의 음식물) 환자의 주식·부식 기타 영양물은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제85조 (자비부담의류등의 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86조 (자비부담의류등의 종류) 자비부담의 의류 또는 침구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87조 (자비부담의류등의 세탁등) ①자비부담의 의류와 침구는 적당한 때에 교환·수선 또는 세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교도소등에서 자비부담의 의류 및 침구의 수선 또는 세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비용은 당해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8.26〉

제88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등)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정한다. 〈개정 1995.8.26〉

제89조 (자비부담음식물의 검사) 자비부담의 음식물은 교도관의 참여아래 의무관이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90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식사) 혼거수용자의 자비부담음식물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식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91조 (자비부담음식물등의 공급) ①소장은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교도소등의 직원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②자비부담음식물 및 의류등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 6 장 위생과 의료

제92조 (거실의 청결등) 수용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93조 (수형자의 이발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염은 10일에1회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5.8.26〉
〔전문개정 1979.8.29〕

제94조 (화장품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8.26, 2000.3.28〉

제95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7일에 1회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96조 (수용자의 운동등)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삭제 〈2000.3.28〉

제98조 (전염병의 예방조치)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99조 (전염병의 예방접종등) 소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00조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금지)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01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8.29〉

제102조 삭제 〈2000.3.28〉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04조 (중환자의 통지)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05조 (일반병원이송의 조치) ①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06조 (임산부 등의 정의) 법 제30조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60일 미만의 자를, "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 7 장 교육과 교회

제107조 (교회의 일시) 교회는 휴업일에 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제108조 (특별교회) 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 〈개정 1995.8.26〉

제109조 (작업면제자의 교회) 소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이 면제된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110조 (사면등의 의식) 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11조 (사망시 교회) 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와 연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12조 (피교육자의 문구 대여)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13조 (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운동회·연극 또는 영화관람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14조 (라디오청취등)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 8 장 작 업

제115조 (소년수형자의 작업등)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6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①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7조 (작업의 고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8조 (작업과정의 표준) 수형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형자의 작업성적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9조 (소년수형자등의 작업과정)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26〕

제120조 (신청에 의한 작업)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22조 (작업성적의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26〕

제123조 (작업의 휴업)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1995.8.26〉

〔전문개정 1979.8.29〕

제124조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소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5.8.26〉

제125조 (위로금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등을 대조·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9장 영치

제126조 (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27조 (영치물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28조 (영치물품의 매각등) ①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 (영치금사용의 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그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30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문구·인지·우표·우편엽서 또는 수용중이나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내의 금전과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예탁·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31〉
〔전문개정 1995.8.26〕

제132조 (금품교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기타 수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33조 (차입물품등의 검사)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하여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의무관으로 하여금 음식물 및 약품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34조 (음식물의 취급) 음식물에 관하여는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비밀소지물품의 처리) ①소장은 수용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영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물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36조 (영치물품폐기처분의 조치)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수거·폐기부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37조 (유류품의 교부) ①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의하여 유류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8조 (귀속된 금품의 사용범위)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품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 10 장 귀휴와 징벌

제139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가 소속하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40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41조 (징벌위원장의 대리)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2조 삭제 〈1995.8.26〉

제143조 (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144조 (징벌의 선고자)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1.5.20, 1995.8.26〉

④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0.3.28〉

제146조 (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수시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5.20, 1995.8.26〉

제147조 (징벌집행의 정지 등) ①소장은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등에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3.28〕

제148조 (징벌집행종료와 진단) 소장은 금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5.20, 1995.8.26〉

제149조 (징벌기간의 계산) ①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으로 인하여인수한 소장은 인수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소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집행정지일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3.28〉

제150조 (피호송자에 대한 징벌) 수용자가 이송도중에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개정 1995.8.26〉

제151조 (징벌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징벌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5.20, 1995.8.26〉

제 11 장 가석방

제152조 삭제 〈1996.12.31〉

제153조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등)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제1항의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154조 (가석방신청의 절차) ①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가석방심사신청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판결문등본, 형집행지휘서의 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결정을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55조 (가석방의 절차등) 소장은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이를 선고한 후 본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56조 (가석방심사등) 가석방의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1981.5.20〕

제157조 (가석방자의 준수사항)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58조 (가석방자의 재범보고)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 12 장 석 방

제159조 (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장래에 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160조 (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사항등)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1조 (석방자의 행형성적 등 통보)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자의 성격 및 행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162조 (석방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9·8·29, 1995·8·26〉

제163조 삭제 〈1995.8.26〉

제 13 장 사망 및 사형의 집행

제164조 (사형집행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개정 1995.8.26〉

제165조 (수용자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신분과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66조 (사망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67조 (시체의 인도등) 소장은 법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168조 (시체의 가매장) ①소장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등의 묘지에가매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소장은 시체를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00.3.28〉

제169조 (시체·유골의 합장) ①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5.8.26〉
②삭제 〈1995.8.26〉

제 14 장 미결수용

제170조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수용)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8.26〉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상호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72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3조 (미결수용자의 사망등의 통보) 미결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74조 (미결수용자의 작업등) 소장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
〔전문개정 1995.8.26〕

제175조 (경찰서유치장)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형자를 30일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76조 (외부의사의 진찰등) 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부 칙 〈제4128호,1969.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577호,1979.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13호,1981.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56호,1995.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의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5212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72호,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제16759호,2000.3.28〉

이 영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